제주역사 자료총서 10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Ⅲ

- 肅宗代 -

(下)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발 간 사

이번에《승정원일기》제주기사(숙종대) 자료집은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학 연구와 제주학의 대중화를 위해 절실한 기초적인 원문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해서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한 제주역사 편찬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왕대별《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제주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번역 정리한 소중한 성과임이 틀림없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16년부터《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한문 원문, 한글 번역 및 주석까지 보충하는 역주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작업 성과물을 왕대별로 묶어서 책자로도 발간하였는데, 올해는 효종대와 현종대에 이어 세 번째로《승정원일기》숙종대(1674~1720)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역주한 성과를 담았습니다.

본서에 소개된《승정원일기》의 숙종대 제주기사는 총 1,05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효종대(159건)와 현종대(330건)에 비하면, 거의 세 배 이상에 달하는 제주 관련 기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제주기사가 163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승정원일기》의 내용을 통해 조선시대 제주 역사를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록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제주 목민관들의 인사와 추고, 치죄, 유배 관련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공마와 체임진상마에 관한 마정 기록, 제주 진휼곡의 논의 및 운송과 관련된 진휼 문제, 제주 표류인 송환과 같은 표류 기사, 어사 시재와 직부전시 등의 과거와 관련한 기사 등 매우 다양한 주제의 제주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출·정리된《승정원일기》제주 관련 기사들은 원문과 함께 제주학아카이브(http://www.jst.re.kr/)에 탑재하여 시민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입니다. 이번 출간서적과 인터넷 아카이브 탑재를 통해 제주학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및 시민들에게 원문 1차사료를 쉽게 해독 정리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공함으로써 제주학의 전문화 및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어려운 번역 및 주석 작업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홍기표, 김일우, 문숙자, 백종진, 오창명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대한 분량을 일일이 확인하며 교정 및 교열에 참여해주신 김새미오, 이진영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홍기표 선생님께서 해제 및 출간, 교열 작업에 이르기까지 오랜시간 손수 번거로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앞으로도《승정원일기》제주기사 번역자료집 후속편 발간을 비롯해서 제주역사 기초사료의 수집 정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제주연구원 원장 **김 동 전**

목 차

1696年

22年 1月 23日(庚辰)…… 746
22年 2月 2日(戊子) …… 747
22年 2月 2日(戊子) …… 748
22年 3月 3日(己未) …… 749
22年 3月 14日(庚午)…… 751
22年 5月 8日(癸亥) …… 752
22年 5月 12日(丁卯)…… 753
22年 5月 12日(丁卯)…… 754
22年 5月 14日(己巳)…… 755
22年 5月 15日(庚午)…… 756
22年 5月 16日(辛未)…… 757
22年 5月 17日(壬申)…… 758
22年 6月 5日(己丑) …… 759
22年 6月 27日(辛亥)…… 760
22年 7月 7日(辛酉) …… 761
22年 7月 13日(丁卯)…… 762
22年 7月 14日(戊辰)…… 763
22年 7月 15日(己巳)…… 764
22年 7月 16日(庚午)…… 765
22年 7月 24日(戊寅)…… 766
22年 7月 24日(戊寅)…… 767
22年 7月 28日(壬午)…… 768
22年 8月 15日(戊寅)…… 769
22年 8月 15日(戊寅)…… 770
22年 8月 15日(戊寅)…… 772
22年 8月 23日(丙午) …… 773
22年 9月 14日(丁卯)…… 774

1697年

23年 3月 9日(庚申) …… 776
23年 3月 11日(壬戌)…… 777
23年 3月 27日(戊寅)…… 779
23年 閏 3月 3日(癸未) …… 780
23年 閏 3月 14日(甲午) …… 782
23年 閏 3月 15日(乙未) …… 783
23年 閏 3月 15日(乙未) …… 784
23年 閏 3月 18日(戊戌) …… 785
23年 4月 13日(壬戌)…… 786
23年 4月 23日(壬申)…… 787
23年 4月 25日(甲戌)…… 788
23年 7月 6日(甲申) …… 789
23年 7月 7日(乙酉) …… 790
23年 7月 25日(癸卯)…… 791
23年 8月 16日(癸亥)…… 792
23年 8月 19日(丙寅)…… 793
23年 8月 23日(庚午)…… 794
23年 9月 10日(丁亥)…… 796
23年 9月 10日(丁亥)…… 797
23年 10月 3日(庚戌)…… 798
23年 10月 5日(壬子)…… 799
23年 10月 6日(癸丑)…… 800
23年 10月 6日(癸丑)…… 801
23年 10月 18日(乙丑) …… 802
23年 12月 15日(辛酉) …… 803
23年 12月 27日(癸酉) …… 804
23年 12月 27日(癸酉) …… 805
23年 12月 30日(丙子) …… 806

1698年

24年 1月 3日(己卯) …… 808
24年 1月 8日(甲申) …… 810
24年 8月 2日(癸卯) …… 811
24年 8月 2日(癸卯) …… 812

24年 9月 13日(甲申)…… 813

1699年

25年 2月 6日(丙午) …… 816
25年 4月 9日(戊申) …… 817
25年 5月 20日(戊子)…… 818
25年 閏 7月 12日(戊申) …… 819
25年 8月 23日(戊子)…… 820
25年 9月 16日(辛亥)…… 821
25年 10月 21日(乙酉) …… 822
25年 10月 23日(丁亥) …… 823
25年 10月 27日(辛卯) …… 824
25年 10月 29日(癸巳) …… 825

1700年

26年 1月 6日(庚子) …… 828
26年 1月 16日(庚戌)…… 830
26年 1月 22日(丙辰)…… 833
26年 1月 24日(戊午)…… 834
26年 2月 3日(丁卯) …… 835
26年 2月 18日(壬午)…… 836
26年 2月 20日(甲申)…… 838
26年 2月 20日(甲申)…… 840
26年 3月 2日(乙未) …… 842
26年 3月 6日(己亥) …… 843
26年 4月 2日(乙丑) …… 844
26年 5月 18日(庚戌)…… 845
26年 6月 15日(丙子)…… 846
26年 6月 21日(壬午)…… 848
26年 8月 9日(己巳) …… 849

1701年

27年 4月 19日(丙子)…… 852
27年 4月 29日(丙戌)…… 853
27年 5月 6日(壬辰) …… 854
27年 6月 12日(戊辰)…… 855
27年 6月 20日(丙子)…… 857
27年 6月 22日(戊寅)…… 859
27年 7月 1日(丙戌) …… 861
27年 7月 15日(庚子)…… 862
27年 7月 25日(庚戌)…… 864
27年 9月 23日(丁未)…… 865
27年 9月 24日(戊申)…… 866
27年 9月 28日(壬子)…… 867
27年 10月 12日(乙丑) …… 868
27年 10月 24日(丁丑) …… 870
27年 10月 28日(辛巳) …… 871
27年 11月 10日(癸巳) …… 873
27年 11月 11日(甲午) …… 874
27年 11月 18日(辛丑) …… 875
27年 11月 26日(己酉) …… 877

1702年

28年 1月 11日(癸巳)…… 882
28年 1月 13日(乙未)…… 883
28年 3月 7日(戊子) …… 884
28年 3月 17日(戊戌)…… 885
28年 4月 28日(己卯)…… 886
28年 4月 30日(辛巳)…… 889
28年 5月 15日(丙申)…… 890
28年 5月 17日(戊戌)…… 891
28年 5月 25日(丙午)…… 893
28年 5月 27日(戊申) …… 894
28年 6月 9日(己未) …… 895
28年 6月 16日(丙寅)…… 896
28年 6月 25日(乙亥) …… 898
28年 閏 6月 19日(己亥) …… 899
28年 7月 19日(戊辰)…… 900
28年 7月 25日(甲戌)…… 901
28年 7月 25日(甲戌)…… 902
28年 9月 10日(戊午)…… 904
28年 12月 25日(辛丑) …… 905

1703年

29年 1月 2日(戊申) …… 908
29年 1月 20日(丙寅)…… 909
29年 2月 16日(辛卯)…… 910
29年 2月 26日(辛丑)…… 911
29年 3月 3日(戊申) …… 913
29年 3月 3日(戊申) …… 914
29年 3月 5日(庚戌) …… 915
29年 3月 9日(甲寅) …… 916
29年 3月 11日(丙辰)…… 917
29年 4月 17日(壬辰)…… 918
29年 5月 20日(甲子)…… 919
29年 6月 5日(己卯) …… 920
29年 6月 5日(己卯) …… 921
29年 6月 5日(己卯) …… 922
29年 7月 18日(壬戌)…… 923
29年 7月 21日(乙丑)…… 924
29年 7月 25日(己巳)…… 926
29年 7月 29日(癸酉)…… 927
29年 8月 6日(己卯) …… 929
29年 8月 7日(庚辰) …… 930
29年 9月 5日(戊申) …… 932
29年 9月 9日(壬子) …… 933
29年 9月 9日(壬子) …… 934
29年 9月 11日(甲寅)…… 935
29年 10月 14日(丙戌) …… 936
29年 11月 13日(甲寅) …… 937
29年 11月 16日(丁巳) …… 939
29年 11月 19日(庚申) …… 940
29年 11月 21日(壬戌) …… 941
29年 12月 21日(壬辰) …… 942
29年 12月 24日(乙未) …… 943

1704年

30年 2月 11日(辛巳)…… 946
30年 3月 12日(辛亥)…… 947
30年 4月 29日(戊戌)…… 948
30年 5月 5日(癸卯) …… 949
30年 5月 5日(癸卯) …… 951
30年 5月 5日(癸卯) …… 953
30年 5月 15日(癸丑)…… 955
30年 5月 15日(癸丑)…… 956
30年 5月 17日(乙卯)…… 959
30年 5月 17日(乙卯)…… 960
30年 5月 17日(乙卯)…… 961
30年 5月 19日(丁巳)…… 962
30年 5月 27日(乙丑)…… 964
30年 5月 30日(戊辰)…… 966
30年 6月 1日(己巳) …… 967
30年 6月 3日(辛未) …… 968
30年 6月 5日(癸酉) …… 970
30年 6月 5日(癸酉) …… 971
30年 6月 5日(癸酉) …… 973
30年 6月 6日(甲戌) …… 975
30年 6月 7日(乙亥) …… 976
30年 6月 11日(己卯)…… 978
30年 6月 12日(庚辰)…… 979
30年 6月 13日(辛巳)…… 980
30年 6月 18日(丙戌)…… 981
30年 6月 19日(丁亥)…… 982
30年 6月 30日(戊戌)…… 984
30年 7月 14日(壬子)…… 986
30年 7月 15日(癸丑)…… 987
30年 7月 16日(甲寅)…… 988
30年 7月 20日(戊午)…… 989
30年 7月 23日(辛酉)…… 991
30年 8月 11日(戊寅)…… 993
30年 8月 16日(癸未)…… 994
30年 9月 10日(丁未)…… 995
30年 9月 10日(丁未)…… 997
30年 9月 18日(乙卯)…… 999
30年 10月 28日(乙未) …… 1000
30年 11月 19日(乙卯) …… 1001

30年 11月 19日(乙卯) …… 1003
30年 12月 14日(庚辰) …… 1004
30年 12月 17日(癸未) …… 1005

1705年

31年 1月 25日(庚申)…… 1008
31年 2月 6日(庚午) …… 1009
31年 2月 6日(庚午) …… 1014
31年 2月 10日(甲戌)…… 1016
31年 3月 11日(乙巳)…… 1018
31年 3月 15日(己酉)…… 1019
31年 4月 17日(庚辰)…… 1021
31年 閏 4月 3日(丙申) …… 1023
31年 閏 4月 6日(己亥) …… 1024
31年 5月 18日(庚辰)…… 1025
31年 7月 13日(甲戌)…… 1026
31年 9月 5日(丙寅) …… 1030
31年 9月 6日(丁卯) …… 1032
31年 9月 7日(戊辰) …… 1033
31年 9月 9日(庚午) …… 1035
31年 9月 12日(癸酉)…… 1036
31年 9月 17日(戊寅)…… 1037
31年 9月 17日(戊寅)…… 1039
31年 10月 28日(戊午) …… 1041
31年 11月 13日(癸酉) …… 1042
31年 11月 20日(庚辰) …… 1044
31年 11月 20日(庚辰) …… 1045
31年 12月 6日(丙申)…… 1046

1706年

32年 1月 10日(己巳)…… 1048
32年 2月 29日(戊午)…… 1049
32年 3月 3日(辛酉) …… 1050
32年 3月 8日(丙寅) …… 1051
32年 4月 6日(癸巳) …… 1052
32年 4月 13日(庚子)…… 1053
32年 7月 12日(丁卯) …… 1054
32年 7月 26日(辛巳)…… 1055
32年 8月 5日(庚寅) …… 1056
32年 8月 22日(丁未)…… 1058
32年 8月 24日(己酉)…… 1059
32年 8月 27日(壬子)…… 1060
32年 9月 4日(己未) …… 1061
32年 9月 15日(庚午)…… 1062
32年 9月 16日(辛未)…… 1063
32年 11月 24日(戊寅) …… 1064

1707年

33年 1月 21日(乙亥)…… 1068
33年 1月 21日(乙亥)…… 1069
33年 1月 28日(壬午)…… 1070
33年 2月 19日(壬寅)…… 1071
33年 2月 22日(乙巳)…… 1072
33年 2月 29日(壬子)…… 1073
33年 3月 18日(辛未)…… 1074
33年 3月 18日(辛未)…… 1075
33年 3月 20日(癸酉)…… 1076
33年 3月 20日(癸酉)…… 1077
33年 3月 25日(戊寅)…… 1078
33年 4月 10日(壬辰)…… 1079
33年 4月 11日(癸巳)…… 1080
33年 5月 12日(癸亥)…… 1081
33年 5月 25日(丙子)…… 1082
33年 5月 28日(己卯)…… 1085
33年 7月 16日(丙寅)…… 1087
33年 7月 21日(辛未)…… 1088
33年 8月 20日(己亥)…… 1089
33年 10月 18日(丙申) …… 1090
33年 10月 27日(乙巳) …… 1092
33年 11月 3日(辛亥)…… 1093

1708年

34年 1月 10日(戊午)…… 1096
34年 1月 24日(壬申)…… 1097
34年 2月 20日(丁酉)…… 1101
34年 2月 26日(癸卯)…… 1102
34年 3月 3日(庚戌) …… 1103
34年 3月 22日(己巳)…… 1104
34年 閏3月 11日(戊子) …… 1105
34年 5月 12日(丁亥)…… 1106
34年 8月 5日(戊申) …… 1107
34年 11月 10日(壬午) …… 1108
34年 12月 14日(丙辰) …… 1110
34年 12月 14日(丙辰) …… 1111
34年 12月 27日(己巳) …… 1112

1709年

35年 1月 6日(戊寅) …… 1114
35年 1月 6日(戊寅) …… 1115
35年 1月 10日(壬午)…… 1116
35年 1月 15日(丁亥)…… 1117
35年 2月 15日(丙辰)…… 1120
35年 2月 21日(壬戌)…… 1121
35年 3月 11日(壬午)…… 1123
35年 4月 2日(癸卯) …… 1124
35年 4月 2日(癸卯) …… 1125
35年 4月 12日(癸丑)…… 1127
35年 4月 18日(己未)…… 1128
35年 4月 20日(辛酉)…… 1129
35年 4月 21日(壬戌)…… 1130
35年 6月 23日(壬戌)…… 1132
35年 7月 5日(甲戌) …… 1134
35年 7月 21日(庚寅)…… 1136
35年 7月 29日(戊戌)…… 1138
35年 8月 16日(甲寅)…… 1139
35年 12月 16日(壬子) …… 1140
35年 12月 21日(丁巳) …… 1141

1710年

36年 3月 16日(辛巳)…… 1144
36年 5月 6日(庚午) …… 1145
36年 5月 27日(辛卯)…… 1146
36年 5月 28日(壬辰)…… 1147
36年 6月 12日(丙午)…… 1148
36年 6月 12日(丙午)…… 1149
36年 閏7月 23日(丙辰) …… 1151
36年 8月 16日(戊寅)…… 1153
36年 8月 17日(己卯)…… 1155
36年 8月 26日(戊子)…… 1156
36年 8月 26日(戊子)…… 1158
36年 12月 21日(辛巳) …… 1159

1711年

37年 2月 7日(丙寅) …… 1162
37年 2月 9日(戊辰) …… 1163
37年 2月 9日(戊辰) …… 1164
37年 2月 14日(癸酉)…… 1165
37年 2月 21日(庚辰)…… 1166
37年 4月 24日(壬午)…… 1168
37年 4月 26日(甲申)…… 1169
37年 6月 29日(丁亥)…… 1170
37年 7月 6日(癸巳) …… 1171
37年 7月 15日(己巳)…… 1173
37年 7月 18日(乙巳)…… 1174
37年 7月 28日(乙卯)…… 1175
37年 8月 16日(癸酉)…… 1176
37年 8月 16日(癸酉)…… 1177
37年 11月 25日(庚戌) …… 1178
37年 12月 18日(壬申) …… 1179
37年 12月 19日(癸酉) …… 1180

1712年

38年 1月 17日(辛丑)…… 1184
38年 1月 26日(庚戌)…… 1185

38年 1月 28日(壬子)…… 1186
38年 2月 5日(戊午) …… 1187
38年 4月 4日(丙辰) …… 1188
38年 5月 20日(壬寅)…… 1189
38年 6月 14日(丙寅)…… 1190
38年 6月 20日(壬申)…… 1191
38年 7月 3日(甲申) …… 1194
38年 7月 4日(乙酉) …… 1195
38年 8月 11日(壬戌)…… 1196
38年 9月 4日(甲申) …… 1198
38年 12月 3日(壬子)…… 1199
38年 12月 10日(己未) …… 1200
38年 12月 14日(癸亥) …… 1201

1713年

39年 1月 9日(丁亥) …… 1204
39年 2月 2日(庚戌) …… 1205
39年 3月 7日(甲申) …… 1206
39年 3月 21日(戊戌)…… 1207
39年 4月 9日(丙辰) …… 1209
39年 4月 18日(乙丑)…… 1210
39年 5月 26日(壬寅)…… 1211
39年 閏 5月 1日(丁未) …… 1212
39年 閏 5月 1日(丁未) …… 1213
39年 閏 5月 1日(丁未) …… 1214
39年 閏 5月 12日(戊午) …… 1215
39年 閏 5月 24日(庚午) …… 1216
39年 6月 9日(甲申) …… 1217
39年 8月 11日(丙戌)…… 1218
39年 8月 24日(己亥)…… 1219
39年 9月 8日(壬子) …… 1220
39年 9月 15日(己未)…… 1221
39年 9月 15日(己未)…… 1222
39年 9月 15日(己未)…… 1224
39年 9月 24日(戊辰)…… 1225
39年 9月 25日(己巳)…… 1226
39年 9月 30日(甲戌)…… 1228
39年 10月 5日(己卯)…… 1229
39年 10月 7日(辛巳)…… 1231
39年 10月 7日(辛巳)…… 1233
39年 10月 10日(甲申) …… 1234
39年 11月 13日(丁巳) …… 1235
39年 11月 13日(丁巳) …… 1236
39年 11月 18日(壬戌) …… 1237
39年 11月 20日(甲子) …… 1238
39年 11月 20日(甲子) …… 1240
39年 11月 20日(甲子) …… 1242
39年 11月 25日(己巳) …… 1244
39年 12月 18日(辛卯) …… 1245

1714年

40年 3月 17日(戊午)…… 1248
40年 4月 21日(壬辰)…… 1251
40年 4月 21日(壬辰)…… 1252
40年 4月 22日(癸巳)…… 1253
40年 6月 5日(乙亥) …… 1254
40年 6月 19日(己丑)…… 1256
40年 6月 22日(壬辰)…… 1259
40年 8月 5日(甲戌) …… 1260
40年 8月 16日(乙酉)…… 1261
40年 8月 18日(丁亥)…… 1262
40年 8月 19日(戊子)…… 1263
40年 9月 10日(戊申)…… 1264
40年 9月 11日(己酉)…… 1265
40年 9月 19日(丁巳)…… 1266
40年 9月 23日(辛酉)…… 1269
40年 10月 3日(辛未)…… 1271
40年 11月 30日(戊辰) …… 1272

1715年

41年 1月 17日(甲寅)…… 1274
41年 1月 27日(甲子)…… 1275
41年 3月 21日(丁巳)…… 1276

41年 3月 25日(辛酉)…… 1277
41年 4月 2日(丁卯) …… 1279
41年 4月 6日(辛未) …… 1281
41年 4月 6日(辛未) …… 1282
41年 4月 20日(乙酉)…… 1283
41年 6月 8日(壬申) …… 1284
41年 6月 21日(乙酉)…… 1285
41年 7月 1日(甲午) …… 1287
41年 7月 2日(乙未) …… 1288
41年 7月 13日(丙午)…… 1289
41年 7月 14日(丁未)…… 1290
41年 7月 19日(壬子)…… 1291
41年 9月 6日(戊戌) …… 1292
41年 9月 9日(辛丑) …… 1293
41年 9月 10日(壬寅)…… 1294
41年 9月 11日(癸卯)…… 1295
41年 10月 7日(己巳)…… 1297
41年 10月 30日(壬辰) …… 1298
41年 10月 30日(壬辰) …… 1299
41年 10月 30日(壬辰) …… 1300
41年 11月 29日(辛酉) …… 1303
41年 12月 20日(壬午) …… 1304
41年 12月 22日(甲申) …… 1305
41年 12月 22日(甲申) …… 1306

1716年

42年 1月 1日(壬辰) …… 1308
42年 1月 5日(丙申) …… 1309
42年 1月 6日(丁酉) …… 1310
42年 1月 10日(辛丑)…… 1311
42年 1月 22日(癸丑)…… 1312
42年 1月 22日(癸丑)…… 1313
42年 1月 22日(癸丑)…… 1314
42年 1月 22日(癸丑)…… 1316
42年 1月 22日(癸丑)…… 1319
42年 1月 23日(甲寅)…… 1321
42年 1月 26日(丁巳)…… 1322
42年 1月 26日(丁巳)…… 1324
42年 1月 29日(庚申)…… 1327
42年 2月 2日(癸亥) …… 1328
42年 2月 3日(甲子) …… 1329
42年 2月 3日(甲子) …… 1330
42年 3月 3日(甲午) …… 1331
42年 閏3月 9日(己巳) …… 1333
42年 閏3月 10日(庚午) …… 1335
42年 閏3月 20日(庚辰) …… 1336
42年 4月 21日(庚戌)…… 1337
42年 5月 6日(乙丑) …… 1338
42年 5月 10日(己巳)…… 1339
42年 5月 11日(庚午)…… 1340
42年 6月 22日(庚戌)…… 1341
42年 6月 22日(庚戌)…… 1342
42年 7月 25日(壬午)…… 1343
42年 9月 1日(丁巳) …… 1344
42年 9月 6日(壬戌) …… 1345
42年 9月 8日(甲子) …… 1347
42年 9月 8日(甲子) …… 1348
42年 9月 8日(甲子) …… 1349
42年 9月 14日(庚午)…… 1350
42年 10月 13日(己亥) …… 1351
42年 10月 18日(甲辰) …… 1352
42年 11月 12日(戊辰) …… 1354

1717年

43年 1月 18日(癸酉)…… 1358
43年 2月 12日(丁酉)…… 1359
43年 2月 26日(辛亥)…… 1360
43年 7月 23日(乙亥)…… 1361
43年 7月 23日(乙亥)…… 1362
43年 7月 27日(己卯)…… 1363
43年 10月 3日(癸未)…… 1364
43年 11月 日(辛亥) …… 1365
43年 12月 13日(癸巳) …… 1367
43年 12月 13日(癸巳) …… 1368

43年 12月 22日(壬寅) …… 1369

1718年

44年 1月 6日(乙卯) …… 1372
44年 1月 7日(丙辰) …… 1374
44年 1月 7日(丙辰) …… 1376
44年 1月 7日(丙辰) …… 1377
44年 1月 7日(丙辰) …… 1379
44年 3月 4日(癸丑) …… 1380
44年 3月 8日(丁巳) …… 1381
44年 3月 18日(丁卯)…… 1382
44年 6月 21日(戊戌)…… 1384
44年 12月 21日(甲子) …… 1385
44年 12月 25日(戊辰) …… 1387

1719年

45年 2月 7日(庚戌) …… 1390
45年 2月 8日(辛亥) …… 1391
45年 2月 20日(癸亥)…… 1392
45年 3月 2日(乙亥) …… 1393
45年 3月 3日(丙子) …… 1394
45年 3月 16日(己丑)…… 1395
45年 4月 3日(乙巳) …… 1396
45年 4月 3日(乙巳) …… 1397
45年 4月 22日(甲子)…… 1398
45年 4月 22日(甲子)…… 1399
45年 6月 7日(戊申) …… 1400
45年 6月 18日(己未)…… 1402
45年 6月 25日(丙寅)…… 1403
45年 6月 25日(丙寅)…… 1404
45年 8月 28日(戊辰)…… 1405
45年 9月 13日(壬午)…… 1406
45年 9月 20日(己丑)…… 1407
45年 9月 25日(甲午)…… 1408
45年 9月 25日(甲午)…… 1409
45年 9月 25日(甲午)…… 1410
45年 10月 17日(丙辰) …… 1411
45年 10月 17日(丙辰) …… 1412
45年 10月 18日(丁巳) …… 1413
45年 10月 22日(辛酉) …… 1414
45年 10月 24日(癸亥) …… 1415
45年 10月 29日(戊辰) …… 1416
45年 11月 18日(丙戌) …… 1417

1720年

46年 2月 8日(乙巳) …… 1420
46年 2月 21日(戊午)…… 1421
46年 5月 11日(丁丑)…… 1422
46年 5月 12日(戊寅)…… 1423
46年 5月 28日(甲午)…… 1424
46年 6月 22日(丁巳)…… 1425

1696年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一月 二十三日 庚辰

○ 兵曹判書徐文重所啓, 辛亥年, 以年凶, 濟州式年貢馬, 因上敎停止矣. 今年歲貢馬上送事, 今當分付, 何以爲之乎? 常年貢馬, 則六百六十八匹, 式年又加百匹矣. 上曰, 式年貢馬, 依辛亥年例, 停止, 可也.【以上司僕謄錄】

❖ 숙종 22년(1696) 병자년 1월 23일(경진)

□ 서문중(徐文重)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에 세공마(歲貢馬)를 상송(上送)하도록 분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병조판서(兵曹判書) 서문중(徐文重)이 아뢰기를, "신해년(辛亥年: 현종 12년, 1671)에 흉년이 들어 제주(濟州) 식년(式年)의 공마(貢馬)를 멈추라는 상교(上敎)가 있었습니다. 올해 세공마(歲貢馬)를 올려 보내는 일을 지금 마땅히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통 해의 공마(貢馬)는 668필인데, 식년에는 100필을 더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식년의 공마는 신해년의 전례에 따라 멈추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사복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연흉, 공마, 세공마, 식년, 상년, 서문중.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二月 二日 戊子

○ 李思永, 以司饔院官員, 以監饍提調意啓曰, 濟州上年十一月朔, 封進柑子, 今日始爲來到本院, 開坼計數, 則其中乳柑四閣所入五百六十介, 全數腐傷, 無一完全者, 雖出於越海發船, 經月遲滯之致, 莫重進上, 如是朽敗, 誠爲可駭, 其在事體, 殊甚未安. 封進官濟州牧使李益泰, 推考, 何如? 傳曰, 允.

❖ 숙종 22년(1696) 병자년 2월 2일(무자)

□ 제주(濟州)에서 봉진한 감자(柑子)가 다 썩었으니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태(李益泰)를 추고하기를 청하는 사옹원의 계

○ 이사영(李思永)이 사옹원의 관원으로 감선(監饍)[537]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지난해 11월 초하루에 감자(柑子)를 봉진(封進)하였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본원(사옹원)에 내도해서, 개탁(開坼)하여 수를 헤아려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유감(乳柑)은 4합에 560개가 들어있었는데, 전부 썩고 상처를 입어서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바다 너머에서 배를 띄워 내 온 것이지만, 달을 넘겨 지체한 것입니다. 진상(進上)은 막중한 일인데 이와 같이 썩어버린 것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 사태에 있어서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봉진한 관리인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태(李益泰)를 추문하여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감자, 유감, 제주목사, 이익태.

537) 감선(監膳): 궁중에서 반찬에 관한 일을 맡아 하던 구실아치.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二月 二日 戊子

○ 金世翊, 以禮曹言啓曰, 濟州牧使封進去十一月令唐柚子, 來初三日薦進之意, 入啓矣. 卽接奉常寺牒報, 則宗廟所封五十五箇內, 稍完八箇, 四十七箇, 沒數腐傷, 永昭殿所封五箇內, 稍完一箇, 四箇亦皆腐傷云, 取來看品, 則果如所報. 曾前如此之時, 以各殿所封進上, 移送該寺, 薦進後, 有內入之規, 今亦依此例, 以進上所封中, 令司饔院準數移送該寺, 以爲明日薦進後內入事, 分付, 何如? 傳曰, 允.

❖ 숙종 22년(1696) 병자년 2월 2일(무자)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한 당유자에 대해 종묘 등에 진상할 것을 봉상시(奉常寺)에 이송하여 천진(薦進)한 후 들이기를 청하는 예조의 계

○ 김세익(金世翊)이 예조(禮曹)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封進)한 지난해 11월령(月令)의 당유자(唐柚子)가 초 3일에야 천진(薦進)[538]할 뜻으로 입계(入啓)하였습니다. 곧 접한 봉상시(奉常寺) 첩보(牒報)를 보니, '종묘(宗廟)에 봉진한 55개 가운데, 조금 완전한 것[稍完]이 8개이고, 47개는 모두 썩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영소전(永昭殿)에 봉진한 5개 가운데, 조금 완전한 것은 1개이고, 4개 또한 모두 썩고 상처를 입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가지고 와서 잘 살펴보니, 과연 보고한 바 그대로였습니다. 일찍이 전에 이와 같은 때에는 각전(各殿)으로 봉진한 진상을 해시(該寺: 봉상시)에 이송하여 천진한 뒤에, 궁중으로 들이는 규식에 따르는데, 이번 또한 이 예에 따라 진상하여 봉진한 것 가운데, 사옹원(司饔院)의 준수(準數)에 따라 해시로 이송하고, 날이 밝아서 천진한 뒤에 궁중으로 들이는 일로 분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당유자(唐柚子).

538) 천진(薦進): 인재나 진상품 따위를 추천하거나 골라내어 쓰이게 함.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三月 三日 己未

○ 南九萬所啓, 爲邦之道, 德刑不可偏廢, 德固當先, 刑亦不可忽也. 古語曰, 日食修德, 月食修刑之道, 顧不重歟? 東晉時, 法不行於豪右, 而只行於小民, 史譏江左之衰靡不振, 實由於此, 而今則雖在小民, 法亦不行, 强盜之移刑曹, 旣多不服矣. 且近來盜鑄錢者, 又不勝其多, 故自捕盜廳, 譏察捕得, 取服後移送刑曹, 則刑曹終無取服之勢, 而罪人供饋, 皆出賑廳, 其弊亦不些矣. 按獄之道, 雖貴詳審, 無限滯獄, 亦豈爲好生之德乎? 向者嶺南殺人罪人, 移來京獄, 在囚者, 至於八九年, 故累有議大臣之事, 近來滯獄之弊, 多類此. 刑曹判書閔鎭長入侍, 下敎申飭, 使之從速處決, 何如? 上曰, 刑杖之酷, 無如捕廳, 故多不待刑訊而就服, 至或有誣服者. 刑曹刑杖, 本不嚴猛, 故罪囚之移刑曹者, 例多變辭, 賊人曾有百餘次受刑, 而卒不死, 定配濟州者, 刑曹之難於取服, 如此. 杖法旣如許, 則刑官亦何可任意低昂之耶? 然而速決之意, 則申飭, 可也. ……. 【以上備局謄錄】

❖ 숙종 22년(1696) 병자년 3월 3일(기미)

□ 진청(賑廳)에 폐를 끼치는 일을 없애기 위해 체옥(滯獄)을 신속하게 처결하는 일에 대하여 논의함

○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서 임금이 덕을 베풀거나 형벌을 내리는 것 어느 하나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덕을 베푸는 것은 진실로 마땅히 먼저 해야 하고, 형을 내리는 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 말에 이르기를, '일식(日食)에는 덕행을 닦아야 하고, 월식(月食)에는 형벌을 잘 처리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다.' 라고 하였으니, 어찌 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동진(東晉) 때 법이 세력이 강한 사람[豪右]에게 행하지 않고, 단지 미천한 백성에게만 행해져서 사기(史譏)와 강좌(江左)가 쇠잔하여 쓰러져서 활발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에 말미암았습니다. 지금 비록 소민(小民)이라 할지라도 법 또한 시행되지 않으면, 강도(强盜)가 형조(刑曹)에 옮겨지게 되는데, 이미 많이 불복(不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주전(鑄錢)을 훔친 사람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청(捕盜廳)에서부터 수소문하여 살펴서 잡아들여서, 사실대로 말하도록 이끌어 낸 뒤 형조로 이송해야 합니다. 형조는 사실대로 말하도록 끌어내는 형세를 끝내야 합니다. 죄인의 공궤(供饋)는 다 진청(賑廳)에서 내주도록 하는 폐단 또한 적지 않습니다.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도리는 비록 귀중

히 여기는 것이 상세히 하고 신중히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이 없이 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게 하는 것 또한 어찌 호생지덕(好生之德)[539]이라 하겠습니까? 영남(嶺南)으로 향하는 살인 죄인은 경옥(京獄)으로 옮겨 오게 하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8,9년에 이르고 있으므로, 여러 번 대신들과 의논해야 합니다. 근래에 옥(獄)에 오랫동안 갇혀 있게 한 폐단은 흔히 이와 같았습니다. 형조판서(刑曹判書) 민진장(閔鎭長)이 들어가서 임금을 뵐 때, 신칙(申飭)으로 하교(下敎)했으니, 그로 하여금 속히 처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형장(刑杖)의 가혹함은 포청(捕廳)과 같은 곳이 없다. 그러므로 많이 형벌을 쓸 것도 없이 취복(就服)하는 것입니다. 혹 무복(誣服)[540]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형조의 형장은 본래 엄하고 용감하지 못하므로, 죄인을 형조로 옮기는 것은 예에 따라 먼저 한 말을 이리저리 바꿔는 것이 많다. 적인(賊人)은 일찍이 백여 차례에 걸쳐 형벌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죽지 않기도 한다. 제주(濟州)에 정배(定配)된 자는 형조에서 취복(取服)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와 같은데 장법(杖法)도 이미 이와 같다. 형관(刑官) 또한 어떻게 임의로 낮추었다 높였다 하겠는가? 그러나 빨리 처리하라는 뜻을 신칙(申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비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정배.

539) 호생지덕(好生之德): 사형에 처할 죄인을 특사하여 살려 주는 제왕의 덕.
540) 무복(誣服): 죄도 없는데 하는 수 없이 형(刑)에 복역함.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三月 十四日 庚午

○ 李思永,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牧使李益泰遞任進上馬三匹, 今已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而其中騮台星雄馬, 有喉腫病, 似是中路所傷, 今已膿潰, 內廐立養之後, 使之看護調治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22년(1696) 병자년 3월 14일(경오)

□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체임진상마 가운데 병든 것을 내구(內廐)에서 간호조치하겠다는 사복시의 계

○ 이사영(李思永)이 사복시의 관원으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태(李益泰)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541] 3필이 지금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말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別單)으로 작성하여 들였는데, 그 가운데 유태성(騮台星) 웅마(雄馬)[542]가 후종병(喉腫病: 코에 종기가 생긴 병)으로 오는 도중에 상해를 입은 듯합니다. 지금 이미 종기가 곪아 터져서 내구(內廐: 내사복시)[543]에 입양시킨 뒤에, 그로 하여금 간호하고 조치해야 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익태, 체임진상마, 유태성, 웅마.

---

541)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벼슬아치가 벼슬을 갈아 낼 때 진상하는 말. 목사 체임 진상마와 현감 체임 진상마 등이 있었음.

542) 유태성마(騮台星馬): 본래의 털색에 갈기, 꼬리, 네 다리가 검은 말을 유마(騮馬)라 하고, 이마에 흰 털의 점이 마치 별처럼 박힌 말을 태성(台星) 또는 태성마(台星馬)라 함. 웅마(雄馬)는 수말을 이름.

543) 내구(內廐): 1) 내사복시. 조선 시대에 임금의 말과 수레를 관리하던 관아. 2) 내구마. 조선 시대에 내사복시에서 기르던 말.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五月 八日 癸亥

○ 司憲府照目, 濟州牧使李益泰矣, 上年十二月朔封進乳柑, 全數腐傷, 無一完全者, 莫重進上, 如是朽敗, 其在事體, 殊甚未安, 罪杖八十贖, 奪告身三等, 私罪. 啓功減一等.

❖ 숙종 22년(1696) 병자년 5월 8일(계해)

□ 제주목사 이익태(李益泰)의 죄에 대해 조율하여 보고하는 사헌부의 조목

○ 사헌부 조목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태(李益泰)가 지난해 12월 초하루에 유감(乳柑)을 봉진하였는데, 전부 썩어 손상을 입어서,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진상은 막중한 일인데, 이와 같이 썩어서 손상을 입은 일의 실체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죄로서 곤장 80속(贖)에 처하고, 탈고신(奪告身)[544] 3등(等)에 해당하는데, 사죄(私罪)[545]이니 공으로 1등급을 감하였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익태, 유감.

544) 탈고신(奪告身): 수직첩. 죄를 범한 벼슬아치로부터 직첩을 빼앗아 거두어들이던 일.
545) 사죄(私罪): 1) 개인이 사사로이 저지른 죄. 2) 관리가 사인(私人)과 관련하여 저지른 죄.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五月 十二日 丁卯

○ 濟州牧使書目, 判官盧三錫, 賑救之事, 全不掛念, 民怨載路, 不得已罷出事. 又書目, 本島三邑飢民壯弱, 竝一萬一千一百三十九口, 自正月至四月晦日, 分賑事.

❖ 숙종 22년(1696) 병자년 5월 12일(정묘)

□ 진구(賑救)에 대해 전혀 괘념하지 않아 백성들의 원망을 산 제주판관(濟州判官) 노삼석(盧三錫)의 파출, 본도의 삼읍 기민에게 분진(分賑)했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에, '판관(判官) 노삼석(盧三錫)이 진구(賑救)[546]하는 일을 전혀 머릿속에 두지 않았다가, 민간의 원성이 길거리에 널려 있게 되었으니 직무를 그만두게 할 일'이라고 하였다. 또 서목(書目)에, '이 섬의 세 고을[三邑]의 굶주린 백성들을 장약(壯弱)을 아울러서 11,139인에, 정월부터 4월까지 그믐날에 나누어 진휼할 일.'이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서목, 판관, 노삼석, 진구.

546) 진구(賑救): 진휼(賑恤). 흉년을 당하여 가난한 백성을 도와줌.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五月 十二日 丁卯

○ 有政 …… 以李碩臣爲濟州判官, 以李相殷爲庇安縣監 …… 以李後晟爲濟州牧使, 以鄭復先爲平壤判官 …….

❖ 숙종 22년(1696) 병자년 5월 12일(정묘)

□ 이석신(李碩臣)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이후성(李後晟)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중략〉 이석신(李碩臣)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중략〉 이후성(李後晟)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고, 정복선(鄭復先)을 평양참판(平壤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이후성, 제주목사.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五月 十四日 己巳

○ 謝恩, 戶曹佐郎鄭復先, …… 濟州牧使李後晟 …….

❖ 숙종 22년(1696) 병자년 5월 14일(기사)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후성(李後晟) 등이 사은함

○ 호조좌랑(戶曹佐郎) 정복선(鄭復先),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후성(李後晟)가 사은(謝恩)[547]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후성.

547) 사은(謝恩): 사은례(謝恩禮)라고도 함. 1)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히 여겨 사례하는 예. 2) 조선시대 관직을 제수 받은 자, 가계(加階)나 겸직을 받은 자, 휴가·출사의 명을 받은 자 등이 공복을 갖추어 왕에게 숙배(肅拜)하고 치사(致謝)하는 일.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五月 十五日 庚午

○ 有政. …… 以趙明彬爲敦寧參奉, 以金重三爲濟州牧使 …….

❖ 숙종 22년(1696) 병자년 5월 15일(경오)

□ 김중삼(金重三)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중략〉 조명빈(趙明彬)을 돈령참봉(敦寧參奉)으로, 김중삼(金重三)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김중삼, 제주목사.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五月 十六日 辛未

○ 謝恩, 舒川郡守尹德駿 …… 濟州判官李碩臣, …….

❖ 숙종 22년(1696) 병자년 5월 16일(신미)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석신(李碩臣) 등이 사은함

○ 사천군수(舒川郡守) 윤덕준(尹德駿), 〈중략〉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석신(李碩臣)이 사은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이석신.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五月 十七日 壬申

○ 謝恩, 殷栗縣監高緯奎, …… 濟州牧使金重三, …….

❖ 숙종 22년(1696) 병자년 5월 17일(임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중삼(金重三) 등이 사은함

○ 사은례(謝恩禮)가 있었는데, 은율현감(殷栗縣監) 고위규(高緯奎),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중삼(金重三)이 사은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김중삼.

❖ 康熙 三十五年 丙子 六月 五日 己丑

○ 司僕寺啓曰, 濟州判官盧三錫遞任, 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而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以上司僕寺謄錄】

❖ 숙종 22년(1696) 병자년 6월 5일(기축)

□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진상마 3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며 내구(內廐)에서 입양하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 노삼석(盧三錫)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들이고, 내구(內廐: 내사복시)에 입양하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노삼석, 진상마, 내구.

❖ 康熙 三十五年 丙子 六月 二十七日 辛亥

○ 禮曹啓曰, 今此王世子嘉禮陳賀方物中, 濟州牧使李益敬封進大殿弓帒筒箇四部, 結弓獐皮十張, 織毛馬粧一部代, 結弓獐皮五張, 及世子宮織毛馬粧一部代結弓獐皮五張等物, 今始上來. 依例看品, 則其中弓帒二部, 黍皮起紋, 頗似不精, 而海外之邑, 異於內地, 雖不得不一併捧入, 莫重方物, 不能致察之責, 在所難免. 當該封進官牧使李益敬, 推考, 何如? 傳曰, 允.【以上禮曹謄錄】

❖ 숙종 22년(1696) 병자년 6월 27일(신해)

□ 봉진한 방물을 살피지 않은 이익태(李益泰)의 추고를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왕세자 가례(嘉禮: 예식)를 진하(陳賀)하는 방물(方物) 가운데,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태(李益泰)[548]가 대전(大殿)에 봉진한 궁대(弓帒)와 통개(筒箇) 4부, 활에 매는 노루 가죽〔結弓獐皮〕 10장, 직모마장(織毛馬粧) 1부를 대신하는, 활에 매는 노루 가죽〔結弓獐皮〕 5장, 그리고 세자궁(世子宮) 직모마장(織毛馬粧) 1부를 대신하는, 활에 매는 노루 가죽〔結弓獐皮〕 5장 등의 물품이 지금 비로소 올라왔습니다. 전례에 따라 잘 살펴보니, 그 가운데 궁대(弓帒) 2부, 기장[黍], 가죽[皮], 기문(起紋) 등이 자못 정결하지 않은 듯합니다. 바다 밖 고을은 내지에 있는 고을과는 다르니 부득불 한꺼번에 봉입(捧入)하지만 막중한 방물에 있어서 살피는 책임을 잘하지 못한 것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봉진관(封進官)인 목사 이익태를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했다.【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익태, 궁대, 통개, 결궁장피, 직모마장, 봉진관.

548) 『비변사등록』 원문에는 李益敬으로 쓰여 있는 듯하나, 李益泰의 잘못이기에 바로 잡음. 2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음.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七月 七日 辛酉

○ 下直, 慶基殿參奉南極杓, …… 濟州判官李碩臣, …….

❖ 숙종 22년(1696) 병자년 7월 7일(신유)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석신(李碩臣) 등이 하직함

○ 경기전(慶基殿) 참봉(參奉) 남극표(南極杓)와 〈중략〉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석신(李碩臣) 등이 참석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이석신.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七月 十三日 丁卯

○ 院啓, 韓重爀等事【措辭見上】濟州乃海中雄鎭也. 必以已經閫帥之人, 擇差以送, 意有所在. 新除授牧使金重三, 素乏莅歷, 且有訾議, 除目之下, 未厭人望. 請濟州牧使金重三遞差. 引嫌而退. 一字差誤, 元非大段, 事在旣往, 何必追嫌? 請司諫李宜昌出仕. 答曰, 不允. 處置事, 依啓.

❖ 숙종 22년(1696) 병자년 7월 13일(정묘)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중삼(金重三)을 체차(遞差)하기를 청한 사간(司諫) 이의창(李宜昌)의 출사를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한중혁(韓重爀) 등의 일【뒤섞인 말로 앞에서 보임】을 아뢰었다. "제주(濟州)는 바다 가운데에 있는 웅대하고 험한 진(鎭)입니다. 반드시 이미 곤수(閫帥)[549]의 경력을 거친 사람을 간택하여 보내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 목사로 제주한 김중삼(金重三)은 본래 경력이 매우 얕고, 또한 헐뜯는 의논이 있는 자로서, 제수한 절목에는 인망(人望)에 차지 아니합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중삼을 체차(遞差)[550]하기를 청하옵니다. 인혐(引嫌)[551]하고 물러갔는데, 한 글자를 잘못 쓴 것은 원래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인데, 하필이면 소급하여 혐의(嫌疑)할 것입니까? 사간(司諫) 이의창(李宜昌)을 벼슬길에 나가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처치(處置)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김중삼.

---

549) 곤수(梱帥/閫帥): 조선 시대에 평안도와 함경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통틀어 이르던 말.
550) 체차(遞差): 관리의 임기가 차거나 부적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이르던 말.
551) 인혐(引嫌): 1)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뉘우침. 2) 벼슬아치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느낌.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七月 十四日 戊辰

○ 院啓, 韓重爀等事. 濟州牧使金重三遞差事【措辭見上】答曰, 勿煩.

❖ 숙종 22년(1696) 병자년 7월 14일(무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중삼(金重三)의 체차를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司諫院)에서 한중혁(韓重爀) 등의 일,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중삼(金重三)을 체차(遞差)하는 일【뒤섞인 말로 앞에서 보임】 등을 아뢰었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김중삼.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七月 十五日 己巳

○ 院啓, 韓重爀等事. 濟州牧使金重三遞差事【措辭見上】 答曰, 勿煩.

❖ 숙종 22년(1696) 병자년 7월 15일(기사)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중삼(金重三)의 체차를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司諫院)에서 한중혁(韓重爀) 등의 일,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중삼(金重三)을 체차(遞差)하는 일【뒤섞인 말로 앞에서 보임】 등을 아뢰었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김중삼.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七月 十六日 庚午

○ 院啓, 韓重嫺等事. 濟州牧使金重三遞差事【措辭竝見上】 答曰, 勿煩.

❖ 숙종 22년(1696) 병자년 7월 16일(경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중삼(金重三)의 체차를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한중혁(韓重嫺) 등의 일,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중삼(金重三)을 체차(遞差)하는 일【뒤섞인 말로 아울러 앞에서 보임】 등을 아뢰었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김중삼.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七月 二十四日 戊寅

○ 吏曹啓曰, 濟州牧使金重三除授之後, 臺論請遞, 雖已停啓, 物議旣以莅歷不足爲言, 則不宜仍令赴任, 今姑改差, 何如? 傳曰, 允.

❖ 숙종 22년(1696) 병자년 7월 24일(무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중삼(金重三)의 개차(改差)를 청하는 이조의 계

○ 이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중삼(金重三)을 제수(除授)한 뒤에, 대론(臺論)이 벼슬자리를 갈기를 청했는데, 비록 이미 논계를 정지했으나, 이미 경력이 매우 얕아서 부족하다고 말하며 이러쿵저러쿵 논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부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선 개차(改差)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김중삼.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七月 二十四日 戊寅

○ 有政. 吏批, 以趙持恒 爲司僕僉正, …… 柳漢明爲濟州牧使, …….

❖ 숙종 22년(1696) 병자년 7월 24일(무인)

□ 유한명(柳漢明)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조지항(趙持恒)을 사복첨정(司僕僉正)으로 삼고, 〈중략〉 유한명(柳漢明)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유한명, 제주목사.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七月 二十八日 壬午

○ 禁府啓曰, 正刑罪人東燁·東樑等同生東彦, 當爲緣坐爲奴, 而東彦, 曾以他罪, 定配於濟州牧, 仍其配所, 本牧爲奴之意, 敢啓. 傳曰, 知道.【以上禁府謄錄】

❖ 숙종 22년(1696) 병자년 7월 28일(임오)

□ 연좌제에 의해 이동언(李東彦)을 제주목(濟州牧)의 노비로 삼겠다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형벌이 정해진 죄인 동엽(東燁)·동량(東樑)[552] 등의 동생(同生) 동언(東彦)은 당연히 연좌되어 사내종이 된 사람입니다. 동언은 일찍이 다른 죄를 지어, 제주목(濟州牧)에 정배(定配)되었는데, 그대로 그 배소(配所)에서 본목(本牧: 제주목)의 사내종으로 삼게 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이상은 금부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동엽, 동량, 동언, 제주목, 정배.

552) 동엽·동량: 이들의 이름은 이동엽(李東燁)과 이동량(李東梁)이었는데, 이 당시에 비석을 깨뜨린 일로 인해 벌을 받아서, 적몰(籍沒)하고 사내종으로 삼았음.

❖ 康熙 三十五年 丙子 八月 十五日 戊寅

○ 下直, 旌義縣監申鉦.

❖ 숙종 22년(1696) 병자년 8월 15일(무인)

□ 정의현감(旌義縣監) 신임(申鉦)이 하직함

○ 정의현감(旌義縣監) 신임(申鉦)이 임금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신임.

❖ 康熙 三十五年 丙子 八月 十五日 戊寅

○ 司憲府啓曰, 請進士金泰潤邊遠定配【措語見上】 臣卽伏見備忘記, 有持平申鉎特遞之敎, 繼而有旌義縣監除授之命, 臣聞來, 不勝驚惑之至. 其原疏姑未得見, 雖未知措語之如何, 而蓋因侵斥兩大臣之故, 有此過中之擧, 此非所以慰安大臣, 鎭定朝著之道也. 鉎之疏論, 雖或有過激謬妄之言, 在聖上含弘之道, 固宜優容, 以示天地之大度, 而今乃摧折太過, 斥逐於窮溟絶島, 不少假借, 豈不貽駭瞻聆, 有關言路乎? 請還收前持平申鉎旌義縣監特除之命. 新除授掌令權愔, 時在忠淸道韓山地, 持平柳重民, 時在京畿楊根地, 持平趙泰耉, 時在忠淸道韓山地. 請竝斯速乘馹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숙종 22년(1696) 병자년 8월 15일(무인)

□ 신임(申鉎)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제수한 명령을 거두어 달라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진사(進士) 김태윤(金泰潤)을 변방 멀리 정배하기를【뒤섞인 말로 앞에서 보임】 청합니다. 신(臣)이 즉시 엎드려 비망기(備忘記)를 살펴보니, 지평(持平) 신임(申鉎)을 특별히 체임(遞任)한다는 교지가 있고, 이어서 정의현감(旌義縣監)을 제수(除授)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신(臣)이 듣건대, 당혹함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원소(原疏)는 아직 얻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무릇 양대신(兩大臣: 좌의정과 우의정)을 침해하고 배척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지나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신들을 위안하는 도리가 아니니, 조정을 진정(鎭定)하는 도리를 보여야 합니다. 임(鉎)의 소론(疏論: 조족조목 따져 논함)은 비록 혹 과격(過激)하고 요망(謬妄)한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상께서는 함홍지도(含弘之道)를 보여야 합니다. 진실로 우대하고 용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천지와 같은 큰 도량을 보이십시오. 지금 너무 지나치게 꺾어서 궁명절도(窮溟絶島)로 물리쳐 쫓으면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니, 어찌 위태롭지 않고 놀랍지 않으며, 언로(言路)에 관계됨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전 지평 신임을 정의현감으로 특별히 제수한다는 명령을 도로 거두십시오. 새로 임명한 장령 권성(權愔)은 지금 충청도 한산(韓山) 땅에 있고, 지평 유중민(柳重民)은 지금 경기 양근(楊根) 땅에 있고, 지평 조태구(趙泰耉)는 지금 충청도 한산 땅에 있다하니, 모두 신속히 역마를 타서 올라올 일을 하유하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下諭)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신임, 정의현감.

❖ 康熙 三十五年 丙子 八月 十五日 戊寅

○ 丙子八月十九日玉堂請對及入直承旨引見入侍時, 旌義縣監申鉦, 移差鏡城判官, 判官宋廷奎, 遞付京職事, 下敎.

❖ 숙종 22년(1696) 병자년 8월 15일(무인)

□ 정의현감(旌義縣監) 신임(申鉦)을 경성판관(鏡城判官)으로 옮겨서 차정함

○ 병자년(숙종 22년, 1696) 8월 19일에 옥당(玉堂: 홍문관)에서 청대(請對)[553]하는 것과 승지(承旨)를 입직(入直)[554]하게 하여 신하를 만나보고 임금을 뵐 때, 정의현감(旌義縣監) 신임(申鉦)을 경성판관(鏡城判官)으로 옮겨서 차정하고, 판관(判官) 송정규(宋廷奎)를 경직(京職)으로 체부(遞付)하는 일을 하교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신임.

553) 청대(請對): 신하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임금을 면대(面對)하여 국사를 아뢰기를 청하던 일.
554) 입직(入直): 관아에 들어가 차례로 숙직함. 또는 차례로 당직함.

❖ 康熙 三十五年 丙子 八月 二十三日 丙午

○ 是日行政. 吏批, 以柳之發爲知義禁, 趙大壽爲副修撰, 朴鐔爲堤川縣監, 李宜昌爲弼善, 李光佐爲正言, 朴龍見爲掌樂主簿, 沈權爲承旨, 金戩爲陜川郡守, 徐文在爲河陽縣監, 鄭佶爲寶城郡守, 洪受漸爲執義, 李健命爲修撰, 尹誠教爲寧海府使, 林濩爲輔德, 趙相愚爲副提學, 旌義縣監愼聖源, 仍任事承傳, 兼持平李宜晩·李坦·尹星駿, 竝單付, 兼監察金始慶單付, 金時傑爲兼弼善, 權尙游爲說書, 李健命爲兼文學, 尹星駿爲兵曹佐郎.【以上出吏曹政望單子】

❖ 숙종 22년(1696) 병자년 8월 23일(병오)

□ 정의현감(旌義縣監) 신성원(愼聖源)을 잉임(仍任)하게 함

○ 이날 정사(政事)를 행하였다. 이비(吏批)에 "유지발(柳之發)을 지의금(知義禁)으로, 조대수(趙大壽)를 부수찬(副修撰)으로, 박심(朴鐔)을 제천현감(堤川縣監)으로, 이의창(李宜昌)을 필선(弼善)으로, 이광좌(李光佐)를 정언(正言)으로, 박용견(朴龍見)을 장악주부(掌樂主簿)로, 심권(沈權)을 승지(承旨)로, 김재(金戩)를 협천군수(陜川郡守)로, 서문재(徐文在)를 하양현감(河陽縣監)으로, 정길(鄭佶)을 보성군수(寶城郡守)로, 홍수점(洪受漸)을 집의(執義)로, 이건명(李健命)을 수찬(修撰)으로, 윤성교(尹誠敎)를 영해부사(寧海府使)로, 임호(林濩)를 보덕(輔德)으로, 조상우(趙相愚)를 부제학(副提學)으로, 정의현감(旌義縣監) 신성원(愼聖源)에게는 잉임(仍任)할 일이라고 하교(下敎)하고, 겸지평(兼持平)은 이의만(李宜晩)·이단(李坦)·윤성준(尹星駿) 등을 모두 단부(單付)로, 겸감찰(兼監察)은 김시경(金始慶)으로 단부(單付)하고, 김시걸(金時傑)을 겸필선(兼弼善)으로, 권상유(權尙游)를 설서(說書)로, 이건명(李健命)을 겸문학(兼文學)으로, 윤성준(尹星駿)을 병조좌랑(兵曹佐郎)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이조정망단자[555]에서 나옴】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신성원.

---

555) 망단자(望單子): 삼망(三望)을 기록한 단자.

❖ 康熙 三十五年 丙子 九月 十四日 丁卯

○ 禁府, 李顯命·成揆憲定配單子. 傳曰, 絶島定配. 同禁李顯命濟州牧, 成揆憲珍島郡, 定配. 啓.

❖ 숙종 22년(1696) 병자년 9월 14일(정묘)

□ 이현명(李顯命)을 제주목(濟州牧)으로 정배함

○ 의금부에서, 이현명(李顯命)·성규현(成揆憲)[556]을 정배(定配)하는 단자(單子)를 올렸다. 전교하기를, "외딴섬[絶島]으로 정배하라"라고 하였다. 같이 구금된 이현명은 제주목(濟州牧)으로, 성규현은 진도군(珍島郡)으로 정배하겠다고 아뢰었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이현명, 제주목.

556) 이 당시에 이현명(李顯命)과 성규현(成揆憲)은 상의하여 상소를 올린 죄로 벌을 받았음.

1697年

❖ 康熙 三十六年 丁丑 三月 九日 庚申

○ 金宇杭, 以賑恤廳言啓曰, 本廳, 以江都米一萬石, 以左右兩站船隻載送事, 榻前定奪矣. 卽今都民, 飢饉方急, 不可不及時分濟, 而水站船隻數少, 勢難一時盡運, 曾在壬子·丁卯兩年濟州運穀之時, 以兩南各鎭浦兵船, 次次替運矣. 今此江都運穀, 一日爲急, 且與越海遠送有異, 依前日已行之例, 以江華及京畿水營各鎭浦所在兵船, 限畢運間, 與兩站船隻, 同力載運, 宜當, 以此分付, 何如? 傳曰, 允.

❖ 숙종 23년(1697) 정축년 3월 9일(경신)

□ 강화(江華) 수영(水營) 등의 병선(兵船) 등을 동원하여 강도(江都)의 곡물을 운송하라고 분부할 것을 청하는 진휼청의 계

○ 김우항(金宇杭)이 진휼청의 말로써 아뢰기를, "본청(本廳: 진휼청)은 강도(江都: 江華)의 쌀 1만 섬으로 좌우(左右) 두 참(站)의 배에 실어서 보내는 일에 대해서 임금의 자리 앞에서 재결(裁決)을 받았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은 굶주림이 바야흐로 급박하여, 때에 맞춰 나누어 〈식량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참(水站)557)의 배는 그 수가 적어서 형세는 한꺼번에 다 실어 나르기가 어렵습니다. 일찍이 임자와 정묘 두 해에 제주(濟州)로 곡식을 실어 나를 때는, 양남(兩南: 호남과 영남)의 각 진(鎭)과 포(浦)의 병선을 차례대로 갈아가면서 운반하였습니다. 이번 이 강도(江都)에서 운반하는 곡식은 하루가 급합니다. 또한 바다를 넘어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라 다릅니다. 전날 이미 행한 예에 따라 강화와 경기 수영(水營)의 각 진과 포에 있는 병선을 곡식 운반을 기한으로 하고, 더불어 양참(兩站)의 배는 함께 협력하여 실어서 나르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로써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진휼.

---

557) 수참(水站): 전국 각지의 세곡(稅穀)을 서울까지 배로 운반할 때, 중간에 배를 쉬게 하던 곳.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나루와 조운선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였음.

❖ 康熙 三十六年 丁丑 三月 十一日 壬戌

○ 晝講時, 同知事崔錫鼎所啓, 頃者新除授濟州敎授陳晩宰, 稱有親病, 呈狀本曹, 此是越海之任, 旣有親病, 則亦不可强令赴任, 故啓遞矣. 卽者全羅監司, 移關本曹, 以爲陳晩宰, 方在咸平地, 距海邊不過數三日程, 除朝辭赴任, 爲可云. 前呈所志, 似聞渠親知在京之人, 不問於渠, 誤知而徑呈云. 陳晩宰, 勿遞, 仍令赴任, 而遠地人馬, 上京有弊, 使之除朝辭, 何如? 上曰, 依爲之, 而中間呈狀, 非渠所知云. 令該曹査覈治罪, 本曹堂上, 亦難免不察之失, 推考, 可也.【以上朝報】

❖ 숙종 23년(1697) 3월 11일(임술)

□ 제주교수(濟州敎授) 진만재(陳晩宰)를 바로 부임(赴任)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주강(晝講)을 할 때, 동지사(同知事) 최석정(崔錫鼎)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새로 제수(除授)한 제주교수(濟州敎授) 진만재(陳晩宰)는 아버지가 병을 앓고 있다고 설명하고 본조(本曹)에 소장을 내기를, '이번에 바다를 넘어 부임하게 되는데, 이미 아버지가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였으니, 억지로 부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체(啓遞)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전라감사(全羅監司)가 본조(本曹)에 올린 관문(關文)에, '진만재는 바야흐로, 함평(咸平) 땅에 있어서, 바닷가까지 거리가 불과 3일 일정이니, 조사(朝辭)[558]를 생략하고 부임하게 하여도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전에 올린 소지(所志)는 서울에 있는 저들 친지들이 그(渠: 진만재)에게 묻지도 않고 잘못 알고 경솔하게 올린 것 같다고 합니다. 진만재를 갈지 말고, 그대로 부임하게 하십시오. 먼 땅의 사람과 말은 서울로 올라오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그로 하여금 조사를 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러나 중간 소장을 올린 것은 그(渠)가 아는 바가 아니라고 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사정을 자세히 조사하여 밝히고 벌을 주게 하고, 본조 당상 또한 살피지 않은 과실을 면하기 어려우니, 추문하여 고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조보[559]에 의함】

---

558) 조사(朝辭): 사조(辭朝). 새로 임명된 관리가 부임하거나 외국의 사신이 떠나기에 앞서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던 일.

559) 조보(朝報):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고 서사(書寫)하여 반포하던 관보. 조칙, 장주(章奏), 조정의 결정 사항, 관리 임면, 지방관의 장계(狀啓)를 비롯하여 사회의 돌발 사건까지 실었음.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교수, 진만재.

❖ 康熙 三十六年 丁丑 三月 二十七日 戊寅

○ 刑曹啓目, 私奴生伊, 持雨傘掠過之際, 至於觸犯至敬之地事, 不下一杖, 直爲遲晩, 結案取招後, 依律處斷, 何如? 啓律雖如此, 情有可恕, 特爲從重決杖徒配. 又照目, 前郡守李受益矣, 濟州敎授陳晩宰, 一家在京之人, 不問於渠, 晩宰家有八十雙親, 決難赴任之意, 書給所志於吏曹書吏, 其誤知而徑呈, 罪杖八十贖, 奪告身, 三等私罪. 啓功減一等.

❖ 숙종 23년(1697) 정축년 3월 27일(무인)

□ 제주교수(濟州敎授) 진만재(陳晩宰)를 바로 부임(赴任)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형조 계목에, '사노(私奴) 생이(生伊)는 우산(雨傘)을 가지고 지나갈 때, 지극히 엄숙한 곳에서 피해야 할 일을 저질렀는데도 곤장 1대도 때리지 않고 다만 지만(遲晩)[560]하였으니 결안(結案: 결정한 문서)하고 따져 물은 뒤에 법률에 따라 처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율(啓律: 刑律)은 비록 이와 같으나 그 사정이 용서할 만하여 특별히 종중결장(從重決杖)[561]하여 귀양 보냈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조목(照目)에, '전 군수 이수익(李受益)는 제주교수(濟州敎授) 진만재(陳晩宰)의 일가(一家)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데도 그들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진만재의 집에는 여든 살이 된 양친[雙親]이 있어서 결단코 부임하기가 어려운 뜻으로, 이조서리(吏曹書吏)에게 소지(所志)를 작성해서 냈는데, 잘못 알고서 올린 것이기에 곤장 80대의 죄를 주고 탈고신(奪告身) 3등하고, 사죄(私罪)이니 공으로 한 등급을 감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교수, 진만재.

---

560) 지만(遲晩): 예전에 죄인이 자기 죄를 인정할 때에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이르던 말.
561) 종중결장(從重決杖): 죄가 두 가지 이상일 때 그 무거운 죄를 따라 곤장을 치는 것.

❖ 康熙 三十六年 丁丑 閏 三月 三日 癸未

○ 引見時, 戶曹判書李世白所啓, 卽者右承旨金世翊疏批, 有被災尤甚處, 編配罪人參酌移配之敎, 本府今當稟旨擧行, 而第平安道則罪人配所, 多是淸北, 咸鏡道則北道定配者亦多, 皆是尤甚被災之邑, 今難區別, 下詢大臣而處之, 何如? 上曰, 移配者太多, 承旨之言, 亦有所見, 故使之參酌移配矣, 大臣之意, 何如? 右議政崔錫鼎曰, 大臣當初所達, 槪出於深軫災邑民弊之意, 而適緣赦令, 旣有諸道放未放, 啓聞諸到後 榻前稟處之敎矣. 卽今諸道狀聞, 幾盡未[校][來]到, 而黃海道及濟州狀聞, 不來云. 濟州則路遠, 雖未及上來, 海西啓聞, 來到後稟定, 仍爲參酌移配, 何如? 世白曰, 不但世翊之言, 外意亦皆如此矣. 上曰, 二十餘人, 一時移配之際, 羅卒輩, 不無作弊之端, 禁府放未放公事, 旣已一時稟定下敎矣. 黃海道啓本上來後, 諸道放未放啓本稟定時, 此事一體稟處, 可也. 上曰, 罪人放未放啓聞, 遠道皆已上來, 而黃海道, 以近道, 尙未上送, 事極稽緩, 該道監司, 推考.

❖ 숙종 23년(1697) 정축년 윤 3월 3일(계미)

□ 이세백(李世白) 등이 입시하여 재해가 심한 서북(西北)에 죄인을 이배(移配)하는 문제 등을 논의함

○ 신하들을 불러서 만나볼 때, 호조판서(戶曹判書) 이세백(李世白) 아뢰기를, "지금 우승지(右承旨) 김세익(金世翊)의 소비(疏批)[562]가 있었습니다. 피해가 더욱 심한 곳은 편배(編配)된 죄인을 참작하여 이배하라는 전교가 있어서, 본부(本府)가 지금 당장 품지(稟旨)를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안도는 죄인의 배소가 청북(淸北)[563]이 많습니다. 함경도는 북도(北道: 함경북도) 정배자가 또한 많습니다. 모두 피해가 더욱 심한 고을입니다. 지금은 구별하기가 어려우니,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배자가 너무 많으니, 승지의 말에도 진실로 소견이 있으므로 그로 하여금 참작하여 이배하라. 대신의 뜻은 어떤가?"라고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아뢰기를, "대신은 마땅히 처음부터 소달(所達)하기를, 대개 재해를 입은 고을의 백성들 폐단을 깊이 진념(軫念)하시는 뜻을 내어서, 마침 내린 사면령(赦免令)으로 인해 이윽고 제도(諸道)의 방미방(放未放) 계문(啓聞)이 있게 되니 여러 곳에서

562) 소비(疏批): 상소(上疏)에 대하여 임금이 내리던 대답.
563) 청북(淸北): 평안도의 청천강 이북의 땅을 이르는 말.

도착한 뒤에 어전에서 품처(稟處)하라는 교지(敎旨)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도의 장문이 거의 다 도착했으나, 황해도와 제주의 장문만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제주는 먼 길이라서, 비록 아직 미처 도착하지 않았으나, 해서(海西: 황해도)의 계문(啓聞)이 도착한 뒤에 여쭈어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대로 참작하여 이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세백이 아뢰기를, "비단 이세익의 말이 아니라 하고, 밖의 뜻[外意: 세상 사람들의 뜻]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20여 인이 일시에 이배할 때, 나졸 무리들이 폐단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다. 의금부 방미방 공사는 이미 일시에 품정하여 하교하였다. 황해도의 계본(啓本)이 올라온 뒤에, 제도의 방미방 계본을 품정(稟定)할 때에, 이 일을 일체로 품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죄인을 풀어주고, 풀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계문은 멀리 있는 도(道)에서도 모두 이미 올라왔다. 황해도는 가까운 도로서 아직도 미처 올려 보내지 않았는데, 일이 매우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해도(該道)의 감사(監司)를 추고(推考)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장문.

❖ 康熙 三十六年 丁丑 閏 三月 十四日 甲午

○ 禁府, 罪人張希載, 大靜縣, 減死, 絶島圍籬安置. 啓.

❖ **숙종 23년(1697) 정축년 윤 3월 14일(갑오)**

□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 장희재(張希載)를 감사(減死)하여 절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겠다고 아룀**

○ 의금부에서 죄인 장희재(張希載)를 대정현(大靜縣)으로 사형을 감면하여 외딴섬에 위리안치시키는 계를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장희재, 대정현.

❖ 康熙 三十六年 丁丑 閏 三月 十五日 乙未

○ 禁府都事尹道敎, 罪人張希載圍籬安置事, 大靜縣出去.

❖ 숙종 23년(1697) 정축년 윤 3월 15일(을미)

□ 윤도교(尹道敎)가 죄인 장희재(張希載)를 위리안치(圍籬安置)하러 나감

○ 의금부의 도사(都事) 윤도교(尹道敎)가 죄인 장희재(張希載)를 위리안치한 일로 대정현(大靜縣)으로 나갔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장희재, 대정현.

❖ 康熙 三十六年 丁丑 閏 三月 十五日 乙未

○ 晝講時, …… 侍讀官李寅炳所啓, 近來國綱解弛, 百隷怠職, 將至於莫可收拾之境, 誠爲寒心矣. 昨者禁府都事二人, 以大靜罪人押去事, 互相推諉, 至於旣參坐起, 旋呈不仕狀而退去, 越海之行, 誰肯樂赴, 而一時差役, 亦爲厭避, 此而置之, 則將何以立紀綱警群下乎? 似當有別樣處置之道矣. 上曰, 昨見禁府草記, 李箕禎所爲可駭, 不可汰去而止, 拿問處之. …….【以上朝報】

❖ 숙종 23년(1697) 정축년 윤 3월 15일(을미)

□ 죄인(罪人) 압거(押去)를 기피했던 이기정(李箕禎) 등의 처벌을 논의함

○ 주강(晝講)할 때에, 〈중략〉 시독관(侍讀官) 이인병(李寅炳)이 아뢰기를, "근래에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백례(百隷: 백관)들이 직무 수행에 태만하여 장차 수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진실로 한심한 일입니다. 어제는 의금부의 도사(都事) 2인이 대정현의 죄인을 압송하여 가는 일은 서로 미루기만 하고 이미 좌기(坐起)[564]에 참여하기에 이르고, 정소(呈訴)를 돌리다가 출사(出仕)하지 않고서 물러가서, 바다를 넘어 가는 것은 누가 기꺼이 응하겠습니까마는 일시에 차역(差役)하는 것 또한 싫어서 피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이를 방치하면, 곧 장차 어떻게 기강(紀綱)을 세우고 뭇 신하들의 마음을 일깨우겠습니까? 마땅히 별도로 처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의금부의 초기(草記)를 보았는데, 이기정(李箕禎)이 한 것은 해괴한 일이어서, 태거(汰去)하는 데 그칠 수가 없으니 잡아다 국문하여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하략〉.【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

564) 좌기(坐起): 관아의 으뜸 벼슬에 있던 이가 출근하여 일을 시작함.

❖ 康熙 三十六年 丁丑 閏 三月 十八日 戊戌

○ 李世白曰, 頃因儒臣所達, 有禁府都事兩人拿問之命矣. 其間曲折, 與儒臣所達, 自有不然者, 故惶恐敢達. 大槪, 禁府差役之規, 雖使曹司當之, 自前亦或有非曹司而差遣之規, 小臣筮仕之初, 爲禁府都事, 故詳知本府之事矣. 今番濟州罪人押去都事之差【缺數行】顚倒之失, 臣亦稍存事體, 草記請汰, 而欲以成壽雄, 改差送之, 則壽雄以情勢難安, 呈旬請遞, 故以此意, 移文吏曹, 代送他都事矣. 箕禎則有處事顚倒之失, 而壽雄則實無可罪之事矣. …….【以上燼餘】

❖ 숙종 23년(1697) 정축년 윤 3월 18일(무술)

□ 죄인(罪人) 압거(押去)를 기피했던 이기정(李箕禎) 등의 처벌을 논의함

○ 이세백(李世白)이 아뢰기를, "근래에 유신(儒臣: 홍문관 벼슬아치)의 소달(所達)에, 의금부 도사(都事) 2인을 붙잡아다가 심문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그 간의 곡절(曲折)과 유신이 소달한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므로 황공하게도 감히 주달한 것입니다. 대개 의금부에서 차역(差役)하는 규식은 비록 조사(曹司)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였습니다. 전부터도 혹 조사(曹司)가 하지 않고 차견(差遣)하는 규식이 있었는데, 소신(小臣)이 벼슬에 오른 처음에는, 의금부 도사가 했으므로, 본부(本府)의 일을 자세히 알았습니다. 이번 제주(濟州) 죄인을 압송하여 가는 도사를 【몇 자 빠짐】[565], 신(臣) 또한 조금이나마 일의 체면을 두었고, 초기(草記)로 파면할 것을 청하였는데, 성수웅(成壽雄)으로서 개차(改差)하여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곧 성수웅은 처지가 불안하다 하여, 정순(呈旬)[566]하여 벼슬자리를 그만두겠다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뜻을 이조(吏曹)에 이문(移文)라고, 다른 도사를 대신하여 보냈습니다. 이기정(李箕禎)은 곧 일을 전도되게 한 잘못이 큽니다. 이수웅은 곧 진실로 죄줄 만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의금부도사, 이기정.

---

565) 글자가 빠져 번역을 생략함.
566) 정순(呈旬): 사임 원서를 10일에 한 번씩 제출함.

❖ 康熙 三十六年 丁丑 四月 十三日 壬戌

○ 【缺】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 領議政柳尙運, 行左參贊李世華, 禮曹判書申琓, 漢城府左尹李濡, 韓城君李基夏, 行副提學徐宗泰, 江華留守李頤命, 左副承旨李思永, 司諫李益壽, 掌令柳重茂, 記事官朴彙登, 假注書韓永徽, 記事官李宜顯·趙泰一. …… 基夏曰, 小臣待罪濟州牧使時, 目見海島形勢, 雖以濟州言之, 非陸地無以資生, 對馬島形勢, 亦必如濟州, 姑以初非約條之意, 先爲言及, 從後更定年限, 似好矣. …….

❖ 숙종 23년(1697) 정축년 4월 13일(임술)

□ 인견 시, 한성군(韓城君) 이기하(李基夏)가 제주목사(濟州牧使) 재임 시의 제주(濟州)에 관한 일을 아룀

○ 【畊점】때,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당상(備局堂上)을 불러서 볼 때, 영의정(領議政) 유상운(柳尙運), 행자참찬(行左參贊) 이세화(李世華), 예조판서(禮曹判書) 신완(申琓), 한성부(漢城府) 좌윤(左尹) 이유(李濡), 한성군(韓城君) 이기하(李基夏), 행부제학(行副提學) 서종태(徐宗泰), 강화유수(江華留守) 이이명(李頤命),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사영(李思永), 사간(司諫) 이익수(李益壽), 장령(掌令) 유중무(柳重茂), 기사관(記事官) 박휘등(朴彙登), 가주서(假注書) 한영휘(韓永徽), 기사관(記事官) 이의현(李宜顯)·조태일(趙泰一) 등이 들어가서 임금을 뵈었다. 〈중략〉 이기하가 아뢰기를, "소신(小臣)은 제주목사(濟州牧使) 때의 일로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 섬의 형세를 직접 보았는데, 오직 제주로 말할 것 같으면 육지의 도움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마도 형세도 반드시 제주(濟州)와 같아서 진실로 처음에는 조약을 맺을 뜻이 없어서, 먼저 말로 하고 나중에 다시 연한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기하.

❖ 康熙 三十六年 丁丑 四月 二十三日 壬申

○ 洪受疇,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放未放啓本, 旣已啓下, 依他道例, 待後日稟定於榻前乎? 不敢循例回啓, 敢此仰稟. 傳曰, 明日疏決時, 稟定.

❖ 숙종 23년(1697) 정축년 4월 23일(임신)

□ 제주목(濟州牧) 방미방계본(放未放啓本)의 품정에 대해 묻는 의금부의 계

○ 홍수주(洪受疇)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방미방계본(放未放啓本)이 이미 임금의 재가를 받았고, 다른 도의 전례에 따라, 훗날을 기다려서 임금의 자리 앞에서 여쭈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관례에 따라 회계(回啓)하지 못했으니, 감히 이것을 우러러 여쭙습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일 소결(疏決)할 때 품정(稟定)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 방미방계본.

❖ 康熙 三十六年 丁丑 四月 二十五日 甲戌

○ 義禁府啓曰, 濟州圍籬安置罪人金德遠, 康津薪智島圍籬安置罪人睦來善, 竝撤圍籬, 陸地安置事, 承傳啓下矣. 依例發遣府都事二員,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以上禁府謄錄】

❖ 숙종 23년(1697) 정축년 4월 25일(갑술)

□ 도사(都事)를 보내 김덕원(金德遠) 등을 육지로 안치(安置)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 위리안치 죄인 김덕원(金德遠), 강진(康津) 신지도(薪智島) 위리안치 죄인 목래선(睦來善) 등은 모두 위리를 없애고, 육지에 안치하는 일로, 승전(承傳)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전례에 따라 부사(府使)와 도사(都事) 2원(員)을 보내어 배소에서 압송해 올 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이상은 금부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위리안치죄인, 김덕원.

❖ 康熙 三十六年 丁丑 七月 六日 甲申

○ 有政. 以宋墁爲禮曹正郞 …… 李龍徵爲旌義縣監. …….

❖ 숙종 23년(1697) 정축년 7월 6일(갑신)

□ 이용징(李龍徵)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송만(宋墁)을 예조정랑(禮曹正郞)으로, 〈중략〉 이용징(李龍徵)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이용징, 정의현감.

❖ 康熙 三十六年 丁丑 七月 七日 乙酉

○ 有政. 以柳虎徵爲司憲府監察 …… 李漢章爲旌義縣監 …….

❖ 숙종 23년(1697) 정축년 7월 7일(을유)

□ 이한장(李漢章)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유호징(柳虎徵)을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로, 〈중략〉. 이한장(李漢章)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이한장, 정의현감.

❖ 康熙 三十六年 丁丑 七月 二十五日 癸卯

○ 沈枰,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出來船運年例進上馬八匹, 御乘馬二十匹, 歲貢馬一百〈匹〉合一百二十八匹內, 到康津病留一匹, 到羅州病留一匹, 到振威逃逸一匹, 到井邑病留一匹, 到本寺病一匹, 合五匹計除, 實納馬一百二十三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又以內乘, 以提調意啓曰, 日昨內廐坐馬一匹, 不意殞斃, 殊極驚愕. 其在警飭之道, 該掌官吏等, 不可全然無責, 以懲日後, 當該內乘推考, 養理等, 自本寺參酌治罪, 何如? 傳曰, 允.

❖ 숙종 23년(1697) 정축년 7월 25일(계묘)

□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진상마에 대한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심평(沈枰)은 사복시의 관원으로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출발한 배로 운반된,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어승마(御乘馬) 20필, 세공마(歲貢馬) 1백 필 등을 합한 128필 안에, 강진(康津)에 이르러서 1필이 병들어 남고, 나주(羅州)에 이르러서 1필이 병들어 남고, 진위(振威)에 이르러서 1필이 도망가서 잃고, 정읍(井邑)에 이르러서 1필이 병들어 죽고, 본시(本寺)에 도착하여 1필이 병이 들어서, 모두 5필이 계산에서 제외되니, 실제로 들인 말은 123필입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인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또한 내승(內乘)[567]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며칠 전에 내구(內廐: 내사복시)에 타는 말[坐馬] 1필이 뜻하지 않게 죽었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경칙(警飭)하는 도리에 있어서 해장(該掌)의 관리(官吏)들을 전연 견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뒷날의 징계로 삼기 위해서 당해(當該) 내승(內乘) 추고(推考)하고 기르고 관리하는 등의 일은 본시(本寺: 사복시)에서 참작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연례진상마, 어승마, 세공마.

---

567) 내승(內乘): 1) 고려 시대에 궁중의 승여(乘輿)를 맡아보던 관아. 사복시 외에 궁중에 따로 둠. 2) 조선 시대에 내사복시에 속하여 말과 수레를 맡아보던 벼슬아치.

❖ 康熙 三十六年 丁丑 八月 十六日 癸亥

○ 吏批, 兼司憲府持平三單, 李允文·朴見善·洪重周, …… 以宋來栢爲濟州敎授 …….【以上朝報】

❖ 숙종 23년(1697) 정축년 8월 16일(계해)

□ 송내백(宋來栢)을 제주교수(濟州敎授)에 제수함

○ 이비(吏批)가 있었다. 겸사헌부(兼司憲府) 지명(持平)을 삼단(三單: 삼망)[568]으로 하여 이윤문(李允文)·박견선(朴見善)·홍중주(洪重周)를 삼았다. 〈중략〉 송내백(宋來栢)을 제주교수(濟州敎授)로 삼았다. 〈하략〉.【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송내백, 제주교수.

568) 삼단(三單)=삼망(三望): 벼슬아치를 발탁할 때 공정한 인사 행정을 위하여 세 사람의 후보자를 임금에게 추천하던 일.

❖ 康熙 三十六年 丁丑 八月 十九日 丙寅

○ 下直, 鏡城判官黃一夏, 旌義縣監李漢章, 加德僉使黃汝楫.

❖ 숙종 23년(1697) 정축년 8월 19일(병인)

□ 정의현감(旌義縣監) 이한장(李漢章) 등이 하직함

○ 경성판관(鏡城判官) 황일하(黃一夏), 정의현감(旌義縣監) 이한장(李漢章), 가덕첨사(加德僉使) 화여집(黃汝楫) 등이 임금에게 작별인사를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이한장.

❖ 康熙 三十六年 丁丑 八月 二十三日 庚午

○ 傳曰, 大臣·備局堂上引見時, 大司憲鄭載禧所啓, 圍籬安置罪人睦來善, 當坤聖出宮之日, 身爲大臣, 袖手傍觀, 其甘心樂禍之狀, 昭不可掩, 而實錄考出之請, 視爲應行之典, 不恭不敬之語, 指敎奉使之臣, 滔天之罪, 可勝誅哉? 至於, 語犯翼陵, 措意絶悖, 爲人臣子者, 是可忍耶? 當初屛裔, 已是失刑, 尙今偃息, 輿憤愈激, 玆因疏決之擧, 遽有撤圍之命, 今日曠蕩之典, 適足爲大憝之幸, 王法至嚴, 公議難遏. 請還收睦來善撤圍籬移陸之命. 上曰, 勿煩. 又所啓, 頃者疏決, 有濟州安置罪人金德遠撤圍籬移陸〈地〉之命, 臣不勝慨然之至. 夫庚申逆獄, 情節狼藉, 文案明白, 實是天地之所不容, 神人之所共討, 而德遠, 陰懷庇黨之私, 敢倡護逆之計, 恣意幻弄, 欺眩天聽, 凶言絶悖, 有不忍聞, 伸理逆黨, 屠戮勳臣, 終至翻獄而後已. 論以先治黨與之法, 則德遠之罪, 固宜首伏嚴誅, 而投畀之律, 失之太寬, 輿情憤鬱, 固已久矣. 今因曠蕩之擧, 遽施適輕之典, 揆以王法, 豈容如是? 請還收金德遠撤圍籬安置陸地之命. 上曰, 勿煩. …….

❖ 숙종 23년(1697) 정축년 8월 23일(경오)

□ 김덕원(金德遠)을 위리(圍籬)를 없애고 육지에 안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전교하기를, "대신과 비국당상을 불러서 만나보겠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 볼 때, 대사헌(大司憲) 정재희(鄭載禧)가 아뢰기를, "위리안치 죄인 목래선(睦來善)은 마땅히 왕후[坤聖]가 궁을 나가는 날에, 자신이 대신이면서 곁에서 보기만 하고,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화난(禍難)을 좋아하는 실상이 분명하여 숨길 수 없는데도 『실록(實錄)』을 살펴 내자는 청을 응당 거행하는 예전(禮典)으로 보고서 감히 불공(不恭)하고 불경(不敬)한 말을 했습니다. 지교(指敎)하고 사명을 받드는 신하로서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지었으니 어찌 다 주벌(誅伐)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서 익릉(翼陵)[569]을 범했으니, 조의(措意)가 몹시 모질고 패악합니다. 남의 신자(臣子)가 된 자가 이런 짓을 차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변방으로 내친 것은 이미 커다란 실형(失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편안히 살고 있으니, 사람들의 울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죄수를 너그럽게 처결한 것으로 인해, 위리를 철거토록 한 명을 내렸습니다. 금일의 광탕지전(曠

569) 익릉(翼陵):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오릉의 하나. 숙종 원비 인경(仁敬) 왕후의 능.

蕩之典)[570]으로 알맞게 만족하여 아주 괘씸하고 얄미운 악인의 행운을 받았습니다. 왕법(王法)은 지극히 엄한 것이어서, 공의(公議)를 막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목래선의 위리를 없애고 육지로 옮기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소결(疏決)에 제주(濟州) 안치죄인 김덕원(金德遠)을 위리(圍籬)를 없애고 육지로 옮기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신(臣)은 매우 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경신역옥(庚申逆獄)[571]의 정절이 낭자(狼藉)하였습니다. 만일 문안이 명백하여 실로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되지 못할 것이요 신(神)과 사람들이 함께 쳐 없앨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덕원은 당을 비호하는 사사로움을 몰래 품고, 감히 역적을 비호하려 꾀하고, 마음대로 농간을 부렸습니다. 임금의 귀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 것을 기현(欺眩)하고, 흉악한 말이 몹시 모질고 패악하여,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역적의 무리를 변론하여 심리하고 훈신(勳臣)을 도륙하고 끝내는 옥사(獄事)를 뒤집은 이후에야 멈추는데 이르렀습니다. 먼저 당여(黨與)의 법으로 다스림으로 논한다면 김덕원의 죄는 진실로 마땅히 먼저 엄히 주살하는 벌을 내려야 하는데, 투비(投畀)[572]의 율(律)은 너무 관대(寬大)하여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여론이 울분에 젖어 있는 것이 진실로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광탕지거(曠蕩之擧)로 인해, 갑자기 가벼운 형전을 베풀었으니, 왕법(王法)으로 따져 봐도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김덕원을 위리를 없애고 육지에 안치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안치죄인, 김덕원.

570) 광탕지전(曠蕩之典): 대사(大赦) 또는 특사(特赦)의 은전.
571) 경신년(庚申年)은 1680년(숙종 6), 역옥(逆獄)은 역적 사건이나 반역 사건에 대한 옥사.
572) 투비(投畀): 죄인을 지정한 곳으로 귀양을 보내던 일.

❖ 康熙 三十六年 丁丑 九月 十日 丁亥

○ 備邊司啓曰, 大靜縣監金磬瓜滿之代, 因吏曹判書未及出仕, 尙未差出矣. 海外新迎吏卒, 久滯有弊, 宜有變通之道. 且得見京畿監司宋昌狀啓, 則楊州牧使李世弼, 身病甚重, 有難强令赴任云, 此時站上之役, 一日爲急, 不可等待其差復. 李世弼改差, 其代, 令該曹竝卽口傳差出, 催促下送, 何如? 傳曰, 允.

❖ 숙종 23년(1697) 정축년 9월 10일(정해)

□ 대정현감(大靜縣監)의 차출을 기다리는 이졸(吏卒)이 오래 지체하고 있으니 변통함이 마땅하다는 비변사(備邊司)의 계

○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대정현감(大靜縣監) 김경(金磬)의 임기가 차서 교대해야 하는데, 그 후임에 대해 이조판서(吏曹判書)가 아직 출사(出仕)하지 못하여 아직도 차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 밖에서 새로운 관리를 맞이하려는 이졸(吏卒)들이 오래도록 지체되어 폐단이 있으니 마땅히 변통하는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기감사(京畿監司) 송창(宋昌)의 장계를 보니, 양주목사(楊州牧使) 이세필(李世弼)이 자신의 병이 아주 심하여 강제로 부임하게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에 참상(站上)의 역(役)이 하루가 급하니, 병이 나아서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세필로 고쳐 차정하여 그를 대신하게 하여, 해조(該曹)로 하여금 모두 즉시 구전(口傳)하여 차출하고, 내려 보내게 재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김경.

❖ 康熙 三十六年 丁丑 九月 十日 丁亥

○ 吏曹口傳政事, 以宋廷奎爲楊州牧使, 李蔓興爲大靜縣監.

❖ 숙종 23년(1697) 정축년 9월 10일(정해)

□ 송정규(宋廷奎)를 제주목사(楊州牧使)에 제수함

○ 이조(吏曹)에서 구전정사(口傳政事)[573]하기를, "송정규(宋廷奎)를 제주목사(楊州牧使)로 삼고, 이만흥(李蔓興)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송정규, 제주목사, 이만흥, 대정현감.

573) 구전정사(口傳政事): 인사 행정 때, 후보자 세 사람 중 결정을 받아, 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에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구두로 명령을 받아 임명하는 것. 줄여서 '구전(口傳)'이라 약칭함.

❖ 康熙 三十六年 丁丑 十月 三日 庚戌

○ 大司諫李光夏, 獻納李寅炳, 正言李東馣啓曰, 臣等, 於昨早相會於闕下, 許出大靜縣監李蔓興之署經矣. 追聞蔓興, 時未肅謝, 而該曹下吏, 徑呈署單云, 署經之法, 雖無肅謝前後區別之規, 而待肅謝許署, 自是近例, 則此固出於下吏之做錯, 而臣等, 亦難免不察之失. 同僚, 旣以此引避, 何敢晏然而已乎? 請命遞斥臣等之職. 答曰, 勿辭, 退待物論.

❖ 숙종 23년(1697) 정축년 10월 3일(경술)

□ 숙사(肅謝)하지 않은 이만흥(李蔓興)에 대해 서경한 실수가 있었으므로, 체직해 주기를 청하는 이광하(李光夏) 등의 계

○ 대사간(大司諫) 이광하(李光夏), 헌납(獻納) 이인병(李寅炳), 정언(正言) 이동암(李東馣) 등이 아뢰기를, "신(臣)들은 어제 일찍이 권하(闕下: 임금의 앞)에서 서로 모였었는데, 대정현감(大靜縣監) 이만흥(李蔓興)을 서경(署經)[574]하여 벼슬길에 오르도록 허락했습니다. 추문(追聞)한 바에 따르면, 이만흥이 당시 사은숙배하지 않았는데도 해조(該曹)의 하리(下吏)가 경솔하게 서단(署單)을 올렸다고 합니다. 서경의 법에는 비록 사은숙배에 있어서 전후를 구별하는 규식이 없으나, 사은숙배를 기다려서 서경을 허락하는 것이 진실로 근례(近例)이니, 이는 진실로 하리(下吏)의 주착(做錯)[575]입니다. 그러나 신들 또한 살피지 않은 과실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동료가 이 때문에 물러나 회피하고 있으니, 어찌 감히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신 등의 직책을 체척(遞斥)[576]하라는 명령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서 물론(物論)을 기다리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이만흥.

---

574) 서경(署經): 1) 임금이 새 관원을 임명한 뒤에 그 성명, 문벌, 이력 따위를 써서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臺諫)에게 그 가부(可否)를 묻던 일. 2) 고을 원이 부임할 때에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고별하던 일.

575) 주착(做錯): 잘못인 줄 알면서 저지른 과실.

576) 체척(遞斥): 관리를 맡은 바 직임에서 갈아 내어 쫓던 일.

❖ 康熙 三十六年 丁丑 十月 五日 壬子

○ 備邊司啓曰, 大靜縣監瓜滿之代, 自本司啓稟差出矣. 聞新差縣監李蔓興, 身病極重, 不能起動云. 海外新延下人七月上來, 已至屢朔, 而新差之官, 實病如此, 有難等待其差復, 大靜縣監李蔓興, 罷黜, 其代差出, 催促赴任, 何如? 傳曰, 允.【備局謄錄】

❖ 숙종 23년(1697) 정축년 10월 5일(임자)

□ 이만흥(李蔓興)을 파출(罷黜)하고 후임자를 차출하여 부임하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대정현감(大靜縣監)이 임기가 차서, 그 대신으로 본사(本司: 비변사)에서 계품(啓稟)하여 차출(差出)하였습니다. 듣건대, 새로 차정된 현감(縣監) 이만흥(李蔓興)은 몸에 병이 생겨 극히 위중해서 기동(起動)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다 밖에서 신연(新延)[577]하는 하인이 7월에 올라온 지 이미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차정한 관리의 실제 병이 이와 같으니, 병이 도로 회복되기를 기다려서 벼슬길에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대정현감 이만흥을 그만두게 하고, 그를 대신하는 사람을 차출하여 재촉하여 부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비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이만흥.

---

577) 신연(新延): 도(道)나 군(郡)의 장교와 이속(吏屬)들이 새로 부임하는 감사(監司)나 수령을 그 집에 가서 맞아 오던 일.

❖ 康熙 三十六年 丁丑 十月 六日 癸丑

○ 備邊司啓曰, 大靜縣監瓜滿之代, 自本司啓稟差出矣, 聞新差縣監李蔓興, 身病極重, 不能起動云. 海外新延下人, 七月上來, 已至屢朔, 而新差之官, 實病如此, 有難等待其差復, 大靜縣監李蔓興, 罷黜, 其代, 差出後催促赴任, 何如? 傳曰, 允. …….

❖ 숙종 23년(1697) 정축년 10월 6일(계축)

□ 병이 위중한 이만흥(李蔓興)을 개차(改差)하고 후임을 차출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대정현감(大靜縣監)이 임기가 차서, 그 대신으로 본사(本司: 비변사)에서 계품(啓稟)하여 차출(差出)하였습니다. 듣건대, 새로 차정된 현감(縣監) 이만흥(李蔓興)은 몸에 병이 생겨 극히 위중해서 기동(起動)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다 밖에서 신연(新延)하는 하인이 7월에 올라온 지 이미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차정한 관리의 실제 병이 이와 같으니, 병이 도로 회복되기를 기다려서 벼슬길에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대정현감 이만흥을 그만두게 하고, 그를 대신하는 사람을 차출하여 재촉하여 부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이만흥.

❖ 康熙 三十六年 丁丑 十月 六日 癸丑

○ 有政. 以金載顯爲都承旨, ……, 李萬材爲大靜縣監, ……. 【以上出朝報】

❖ 숙종 23년(1697) 정축년 10월 6일(계축)

□ 이만재(李萬材)를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김재현(金載顯)을 도승지(都承旨)로, 〈중략〉 이만재(李萬材)를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이만재, 대정현감.

❖ 康熙 三十六年 丁丑 十月 十八日 乙丑

○ 下直, 碧團僉使李河, 礪山郡守李郃, 大靜縣監李萬材.

❖ 숙종 23년(1697) 정축년 10월 18일(을축)

□ 대정현감(大靜縣監) 이만재(李萬材) 등이 하직함

○ 벽단첨사(碧團僉使) 이하(李河), 여산군수(礪山郡守) 이태((李郃), 대정현감(大靜縣監) 이만재(李萬材) 등이 임금에게 작별인사를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이만재.

❖ 康熙 三十六年 丁丑 十二月 十五日 辛酉

○ 下直, 新昌縣監鄭周翰, 濟州敎授宋來柏.

❖ 숙종 23년(1697) 정축년 12월 15일(신유)

□ 제주교수(濟州敎授) 송래백(宋來柏) 등이 하직함

○ 신창현감(新昌縣監) 정주한(鄭周翰), 제주교수(濟州敎授) 송래백(宋來柏) 등이 임금에게 작별인사를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교수, 송래백.

❖ 康熙 三十六年 丁丑 十二月 二十七日 癸酉

○ 傳曰, 大臣·備局堂上引見. 引見時, 校理柳鳳瑞, 大靜縣監除授, 司果李師尙, 陽德縣監除授, 竝當日辭朝, 到任日字, 令本道啓聞事, 及慶州府尹洪得禹, 今姑改差, 其代, 從速差送事, 及左副承旨洪受疇罷職事, 及大靜前縣監李萬材, 遞付京職事, 榻前下敎.

❖ 숙종 23년(1697) 정축년 12월 27일(계유)

□ 유봉서(柳鳳瑞)를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전교하기를, "대신(大臣)과 비국당산(備局堂上) 등을 만나겠다."라고 하였다. 이들을 만나볼 때, 교리(校理) 유봉서(柳鳳瑞)에게 대정현감(大靜縣監)을 제수(除授)하고, 사과(司果) 이사상(李師尙)에게 양덕현감(陽德縣監)을 제수(除授)하고, 모두에게 당일 사조(辭朝)[578]하였다. 도임(到任) 일자(日字)는 본도(本道)에 계문(啓聞)한 일과 경주부윤(慶州府尹) 홍득우(洪得禹)를 지금 우선 바꿔서 차정(差定)하고 그 대신으로 빠르게 차정하는 일, 그리고 좌부승지(左副承旨) 홍수주(洪受疇)를 파직하는 일, 대정(大靜) 전현감(前縣監) 이만재(李萬材)를 경직(京職)으로 갈아서 부임하게 하는 일 등은 어전에서 하교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유봉서, 대정현감, 대정, 이만재.

578) 사조(辭朝): 새로 임명된 관리가 부임하거나 외국의 사신이 떠나기에 앞서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던 일.

❖ 康熙 三十六年 丁丑 十二月 二十七日 癸酉

○ 謝恩, 右參贊李畬, 大靜縣監柳鳳瑞, 陽德縣監李師尙, 謝恩後, 仍爲下直.

❖ 숙종 23년(1697) 정축년 12월 27일(계유)

□ 대정현감(大靜縣監) 유봉서(柳鳳瑞) 등이 사은함

○ 사은례(謝恩禮)가 있었다. 우참찬(右參贊) 이여(李畬), 대정현감(大靜縣監) 유봉서(柳鳳瑞), 양덕현감(陽德縣監) 이사상(李師尙) 등이 참석하여 사은례(謝恩禮)를 행한 뒤에, 그대로 작별인사를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유봉서.

❖ 康熙 三十六年 丁丑 十二月 三十日 丙子

○ 院啓, 請海州牧使權秀萬, 罷職不敍【措辭見上】…… 請加三思, 還收校理柳鳳瑞大靜縣監, 司果李師尙, 陽德縣監特除之命. 左副承旨洪受疇, 頃於儒臣陳達之時, 聖敎未畢之際, 乃擧李師尙久不擬望之事, 有所仰奏, 言雖率爾, 事出無情, 而殿下遽擬黨助儒臣, 遂下罷職, 甚非聖人平心恕察之道, 請還收左副承旨洪受疇, 罷職之命. 答曰, 勿煩.

❖ 숙종 23년(1697) 정축년 12월 30일(병자)

□ 유봉서(柳鳳瑞)를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을 거두어달라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해주목사(海州牧使) 권수만(權秀萬)을 파직(罷職)하여 서용하지 말 것을 청했다.【조사가 앞에 보임】〈중략〉 "청컨대 여러 번 생각해 주십시오. 교리(校理) 유봉서(柳鳳瑞)를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사과(司果) 이사상(李師尙)을 양덕현감(陽德縣監)으로 특별히 제수[特除]한 명(命)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 좌부승지(左副承旨) 홍수주(洪受疇)가 지난번에 유신(儒臣)이 진달(陳達)[579] 할 때에, 임금의 명령을 아직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사상(李師尙)을 천거해서 오래도록 의망(擬望)하지 못한 일로 우러러 주달한 바가 있었는데, 말은 비록 경솔하나, 일은 고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하(殿下)가 당(黨)을 도운 유신(儒臣)을 추천하여 올려서는, 드디어 파직의 명을 내렸습니다. 심히 성인(聖人)이 평심(平心)으로 용서하고 살피는 도리에 매우 어긋나는 일입니다. 청컨대, 좌부승지(左副承旨) 홍수주(洪受疇)에 대한 파직의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유봉서, 대정현감.

579) 진달(進達): 관하(管下)의 공문 서류를 상급 관청으로 올려 보냄.

1698年

❖ 康熙 三十七年 戊寅 一月 三日 己卯

○ 引見時, 司諫呂必容所啓, 昨日筵中有柳鳳瑞·李師尙斥補外邑之命, 臣不勝驚惑之至. 憲臣處置, 旣甚乖當, …… 請加三思, 還收校理柳鳳瑞大靜縣監, 司果李師尙陽德縣監特除之命. 上曰, 君上則意在痛斥黨論, 或曰卒口而發, 或曰偶因言端而發, 告君之辭, 豈容如是? 柳鳳瑞以徒知有春澤, 不知有君父等語陳達, 而當初金春澤事, 其時金弘楨在諫院發論, 則大司諫徐文裕, 以兩司不宜俱發, 立異引嫌, 憲府則李東馣首發矣. 其後金弘裕·李東馣兩人, 無見塞之事, 而鳳瑞假托春澤之事, 必欲擊去銓官, 以售其擠陷之計, 其用意顯然可知, 而今此臺啓, 乃以不成說話之言, 肆然伸救, 殊涉無據, 亟停勿煩.

❖ 숙종 24년(1698) 무인년 1월 3일(기묘)

□ 교리(校理) 유봉서(柳鳳瑞)를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특별히 제수한 명을 도로 거두어 달라는 사간(司諫) 여필용(呂必容)의 계

○ 임금이 신하들을 만나볼 때, 사간(司諫) 여필용(呂必容)이 아뢰기를, "어제 연중(筵中)[580]에서 유봉서(柳鳳瑞)·이사상(李師尙)을 바깥 고을로 내쳐 보임시키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臣)은 당혹감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헌부의 신하를 처치(處置)하는 것은 아주 온당하지 못합니다. 〈중략〉 청컨대 여러 번 더 생각하십시오. 교리(校理) 유봉서를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사과(司果) 이사상을 양덕현감(陽德縣監)으로 특별히 제수한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상(君上)은 당론을 몹시 비난하는 데에 뜻을 두고 있는데, 혹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경솔히 말하였다고 하고, 혹은 우연히 말의 발단으로 인하여 발설하였다고 하니, 임금에게 고하는 말을 어찌 이처럼 할 수 있겠는가? 유봉서가 다만 김춘택(金春澤)이 있음만 알고, 군부(君父) 등의 말이 진달됨이 있음을 알지 못해 당초에 김춘택의 일은 그때 김홍정(金弘楨)이 간원의 의논을 제기한 것이 있어서, 대사간(大司諫) 서문유(徐文裕)가 양사(兩司)에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고, 이론을 제기하고 인혐한 것 때문에, 헌부(憲府)가 이동암(李東馣)을 수발(首發)한 것이다. 그 뒤에 김홍유(金弘裕)·이동암(李東馣) 두 사람이 공론에 막힘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유봉서는 김춘택의 일을 거

580) 연중(筵中): 연석(筵席). 임금과 신하가 모여 자문(諮問)·주달(奏達)하던 자리.

짓 핑계를 대서 꼭 전관(銓官)을 공격해 제거하여 제함(擠陷)[581]하려는 계략을 성사시키려고 하였는데, 그 용의(用意)가 분명하게 드러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대계(臺啓)[582]는 말도 되지 아니하는 말로 방자하게 구원하고 있으니, 너무나 터무니없다.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583]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유봉서, 대정현감.

581) 제함(擠陷): 남을 불행한 곳으로 밀어 넣음.

582) 대계(臺啓): 조선 시대에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臺諫)들이 벼슬아치의 잘못을 임금에게 보고하던 글.

583) 유봉서와 여필용의 잘못을 몹시 나무란 기사는, 『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1월 3일(己卯)' 기사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음.

❖ 康熙 三十七年 戊寅 一月 八日 甲申

○ 院啓, 前日朴行義侮辱先賢之罪, 實是聖明之所深惡, 輿情之所共憤, 而懲惡之典, 止於削黜, 臣竊惑焉. …… 答曰, 不允. 前啓, 柳鳳瑞大靜縣監, 李師尙陽德縣監特除之命還收事, 及右副承旨洪受疇罷職之命還收事, 停啓.【以上私記】

❖ 숙종 24년(1698) 무인년 1월 8일(갑신)

□ 유봉서(柳鳳瑞) 등의 특제(特除)에 관한 명의 환수를 정계(停啓)하겠다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지난날 박행의(朴行義)가 선현을 모욕하였다는 죄는 사실 성상께서도 매우 싫어하는 것이고, 여정(輿情)[584]이 모두 분개하는 바입니다. 악함을 징계하는 법은 벼슬을 빼앗고 내쫓은 것에 그쳤으니, 신(臣)은 적기 당혹(當惑)스럽습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전계(前啓)에서 유봉서(柳鳳瑞)를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이시상(李師尙)을 양덕현감(陽德縣監)으로 특별히 제수한 명을 도로 거두어들일 일과 우부승지(右副承旨) 홍수주(洪受疇)를 파직하라는 말을 도로 거두어들이는 일을 아뢰었는데, 정계(停啓)하였다.【이상은 사기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유봉서, 대정현감.

584) 여정(輿情): 어떤 일이나 행동에 대한 사회 일반의 정적(情的)인 반응.

❖ 康熙 三十七年 戊寅 八月 二日 癸卯

○ 金宇杭,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歲貢馬二百匹內, 九匹, 中路病留, 二匹, 中路故失, 一匹, 船中故失, 合十二匹計除, 實納馬一百八十八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24년(1698) 무인년 8월 2일(계묘)

□ 제주(濟州)에서 상납하는 말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김우항(金宇杭)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출발한 선운(先運: 먼저 운송한 것)에 세공마(歲貢馬) 2백 필 안에, 9필은 운반하는 도중 병으로 남겨지고, 2필은 중간에 죽어서 잃어버리고, 1필은 배 안에서 죽어서 잃어버리는 등 합해서 12필이 계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납부한 말은 188필인데,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세공마.

❖ 康熙 三十七年 戊寅 八月 二日 癸卯

○ 司僕寺啓曰, 濟州出來後運馬二百二十二匹內, 一匹, 船中故失, 二匹, 中路故失, 二十二匹, 中路病留, 三匹, 到本寺故失, 二匹, 到本寺病留, 合三十匹計除. 其餘實納馬一百九十二匹, 禾毛色別單書入, 而近因年凶, 貢馬自上年始爲封進, 而馬匹之殘劣, 比前益甚, 年例進上馬, 則與他貢馬, 事體自別, 故從前必以肥澤成才者, 封進, 而今此所封之馬, 不但疲瘠, 亦且體小無才, 所見殊甚可駭. 牧使, 不能擇執上送, 以致如此, 不可無警責之道, 牧使柳漢明, 從重推考, 以警日後, 何如? 傳曰, 允.【司僕謄錄】

❖ 숙종 24년(1698) 무인년 8월 2일(계묘)

□ 수척하고 왜소한 말을 진상한 류한명(柳漢明)의 종중추고(從重推考)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출발한 후운마(後運馬) 222필 안에, 1필은 배 안에서 죽고, 2필은 중간에서 잃어버리고, 22필은 중간에서 병으로 남고, 3필은 사복시에 도착하여 잃어버리고, 2필은 사복시에 도착하여 병으로 남은 것을 합하여 30필을 헤아려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실제로 들인 말 192필의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작성하여 들였습니다. 근래에 흉년이 들어서 공마(貢馬)를 지난해부터서야 비로소 봉진(封進)하였는데, 마필(馬匹)이 쇠잔하고 가냘프고 변변하지 못한 것이 전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는 곧 다른 공마(貢馬)와 함께 보냈으니, 사체(事體)상 각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례에 따라 반드시 살이 찐 것을 택하여 기예를 숙달시킨 것을 봉진하게 했습니다. 지금에야 봉진한 말이 왔는데, 단지 힘이 없고 파리하지 않을 뿐이지 또한 체구가 작고 재주가 없습니다. 보건대 매우 놀랄만한 일이니, 목사(牧使)가 좋은 것을 골라서 잡아 올려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목사 유한명(柳漢明)을 종중추고(從重推考)하여, 이후 경계하는 일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후운마, 공마 연례진상마.

❖ 康熙 三十七年 戊寅 九月 十三日 甲申

○ 趙泰采,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柳漢明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24년(1698) 무인년 9월 13일(갑신)

□ 유한명(柳漢明)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를 내구(內廐)에서 입양하겠다는 조태채(趙泰采)의 계

○ 조태채(趙泰采)가 사복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유한명(柳漢明)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말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으로 작성하여 들이니,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 내사복시)에서 입양(立養)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유한명, 체임진상마.

1699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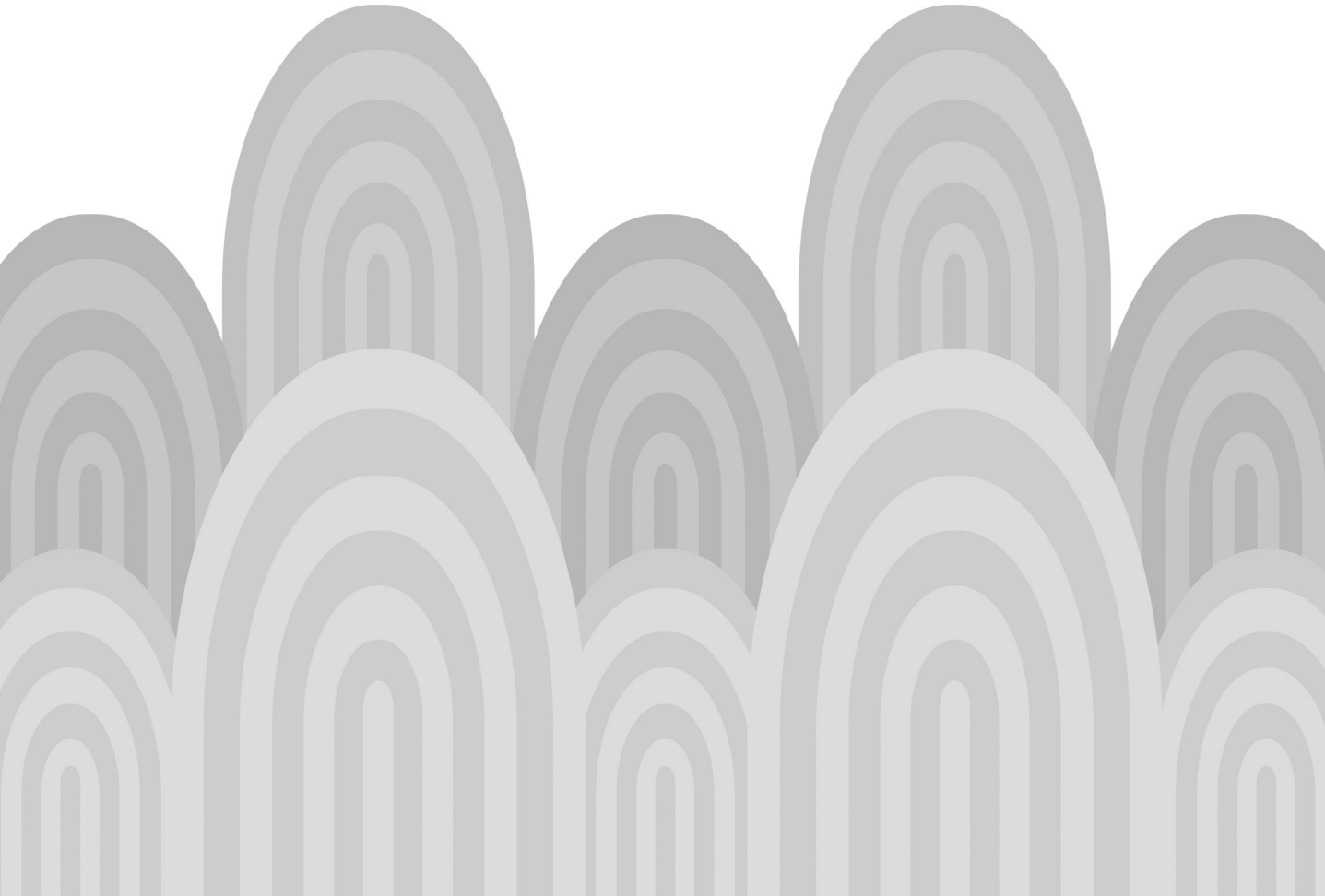

❖ 康熙 三十八年 己卯 二月 六日 丙午

○ 有政. …… 南至熏爲濟州牧使 …….

❖ 숙종 25년(1699) 기묘년 2월 6일(병오)

□ 남지훈(南至熏)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중략〉 남지훈(南至熏)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남지훈, 제주목사.

❖ 康熙 三十八年 己卯 四月 九日 戊申

○ 下直, 蔚山府使成碩夔, 濟州判官趙時耘.【出朝報】

❖ 숙종 25년(1699) 기묘년 4월 9일(무신)

□ 제주판관(濟州判官) 조시운(趙時耘) 등이 하직함

○ 울산부사(蔚山府使) 성석기(成碩夔), 제주판관(濟州判官) 조시운(趙時耘) 등이 임금에게 작별인사를 올렸다.【조보에서 나옴】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조시운.

❖ 康熙 三十八年 己卯 五月 二十日 戊子

○ 引見時, …… 又所啓, 式年武科初試, 濟州入格三人榜目, 近纔上來, 以致未赴於會試矣. 觀其狀啓辭語, 則榜目出送之船, 再三遇風漂失, 以至於過時云, 此則似當陳試, 故敢達. 上曰, 依爲之. …….

❖ 숙종 25년(1699) 기묘년 5월 20일(무자)

□ 제주(濟州)에서 무과(武科) 초시(初試)에 입격(入格)한 이들이 회시(會試)에 응시하지 못하는 문제를 논의함

○ 임금이 신하들을 만나 볼 때, 〈중략〉 또 아뢰기를, "식년(式年)의 무과(武科) 초시(初試)에 제주(濟州)에서 입격(入格)한 세 사람의 방목(榜目: 과거 합격자 명부)이 근래에 막 올라왔는데도, 아직 회시(會試)에 응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장계(狀啓)의 사어(辭語)를 보건대, 방목(榜目)을 실어서 떠난 배가 두세 번 태풍을 만나 떠다니다가 잃어버려서 시기가 지나버렸다고 합니다. 이들을 이제 곧 마땅히 진시(陳試)[585]에 회부해야 할 것이므로 감히 주달(奏達)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입격, 방목.

585) 진시(陳試): 조선 시대에 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복시(覆試)에 응하기가 어려울 때에 그 사정을 예조(禮曹)에 고하고 다른 해에 복시를 보던 일.

❖ 康熙 三十八年 己卯 閏 七月 十二日 戊申

○ 有政. …… 禹鏞爲濟州敎授, …….

❖ 숙종 25년(1699) 기묘년 윤 7월 12일(무신)

□ 우정(禹鏞)을 제주교수(濟州敎授)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중략〉 우정(禹鏞)을 제주교수(濟州敎授)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우정, 제주교수.

❖ 康熙 三十八年 己卯 八月 二十三日 戊子

○ 濟州牧使書目, 本島三邑, 三月以後, 癘疫死亡人, 至於二千八百三十七名之多, 自六月望後, 旱氣太甚, 早晩各穀, 擧皆焦枯, 前頭民事, 極爲可慮事.

❖ 숙종 25년(1699) 기묘년 8월 23일(무자)

□ 제주(濟州)의 여역(癘疫)에 관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

○ 제주목사(濟州牧使) 서목에, '본도(本島: 제주도) 세 고을은 3월 이후에 여역(癘疫: 전염성 열병)으로 죽은 사람에 2,837명으로 아주 많습니다. 6월 보름 이후부터는 가뭄이 너무 심하여 올곡식이나 늦곡식이 대부분 말라버렸습니다. 앞으로 백성에 대한 일이 지극히 염려되는 일.'이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여역.

❖ 康熙 三十八年 己卯 九月 十六日 辛亥

○ 下直, 濟州敎授禹鏞, 光陽縣監李奎章.

❖ 숙종 25년(1699) 기묘년 9월 16일(신해)

□ 제주교수(濟州敎授) 우정(禹鏞) 등이 하직함

○ 제주교수(濟州敎授) 우정(禹鏞), 광양현감(光陽縣監) 이규장(李奎章) 등이 임금에게 작별인사를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교수, 우정.

❖ 康熙 三十八年 己卯 十月 二十一日 乙酉

○ 有政. …… 朴世華爲旌義縣監, …….

❖ 숙종 25년(1699) 기묘년 10월 21일(을유)

□ 박세화(朴世華)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중략〉 박세화(朴世華)를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박세화, 정의현감.

❖ 康熙 三十八年 己卯 十月 二十三日 丁亥

○ 吏批啓曰, 新除授旌義縣監朴世華呈狀內, 其父年今七十, 常在抱病之中, 情理所在, 不忍遠赴, 依法典入啓處置云. 親年已過七十, 則揆以情法, 勢難遠赴於海外之邑, 旌義縣監朴世華, 今姑改差, 何如? 傳曰, 允.

❖ 숙종 25년(1699) 기묘년 10월 23일(정해)

□ 부친이 70세가 넘었다는 박세화(朴世華)의 개차(改差)를 청하는 이비(吏批)의 계

○ 이비(吏批)[586]에서 아뢰기를, "새로 벼슬을 내린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세화(朴世華)가 소장을 관청에 냈는데, 그 안에, '아버지의 나이가 지금 70세가 되었기 때문에 늘 몸에 병을 지니고 있어서, 정리(情理)에 있어서 차마 먼 지역으로 벼슬길에 오를 수가 없어서, 법전(法典)에 따라 입계(入啓)하니 처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이미 70세를 넘었으니, 정리로 보나 법으로 볼 때, 형세가 바다 먼 고을로 벼슬길에 오르기가 어려우니, 정의현감 박세화를 지금 우선 개차(改差)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박세화.

586) 이비(吏批): 문관의 인사 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 이조의 당상인 판서, 참판, 참의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 康熙 三十八年 己卯 十月 二十七日 辛卯

○ 有政. …… 金益九爲旌義縣監, …….【以上朝政】

❖ 숙종 25년(1699) 기묘년 10월 27일(신묘)

□ 김익구(金益九)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중략〉 김익구(金益九)를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이상은 조정(朝政)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김익구, 정의현감.

❖ 康熙 三十八年 己卯 十月 二十九日 癸巳

○ 謝恩, 左副賓客金構, 兼執義兪命雄, 旌義縣監尹益九.

❖ 숙종 25년(1699) 기묘년 10월 29일(계사)

□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익구(金益九) 등이 사은함

○ 좌부빈객(左副賓客) 김구(金構), 겸집의(兼執義) 유명웅(兪命雄),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익구(金益九)[587] 등이 참석하여 사은례(謝恩禮)가 있었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김익구.

587) 원문에는 윤익구(尹益九)로 기록되어 있으나, 김익구(金益九)의 잘못이므로 바로 잡았음.

1700年

❖ 康熙 三十九年 庚辰 一月 六日 庚子

○ 今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校][左議政]徐文重所啓, 犯越人嚴貴賢等, 後日稟處事, 命下矣. 貴賢更招內, 以爲誣引金貴則云, 故英則, 則已自中途放送, 而第移咨更執, 誠爲重難. 皇帝旣有貸死之命, 以示德色, 而違逆其意, 則或不無生事之慮, 且從前有犯越事, 則或遣查使, 或有罰金事, 而今番則不然, 其在事體, 似當有謝恩使之擧, 一邊謝恩, 一邊移咨請殺, 似爲不可矣. 上曰, 邊上事重, 而奸民之犯越, 前後非一, 而若容貸, 則後弊可慮, 故初欲移咨爭執矣. 予亦更思之, 彼旣諉以飢民, 有此貸死之命, 而今若移咨, 以明其不然, 則別生事端, 亦不可不慮, 減死絶島定配, 何如? 徐曰, 聖敎至當. 貴賢·命福則定配于濟州, 或黑山島, 其妻則爲奴, 定屬畿邑, 彼若來問, 以此爲辭, 似好矣. 上曰, 貴賢則絶島定配, 其妻則姑置近地, 以待他日之問, 可也. 徐曰, 謝恩使, 前後不多, 且使行之頻數, 彼中亦以爲弊云, 前頭節使, 順付以送, 何如? 上曰, 若有謝恩之事, 則彼必爲喜, 而似不以早晩爲關矣. 前頭節使, 順付, 可也.【以上備局謄錄 此一條, 當在十六日】

❖ 숙종 26년(1700) 경진년 1월 6일(경자)

□ 이유 없이 국경을 넘은 사람[犯越人] 엄귀현(嚴貴賢) 등을 제주(濟州)로 유배 보내라는 서문중(徐文重)의 계

○ 오늘 대신(大臣)·비국당상(備局堂上)들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領議政: *좌의정의 잘못) 서문중(徐文重)이 아뢰기를, "이유 없이 국경을 넘은 사람[犯越人] 엄귀현(嚴貴賢) 등을 훗날에 품처(稟處)할 일에 대해서 명을 내렸습니다. 엄귀현의 갱초(更招: 다시 문초한 것) 안에, 김귀칙을 무인(誣引)[588]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칙(英則)의 경우 이미 중도에서부터 방송(放送)되어버렸으니, 차례대로 이자(移咨)하고 갱집(更執)하는 일이 진실로 거듭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황제가 이미 대사(貸死)의 명(命)으로 덕색(德色)을 보인 일이 있었는데, 그 뜻을 어긴다면, 혹 일이 생길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이유 없이 국경을 넘은 일에 대해서 혹 사사(査使)[589]를 보내기도 하고, 혹은 벌금을 물리는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체(事體)에 있어서, 마땅히 사은(謝恩)하는 사신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한 편으로는 사은하

588) 무인(誣引): 거짓으로 죄를 꾸며 죄 없는 사람을 끌어들임.
589) 사사(査使): 어떤 일의 조사를 위해 보내는 사신.

게 하고, 한 편으로는 이자(移咨)[590]하여 죽이기를 청하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상(邊上: 변경)의 일은 중요하지만, 간악한 백성[奸民]들이 국경을 넘은 것은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그러니 만약 용서한다면 뒤에 폐단이 있을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자하여 옥신각신 다투는 것을 고집하려 한 것이다. 내가 또한 그것을 다시 생각하였다. 저들을 이미 무뢰(無賴)한 기민(飢民)이라 하여 죽임을 용서하라는 명을 하기까지 하였다. 지금 만약 이자하여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면, 따로 사단(事端)을 주장하는 것이니, 또한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도다. 감사(減死)하여 외딴섬에 유배를 보내는 것을 명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였다. 서문중이 아뢰기를, "성교(聖敎)를 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엄귀현과 명복(命福)은 제주(濟州)에 유배 보내고, 혹 흑산도(黑山島)로 유배 보내고, 그의 처(妻)는 계집종으로 삼고, 경기도 안의 고을에서 종으로 삼게 하십시오. 저들이 만약 내문(來問)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엄귀현은 외딴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그 처(妻)는 잠시 가까운 땅에 있게 하다가, 다른 날을 기다려서 묻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서문중이 아뢰기를, "사은사(謝恩使)[591]는 앞뒤에도 많지 않았습니다. 장차 사신이 가는 것이 매우 잦은데, 저들 가운데도 또한 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절사(節使)가 갈 때에 딸려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사은하는 일이 있으면, 저들은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그것은 이르게 하느냐, 늦게 하느냐와 관계되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 절사가 갈 때에 딸려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비국등록에 의거했고 이 1조는 당연히 16일에 있었음】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이유 없이 국경을 넘은 사람[犯越人], 엄귀현.

590) 이자(移咨): 1) 자문(咨文)을 보냄. 2) 중국과 왕복하는 외교 문서를 보냄.
591) 사은사(謝恩使): 조선 시대에 임금이 중국의 황제에게 사은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절.

❖ 康熙 三十九年 庚辰 一月 十六日 庚戌

○ 引見入侍時, 修撰吳命峻所啓, 今此嚴貴賢等, 領議政徐文重, 以濟州或黑山島徒配事, 稟定, 而臣則區區所懷敢達. 貴賢是叛民, 罪在罔赦, 而朝家之不能正法, 蓋勢有所壓也. 今若定配于濟州, 各置其妻, 則其死必矣, 通官所謂客使來問之說, 似無是理, 而或有意外之事, 則何以答之, 雖或不死, 來問時, 以遠配濟州爲言, 則事或有不可知者, 安有慮後之本意乎? 臣意則貴賢等夫妻, 同置近京紫燕島, 以存後慮, 未爲不可, 伏願裁量焉. 領議政徐文重曰, 罪人, 若置近島人迹往來處, 則必有逃走之患, 此則決不可矣. 刑曹判書李彦綱曰, 儒臣之言, 有理矣, 已赦其罪, 則置之近島, 以待後問, 可矣. 左副承旨趙泰耉曰, 其罪當死, 而姑爲屈法者, 只慮日後或有來問之端也. 今若遠配絶島, 彼人來問之時, 不爲卽現, 或致其生疑, 則別惹事端, 亦甚可慮, 且或彼以飢餓可矜, 勿爲殺死爲言者, 其意若出於示以好生之德, 以爲固結北路人心之計, 則後日勅使時, 探聞其生死, 尤似不難, 今姑羈管於近島, 以經一番勅使, 待其問不問後, 永配於絶島, 似無妨矣. 命峻曰, 朝家旣已屈法, 則遠島與近島, 不過百步與五十步之間, 等是屈法, 屈之中, 其遠其近, 無甚輕重, 況渠之離本土, 此亦數千里外, 豈以近島爲難乎? 軍國之慮當萬全, 姑爲定配於近京絶島, 以存慮後之圖, 似宜矣. 上曰, 後日勅使之問不問, 雖未可知, 而姑待一二年經勅後, 觀勢遠配之議, 似亦有理. 犯越人等, 姑爲定配於近京絶島, 可也.

❖ 숙종 26년(1700) 경진년 1월 16일(경술)

□ 오명준(吳命峻) 등이 입시하여 객사(客使)가 물어볼 것에 대비하기 위해 엄귀현(嚴貴賢) 부부를 서울에서 가까운 절도에 정배(定配)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임금이 신하를 만나보고 신하가 임금을 뵐 때, 수찬(修撰) 오명준(吳命峻)이 아뢰기를, "지금 이 엄귀현(嚴貴賢) 등에 대해서 영의정(領議政) 서문중(徐文重)이 제주(濟州) 또는 흑산도(黑山島)로 유배 보내는 일에 대해서 여쭈어 의논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신(臣)은 구구(區區)하게도 소회(所懷)를 감히 주달(奏達)하였습니다. 엄귀현은 본시 반란을 일으킨 백성으로,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정에서 정법(正法)으로 할 수 없어서, 무릇 형세를 누른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 제주에 유배 보내고, 그 처(妻)는 다른 곳에 두면,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통관(通官)[592]은 객사(客使)가 내문(來問)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592) 통관(通官): 사역원에서 번역과 통역을 맡아보던 사람.

고 하나, 그러한 이치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뜻밖의 일이 있을 수 있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비록 혹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와 물을 때 멀리 제주로 유배를 보냈다고 말하면, 사태를 혹 알 수 없을 것인데, 어찌 나중에 본뜻을 우려하시렵니까? 신(臣)의 뜻은 엄귀현 등의 부처(夫妻)를 함께 경기에서 가까운 자연도(紫燕島)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염려할 것이 있더라도 옳지 않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엎드려 청하건대 생각해서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영의정 서문중이 아뢰기를, "죄인을 만약 인적이 왕래하는 가까운 섬에 두면 반드시 도망하여 달아날 우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형조판서(刑曹判書) 이언강(李彦綱)이 아뢰기를, "유신(儒臣)[593]의 말은 이치에 맞습니다. 이미 죄를 용서하였으니, 가까운 섬에 두고서, 나중에 추문(推問)을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조태구(趙泰耉)가 아뢰기를, "그 죄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잠시 법을 어긴 것을 단지 훗날에 혹 내문(來問)하는 단초가 있을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멀리 외딴섬에 유배 보내면 피인(彼人)들을 내문(來問)할 때, 즉시 나타내 보일 수 없습니다. 혹 이의를 제기하면 따로 사단(事端)을 일으킬까 또한 심히 염려됩니다. 또한 혹 저들이 굶어서 죽을 것도 불쌍하고 가엾습니다. 죽이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은 만약 호생지덕(好生之德)을 내어 보이면 북로(北路)의 인심(人心)을 단단하게 하는 계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곧 훗날 칙사(勅使)를 보낼 때, 그 생사(生死)를 깊이 캐어 듣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잠시 가까운 섬에다 구속시켜 두고 한 번 칙사(勅使)가 지나갈 때, 그것을 묻는지, 묻지 않는지를 기다린 뒤에, 영원히 외딴섬에 유배를 보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오명준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이미 굴법(屈法)했으니, 먼 섬이든 가까운 섬이든 백 보나 오십 보 사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굴법(屈法)하고, 굴법한 가운데 먼 섬에 유배 보내든 가까운 섬에 유배 보내든 대단한 지장이 없을 터입니다. 하물며 저들이 본토를 떠나더라도 이것이 수천 리 밖에 있다면 어떻게 가까운 섬에 유배 보내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군국(軍國)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다영하고, 잠시 서울에서 가까운 외딴섬에 유배를 보내도록 하는 것도 나중에 염려되는 것을 도모하는 것도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훗날 칙사(勅使)가 묻든 묻지를 않든, 비록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잠시 1~2년을 기다려서 칙사(勅使)를 보낸 뒤에, 형세를 살펴서 멀리 유배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다.

593) 유신(儒臣): 1) 홍문관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유학에 조예가 깊은 신하.

이유 없이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잠시 서울 가까운 외딴섬으로 유배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정배, 엄귀현.

❖ 康熙 三十九年 庚辰 一月 二十二日 丙辰

○ 下直, 旌義縣監金益九.

❖ **숙종 26년(1700) 경진년 1월 22일(병진)**

□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익구(金益九)가 하직함**

○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익구(金益九)가 임금에게 작별인사를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김익구.

❖ 康熙 三十九年 庚辰 一月 二十四日 戊午

○ 訓鍊都監啓曰, 軍器所用加時木·槍柄木, 自前知委分定於全羅兵營·左右水營及濟州, 而取用矣. 曾於丁卯年, 因全羅監司狀啓, 如有不得已取用事, 則自軍門入啓取用事, 備局旣已覆啓矣. 卽今都監, 方有軍器打造之事, 而加時木·槍柄等木, 所儲乏盡, 他無繼用之路, 加時木各一千條, 槍柄木各二百條斫送之意, 自備局分付于濟州牧及全羅兵營·左右水營, 何如? 傳曰, 允.【以上備局謄錄】

❖ 숙종 26년(1700) 경진년 1월 24일(무오)

□ 군기(軍器)에 필요한 가시목(加時木) 등을 제주(濟州) 등에서 베어 보내게 할 것을 청하는 훈련도감(訓鍊都監)의 계

○ 훈련도감(訓鍊都監)에서 아뢰기를, "군기(軍器)에 쓰이는 가시나무[加時木][594]과 창(槍) 자루로 쓸 나무를, 전에는 전라병영(全羅兵營)과 좌우수영(左右水營), 제주(濟州) 등에 명령을 내려서 나누어 정해주고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정묘년(丁卯年: 1687)에 전라감사(全羅監司)의 장계(狀啓)로 인해서, 만일 부득이하게 자져다 쓸 일이 있으면, 군문(軍門)에서 입계(入啓)하여 가져다 쓸 일이라고 비국(備局)에서 이미 복계(覆啓)를 하였습니다. 바로 지금 도감(都監)에서 바야흐로 군기(軍器) 두드려서 만들 일이 있는데, 가시나무[加時木]와 창 자루로 쓸 나무 등이 비축 창고에 바닥이 나서, 달리 이어서 쓸 길이 없으므로 가시나무[加時木] 각 1천 그루, 창 자루로 쓸 나무 각 2백 그루를 베어서 보낼 뜻으로, 비국(備局)에서 제주목과 전라병영·좌우수영 등으로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비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가시목, 창병목.

---

594) 가시나무: 참나뭇과의 돌가시나무, 북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주로 조총(鳥銃)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나무의 이름으로 알려짐.

❖ 康熙 三十九年 庚辰 二月 三日 丁卯

○ 備忘記, 小宦內官李東卨·申愚碩·金峻完·朴重慶等, 持身悖惡, 罔畏國法, 可愕之事, 不一而足. 其爲情狀, 萬萬痛惋, 竝各別嚴刑一次後, 全羅道大靜縣, 絶島定配.

❖ 숙종 26년(1700) 경진년 2월 3일(정묘)

□ 이동설(李東卨) 등을 각별히 엄형(嚴刑)한 뒤 대정현(大靜縣)으로 절도정배(絶島定配)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에, "소환(小宦)[595] 내관(內官)[596]인 이동설(李東卨)·신우석(申愚碩)·김준완(金峻完)·박중경(朴重慶) 등은 몸가짐이 어그러지고 흉악하여, 국법(國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놀랄만한 일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가 행한 정상(情狀)이 아주 통완(痛惋)하니, 모두 각별하게 1차로 엄벌에 처한 뒤에, 전라도(全羅道) 대정현(大靜縣)의 외딴섬으로 유배를 보내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

595) 소환(小宦): 나이가 젊고 지위가 낮은 환관.
596) 내관(內官): 내시(內侍). 조선 시대에 내시부에 속하여 임금의 시중을 들거나 숙직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남자로, 모두 거세된 사람임.

❖ 康熙 三十九年 庚辰 二月 十八日 壬午

○ 刑曹參議閔鎭厚疏曰, …… 又按輯錄云, 兵曹書吏自受其債, 使人代立軍士者, 不分名數多小, 全家定罪, 當身濟州徒三年充軍. 凡軍士代立者, 竝當身限一年邊遠充軍, 其所謂凡軍士代立一款, 蓋指軍人分隷各處之後, 私自代立, 而現露則正身替身, 竝被一年充軍之罪也. 今安龜瑞等, 擅減元軍之數, 代立他人於科場, 其視兵曹書吏自受其債者, 情狀尤痛, 全家徙邊, 乃其當律, 其代立之軍與給債書吏者, 厥罪惟同, 亦當徒三年充軍於濟州, 而捨分明可據之上條, 引凡軍私代之下條書員及軍士, 皆止於邊遠充軍, 而猶且曰科場事嚴, 故加其律不限年, 臣誠莫曉其故也. 至於壬辰等旣施累次之刑, 不無徑斃之慮, 就其已著之罪, 與朴尙傑等, 一體勘律, 固是一道而今乃勒稱之曰, 罪在其主, 毋論其承款與否, 而盡爲全釋. 柳近等, 則又不問其所犯之有無, 而混同徒配, 朝家用法, 恐不當若是之乖舛也. 在已承款者, 其主應被科場用奸之律, 則特釋其奴, 猶之可也. 彼抵死自明者, 又何可一例科斷哉? 設令此輩, 果受其主之指使, 未承款之前, 決不可徑罪其主, 此事雖似微細, 而其流之弊, 必至於無窮也. 臣愚以爲, 李濟·尹貴·李萬鍾, 竝邊遠充軍, 安龜瑞·崔碩基, 竝全家徙邊, □□傑·李順一·壬辰·成豪, 竝濟州【十二字缺】又二行缺事, 長官稟定於榻前, 而大【十二字缺】不當容喙於其間, 而職事所關, 愚衷自激, 終不能緘口. 聖明惟殿下, 少賜寬暇, 而特垂睿裁焉. 臣無任僭猥惶恐之至, 謹昧死以聞.【批答見上】

❖ 숙종 26년(1700) 경진년 2월 18일(임오)

□ 부동역서(符同易書)의 용간(用奸)한 일과 관련하여 박상걸(朴尙傑) 등을 모두 제주(濟州)에 도(徒) 3년에 충군(充軍)시키라는 민진후(閔鎭厚)의 상소

○ 형조참의(刑曹參議)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중략〉"라고 하였다. 또한 살피건대, 『집록(輯錄: 受敎輯錄)』에 이르기를, "병조서리(兵曹書吏)가 스스로 삯을 받고 사람을 시켜 군사(軍士)를 대신 세운 자는 인원수의 많고 적음을 분별할 것 없이 전 가족을 정배(定配)하고, 본인은 제주(濟州)로 도(徒) 3년에 충군(充軍)하도록 하며, 보통 군사를 대신 세운 자는 본인과 함께 1년을 기한하여 변방 먼 곳에 충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른바 보통 군사를 대신 세운다는 한 항목은 대개 군인을 나누어 각처에 예속시킨 후에 사사로이 스스로 대신 세웠다가 드러나면, 본인과 대신한 사람은 모두 1년 동안 충군시키는 죄를 받게 됨을 가리킨 것입니다. 지금 안귀서(安龜瑞) 등은 제 마음대로 충군하는 숫자를 줄이

고, 대신 사람을 다른 과장에 세웠으므로 그 정상이 더욱 심하니, 전가사변(全家徙邊)[597]하는 것이 곧 그 형률에 해당되며, 그 대신 선 군사는 삯을 준 서리와 함께 그 죄도 같으니, 또한 마땅히 도 3년에 제주도에 충군해야 하는데도, 분명하게 의거해야 할 위 조항을 버리고 보통 군사를 사사로이 대신 세우는 아래조항을 끌어다 서원(書員) 및 대신 선 군사를 모두 변방 먼 곳에 충군하는 데 그쳤으며, 그러고서도 오히려 또 말하기를, '과장의 일은 엄중하여야하기 때문에 그 율을 더하여 연수(年數)를 한정하지 않았다.'고 하니, 신은 참으로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임진(壬辰: 柳近의 종) 과 성호(城豪: 洪錫輔의 종) 등의 경우는 박상걸(朴尙傑)과 똑같이 형률로 처벌하는 것이 진실로 한 가지 방도인데, 지금 곧 억지로 죄가 그 주인에게 있다고 일컫고, 그들의 자백 여부를 논하지도 않고 전석(全釋)하였으며, 유근(柳近) 등의 경우는 또 그가 범죄의 유무를 묻지 않고 혼동하여 도배(徒配)하였으니, 조정에서의 법률 적용이 마땅히 이같이 어긋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체로 이미 자백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인도 응당 과장에서 간교를 부린 죄의 형률을 받아야 하니, 특별히 그 종을 석방하는 것은 오히려 가하겠지만, 저 죽기를 작정하고 스스로 변명한 자에게 또 어떻게 동일한 예(例)로 법대로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이 무리들이 과연 그 주인을 죄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비록 미세(微細)한 듯 하지만 전해지는 폐단은 반드시 무궁한 데 이를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제(李濟)·윤귀열(尹貴說) 및 이만종(李萬鍾)은 모두 변방 먼 곳에 충군하고, 안귀서(安龜瑞)와 최석기(崔錫基)는 모두 전가사변(全家徙邊)하고, 박상걸(朴尙傑)과 이순일(李順一) 그리고 임진·성호는 모두 제주에 도(徒) 3년에 충군시키고, 두위(斗偉)는 그대로 내보내며, 정욱선(鄭昱先)·유근(柳近)·홍석보(洪錫輔)의 도배는 성명(成命)을 환수한 뒤에야 나라의 법이 균일(均一)하게 되어 인심이 복종할 것입니다.[598] 〈하략〉"라고 하였다. 【비답은 위에 보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립, 전가사변, 충군.

---

597) 전가사변(全家徙邊): 조선조 때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에서 살게 하던 형벌. 세종 때부터 북변 개척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었음.

598) 《수교집록(受敎輯錄)》의 내용은 『숙종실록』 34권 '숙종 26년 2월 17일(임오)' 기사에 일부 들어 있음. 특히 이 기사와 관련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사는 결락(缺落)한 곳이 많아서, 『숙종실록』의 기사를 대조하여 번역에 활용하였음.

❖ 康熙 三十九年 庚辰 二月 二十日 甲申

○【疊書見下】李寅燁, 臣因驛馬申飭事, 竊有區區所懷, 敢此仰達. 先臣慶億, 久爲司僕提調, 故濟州馬看品時見之, 則所謂八駿馬·遞任馬, 體大有風彩矣. 近來則此等馬抄來者, 雖未知何如, 而時於道上偶見濟州馬上來, 則體容甚少, 反不如凡馬矣. 蓋聞濟州田畓, 駿馬踏之, 故雖是駿蹄, 變作駑駘云. 我國馬政, 專在濟州, 而濟州如此, 誠可駭然, 似當有別樣申飭之道矣. 且彼中雌馬, 亦有貿來之規, 分送於牧場, 使之孳長, 則其在攻駒之政, 似爲得宜矣. 上曰, 濟州馬匹, 漸不如前, 各別申飭事, 分付司僕寺, 可也.【出擧行案】

❖ 숙종 26년(1700) 경진년 2월 20일(갑신)

□ 제주(濟州)의 마필(馬匹)은 점차 전만 하지 못하니, 각별하게 신칙(申飭)하기를 청하는 이인엽(李寅燁)의 계

○【첩서[599]는 아래에 보임】이인엽(李寅燁)이 아뢰기를, "신(臣)이 역마(驛馬)에 대해서 신칙(申飭)하는 일로 인해서, 삼가 구구한 회포가 있어 감히 이를 우러러 주달(奏達)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臣) 경억(慶億)은 오래 사복(司僕) 제조(提調)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濟州)의 말을 간품(看品)할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소위 팔준마(八駿馬)[600]와 체임마(遞任馬)라 하는 것은 체구가 크고, 풍채(風彩)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들 말을 추려서 올려 보내는데, 아직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길 가던 중에 우연히 제주마(濟州馬)가 올라온 것을 보았는데 체구와 용모가 매우 적어서, 도리어 평범한 말보다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대개 듣건대, 제주의 전답(田畓)은 준마(駿馬)들이 밟아 줘야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들이 준제(駿蹄: 駿馬)라 하더라도, 변해서 둔한 말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마정(馬政)은 전적으로 제주에 달려 있는데, 제주가 이와 같으니, 참으로 놀랄만하여, 마땅히 별다르게 신칙(申飭)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들 가운데 암말[雌馬]도 무래(貿來)하는 규식이 있으니, 목장에 나누어 정하고 그로 하여금 새끼 쳐서 늘어나게 하면 마땅함을 얻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의 마필(馬匹)은 점차 전만 하지 못하

599) 첩서(疊書): 글을 쓸 때에 잘못하여 같은 글자나 글귀를 거듭 씀.
600) 팔준(八駿): 조선 태조 이성계가 가졌던 여덟 마리의 준마. 횡운골(橫雲鶻), 유린청(遊麟靑), 추풍오(追風烏), 발전자(發電赭), 용등자(龍騰紫), 응상백(凝霜白), 사자황(獅子黃), 현표(玄豹)를 이름.

니, 각별하게 신칙할 일로 사복시에 분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거행안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제주마, 팔준마, 체임마, 준제, 준마.

❖ 康熙 三十九年 庚辰 二月 二十日 甲申

○ 徐文重曰, 濟州, 乃是兵火所不及處, 故公私書籍, 自古有藏置之規, 而中間廢閣不行者久矣. 卽者濟州牧使, 報于本司, 以爲海外書籍甚少, 請得大典續錄·無冤錄·律文等册云, 此則自當分付有册板處, 使之印送, 而自今以後, 每於書册印出時, 自校書館, 印送一件於濟州, 以爲藏置之地, 似好矣. 上曰, 依爲之. …… 李寅燁曰, 臣因驛馬申飭, 而竊有所區區所懷, 敢此仰達. 先臣慶億, 久爲司僕提調, 故濟州馬看品時見之, 則所謂八駿馬·遞任馬, 體大有風氣矣. 近來此等馬抄來者, 雖未知何如, 而時於道上, 遇見濟州馬上來者, 則體容甚少, 反不如凡馬矣. 蓋聞濟州田畓, 驅馬踏之, 故雖是駿蹄, 變作駑駘云, 我國馬政, 全恃濟州, 而濟州如此, 誠可駭然, 似當有別樣申飭之道矣. 且彼中雌馬, 亦有貿來之規, 分送於牧場, 使之孳長, 則其在攻駒之道, 似爲得宜矣. 上曰, 濟州馬匹, 漸不如前, 各別申飭事, 分付司僕寺可也. …….【已上爐餘】

❖ 숙종 26년(1700) 경진년 2월 20일(갑신)

□ 서문중(徐文重) 등이 입시하여 서책인출 때마다 책판 1건을 제주에 인송하는 문제 등을 논의함

○ 서문중(徐文重)이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병화(兵火: 전쟁으로 인한 화)가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공사(公私)의 서적(書籍)이 예로부터 보관해 두는 규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폐각(廢閣)하고 거행하지 않은 지가 오랩니다. 근자에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본사(本司)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바다 밖의 서적이 매우 적습니다. 청컨대, 『대전속록(大典續錄)·『무원론(無冤錄)』·『율문(律文)』 등의 책자를 구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마땅히 책판처(册板處)에 분부하고, 그로 하여금 인출하여 보내게 하고. 지금 이후부터 매번 서책(書册)을 인출(印出)할 때 교서관(校書館)에서 1벌을 제주에 인출하여 보내게 하고, 그것을 그곳에 보관하여 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이동엽(李寅燁)이 아뢰기를, "신(臣)이 역마(驛馬)에 대해서 신칙(申飭)하는 일로 인해서, 삼가 구구한 회포가 있어 감히 이를 우러러 주달(奏達)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臣) 경억(慶億)은 오래 사복(司僕) 제조(提調)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의 말[馬]을 간품(看品)할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소위 팔준마(八駿馬)[601]와 체임마(遞任馬)라 하는

것은 체구가 크고, 풍채(風彩)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들 말을 추려서 올려보내는데, 아직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에 도상(道上)에서 뜻하지 않게 제주마(濟州馬)가 올라온 것을 보았는데 체구와 용모가 매우 적어서, 도리어 평범한 말보다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대개 듣건대, 제주의 전답(田畓)은 준마(駿馬)들이 밟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들이 준제(駿蹄: 駿馬)라 하더라도, 변해서 둔한 말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마정(馬政)은 전적으로 제주에 달려 있는데, 제주가 이와 같으니, 참으로 놀랄만하여, 마땅히 별다르게 신칙(申飭)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들 가운데 암말[雌馬]도 무래(貿來)하는 규식이 있으니, 목장에 나누어 정하고 그로 하여금 새끼 쳐서 늘어나게 하면 마땅함을 얻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의 마필(馬匹)은 점차 전만 못하니, 각별하게 신칙할 일로 사복시에 분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체임마.

---

601) 팔준(八駿): 조선 태조 이성계가 가졌던 여덟 마리의 준마. 횡운골(橫雲鶻), 유린청(遊麟靑), 추풍오(追風烏), 발전자(發電赭), 용등자(龍騰紫), 응상백(凝霜白), 사자황(獅子黃), 현표(玄豹)를 이름.

❖ 康熙 三十九年 庚辰 三月 二日 乙未

○ 刑曹啓目, …… 李順一·朴尙傑等段, 考諸受敎, 與代立軍士元當身不立者, 濟州徒三年充軍律, 似或無異. 依前定奪, 勿限年邊遠充軍爲白乎旀, …….

❖ **숙종 26년(1700) 경진년 3월 2일(을미)**

□ **부동역서(符同易書)의 죄를 지은 이들의 형벌을 조률하여 보고하는 형조(刑曹)의 계목**

○ 형조(刑曹) 계목(啓目)에, 〈중략〉 이순일(李順一)·박상걸(朴尙傑) 등의 경우에는, 여러 수교(受敎)를 상고하여, 군사를 대신 세운 자는 제주(濟州)로 도(徒) 3년에 충군(充軍)하도록 하며, 혹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전례에 따라 정탈(定奪)하고, 한년변원충군(限年邊遠充軍)하지 말게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한년변원충군.

❖ 康熙 三十九年 庚辰 三月 六日 己亥

○ 都政. 吏批, …… 黃諄爲大靜縣監, …….

❖ 숙종 26년(1700) 경진년 3월 6일(기해)

□ 황순(黃諄)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도목정사(都目政事)[602]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중략〉 황순(黃諄)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황순, 대정현감.

602) 도정(都政): 도목정사(都目政事). 조선 시대에 이조·병조에서 벼슬아치의 치적을 심사하여 면직하거나 승진시키던 일.

❖ 康熙 三十九年 庚辰 四月 二日 乙丑

○ 濟州牧使, 以二月朔進上靑橘, 不得封進之意, 狀啓. 傳于李墜曰, 勿待罪事, 回諭.

❖ 숙종 26년(1700) 경진년 4월 2일(을축)

□ 청귤을 봉진할 수가 없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해 내린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2월 초하루에 청귤(靑橘)을 진상해야 하는데, 봉진(封進)하지 못할 뜻으로 장계(狀啓)하였다. 이야(李墜)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회유(回諭)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청귤.

❖ 康熙 三十九年 庚辰 五月 十八日 庚戌

○ 有政. 吏批, …… 李東植爲濟州敎授, …….

❖ 숙종 26년(1700) 경진년 5월 18일(경술)

□ 이동식(李東植)을 제주교수(濟州敎授)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중략〉 이동식(李東植)을 제주교수(濟州敎授)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이동식, 제주교수.

❖ 康熙 三十九年 庚辰 六月 十五日 丙子

○ 南正重啓曰, 伏見吏曹判書金構去己卯秋冬褒貶啓本, 則平市署令黃夏英名下, 不書等第, 以致點下, 其不察甚矣. 全羅監司金時傑, 今庚辰春夏等褒貶啓本中, 濟州審藥金以俊題目, 乃是貶辭, 而置之上考, 以致抹下, 則矇然極矣. 慶尙監司李世載, 仁同府使崔文徵題目, 以事雖有失, 不可責備爲辭, 雖非下考之目, 置之上考, 未免失當. 咸鏡監司李思永, 則吉州牧使李基泰題目, 以鄙瑣有誚, 治聲未聞爲辭, 此實下考題目, 而置中, 則亦涉疎漏, 竝推考警責, 何如? 傳曰, 依啓. 審藥題目, 例從牧使之磨勘, 矇然之失, 自有所歸, 濟州牧使南至熏, 推考, 可也.

❖ 숙종 26년(1700) 경진년 6월 15일(병자)

□ 포폄계본을 소루하게 했던 제주목사(濟州牧使) 남지훈(南至熏)등을 모두 추고해서 경책하기를 청하는 남정중(南正重)의 계

○ 남정중(南正重)의 계(啓)로 아뢰기를, "이조판서(吏曹判書) 김구(金構)가 지난 기묘년(1699년, 숙종 25년) 가을과 겨울에 포폄(褒貶)[603]한 계본(啓本)을 엎드려 살펴 보건대, 평시서령(平市署令) 황하영(黃夏英) 이름 아래에, 등제(等第)한 것을 써 넣지 않았습니다. 점하(點下)[604]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 불찰(不察)인 것입니다. 전라감사(全羅監司) 김시걸(金時傑)이 이번 경신년(1700년, 숙종 26년) 봄과 가을 등에 포폄한 계본 가운데, 제주(濟州) 심약(審藥)[605] 김이준(金以俊)의 제목(題目)이 폄사(貶辭)였음에도 상고(上考)[606]로 하고, 지워서 내렸으니, 몽연(矇然)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경상감사(慶尙監司) 이세재(李世載)와 인동부사(仁同府使) 최문징(崔文徵)의 제목은 일을 함에 있어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책비(責備)를 써놓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하고(下考)[607]의 항목이 아니라서 상고(上考)에 두었다니, 잘못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함경감사(咸鏡監司) 이사영(李思永)은 길주목사(吉州牧使) 이기태(李基泰)의 제목에, 비쇄(鄙鎖)하다

---

603) 포폄(褒貶):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여 결정함.
604) 점하(點下): 임금이 어떤 일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여 내려 보내던 일. 고위 관리를 뽑을 때 임금이 후보자의 이름 위에 점을 찍어서 내려 보낸 데서 유래함.
605) 심약(審藥): 조선 시대에 궁중에 바치는 약재를 검사하기 위하여 각 도에 파견하던 종9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전의감이나 혜민서의 의원 가운데서 뽑음.
606) 상고(上考): 관직을 담당하는 사람의 근무 성적이 뛰어남.
607) 하고(下考): 벼슬아치의 근무 평가에서 제일 낮은 성적.

는 비방이 있으며, 치성(治聲)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써 놓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고(下考)의 제목인데도 중(中)에 둔 것은 소류(疎漏)한 처사입니다. 아울러 추문하여 살핀 뒤에 꾸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심약의 제목에, 전례대로 목사(牧使)가 마감(磨勘)하고, 몽연(矇然)한 과실은 절로 드러나는 법이니, 제주목사(濟州牧使) 남지훈(南至熏)을 추문하여 살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남지훈, 심약, 김이준.

❖ 康熙 三十九年 庚辰 六月 二十一日 壬午

○ 下直, 濟州牧使[608]李東植.

❖ 숙종 26년(1700) 경진년 6월 21일(임오)

□ 제주교수(濟州敎授) 이동식(李東植)이 하직함

○ 제주교수(濟州敎授) 이동식(李東植)이 임금에게 작별인사를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교수, 이동식.

608) 이동식(李東植)은 제주목사가 아니라 제주교수이므로, 바로잡고 번역함.

❖ 康熙 三十九年 庚辰 八月 九日 己巳

○ 備邊司啓曰, 卽接濟〈州〉牧使南致熏所報, 則內奴等呈狀內, 連仍凶荒, 難保之餘, 癘疫兼發, 死亡頗多, 存者無幾, 推刷差員, 今方入來, 依乙卯年例, 內司奴婢推刷, 特許停止云. 內司奴婢, 與各司輕重不同, 而差官之不爲入來, 已至數十年之久. 當此連歲饑饉, 癘疫熾滿之日, 纔經春賑, 牟麥失稔, 卽今農糧絶乏, 將至於廢農, 此時推官許多所率, 支供責應難支之弊, 誠如所行[校][報], 依近例, 本州各司奴婢, 一體推刷, 以除島民四十年停罷之巨弊, 而今年濟〈州〉凶荒特甚, 移轉兩南穀物, 以賑其飢, 則癸卯以後停止之事, 不可擧行於纔離水火之民, 該司之當初啓請, 亦由於未詳事勢之致, 內司奴婢推刷, 令本州, 依例擧行, 推刷官勿爲入送事, 內司, 及全羅監司處, 分付, 何如? 答曰, 允.【備局】

❖ 숙종 26년(1700) 경진년 8월 9일(기사)

□ 제주의 기근이 심하므로 내수사노비의 추쇄를 본주에서 거행하게 하고 추쇄관을 보내지 말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곧 받아 본 제주목사(濟州牧使) 남치훈(南致熏)의 소본(所報)에 따르면, '내노(內奴)[609] 등이 올린 소장 안에, 잇달아 흉년이 들어, 생활해 나가기가 어려운 데다가 여역(癘疫: 전염성 열병)이 아울러 발생하여 죽는 사람들이 자못 많았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은 몇이 없으니 차원(差員)[610]을 추쇄(推刷)[611]하여 방금 들어왔는데, 을묘년(1675)의 예로 내사(內司: 내수사) 노비를 추쇄하여 특별히 정지(停止)하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사노비와 각사노비(各司奴婢)는 경중(輕重)이 같지 않으니, 차관(差官)을 들어오게 하지 않게 한 것이 이미 수십 년이나 지났습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를 이어서 기근(饑饉)이 발생하고 여역(癘疫: 전염성 열병)이 만연한 날에는 겨우 춘진(春賑)이 지났는데도 모맥(牟麥)이 여물어 여물지 않아서 즉시 농사짓는 동안 먹을 양식[農糧]이 절대로 부족하여, 장차 농사짓는 것을 그만두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

609) 내노(內奴): 궁노비. 고려·조선 시대에 궁중에 속하여 궁중의 공역(供役)이나 내구(內廐)의 잡역 따위를 맡아보던 노비.

610) 차원(差員): 어떤 임무를 맡겨 다른 곳에 파견하던 벼슬아치.

611) 추쇄(推刷): 1) 빚을 모두 받아들이던 일. 2) 도망한 노비나 부역, 병역 따위를 기피한 사람을 붙잡아 본래의 주인이나 본래의 고장으로 돌려보내던 일. 3) 떠돌아다니는 백성을 붙잡아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던 일.

한 때에 추관(推官)이 허다하게 소솔(所率)하면 지공(支供)의 책임을 마땅히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습니다. 진실로 아뢴 바와 같이 근례(近例)에 따라 본주(本州: 제주) 각사노비를 일체로 추쇄하면 도민(島民)을 40년이나 정파(停罷: 중간에 그만둠.)했던 큰 폐단을 없애는 것입니다. 금년에 제주(濟州)는 가뭄에 의한 흉작이 특히 심하니, 양남(兩南: 호남과 영남)의 곡물(穀物)을 실어서 옮겨 그 배고픔을 진휼해 주십시오. 계묘년(1663) 이후 정지했던 일은 백성들을 겨우 수재(水災)에서 벗어나 가행할 수 없으니, 해사(該司)에서 당초 계청(啓請)하고, 또한 사세(事勢)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사노비를 추쇄하는 것은 본주(本州: 제주)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거행하게 하고, 추쇄관(推刷官)은 들여보내지 말 것으로 내사와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여 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비국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남치훈, 내노, 추쇄, 추쇄관.

1701年

❖ 康熙 四十年 辛巳 四月 十九日 丙子

○ 有政. 吏批, …… 南嶨爲濟州牧使 …….

❖ 숙종 27년(1701) 신사년 4월 19일(병자)

□ 남헌(南嶨)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중략〉 남헌(南嶨)은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남헌, 제주목사.

❖ 康熙 四十年 辛巳 四月 二十九日 丙戌

○ 今日引見時, 濟州牧使南嶽遞差事, 榻前下敎.

❖ 숙종 27년(1701) 신사년 4월 29일(병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남헌(南嶽)을 체차(遞差)라고 어전에서 하교함

○ 오늘 신하들을 만나볼 때, 제주목사(濟州牧使) 남헌(南嶽)을 체차(遞差)[612]한 일을, 어전에서 전교를 내렸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남헌.

612) 체차(遞差): 관리의 임기가 차거나 부적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이르던 말.

❖ 康熙 四十年 辛巳 五月 六日 壬辰

○ 有政. 吏批, 以金始徽爲平安都事, …… 朴星錫爲濟州牧使, 權持爲忠州牧使.【朝報】

❖ 숙종 27년(1701) 신사년 5월 6일(임진)

□ 박성석(朴星錫)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김시휘(金始徽)를 평안도사(平安都事)로 삼고, 〈중략〉 박성석(朴星錫)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고, 권지(權持)를 충주목사(忠州牧使)로 삼았다.【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박성석, 제주목사.

❖ 康熙 四十年 辛巳 六月 十二日 戊辰

○ 今月初十日引見時, 左議政李世白所啓, 頃者濟州牧使南至熏狀啓, 以爲本州遠在海島中, 故儒生輩, 難於出陸赴擧初試, 獨無試取之事, 實涉不均, 文科初試, 依武科初試例, 試取若干之意, 有所啓聞, 故以全羅道文科初試一額, 依武科初試例, 移送濟州之意, 曾已覆啓分付矣. 其後聞禮曹堂上之言, 則濟州設科節目, 多有難便之端, 濟州本是文武交差之處, 雖當文臣牧使時, 已不得備員, 至於武臣差送之時, 則試官, 尤無以備員, 曾前此事, 亦已見塞云, 旣已移送, 初試一額, 又復還寢, 則絶島之人, 必有落莫之嘆, 臣意則文臣牧使時, 則與敎授, 一同試取, 雖未滿三員, 似無所妨, 若於武臣牧使時, 則判官, 當爲文臣, 與敎授可以試取, 雖曰望輕三邑擧子公都會事體, 豈至於不可爲乎? 況大靜·旌義, 亦或有文臣差送之時, 如此時則, 亦足以備員, 以此定式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右議政申琓曰, 旌義·大靜, 自前間以文臣差送, 而近來則不然, 今後則申飭銓曹, 以文武交差以送, 則其於撫字, 海外殘氓, 不無其效, 而且於試士之時, 亦可備員試取, 似無苟簡之患矣. 上曰, 依爲之.

❖ 숙종 27년(1701) 신사년 6월 12일(무진)

□ 이세백(李世白) 등이 입시하여 제주의 문과 초시와 관련하여 문관과 무관 목사를 교대로 차송(差送)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이번 달 초 10일 신하들을 만나볼 때, 좌의정(左議政) 이세백(李世白)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제주목사(濟州牧使) 남지훈(南至熏)이 장계(狀啓)를 올렸는데, 말하기를 '본주(本州: 제주)는 멀리 바다 밖의 섬 안에 있으므로, 유생(儒生) 무리들이 육지로 나가 초시(初試) 과거를 보기가 어려워서, 유독 시험을 볼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실로 공평하지 못한 듯합니다. 문과의 초시는 무과초시(武科初試)[613]의 예에 따라, 얼마쯤 시험 볼 수 있게 하는 뜻을 담은 계문(啓聞)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전라도(全羅道) 문과 초시 일액(一額)으로서 무과 초시의 예에 따라 제주(濟州)로 옮겨서 보내줄 뜻을 일찍이 이미 복계(覆啓)하여 분부하였습니다. 그 뒤에 예조(禮曹) 당상(堂上)의 말을 들어서, 제주에서 설과(設科)하는 절목(節目)이 있었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는 본시 문무(文武)를 교대로 차정(差定)하는 곳이기에, 마땅히 문신의 목사로 재임하고 있으

613) 무과초시(武科初試): 조선 시대에 삼 년에 한 번씩 식년(式年)이 되는 그 전해의 가을에 실시하던 무과 시험. 서울은 훈련원에서, 지방은 각 도에서 실시함.

면, 이미 일정한 인원이 다 갖추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신(武臣)을 교대로 차송(差送)할 때에는 시관(試官)을 더욱 일정한 인원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초시 일액을 옮겨 보냈는데도 취소가 되었으니, 외딴섬 사람으로 반드시 필시 낙망하며 한탄할 것입니다. 신(臣)의 뜻은 문신(文臣)이 목사일 때는 교수(敎授)로 하여금 일동이 인재를 시험하여 뽑게 하여, 비록 삼원(三員)에 차지 않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만약 무신(武臣)이 목사일 때에는 판관(判官)을 마땅히 문신으로 삼고, 교수(敎授)로 하여금 인재를 시험하여 뽑을 수 있게 하는데, 비록 망(望)에 있어서 세 고을의 거자(擧子)가 가볍다고 말하더라도, 공도회(公都會)[614]의 사체(事體)를 어찌 할 수 없다고 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물며 대정(大靜)·정의(旌義) 또한 혹 문신을 차송할 때에 이와 같이 하면 일정한 인원을 갖추는 데 족하니, 이것을 정식(定式)으로 해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신완(申琓)이 아뢰기를, "정의·대정은 전부터 문신을 차정하여 보냈는데, 근래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전조(銓曹: 이조와 병조)에 신칙(申飭)하여, 문무를 교대로 차정하여 보내면 바다 밖에 있는 힘없는 백성들을 어루만지는 것이 됩니다. 또한 선비들을 시험 보아서 뽑을 때도 일정한 인원을 갖추어 시험 보아서 뽑을 수 있으니, 거칠고 엉성할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정의, 대정, 무과초시, 문과초시.

614) 공도회(公都會): 조선 시대에 관찰사, 유수(留 守)가 해마다 관내(管內)의 유생들에게 보게 하던 소과 초시(小科初試). 성종 때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제술(製述)·고강(考講)의 두 가지 시험을 보게 하였는데, 합격자는 다음 해 생원·진사의 복시(覆試)를 치를 수 있었음.

❖ 康熙 四十年 辛巳 六月 二十日 丙子

○ 午時, 上御時敏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 世白曰, …… 日昨筵中, 以濟州文科初試【數字缺】聞禮曹堂上之言, 則試取【數字缺】, 武科亦有試取之例, 而別【數字缺】可異同, 增廣則與大比科時一例付何如? 申琓曰, 式年增廣初中【數字缺】表策, 今亦以此, 輪回製述宜當, 而【數字缺】人多有製之者, 而表箋則非其所長, 【數字缺】能作矣. 上曰海外之士, 必不知作表, 以論賦策試取, 可【數字缺】賦策連三日製述, 增廣時, 亦依式年【數字缺】. 上曰, 依爲之. ……. 【四條出擧條 以上燼餘】

❖ 숙종 27년(1701) 신사년 6월 20일(병자)

□ 인견에 이세백(李世白) 등이 입시하여 제주의 문과 초시를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오시에 임금이 시민당(時敏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한 때에, 〈중략〉 이세백(李世白)[615]이 아뢰기를, "〈상략〉 며칠 전 연석(筵席)에서 제주의 문과 초시【몇 글자가 빠짐】에조 당상의 말을 들으니, 【몇 글자가 빠짐】, 무과 또한 시취(試取)하는 사례가 있지만, 【몇 글자가 빠짐】, 증광시(增廣試)는 대비과(大比科)[616]일 때와 더불어 한결같은 예로 붙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신완(申琓)[617]이 아뢰기를, "식년시와 증광시의 초(初)·중(中) 【몇 글자가 빠짐】표(表)·책(策), 지금 또한 이것으로 돌아가며 제술(製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몇 글자가 빠짐】표·책은 그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몇 글자가 빠짐】"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바다 밖의 선비라서 필시 표문(表文) 짓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니 논(論)·부(賦)·책(策)으로 시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이세백이 아뢰기를) "【몇 글자가 빠짐】부·책을 연 삼일 제술하는 것을 증광시일 때에도 또한 식년시의 예에 의거해서 【몇 글자가 빠짐】."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네 가지 조항에 대해 거조(擧條)를 내었음. 이상은 신여본(燼餘本)에 의거함】

---

615) 이세백(1635~1703): 본관 용인(龍仁). 자 중경(仲庚). 호 우사(雩沙)·북계(北溪). 시호 충정(忠正). 1675년(숙종 1) 문과 급제. 선혜청당상, 한성부판윤, 예조판서 역임. 저서《우사집》.

616) 대비과(大比科): 3년마다 한 번씩 보이는 식년시(式年試)를 말하는데, 간지(干支)에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들어간 해에 실시하였음.

617) 신완(1646~1707): 본관 평산(平山). 자 공헌(公獻). 호 경암(絅庵). 시호 문장(文莊). 1672년(현종 13) 문과 급제. 대사간, 우의정 역임. 저서《경암집》.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문과 초시, 이세백, 신완, 식년시, 증광시.

❖ 康熙 四十年 辛巳 六月 二十二日 戊寅

○ 今月二十日引見時, 左議政李世白所啓, 日昨筵中, 以濟州文科初試試取事, 定奪矣. 其後禮曹堂上之言, 則試取節目, 當爲磨鍊入送, 而只以全羅道初試一額移送, 則額數旣少, 不成科體, 當以公都會例試取, 而所試某文, 幾巡試取與否, 不可不定式. 且於大比之科, 有此試取之擧, 如增廣別試時, 則何以爲之云, 式年規式, 論義賦表策文, 分三場試取, 今雖不成科體, 以論賦策等文, 分三日, 於製述計畫, 而定其等第, 則似爲合宜, 至於增廣時則, 武科亦有試取之例, 而別試則無此例云. 文武不可異同, 增廣則與大比科時, 一體試取事, 定式分付, 何如? 右議政申琓曰, 式年·增廣, 初中終場, 例出論賦表策, 今亦以此, 輪回製之者, 而表箋則, 非其所長, 海外之人不能作矣. 上曰, 海外之士, 必不知作表, 以論賦策試取, 可也. 李世白曰, 論賦策連三日製述, 依增廣例爲之, 何如? 上曰, 依爲之.

❖ 숙종 27년(1701) 신사년 6월 22일(무인)

□ 이세백(李世白)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의 문과 초시에 대한 시취 절목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이번 달 20일에 임금이 신하를 만나볼 때, 좌의정(左議政) 이세백(李世白)이 아뢰기를, "며칠 전에 임금과 신하가 모여 자문하고 주달하던 자리에서, 제주(濟州)의 문과 초시의 시험을 보아 인재를 뽑는 일에 대해서 임금이 재결하였습니다. 그 뒤에 예조 당상이 말하기를, 시취(試取)하는 절목(節目)은 마땅히 마련하여 들여보냈는데, 다만 전라도(全羅道) 초시의 일액(一額)을 옮겨 주도록 했는데, 액수(額數: 인원의 수)가 아주 적어서, 과거의 모양[科體]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마땅히 공도회(公都會)의 예(例)로 시험을 보아 인재를 뽑게 했습니다. 모문(某文)으로 시험을 보인 바, 몇 번이나 시취할 것인지의 여부를 정식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비지과(大比之科)[618]에서 이것을 시취하는 일은 증과(增廣)[619]과 별시(別試)[620]와 같은 것이어서, 때에 맞추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618) 대비지과(大比之科): 대비과(大比科). 조선 시대에 3년에 한 번씩 베풀던 과거(科擧). 일종의 식년시로, 1603년(선조 36)에 처음으로 둠.
619) 증광(增廣): 증광시(增廣試). 조선 시대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던 임시 과거 시험.
620) 별시(別試): 조선 시대에 천간(天干)으로 '병(丙)' 자가 든 해, 또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보던 임시 과거 시험.

라고 하였다. 식년(式年)의 규식(規式)은 부(賦)[621]와 표(表: 表文)[622], 책문(策文)[623]을 논의하여 삼장(三場)으로 나누어 시취합니다. 지금 비록 과거의 모양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부(賦)와 책(策) 등의 문(文)을 논해서, 3일로 나누고 제술(製述) 계획(計畫)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증광(增廣: 증광시)할 때에 이르러서는 무과 또한 시취하는 예가 있게 하고, 별시에서 이러한 예가 없다고 합니다. 문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광은 대비과(大比科)와 더불어 일체로 시취할 일을 정식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우의정 신완(申琓)이 아뢰기를, "식년과 증광은 초(初)·중(中)·종장(終場)의 예(例)로 부(賦)와 표(表), 책(策)으로 논해서 내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로써 차례로 돌아가면서 제술하게 하였습니다. 표전(表箋)은 그것은 그의 소장(所長)이 아니어서, 바다 밖의 사람이 능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바다 밖의 선비는 필시 표를 짓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 부와 책을 논해서 시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세백이 아뢰기를, "부와 책을 논하는 데 있어서, 잇달아 3일을 제술(製述)하는 것은 증광의 예에 따라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문과, 초시.

---

621) 부(賦): 1) 《시경(詩經)》에서 이르는 시의 육의(六義) 가운데 하나. 사물이나 그에 대한 감상을, 비유를 쓰지 아니하고 직접 서술하는 작법이다. 2) 한문체에서, 글귀 끝에 운을 달고 흔히 대(對)를 맞추어 짓는 글. 3) 과문(科文)에서, 여섯 글자로 한 글귀를 만들어 짓는 글.

622) 표(表): 1) 마음에 품은 생각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 =표문(表文). 2) 과문 육체의 하나. 표문이나 전문을 짓는 글임.

623) 책문(策文): 1) 책문(策問: 정치에 관한 계책을 물어서 답하게 하던 과거 과목)에 답하던 글. 2) 책명(策命).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서 명령하던 글발.

❖ 康熙 四十年 辛巳 七月 一日 丙戌

○ 有政. 吏批, …… 李泰顯爲濟州判官, …….【燼餘 闕】

❖ 숙종 27년(1701) 신사년 7월 1일(병술)

□ 이태현(李泰顯)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중략〉 이태현(李泰顯)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불타고 남은 기록 나머지는 빠짐】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이태현, 제주판관.

❖ 康熙 四十年 辛巳 七月 十五日 庚子

○ …… 金構啓曰, 近來我國無好馬, 濟州及各道牧場, 良品幾絶種, 見武弁所騎馬, 則無一可乘者, 禁軍所騎, 非胡馬則皆駑駘, 而太僕所分給如此, 故不得致責矣. 頃者咸鏡監司兪得一, 啓請嚴禁, 邊倅之以耗穀買淸馬, 而臣意則以爲不然, 耗穀雖多, 例爲邊倅之所用, 北邊倅將, 皆是武弁則以耗穀買戰馬, 有何不可, 開市不遠, 勿爲防禁事, 申飭兩界監司, 何如?【缺】耗穀果濫用之, 則【缺】終始守令【缺三行】則專不可防塞矣. 上曰,【缺】瘦瘠太甚, 至於濟州馬則皮骨相連, 甚不似禁軍馬之無形, 據此可知矣. 西北開市, 胡馬買得之路, 又爲禁, 則戰馬好品, 從何得來, 勿爲防塞, 可也. …….

❖ 숙종 27년(1701) 신사년 7월 15일(경자)

□ 호마(胡馬)를 사들이는 것을 반대하여 가로막지 말라는 전교

○ 〈전략〉 김구(金構)가 아뢰기를, "근래 우리나라에는 좋은 말이 없고, 제주(濟州)나 각도(各道)의 목장(牧場)에도 좋은 품종은 절종(絶種)이 되었습니다. 신이 무변(武弁: 무관)이 탄 말이나 금군(禁軍)이 탄 말을 보았더니, 호마(胡馬)가 아니면 모두 노둔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태복(太僕)[624]에서 나누어 준 것도 이와 같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함경감사 유득일(兪得一)이 변군(邊郡)에서 모곡(耗穀)[625]으로 말을 사들이는 일을 금하게 하여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모곡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례로 보아 수령(守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니, 그 모곡으로 전마(戰馬)를 사는 것이 무슨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개시(開市) 시기가 멀지 않았으니, 금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양계(兩界: 함경도와 평안도) 감사(監司)에게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626] 【빠짐】모곡(耗穀)을 과연 남용(濫用)하였다. 【빠짐】마침내 비로소 수령(守令)【3행이 빠짐】 전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빠짐】 매우 수척(瘦瘠)하였다. 제주마(濟州馬)에 이르러서도 가죽과 뼈가 서로 붙어서, 심히 금군(禁軍)의 말로서 형체가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이에 의거하여 알 수가 있다. 서북(西北: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서 개시

---

624) 태복(太僕/大僕): 태복시(太僕寺). 조선 시대에 궁중의 수레와 말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625) 모곡(耗穀): 환자(還子)를 받을 때, 곡식을 쌓아 둘 동안 축이 날 것을 미리 셈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덧붙여 받던 곡식.

626) 『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7월 15일(庚子)' 기사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임.

(開市)하여도, 호마(胡馬)를 사들이는 것을 또한 금했으니, 좋은 품종의 전마(戰馬)를 어디서 구득할 수 있겠는가? 반대하여 가로막지 말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마.

❖ 康熙 四十年 辛巳 七月 二十五日 庚戌

○ 下直, 濟州牧使朴星錫.

❖ 숙종 27년(1701) 신사년 7월 25일(경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성석(朴星錫)이 하직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성석(朴星錫)이 임금에게 작별인사를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박성석.

❖ 康熙 四十年 辛巳 九月 二十三日 丁未

○ 備忘記, 大行王妃遘疾二載, 而嬉嬪張氏[校][禧嬪張氏], 非但一不起居, 不曰中宮殿, 而必稱閔氏, 又曰閔氏, 實妖人, 不特此也, 潛設神堂於就善之西, 每與二三婢僕, 屛人祈禱, 極其綢繆,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濟州栲棘罪人張希載, 爲先克正邦刑.【燼餘 闕】

❖ 숙종 27년(1701) 신사년 9월 23일(정미)

□ 희빈장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짓을 저질렀다며 먼저 장희재(張希載)에게 방형을 실시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에, "대행왕비(大行王妃)[627]가 병에 걸린 2년 동안에 희빈(禧嬪) 장씨(張氏)는 비단 한 번도 기거(起居: 문병과 문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궁전(中宮殿)'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민씨(閔氏)'라고 일컬었으며, 또 말하기를, '민씨는 실로 요사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취선당(就善堂) 서쪽에다 몰래 신당(神堂)을 설치하고, 매양 2~3인의 비복(婢僕)들과 더불어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도(祈禱)하되, 지극히 빈틈없이 일을 꾸몄다. 이것을 참을 수가 있다면 무엇인들 참지 못하겠는가? 제주(濟州)에 유배(流配)시킨 죄인 장희재(張希載)를 먼저 처형하여 빨리 나라의 형벌을 바로잡도록 하라."라고 하였다.[628] 【불타고 남은 기록 나머지는 빠짐】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유배죄인, 장희재.

---

627) 대행왕비(大行王妃): 왕비가 죽은 뒤 시호(諡號)를 올리기 전에 높여 이르던 말.
628) 『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9월 23일(丁未)' 기사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음.

❖ 康熙 四十年 辛巳 九月 二十四日 戊申

○ 禁府都事尹志源, 罪人張希載拿來事, 濟州地出去.

❖ 숙종 27년(1701) 신사년 9월 24일(무신)

□ 금부도사(禁府都事) 윤지원(尹志源)이 장희재(張希載)를 나래(拿來)하러 제주로 나감

○ 금부도사(禁府都事) 윤지원(尹志源)이 죄인(罪人) 장희재(張希載)를 잡아오는 일로 제주(濟州) 땅으로 나갔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금부도사, 윤지원, 장희재.

❖ 康熙 四十年 辛巳 九月 二十八日 壬子

○ 今日親鞫時, 濟州出使都事尹志源, 閑官換差事, 及兵曹判書金構, 禮曹判書金鎭龜, 刑曹判書趙相愚, 姑爲退出事, 及問事郎廳李晩成, 改差, 以山陵都監出去, 而其代, 以前執義金致龍差下, 令該曹口傳付軍職, 待金致龍入來後, 李晩成出去事, 榻前定奪.

❖ 숙종 27년(1701) 신사년 9월 28일(임자)

□ 친국(親鞫)할 때 도사(都事) 윤지원(尹志源)을 한관(閑官)으로 환차(換差)할 것 등을 어전(御前)에서 정탈(定奪)함

○ 오늘 임금이 중죄인을 몸소 신문할 때, 제주(濟州)로 출장을 간 도사(都事) 윤지원(尹志源)을 한관(閑官)[629]으로 바꾸어 차정한 일과 병조판서(兵曹判書) 김구(金構),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진구(金鎭龜), 형조판서(刑曹判書) 조상우(趙相愚)를 잠시 물러나게 한 일, 그리고 문사낭청(問事郎廳)[630] 이만성(李晩成)을 개차(改差)하여 산릉도감(山陵都監)으로 나가게 하고, 그 대신 전 집의(執義) 김치룡(金致龍)에게 벼슬을 내린 것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구전(口傳)으로 군직(軍職)에 붙이게 하고, 김치룡(金致龍)을 대신하여 들어오게 한 뒤, 이만성(李晩成)을 벼슬길에 나가게 한 일 등을 어전에서 정탈(定奪)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출사도사, 윤지원.

---

629) 한관(閑官): 한가한 벼슬자리. 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630) 문사낭청(問事郎廳): 조선조 때 죄인의 심문서를 작성하여 읽어 주는 일을 맡아 하는 임시 벼슬.

❖ 康熙 四十年 辛巳 十月 十二日 乙丑

○ 禁府, 謀逆罪人雪春母同生禮仁, 珍島郡, 貴山, 長興府爲奴婢定屬, 罪人時英母同生淑伊, 巨濟縣, 尙烈, 熊川縣爲奴婢定屬, 時英同姓三寸叔韓斗齡, 康津縣流三千里安置, 罪人淑正母子翠容, 南海縣, 墨碩, 大靜縣, 年未滿, 二碩, 旌義縣, 年未滿爲奴婢定屬, 淑正同姓嫡三寸叔安世楨, 機張縣流三千里安置, 淑正同生弟末正, 蔚山府爲奴婢定屬, 罪人丑生同生巳生, 光陽縣, 巳英, 寶城縣, 後先, 穩城府爲奴婢定屬, 丑生同姓三寸叔二俊, 光陽〈縣〉, 時迪, 泗川縣, 永贊, 興海郡, 四尙, 鏡城府, 五尙, 樂安郡, 順貞, 金海府, 竝只流三千里安置, 罪人者斤禮女七月, 者斤禮子婦禮伊, 昆陽郡, 者斤禮同生舡同, 固城縣爲奴婢定屬, 以上緣坐.

❖ 숙종 27년(1701) 신사년 10월 12일(을축)

□ 의금부(義禁府)에서 역모연좌죄인 묵석(墨碩) 등을 대정현(大靜縣) 등의 노비로 삼을 것으로 정속(定屬)시킴

○ 금부(禁府: 의금부)가 역모죄인(謀逆罪人) 설춘(雪春) 모(母)의 동생(同生)인 예인(禮仁)을 진도군(珍島郡)으로, 귀산(貴山)을 장흥부(長興府)로 보내 노비를 삼을 것으로 정속(定屬)시켰다. 죄인 시영(時英) 모(母) 동생인 숙이(淑伊)를 거제현(巨濟縣)으로, 상열(尙烈)을 웅천현(熊川縣)으로 보내 노비로 삼을 것으로 정속시켰다. 시영(時英) 동성(同姓)인 삼촌(三寸) 숙(叔) 한두령(韓斗齡)을 강진현(康津縣)으로 유배 삼천 리 하여 안치(安置)시키고, 죄인 숙정(淑正)[631] 모자(母子) 취용(翠容)을 남해현(南海縣)으로, 묵석(墨碩)을 대정현(大靜縣)으로, 나이가 아직 차지 않은 이석(二碩)을 정의현(旌義縣)으로, 나이가 아직 차지 않은 것들은 노비로 삼을 것으로 정속시켰다. 숙정(淑正) 동성(同姓)인 적삼촌(嫡三寸) 숙(叔) 안세정(安世楨)은 기장현(機張縣)으로 유배 삼천 리 하여 안치시키케 하고, 숙정(淑正) 동생제(同生弟) 말정(末正)은 울산부(蔚山府)로 보내 노비로 삼을 것으로 정속시켰다. 죄인 축생(丑生)과 동생 사생(巳生)을 광양현(光陽縣)으로, 사영(巳英)을 보성현(寶城縣)으로, 후생(後先)을 온성부(穩城府)로 보내 노비로 삼을 것을 정속시켰다. 축생(丑生) 동성 삼촌숙(三寸叔) 이준(二俊)을 광양현으로, 시적(時迪)을 사천현(泗川縣)으로, 영찬(永贊)을 흥해군(興海郡)으로,

631) 숙정(淑正): 장희재(張希載)의 첩(妾). 장희재는 조선 숙종 때의 무신(?~1701). 장희빈의 오빠로, 총융사에 올랐음. 인현 왕후가 복위되자 갖은 음모로 해하려다가 장희빈과 함께 처형됨.

사상(四尙)을 경성부(鏡城府)로, 오상(五尙)을 낙안군(樂安郡)으로, 수정(順貞)을 김해부(金海府)로 보내어, 모두 유배 삼천 리 하여 안치시켰다. 죄인 작은예(者斤禮)의 딸 칠월(七月), 작은예(者斤禮)의 자부(子婦) 예리(禮伊)를 곤양군(昆陽郡)으로, 작은예(者斤禮)의 동생 갓동(舡同)을 고성현(固城縣)으로 보내 노비로 삼을 것으로 정속시켰다. 이상은 모두 연좌(緣坐)[632]이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632) 연좌(緣坐): 부자(父子), 형제(兄弟), 숙질(叔姪) 등 가까운 사람의 죄로 무고하게 처벌을 당하거나 잡혀가는 일.

❖ 康熙 四十年 辛巳 十月 二十四日 丁丑

○ 又以吏曹言啓曰, 禮曹啓曰, 卽見西氷庫所報, 則本庫【缺】爲擧行, 而別檢黃啓夏, 以山陵都監監造官, 方在陵所, 【缺】尹志源, 以前任禁府都事, 罪人拿來事, 下去濟州, 回還遲速, 姑未可知, 藏氷修理之役, 無主管看檢之員云. 卽今冬節漸深, 藏氷等事, 實爲緊急, 不可無變通之道. 令該曹急速考例處置, 以爲及期修理之地, 何如? 傳曰, 允下矣. 別檢二員, 或以監造官, 進於役所, 或以前任, 出使未還, 而氷庫修理之役, 實爲緊急, 則有難等待他閑官, 竝爲口傳換差, 何如? 傳曰, 允.

❖ 숙종 27년(1701) 신사년 10월 24일(정축)

□ 빙고(氷庫)를 수리하는 일이 급하니 주관할 관원을 구전(口傳)으로 환차(換差)할 것을 청하는 이조(吏曹)의 계

○ 또한 이조(吏曹)의 말로 아뢰기를, "예조(禮曹)에서 계(啓)로 아뢰기를, '즉시 본 서빙고(西氷庫)의 소보(所報)에, 본고(本庫: 서빙고) 【빠짐】에서 거행하였으나, 별검(別檢)[633] 황계하(黃啓夏)가 산릉도감(山陵都監) 감조관(監造官)[634]으로서, 바야흐로 능소(陵所)에 있었습니다. 【빠짐】윤지원(尹志源)은 전임(前任) 금부도사(禁府都事)로서 죄인을 잡아올 일로 제주(濟州)로 내려갔는데, 돌아오는 것이 늦어질지 빨라질지 일단 알 수가 없어서, 장빙(藏氷)을 수리하는 역에 있어서 주관(主管)하고 간검(看檢)해야 할 원(員)이 없다고 하므로 현재 겨울이 점점 깊어져, 장빙(藏氷) 등의 일은 실로 긴급하여, 변통할 도리가 없을 수 없으니, 예조에게 급속(急速)에서 영을 내려 고례(考例)하여 처치(處置)하게 하고, 기한에 수리할 뜻으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별검(別檢) 2원(員)은 혹 감조관으로, 역소(役所)에 나가게 하고, 혹 전임(前任)으로서, 사명을 받들고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빙고(氷庫)를 수리하는 역은 실로 긴급한 것이어서, 다른 한관(閑官)을 기다렸다가 오르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모두 구전(口傳)으로 환차(換差)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금부도사.

---

633) 별검(別檢): 조선 시대에 전설사의 종8품, 빙고(氷庫)·사포서의 종8품 또는 정8품의 벼슬.
634) 감조관(監造官): 그릇이나 병기 따위의 물건을 만드는 일을 감독하는 벼슬아치.

❖ 康熙 四十年 辛巳 十月 二十八日 辛巳

○ 鞫廳啓曰, 罪人鄭彬·張天漢, 一向頑忍, 尙不輸情, 尤爲痛惡, 請加刑. 罪人尹順命, 將欲加刑之際, 以濟州出送凶物爲言, 此雖非承款之語, 而不可不推覈處置, 故姑不得加刑, 而者斤阿只處, 此一款, 所當究問, 且其前後招辭, 亦有拈出可問之語. 請者斤阿只, 更推. 罪人安世楨, 受刑旣已二次矣, 面質下獄之後, 病勢甚重, 且於希載就拿後, 不無憑問之端, 而徑斃, 甚可慮. 今日不得訊問, 請觀勢加刑. 罪人安汝益, 前後招辭, 向安世楨情節, 微發其端, 而不盡其說, 累次嚴訊, 猶不吐實, 請加刑.

❖ 숙종 27년(1701) 신사년 10월 28일(신사)

□ 정빈(鄭彬) 등에 대한 가형(加刑), 작은아기(者斤阿只)의 경추(更推) 등을 청하는 국청(鞫廳)의 계

○ 국청(鞫廳)[635]에서 계(啓)로 아뢰기를, "죄인 정빈(鄭彬)과 장천한(張天漢)은 줄곧 완악하게 참고서 여전히 실정을 자백하지 아니하니, 더욱 지극히 통악(痛惡)합니다. 청컨대, 형문(刑問)을 더하게 하소서. 죄인 윤순명(尹順命)에게 장차 형문을 더하고자 할 즈음에 '제주(濟州)에서 흉물(凶物)을 보내 왔다.'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비록 자복을 하는 말은 아니지만 추핵(推覈)하여 처치하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형문을 더할 수가 없으며 작은아기(者斤阿只)[636]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마땅히 끝까지 심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전후 공초한 사연에 점출(拈出)하여 물어볼 만한 말이 있으니, 청컨대 작은아기를 다시 추핵하게 하소서. 죄인 안세정(安世禎)은 이미 두 차례 형신(刑訊)을 받았는데, 면질(面質)시키고 하옥한 뒤 병세가 아주 위중해졌습니다. 또 장희재를 잡아온 뒤 빙문(憑問)할 단서가 없지 아니하니, 섣불리 죽을까 염려스러워 오늘은 심문을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형세를 보아가면서 형문을 더하게 하소서. 죄인 안여익(安汝益)이 전후로 공초한 사연 가운데서 안세정(安世禎)의 정절(情節)에 대해 그 단서를 조금 드러내었습니다만, 그 실상을 다 말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이미 형추(刑推)하기를 청하여 한 차례 엄하게 심문하였으나 아직도 실토하지 아니하

635) 국청(鞫廳/鞫廳): 조선 시대에 역적 등의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던 임시 관아.
636) 작은아기(者斤阿只): 장희재(張希載)의 부인.

니, 청컨대 가형(加刑)하십시오."[637]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정빈, 장천한, 작은아기.

637) 『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10월 26일(己卯)'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康熙 四十年 辛巳 十一月 十日 癸巳

○ 削去仕版現告, 全羅兵使柳星樞, 濟州牧使柳漢明, 判官李碩臣, 大靜縣監金磬, 旌義縣監愼聖源·李漢章, 牧使南至熏·朴星錫, 縣監李萬材·沈樸·趙相周, 兵使元徽, 判官趙時耘·黃錞·金義萬·宋來柏.

❖ 숙종 27년(1701) 신사년 11월 10일(계사)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한명(柳漢明) 등을 현고(現告)함

○ 삭거사판(削去仕版)[638]에서 현고(現告)[639]한 사람은 전라병사(全羅兵使) 유성추(柳星樞), 제주목사(濟州牧使) 유한명(柳漢明), 판관(判官) 이석신(李碩臣), 대정현감(大靜縣監) 김경(金磬), 정의현감(旌義縣監) 신성원(愼聖源)·이한장(李漢章), 목사(牧使) 남지훈(南至熏)·박성석(朴星錫), 현감(縣監) 이만재(李萬材)·심박(沈樸)·조상주(趙相周), 병사(兵使) 원휘(元徽), 판관(判官) 조시운(趙時耘)·황순(黃錞)·김의만(金義萬)·송래백(宋來柏) 등이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유한명, 대정현감, 김경, 정의현감, 신성원.

---

638) 삭거사판(削去仕版)): 사판(仕版: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이름을 깎아냄. 죄지은 벼슬아치를 처벌하는 규정의 하나로서, 초사(初仕) 이후의 모든 임관(任官)을 말소하는 규정. 삭판(削版).

639) 현고(現告): 국가의 행정 지시 사항이나 일반 범죄 사실 등을 해당 관청이나 관원에게 즉시 신고하거나 고발하거나 알리는 것.

❖ 康熙 四十年 辛巳 十一月 十一日 甲午

○ 有政. 吏批, 以崔東濟爲大靜縣監, …… 李衡祥爲濟州牧使, …….【燼餘 闕】

❖ 숙종 27년(1701) 신사년 11월 11일(갑오)

□ 최동제(崔東濟)를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이형상(李衡祥)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이르기를, "최동제(崔東濟)를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중략〉 이형상(李衡祥)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라고 하였다.【불타고 남은 기록 나머지는 빠짐】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최동제, 대정현감, 이형상, 제주목사.

❖ 康熙 四十年 辛巳 十一月 十八日 辛丑

○ 鞫廳啓曰, 罪人趙時華, 以其所供辭緣觀之, 因彦良招致, 進去其家, 酬酢服喪一事, 與彦良招辭, 大略相同, 而第其所謂服緦陳疏, 及宮人處探問等事, 未免相左. 請一處面質, 時華之往彦良家, 旣已的實, 則時炅之終始自當, 至於嚴訊, 而猶不變其說, 極涉殊常. 其間必有隱情, 請以時華招內辭緣, 時炅處, 更推歸一. 罪人尹順命, 當初業同掘來木人時, 參聞情節, 及者斤阿只所謂, 濟州來書札中措語, 四次訊問, 終始牢諱, 而自濟州出送龐災冊子及龐災之具一款, 末乃發說, 故推問間停刑, 仍爲啓稟, 不復加刑矣. 今日完議時, 臺諫以爲, 自初所訊問者, 皆係緊重, 不可以其牢諱. 仍置不問, 徑先停刑, 未免輕遽云. 臺官所言, 誠有所執, 揆以獄體, 臣等率爾之失, 不勝惶恐. 請尹順命, 更爲加刑. 答曰, 依啓.

❖ 숙종 27년(1701) 신사년 11월 18일(신축)

□ 작은아기[自斤阿只]가 발설한 제주(濟州)에서 온 서찰에 대해 윤순명(尹順命)이 실토하지 않으므로 다시 가형(加刑)할 것을 청하는 국청(鞫廳)의 계

○ 국청(鞫廳)에서 아뢰기를, "죄인 조시화(趙時華)는 공초한 사연(辭緣)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민언량(閔彦良)의 초치(招致)로 인하여 그 집에 가서 복상에 대하여 수작한 한 가지 일은 민언량의 초사와 대략 서로 같으나, 이른바 시마복을 입도록 진소(陳疏)한다는 것과 궁인(宮人)이 있는 곳에 탐문하였다는 등의 일은 서로 어긋남을 면하지 못하니, 한곳에서 면질(面質)시키기를 청합니다. 조시화가 민언량의 집에 간 것은 이미 적실(的實)한데, 조시경(趙時炅)이 시종 스스로 감당하므로 엄중하게 신문(訊問)하기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그 말을 변치 않으니 지극히 수상합니다. 그 사이에 반드시 숨긴 정상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조시화의 공초 속의 사연을 가지고 조시경에게 다시 추문하여 귀일시키도록 하소서. 죄인 윤순명(尹順命)은 당초에 업동(業同)이 목인(木人)을 파왔을 때에 참여하여 들은 정절(情節)과, 작은아기[自斤阿只]가 말한 제주(濟州)에서 온 서찰(書札)안의 조어(措語)를 가지고 네 차례 신문하였으나, 시종 굳게 은휘하였다가, 제주에서 보내온 방재(龐災)의 책자(冊子)와 방재의 도구에 대한 한 조목은 끝에 가서 발설(發說)하였기 때문에, 추문하는 사이에 형벌을 정지하고 이어 계품(啓稟)하여 다시 형벌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완의(完議) 할 때에 대간(臺諫)이 말하기를, '처음에 신문하던 것도 모두 긴요한 일에 관계되는데, 그가 굳게 숨긴다 하여

그대로 둔 채 묻지 않고 경솔하게 먼저 형벌을 정지하는 것은 경솔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대간의 말이 진실로 집지(執持)할 만한 바가 있습니다. 옥체(獄體)를 헤아리건대, 신 등의 경솔했던 과실은 황공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윤순명은 더 형신(刑訊)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여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640]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서찰.

640) 『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11월 18일(辛丑)'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康熙 四十年 辛巳 十一月 二十六日 己酉

○ 罪人尹順命, 年四十矣. 希載, 今秋書札辭緣段, 此女必欲殺我, 漏洩龐災闕內之事, 此女所爲, 誠極罔測, 汝須禁斷是如爲白乎所, 此女, 卽者斤阿只是白乎旀, 書中所謂闕內龐災事段, 上年七月間, 淑正, 結生薑頭, 潛入闕內, 與雪香, 同謀爲之爲白乎旀, 今年正月間, 且設神祀於水標橋近處家, 而向中宮殿, 行不道之祈禱是白乎旀, 上年八九月日不記, 矣身, 以父病求蜜事, 往于淑正家, 而淑正, 不在其家〈乙〉仍于, 不得相面而來. 又其後日不記, 更往問之曰, 汝於向者, 往于何處? 淑正答以入去闕內, 留七箇日而來云云是白去乙, 矣身問曰, 闕內, 非外人所可留宿之處, 汝何故入去, 久留而來乎? 淑正曰, 以吾枺樓下分付入去, 而留宿緣由, 自有竗理, 從當知之是如爲去乙, 厥後到于者斤阿只處問曰, 向者吾往淑正家, 則淑正以爲, 入往闕中, 留宿七日而來, 未知緣何故耶? 者斤阿只曰, 君豈不知其事乎? 淑正, 方有闕中龐災之事, 而龐災冊及龐災之具, 如鷄卵形者三箇, 自濟州, 來于淑正家, 淑正, 持此入去云云是白去乙. 矣身, 又往淑正家問曰, 所謂入闕留宿者, 有竗理云云之說, 汝須詳言云, 則淑正答曰, 卽今中宮殿病患如此, 若於此時, 祈禱以害, 則吾枺樓下, 當自卽位, 以此故, 方爲經營是如爲白去乙. 矣身曰, 吾聞自濟州, 龐災冊一卷及龐災之具, 如鷄卵形三箇, 來到汝家云, 然乎? 汝以此冊及此物, 爲之乎? 淑正曰, 君聞此言於何處乎? 矣身曰, 自有所聞處矣. 淑正曰, 龐災之具, 果爲來到, 故以此用之於闕中, 而冊子來到之說, 是虛言矣. 只有如片紙張所出者矣. 矣身, 其後又往者斤阿只處, 言及淑正之言, 則者斤阿只答曰, 龐災冊, 非但自濟州出來, 淑正處, 本有如斗大三件冊子是如云云是白遣, 丙子木人事段, 其時矣身, 往于李弘渤家, 弘渤, 言于矣身曰, 吾欲與金以萬·方燦等謀議, 欲以木人, 書女子年甲, 埋置於張家墓所, 又得申大將奴子號牌, 落置墓傍, 則自上驚動, 必以西人家所爲, 疑之是如爲白去乙. 矣身答曰, 未知事必好矣云, 則弘渤曰, 如此如此, 則豈不好成乎云云是白去乙. 矣身答曰, 君其任自爲之是如爲白有置, 矣身, 亦闕內龐災不道祈禱, 旣已與聞旀不喩, 向王世子, 埋凶延曙墓所時, 亦爲參謀的實竝的, 罪凌遲處置事.

❖ 숙종 27년(1701) 신사년 11월 26일(기유)

□ 궐내(闕內)의 방재(龐災) 등과 관련하여 윤순명(尹順命)에 대해 추국한 내용을 보고하는 국청(鞫廳)의 계

○ "죄인 윤순명(尹順命)은 나이가 40살이다. 장희재는 이번 가을의 서찰 속 사연에

서, 이 계집이 반드시 나를 죽이고자 하여 궐내(闕內)에 방재한 일을 누설한 것이니, 이 계집의 소행이 진실로 망측하였다. 너는 모름지기 이를 금단(禁斷)하도록 하라고 하였는바, 이 계집은 곧 작은아기[者斤阿只]이며, 서찰 가운데 이른바 궐내에 방재한 일이란, 지난해 7월 사이에 숙정(淑正)이 생강 머리[薑頭]를 맺어 몰래 궐내로 들어가 설향(雪香)과 함께 모의하였으며, 지난해 8월·9월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몸의 아비가 병이 있어 꿀을 구하려고 숙정(淑正)의 집에 갔더니, 마침 숙정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상면(相面)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또 그 후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다시 가서 묻기를, '너는 지난번에 어디에 갔었느냐?'라고 하였더니, 숙정이 대답하기를, '대궐 안에 들어가 7일 동안 묵고 왔다.'라고 하므로, 이 몸이 묻기를, '대궐 안에는 외인(外人)이 유숙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네가 무슨 까닭으로 들어갔으며 무슨 까닭으로 오래 묵었느냐?'라고 하니, 숙정이 말하기를, '우리 마님의 분부로 들어갔었는데, 유숙한 연유(緣由)는 스스로 묘리(妙理)가 있으니, 앞으로 마땅히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작은아기에게 가서 묻기를, '전번에 내가 숙정의 집에 갔더니, 숙정이 말하기를,「대궐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묵고 왔다.」라고 하였는데,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작은아기가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그 일을 모르는가? 숙정이 바야흐로 대궐 안에서 방재하는 일이 있었다. 방재하는 책자와 방재하는 도구로 달걀 같은 모양을 한 것 세 개가 제주(濟州)에서 숙정에게 왔었는데, 숙정이 이것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제가 또 숙정의 집에 가서 묻기를, '지난번에 이른바 대궐 안에 들어가 유숙한 것은 묘리(妙理)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너는 모름지기 자세히 말하라.'라고 하니, 숙정이 대답하기를, '이제 중궁전에서 병환이 이와 같으시니, 만약 이때 기도하여 해친다면 우리 마님께서 자연히 위(位)에 오르게 마련이므로, 이것 때문에 바야흐로 경영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몸(제)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제주에서 방재하는 책자 1권과 방재하는 도구로 달걀 모양을 한 것 세 개가 너에게 왔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너는 그 책과 물건으로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 숙정이 말하기를, '당신은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느냐?'라고 하므로, 제가 말하기를, '자연히 듣는 곳이 있다.'라고 하였더니, 숙정이 말하기를, '방재할 도구가 과연 도착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궐 안에서 쓰고 있으나, 책자가 왔다는 말은 헛말이고, 다만 편지장 같은 데에 쓴 것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후에 또 작은아기에게 가서 숙정의 말을 언급하였더니, 작은아기가 대답하기를, '방재하는 책자는 제주에서 온 것뿐만 아니라, 숙정에게 본래 말[斗]만큼 큰 책자 3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책자는 틀림없이 금번 수탐(搜探)한 문서 속에 같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자년(1696년, 숙종 22년)의 목인(木人)에 대한 일은 그때 제가 이홍발(李弘渤)의 집에 갔었는데, 이홍발이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김이만(金以萬)·방찬(方燦) 등과 모의하고, 목인에다 세자(世子)의 연갑(年甲)을 써서 장가(張家)의 묘소에 묻어 두고자 한다. 또 신 대장(申大將: 申汝哲)의 노자(奴子)의 호패(戶牌)를 무덤 곁에 떨어뜨려둔다면, 성상께서 경동(驚動)하시어 반드시 서인(西人)의 소행으로 의심하여 환국(換局)을 기필할 수 있다.'라고 하므로, 제가 대답하기를, '이 일이 반드시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더니, 이홍발이 말하기를, '이러이러하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하고, 이 몸이 또한 궐내(闕內)의 방재와 부도(不道)한 기도(祈禱)에 이미 간여하여 들었을 뿐만 아니라 왕세자를 향하여 연서(延曙)하여 묘소(墓所)에 매흉(埋凶)할 때에도 계모(計謀)에 참여한 것이 확실하므로 모두 죄로 능지처지(凌遲處置)[641]할 일입니다.[642]"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장희재, 숙정, 작은아기.

641) 능지처참(凌遲處斬/陵遲處斬):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던 극형.

642) 『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11월 19일(壬寅)' 기사와 『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11월 25일(戊申)' 기사 등에서 확인됨.

1702年

❖ 康熙 四十一年 壬午 一月 十一日 癸巳

○ 下直, 大靜縣監崔東齊.

❖ 숙종 28년(1702) 임오년 1월 11일(계사)

□ 대정현감(大靜縣監) 최동제(崔東齊)가 하직함

○ 대정현감(大靜縣監) 최동제(崔東齊)가 임금에게 작별인사를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최동제.

❖ 康熙 四十一年 壬午 一月 十三日 乙未

○ 又以司饔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濟【缺】月朔別進上唐柚子, 今月來納, 而第六閣元數一百箇內, 欠縮多至四十五箇, 莫重進上之物, 如是不謹, 事極可駭. 封進之官, 難免不能檢飭之罪, 從重推考, 當該陪持人, 令攸司囚禁科罪, 何如? 傳曰, 允.

❖ **숙종 28년(1702) 임오년 1월 13일(을미)**

□ **제주(濟州)에서 진상한 당유자 중에 흠축(欠縮) 난 것이 많으므로 검칙하지 못한 봉진관을 종중추고(從重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사옹원(司饔院)의 계**

○ 또한 사옹원(司饔院) 관원(官員)이 감선제조(監膳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빠짐】 월 초하루에 특별히 진상한 당유자(唐柚子)가 이번 달에 올라와서 냈는데, 다만 여섯 각[六閣]의 원수(元數) 100개 안에, 부족함이 생긴 것이 무려 45개나 됩니다. 진상하는 물건을 막중한 것이어서 이와 같이 힘쓰지 못했으니, 일이 매우 해괴합니다. 봉진한 관리는 검칙(檢飭)을 잘하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당해(當該) 배지인(陪持人: 가지고 올라온 사람)은 유사(攸司: 그 관청)에 영을 내려 잡아 가두고 죄를 처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진상, 당유자.

❖ 康熙 四十一年 壬午 三月 七日 戊子

○ 下直, 統制使元德徽, 濟州牧使李衡祥.

❖ 숙종 28년(1702) 임오년 3월 7일(무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형상(李衡祥) 등이 하직함

○ 통제사(統制使) 원덕휘(元德徽)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형상(李衡祥)이 임금에게 작별 인사를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형상.

❖ 康熙 四十一年 壬午 三月 十七日 戊戌

○ 刑曹, 投疏人柳沆, 旌義縣絶島定配. 啓.

❖ 숙종 28년(1702) 임오년 3월 17일(무술)

□ 형조(刑曹)에서 유항(柳沆)을 정의현(旌義縣)에 정배(定配)하였다고 아룀

○ 형조(刑曹)에서 투소인(投疏人: 상소를 올린 사람) 유항(柳沆)을 정의현(旌義縣) 외딴섬에 정배(定配)하는 것으로 계(啓)를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투소인, 유항, 정의현.

❖ 康熙 四十一年 壬午 四月 二十八日 己卯

○ 兵曹判書李濡所啓, 濟州今壬午式年武科初試, 擧子, 會試前未及上來, 似當依前例, 許令陳試矣. 上曰, 依前例爲之, 可也. 又所啓, 臣於昨日勸武軍官試才時, 禁軍等呈狀, 以爲上年三月間, 因前判書陳達, 禁軍別試射及外中日沒技之類, 勿許直赴, 只施他賞事, 定式矣. 近聞山城及禁衛營試射沒技者, 皆以直赴承傳, 而渠輩獨不蒙恩典, 誠爲冤痛云云, 故取考文書, 則金構之所以定奪者, 蓋以只憑別將一張文報, 許其直赴, 事體不重之意, 而其後山城及禁衛營試才時, 沒技直赴者, 果有之, 旣已定式, 則輒復撓改, 似涉不均, 宜其稱冤. 且山城則守禦使, 以重臣試才, 事體雖云有別, 禁衛營則千摠, 例爲試才, 與禁軍別將, 無甚輕重, 而彼此恩典, 有所異同, 今若以已爲直赴者, 還收爲難, 則似當有均施之道, 下詢大臣而處之, 何如? 禦[校][御]營大將尹就商曰, 上年二月訓鍊大將李基夏, 爲本廳大將時, 哨官卞爾札, 中日試射, 片箭貫一中, 邊二中, 騎芻五中, 今月賞中日時, 敎鍊官李世興騎芻五中, 此兩人, 皆沒技, 而已有定奪之事, 故只論賞而不許直赴, 渠輩, 極其稱冤, 李世興, 臣所目見, 故敢達矣. 左議政李世白曰, 山城則旣異於他處, 守禦使之親往試才, 亦自有別, 臣亦以別爲論賞激勸之意, 仰達矣. 守禦廳於禁衛營, 若已有此例, 則禁軍禦[校][御]營廳, 宜無異同, 而賞典之不均, 如此, 宜其稱冤, 勢所固然矣. 旣施之恩, 固難還收, 此類則姑令一體施行, 更爲申明定式, 以爲遵行之地, 似當矣. 上曰, 禁軍及禦[校][御]營廳試才沒技者, 今番則竝許直赴, 而已出身者, 加資, 此後更爲商議定式, 可也.【承傳謄錄】

❖ 숙종 28년(1702) 임오년 4월 28일(기묘)

□ 이유(李濡)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의 거자(擧子)에 대한 진시(陳試) 허용 등에 대해 논의함

○ 병조판서(兵曹判書)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이번 임오(壬午) 식년(式年)에 무과초시(武科初試)에 합격한 거자(擧子)들이 회시(會試)[643] 전에 미처 올라오지 못했으므로 마땅히 전례에 따라 진시(陳試)[644]에 붙이도록 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례에 따라 하는 것이 좋

643) 회시(會試): 1) 국자감시(國子監試). 고려 시대에 국자감에서 진사를 뽑던 시험. 2) 복시(覆試). 조선 시대에 과거에서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이 차로 시험을 보던 일.

644) 진시(陳試): 조선 시대에 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복시(覆試)에 응하기가 어려울 때에 그 사정을 예조(禮曹)에 고하고 다른 해에 복시를 보던 일.

겠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臣)은 어제 권무군관(勸武軍官)[645]의 재주를 시험할 때, 금군(禁軍) 등이 소장을 올렸는데, 지난해 3월 사이에 전(前) 판서(判書)가 진달(陳達)하기를, 금군에서 특별히 활쏘기를 시험 보는 것과 중일(中日)[646]에서 몰기(沒技)[647]한 자들은 바로 전시를 보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다만 다른 상을 내리는 것을 정식(定式)을 삼으십시오. 근래에 듣기에, 산성(山城)과 금위영(禁衛營)에서 시사(試射)하고 몰기한 자들에게는 모두 바로 전시를 보도록 하는 승전(承傳)이 있어서, 저 사람들이 오로지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원통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모아서 살펴보니, 김구(金構)가 정탈(定奪)한 것은 대개 단지 별장(別將) 1장의 문보(文報)를 의거하여, 바로 전시를 보도록 한 것인데, 일이 실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산성과 금위영에서 재주를 시험 보일 때 몰기를 직부(直赴)하게 한 것이 과연 있었습니다. 이미 정식으로 한 것은, 문득 다시 고치면 균형을 잃을 듯하여, 마땅히 칭원(稱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성은 수어사(守禦使)[648]여서, 중신(重臣)으로서 재주를 시험 보이는 것은 일이 사체가 비록 유별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위영은 천총(千摠)이어서, 전례에 따라 시험을 보이는 것이니, 금군과 더불어 별장은 대단한 지장이 없을 터이니, 피차(彼此)의 은전(恩典)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이미 직부하도록 한 자는 도로 거두어들이기가 어려워서 마땅히 균등하게 베푸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大臣)들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어영대장(御營大將) 윤취상(尹就商)이 아뢰기를, "지난해 2월에 훈련대장(訓鍊大將) 이기하(李基夏)가 본청(本廳)에 대장(大將)으로 있을 때, 초관(哨官) 변이찰(卞爾札)을 중일에 시사하였는데, 편전(片箭) 1발을 명중시키고, 변(邊)을 두 번 맞히고, 기추(騎芻)에서 다섯 발을 명중시켰습니다. 이번 달 중일에 상을 내릴 때, 교련관(敎鍊官) 이세흥(李世興)은 기추(騎芻)에서 다섯 발을 명중시켰으니, 이 두 사람을 모두 몰기하였으나, 이미 모두 정탈한 일이 있으므로 논상(論賞)만 하고서 직부를 허락하지 않으면, 저들은 지극히 칭원(稱冤)할 것입니다. 이세흥에 대해서 신(臣)이 본 바로서 감히 주달하옵니다."라고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세백(李世白)이 아뢰기를, "산성은

645) 권무군관(勸武軍官): 조선 후기에, 군사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금위영, 어영청, 훈련도감에 각 50명씩 150명을 둠.

646) 중일(中日): 무과(武科)의 하나. 조선 시대에 다달이 중일(中日: 子, 卯, 酉가 드는 날)에 보던 무과(武科). 중일제(中日製).

647) 몰기(沒技): 조선 시대에 무과(武科) 시험에서 전 과목에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던 일. 특히 유엽전(柳葉箭), 편전(片箭), 기추(騎芻) 따위의 정한 화살의 수를 다 맞히던 일을 이름.

648) 수어사(守禦使): 조선 시대에 둔 수어청의 으뜸 벼슬.

다른 곳과는 달라서 수어사(守禦使)가 몸소 가서 재주를 시험 보는 것도 유별납니다. 신(臣)도 특별히 논상하여 격권(激勸)할 뜻으로 우러러 주달(奏達)합니다. 수어청(守禦廳)은 금위영(禁衛營)에 비해서 만약 이미 이런 예가 있다면 금군(禁軍)과 어영청(御營廳)과 마땅히 다를 수가 없습니다. 상전(賞典)의 불균(不均)이 이와 같으면 마땅히 칭원함이 있을 것은 사세로 보아 으레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베푼 은택은 진실로 도로 거두어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유는 진실로 똑같이 포상을 시행하여 다시 신명(申明)시키고 법식으로 정하라고 하여 준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군과 어영청이 시험을 보이고 몰기한 자는 이번에 모두 직부하도록 허용하고 이미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선 자는 가자(加資)[649]하고, 이후에는 다시 상의하여 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승전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식년, 무과초시, 거자.

649) 가자(加資): 조선 시대에 관원들의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품계를 올려 주던 일. 또는 그 올린 품계. 왕의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반란을 평정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주로 행하였음.

❖ 康熙 四十一年 壬午 四月 三十日 辛巳

○ 司僕寺啓曰, 近來各牧場馬匹之數, 日就耗減, 不可無別樣變通之道, 故擇其土地肥饒, 水草豐足之處, 別爲分放馬匹, 以爲孳息之意, 曾已入啓蒙允, 而可合取種馬若干匹, 別擇出送事, 亦已分付於濟州牧矣. 興陽折爾島, 幅員頗廣, 水草亦足, 最宜於放牧馬群云, 姑待其出送, 使之直爲放牧, 而且聞水原楓島, 亦宜於放馬, 而年久荒廢, 多有民人冒耕之弊云. 本寺郎廳, 爲先給馬發送, 詳察其形勢, 他島馬群中, 擇其可合取種者, 分放其處, 以廣養馬之場, 何如? 傳曰, 允.【司僕謄錄】

❖ 숙종 28년(1702) 임오년 4월 30일(신사)

□ 방마할 목장(牧場)을 살피고 말을 분방(分放)할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근래 각 목장의 마필의 수가 날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별양으로 변통할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지가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 그리고 물과 풀이 풍족한 곳을 택해서 특별히 말들을 나누어 놓아 먹여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할 뜻으로 이미 계(啓)를 올려서 임금의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종마를 취할 수 있다면 특별히 택해서 내 보낼 일에 대해서도 제주목(濟州牧)에 분부했습니다. 흥양(興陽) 절이도(折爾島)는 폭원(幅員)이 자못 넓고 물과 풀 또한 넉넉하니 말무리들은 놓아먹이면서 기르기에 아주 마땅하다고 하기에, 잠시 내보낸 것을 기다렸다가 그로 하여금 바로 놓아먹이게 하십시오. 또한 듣건대 수원(水原) 풍도(楓島)도 말을 놓아먹이기에 마땅하나, 여러 해 황폐(荒廢해서, 백성들이 함부로 경작하는 폐단이 많다고 합니다. 본시(本寺: 사복시) 낭청(郎廳)이 먼저 말을 주어 보내고, 그 형세를 자세히 살피도록 했으니, 다른 섬의 말들 가운데 종마로 쓰기에 적합한 것을 골라서 그 곳에서 나누어 놓아 길러서, 널이 말을 기르게 하는 목장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사복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 종마.

❖ 康熙 四十一年 壬午 五月 十五日 丙申

○ 禁府, 南九萬牙山縣, 柳尙運稷山縣, 中途付處. 吳始復, 大靜縣絶島, 圍籬安置. 啓.

❖ 숙종 28년(1702) 임오년 5월 15일(병신)

□ 오시복(吳始復)을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圍籬安置)했다고 아룀

○ 금부(禁府)에서 남구만(南九萬)을 아산현(牙山縣)으로, 유상운(柳尙運)을 직산현(稷山縣)으로, 중도부처(中途付處)[650]한 오시복(吳始復)을 대정현(大靜縣) 외딴섬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하는 계(啓)를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오시복, 대정현, 위리안치.

650) 중도부처(中途付處): 벼슬아치에게 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던 형벌.

❖ 康熙 四十一年 壬午 五月 十七日 戊戌

○ 府啓, 請罪人杭家籍沒等事, 令該府照例擧行, 請還寢杭子炤兄弟放歸田里之命, 竝命絶島定配. 請還收科獄罪人酌處之命, 更加嚴刑, 期於得情【措辭竝見上】大靜安置罪人宋尙周, 因減等限滿, 自配所直爲放送云, 臣竊不勝駭然之至. 當初尙周, 陰兇之疏, 侵逼先君, 誣毁中壺, 其罪實與正刑罪人嗣基無異, 而特以其疏之未上徹, 獨保首領, 投配海島, 已不免失刑之歸, 而曾未幾何, 遽被減等, 減等之後, 又至全釋, 有若凡罪流配循例減等者然, 將使敗亂倫常之餘孽, 偃息於田里, 其在懲惡之道, 決無是理. 請兇人宋尙周, 邊遠定配. 答曰, 不允. 末端事, 依啓.

❖ 숙종 28년(1702) 임오년 5월 17일(무술)

□ 대정(大靜) 안치죄인(安置罪人) 송상주(宋尙周)의 변원정배(邊遠定配)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죄인 항가(杭家)의 적몰(籍沒)[651] 등의 일은 해부(該府: 사헌부)에서 전례에 비추어 상고하고 거행하게 하십시오. 청컨대, 항(杭)의 자식 소(炤) 형제를 석방해서 시골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들은 모두 외딴섬으로 정배(定配)하도록 하십시오. 청컨대 과옥(科獄)의 죄인을 참작해 처리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시고, 다시 엄형(嚴刑)을 더하여서, 기어이 실정(實情)을 얻게 하십시오.【조사는 모두 앞에 보임】 대정(大靜) 안치죄인(安置罪人) 송상주(宋尙周)는 감등(減等)으로 인해 기한이 차서 곧바로 방송(放送)하게 되었으니, 신들은 가만히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당초에 송상주는 음흉한 상소로써 선후(先后)를 침범하여 핍박하고 중곤(中壺: 中殿)을 무함하고 헐뜯었으니, 그의 죄는 정형(正刑: 死刑)의 죄인인 조사기(趙嗣基)와 다름이 없는데, 다만 그 소(疏)를 올리지 않아 유독 머리를 보존하고 해도(海島)에 유배되었으니, 이미 형(刑)을 잘못 쓴 결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감등되고 또 완전히 석방되기에 이르러서, 장차 윤상(倫常)을 패란(悖亂)시키는 흉악한 자가 전리(田里)에 엎드려 숨을 쉬게 되었으니, 악을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결코 이러한 이치가 없습니다. 청컨대, 흉인(凶人) 송상주를 변방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

651) 적몰(籍沒): 중죄인(重罪人)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까지도 처벌하던 일.

다. 말단(末端)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652]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 안치죄인, 송상주.

652) 『숙종실록』 36권 '숙종 28년 5월 17일(戊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康熙 四十一年 壬午 五月 二十五日 丙午

○ 傳曰, 大臣·備局堂上引見. 引見時, 旌義縣監瓜滿之代, 令次官差出事, 榻前下敎.

❖ 숙종 28년(1702) 임오년 5월 25일(병오)

□ 임기가 찬 정의현감(旌義縣監)을 차출(差出)하도록 어전에서 하교함

○ 전교하기를, "대신(大臣)과 비국당상(備局堂上)을 불러서 만나보겠다."라고 하였다. 대신 등을 불러서 만나볼 때, 정의현감(旌義縣監)의 과만(瓜滿)[653]으로, 그를 대신하기 위해 다음 관원을 뽑아 보내는 일을 어전에서 하교(下敎)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과만.

653) 과만(瓜滿): 과기(瓜期). 벼슬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를 이르던 말.

❖ 康熙 四十一年 壬午 五月 二十七日 戊申

○ 吏批, 司錄具萬理, 長淵府使尹訓甲, 旌義縣監朴尙夏, 新溪縣令李奎壽, 兵曹正郎李萬堅, 典籍韓永祚, 禁府都事金相勛, 敦寧判官李墍, 工曹佐郎趙始煥, 豐德府使李斗望, 戶曹佐郎李挺英, 工曹佐郎徐宗震, 沃溝縣監權時稱, 正言朴弼明, 儀賓都事金錫齡.

❖ 숙종 28년(1702) 임오년 5월 27일(무신)

□ 박상하(朴尙夏)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서 사록(司錄)에 구만리(具萬理)를, 장연부사(長淵府使)에 윤훈갑(尹訓甲)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박상하(朴尙夏)를, 신계현령(新溪縣令)에 이규수(李奎壽)를, 병조정랑(兵曹正郎)에 이만견(李萬堅)을, 전적(典籍)에 한영조(韓永祚)를, 금부도사(禁府都事) 김상훈(金相勛)을, 돈령판관(敦寧判官)에 이돈(李墍)을, 공조좌랑(工曹佐郎)에 조시환(趙始煥)을, 풍덕부사(豐德府使)에 이두망(李斗望)을, 호조좌랑(戶曹佐郎)에 이정영(李挺英)을, 공조좌랑(工曹佐郎)에 서종진(徐宗震)을, 옥구현감(沃溝縣監)에 권시칭(權時稱)을, 정언(正言)에 박필명(朴弼明), 의빈도사(儀賓都事)에 김석령(金錫齡)을 임명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박상하.

❖ 康熙 四十一年 壬午 六月 九日 己未

○ 義禁府啓曰, 大靜圍籬安置罪人吳始復, 押去都事李翛, 所到處留待之意, 旣已啓達分付矣. 臺啓收殺, 遲速難期, 本府多事之地, 不可無變通之道, 李翛, 令該曹, 依近例閑官換差, 何如? 傳曰, 允.【以上二條 吏曹謄錄】

❖ 숙종 28년(1702) 임오년 6월 9일(기미)

□ 대정(大靜) 안치죄인(安置罪人) 송상주(宋尙周)를 한관(閑官)에 환차(換差)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대정(大靜) 위리안치 죄인 오시복(吳始復)을 압거(押去)해 간 금부도사 이소(李翛)가 도착한 곳에서 머무르면서 기다리라는 뜻은 이미 계달(啓達)하여 분부하였습니다. 대계(臺啓)[654]가 수쇄(收殺: 수습)되어도, 그 지속(遲速)을 예기하기 어려우며, 본부(本府: 의금부)에도 일이 많아서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소(李翛)는 해조(該曹)에게 영을 내려, 근례(近例)에 따라 한관(閑官)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하고 하였다.【이상 두 조는 이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 위리안치, 오시복.

654) 대계(臺啓): 조선 시대에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臺諫)들이 벼슬아치의 잘못을 임금에게 보고하던 글.

❖ 康熙 四十一年 壬午 六月 十六日 丙寅

○ 特進官閔鎭厚啓, 頃於筵中, 以明禮宮穀物敗船, 船人朴允男等事, 有所陳達, 而【擧行條件】, 搆草之時, 臣誤以壽【缺】書送, 不勝惶恐, 且其時上敎停刑仍囚之外, 似又有他敎, 而臣及注書【缺】自記得【擧行條件】中, 只以停刑. 上曰, 不可一向仍囚, 宜有區處之【缺】緝, 以允男等, 似非故敗之意, 陳達【半行缺】刑訊之敎, 故臣於允男等, 受刑三次之後, 循例【缺】刑, 而詳考文書, 則允男等之事, 未知其決非故敗矣. 當初內司手本中, 別遣宮差摘奸, 則米十石, 無水沈之事云云, 而以本道査啓見之, 則長淵色吏輩招辭, 皆以不見米石爲言, 此是大段違端, 自本曹憑問於其時摘奸宮差, 詳知曲折, 後更爲稟處,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又所啓, 罪人韓道章, 初犯死罪, 因捉告越獄罪人之功, 減死定配於珍島, 擅離配所, 潛入京中, 拔劍作挐於士夫齊會之處, 臺官論啓, 自本曹刑推三次, 而猶不承服, 故更請加刑矣. 道章前後罪狀, 萬分痛惡, 而拔劍作挐一款, 三次之刑, 亦足懲罪, 【數字缺】律不過杖一百, 還發配所, 則【半行缺】百惡俱備, 珍島之民, 【半行缺】有作弊之事云, 今若【半行缺】受害, 雖無彼此之別, 而出陸【半行缺】敢此仰達. 上曰, 情狀雖甚痛駭, 而旣非死罪, 移配于濟州等處, 可也. 【出擧條】 …….

❖ 숙종 28년(1702) 임오년 6월 16일(병인)

□ 배소(配所)를 벗어나서 사부(士夫)를 겁박한 한도장(韓道章)을 제주(濟州)로 이배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특진관(特進官)[655]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지난번 연중(筵中)[656]에, 명례궁(明禮宮) 곡물(穀物)을 실은 배가 부서지고, 선인(船人) 박윤남(朴允男) 등에 대한 일을 진달(陳達)한 바가 있었는데, 【거행조건】[657]초(草)를 잡을 때, 臣誤以壽【빠짐】書送,[658]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그때 임금이 전교로써 벌주는 것을 멈추고 그대로 가두라고 한 것 외로, 또한 다른 전교가 있었는데, 신(臣)과 주서(注書)【거행조건】[659]"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 결 같이 그대로 가

655) 특진관(特進官): 조선 시대에 경연(經筵)에 참여하던 벼슬. 1471년(성종 2)에 설치하였는데 처음에는 삼품 이상의 문관에게만 주었음.
656) 연중(筵中): =연석(筵席). 임금과 신하가 모여 자문(諮問)·주달(奏達)하던 자리.
657) 거행조건(擧行條件): 거조(擧條). 연중(筵中)에서 임금과 신하들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문서로 재가 받아 두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입시(入侍)했던 주서(注書)가 정서하여 입계(入啓)하는 것이며, 재가 받은 뒤에는 그 내용을 베껴서 조지(朝紙)에 내는 것이 관례였음.
658) 글자가 빠져 번역을 생략함.
659) 글자가 빠져 번역을 생략함.

두어 둘 수는 없다. 마땅히 구분해서 처리해야 할 방도가 있어야 하겠다.【빠짐】緝,[660] 박윤남 등은 고의로 배가 부서지게 한 것이 아닌 것 같다. 陳達【반행이 빠짐】[661] 형신(刑訊)하라는 하교가 있었으므로, 신(臣)은 박윤남 등이 세 차례의 형문을 받았는데 循例【빠짐】刑,[662] 문서를 서로 고증해보니 박윤남 등의 일을 고패(故敗)가 아니라는 판결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초(當初) 내사(內司)의 수본(手本)에는, 따로 궁차(宮差)[663]를 보내어 적간(摘奸)하니, 쌀 10섬이 물에 빠져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본도(本道)의 사계(査啓)[664]를 보니, 장연(長淵) 색리배(色吏輩) 초사(招辭)에는 모두 쌀섬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단한 위단(違端)은 본조(本曹)로 하여금 그때 적간한 궁차(宮差)에게 물은 것을 근거로 해서 곡절(曲折)을 자세히 알게 하고, 나중에 다시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거조에서 나옴】 또 아뢰기를, "죄인 한도장(韓道章)은 죽을죄를 처음 범하고, 월옥(越獄) 죄인을 착고(捉告)한 공이 있기 때문에, 사형을 감하여 진도(珍島)에 정배(定配)했는데, 마음대로 배소(配所)를 떠나서, 서울에 몰래 들어와, 사부(士夫)가 모두 모인 곳에서 칼을 빼들고 소란을 부렸으니 대관(臺官)이 논계(論啓)하여, 본조에서 형을 삼차에 걸쳐 가해도, 오히려 숭복(承服)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가형(加刑)을 청해야 마땅합니다. 한도장의 앞뒤 죄상(罪狀)은 만분으로 통악(痛惡)한 일입니다. 칼을 빼들고 한 번 소란을 부려서, 삼차에 걸쳐 형을 가해도 죄악을 징계하기에 족합니다.【몇 글자 빠짐】율(律)로 곤장 1백에 불과하여, 도로 배소(配所)로 보냈으니, 則【반행이 빠짐】 온갖 악행을 다부렸으니, 진도의 백성들은【반행이 빠짐】 폐단을 일으킨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반행이 빠짐】해를 받으면, 비록 피차 다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육지로 나가【반행이 빠짐】 감히 우러러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상(情狀)이 비록 매우 이상스럽고 놀라우나, 이미 사죄(死罪)가 아니니, 제주(濟州) 등처(等處)로 이배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거조에서 나옴】〈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이배.

---

660) 글자가 빠져 번역을 생략함.
661) 글자가 빠져 번역을 생략함.
662) 글자가 빠져 번역을 생략함.
663) 궁차(宮差): 조선 시대에 궁가(宮家)에서 파견되어 소작료를 징수하던 사람.
664) 사계(査啓): 사핵계본(査覈啓本)의 준말. 어떤 사건(事件)이나 사안(事案)에 대해 조사하여 그 내용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 또는 그 보고서를 말함. 사핵(査覈).

❖ 康熙 四十一年 壬午 六月 二十五日 乙亥

○ 下直, 利仁察訪韓宗迪, 旌義縣監朴尙夏.

❖ 숙종 28년(1702) 임오년 6월 25일(을해)

□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상하(朴尙夏) 등이 하직함

○ 이인찰방(利仁察訪) 한종적(韓宗迪)과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상하(朴尙夏)가 임금에게 작별인사를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박상하.

❖ 康熙 四十一年 壬午 閏 六月 十九日 己亥

○ 上曰, 旌義定配罪人韓道章, 其罪可惡, 而不必置之死刑, 故自刑曹刑訊三次後, 發送配所矣. 今見京畿監司狀啓, 則結縛押去下人, 中道逃躲云, 誠極痛駭, 若不別樣懲治, 則日後之弊, 有所難言者, 今雖在逃, 不可不及時跟捕, 亦不可以竄配之律, 又爲勘斷, 令該曹設機捕捉, 不待時梟示, 可也. …….

❖ 숙종 28년(1702) 임오년 윤 6월 19일(기해)

□ 정배(定配) 도중 도망친 한도장(韓道章)의 포착(捕捉) 문제 등을 논의함

○ 임금이 말하기를, "정의(旌義) 정배죄인(定配罪人) 한도장(韓道章)은 그 죄가 가증스러우나, 반드시 사형에 처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형조(刑曹)에서 세 차례 형신(刑訊: 刑問)한 뒤에, 배소(配所)로 보내라. 지금 경기감사(京畿監司)의 장계(狀啓)를 보니, 결박(結縛)하여 결박해 압거(押去)해 내려간 사람이 달아나 숨었다고 하는데, 진실로 매우 놀랍도다. 만약 별양(別樣)으로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으면, 훗날 폐단이 있을 것이다.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지금은 비록 도망하여 있지만, 제때에 체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귀양 보내는 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또한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던 일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유인하여 체포하고, 때를 가지지 않고 효시(梟示)형에 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 정배죄인, 한도장.

❖ 康熙 四十一年 壬午 七月 十九日 戊辰

○ 司僕寺啓曰, 濟州出來先運歲貢馬二百匹內, 四十一匹, 到中路病留, 一匹, 故失, 二匹, 到本寺病留, 實納馬一百五十六匹, 禾毛色, 別單書入, 而捧上之際, 次第與毛色, 多與本州毛色啓本, 錯雜不同, 故招問領來色吏, 則爲人迷劣, 莫知其由, 不得已姑以時毛色捧上, 而莫重封進領來色吏, 本州, 初不擇定, 以如是迷劣之人, 苟充定送之狀, 殊甚可駭, 濟州當該牧使, 推考, 何如? 傳曰, 允. 【太僕謄錄】

❖ **숙종 28년(1702) 임오년 7월 19일(무진)**

□ **세공마를 봉진할 때 색리(色吏)를 제대로 택정하지 않은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가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와서 운반해 온 선운(先運)에 세공마(歲貢馬) 200필이 있는데, 그 안에, 41필은 오는 중간에 병으로 남겨지고, 1필은 사고로 잃고, 2필은 본시(本寺)에 도착해서 병으로 남겨져서, 실제로 받아들인 말은 156필입니다. 이들의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작성하여 들였습니다. 봉상(捧上)할 때 차제(次第)와 털색[毛色]은 여러 번 본주(本州: 제주)의 털색[毛色] 계본(啓本)과 비교하니,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뒤섞여 어수선하여 같지 않으므로, 영래(領來) 색리(色吏)를 불러와 물으니, 사람됨이 흐리고 용렬하여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잠시 그때 털색으로 받아온 것으로써 하고, 봉진(封進)은 막중한 것이니, 영래색리(領來色吏)는 본주(本州: 제주)가 처음부터 잘 택정(擇定)하지 못했으니, 이와 같이 용렬한 사람으로서 구차하게 충정(充定)하여 보낸 실상이 매우 해괴합니다. 제주(濟州) 당해(當該) 목사(牧使)를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태복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출래선운, 세공마.

❖ 康熙 四十一年 壬午 七月 二十五日 甲戌

○ 有政. 昌陵參奉鄭揵, 右尹李國華, 承旨尹世紀·金德紀, 司成趙泰老, 內局提調申琓, 監察黃啓河, 弼善李萬選, 兵曹參知金萬埰, 司藝閔震元, 正言金栽, 濟州敎授金泰鼎, 監察李箕翊, 兵曹佐郎趙道彬.

❖ 숙종 28년(1702) 임오년 7월 25일(갑술)

□ 김태정(金泰鼎)을 제주교수(濟州敎授)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창릉참봉(昌陵參奉)에 정건(鄭揵)을, 우윤(右尹)에 이국화(李國華)를, 승지(承旨)에 윤세기(尹世紀)·김덕리(金德紀)를, 사성(司成)에 조태로(趙泰老)를, 내국제조(內局提調)에 신완(申琓)을, 감찰(監察)에 황계하(黃啓河)를, 필선(弼善)에 이만선(李萬選)을, 병조참지(兵曹參知)에 김만채(金萬埰)를, 사예(司藝)에 민진원(閔震元)을, 정언(正言)에 김재(金栽)를, 제주교수(濟州敎授)에 김태정(金泰鼎)을, 감찰(監察) 이기익(李箕翊)을, 병조좌랑(兵曹佐郎)에 조도빈(趙道彬)을 임명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교수, 김태정.

❖ 康熙 四十一年 壬午 七月 二十五日 甲戌

○ 右議政申琓所啓, 臣以兼帶衙門事, 有所仰達矣. 太僕馬匹之凋耗, 物力之殘弊, 曾亦仰達矣. 臣取見馬案, 則壬申所付濟州馬, 一萬四百八十匹, 而今爲七千四百七十一匹, 以壬申欠三千十匹, 各牧場馬一萬一千六百九十匹, 而今爲一萬四百二十一匹, 以壬申欠一千二百七十二匹, 前後十年之間, 未見蕃息之數, 耗減之數, 至於此多, 以此論之, 則前頭之事, 極爲可慮, 故今方爲此之慮, 搜覓久遠, 宮家折受之諸島及中間落漏者, 一從輿地所付推出, 以爲放馬牧養之地, 其中元山島, 在於忠淸水營近處, 本是從前太僕牧場, 而曾在戊申年間, 因安興移鎭之議, 移其牧馬之後, 更無移鎭之事, 仍爲水營所屬, 至今不得還推矣. 卽今雖有虞候, 風和時候望之擧, 不過一時往來, 而今雖置馬場, 別無妨礙之端, 且島中田畓, 則本是太僕之物, 水營不當仍占, 故自本寺, 今方訪問閭巷間知馬者, 別將稱號, 入送島中, 使之依前設場, 而亦不無自願之人, 故略給價布, 使之貿取雌雄良馬於中江及會寧開市, 多數放牧於島中, 以爲取種之地, 不可不先審其形便, 將欲發遣郎廳, 故敢此仰達. 上曰, 先遣郎廳, 察其形勢後爲之.【司僕謄錄】

❖ 숙종 28년(1702) 임오년 7월 25일(갑술)

□ 신완(申琓)이 입시하여 마정(馬政)이 쇠퇴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우의정(右議政) 신완(申琓)이 아뢰기를, "신(臣)이 겸대(兼帶)하는 아문(衙門)의 일로, 우러러 주달(奏達)한 바가 있습니다. 태복(太僕)의 마필(馬匹)이 조모(凋耗)해진 것은 물력(物力)이 쇠잔한 것으로, 일찍이 또한 우러러 주달(奏達)한 바가 있습니다. 신(臣)이 마안(馬案)을 취해서 살펴보니, 임신(壬申: 1692년, 숙종 18년)에 붙인 제주마(濟州馬)는 10,480필인데, 지금은 7,471필이어서, 임신년 이래 3,010필이 부족합니다. 각 목장의 말 11,690필인데, 지금은 10,421필이니 임신년 이래로 1,272필이 줄었습니다. 전후 10년 사이에 번식(蕃息)한 수는 찾아볼 수 없고, 줄어든 수가 이렇듯 많으니 이것을 논해야 합니다. 앞날의 일이 매우 염려스럽게 될 것이므로, 염려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야흐로 이것을 염려해서, 오랫동안 방도를 찾았습니다. 궁가(宮家)에서 여러 섬과 중간에서 누락한 것을 나누어 받은 것은 한결같이 『여지(輿地)』에 따라서 추출(推出)하여 붙이고, 말을 놓아서 먹이면서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원산도(元山島)는 충청(忠淸) 수영(水營) 근처에 있어서, 종전부터 태복목장(太僕牧場)으로 삼았습니

다. 일찍이 무신(戊申: 1668년, 숙종 9년) 연간에 안흥(安興)으로 진을 옮기는 건의가 있어서 목마(牧馬)를 옮긴 뒤에, 다시 진을 옮긴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수영(水營) 소속이 된 뒤 지금까지 환추(還推)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비록 우후(虞候)[665]가 있더라도,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잔잔할 때 후망(候望)한 일이 있는데, 일시에 가고 올 수가 없어서, 지금 비록 마장(馬場)을 설치했는데, 따로 방애(妨礙)의 단초가 없습니다. 또한 섬 안에 전답(田畓)이 있는데, 본래 태복(太僕)의 물(物)인데도, 수영(水營)이 부당하게 그대로 점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시(本寺)에서 지금 바야흐로 여항(閭巷)을 방문하여 말에 대해서 묻고, 별장(別將)이라 호칭하여, 섬 안으로 들여보내어, 그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목장을 설치하십시오. 또한 자원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으므로 가포(價布)를 조금 대주고 그로 하여금 중강(中江: 함경남도 동북부 갑산군에 있는 지명)과 회령(會寧)에서 시장을 열 때 암수의 좋은 말을 무취(貿取)하여 섬 안에 놓아먹인 것이 다수이니, 종마(種馬)를 택하여 그 형편은 먼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차 낭청(郎廳)을 뽑아 보내기를 감히 우러러 주달(奏達)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먼저 낭청을 보내어, 그 형세를 살핀 뒤에 하도록 하라."라고 했다. 【사복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마.

665) 우후(虞候): 조선 시대에 각 도에 둔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보좌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병마우후가 종3품, 수군우후가 정4품이었음.

❖ 康熙 四十一年 壬午 九月 十日 戊午

○ 吏批啓曰, 新除授濟州牧使金泰鼎呈狀內, 老母七十歲, 宿病沈痼, 人子情理, 不忍遠離, 親年七十, 勿敍三百里, 載在法典, 入啓處置云. 此與遠邑守令有異, 而海島絶遠之地, 不可勒令赴任, 金泰鼎, 依法典改差, 何如? 傳曰, 允.

❖ 강숙종 28년(1702) 임오년 9월 10일(무오)

□ 김태정(金泰鼎)은 노모(老母)의 나이가 70세이고 질병이 있어 부임할 수 없으므로 개차(改差)할 것을 청하는 이비(吏批)의 계

○ 이비(吏批)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제주교수(濟州敎授)[666] 김태정(金泰鼎)이 소장을 올렸는데, 그 안에, 노모(老母)가 70살인데, 묵은 병이 깊어져서, 아들된 정리로 차마 멀리 떠날 수가 없고, 부모의 나이가 70살이 되면 3백 리 밖의 수령으로 서용하지 말라는 것이 법전(法典)에도 들어있다는 계(啓)를 들였사오니 처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먼 고을의 수령과 달라서, 바다 섬 외딴 곳으로 멀리 있기에 부임하는 것을 칙명(勅命)할 수 없으니, 김태정을 법전에 따라 고쳐서 차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김태정.

666) 국사편찬위원회 원문 및 탈초본에는 제주목사(濟州牧使)라 되어 있으나, 이 시기 김태정(金泰鼎)은 제주교수(濟州敎授)를 역임하였으므로 교열자가 바로 잡음.

❖ 康熙 四十一年 壬午 十二月 二十五日 辛丑

○ 太僕寺啓曰, 濟州載馬船隻, 例自本寺, 行關分付, 則自監營, 預爲輪定於沿邊各邑, 使之趁三月入送, 然後霖雨前可以發送, 今年則各邑般隻, 皆過時後入去, 而光陽則終不入送, 自本州艱難賃船載送云. 事目內, 三月齊到, 四月裝載者, 蓋欲其霖雨之前, 使之回泊, 而近來各邑, 慢不擧行, 致令船隻, 過時入送, 已極可該校[駭], 而光陽則終不入送, 至令本州賃船載送, 揆以事目本意, 不可不論罰, 以爲日後警飭之地, 光陽縣當該縣監, 依事目罷黜, 何如? 傳曰, 允.【出太僕謄錄】

❖ 숙종 28년(1702) 임오년 12월 25일(신축)

□ 제주(濟州)에 말을 싣은 배를 입송하지 않은 광양현(光陽縣)의 해당 현감의 파출을 청하는 태복시의 계

○ 태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말을 실을 배에 대해서, 전례대로 본시(本寺)에서 공문을 보내어 분부하였습니다. 감영(監營)에서 미리 연변의 각 고을에 윤정(輪定)하여, 그로 하여금 3월이 되어 입송하게 합니다. 그런 뒤에야 장마가 오기 전에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각 고을의 배가 모두 시간이 지난 뒤에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광양(光陽)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본주(本州: 제주)가 간난(艱難)하여 배를 임대해서 실어 보냈다고 합니다. 사목(事目) 안에, 3월에 일제히 도착하고, 4월에 짐을 꾸려 배에 실은 것이 대개 장마 전에 하려고 했으나, 그로 하여금 회박(回泊)하여, 근래에 각 고을에서 소홀히 하여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을 받은 배가 시간이 지나서 들어 왔으니, 이미 매우 해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광양(光陽)은 끝내 들여보내지 않았으니, 본주에 영을 내려 배를 임대하여 실어 보내게 하고, 사목(事目)의 본의(本意)를 살펴서, 논벌(論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훗날 경칙(警飭)하게 해야 합니다. 광양현(光陽縣)의 해당 현감은 사목에 따라 파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태복등록에서 나옴】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재마선척.

1703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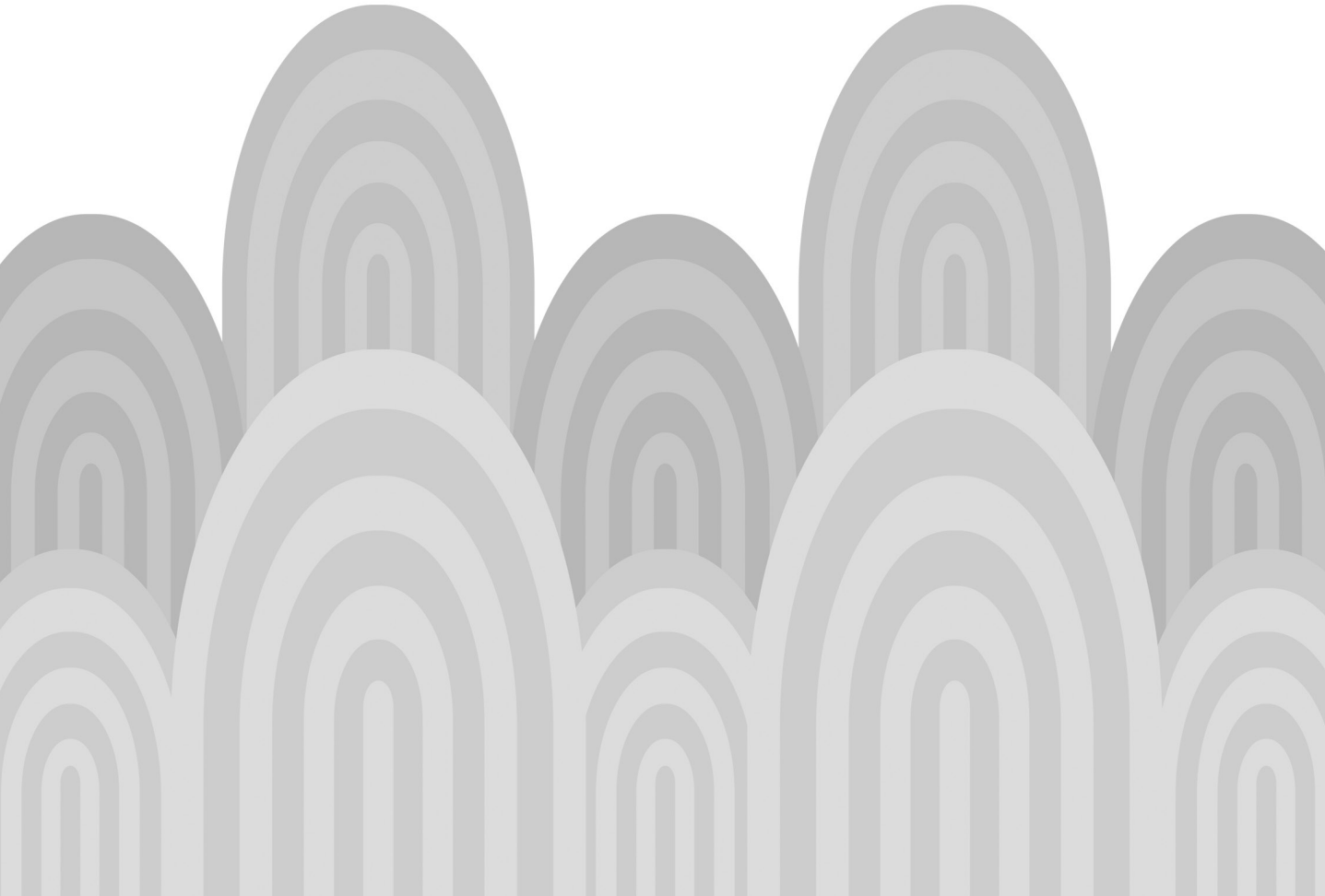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一月 二日 戊申

○ 濟州牧使書目, 本州及旌義縣良中, 十月初三日, 潮水海溢事.

❖ 숙종 29년(1703) 계미년 1월 2일(무신)

□ 10월 3일에 제주 등에 해일(海溢)이 발생했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書目)에, '본주(本州: 제주)와 정의현(旌義縣)에서 10월 초3일에 미세기[潮水]에 의해 해일(海溢)이 일어났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서목, 정의현, 해일.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一月 二十日 丙寅

○ 李震壽啓曰, 觀此濟州牧使李衡祥狀啓, 則以請遣試才御史事, 有所陳稟, 而至以廉察守令治績之意, 插入剩語, 已涉猥越, 且褒貶單子, 所當先送於本道兵營, 而直爲上送, 亦【缺】致有還給之敎, 其不察甚矣, 不可無警責之道, 推考, 何如? 傳曰, 允. 【燼餘】

❖ 숙종 29년(1703) 계미년 1월 20일(병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형상(李衡祥)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이진수(李震壽)의 계

○ 이진수(李震壽)가 이르기를, "이번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형상(李衡祥)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시재어사(試才御史)를 보내달라고 청하는 일로 진품(陳稟)한 바가 있는데, 겸하여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을 살피는 뜻에 있어서, 필요 없는 말을 끼워 넣은 것은 이미 외람된 데 관계되며, 또한 포폄(褒貶)하는 단자(單子)를 마땅히 먼저 본도(本道)의 병영(兵營)에 보내야 하는데도 바로 위로 올려 보냈으며, 또한 【빠짐】 환급(還給)하라는 하교까지 계셨는데, 살피지 않은 것은 심합니다,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도리가 없을 수가 없으니,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형상, 장계, 시재어사.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二月 十六日 辛卯

○ 備邊司啓目, 粘連濟州牧使狀啓云云, 本島, 本以海外之地, 距京師絶遠, 三邑人民, 無論儒武, 雖得鄕解, 而越海赴擧於京師者, 旣甚罕有, 則遠外人情之落莫, 實所不免, 王化隔遠, 民生疾苦, 無由導達, 欲見御史云者, 亦如狀啓內辭意是白乎旀, 曾前御史入去時, 儒生等製述, 雖有濫雜之弊, 而若因此永不入送, 則有同咽噎而廢食是白置, 試才御史, 各別擇差, 趁風和時入送, 一以慰悅遠人, 一以廉訪民隱, 以爲得宜. 以此該曹, 竝以分付, 何如? 啓依允.

❖ 숙종 29년(1703) 계미년 2월 16일(신묘)

□ 제주에 시재어사(試才御使)를 각별히 택차(擇差)해서 시기에 맞추어 입송(入送)하게 하기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목

○ 비변사의 계목(啓目)에 점련(粘連)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狀啓)에, "본도(本島: 제주도)는 본래부터 바다 밖에 있는 땅으로, 서울과의 거리가 매우 먼데다, 세 고을 인민들이 유무(儒武)를 논할 것 없이, 비록 향시(鄕試)에 합격하더라도 바다를 건너가서 경사(京師): 서울)에서 과거를 봐야 하는 자가 매우 드물게 있어왔습니다. 바다 밖 멀리 떨어져 있는 인정(人情)은 마음이 쓸쓸하여 실로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왕화(王化)와는 멀리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생의 질고를 상달할 길이 없습니다. 어사가 이르는 것을 보고자 하더라도 장계 안의 사의(辭意)가 이와 같으며, 일찍이 전 어사가 들어갈 때에도, 유생들을 제술(製述)하게 했는데, 남잡(濫雜)한 폐단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영원히 들이게 하지 않으면 작은 장애 때문에 긴요(緊要)한 일을 그만 두는 것이므로 시재어사(試才御史)를 각별하게 택차(擇差)해서 속히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잔잔할 때 들여보내서, 한 번에 원방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겸하여 백성의 고통을 살피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로서 해조(該曹)에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운운한 대목에 대해,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시재어사, 제술.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二月 二十六日 辛丑

○ 吏判金構所啓, 以濟州牧使李衡祥狀啓, 本州, 遣御史設科事, 覆啓允下矣. 第念遣御史設科, 實出於慰悅絶島民心之意, 而當此大殺之歲, 賑事方急, 此事猶爲彌久, 以牧使狀啓觀之, 其處亦不免飢饉云. 設科之時, 爲弊不貲, 且今年多風, 雖使及今發送, 候風越海之際, 遲速難定, 往返之間, 漸致節晩, 事勢多有難便者. 此非時月爲急之事, 姑待明年發送, 似當云, 外議如此, 未知何如? 上曰, 庚申年, 李增, 以尹昌亨査覈事兼行, 而厥後更不入送矣. 右相申琓曰, 海島絶遠, 不沾王化, 慰悅廉問之擧, 似不可已, 而庚申後, 今過二十餘年, 廢閣不行, 民多顒望. 故本州牧使, 有此狀聞之事, 而目今民事渴悶, 且聞本州未免飢荒云, 差出發送之際, 不無弊端, 待明年差遣, 似好矣. 上曰, 待明年差送, 可也.

❖ 숙종 29년(1703) 계미년 2월 26일(신축)

□ 김구(金構) 등이 제주에 어사(御史)를 보내 설과(設科)하는 일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문제를 논의함

○ 이판(吏判) 김구(金構)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형상(李衡祥)의 장계(狀啓)로 아뢰기를, "본주(本州: 제주)에 어사(御史)를 보내어 설과(設科)하는 일에 대하여 복계(覆啓)한 일에 대해 윤허를 내렸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어사를 보내어 설과(設科)하는 것은 실로 외딴 섬 백성들 마음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데서 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살(大殺)의 해를 당할 때는 진휼(賑恤)하는 일이 바야흐로 급합니다. 이 일은 오히려 매우 오래되어서 목사(牧使) 장계로서 본다면 그 처리 또한 굶주림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므로 설과할 때에는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록 사신을 이제라도 내보내면 바람을 기다렸다가 바다를 건널 때, 지속(遲速)이 예정키 어려우니,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점점 늦어지고 있어 사세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때와 달이 급하지 않은 일이니, 잠시 내년을 기다려 내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 하다고 합니다. 외간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신년(1680년, 현종 1년)에 이증(李增)이 윤창형(尹昌亨)을 사복(査覈)하는 일로 겸하여 갔는데 그 뒤에 다시 들여보내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우상(右相) 신완(申琓)이 아뢰기를, "해도(海島)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왕화(王化)가 미치지 못하여, 위열(慰悅)하고 염문(廉問)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듯합니다. 경신년 뒤로, 지금은 20여 년이 지났는데, 폐(廢)하여 두고 행하지 않았으니, 백성들이 많이 우러러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주(本州: 제주) 목사가 이와 같은 장문(狀聞)을 올리는 일이 있는 것이고, 지금 보건대 백성들 일이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듣건대 본주는 기황(飢荒)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므로, 차출하여 발송할 때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내년을 기다렸다가 차견(差遣)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년을 기다렸다가 차송(差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형상, 장계, 설과, 진휼.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三月 三日 戊申

○ 下直, 水原府使金德基, 濟州敎授金園皓.

❖ 숙종 29년(1703) 계미년 3월 3일(무신)

□ 제주교수(濟州敎授) 김원호(金園皓) 등이 하직함

○ 수원부사(水原府使) 김덕기(金德基)와 제주교수(濟州敎授) 김원호(金園皓)가 임금에게 작별인사를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교수, 김원호.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三月 三日 戊申

○ 政院啓曰, 卽伏見濟州牧使李衡祥啓本, 則吳始復, 罪名旣重, 加以栲棘, 則非如等閑編配之比, 而置諸稟秩, 已極駭然. 至於人才薦聞, 若無朝令, 則非外官之所敢爲, 而別薦多人, 奬詡太過, 事異常例, 殊涉猥越. 不可無警責之道,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已上吏曹謄錄】

❖ 숙종 29년(1703) 계미년 3월 3일(무신)

□ 이형상(李衡祥)을 추고함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지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형상(李衡祥)이 계본(啓本)을 살펴보니, 오시복(吳始復)은 죄명이 무거웠기 때문에 천극(栲棘)[667]을 더했던 것이었는데, 만약 편배(編配)[668]의 부류를 등한시 한 게 아닌데도 품질(稟秩)[669]에 넣은 것은, 지극히 놀라웠습니다. 인재를 추천하여 임금에게 아뢰는 데 있어서, 만약 조정의 명령이 없다면 외관(外官)이 감히 할 바는 아니라서 따로 많은 사람을 추천했는데 포장(褒奬)함이 너무 지나쳐서 일이 상례와 다르게 되어 너무나 외람됩니다. 이에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도리가 없을 수 없으니, 종중추고(從重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 이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형상, 오시복.

---

667) 천극(栲棘): 1) 가시울타리를 친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이 옷이 없어서 밖에 나가지 못함을 이르는 말. 2) 천극죄(조선 시대에 중죄인이 유배된 집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쳐서 외출을 못 하게 하던 형벌).

668) 편배(編配): 귀양 보낼 사람의 이름을 도류안(徒流案)에 적어 넣던 일.

669) 품질(稟秩): 임금에게 여쭙기 위하여 모아 놓은 문서철.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三月 五日 庚戌

○ 引見時, 大司諫李健命所啓, 請還收蒙宥罪人崔益望·河海雲·李文海·尹以寬等放釋之命, 竝爲仍囚, 依律定罪.【措辭見上】上曰, 勿煩. 又所啓, 大靜圍籬安置罪人吳始復, 罪狀已著於頃年鞫廳文案, 今不必更爲臚列, 而其探問服制之事, 已有無將之心, 締結宦寺, 交通兇陰之逕, 當初減死, 已極失刑, 至於柳沆不道之言, 宜伏肆市之典, 特以原疏之未徹, 屛之絶島矣. 今聞濟州牧使李衡祥放未放啓本中, 此兩罪人, 竝置之稟秩云. 其罔畏國法, 偏護私黨, 可謂無忌憚之甚者. 絶島守令, 旣是厭避之地, 則不可遞罷而止, 請濟州牧使李衡祥削奪官爵. 上曰, 依啓. …….

❖ 숙종 29년(1703) 계미년 3월 5일(경술)

□ 이건명(李健命)이 오시복(吳始復)과 유항(柳沆)을 품질에 올린 일로 이형상(李衡祥)의 삭탈관작(削奪官爵)을 청함

○ 임금이 신하를 만나볼 때, 대사간(大司諫) 이건명(李健命)이 아뢰기를, "청컨대, 몽유죄인(蒙宥罪人: 풀려난 죄인) 최익망(崔益望)·하해운(河海雲)·이문해(李文海)·윤이관(尹以寬) 등을 석방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 모두 그대로 옥에 가두고 법률에 따라 정배(定罪)하십시오."라고 하였다.【조사는 앞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 안치(安置)된 죄인 오시복(吳始復)의 죄상(罪狀)이 이미 국청문안(鞫廳文案)에 드러났는데, 복제(服制)를 탐문(探問)하였으니 불순한 마음을 덮을 수 없고, 환시(宦寺)를 결탁하여 궁궐 안의 일을 통하였으니 당초에 죽음을 용서한 것이 이미 크게 실형(失刑)한 것입니다. 유항(柳沆)의 부도(不道)한 말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사시(肆市) 의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인데, 특별히 원소(原疏)가 위에 전달되지 않은 이유로써 절도(絶島)에 귀양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형상(李衡祥)의 계본(啓本) 가운데 모두 품질(稟秩)에 두었으니,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당(私黨)을 치우치게 두호한 것으로 기탄함이 심히 없는 자라고 이를 만합니다. 청컨대 이형상은 관작(官爵)을 삭탈하소서."라고 하였다.[670]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 위리안치, 오시복, 국청문안.

---

670) 『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3월 5일(庚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三月 九日 甲寅

○ 禁府啓目, 粘連濟州牧使放未放啓本云云. 圍籬安置罪人吳始復, 入於稟秩中, 而諫臣, 旣以此請罪, 牧使李衡祥, 已蒙允兪, 則始復, 更無可論之事, 仍配之意回移. 他餘罪人, 令該曹稟處, 何如? 啓依允.

❖ 숙종 29년(1703) 계미년 3월 9일(갑인)

□ 오시복(吳始復)을 잉배(仍配)하고 다른 죄인은 해조(該曹)에서 품처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義禁府)의 계목

○ 의금부(義禁府) 계목(啓目)에 점련(粘連)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방미방계본(放未放啓本)[671]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한 죄인 오시복(吳始復)을 품질(稟秩) 안에 들여놓은 것은 간신(諫臣)[672]이 이를 이유로 죄주기를 청했고, 목사 이형상(李衡祥)이 이미 유윤(兪允: 마땅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오시복)을 다시 의논할 만한 일이 없으니, 그대로 유배하는 뜻으로 회의(回移)하고 다른 나머지 죄인들은 해조(該曹)에게 영을 내려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운운한 대목에 대해,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방미방계본, 오시복, 위리안치.

---

671) 방미방(放未放): 죄인을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는 것. 곧 죄인을 석방하는 것과 석방하지 않은 것.
672) 간신(諫臣): 1) 임금에게 옳은 말로 간하는 신하. 2) 간관(諫官). 조선 시대에 사간원과 사헌부에 속하여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고 백관(百官)의 비행을 규탄하던 벼슬아치.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三月 十一日 丙辰

○ 有政. 吏批, 以李喜泰爲濟州牧使, …….【吏曹謄錄】

❖ 숙종 29년(1703) 계미년 3월 11일(병진)

□ 이희태(李喜泰)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이희태(李喜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이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이희태, 제주목사.

❖ 康熙 四十二年 癸未 四月 十七日 壬辰

○ 下直, 濟州牧使李喜泰, 獘樹察訪權德載.

❖ 숙종 29년(1703) 계미년 4월 17일(임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 등이 하직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와 오수찰방(獘樹察訪) 권덕재(權德載)가 임금에게 작별인사를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희태.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五月 二十日 甲子

○ 入侍時, …… 又所啓, 臣伏見前濟州牧使李衡祥五味子進上狀啓判付, 則自上有勿爲封進之敎, 處分實甚得當矣. 臣子, 誰無芹曝之微誠, 而享上事體, 極爲重大, 雖有佳味, 定式之外, 不敢進獻, 道理然也. 本州五味子, 旣非定式進上之物, 則衡祥, 何敢創自進獻, 而其不爲先稟, 猝然封進, 尤極駭然, 宜有問備之擧, 敢此仰達. 上曰, 所達然矣. 推考, 可也. …….【已上禮曹謄錄】

❖ 숙종 29년(1703) 계미년 5월 20일(갑자)

□ 김진구(金鎭龜)가 입시하여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형상(李衡祥)이 제주의 오미자를 진상한 문제 등을 논의함

○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뵐 때, 〈중략〉 또 아뢰기를, "신(臣)이 엎드려 보옵건대,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형상(李衡祥)이 오미자(五味子)를 진상한 장계(狀啓)를 판부(判付)[673]했는데, 임금에서부터 봉진하지 말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처분하는 것이 심히 마땅하옵니다. 신하된 자들 중 누가 근폭(芹曝)[674]의 미성(微誠: 조그만 정성)이라도 보이려 하지겠습니까? 위에 바치는 일은 지극히 중대하여, 맛난 것이 있으면 정식(定式) 외에 감히 진헌(進獻)하지 못하는데 도리가 그렇습니다. 본주(本州: 제주)의 오미자는 정식(定式)으로 진상하는 물품이 아니라서, 이형상이 어찌 감히 진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우선 문의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봉진한 것은 더욱 해괴하오니, 마땅히 문비(問備)[675]하는 거조가 있어야 하겠으니 감히 이것을 우러러 주달(奏達)하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것은 그런 것 같으니, 추고(推考)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이형상, 오미자.

---

673) 판부(判付): 상주(上奏)한 안(案)을 임금이 허가하던 일.

674) 근폭(芹曝): 옛날 중국의 어떤 농민이 싱싱한 봄 미나리를 임금에게 바치려 하고, 겨울에 따스한 햇볕의 쬐임을 임금에게 바치려고 했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로, 갸륵한 충성심을 이름.

675) 문비(問備): 죄가 있는 관원을 조사 신문하는 일.

❖ 康熙 四十二年 癸未 六月 五日 己卯

○ 又所啓, 此乃濟州牧使李衡祥狀啓也, 南北則皆有步撥, 西路則別置撥馬, 而本島, 以海外別域, 凡干狀啓, 以島中疲殘之民, 輪回定送, 莫重邊報, 動輒稽緩, 當此海防申飭之日, 不可一任襲謬云. 南北則旣有步撥, 西路則置撥馬, 而濟州邈在絶域, 以島中殘氓, 持送狀啓, 直抵京城, 動經數月, 邊情之疏虞, 莫此爲甚. 此後則濟州狀啓, 送于都會官, 使驛路次次上送之意, 知委三道, 使之依此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

❖ 숙종 29년(1703) 계미년 6월 5일(기묘)

□ 신완(申琓)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에서 장계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또 아뢰기를, "이것은 곧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형상(李衡祥)의 장계(狀啓)입니다. 남북(南北)에는 모두 보발(步撥)[676]이 있고, 서로(西路)에는 따로 발마(撥馬)[677]를 두었는데, 본도(本島: 제주도)는 바다 밖의 특별 구역이기 때문에 무릇 장계(狀啓)를 올려서 섬 안의 피폐하고 쇠잔한 백성에게 돌아가며 정송(定送)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보(邊報)[678]는 막중한 것인데, 걸핏하면 더디고 느즈러져서, 해방(海防)을 신칙하는 날을 당하여 한결 같이 그대로 답습(踏襲)하기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남북에는 이미 보발이 있고, 서로에는 발마를 두었는데, 제주(濟州)는 까마득히 먼 곳에 있어서, 섬 안의 피폐하고 쇠잔한 백성들이 장계(狀啓)를 가지고 보내서 바로 경성(京城)에 다다른 것이 걸핏하면 두어 달이 걸렸습니다. 변정(邊情)에서 잘못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는 제주 장계를 도회관(都會官)으로 보내어, 역로(驛路)로 하여금 차례차례로 위로 올라오게 하는 뜻으로 삼도(三道)에 알리고, 그로 하여금 이에 따라 사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형상, 장계.

---

676) 보발(步撥): 조선 시대에 걸어서 급한 공문을 전하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또는 그 공문. 남북로에 두었는데, 북발은 경기도 양주에서부터 함경도 경원까지, 남발은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경상도 동래까지 각각 맡았다. =보발꾼.

677) 발마(撥馬): 발군(撥軍: 각 역참에 속하여 중요한 공문서를 교대 교대로 변방에 급히 전하던 군졸. 보발(步撥)과 기발(騎撥)이 있었음.)이 타던 역마(驛馬).

678) 변보(邊報): 변경에서 보내온 위급한 소식.

❖ 康熙 四十二年 癸未 六月 五日 己卯

○ 入侍時, 右議政申琓所啓, 此乃前濟州牧使李衡祥狀啓也, 南北則皆有步撥, 西路則別置撥馬, 而本島, 以海外別域, 凡干狀啓, 以島中疲殘之民, 輪回定送, 莫重邊報, 動輒稽緩, 當此海防申飭之日, 不可一任襲謬云. 南北則旣有步撥, 西路則別置撥馬, 而濟州邈在絶域, 以島中殘氓, 持送狀啓, 直抵京城, 動經數月, 邊情之疎虞, 莫此爲甚. 此後則濟州狀啓, 送于都會官, 使驛馬次次上送之意, 知委三道, 使之依此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兵曹謄錄】

❖ 숙종 29년(1703) 계미년 6월 5일(기묘)

□ 신완(申琓)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에서 장계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신하들이 들어가서 임금을 뵐 때, 우의정(右議政) 신완(申琓)이 아뢰기를, "이것은 곧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형상(李衡祥)이 장계(狀啓)입니다. 남북에는 모두 보발(步撥)이 있고, 서로(西路)에는 따로 발마(撥馬)를 두었는데, 본도(本島: 제주도)는 바다 밖의 특별 구역이라서, 무릇 장계를 올려서 섬 안의 피폐하고 쇠잔한 백성에게 돌아가며 정송(定送)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보(邊報)는 막중한 것인데, 걸핏하면 더디고 느즈러져서, 해방(海防)을 신칙하는 날을 당하여 한결 같이 그대로 답습(踏襲)하기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남북에는 이미 보발이 있고, 서로에는 발마를 두었는데, 제주(濟州)는 까마득히 먼 곳에 있어서, 섬 안의 피폐하고 쇠잔한 백성들이 장계를 가지고 보내서 바로 경성(京城)에 다다른 것이 걸핏하면 두어 달이 걸렸습니다. 변정(邊情)에서 잘못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는 제주 장계를 도회관(都會官)으로 보내어, 역로(驛路)로 하여금 차례차례로 위로 올라오게 하는 뜻으로 삼도(三道)에 알리고, 그로 하여금 이에 따라 사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병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형상, 장계.

❖ 康熙 四十二年 癸未 六月 五日 己卯

○ 入侍時, 右議政申琓所啓, 我國所產之馬, 絶無御乘可合, 每爲留意, 或取良種, 別爲放牧, 冀得可用之馬矣. 濟州牧使替任之後, 例進替任馬, 而前牧使李衡祥, 取牛島別放之馬, 擇送三匹, 以爲未瓜之人, 不必封進, 而此馬, 善爲調養, 則或可用於御乘云, 觀其才品, 雖未知前頭必爲可用, 而比前差大, 又有步才矣. 鄭斯玄, 素稱知馬, 故使之看審, 則其中二匹最好, 善爲調馴, 則或不無成才之望云, 故欲給喂養之資, 牽馬之人, 勤加調馴, 而旣入內廐, 故敢此仰達, 分付出給, 何如? 上曰, 依爲之.【司僕謄錄】

❖ 숙종 29년(1703) 계미년 6월 5일(기묘)

□ 신완(申琓)이 입시하여 어승마(御乘馬)를 훈련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신하들이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뵐 때, 우의정(右議政) 신완(申琓)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난 말은 절대로 임금이 타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유의하여 혹 좋은 품종을 취하여 따로 놓아기르게 하고 쓸 만한 말을 얻기를 바라왔습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가 교체되어 부임한 뒤에 전례에 따라 체임마(替任馬)를 진상했는데, 전 목사 이형상(李衡祥)이 소섬[牛島]에서 따로 방목한 말을 취해서 3필을 가려 보내면서 말하기를 '기한이 차지 않은 사람이어서 봉진할 필요가 없지만, 이 말들은 조양이 매우 잘되었으니 혹 어승마(御乘馬)로 쓸 만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재품(才品)을 보건대, 비록 앞으로 반드시 쓸 만한지 알지 못하지만 전보다 조금 커졌으며 또 걷는 데도 재주가 있습니다. 정사현(鄭斯玄)은 본래 말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일컬어졌으므로 그로 하여금 잘 살피게 하니, 그 가운데 2필은 아주 좋아서 잘 조련하고 훈련시키면 혹 재능을 이룰 기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견마(牽馬)하는 이들에게 외양(喂養)의 물자를 공급해주고, 부지런히 조훈(調馴)을 더해 얼마 있다가 내구(內廐)에 들이려 하기에 감히 이렇게 앙달하오니, 물자를 내주도록 분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사복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체임마.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七月 十八日 壬戌

○ 有政. 吏批, …… 金錫民爲濟州判官, …….

❖ 숙종 29년(1703) 계미년 7월 18일(임술)

□ 김석민(金錫民)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이르기를, "〈중략〉 김석민(金錫民)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김석민, 제주판관.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七月 二十一日 乙丑

○ 入侍時, 右議政申琓所啓, 每年分養馬數六百匹, 濟州歲貢馬, 各牧場所在之馬, 從其多少, 充數分給各官矣. 今年貢馬, 只是二百六十八匹, 其中賜給除出後, 分養元數, 無以充給矣. 諸牧場中, 南陽牧場之馬, 其數頗優, 限五十匹捉出, 充給分養, 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濟州牧使遞任別馬, 似有調習成就之望, 故已爲啓稟, 而景福將鄭斯玄, 使之留養於直所, 蓋其處廣闊, 草場亦好, 便於放牧調習故也. 鄭斯玄所帶衛將, 今已瓜滿將遞之矣, 旣遞之後, 出入調養, 事多難便, 鄭斯玄, 分付兵曹, 今姑仍存, 使之調習馴養, 宜當, 故敢此仰達. 上曰, 以此分付, 可也.【司僕謄錄】

❖ **숙종 29년(1703) 계미년 7월 21일(을축)**

□ **신완(申琓)이 입시하여 남양(南陽) 목장의 말을 분양마(分養馬)로 충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신하들이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뵐 때, 우의정(右議政) 신완(申琓)이 아뢰기를, "매년 나누어 기르게 한 말의 수는 600필이고, 제주(濟州)의 세공마(歲貢馬)는 각 목장에 있는 말을 그 많고 적음에 따라 수를 충원하고 각 관(官)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올해 공마(貢馬)는 다만 268필인데, 그 가운데 사습(賜給: 賜與)한 것을 덜어낸 뒤에 나누어 기르게 했으니 원수(元數)는 충원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목장 가운데, 남양(南陽) 목장의 말은 그 수가 그 수가 자못 넉넉하여, 50필을 한(限)으로 착출(捉出)하고 충원해 줘서 나누어 기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체임별마(遞任別馬)는 정숙하게 훈련시키면 성취(成就)하게 될 가망이 있을 것 같으므로 이미 계품(啓稟)하였습니다. 경복궁(景福宮) 위장(衛將) 정사현(鄭斯玄)으로 하여금 숙직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기르게 했습니다. 무릇 그곳은 광활(廣闊)한 데다, 초장(草場) 또한 좋아서 방목하면서 보살피고 다스리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정사현은 위장(衛將)의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지금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체직하게 되었습니다. 체직한 뒤에 말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데 나드는 일에는 난처한 일이 많습니다. 정사현의 경우, 병조(兵曹)에 분부하여 지금 잠시 그대로 있게 하고, 그로 하여금 말을 보살피고 다스리면서 훈련시키면서 키우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것을 우러러 주달(奏達)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에 따라 분

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사복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세공마, 제주목사, 체임별마.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七月 二十五日 己巳

○ 尹弘离,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歲貢進上先後運馬, 一時來到之數, 二百八十九匹內, 二匹, 船中故失, 十四匹, 中路病留, 合十六匹計除, 實納馬二百七十三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29년(1703) 계미년 7월 25일(기사)

□ 제주 진상마(進上馬) 273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윤홍리(尹弘离)가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세공(歲貢)으로 진상한, 선·후운마(先後運馬)[679]가 일시에 내도했는데, 그 수가 289필입니다. 그 안에, 2필은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사고로 잃어버리고, 14필은 중간에서 병으로 남겨진 것 등을 합한 16필을 계산하여 제외하고, 실제 납한 말은 273필입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세공마, 선·후운마.

679) 선운마(先運馬): 먼전 운반해 온 말, 후운마(後運馬)는 나중에 운반해 온 말.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七月 二十九日 癸酉

○ 入侍時, 禮曹判書閔鎭厚所啓, …… 又所啓, 濟州牧使李衡祥, 曾以本州風雲雷雨祭, 非州縣所敢行之意, 啓聞, 禮曹回啓, 使之撤罷矣. 今此啓聞中以爲, 非但本州爲然, 旌義·大靜亦如此, 城隍位版, 奉安官廳, 癘祭時行禮於北郊, 此外又造城隍位版, 別藏社稷壇, 與山川位版竝祭於風雲雷雨, 別造之山川位版, 疊造之城隍位版, 竝宜撤罷, 且埋安時告由祭, 不爲擧論, 令該曹更爲稟處云云. 蓋禮雖有有擧無廢之文, 而今此濟州事, 則雖襲耽羅之舊例, 旣非典禮所載, 守臣以此狀聞, 該曹覆啓撤罷, 則今無可論之事. 至於旌義·大靜之山川城隍位版, 尤極無名, 亦當一體埋安, 而埋安時, 不可無告由之擧. 祭文及香祝等事, 令各該司擧行, 而祭文香祝下去後, 隨時卜日埋安之意, 亦爲分付於濟州牧使, 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李衡祥狀啓中一條以爲, 州縣社稷, 只祭正位, 無配位則本州則造配位位版, 元無行祭之時, 只於祈雨祭時, 竝祭正位, 依風雲雷雨之例, 告由埋安之意, 令該曹稟處云云. 此亦非禮典所載, 一體告由埋安, 何如? 上曰, 依爲之.【禮曹謄錄】

❖ 숙종 29년(1703) 계미년 7월 29일(계유)

□ 민진후(閔鎭厚) 등이 입시하여 제주의 성황위판(城隍位版) 등을 매안(埋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신하들이 궁궐에 들어가 임금을 뵐 때,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중략〉"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형상(李衡祥)은 일찍이 본주(本州: 제주)의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가 주현(州縣)에서 감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계문(啓聞)을 했는데, 예조(禮曹)에서 회계(回啓)하여 철파(撤罷)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계문 안에, '다만 본주(本州: 제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의(旌義)·대정(大靜)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황(城隍)의 위판(位版)은 관청(官廳)에 봉안하고, 여제(癘祭)를 지낼 때는 북교(北郊)에서 예를 행하고, 이외에 또 성황(城隍)의 위판(位版)을 만들어, 따로 사직단에 보관하고, 산천(山川)의 위판과 함께 모두 풍운뇌우에 제를 행한다고 합니다. 따로 산천의 위판을 만들고, 거듭 성황의 위판을 만든 것 등 모두가 철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신주를 무덤 앞에 묻을 때 고유제(告由祭)를 거론(擧論)할 것도 없이 해조(該曹)에 영을 내려 다시 품처(稟處)하게 해야 한다'고 운운했습니다. 무릇 예(禮)에는 비록 거행이 있어도 폐지하는 문장이 없을 수도 있으니, 지금 이 제주

(濟州)의 일은 곧 탐라(耽羅)의 옛 예를 답습한 것으로, 이미 전례(典禮)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신(守臣)이 이와 같이 장문(狀聞)을 올려 해조(該曹)에게 복계(覆啓)하여 철파했으니, 지금 논의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의·대정의 산천과 성황의 위판의 경우에도 더욱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일체의 매안(埋安)의 경우도 매안할 때 고유(告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제문(祭文)과 향축(香祝) 등의 일은 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고, 제문과 향축을 내려 보낸 뒤에, 때를 따라 날을 잡아 매안할 뜻으로 이 역시 제주목사(濟州牧使)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형상(李衡祥)은 장문(狀啓) 안에 한 조목에서 말하길, '주현(州縣)의 사직(社稷)은 다만 정위(正位)를 제사지내고, 배위(配位)는 없으니, 제주는 배위의 위판을 만들어서 원래 제를 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기우제(祈雨祭)를 지낼 때는 모두 정위에 제를 지내고, 풍운뇌우의 예에 따라, 고유하고 매안하게 하는 뜻을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야 한다'고 운운하였습니다. 이 역시 예전(禮典)에 실려 있지 않으니, 일체를 고유하고 매안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정의, 정의, 탐라, 이형상, 풍운뇌우제, 성황위판, 산천위판.

❖ 康熙 四十二年 癸未 八月 六日 己卯

○ 今春夏等褒貶, 旌義縣監朴尙夏, 中.

❖ 숙종 29년(1703) 계미년 8월 6일(기묘)

□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상하(朴尙夏)의 춘하 등 포폄 성적

○ 올 봄과 여름 등의 포폄(褒貶)에서,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상하(朴尙夏)가 중(中)이었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박상하, 포폄.

❖ 康熙 四十二年 癸未 八月 七日 庚辰

○ 金萬埰, 以禮曹言啓曰, 去七月二十九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禮曹判書閔鎭厚所啓, 濟州前牧使李衡祥狀啓中一條云云事, 收議於諸大臣而稟處, 何如, 上曰, 依爲之事, 命下矣. 議于大臣 則領議政申琓以爲, 凡大小州縣境內, 有名山大川之處, 皆載祀典, 則漢拏以海外名山, 獨爲見漏, 似欠於禮典, 該曹啓辭, 所謂五禮儀未成之前, 耽羅未順之時, 故因此落漏云者, 似是實狀, 而內附之後, 因循未及擧行者也. 旣以其虧闕爲欠, 則及今追載祀典, 無所妨礙【二行缺】伏惟上裁. 行判中樞〈府〉事□□□, 行判中樞府事徐文重病不收議, 右議政金構未肅拜, 領中樞府事尹趾完, 判中樞府事崔錫鼎, 左議政李畬在外, 不得收議, 大臣之意如此, 上裁, 何如? 傳曰, 病不收議及在外未肅拜大臣處, 問議, 宜矣.

❖ 숙종 29년(1703) 계미년 8월 7일(경진)

□ 한라산을 사전(祀典)에 등재하는 일에 대해 대신에게 수의(收議)한 결과를 보고하는 예조(禮曹)의 계

○ 김만채(金萬埰)가 예조(禮曹)의 말로 아뢰기를, "지난 7월 29일에 대신(大臣)과 비국당상(備局堂上)을 불러서 만나보고, 신하들이 임금을 뵐 때 예조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소계(所啓)한 제주(濟州) 전 목사 이형상(李衡祥)의 장계(狀啓) 안의 1조(一條) 운운했던 일[680]은 여러 대신에게 받아들여서 논의하고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묻자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할 일'이라고 명하(命下)하였습니다. 대신에게 의논하니, 영의정 신완(申琓)이 말하기를, "무릇 대소의 주현(州縣)의 경내(境內)에 명산(名山)과 대천(大川)이라는 곳이 있는데, 모두 사전(祀典: 제사를 지내는 禮典)에 실려 있다. 곧 한라산은 바다 밖에 있는 명산으로, 유독 이 산만 누락되었으니 예전(禮典)에 누락된 듯합니다. 해조(該曹)의 계사(啓辭)에, 소위 『오례의(五禮儀)』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 아니라, 탐라(耽羅)가 아직 순응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낙루(落漏)했다고 한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내부(內附)[681]한 뒤에도 낡은 인습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거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휴궐(虧闕)에 흠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사전(祀典)에 추가하여 싣고, 방애(妨礙)될 것이 없습니다. 【2행 빠짐】 삼가 엎

680) 1703년(숙종 29) 7월 29일(계유) 기사에 그 내용이 보임.
681) 내부(內附):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안으로 들어가 붙음.

드려 생각하옵건대, 임금의 재가가 있어야 합니다.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서문중(徐文重)은 병으로 수의(收議)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의정 김구(金構)는 아직 숙배(肅拜)[682]하지 않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윤지완(尹趾完),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최석정(崔錫鼎), 좌의정(左議政) 이여(李畬)는 밖에 있어서 수의(收議)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의 뜻이 이와 같으니 임금이 재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병으로 수의하지 못하고 밖에 있어서 숙배하지 못한 대신에게 문의(問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이형상, 장계, 탐라, 한라산.

682) 숙배(肅拜): 1) 백성들이 왕이나 왕족에게 절을 하던 일. 또는 그 절. 통례원에서 관장하였다. 2) 서울을 떠나 임지(任地)로 가는 관원(官員)이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던 일. 3) 삼가 정중하게 절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에게 하는 편지 끝에 쓰는 말.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九月 五日 戊申

○ 禮曹啓曰, 因大臣獻議, 傳曰, 漢拏山以海外名山, 獨不入於祀典, 未免欠闕, 依領議政施行宜矣事, 命下矣. 取考祭享謄錄及香室儀軌, 則名山大川節祭, 正月·二月·八月竝爲設行, 而三角山·松嶽山·智異山·竹嶺山·天佛山·主屹山·紺岳山·義館嶺·鷄龍山·錦城山·木覓山·五冠山等祭祝文中, 無國王姓諱, 以此觀之, 則今此濟州漢拏山祭禮, 及祝文式, 依雉岳山等祭禮擧行, 似合事宜, 以此分付, 何如? 傳曰, 允.

❖ 숙종 29년(1703) 계미년 9월 5일(무신)

□ 제향등록(祭享謄錄)을 살펴본 결과 한라산의 제례(祭禮)는 치악산 등의 제례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예조(禮曹)의 계

○ 예조(禮曹)에서 아뢰길, "대신(大臣)들의 의견을 아뢴 일로 전교하기를, '한라산은 바다 밖의 명산인데 홀로 사전(祀典)에 들지 못했음은 흠궐(欠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영의정의 의견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명하(命下)하였습니다. 『제향등록(祭享謄錄)』과 『향실의궤(香室儀軌)』를 취해서 상고하니, 명산(名山)과 대천(大川)의 절제(節祭)는 정월(正月)·이월(二月)·팔월(八月)에는 모두 설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삼각산(三角山)·송악산(松嶽山)·지리산(智異山)·죽령산(竹嶺山)·천불산(天佛山)·주흘산(主屹山)·감악산(紺岳山)·의관령(義館嶺)·계룡산(鷄龍山)·금성산(錦城山)·목멱산(木覓山)·오관산(五冠山) 등의 제축문(祭祝文) 가운데, 국왕의 성(姓)·휘(諱)가 없는데, 이것을 보노라면, 지금 제주(濟州) 한라산(漢拏山)의 제례(祭禮)와 축문식(祝文式)은 치악산(雉岳山) 등의 제례(祭禮)에 따라 거행하게 하는 것이 형편상 합당할 듯합니다. 이로써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683]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한라산, 제례.

683) 『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7월 29일(계유)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九月 九日 壬子

○ 下直, 濟州判官金錫民, 省峴察訪李明淵, 仁遮外萬戶沈逵.

❖ 숙종 29년(1703) 계미년 9월 9일(임자)

□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석민(金錫民) 등이 하직함

○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석민(金錫民)과 성현찰방(省峴察訪) 이명연(李明淵), 인차외만호(仁遮外萬戶) 심규(沈逵) 등이 임금에게 작별인사를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김석민.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九月 九日 壬子

○ 又啓曰, 漢挐山祭禮, 及祝文式例, 雉岳山等祭例擧行事, 啓下矣. 獻官則本州牧使親行, 諸執事則以前朝官與儒品中差定, 或牧使有故, 則以大靜·旌義兩邑守令代行, 祭物則一依本道智異·錦城山等例, 措備擧行之意, 本道監司處, 分付, 何如? 傳曰, 允.

❖ 숙종 29년(1703) 계미년 9월 9일(임자)

□ 한라산(漢拏山)의 제례 및 축문 식례(式例)를 거행하는 방법에 대한 례조(禮曹)의 계

○ 또 아뢰기를, "한라산(漢挐山)의 제례(祭禮)와 축문식(祝文式)의 예는 치악산(雉岳山) 등의 제의 예로 거행할 일이라고 계하(啓下)하였습니다. 헌관(獻官)은 본주(本州: 제주) 목사가 친히 행하고, 제집사(諸執事)는 전 조관(朝官)이 하고, 더불어 유품(儒品) 가운데서 차정(差定)하고, 혹 목사가 유고(有故)하면 대정(大靜)·정의(旌義) 두 고을 수령이 대행하고, 제물(祭物)은 한결같이 본도의 지리산과 금성산 등의 예에 따라 조비(措備)하여 거행할 뜻으로 본도(本道) 감사(監司)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한라산, 제례, 대정, 정의.

❖ 康熙 四十二年 癸未 九月 十一日 甲寅

○ 兵批, …… 濟州監牧官單金羽遷.【兵曹謄錄】

❖ 숙종 29년(1703) 계미년 9월 11일(갑인)

□ 김우천(金羽遷)을 감목관(監牧官)에 제수함

○ 병비(兵批)에, 〈중략〉 제주(濟州) 감목관(監牧官)에 김우천(金羽遷)을 단망(單望)[684]하였다.【병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감목관, 김우천.

684) 단망(單望): 조선 시대에 관리를 천거할 때 세 사람을 추천하는 삼망(三望)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한 사람만을 추천하던 일.

❖ 康熙 四十二年 癸未 十月 十四日 丙戌

○ 禁府, 宋晟濟州牧, 李聖輝羅州牧智島, 吳碩夏大靜縣, 洪受禹巨濟縣, 金麟至順天府防踏鎭, 李秀哲康津縣古今島, 李道徵興陽縣鹿島, 朴泰晦珍島郡, 鄭順億羅州牧黑山島, 閔時俊旌義縣, 朴弼渭珍島郡金甲島, 爲奴定配. 啓.

❖ 숙종 29년(1703) 계미년 10월 14일(병술)

□ 의금부(義禁府)에서 송성(宋晟)[685] 등을 제주목 등의 노비로 삼아 정배했다고 아룀

○ 금부(禁府)에서, 송성(宋晟)을 제주목(濟州牧)으로, 이성휘(李聖輝)를 나주(羅州) 목지도(牧智島)로, 오석하(吳碩夏)를 대정현(大靜縣)으로, 홍수우(洪受禹)를 거제현(巨濟縣)으로, 김린(金麟)을 지순천부(至順天府) 방답진(防踏鎭)으로, 이수철(李秀哲)을 강진현(康津縣) 고금도(古今島)로, 이도징(李道徵)을 흥양현(興陽縣) 녹도(鹿島)로, 박태회(朴泰晦)를 진도군(珍島郡)으로, 정순억(鄭順億)은 나주목(羅州牧) 흑산도(黑山島)로, 민시준(閔時俊)을 정의현(旌義縣)으로, 박필위(朴弼渭)를 진도군(珍島郡) 금갑도(金甲島)로, 사내종으로 삼아 정배(定配)한다고 아뢰었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송성, 제주목, 오석하, 대정현, 민시준, 정의현.

685) 과옥(科獄)과 관련되어 제주로 유배되었던 인물임.

❖ 康熙 四十二年 癸未 十一月 十三日 甲寅

○ 啓覆時, …… 李畬曰, 受濾, 旣遭臺彈之後, 迫令改配, 恐有損於使臣以禮之道, 臣雖因陳箚, 以差出次官擧行爲請, 而至於循私與否, 臣旣與受濾有姻嫌, 不敢有所與論矣. 判府事徐文重曰, 當初分配, 雖非出於循私, 而臺啓, 旣以近地爲言, 至有改配之命, 則一併逐濟州·黑山等處, 可矣. 有司之臣, 只當奉行, 而如是仰達, 事體未安矣. 上曰, 崔啓翁疏中循私二字, 固已非之, 而臺臣, 旣以地近爲言, 則不可不改配, 以嚴懲礪之意, 非以受濾爲循私而然也. 諸罪人, 一併改配於濟州·黑山島等處, 可也.【以上朝報】

❖ 숙종 29년(1703) 계미년 11월 13일(갑인)

□ 계복(啓覆)에 이여(李畬) 등이 입시하여 과옥(科獄) 죄인의 배소(配所)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계복(啓覆)할 때, 〈중략〉 이여(李畬)가 아뢰기를, "홍수헌(洪受濾)은 이미 대간의 탄핵 이후, 명령이 임박해서 고쳐서 유배 보내게 했습니다. 신하를 예로써 부린다는 도리에 손상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臣)이 비록 차자(箚子)를 올린 것으로 인해, 차관(次官)을 차출하여 거행할 것을 청하였으나 순사(循私)의 여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이 이미 홍수헌과 더불어 인혐(姻嫌)[686]이 있기에, 감히 여론이 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서문중(徐文重)이 아뢰기를, "당초에 이 사람들을 나누어 귀양 보냈는데, 사사로운 정을 따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대계(臺啓)에서 이미 가까운 땅을 말하여 개배(改配)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모조리 제주(濟州)·흑산(黑山) 등지로 내쫓는 것이 옳습니다. 유산(有司)의 신하는 다만 봉행(奉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우러러 주달(奏達)하는 사체(事體)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럽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최계옹(崔啓翁)의 소(疏) 안에 순사(循私: 사사로움에 따름)라는 두 글자로써, 이미 비난을 받았다. 대신은 이미 가까운 땅으로 하라고 했으니, 개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엄하게 징계하려는 뜻으로 한 것이지, 홍수헌이 순사하여 그리된 것은 아니다. 모든 죄인은 한꺼번에 제주(濟州)·흑산도(黑山島) 등의 땅으로 개배하는 것이 옳도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조보에 의함】

---

686) 인혐(姻嫌): 인척(姻戚) 관계로 인하여 남에게 받을 수 있는 혐의.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개배.

❖ 康熙 四十二年 癸未 十一月 十六日 丁巳

○ 禁府, 宋晟·李道徵大靜縣, 李聖輝·李秀哲·朴泰晦濟州牧, 吳碩夏·洪受禹·鄭順億·閔時俊黑山島, 金麟至·朴弼渭旌義縣, 爲奴改配, 洪時紀巨濟縣, 愼之逸南海縣, 趙衛漢興陽縣, 減死定配, 柳渭光陽縣, 邊遠定配. 啓.

❖ 숙종 29년(1703) 계미년 11월 16일(정사)

□ 의금부(義禁府)에서 송성(宋晟) 등을 정배(定配)하였다고 아룀

○ 금부(禁府)에서, 송성(宋晟)·이도징(李道徵)을 대정현(大靜縣)으로, 이성휘(李聖輝)·이수철(李秀哲)·박태회(朴泰晦)를 제주목(濟州牧)으로, 오석하(吳碩夏)·홍수우(洪受禹)·정순억(鄭順億)·민시준(閔時俊)을 흑산도(黑山島)로, 김인지(金麟至)·박필위(朴弼渭)를 정의현(旌義縣)으로 보내 사내종으로 삼고 개배(改配)하고 홍시기(洪時紀)는 거제현(巨濟縣)으로, 신지일(愼之逸)은 남해현(南海縣)으로, 조위한(趙衛漢)은 흥양현(興陽縣)으로, 사형을 줄이고 정배(定配)하고, 유위광(柳渭)을 광양현(光陽縣)으로 변원(邊遠) 정배(定配)한다고 아뢰었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 정의현, 제주목.

❖ 康熙 四十二年 癸未 十一月 十九日 庚申

○ 禁府啓曰, 罪人愼之逸·洪時紀·趙衛漢等配所單子, 旣已啓下, 故發配次放送矣. 臺諫, 方以更加嚴問依律定罪, 論啓, 押去羅將, 姑勿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禁府謄錄】又啓曰, 科獄罪人配所, 依榻前定奪, 纔已改定矣. 其中黑山島爲奴罪人吳碩夏, 家在羅州云, 黑山島, 亦是羅州之地, 則不可定配於所配之邑. 以前配大靜縣, 仍定配所, 元單子中, 改付標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禁府謄錄】

❖ 숙종 29년(1703) 계미년 11월 19일(경신)

□ 죄인 오석하(吳碩夏)의 집이 나주(羅州)에 있다고 했으므로 흑산도(黑山島)도 나주 땅이니 배소(配所)의 고을에 정배(定配)할 수가 없으니 대정현(大靜縣)에 잉배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금부(禁府)에서 아뢰기를, "죄인 신지일(愼之逸)·홍시기(洪時紀)·조위한(趙衛漢) 등에 대한 배소단자(配所單子)는 이미 계하(啓下)하였으므로, 발배(發配)하는 것으로 방송(放送)하였습니다. 대간(臺諫)이 바야흐로다시 엄문(嚴問)을 더하여 법률에 따라 정배(定罪)하였는데, 논계(論啓)하여 나장(羅將)을 압거(押去)하여, 잠시 발송하지 않을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금부등록에 의함】 또 아뢰기를, "과옥(科獄) 죄인의 배소(配所)는 임금의 자리 앞에서 정탈(定奪)하고 잠시 이미 개정(改定)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흑산도(黑山島)에 사내종으로 삼은 죄인 오석하(吳碩夏)의 집이 나주(羅州)에 있다고 했으므로 흑산도(黑山島)도 나주 땅이니 배소(配所)의 고을에 정배(定配)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대정현(大靜縣)에 유배되었는데, 그대로 유배지에 있게 하는 원단자(元單子)의 내용을 개부표(改付標)하여 들이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금부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 오석하.

❖ 康熙 四十二年 癸未 十一月 二十一日 壬戌

○ 禁府, 李文興, 楊州延曙驛徒三年定配, 科獄罪人吳碩夏, 大靜縣仍配. 啓.

❖ 숙종 29년(1703) 계미년 11월 21일(임술)

□ 오석하(吳碩夏)를 대정현(大靜縣) 잉배(仍配)하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이문흥(李文興)을 양주(楊州) 연서역(延曙驛)에 도(徒) 3년에 정배(定配)하고, 과옥(科獄) 죄인 오석하(吳碩夏)를 대정현(大靜縣) 잉배(仍配)한다고 아뢰었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오석하, 대정현.

❖ 康熙 四十二年 癸未 十二月 二十一日 壬辰

○ 以柳璹爲安城郡守, …… 金弘瑞爲大靜縣監, …….【吏曹謄錄】

❖ 숙종 29년(1703) 계미년 12월 21일(임진)

□ 김홍서(金弘瑞)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유상(柳璹)을 안성군수(安城郡守)로 삼고, 〈중략〉, 김홍서(金弘瑞)를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이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김홍서, 대정현감.

❖ 康熙 四十二年 癸未 十二月 二十四日 乙未

○ 謝恩, …… 大靜縣監金弘瑞, …….

❖ 숙종 29년(1703) 계미년 12월 24일(을미)

□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홍서(金弘瑞) 등이 사은함

○ 사은례(謝恩禮)를 행하였는데,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홍서(金弘瑞) 등이 참석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김홍서.

1704年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二月 十一日 辛巳

○ 下直, 江東縣監金鳴夏, 大靜縣監金弘瑞, 牙山萬戶金尙維.

❖ 숙종 30년(1704) 갑신년 2월 11일(신사)

□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홍서(金弘瑞) 등이 하직함

○ 강동현감(江東縣監) 김명하(金鳴夏)와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홍서(金弘瑞), 아산만호(牙山萬戶) 김상유(金尙維) 등이 참석하여 임금에게 작별인사를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김홍서.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三月 十二日 辛亥

○ 禮曹啓曰, 卽接濟州牧使李喜泰狀啓及膳狀, 則上年十一月朔所封酸物十九運·二十運進上及正朝陳賀箋文方物進上所載船隻, 元無到陸之事, 似由於洋中敗沒, 故宗廟·永昭殿·敬寧殿薦新唐柚子, 代以靑橘, 充數封進矣. 船隻敗沒, 固非人力所容, 而莫重薦新, 終致闕封. 至於以他果代封, 尤是前所未有之事, 當該牧使李喜泰推考警責, 代封靑橘, 則移送司饔院, 以爲內入之地, 何如? 傳曰, 允.【以上禮曹謄錄】

❖ 숙종 30년(1704) 갑신년 3월 12일(신해)

□ 종묘 등에 천신(薦新)할 당유자를 청귤로 대신 봉진한 책임 등이 있는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의 추고(推考) 경책(警責) 등을 청하는 예조(禮曹)의 계

○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의 장계(狀啓)와 선장(膳狀)[687]을 지금 받아보니, '지난해 11월 초하루에 봉진한 산물(酸物) 19운(運)과 20운(運)의 진상과, 정조(正朝: 설날 아침)에 진하(陳賀)하는 전문(箋文)[688]과 방물(方物)을 배에 실었는데, 원래 육지에 도착한 적 없는 일은 바다를 건너는 중에 배가 부서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종묘(宗廟)·영소전(永昭殿)·경녕전(敬寧殿)에 천신(薦新)하는 당유자(唐柚子)를 대신하는 청귤(靑橘)로 수를 충원하여 봉진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배가 부서져서 물에 빠진 것은 진실로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신(薦新)은 막중한 것인데, 끝내 궐봉(闕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과일로 대신 봉진하기에 이른 것은 더욱 전에 있어 본 일이 아니어서 당해(當該) 목사(牧使) 이희태(李喜泰)를 추고하고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고, 대신 봉진한 청귤(靑橘)은 사옹원(司饔院)으로 이송해서, 궁중의 물품으로 들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희태, 장계, 선장, 당유자, 청귤.

---

687) 선장(膳狀): 조선 시대 각도에서 망전(望前)·망후(望後)에 진상(進上)하는 월선(月膳)의 물목이나 찬선(饌膳)의 이름과 수량을 적은 종이.

688) 전문(箋文): 임금이나 왕후, 태자에게 올리던 글. 중국 한(漢)나라 때 이후 신년, 탄일(誕日) 등 기념일에 맞추어 축하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대체로 사륙변려체(四六騈儷體)로 쓰임.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이후에 사용되었음.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四月 二十九日 戊戌

○ 審理入侍時, 以前濟州牧使尹堦文案. 上曰, 雖是死囚, 不啓擅斬, 至於八人之多, 此非尹堦創開之事, 而後弊所在, 不可全釋, 削職放送. 今後濟州罪人獷悍大儻時急處斷者, 則先斬後啓, 其他死囚, 則竝啓聞後, 處置【禁府謄錄 以上缺】拿囚之意, 敢啓. 傳曰, 知道.【以上禁府謄錄】

❖ 숙종 30년(1704) 갑신년 4월 29일(무술)

□ 심리(審理)할 때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윤계(尹堦)를 삭직방송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심리(審理)에 신하들이 임금을 뵐 때,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윤계(尹堦)의 문안(文案)으로써,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사형수라 하더라도, 함부로 아뢰지 않고 멋대로 참수(斬首)한 것이 무려 여덟인데, 이것은 윤계(尹堦)가 처음으로 한 일이 아니다. 뒷날의 폐단이 있게 될 것이니, 온전히 석방하는 것은 불가(不可)하고 삭탈관직(削奪官職)[689]하여 풀어주되 지금 이후 제주 죄인으로 몹시 모진 무리들을 시급히 처단해야 할 경우, 선참후계(先斬後啓)[690]하되 기타 사형수는 모두 계문(啓聞)한 뒤에 처치하고【금부등록에 의함 이상은 빠짐】죄인을 잡아 가둘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이상은 금부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윤계, 문안 제주죄인.

689) 삭탈관직(削奪官職): 삭직(削職). 죄를 지은 자의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그 이름을 지우던 일.

690) 선참후계(先斬後啓): 군율을 어긴 자를 먼저 처형한 뒤에 임금에게 아뢰던 일.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五月 五日 癸卯

○ 政院啓曰, 頃日濟州牧使李喜泰, 以本島年凶, 諸罪人移配等說, 有狀聞之事. 又於今日狀啓數度, 亦爲來到, 而科獄罪人到配狀, 則尙不來到, 殊涉怪訝, 招問禁府下吏, 則科獄罪人押去羅將, 皆已還歸云. 羅將旣歸之後, 到配狀之尙無形影, 已極駭然, 而至於科獄罪人, 何等重罪, 而旣因臺啓, 自禁府爲奴, 定配本島, 則與他罪人有別, 固不當輕易擧論, 而乃敢以新配八人移配等事, 肆然馳啓, 極爲無嚴, 而本院則問備之外, 無他可施之罰. 濟州牧使李喜泰,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又啓曰, 監司遞來時, 密符親納, 例也, 而前江原監司洪萬朝, 中途病重, 陳疏上送, 使其軍官, 替納密符, 原疏, 自本院旣已還出給, 而事體未安. 前江原監司洪萬朝, 推考, 何如? 傳曰, 允.

❖ 숙종 30년(1704) 갑신년 5월 5일(계묘)

□ 과옥죄인(科獄罪人)의 도배장계(到配狀啓)를 올리지 않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의 종중추고(從重推考) 등을 청하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지난날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가 본도(本島: 제주섬)에 흉년이 들어서, 여러 죄인들은 이배(移配)하는 일 등의 이야기를 담은 장문(狀聞)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장계(狀啓) 여러 통이 또한 내도하였습니다. 과옥죄인을 도배장(徒配狀)[691]하는 장계가 도착하지 않은 것이 매우 이상하고 의아스러워서, 금부(禁府)의 하리(下吏)를 불러다가 물으니, 과옥의 죄인을 붙잡기 위해 간 나장(羅將)은 모두 이미 돌아왔다고 합니다. 나장이 이미 돌아온 뒤에 도배장이 여전히 그림자도 볼 수 없으니, 이미 지극히 놀라웠습니다. 과옥죄인에 이르러서는 얼마나 중한 죄인데, 이미 대계(臺啓)로 인해 금부에서 사내종으로 삼고 본도(제주도)에 정배(定配)하였습니다. 다른 죄인에게 있어도 다름이 있으면 참으로 가볍게 거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감히 새로 유배시킨 8인을 이배시키는 등의 일을 제멋대로 치계(馳啓)하기도 하였으니 극히 무엄합니다. 본원(本院)은 문비(問備)[692]하는 외에는, 달리 적용할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종중추고(從重推

691) 도배(徒配): 도형(徒刑)에 처한 뒤에 귀양을 보내던 일. 도배장(到配狀)은 귀양 간 사람이 유배지에 도착하였음을 그 고을의 수령이 형조(刑曹)에 보고하던 문서.

692) 문비(問備): 벼슬아치의 죄상을 관원 명부에 적어 두었다가 인사 행정에 반영하기에 앞서 심문하던 일.

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감사(監司)가 벼슬을 내놓고 돌아올 때, 밀부(密符)[693]를 몸소 내는 예가 있었습니다. 전 강원감사(江原監司) 홍만조(洪萬朝)가 중도에 병이 중해져서 상소문을 지어 올렸는데, 군관(軍官)으로 하여금 밀부(密符)를 바꾸어 내고, 원소(原疏)는 본원(本院)에서 이미 도로 내주었으니 사체(事體)에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럽습니다. 전 강원감사 홍만조를 추고(推考)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희태, 도배장.

693) 밀부(密符): 조선 시대에 병란(兵亂)이 일어나면 즉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도록 내리던 병부(兵符). 유수(留守),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방어사(防禦使) 등에게 줌.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五月 五日 癸卯

○ 傳曰, 今觀濟州牧使狀啓, 其中所謂飛船, 夜則依峯下陸, 盜殺牛馬, 晝則還集船上, 退浮洋中之狀, 似非漁採荒唐船之比, 而且其數, 多至五十餘隻, 追捕之船近入, 則無意潰走, 反圍數重, 矢石如雨, 不敢進前, 重被傷還云者, 形止極涉殊常, 不無可慮. 此狀啓, 急急出給於備局, 使之晝卽稟處. 且邊報何等緊重, 而只言船隻數, 不言船隻來泊時日, 而泛稱近來, 且旣有追捕之船, 則人數多寡, 雖未得詳, 或可揣知, 而專不擧論, 殊極糢糊. 濟州牧使李喜泰, 從重推考. 莫重邊報, 所當以密匣盛入, 而視以常例狀啓, 泛然捧入, 亦難免不察之失, 當該承旨推考.

❖ 숙종 30년(1704) 갑신년 5월 5일(계묘)

□ 비선(飛船)에 대한 장계(狀啓) 내용이 모호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라는 전교

○ 전교하기를, "지금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狀啓)를 보니, '그 내용 중에 소위 비선(飛船: 빠른 배)은 밤에 봉우리에 의지하여 육지에 내려 마소를 몰래 죽이고, 낮에는 도로 배 위로 모여들어서, 바다 가운데로 물러갔다'는 실상은 바닷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황당선(荒唐船)에 비할 것이 못된다. 또한 그 수가 많으면 50여 척에 이르는데, 뒤좇아 잡으려는 배가 가까이 가면, 도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몇 겹으로 포위하여 시석(矢石)을 비오듯 쏘아대어 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고, 크게 다친 채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형지(形止)가 매우 수상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장계를 급히 비국(備局)에 내려 즉시 품처(稟處)하게 하라. 또 변방의 보고가 얼마나 긴중(緊重)한데, 단지 배의 척수만 말하고 선박이 와서 정박한 날짜는 말하지 않고, 범연히 근래라고만 일컬었다. 이미 뒤좇아 잡으려는 배가 있으면 사람 숫자의 많고 적음을 혹 미루어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전혀 거론하지 않았으니 매우 모호(糢糊)하다. 이희태(李喜泰)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라. 또 승지는 밀갑(密匣)으로 봉입(封入)하지 않았으니, 추고하라. 변보(邊報)는 막중한 것이어서 마땅히 밀갑(密匣)으로 성입(盛入)하는 바, 이것을 상례(常例)의 장계로 보고 범연히 받아들인 것, 이 역시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을 면하기 어렵다. 마땅히 해당 승지를 추고하라."라고 하였다.[694]

694) 『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5월 5일(癸卯)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장계, 비선, 황당선.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五月 五日 癸卯

○ 備邊司啓曰, 傳曰, 今觀濟州牧使狀啓, 其中所謂飛船, 夜則依峯下陸, 盜殺牛馬, 晝則退浮洋中之狀, 似非漁採荒唐船之比, 而且其數, 多至五十餘隻, 追捕之船近入, 則無意潰走, 反圍數重, 矢石如雨, 不敢進前, 重被傷還云者, 形止極涉殊常, 不無可慮. 急急出給於備局, 使之劃卽稟處事, 命下矣. 臣與諸堂上, 開見李喜泰狀啓, 則所謂擺列海上者, 只言多至五十餘隻, 而不言船制與服色之如何, 不惟不言船隻來泊時日及人數多寡而已, 其爲糢糊[校][模糊]甚矣. 狀啓內以爲, 非用兵刃, 其勢萬無退却之路, 雖或陸浦民, 不有禁令, 便作海中之賊, 則追逢殺捕, 爲民除害, 少無可惜云. 若是異國之人, 則矢石相及, 至於被傷之際, 宜無不知之理, 而乃以我國浦民疑之. 且此狀啓封進, 在於三月初三日, 而其後同月二十五日, 罪人請移之啓, 及四月初五日, 報備局瞭望無事之狀, 連至, 而不復提論此事. 以此觀之, 似無大段可慮, 而旣曰船隻數多, 又言矢石傷人, 則兵刃從事, 勢所當然. 至於生擒之類, 嚴囚本牧, 究問其根脚情節, 啓聞後梟示, 爲宜. 地方官·助防將不勤捕捉者, 從其輕重, 或啓稟處斷, 或直爲科罪, 自是牧使之職責, 不必定式施行, 以此回移于本牧, 且令本道監司, 一邊申飭海防, 一邊詳探卽今事情, 從速啓聞事, 別定禁軍, 給馬知委, 何如? 答曰, 允.【以上備局謄錄】

❖ 숙종 30년(1704) 갑신년 5월 5일(계묘)

□ 비선(飛船)에서 사로잡은 자는 계문한 뒤에 효시(梟示)하라고 제주목사(濟州牧使)에게 회답하고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사정을 탐문하여 계문(啓聞)하도록 알릴 것을 청하는 비변사(備邊司)의 계

○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지금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그 안에 소위 비선(飛船: 날랜 배)이 밤에는 봉우리에 의지하여 육지에 내려 마소(馬牛)를 몰래 죽이고, 낮에는 다시 배 위에 모여 바다 가운데로 물러가는 것이 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황당선(荒唐船)에 비할 바가 못 되는 듯하다. 또한 그 수가 많을 때는 50여 척이 되어, 뒤좇아 잡으려는 배가 가까이 가면 도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몇 겹으로 포위하여 시석(矢石)을 비 오듯 쏘아대어 감히 앞으로 나아가보지도 못하고 크게 다친 채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일의 형지(形止)가 극히 이상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급히 비국(備局)에서 내주고, 그로 하여금 획급(劃給)하고 즉시 품처(稟處)할 일'이라는 명

령을 내리셨습니다. 신(臣)은 여러 당상(堂上)과 함께 이희태의 장계를 열어보았는데, 이른바 해상(海上)에 널려 있는 것을 단지 '50여 척이나 되도록 많다.'라고만 말하면서 배의 제도(制度)와 복색(服色)이 어떠한지는 말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와서 정박한 시일(時日) 및 인원수의 많고 적음도 말하지 않아서 모호함이 심합니다. 장계 안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형세가 퇴각시킬 길이 없습니다. 혹 육지의 포민(浦民)에게는 금령(禁令)이 없어, 바다에서 도적으로 바뀝니다. 쫓아서 만나면 죽이고 체포하는 것이 백성들의 해를 없애는 것이어서 조금도 애석해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국(異國) 사람이라면 시석(矢石)을 서로 쏘는 즈음에 알지 못할 이치가 없는데, 바로 우리나라 포구 백성으로 의심했습니다. 또 이 장계를 봉진(封進)한 것이 3월 3일이었는데, 같은 달 25일에 죄인(罪人)을 옮기자고 계청(啓請)하고, 4월 5일에는 비국(備局)에 요망(瞭望)해도 무사(無事)하다는 보고의 글이 연달아 이르렀는데, 이 일을 다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보건대, 염려할 일은 없을 듯하나, 이미 선척의 숫자가 많다고 하였고, 또 시석(矢石)에 사람이 다쳤다 말했으니 무기로 싸우는 일은 당연합니다. 생포(生捕)한 자에 이르러서는 본목(本牧)에 엄히 가두고, 그 근각(根脚)과 정절(情節)을 따져 물어 계문한 후에 효시(梟示)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방관들로 붙잡는 데 부지런하지 않는 자는 그 경중(輕重)에 따라 처단하고, 이로부터 목사의 직권임을 정식(定式)할 필요는 없으니, 이렇게 회이(回移)하고, 또 본도(本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자세히 염탐하여 속히 계문하라는 일로써 별도로 금군(禁軍)을 정해 말[馬]을 주어 알리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695]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비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장계.

695) 『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5월 5일(癸卯)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五月 十五日 癸丑

○ 引見時, …… 左議政李畬所啓, 此卽濟州牧使李喜泰狀啓, 而科獄罪人等, 請移配事也. 此罪人等, 當初臺啓, 擧地名改配, 與循例定配不同, 且到配屬耳, 何敢以移配之意, 有所請乎? 況爲奴罪人, 元無移配之例, 此狀啓, 極爲無據, 勿施, 可矣. 上曰, 到配未幾, 旋請移配, 極爲無形矣. 此狀啓, 勿施, 可也.【以上春坊朝報】

❖ 숙종 30년(1704) 갑신년 5월 15일(계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가 과옥죄인(科獄罪人)을 이배(移配)시켜 줄 것을 청한 것의 부당함에 대해 논의함

○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만나볼 때, 〈중략〉 좌의정(左議政) 이여(李畬)가 아뢰기를, "이는 곧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의 장계(狀啓)인데, 과옥의 죄인들을 이배하는 일로 청하였습니다. 이 죄인들은 당초에 대계(臺啓)에는 지명(地名)을 거론하여 개배(改配)했는데, 예에 따라 정배(定配)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배소에 도착에서 속했으니 어찌 감히 이배(移配)하는 뜻으로 청했겠습니까? 하물며 죄인을 사내종으로 삼은 것은 원래 이배(移配)의 예가 없는 것으로, 이 장계는 근거가 없는 것이니 시행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배에 처한 지 얼마 안 되어, 이배를 돌려서 청한 것은 정말 형편없기 짝이 없는 말이다. 이 장계를 시행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춘방조보[696]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희태, 장계.

---

696) 춘방(春坊): 세자시강원. 조선 전기에, 왕세자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아. 조보(朝報):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고 서사(書寫)하여 반포하던 관보. 조칙, 장주(章奏), 조정의 결정 사항, 관리 임면, 지방관의 장계(狀啓)를 비롯하여 사회의 돌발 사건까지 실었음.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五月 十五日 癸丑

○ 左議政李畬所啓, 頃日濟州牧使李喜泰狀啓措語, 極其糢糊, 宜卽論罪, 而久未入對, 不卽陳達矣. 上曰, 狀啓中, 不言船制服色形止之如何, 至於船隻來泊之日字, 亦不擧論, 泛稱近來, 極爲糢糊[校][模糊]矣. 李畬曰, 李喜泰狀啓中, 謂前牧使李衡祥, 以偸採人事, 啓聞嚴禁之語, 其意, 蓋似以爲朝廷, 已知偸採事, 故不復詳陳, 而所謂偸採, 實我國南邊沿海浦民也. 其日覆啓時, 搜覓李衡祥狀啓於備局而不得, 追得於司僕, 見之則以爲, 沿海浦民, 採鰒於濟州外洋者, 例受都會官公文, 到付於濟州, 納稅採來, 故奸民, 厭其納稅, 不受公文而去, 浮在海中, 其類甚多, 自濟州送差欲禁, 則船人衆多, 力不能敵, 或掠奪衣服, 或戕殺減口, 夜則下陸, 屠殺公私牛馬云. 正如今番喜泰狀啓相類, 而喜泰, 則但言偸採, 不言其所從來處, 又有實非偸採, 必是海賊, 反圍數重, 矢石如雨等語, 宜致自上驚動也. 其處事如此, 海防重地, 不可仍授, 以邊上事體言之, 宜有拿問之擧, 而其罪, 在於狀啓措語不分明. 且本島大飢, 若送金吾吏卒, 則其弊不貲, 此亦不可不慮, 外議則以爲, 拿問似過, 罷職則太輕云. 李喜泰, 削職, 擇送其代, 何如? 上曰, 李喜泰, 削職, 別爲擇送他人, 可也. 李畬曰, 事雖微細, 又有所達矣. 濟州牧使狀啓入來之後, 自上驚動, 有劃卽稟處之敎, 故臣與備局堂上, 急速會議, 構成啓辭, 則入定之過未久, 故從門隙, 入送政院矣. 未知其草記之遲滯於何處, 而政院, 稱以已至三更, 翌日始乃入啓, 兵曹結束吏·政院下人, 則臣竝以囚治, 而如此事, 政院所當微稟入啓, 而不此之爲, 待明捧入, 極爲非矣. 此後如有邊上急報, 而又復如此, 則其弊不可不慮, 伊日當該承旨, 推考警責, 何如? 上曰, 依爲之. …… 李畬所啓, 此則濟州牧使李喜泰狀啓, 而科獄罪人等請移配事也. 此罪人等, 當初臺啓, 擧地名改配, 與循例定配不同, 此徒配屬耳, 何敢以移配之意, 有所陳請乎? 況爲奴罪人, 元無移配之例, 此狀啓, 極爲無據, 勿施, 可矣. 上曰, 到配未幾, 旋請移配, 極爲無形矣. 此狀啓, 勿施, 可也. …….
【以上備局謄錄】

❖ 숙종 30년(1704) 갑신년 5월 15일(계축)

□ 이여(李畬) 등이 입시하여 투채인(偸採人)의 실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의 삭직(削職) 등에 대해 논의함

○ 좌의정(左議政) 이여(李畬)가 아뢰기를, "지난날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의 장계(狀啓)의 조어(措語)가 극히 모호(糢糊)하니 마땅히 즉시 논죄(論

罪)하고, 오래도록 궁중에 들어가 임금을 알현하지도 않고, 진달(陳達)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계 중에, 선제(船制)와 복색(服色)의 형지(形止)를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선박이 와서 정박한 날짜는 말하지 않고, 범연히 근래라고만 일컬었으니, 대단히 모호하도다."라고 하였다. 이여가 말하기를, "이희태의 장계 안에, '전 목사 이형상(李衡祥)이 투채인(偸採人: 수산물 등을 몰래 채취하는 사람)을 엄금하도록 한 일을 계문(啓聞)하였는데, 그 뜻은 조정에서 이미 투채한 일을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게 진달(陳達)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투채는 실로 우리나라 남변과 연해(沿海)의 포민(浦民)하는 일입니다. 그 날 복계(覆啓)할 때, 비국(備局)에 있는 이형상의 장계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사복(司僕)에서 추득(追得)하여 그것을 살펴보니 연해의 포민(浦民)이 제주(濟州)의 바깥 바다에서 전복을 채취한 것은 전례에 따라 도회관(都會官) 공문(公文)으로 받고, 제주에 도부(到付)하였습니다. 세금을 내고 해산물을 채취해 왔는데, 간악 백성이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해서 공문(公文)을 받지 않고 가서는, 바다 가운데에 떠다니는 무리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주(濟州)에서 사람을 보내 금하려고 했으나, 뱃사람들이 매우 많아서, 힘으로 대적(對敵)할 수 없어, 혹 옷을 약탈하기도 하고 혹 사람을 죽여서 인구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육지에 내려 공사의 우마를 도살했다고도 합니다. 이번 이희태의 장계와 서로 성질이 같은 것입니다. 이희태는 단지 투채를 말로만 하고, 종래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투채를 하지 않은 것은 필시 해적입니다. 도리어 몇 겹으로 포위하여 시석(矢石)을 비오듯 쏘아댔다는 등의 말을 했는데 마땅히 임금께서 놀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곳의 일이 이와 같은데, 바다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변상(邊上)의 사체를 말로 하자면 마땅히 붙잡아 물어야 합니다. 그 죄는 장계의 조어에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도가 크게 굶주려서 만약 우리 이졸(吏卒)에게 돈을 보내면 폐해가 적지 않고, 이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위의로 붙잡아 추문하는 것은 지나칠 듯하고, 파직시키는 것은 아주 가볍다고 합니다. 이희태는 삭직하고 그를 대신하여 간택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희태는 삭직하고, 따로 다른 사람을 간택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여가 아뢰기를, "일은 비록 아주 작으나, 또 소달(所達)한 것이 있습니다. 제주목사가 장계를 들여보낸 뒤에 주상께서 놀라셨으리라 여겨져, 나누어서 품처하는 전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臣)과 비국당상(備局堂上)은 급속하게 회의(會議)하여 계사(啓辭)를 구성하였습니다. 곧 인정(人定)의 지나친 것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문

틈으로 좇아서 정원(政院)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초기(草記)가 어느 곳에서 지체되었는지 아직 알지 못하였는데, 이미 삼경(三更)이 되었다고 하여, 다음날 비로소 입계(入啓)하였습니다. 병조(兵曹) 결속리(結束吏)[697]와 정원(政院) 하인은 곧 신(臣)이 모두를 수치(囚治)하고, 일이 이와 같으니, 정원이 마땅히 미품(微稟)[698]하는 입계(入啓)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대명(待明)하여 봉입(捧入)한 것은 매우 그른 것입니다. 이후에 만일 변상(邊上: 변방)에서 급보(急報)한 것이 있으면 또한 다시 이와 같을 것이니, 그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 해당 승지(承旨)를 추문하여 살피고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이여가 소계로서 아뢰기를, "이것은 곧 제주목사 이희태의 장계로, 과옥 죄인들을 이배하는 일로 청하였습니다. 이 죄인들은 당초에 대계(臺啓)에서 지명을 들어서 개배(改配)한 것은 전례에 따라 정배한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도배(徒配)들을 소속시킨 것은 어찌 감히 이배한 뜻으로 진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사내종으로 삼은 죄인은 원래 이배하는 예가 없었습니다. 이 장계는 극히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시행하지 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배에 처한 지 얼마 안 되어, 이배시킬 것을 청하였으니, 극히 형체가 없는 것이다. 이 장계는 시행하지 말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비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희태, 장계.

697) 결속리(結束吏): 병조의 한 직장(職掌)으로 대궐 안에서나 거둥할 때 일반인이 함부로 떠드는 것을 단속하는 아전. 결속색리(結束色吏)·결색(結色).

698) 미품(微稟): 격식을 갖추지 않고 구두로 상주하거나 넌지시 아뢰는 것.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五月 十七日 乙卯

○ 司諫金相稷所啓, 請三和府使崔瑋罷職不敍【措語見上】上曰, 依啓. …… 又所啓, 湖南沿海邑浦民之偸採於耽羅三邑, 掠奪戕害, 爲弊已久. 前牧使李衡祥之狀請禁捕者, 蓋由於此, 而海邑鮑作之結伴偸採, 其習如前, 一島之民, 苦其橫掠, 則身爲守臣, 固當申請嚴禁, 而牧使李喜泰, 猝然馳啓, 有曰, 船五十餘隻, 擺列海上, 實非偸採之類, 必是海賊. …….【以上春坊朝報】

❖ 숙종 30년(1704) 갑신년 5월 17일(을묘)

□ 김상직(金相稷) 등이 입시하여 호남 연해 고을의 포민(浦民)이 탐라(耽羅) 세 고을에서 몰래 해산물을 채취한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사간(司諫) 김상직(金相稷)이 아뢰기를, "청컨대, 삼화부사(三和府使) 최위(崔瑋)를 파직시키고 불서(不敍)하십시오.【조어는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호남 연해 고을의 포민(浦民: 갯가에 사는 백성)이 탐라(耽羅) 세 고을에서 몰래 해산물을 채취하고, 약탈(掠奪)하고 사람을 죽이는 등의 일의 폐단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전 목사 이형상의 장청(狀請)에, 금포(禁捕)한 것은 무릇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다 고을의 보자기[鮑作]가 짝을 맺어 몰래 해산물을 채취하는 인습은 전과 같이 한 섬 백성들을 괴롭히고 마구 빼앗았습니다. 자신이 수신(守臣)이 되었다면 진정 마땅히 엄금하기를 신청(申請)해야 하는데도 목사 이희태가 갑자기 치계(馳啟)하여 말하길, '배 50여 척이 바다 위에서 파열(擺列)한 것은 실로 몰래 해산물을 채취한 무리들이 아니라, 필시 해적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략〉. 【이상은 춘방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탐라, 이형상, 장청.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五月 十七日 乙卯

○ 吏批啓曰, 兩司·玉堂闕員, 今當差出, 而擬望之人乏少, 相避·外任, 竝擬何如? 傳曰, 允. 又啓曰, 濟州牧使, 今當擇差, 而擬望之人乏少, 守令竝擬, 何如? 傳曰, 允.

❖ 숙종 30년(1704) 갑신년 5월 17일(을묘)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의망에 수령도 비의(備擬)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이비(吏批)의 계

○ 이비(吏批)가 아뢰기를, "양사(兩司)와 옥당(玉堂)의 궐원(闕員)[699]은 지금 당장 차출(差出)해야 하는데, 의망(擬望)[700]할 사람이 충분하지 못하니, 상피(相避)[701]와 외임(外任)[702]을 모두 의망(擬望)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는 지금 당장 택정하여 보내야 하는데, 의망(擬望)할 사람이 충분하지 않으니, 수령(守令)을 모두 의망(擬望)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의망.

---

699) 궐원(闕員): 사람이 빠져 정원에 차지 아니하고 빔. 또는 그렇게 모자라는 인원.

700) 의망(擬望): 삼망(三望: 벼슬아치를 발탁할 때 공정한 인사 행정을 위하여 세 사람의 후보자를 임금에게 추천하던 일)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701) 상피(相避): 친족 또는 기타 관계로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聽訟), 시관(試官) 따위를 피함.

702) 외임(外任): 외관직. 지방에 있는 감영(監營),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의 병영(兵營)과 수영(水營) 따위에 속한 문관과 무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五月 十七日 乙卯

○ 有政. 吏批, 以宋廷奎爲濟州牧使, 朴壽仁爲黃海都事, 宋道涵爲平安都事, 盧世器爲機張縣監.

❖ 숙종 30년(1704) 갑신년 5월 17일(을묘)

□ 송정규(宋廷奎)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송정규(宋廷奎)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고, 박수인(朴壽仁)을 황해도사(黃海都事)로 삼고, 송도함(宋道涵)을 평안도사(平安都事)로 삼고, 여세기(盧世器)를 기장현감(機張縣監)으로 삼았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송정규, 제주목사.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五月 十九日 丁巳

○ 府啓, 請還收炤兄弟放歸田里之命, 亟命絶島定配. 請還收殺人罪人李命減死定配之命, 更令該曹, 依律處斷. 請自今以後, 內間所用凡物, 必分付喉司, 奉旨擧行事, 定式施行. 請全城君混遠竄. 請濟州牧使李喜泰, 拿問考律勘罪. 請還收放歸田里罪人南九萬·柳尙運放送之命. 請刑曹判書兪得一罷職. 請還收二王子延齡君昞宗親府堂上之任, 其時薦望宗臣及當該捧入承旨, 竝命罷職【以上措語見上】日昨筵中, 刑曹參判徐文裕, 以嘉禮時處子單子漏報守令等勘罪事, 有所稟奏, 此蓋以長官被臺劾, 次官例難專斷, 故請詢大臣, 從速區處者, 實出於詳審遄決之意, 初非有一毫玩法容護之計, 則適重適輕, 惟在睿斷, 而聖明不復鑑諒, 遽加聲色, 前席未撤, 至下特罷之命, 臣竊不勝訝惑也. 藉令文裕奏對之際, 有些不槪於聖心, 固當諄諄開諭, 明其不然而已. 況其所達, 斷無他意, 則何殿下, 疑怒太深, 有此過中之擧耶? 處分輕遽, 有乖於大聖人包容之道. 請還收刑曹參判徐文裕罷職之命. 新除授掌令李夏源, 時在忠淸道忠州地, 吳羽進, 時在咸鏡道安邊地. 請斯速乘馹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숙종 30년(1704) 갑신년 5월 19일(정사)

□ 이소(李炤)[703] 형제를 방귀전리(放歸田里)하라는 명의 환수,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나문(拿問)할 것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소 형제(炤兄弟)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속히 외딴섬으로 정배(定配)하십시오. 청컨대, 살인죄인 이명(李命)을 죽이지 말고 정배하라고 명을 도로 거두고, 다시 해조로 하여금 법률에 따라 처단하게 하십시오. 청컨대, 지금부터 내간(內間: 大內. 임금이 거처하는 곳)에서 쓸 모든 물건은 반드시 후사(喉司: 승정원)에 분부하여, 봉지(奉旨)대로 거행할 일을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게 하십시오. 청컨대, 전성군(全城君) 혼(混: 이혼)을 멀리 귀양 보내는 일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제주목사 이희태를 붙잡아 와서 문초하고 법률에 상고하여 죄를 물으십시오. 청컨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죄인 남구만(南九萬)·유상운(柳尙運)을 석방하여 보내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형조판서 유득일(兪得一)을 파직하십시오, 청컨대, 둘째 왕자 연령군(延齡君) 헌(昞)의 종친부(宗親府_ 당상(堂上)의 직임을

703) 이소(李炤): 이소 형제는 동평군 이항(李杭)의 아들들임.

도로 거두고, 그때 천망(薦望)한 종신(宗臣)과 그것을 봉입한 승지(承旨)는 아울러서 파직하도록 명하십시오. 【이상 조어는 앞에 보임】[704] 지난 날 경연에서, 형조참판(刑曹參判) 서문유(徐文裕)가 가례(嘉禮)할 때 처자(處子) 단자(單子)를 누락하여 보고한 수령 등에게 죄를 줄 일에 대하여 품주(稟奏)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長官)이 대간의 탄핵을 받았을 때, 차관(次官) 예로 전단(專斷)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므로 대신에게 자문하여, 속히 구처(區處)한 것은 실로 천결(遄決)의 뜻을 잘 살핀 데서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도 완법(玩法)으로 용호(容護)하는 계획이 없었으니, 경중을 적당하게 하십시오. 오직 예단하는 데 있어서 성명(聖明)은 도로 감량(鑑諒)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성색(聲色)을 더하시니, 앞자리를 밟지 못하고, 특별히 파면하라는 명까지 내리셨으니, 신(臣)은 신(臣)은 삼가 의혹됩니다. 설사 문유(文裕)가 주대(奏對)할 때에, 성심(聖心)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진실로 마땅히 순순히 타일러러, 그렇지 아니한 것을 밝힐 따름입니다. 하물며 그 소달(所達)은 결단코 딴 뜻은 없는 것입니다. 어찌 전하(殿下)가 의심하고 노여워함이 너무 지나쳐서, 이런 지나친 일을 하였던 것이겠습니까? 처분이 경솔하게 되니, 아무래도 대성인의 서용하는 도리에 흠이 될 것입니다. 청컨대, 형조참판 서문유를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 새로 제수한 장령 이하원(李夏源)은 당시 충청도 충주 땅에 있었고, 오우진(吳羽進)은 당시 함경도 안변 땅에 있었습니다. 청컨대, 신속히 배에 태워서 데리고 올 일로 하유(下諭)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여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下諭)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희태.

704) 『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5월 17일(乙卯)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五月 二十七日 乙丑

○ 今日疏決時, 大司諫李喜茂所啓, 頃日疏決時, 有巨濟圍籬安置罪人李鳳徵撤圍籬之命, 臣竊以爲不然也. 鳳徵之當初疏語, 極其乖悖, 幸國家之不幸, 創禮外之異論, 其乘時僥倖, 預知凶謀之跡, 昭不可掩, 心跡叵測, 罪名至重, 不可以一時疏釋, 而遽撤圍籬. 請還收安置罪人李鳳徵撤圍籬之命. 上曰, 勿煩. …… 又所啓, 請還收炤兄弟放歸田里之命, 亟命絶島定配. 請還收殺人罪人李命滅死定配之命, 更令依律處斷. 請還收禁衛營所屬所安島宮家折受之命. 請自今以後, 內間所需凡物, 必分付喉司, 奉旨擧行事, 定式施行. 請全城君混遠竄. 請濟州牧使李喜泰拿問, 考律勘罪. 請還收放歸田里罪人南九萬·柳尙運放送之命. 請前刑曹判書兪得一罷職. 請還收二王子延齡君旧宗親府有司堂上之命, 其時薦望宗臣及當該捧入承旨, 竝命罷職 .【以上措語見上】上曰, 勿煩. …….

❖ 숙종 30년(1704) 갑신년 5월 27일(을축)

□ 소결(疏決)에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나문(拿問)할 것 등을 논의함

○ 오늘 소결(疏決)할 때, 대사간(大司諫) 이희무(李喜茂)가 아뢰기를, "지난날 소결(疏決)할 때, 거제(巨濟) 위리안치(圍籬安置) 죄인 이봉징(李鳳徵)의 위리(圍籬)를 없애라는 명을 내렸는데, 신(臣)은 삼가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봉징(鳳徵: 이봉징)은 당초 소어(疏語)가 매우 괴패(乖悖)하였고 국가의 불행을 다행으로 여겨, 예외(禮外)의 이론(異論)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요행히도 때를 타 미리 흉모(凶謀)의 흔적이 현저히 드러나 은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적(心跡)이 헤아리기 어렵고 죄명(罪名) 지중(至重)하여 일시에 석방할 수 없으니, 위리를 철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컨대, 안치죄인 이봉징(李鳳徵)의 위리(圍籬)를 없애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소(炤) 형제(兄弟)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속히 외딴섬에 정배하라고 명하십시오. 청컨대, 살인죄인 이명(李命)을 죽이지 말고 정배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다시 법률에 의해 처단하십시오. 청컨대, 금위영 소속의 소안도를 궁가(宮家)에서 절수(折受)[705]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지금부터 내간(內間)에서 쓰일 모든 물건은 반드시 후사(喉司: 승정원)에게 분부하여 봉지

705) 절수(折受): 벼슬아치가 봉록(俸祿)으로 토지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던 일.

(奉旨)대로 거행할 일을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청컨대, 전성군(全城君)을 혼(混)을 멀리 귀양 보내십시오. 청컨대, 제주목사 이희태를 붙잡아 문초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십시오. 청컨대, 고향으로 돌려 보낸 죄인 남구만(南九萬)·유상운(柳尙運)을 석방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전 형조판서 유득일을 파직하십시오. 청컨대, 둘째 왕자 연령군(延齡君) 헌(昍)의 종친부(宗親府) 유사(有司)와 당상(堂上)의 직을 내린다는 명을 도로 거두고, 그 때 천망(薦望) 종신(宗臣)과 그것을 봉입한 승지(承旨)를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십시오.【이상의 조어는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희태.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五月 三十日 戊辰

○ 引見時, 大司諫李喜茂所啓, 請還收安置罪人李鳳徵撤圍籬之命【措語見上】上曰, 勿煩. …… 又所啓, 請還收炤兄弟放歸田里之命, 亟命絶島定配. 措語見上 請還收禁衛營所屬所安島宮家折受之命, 請自今以後, 內間所需凡物, 必分付喉司, 奉旨擧行事, 定式施行. 請全城君混遠竄, 濟州牧使李喜泰拿問考律勘罪. 請刑曹判書兪得一罷職. 請還收二王子延齡君昭宗親府有司堂上之任, 其薦望宗臣及當該捧入承旨, 竝命罷職【以上措語見上】上曰, 勿煩. …….

❖ 숙종 30년(1704) 갑신년 5월 30일(무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나문(拿問)하여 죄를 줄 것 등을 논의함

○ 임금이 신하를 불러 만나볼 때, 대사간 이희무(李喜茂)이 아뢰기를, "청컨대, 안치죄인 이봉징(李鳳徵)의 위리를 없애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조어는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소 형제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속히 외딴섬으로 정배하라고 명하십시오.【조어는 위에 보임】 청컨대, 금위영 소속의 소안도를 궁가에서 절수(折受)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지금부터 내간(內間)에서 쓰이는 모든 물건은 반드시 후사(喉司)에게 분부하여 봉지대로 거행하게 하는 일을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십시오. 청컨대, 전성군 혼을 멀리 유배 보내고, 제주목사 이희태를 붙잡아서 문초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게 하십시오. 청컨대, 형조판서 유득일을 파직하십시오. 청컨대, 둘째 왕자 연령군(延齡君) 헌(昭: 이헌)의 종친부 유사 당상의 직임을 도로 거두고, 그것을 천망(薦望)한 종신고 해당 봉입 승지를 모두 파직하도록 명하십시오."라고 하였다.【조어는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희태.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六月 一日 己巳

○ 府前啓, 請杭子炤兄弟絶島定配事. 請還收禁衛營所屬所安島宮家折受之命事. 請內間需用凡物, 必分付喉司, 奉旨擧行事, 定式施行事. 請全城君混遠竄事. 請前濟州牧使李喜泰拿問考律勘罪事. 請前刑曹判書兪得一罷職事. 請還收二王子延齡君昭宗親府堂上之任, 其時薦望宗臣及當該捧入承旨, 竝命罷職事【措語見上】…….

❖ 숙종 30년(1704) 갑신년 6월 1일(기사)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나문(拿問)하여 죄를 줄 것 등에 대한 사헌부의 계

○ 사헌부(司憲府) 전계(前啓)에, "청컨대 항(杭)의 아들 소(炤: 이소) 형제를 외딴 섬에 정배하십시오. 청컨대, 전성군 혼을 멀리 유배 보내고, 제주목사 이희태를 붙잡아서 문초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게 하십시오. 청컨대, 형조판서 유득일을 파직하십시오. 청컨대, 둘째 왕자 연령군(延齡君) 헌(昭)의 종친부 유사 당상의 직임을 도로 거두고, 그것을 천망(薦望)한 종신과 해당 봉입 승지를 모두 파직하도록 명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어는 위에 보임】〈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이희태.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六月 三日 辛未

○ 入侍時, 知事李濡所啓, 驪州以蕩敗之地, 收拾爲難, 曾以宋廷奎擇差, 治效方著, 而移授濟州牧使, 其代, 以趙爾重, 擬望受點. 蓋近來驪州近處, 賊患熾發, 至於朝士之家, 亦有明火刃傷之變, 宜以武弁差送, 而武弁中, 可以善治者難得. 聞趙爾重, 前任本州時, 未滿數月, 頗得民譽, 而因事坐罷, 此乃已試之人, 故今玆擬差, 意有所在矣. 爾重以爲, 不當再任於十年之內, 與當初交代官, 還爲交代, 尤有所嫌云, 而援引鄭祥斗再任水使時, 見遞之例爲言, 累次呈狀, 無意赴任, 十年內不當再任之說, 法典所無. 且閫帥與守令有別, 與交代還爲交代, 固涉苟簡, 而鄭祥斗之事, 不過出於一時物議之如此, 亦非所可援以爲例者. 趙爾重, 催促赴任, 似當, 故敢達. …….

❖ 숙종 30년(1704) 갑신년 6월 3일(신미)

□ 주강(晝講)에 이유(李濡) 등이 입시하여 조이중(趙爾重)을 속히 부임(赴任)하도록 할 것에 대해 논의함

○ 신하들이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뵐 때, 지사(知事)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여주(驪州)는 탕패(蕩敗: 蕩盡)한 땅이어서,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찍이 송정규(宋廷奎)를 간택하여 차정하니, 치료하는 효과가 바야흐로 드러났는데,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옮겨서 제수하고, 그것을 대신하여 조이중(趙爾重)으로 의망(擬望)하여 낙점을 받았습니다. 근래에 여주(驪州) 까까운 곳에 도적들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조정 관원들의 집에 이르러서 또한 불을 밝히고 칼로 상해하는 변란이 있었는데, 마땅히 무변(武弁)을 차송(差送)하고, 무변(武弁) 가운데, 잘 다스릴만한 자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듣건대, 조이중(趙爾重)이 본주(本州)에서 전에 임직에 있을 때, 아직 여러 달이 차지 않았는데, 백성들의 예찬을 꽤 얻었으나, 일 때문에 죄에 걸려 파직되었으니, 이는 이미 시험해 본 사람이므로, 이번에 의망(擬望)하여 차정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중(爾重)의 사람됨에 있어서 마땅히 10년 안에는 재임할 수 없으니, 당초에 관리를 교대하고 도로 교대하는 것이 더욱 불만스러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상두(鄭祥斗)를 끌어 당겨서 수사(水使)로 재임시킬 때, 견체(見遞)하는 예가 있었다고 말하면, 여러 차례 소장을 올렸으나, 부임할 뜻이 없어서, 10년 안에 재임하게 한다는 말은 부당하고, 법전(法典)에도 없는 바입니다. 또한 곤수(閫帥)와 수령(守

令)은 다른 것이어서, 교대한 것을 도로 교대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구차하고 간략합니다. 정상두(鄭祥斗)의 일은 일시에 내어 물의(物議)[706]가 이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또한 끌어댈 만한 전례가 아닙니다. 조이중(趙爾重)을 재촉하여 부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므로 감히 앙달(仰達)합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조이중.

706) 물의(物議): (대개 부정적인 뜻으로 쓰여) 어떤 사람 또는 단체의 처사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상태.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六月 五日 癸酉

○ 引見時, …… 持平李東彦所啓, 請還收炤兄弟放歸田里之命. 請還收禁衛營所屬所安島宮家折受之命. 請自今以後, 內間所需凡物, 必先分付喉司, 奉旨擧行事, 定式施行. 請全城君混遠竄. 請前濟州牧使李喜泰拿問, 考律勘罪. 請還收二王子延齡君旧宗親府有司堂上之任, 以重喪制, 以厚禮俗. 請泰安大小山舊牧場, 依日昨臺啓中兩處民田還給之命, 一體出給, 以慰民情【措語見上】 上曰, 勿煩. …….

❖ 숙종 30년(1704) 갑신년 6월 5일(계유)

□ 인견(引見)에 이희문(李喜茂) 등이 입시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나문(拿問)하여 죄를 줄 것 등에 대해 논의함

○ 신하들을 불러서 만나볼 때, 〈중략〉 지평(持平) 이동언(李東彦)이 아뢰기를, "청컨대, 소(炤) 형제(兄弟)를 석방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금위영 소속의 소안도를 궁가에서 절수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지금부터 내간(內間)에서 쓸 여러 물건은 반드시 먼저 후사(喉司)에 분부하여 봉지대로 거행할 일을 정식으로 삼아 거행할 일로 삼으십시오. 청컨대, 전성군(全城君) 혼(混)을 멀리 유배시키십시오. 청컨대, 전 제주목사 이희태를 붙잡아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십시오. 청컨대 둘째 왕자 연령군(延齡君) 헌(旧)을 종친부(宗親府)의 유사(有司)와 당사(堂上)의 직임을 맡긴 것을 도로 거두고, 상제를 중하게 하여, 예속(禮俗)을 두텁게 하십시오. 청컨대, 태안(泰安) 대소산(大小山)의 옛 목장은 지난날 대계(臺啓) 내용에 따라 양처(兩處)의 민전(民田)을 환급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일체를 내주고, 민정(民情)을 위로하십시오.【조어는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이희태.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六月 五日 癸酉

○ …… 又所啓, 纔見濟州牧使李喜泰狀啓, 則偸採船事, 果無可慮矣. 當初狀啓內, 以矢石如雨, 爲欲除其兵刃從事矣. 今到狀啓以爲, 依前日備局施行云, 而若只爲浦民偸採, 則何可輕用兵刃也? 全羅監司閔鎭遠狀啓內, 爲採進上全鰒粉藿入往者, 非所當禁, 自監營成給勿禁帖云, 此則然矣. 其所以私採入往者, 前日李衡祥狀啓後, 依備局回啓, 申飭本道, 必令受公文於都會官, 然後入往, 其有不受公文, 潛自入往者, 自其所居邑, 嚴發懲治, 亦自島中, 嚴加追捕送于本道, 各別重究, 以革島民之弊, 爲宜. 以此更爲分付於本道及本牧, 何如? 上曰, 依爲之. …….【以上備局謄錄】

❖ 숙종 30년(1704) 갑신년 6월 5일(계유)

□ 이여(李畬) 등이 입시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올린 투채선(偸採船)[707]에 대한 일은 과히 염려할 것이 없다고 아룀

○ 〈전략〉 또 아뢰기를, "잠깐 제주목사 이희태의 장계를 보니, 투채선(偸採船)에 대한 일은 과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당초 장계(狀啓) 안에, 시석(矢石)이 비오듯 하므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 일을 따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도착한 장계로 삼으면, 전날 비국에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만약 포민(浦民)이 투채(偸採)하고 있다면 어떻게 가벼이 군사와 무기를 쓸 수 있겠습니까? 전라감사 민진원의 장계 안에, 진상할 번복과 분곽(粉藿)을 채취하기 위해 들어간 사람은 마땅히 금한 바가 없고, 감영(監營)에서 금물첩(勿禁帖)[708]을 성급해줬다고 하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사로이 채취하기 위해 들어간 사람은 지난날 이형상의 장계가 있은 뒤에 비국(備局)의 회계(回啓)에 따라, 본도에서 신칙하였습니다. 반드시 도회관(都會官)에서 공문을 받은 뒤에 들어 가고, 공문을 받지 않고서 몰래 들어간 사람은 사는 고을에서 조사하고 밝혀져서 벌로 다스리는 것고 섬 안에 엄히 더하여 추포하고 본도로 보내어 각별하게 거듭 캐물어서, 도민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로써 다시 본 도와 본 목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이상은 비국등록에 의함】

---

707) 투채선(偸採船): 수산물을 몰래 채취하는 배.
708) 물금첩(勿禁帖): 관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특별히 허가한 증명서.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희태, 장계, 투채선.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六月 五日 癸酉

○ …… 吏曹判書李濡曰, 驪州以蕩敗之邑, 無以收拾, 宋廷奎, 治效頗著, 移授濟州牧使, 趙爾重, 曾任驪州, 未滿數月, 至今稱其善治, 故以此擇送, 而渠以再任交代等事爲嫌, 援據前例而呈狀, 其所爲嫌, 揆以法典, 別無所據, 日昨陳達, 才有勿遞赴任之命矣. 今因大臣送言, 有此改差之請, 再任交代等事, 固無可論, 而若以軍門任事爲重, 則大體亦無不可矣. …… 又所啓, 禁軍乃是挾輦扈駕之軍, 而所騎馬匹, 極爲疲殘. 頃日擧動時, 自上所俯燭也, 不但所見可駭, 脫有緩急, 顚仆可慮. 濟州馬分養馬上來分給之際, 自上御覽賜與後, 禁軍所授官馬, 先爲擇給各軍門, 與帖子馬方許, 何如? 上曰, 禁軍馬, 先爲受出, 可也.【以上兵曹謄錄】

❖ 숙종 30년(1704) 갑신년 6월 5일(계유)

□ 윤세기(尹世紀)가 입시하여 조이중(趙爾重)의 부임과 금군(禁軍) 등의 기마(騎馬) 분양(分養)에 대해 논의함

○ 〈전략〉 이조판서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여주(驪州)는 탕패(蕩敗)한 고을이라서 수습할 수가 없으니, 송정규(宋廷奎)가 그 치적이 자못 드러나서,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옮겨 제수하고, 조이중(趙爾重)을 일찍이 여주(驪州)에 부임하여, 여러 달이 아직 안 찼는데도, 지금 잘 다스린다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간택하여 보내서, 저들이 재임再任)과 교대(交代) 등의 일을 싫어해서, 전례에 근거하여 소장을 올렸는데, 싫어하는 바가 있어서, 법전을 살피니 따로 근거할 만한 것이 없었다. 며칠 전에 진달(陳達)했는데, 재주가 있어서 체임하지 말고 부임하라는 명이 있습니다. 지금 대신(大臣)이 보낸 말에, 이것을 개차(改差)하는 청이 있어서 재임(再任)과 교대(交代) 등의 일을 진실로 논할 바가 없습니다. 만약 군문(軍門)을 맡은 일은 중하므로, 대체(大體) 또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금군(禁軍)은 곧 협연(挾輦)과 호가(扈駕)하는 군역과 관계가 되고, 타는 마필은 매우 피잔(疲殘)합니다. 지난날에 거동(擧動)할 때, 임금께서 굽어 통촉하시는 바입니다. 다만 목격한 바는 해괴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위급한 일이 있다면 전부(顚仆: 전도)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제주마(濟州馬)를 분양(分養)하고, 말을 올려 보내와서 나누어 줄 때, 성상께서 어람(御覽)하고 사여(賜與)한 뒤에, 금군(禁軍)이 받은 관마(官馬)를 먼저 각 군문(軍門)에 간택하여 주고, 첩자(帖子)를 주어 말을 바야흐로 주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군마(禁軍馬)부터 우선 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이상은 병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제주마.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六月 六日 甲戌

○ 府前啓, 請炤兄弟絶島定配事. 請還收禁衛營所屬所安島宮家折受之命事, 請自今以後, 內間所需凡物, 必先分付喉司, 奉旨擧行事, 定式施行事. 請全城君混遠竄事. 請前濟州牧使李喜泰, 拿問考律勘罪事. 請還收延齡君昡宗親府有司堂上之任事. 請泰安大小山舊牧場還給民人事. 入啓. 答曰, 勿煩.

❖ 숙종 30년(1704) 갑신년 6월 6일(갑술)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司憲府) 전계(前啓)에, 소(炤: 李炤) 형제를 외딴섬에 정배시키는 일, 금위영 소속의 소안도를 궁가(宮家)에서 절수(折收)하라는 명을 거두어들이라고 청한 일, 이제부터 내간(內間)에서 쓸 물건은 반드시 우선 후사(喉司)에세 분부하여, 봉제대로 거행하게 하고 정식으로 시행하게 청한 일, 전성군(全城君) 혼(混: 이혼)을 멀리 유배 보내는 것을 청한 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어야한다고 청한 일, 연령군(延齡君) 헌(昡: 이헌)을 종친부(宗親府) 유사(有司) 당상(堂上)의 직임을 준 것을 도로 거두어들이라고 청한 일, 태안(泰安) 대소산(大小山)의 옛 목장을 백성들에게 도로 주라고 청한 일들을 입계(入啓)하였다. 임금이 답하여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이희태.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六月 七日 乙亥

○ 府啓, 請還收炤兄弟放歸田里之命. 請還收禁衛營所屬所安島宮家折受之命, 請自今以後, 內間所需凡物, 必先分付喉司, 奉旨擧行事, 定式施行. 請全城君混遠竄. 請前濟州牧使李喜泰拿問考律勘罪. 請還收二王子延齡君昭宗親府有司堂上之任, 以重喪制, 以存禮俗. 請奉安大小山舊牧場, 依日昨臺啓兩處民田還給之命, 一體出給, 以慰民情【措語見上】竝引嫌而退, 處置措語, 元非深斥, 以此引嫌, 殊涉太過, 略加權度, 不妨臺例, 僚席引避, 何必深嫌? 玆事是非, 初旣參涉, 不欲可否, 其勢固然. 請大司諫李善茂, 正言金萬謹, 司諫金相稷竝命出仕. 新除授執義李箕洪, 時在忠淸道延豐地, 司諫院獻納李海朝, 時在京畿果川地, 請竝斯速乘馹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處置事, 及下諭事, 依啓.【以上春坊朝報】

❖ 숙종 30년(1704) 갑신년 6월 7일(을해)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뢴, 소(炤: 이소) 형제를 석방해서 시골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주기를 청한 일, 금위영 소속의 소안도를 궁가(宮家)에서 절수(折受)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주기를 청한 일, 이제부터 내간(內間)에서 쓸 물건은 반드시 우선 후사(喉司)에세 분부하여, 봉지한 대로 거행하게 하고 정식으로 시행하게 하는 일을 청한 일, 전성군(全城君) 혼(混: 이혼)을 멀리 유배보내는 일을 청한 것.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한 일, 둘째 왕자 연령군(延齡君) 헌(昭: 이헌)에게 준 종친부(宗親府) 유사(有司) 당상(堂上)의 직임을 도로 거두어들이고, 상제(喪制)를 중하게 하고, 예속(禮俗)을 존치하게 하는 일을 청한 일, 태안(泰安) 대소산(大小山)의 옛 목장을 백성들에게 도로 주는 일을 청한 것 등은, 일전의 대계(臺啓)[709]에 따라 두 곳의 민전(民田)을 환급(還給)하라는 말에 의해 일체 출급하여, 이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였다.【조어는 위에 보임】아울러 인혐(引嫌)[710]하여 물러나고, 처치(處置)한 내용은 원래 심히 배척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인혐(引嫌)으

709) 대계(臺啓): 조선 시대에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臺諫)들이 벼슬아치의 잘못을 임금에게 보고하던 글.

710) 인혐(引嫌): 1)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뉘우침. 2) 벼슬아치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느낌.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짐.

로 자못 너무 지나친 데에 관계되고, 대개 권도(權度)[711]를 더하는 것은 대례(臺例)에 방해될 것은 없고, 요석(僚席)에서 인피(引避)[712]하는 것을 어찌 반드시 깊은 혐의(嫌疑)라 하겠습니까? 이 일의 시비(是非)는 처음에 끼어들어 간섭하고, 가부(可否)를 가리고 싶지 않은 것은 그 형세가 본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대사간 이선무(李善茂), 정언 김만근(金萬謹), 사간 김상직(金相稷) 모두에게 출사(出仕)하라는 명을 내리고, 새로 제수(除授)한 집의 이기홍(李箕洪)은 지금 충청도 연풍 땅에 있고, 사간원 헌납 이해조(李海朝)는 지금 경기도 과천(果川) 땅에 있으니, 모두에게 빨리 역마(驛馬)를 타고 올라오게 하는 일을 명령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여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처치할 일과 하유(下諭)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춘방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이희태.

711) 권도(權度): 사물을 다루는 기준. 법도.
712) 인피(引避):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일을 피하던 일.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六月 十一日 己卯

○ 府啓, 請還收炤兄弟放歸田里之命. 請還收禁衛營所屬所安島宮家折受之命, 自今以後, 內間所需凡物, 必先分付喉司, 奉旨擧行事, 定式施行. 請全城君混遠竄. 請前濟州牧使李喜泰拿問考律勘罪. 請還收二王子延齡君昡宗親府有司堂上之任, 以重喪制, 以存禮俗【措語見上】引嫌而退. 只據民狀, 率爾論啓, 不審之失, 在所難免. 請持平李東彦遞差. 答曰, 不允. 處置事, 依啓. 前啓泰安縣大小山舊牧場還給民人事, 停啓.

❖ 숙종 30년(1704) 갑신년 6월 11일(기묘)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소(炤: 이소) 형제를 석방해 시골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주기를 청했고, 금위영 소속의 소안도를 궁가에서 절수(折受)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했고, 이제부터 내간(內間)에서 쓸 물건은 반드시 우선 후사(喉司)에세 분부하여, 봉지(奉旨)한 대로 거행할 일을 정식으로 시행했다. 전성군(全城君) 혼(混: 이혼)을 멀리 유배 보내는 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기를 청한 일, 둘째 왕자 연령군(延齡君) 헌(昡: 이헌)에게 준 종친부(宗親府) 유사(有司) 당상(堂上)의 직임을 도로 거두어들일 일을 청함으로써 상제(喪制)를 중하게 하고 예속(禮俗)을 보존케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조어는 위에 보임】 인혐(引嫌)하고 물러갔는데 다만 민장(民狀)에 근거하여 경솔히 논계(論啓)하였으니,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은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평 이동언을 바꾸는 일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처치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전계(前啓)한 태안현(泰安縣) 대소산(大小山)의 옛 목장을 백성들에게 도로 주는 일은 정계(停啓)[713]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이희태.

---

713) 정계(停啓): 대간(臺諫)이 한동안 계속하여 오던 논계(論啓)를 그만두는 것.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六月 十二日 庚辰

○ 府啓, 請還收炤兄弟放歸田里之命. 請還收禁衛營所屬所安島宮家折受之命. 請全城君混遠竄. 請前濟州牧使李喜泰拿問考律勘罪. 請還收二王子延齡君昛宗親府有司堂上之任, 以重喪制, 以厚禮俗【措語見上】答曰, 勿煩.【以上春坊朝報】

❖ 숙종 30년(1704) 갑신년 6월 12일(경진)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소(炤: 이소) 형제를 석방해 시골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주기를 청하였고, 금위영 소속의 소안도를 궁가에서 절수(折受)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했고, 전성군(全城君) 혼(混: 이혼)을 멀리 유배 보내는 일을 청했고,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했고, 둘째 왕자 연령군(延齡君) 헌(昛: 이헌)에게 준 종친부(宗親府) 유사(有司) 당상(堂上)의 직임을 도로 거두어들일 일을 청함으로써 상제(喪制)를 중하게 하고, 예속(禮俗)을 보존케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조어는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이상은 춘방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이희태.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六月 十三日 辛巳

○ 府啓, 請還收炤兄弟放歸田里之命. 請還收禁衛營所屬所安島宮家折受之命. 請自今以後, 內間所需凡物, 必先分付喉司, 奉旨擧行事, 定式施行. 請全城君混遠竄, 請前濟州牧使李喜泰拿問考律勘罪. 請還收二王子延齡君昞宗親府有司堂上之任, 以重喪制, 以存禮俗【措語見上】答曰, 勿煩.

❖ 숙종 30년(1704) 갑신년 6월 13일(신사)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소(炤: 이소) 형제를 석방해 시골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주기를 청하였고, 금위영 소속의 소안도를 궁가에서 절수(折受)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했고, 전성군(全城君) 혼(混: 이혼)을 멀리 유배 보내는 일을 청했고, 전 제주목사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했고, 둘째 왕자 연령군(延齡君) 헌(昞: 이헌)에게 준 종친부(宗親府) 유사(有司) 당상(堂上)의 직임을 도로 거두어들일 일을 청함으로써, 상제(喪制)를 중하게 하고 예속(禮俗)을 보존케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조어는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이희태.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六月 十八日 丙戌

○ 府啓, 請還收炤兄弟放歸田里之命. 請還收禁衛營所屬所安島宮家折受之命. 請全城君混遠竄. 請前濟州牧使李喜泰拿問考律勘罪. 請還收二王子延齡君昞宗親府有司堂上之任, 其時薦望宗臣, 及當該捧入承旨, 竝命從重推考. ……【措語見上】答曰, 不允.

❖ 숙종 30년(1704) 갑신년 6월 18일(병술)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소(炤: 이소) 형제를 석방해 시골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주기를 청하였고, 금위영 소속의 소안도를 궁가에서 절수(折受)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했고, 전성군(全城君) 혼(混: 이혼)을 멀리 유배 보내는 일을 청했고,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했고, 둘째 왕자 연령군(延齡君) 헌(昞: 이헌)에게 준 종친부(宗親府) 유사(有司) 당상(堂上)의 직임을 도로 거두어들일 일을 청했다. 그때 천망(薦望)한 종신(宗臣)과 당해 봉입(捧入)한 승지(承旨) 등을 모두 종중추고(從重推考)하라는 명을 내려야 한다고 아뢰었다. 【조어는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이희태.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六月 十九日 丁亥

○ 府前啓, 請炤兄弟, 絶島定配事. 請還收禁衛營所屬所安島, 宮家折受之命. 請內間需用凡物, 必分付喉司, 奉旨擧行事. 請全城君混, 遠竄事. 請前濟州牧使李喜泰, 拿問考律勘罪事. 請還收延齡君, 宗親府有司堂上之任, 其時薦望宗臣, 及當該捧入承旨, 從重推考事. 請還收智島安置罪人柳命天, 放歸田里之命. 請左承旨金德基, 前持平韓永徽削去仕版事. 請前持平李東彦, 削去仕版事. 請左副承旨尹弘离, 遞差事. 請掌令李裕民, 遞差事. 請前參議金儁相, 罷職不敍事. 請善山府使李相殷, 罷職事【措語見上】入啓. 答曰, 不允. 金德基等三臣, 削版之啓, 其所臚列罪狀, 不啻狼藉, 如使臺論實是, 則不但止於削版而已. 苟或不然, 而不復查處, 直加汚衊, 則豈非受罪者之至冤? 而朝家用罰之道, 亦不當若是也. 竝令禁府, 拿囚明覈, 尹弘离, 不合銀臺之說, 已未可曉, 而李裕民, 劾遞措語, 尤不近理, 須勿煩論, 金儁相事, 依啓.

❖ 숙종 30년(1704) 갑신년 6월 19일(정해)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소(炤: 이소) 형제를 외딴섬에 유배 보낼 것을 청한 일, 금위영 소속의 소안도를 궁가에서 절수(折受)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했고, 이제부터 내간(內間)에서 쓸 물건은 반드시 우선 후사(喉司)에세 분부하여, 봉지한 대로 거행하게 하고 정식으로 시행하게 하는 일을 청한 일, 전성군(全城君) 혼(混: 이혼)을 멀리 유배 보내는 일을 청한 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한 일, 연령군(延齡君)에게 준 종친부(宗親府) 유사(有司) 당상(堂上)의 직임을 도로 거두어들이고, 그때 천망(薦望)한 종신(宗臣)과 당해 봉입(捧入)한 승지(承旨) 등을 모두 종중추고(從重推考)하라는 명을 내리기를 청한 일, 지도(智島)에 안치된 죄인 유명천(柳命天)을 석방해 시골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주기를 청했고, 좌승지 김덕기(金德基)와 전 지평 한영휘(韓永徽)를 벼슬아치 명부에서 삭제하여 버릴 일로 청한 일, 전 지평 이동언(李東彦)을 벼슬아치 명부에서 삭제하여 버릴 일로 청한 일, 좌부승지 윤홍리(尹弘离)를 바꾸는 일로 청한 일, 장령 이유민(李裕民)을 바꾸는 일로 청한 일, 전 참의 김준상(金儁相)을 파직하여 벼슬자리에 앉지 못하

게 하는 일로 청한 일, 선산부사(善山府使) 이상은(李相殷)을 파직하는 일을 청한 일, 【조어는 위에 보임】 등을 입계(入啓)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김덕기(金德基) 등 세 신하를 벼슬차이 명부에서 삭제하여 버리라고 아뢴 것은 그 나열한 바 죄상이 낭자(狼藉)할 뿐만 아니라, 만일 대론(臺論)이 사실이라면 한갓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에만 그칠 뿐이 아니다. 단지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데, 다시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고 곧바로 무함하여 모독한다면, 어찌 죄를 받는 사람이 매우 원통하지 않겠으며, 조가(朝家)에서 벌(罰)하는 도리에도 그렇게 해서는 부당하니, 아울러 금부(禁府)로 하여금 잡아다 가두어 명백히 밝히라. 윤홍리가 은대(銀臺: 승정원)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잘 모르겠으며, 이유민(李裕民)을 바꾸라고 허물을 들어 논박한 조어(措語)는 더욱 이치에 가깝지 않으니, 모름지기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김준상(金儁相)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714]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이희태.

714) 『숙종실록』 39권의 '숙종 30년 6월 19일(丁亥)'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六月 三十日 戊戌

○ 府啓, 請還收炤兄弟放歸田里之命. 請還收禁衛營所屬所安島宮家折受之命. 請自今以後, 內間所需凡物, 必先分付喉司, 奉旨擧行事, 定式施行. 請全城君混, 遠竄. 請前濟州牧使李喜泰, 拿問考律勘罪. 請還收二王子延齡君昕宗親府有司堂上之任【措語見上】臣伏見頃日疏決時, 有智島安置罪人柳命天放歸田里之命, 臣不勝駭歎之至. 命天, 陰賊兇猾, 肆行兇臆, 脅持君父, 魚肉搢紳, 貫盈之罪, 與黯無間, 此則無待臣一二談, 而聖上, 旣已洞燭無餘矣. 得保首領, 在渠亦幸, 安置之典, 實是末減, 頃年聖上, 以此人罪惡, 雖有大霈, 決不可擧論爲敎, 伊日懲惡之聖意, 孰不欽仰? 今玆疏決, 雖出於焦憂亢旱, 靡不用極之致, 而豈可使窮兇極惡之人, 視同薄物細故, 一體疏宥, 使之偃息於田廬, 歸死於牖下乎? 刑政失當, 誠非細故, 求以弭災, 反恐召沴, 公議拂鬱, 久而愈激, 請還收智島安置罪人柳命天放歸田里之命, 仍命永勿擧論於赦典. 請善山府使李相殷, 罷職【措語見上】罪人柳命天放歸田里之命, 實出於輿情之外, 還收之請, 蓋亦晩矣. 持平柳泰明, 身居臺職, 不思恢張, 反自崖異, 語欠倫脊, 意甚苟且, 公議所在, 不可無規警之道, 請前持平柳泰明, 罷職. 答曰, 不允. 末端兩件事, 依啓. 前啓, 其時薦望宗臣及當該承旨推考事, 及左副承旨尹弘离, 掌令李裕民遞差事, 停啓.

❖ 숙종 30년(1704) 갑신년 6월 30일(무술)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소(炤: 이소) 형제를 외딴섬에 유배 보낼 것을 청했고, 금위영 소속의 소안도를 궁가에서 절수(折受)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했고, 이제부터 내간(內間)에서 쓸 물건은 반드시 우선 후사(喉司)에세 분부하여, 봉지한 대로 거행하게 하고 정식으로 시행하게 하는 일을 청했고, 전성군(全城君) 혼(混: 이혼)을 멀리 유배보내는 일을 청했고, 전 제주목사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했고, 둘째 왕자 연령군(延齡君) 헌(昕: 이헌)에게 준 종친부(宗親府) 유사(有司) 당상(堂上)의 직임을 도로 거두어들이라고 청했다. 【조어는 위에 보임】 신(臣)이 엎드려 살펴보니, 지난번 죄인을 너그럽게 처결할 적에 지도(智島)에 안치된 죄인 유명천(柳命天)에 대한 석방해 시골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신(臣)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명천(유

명천)은 흉악하고 교활한 음적(陰賊)으로 마음먹은 바를 함부로 행하고, 군명(君命)을 끼고는 진신(搢紳)을 살해(殺害)하여 가득 찬 죄가 민암(閔黯)[715]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신(待臣) 한둘의 말이 없는 것이고 임금께서도 이미 이미 남김없이 통촉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보존한 것만도 그에게 있어 다행입니다. 지난해 성상께서 '이 사람의 죄악은 비록 대사령(大赦令)의 은전(恩典)이 있더라도 결코 거론할 수 없다.'라고 전교하셨으니, 악을 징계하는 성상의 뜻을 누구인들 흠앙(欽仰)하지 않았겠습니까?[716] 이번 소결(疏決) 때, 비록 초조하고 근심하는 가뭄을 민망히 여겨 지극한 도리를 다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극진함을 다하는 소치가 없을 수 없으니, 어찌 지극히 흉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질구레하게 보아 일체로 소유(疏宥)하여, 그로 하여금 전려(田廬)에서 편안히 쉬다가 돌아가서는 제집에서 죽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정(刑政)이 정당함을 상실하면 진실로 작은 연고가 아니고, 재앙이 그치기를 구하는 것은 도리어 재앙을 부를까 두렵습니다. 공론이 불평에 잠겨 있기 오래되면 더욱 격렬해집니다. 지도(智島)에 안치한 죄인 유천명을 석방하여 시골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그대로 명을 유지하여 영원히 사전(赦典)을 거론하지 마십시오. 선산부사 이상은(李相殷)을 파직하기를 첩합니다. 【조어는 위에 보임】 죄인 유천명을 석방하여 시골로 돌아게 하라는 명은 실로 사람들의 예상 밖에서 나왔으므로 도로 거두라는 청은 늦었다고 하겠습니다. 지평 유태명(柳泰明)은 대각(臺閣: 사헌부)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널리 퍼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이의(異議)를 제기하여 내용에 순서가 없고, 뜻이 심히 구차하여, 공의(公議)에 관한 것은 규경(規警)하는 방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전 지평 유태명을 파직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에 언급한 두 건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전에 아뢴, 그때 천망(薦望)한 종신(宗臣)과 해당 승지(承旨)를 추문하여 고찰하는 일과 좌부승지 윤홍리(尹弘离) 장령 이유민(李裕民)을 바꾸라고 한 일은 정계(停啓)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이희태.

---

715) 민암(1636~1693): 조선 후기의 문신. 1694년 김춘택(金春澤) 등이 숙종의 폐비인 민씨(閔氏)를 복위하는 음모가 있다는 고변(告變)이 있자, 남인의 영수이던 민암은 훈련대장 이의징(李義徵)과 함께 옥사를 일으키고자 하였음. 그러나 이때 숙종은 갑자기 남인을 쫓아내고 서인을 등용하는 갑술옥사를 일으킴. 이 옥사로 제주도 대정(大靜)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가,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의 탄핵으로 곧 이의징과 더불어 사사되었음.

716) 『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6월 18일(丙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七月 十四日 壬子

○ 掌令吳羽進啓曰, 請還收杭子炤兄弟放歸田里之命, 亟命絶島定配. 請還收禁衛營所屬所安島宮家折受之命. 請自今以後, 內間所需凡物, 必先分付喉司, 奉旨擧行事, 定式施行. 請全城君混遠竄. 請前濟州牧使李喜泰拿問考律勘罪. 請還收二王子延齡君昭宗親府有司堂上之任. 請還收智島安置罪人柳命天放歸田里之命, 仍命永勿擧論於赦典【措語竝見上】掌令成碩夔, 以臣【避辭見上】引嫌而退, 處置乖當, 致有物議, 則揆以臺體, 勢難在職, 請掌令成碩夔遞差. 答曰, 不允. 處置事, 依啓.【以上燼餘謄書】

❖ 숙종 30년(1704) 갑신년 7월 14일(임자)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하는 오우진(吳羽進)의 계

○ 장령 오우진(吳羽進)이 아뢰기를, "이항의 아들[杭子] 소(炤: 이소) 형제를 석방하여 시골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속히 외딴섬에 정배(定配)하라고 명하실 것을 청합니다. 금위영 소속의 소안도(所安島)를 궁가(宮家)에서 절수(折受)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합니다. 이제부터 궁내(宮內)에서 수용되는 모든 물자는 반드시 승정원에 분부하여 성지(聖旨)를 받들어 거행할 일로 정식을 삼아 시행하게 하는 것을 청합니다. 전성군(全城君) 혼(混: 이혼)을 멀리 유배보내는 일을 청합니다.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합니다. 둘째 왕자 연령군(延齡君) 헌(昭: 이헌)에게 준 종친부(宗親府) 유사(有司) 당상(堂上)의 직임을 도로 거두어들이라고 청합니다. 지도(智島)에 안치한 죄인 유명천(柳命天)을 석방하여 시골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그대로 명을 영구히 사면(赦免)하는 법을 거론하지 말기를 청합니다.【조어는 위에 보임】 장령 성석기(成碩夔)는 신하로써【피사는 위에 보임】 인혐(引嫌)하여 물러났으니, 처치를 잘못하여 물의가 있게 하였으므로 대각(臺閣: 사헌부)의 체모로 헤아려볼 때 직책에 있기 어려운 형세이니 장령 성석기(成碩夔)는 바꾸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처치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의 등서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이희태.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七月 十五日 癸丑

○ …… 又所啓, 請前濟州牧使李喜泰拿問考律勘罪. 上曰, 勿煩. …….【以上燼餘謄書】

❖ 숙종 30년(1704) 갑신년 7월 15일(계축)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전략〉 또 아뢰기를, "청컨대,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 와서 추문하고 법률에 비추어 감죄(勘罪)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의 등서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이희태.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七月 十六日 甲寅

○ 掌令吳羽進所啓, 請還收炤兄弟放歸田里之命. 請還收安岳宮家折受之命. 請內間所需凡物, 分付喉司, 奉旨擧行事. 請全城君混遠竄. 請濟州牧使李喜泰拿問考律勘罪事. 請還收二王子延齡君昕宗親府有司堂上之任事. 請還收柳命天放歸田里之命事【措語竝見上】答曰, 勿煩.【以上燼餘謄書】

❖ 숙종 30년(1704) 갑신년 7월 16일(갑인)

□ 전 제주목사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라는 오우진(吳羽進)의 계

○ 장령 오우진(吳羽進)이 아뢰기를, "소(炤) 형제를 석방하여 시골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합니다. 안악(安岳)[717]을 궁가(宮家)에서 절수(折受)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합니다. 궁내(宮內)에서 수용되는 모든 물자는 반드시 승정원에 분부하여 성지(聖旨)를 받들어 거행할 일로 정식을 삼아 시행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전성군(全城君) 혼(混: 이혼)을 멀리 유배 보내는 일을 청합니다. 전 제주목사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합니다. 둘째 왕자 연령군(延齡君) 헌(昕: 이헌)에게 준 종친부(宗親府) 유사(有司) 당상(堂上)의 직임을 도로 거두어들이라고 청합니다. 유명천(柳命天)을 석방하여 시골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합니다.【조어는 모두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의 등서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이희태.

717) 안악(安岳): 황해도 안악군에 있는 산 이름이자, 읍 이름.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七月 二十日 戊午

○ 掌令吳羽進所啓, 請還收杭子炤等兄弟放歸田里之命事. 請還收禁衛營所屬所安島宮家折受之命事. 請內間所需凡物, 必先分付喉司, 奉旨擧行事, 定式施行. 請前濟州牧使李喜泰拿問考律勘罪事. 請還收二王子延齡君昭宗親府有司堂上之任事【措語竝見上】罪人柳命天, 以凶黨巨魁, 包藏禍心, 戕賢害國,【缺】密計, 出自其手, 緊入彦良之招, 益著倫紀之極罪, 缺被顯戮, 其時安置, 已是失刑, 而遽因疏決, 猥被恩宥, 懲討不嚴, 輿論咸憤, 公議難遏. 請還收智島安置罪人柳命天放歸田里之命. 近來國綱解弛, 法令廢閣, 大小官員, 出入公廨者, 必以公服, 不敢着白衣於衙門之內者, 前後申禁, 非不嚴明, 而人不畏法, 愈往愈甚, 頃年臺啓, 作一故紙, 各司此【缺】難禁, 此雖微事, 所關不輕, 若不別樣變通, 將無以禁斷. 請【缺】頒布事目於大小各司, 揭諸壁上, 各別申飭, 如有不遵【缺】犯禁者, 當該官員, 摘發論罪. 新除授掌令李禎翊, 時在忠淸道保寧地, 持平李相周, 時在京畿金浦地, 請竝斯速乘馹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末端事及, 下諭事, 依啓.【以上盡餘謄書】

❖ **숙종 30년(1704) 갑신년 7월 20일(무오)**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라는 오우진(吳羽進)의 계**

○ 장령 오우진(吳羽進)이 아뢰기를, "항자(杭子) 소(炤) 형제를 석방하여 시골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합니다. 궁내(宮內)에서 수용되는 모든 물자는 반드시 승정원에 분부하여 성지(聖旨)를 받들어 거행할 일로 정식을 삼아 시행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합니다. 둘째 왕자 연령군(延齡君) 헌(昭: 이헌)에게 준 종친부(宗親府) 유사(有司) 당상(堂上)의 직임을 도로 거두어들이라고 청합니다.【조어는 모두 위에 보임】죄인 유명천은 흉당(凶黨)의 거괴(巨魁)로서, 화심(禍心)을 품어 어진 이를 해치고【缺】밀계(密計)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는데, 긴히 민언량(閔彦良)의 초사(招辭)에 들어 있어 윤기(倫紀)의 극죄(極罪)가 더욱 드러났습니다. 그의 범죄를 논하자면 현륙(顯戮)를 당하기에 합당한데도 그 때 안치(安置)한 것은 이미 실형(失刑)한 것인데, 마침 소결(疏決)로 인하여 갑자기 은유(恩宥)를 입었으니, 징토(懲討)가 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이 모두 분노하여 공의(公議)가 막기 어렵게 되었으니, 청컨대 지도(智島)에

안치된 죄인 유명천에 대한 방귀전리(放歸田里)의 명을 환수하십시오.[718] 근래에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법령(法令)을 폐각(廢閣)하고 대소(大小)의 관원(官員)들이 공해(公廨)를 드나들 때는 반드시 공복(公服)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히 백의(白衣)를 입지 않고서 아문(衙門) 안에 들어가는 자는 전후에 걸쳐 이를 금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엄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지난해에 대관(臺官)이 아뢴 말을 하나의 낡은 종이에 작성하여 【중간에 빠진 글자가 많아서 해석을 생략함】 새로 제수한 장령 이정익(李禎翊)은 지금 충청도 보령(保寧) 땅에 있고, 지평 이상주(李相周)는 지금 경기도 김포(金浦) 땅에 있으니, 모두 빨리 말을 타고 올라오도록 유시(諭示)를 내리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아직 처단하지 않은 일과 하유(下諭)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의 등서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이희태.

718) 이 내용의 일부는《숙종실록》39권 '숙종 30년 7월 20일(戊午)'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 부분에 해당하는《승정원일기》원문에는 결(缺)자가 몇 개 있는데,《숙종실록》을 바탕으로 하여 보완하였음.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七月 二十三日 辛酉

○ 掌令吳羽進啓曰, 請還收炤兄弟放歸田里之命. 請還收禁衛營所屬所安島宮家折受之命. 請內間所需凡百, 必先分付喉司, 奉旨擧行事, 定式施行. 請前濟州牧使李喜泰拿問考律勘罪事. 請還收二王子延齡君昕宗親府有司堂上之任事. 請還收智島安置罪人柳命天放歸田里之命. 新除授朔寧郡守成至敏, 卽大賢之後, 而墜落家聲, 無復餘地, 雖藉世蔭, 得通仕籍, 從前履歷, 已皆不稱, 曾莅郡邑, 事多可笑, 譏嘲之言, 殆同歌謠, 新除之下, 物情愈駭, 畿甸名邑, 決不可畀諸如此之人. 請朔寧郡守成至敏改差. 黃山察訪韓永熙, 沈酗麴糵, 全拋職事, 方其在郵也, 亦不事事, 而受由上京, 半年不還, 久曠官事, 略無畏忌, 貽害郵卒, 曾不顧念, 擧措之駭異, 事體之未安, 莫此爲甚. 請黃山察訪韓永熙罷職. 答曰, 不允.【以上燼餘謄書】

❖ 숙종 30년(1704) 갑신년 7월 23일(신유)

□ 전 제주목사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라는 오우진(吳羽進)의 계

○ 장령 오우진(吳羽進)이 아뢰기를, "소(炤) 형제를 석방하여 시골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합니다. 금위영 소속의 소안도를 궁가(宮家)에서 절수(折受)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합니다. 궁내(宮內)에서 수용되는 모든 물자는 반드시 승정원에 분부하여 성지(聖旨)를 받들어 거행할 일로 정식을 삼아 시행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전성군(全城君) 혼(混: 이혼)을 멀리 유배보내는 일을 청합니다.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희태(李喜泰)를 붙잡아서 추문하고 법률에 따라 죄를 주는 일을 청합니다. 둘째 왕자 연령군(延齡君) 헌(昕: 이헌)에게 준 종친부(宗親府) 유사(有司) 당상(堂上)의 직임을 도로 거두어 들이라고 청합니다. 지도(智島)에 안치한 죄인 유명천(柳命天)을 석방하여 시골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합니다. 새로 제수한 삭녕군수(朔寧郡守) 성지민(成至敏)은 곧 대현(大賢)의 후예(後裔)로서, 집안의 명성이 추락하여 회복할 여지가 없습니다. 비록 대대의 문음(門蔭)을 빙자해서, 아첨으로 섬겨 사적(仕籍)에 오르는데, 지나온 이력(履歷)을 보면 이미 모두 일컫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군읍(郡邑)에 부임했을 때에도 웃음을 살만한 일도 많아서, 기조(譏嘲)하는 말이 거의 가요(歌謠)와 같이 나왔습니다. 새로 제수하는 명이 내려지자 물정(物情)이 더욱 놀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대의 각 고을을 이런 사람에게 결코 맡길 수 없

습니다. 삭녕군수(朔寧郡守) 성지민(成至敏)을 개차(改差)하기를 청합니다. 황산찰방(黃山察訪) 한영희(韓永熙)는 술에 빠져 맡은 일을 모두 내동댕이치고 바야흐로 역참에 있는데, 일 또한 일을 일답게 보지 않았습니다. 말미를 받아 상경했다가 반 년 동안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관청의 일을 보지 않은 일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역참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일찍이 아예 돌보지도 않았는데도 내린 거조(擧措)가 해괴하고 놀랍습니다. 사체(事體)가 미안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황산찰방 한영희를 파직시키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의 등서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전 제주목사, 이희태.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八月 十一日 戊寅

○ 下直, 濟州牧使宋廷奎.

❖ 강숙종 30년(1704) 갑신년 8월 11일(무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송정규(宋廷奎)가 하직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송정규(宋廷奎)[719]가 임금에게 작별인사를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송정규.

719) 송정규(1656~1710): 조선 후기의 문신. 1704년(숙종 30) 10월 경기도 여주목사 재임 중 이희태(1669~1715)의 후임으로 제주목사에 부임하고 1706년(숙종 32) 5월에 떠남. 제주목사 재임 중인 1704년 겨울 도내의 각 목장을 개축하여 과거 60둔으로 설정해 놓은 것을 1~6소장(所場)은 제주목에, 7~8소장은 대정현에, 9~10소장은 정의현에 속하게 하여 10소장으로 정함. 1705년(숙종 31) 정원루(定遠樓)를 중수하고, 1706년(숙종 32) 봄 함덕촌(咸德村) 동쪽 해변에 있는 병산악(屛山岳)에 서산장(西山場)을 마련하여 공마(貢馬)를 포구에 보내는 목장으로 이용하였음. 1705년 수산진(水山鎭)과 차귀진(遮歸鎭) 양진을 승격하여 조방장(助防將)을 배치하던 것을 만호(萬戶)를 배치함. 그리고 무당들이 세상을 속이고 백성을 우롱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무당들이 소유한 북과 방울 등을 거두어 무기를 만드는데 쓰도록 하였음.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八月 十六日 癸未

○ 吏批, …… 朴良儉爲濟州敎授, …….【吏曹政軸】

❖ 숙종 30년(1704) 갑신년 8월 16일(계미)

□ 박양검(朴良儉)을 제주교수(濟州敎授)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중략〉 박양검(朴良儉)을 제주교수(濟州敎授)로 삼았다. 〈하략〉. 【이조정축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박양검, 제주교수.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九月 十日 丁未

○ …… 李濡曰, 北道移粟最難, 故嶺南之寧海等處, 嶺東之通川等處, 及北路之沿邊各邑, 別爲設倉儲穀, 如楊津·貢津倉之規, 以備凶歲推移救急之資, 湖南之康津·海南等處, 爲濟州而亦爲儲穀之意, 臣嘗陳達矣. 今宜依此行之, 而若如還上例, 則必有未準捧之弊, 限三年改色, 而當其改色之年, 以本色新捧之還穀, 換置後出給, 則事甚便好矣. 閔鎭厚曰, 雖不得別備他穀, 只留近年移轉之穀, 亦好矣. 李濡曰, 北路穀物最多, 一邑還上元數中, 除出萬石, 別爲儲置, 則似有裕矣. 上曰, 所達似好, 依此分付, 可也. …….【以上備局謄錄】

❖ 숙종 30년(1704) 갑신년 9월 10일(정미)

□ 이유(李濡)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를 위한 곡식을 저장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전략〉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북도(北道: 함경도)로 이속(移粟)[720]하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영남(嶺南)의 영해(寧海) 등지와 영동(嶺東)의 통천(通川) 등지, 서울에서 함경도로 통하는 길 연변에 있는 각 고을에는 따로 창고를 설치하여 곡식을 저장해야 합니다. 만일 양진(楊津)과 공진(貢津) 창고의 규식으로 흉년일 때를 대비하여 구급 물자를 추이(推移)[721]하게 해야 합니다. 호남의 강진(康津)과 해남(海南) 등지는 제주(濟州)로 가는 곳이니 또한 곡식을 저장해야 하는 뜻을 신은 일찍이 진달(陳達)하였습니다. 지금도 마땅히 이와 같이 행한 것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환자[還上]한 예(例)와 같다면 반드시 아직 준봉(準捧)하지 못한 폐단이 있을 것이니, 3년을 기한으로 하여 개색(改色)[722]하게 하고, 마땅히 그것을 개색한 해에는 본 고을에서 신봉(新捧)한 환곡(還穀)으로 환치(換置)한 뒤에 내어 주게 하는 것이 곧 일에 있어 매우 온편하고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비록 다른 곡식을 따로 갖추지 못할지라

720) 이속(移粟): 『맹자(孟子)』 '양혜왕편(梁惠王篇)'에 있는 말인데, 하내(河內)에 흉년이 들면, 그 백성은 하동(河東)으로 옮기고, 그 곡식은 하내로 옮긴다는 말임. 곧 흉년이 든 곳에 곡식을 옮긴다는 뜻으로 쓰임.

721) 추이(推移): 1) 곡식 따이를 옮겨 감. 2) 벼슬 임기가 찬 사람이 그 후임 자리에 적당한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옮겨 가던 일. 자대(自代).

722) 개색(改色): 1) 어떤 물건을 그것과 같은 종류 가운데에서 마음에 드는 다른 것으로 바꿈. 2) 빛깔을 새로 바꿈. 또는 바꾸어 칠함. 3) 조선 시대에 물에 잠긴 쌀을 그 지방에서 대신 채워 넣던 일.

도 단지 근년(近年)에 이전(移轉)한 곡식을 남겨두는 것도 또한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서울에서 함경도로 향하는 길의 곡물은 아주 많으니, 한 고을에서 환자[還上]한 원수(元數) 가운데 만 섬을 덜어내어 따로 저치(儲置)해 두는 것이 곧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길, "아뢴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따라 분부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비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환자[還上].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九月 十日 丁未

○ 刑曹判書金鎭龜所啓, 各道奴婢推刷, 例於式年爲之矣. 壬午式年推刷, 以凶年, 退行於後式年事, 曾已定奪, 故臣於日者, 以壬午·乙酉兩式年兼行之意更稟, 則判付內, 以後日登對時稟處爲敎. 今年年事, 雖未登稔, 推刷之事, 亦有國重務, 不可每每停廢, 而三南尤爲失稔云. 春夏間飢饉必甚, 三南則待明秋擧行, 而他道則依式年例擧行, 何如? 上曰, 登對時, 使之稟處者, 非有他意也. 推刷亦重, 不可每每退行, 而八道年事, 不無優劣之殊, 欲爲區別處置之故, 稍勝處則依例爲之, 可也. 金鎭龜曰, 例有行關分付各道之規, 松都·江華等處, 例是畿邑, 依京畿爲之, 濟州, 則依全羅道, 待明秋擧行事,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以上刑曹謄錄】

❖ 숙종 30년(1704) 갑신년 9월 10일(정미)

□ 김진구(金鎭龜)가 입시하여 공문을 보내어 분부하는 규식을 전라도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형조판서 김진구(金鎭龜)가 아뢰기를, "각 도의 노비를 추쇄(推刷)[723]하는 것은 식년(式年)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임오년(1702) 식년의 추쇄(推刷)는 흉년(凶年)이 들어 다음 식년으로 물리게 한 일은 일찍이 이미 정탈(定奪)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臣)이 일전에 임오년(1702)과 을유년(1705) 두 식년에 아울러 시행할 뜻을 다시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허가한 내용에, '나중에 등대(登對)한 때에 명령을 받아 처리하라.'는 교시가 있었습니다. 올해 연사(年事: 농사)는 이미 풍년이 못되었으나, 추쇄(推刷)하는 일 또한 국가의 중요한 임무이니, 번번이 정폐(停廢)할 수가 없고 삼남(三南: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지방)은 더욱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봄과 여름 사이에 굶주림이 아주 심해서 삼남(三南)은 내년 가을을 기다렸다가 거행하고, 다른 도는 식년의 예에 따라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등대(登對)할 때 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한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추쇄(推刷)하는 일도 중요하니, 번번이 물릴 수가 없고, 8도(八道)의 연사(年事)는 우열(優劣)의 다름이 없을 수가 없어서, 구별해서 처리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 나은 곳은 전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김진구(金鎭龜)가 아뢰기

723) 추쇄(推刷): 도망한 노비나 부역, 병역 따위를 기피한 사람을 붙잡아 본래의 주인이나 본래의 고장으로 돌려보내던 일.

를, “각 도에 공문을 보내어 분부하는 규식의 예가 있는 것입니다. 송도(松都)와 강화(江華) 등지는 경기도 고을의 예가 있으니, 경기도의 예에 따라 해야 합니다. 제주(濟州)는 전라도의 예에 따르되 내년 가을을 기다려서 거행하게 하는 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이상은 형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노비추쇄, 연사, 흉사.

❖ 康熙 四十三年 甲申 九月 十八日 乙卯

○ 又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旌義縣監朴尙夏遞任, 進上馬二疋,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30년(1704) 갑신년 9월 18일(을묘)

□ 박상하(朴尙夏)가 진상한 말 2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또한 사복시 관원이 제조(提調)의 뜻을 아뢰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상하(朴尙夏)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지금 겨우 올라왔습니다. 말의 나이와 털빛은 별단(別單)으로 작성하여 들였으니,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입양(立養)하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박상하, 체임진상마.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十月 二十八日 乙未

○ 吏批, 以宋奎炫爲礪山府使, 〈以〉全百祿爲茂山府使, 以洪楀爲旌義縣監.【以上吏曹謄錄】

❖ 숙종 30년(1704) 갑신년 10월 28일(을미)

□ 홍우(洪楀)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송규현(宋奎炫)을 여산부사(礪山府使)로 삼고, 전백록(全百祿)을 무산부사(茂山府使)로 삼고, 홍우(洪楀)[724]를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이상은 이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홍우, 정의현감.

724) 홍우(1661년~?년): 생원(生員)을 거쳐 1699년 숙종(肅宗) 37년에 문과급제(文科及第)하여 전적(典籍)을 지냄. 1704년에 정의현감으로 부임함.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十一月 十九日 乙卯

○ 吏批, 啓曰, 判書洪受瀗病不來, 參判黃欽服制,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只出緊任. 又啓曰, 新除授積城縣監柳光廷呈狀內, 本邑有奴婢十餘口, 揆諸法例, 有難赴任云, 境內有奴婢十口以上者, 勿除本邑, 自是法例, 柳光廷改差, 何如? 傳曰, 允. 又啓曰, 通禮院引儀洪晥, 身病甚重, 不得察任云, 改差, 何如? 傳曰, 允. 又啓曰, 定平府使安世衡, 平昌郡守成璹, 大靜縣監金弘瑞, 以善賑, 加資事, 命下矣. 雖已資窮, 未經準職, 何以爲之? 敢稟. 傳曰, 竝特爲加資. 又啓曰, 卽接禮曹移文, 則光陵參奉李壽祺呈狀內, 以獨子無兄弟之人, 有八十六歲老母, 家在忠淸道禮山地, 距京三百餘里, 萬無離側從仕之路, 卽爲啓遞云. 李壽祺情理, 過爲切迫, 有難强令察任, 改差, 何如? 傳曰, 允.

❖ 숙종 30년(1704) 갑신년 11월 19일(을묘)

□ 이비(吏批)에서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홍서(金弘瑞) 등에게 가자(加資)하라는 명을 내림

○ 이비(吏批)가 아뢰기를, "판서 홍수헌(洪受瀗)은 병으로 나오지 못했고 참판 황흠(黃欽)은 복제(服制)로, 소신(小臣)이 혼자 정무를 보기가 미안하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품의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긴요한 직임만 차출하라."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새로 제수(除授)한 적성현감(積城縣監) 유광정(柳光廷)의 정장(呈狀) 내용에, '이 고을에는 노비 10여 명이 있는데, 여러 법례를 헤아려보니, 부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경내에 노비 10명 이상 있는 것은 본읍(本邑)에서 없애지 말게 하는 것이 법례이니, 유광정을 개차(改差)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통례원(通禮院) 인의(引儀) 홍완(洪晥)이 '병세가 매우 중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개차(改差)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평부사(定平府使) 안세형(安世衡), 평창군수(平昌郡守) 성숙(成璹),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홍서(金弘瑞)가 진휼을 잘했다고 해서 가자(加資)할 일을 명하셨습니다. 비록 이미 자궁(資窮)[725]에 이르렀지만 준직(準職)[726]을 지내지 않았으니 어찌해

725) 자궁(資窮): 조선시대 당하관(堂下官)으로서 제일 높은 품계에 오른 벼슬자리, 곧 정3품 통훈대부의 벼슬자리를 이르는 말. 계궁(階窮).

야합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모두 특별하게 가자(加資)하라."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곧 접한 예조의 이문(移文)을 보니, 광릉참봉(光陵參奉) 이수기(李壽祺)의 정장(呈狀) 내용에, '독자로서 형제가 없는 사람이 86세가 된 노모(老母)가 있는데다가, 집이 충청도 예산(禮山) 땅입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가 3백여 리나 되고, 부모의 곁을 떠나서 벼슬길에 오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라고 하니, 즉시 보고 교체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수기(李壽祺)의 정리(情理)는 과연 절박(切迫)한 것이니, 억지로 직임을 보살피게 하기 어렵습니다. 개차(改差)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김홍서, 선진, 가자.

726) 준직(準職): 1) 품계(品階)에 상당한 관직을 일컬음. 2) 당하관(堂下官)으로서 가장 높은 당하(堂下) 정3품(正三品) 벼슬.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十一月 十九日 乙卯

○ 吏批, 以兪集一爲都承旨, 南龍明爲副校理, 趙道彬爲獻納, 金德基爲刑曹參議, 權卣爲玉果縣監, 平昌郡守成璹, 大靜縣監金弘瑞, 以善治善賑, 加通政. 兵批, 以李廷謙付副護軍, 李健命付副司直.

❖ 숙종 30년(1704) 갑신년 11월 19일(을묘)

□ 이비(吏批)에서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홍서(金弘瑞) 등은 정치를 잘하고 진휼을 잘한 것으로써, 통정(通政)으로 가자(加資)함

○ 이비(吏批)에서, 유집일(兪集一)을 도승지(都承旨)로 삼고, 남용명(南龍明)을 부교리(副校理)로 삼고, 조도빈(趙道彬)을 헌납(獻納)으로 삼고, 김덕기(金德基)를 형조참의(刑曹參議)로 삼고, 권설(權卣)을 옥과현감(玉果縣監)으로 삼았다. 평창군수(平昌郡守) 성숙(成璹)과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홍서(金弘瑞) 등은 정치를 잘하고 진휼을 잘한 것으로써, 통정(通政: 통정대부)으로 가자(加資)하였다. 병비(兵批)에서, "이정겸(李廷謙)을 부호군(副護軍)에 붙이고, 이건명(李健命)을 부사직(副司直)에 붙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김홍서.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十二月 十四日 庚辰

○ 司饔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濟州柑橘進上, 今始來到, 而陪持人所供內, 宗廟薦新柑橘, 則來到, 而其中洞庭橘乳柑, 則未及入來云. 進上旣到之後, 薦新遲延, 事體未安. 洞庭橘乳柑進上元數內, 各二百五十二箇, 移送禮曹, 宗廟·永昭殿·敬寧殿, 明曉薦新後, 還爲內入, 何如? 傳曰, 允.【以上禮曹謄錄】

❖ 숙종 30년(1704) 갑신년 12월 14일(경진)

□ 제주(濟州)에서 진상(進上)한 감귤(柑橘)을 천신(薦新)한 뒤에 궁중으로 들이도록 함

○ 사옹원(司饔院) 관원(官員)이 감선제조(監膳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감귤(柑橘)을 진상(進上)한 것이 지금 비로소 와서 도착했는데, 가지고 온 사람이 올린 것들 중에,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하는 감귤(柑橘)인 경우 도착했는데, 그 중 동정귤(洞庭橘)과 유감(乳柑)은 아직 미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상한 것이 이미 도착한 뒤에도 천신(薦新)이 지연(遲延)되었으니, 사체(事體)가 미안합니다. 동정귤과 유감은 진상한 원수(元數) 안에, 각 252개가 예조로 이송하였는데, 종묘와 영소전(永昭殿), 경녕전(敬寧殿)에는 내일 새벽에 천신(薦新)한 뒤에 도로 궁중으로 들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감귤, 진상, 동정귤, 유감, 천신.

❖ 康熙 四十三年 甲申 十二月 十七日 癸未

○ 李徵龜, 以禮曹言啓曰, 濟州牧使所封, 去十一月令, 宗廟·永昭殿·敬寧殿薦新乳柑洞庭橘等, 今始上來, 而前因司饔院啓辭, 以進上旣已薦新, 今此封進柑橘, 令該院捧入, 何如? 傳曰, 允.

❖ 숙종 30년(1704) 갑신년 12월 17일(계미)

□ 이번에 봉진한 감귤을 사옹원(司饔院)에서 봉입하게 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이징귀(李徵龜)가 예조에서 말로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한 것은 지난 11월령(一月令)으로, 영묘(宗廟)와 영소전(永昭殿), 경녕전(敬寧殿)에 천신한 유감(乳柑)과 동정귤(洞庭橘) 등이 지금에야 비로소 올라왔습니다. 전에 사옹원의 계사(啓辭)에 따르면, 진상한 것은 이미 천신(薦新)하였는데, 지금 이 봉진한 감귤을 원(院: 사옹원)으로 봉입(捧入)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소봉, 유감, 동정귤.

1705年

❖ 康熙 四十四年 乙酉 一月 二十五日 庚申

○ 下直, 長興府使林世良, 旌義縣監洪楀.

❖ 숙종 31년(1705) 을유년 1월 25일(경신)

□ 정의현감(旌義縣監) 홍우(洪楀) 등이 하직함

○ 장흥부사 박세량(林世良), 정의현감(旌義縣監) 홍우(洪楀)[727]가 하직했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홍우, 하직.

727) 홍우(1661~?): 본관 남양(南陽). 자 천경(天擎). 1700년(숙종 26) 문과 급제. 정의현감으로 1705년(숙종 31) 3월 도임, 1706년(숙종 32) 5월 체임.

❖ 康熙 四十四年 乙酉 二月 六日 庚午

○ 右議政李濡所啓, 濟州試才御史差送事, 曾於癸未年, 因本州狀啓定奪之後, 適値年事大歉, 且非時急之事, 故姑爲停止, 以爲觀勢差送之地矣. 上年農事, 雖云失稔, 比之於其前, 則稍勝云, 而未及更爲稟定, 今不可一向遷就, 依江都例, 趁此時差送, 似當矣. 上曰, 李衡祥時事耶? 右相曰, 然矣. 左相曰, 昨年形勢, 實難送之, 而今亦値農時, 待農歇後發送, 似可矣. 左承旨南致熏曰, 濟州試士, 則不必以農時爲拘矣. 上曰, 曾於己未秋, 李增, 以御史下去, 至庚申春還來矣. 南致熏曰, 尹深, 亦於甲辰秋下去, 翌年乙巳春復命矣. 左相曰, 彼此往來時風勢, 春秋順逆不同, 三四月間, 則猶可以入往云矣. 今秋農事, 亦未知其如何, 有難等待, 爲先差出御史, 似當矣. 上曰, 御史差出, 可也. 又所啓, 濟州物情, 曾有所聞, 今因御史事敢達. 朝家之差送御史, 實出於慰悅島民之意, 而試才取人之後, 更無收用之擧, 則惡在慰悅之意乎? 前後文武出身之出來仕宦者絶無, 近年以來, 尤無收拾, 今雖試才, 又復如此, 則反有落莫之歎矣. 臣於待罪銓曹時, 適値敎授之有闕, 欲爲陳達變通, 以本土文官差出而未果, 蓋自此差送敎授者, 不過微末文官, 未必勝於本土之文官, 而官況亦甚涼薄, 越海入去者, 例多厭苦, 且難得人, 則徒爲貽弊而無益矣. 本土之人, 則旣不得遠來從宦, 得此敎授之任, 亦足爲慰悅之道, 而自本州各別擇差, 觀其擧職勤慢, 而殿最黜陟, 則必有着實之效矣. 前頭待敎授有闕, 依此施行, 何如? 上曰, 依此爲之, 似好矣. 又所啓, 昨日伏見備忘記, 有死囚外, 遭親喪者, 限成服保放之敎, 不勝感激, 我國家所以維持者, 在於士大夫, 而爲士大夫者, 若不仰體聖意, 作奸犯科, 則豈不痛哉? 在前被囚之人遭親喪則或以病重, 啓請保放, 不以實狀直爲啓稟, 今者聖明, 曲軫下情, 乃至於此, 實有光於孝理之下矣. 頃於朝參時, 承旨有以金泰潤之歸葬其祖父事陳達者, 此等特施之恩, 出於上, 大臣或陳白, 以俟處分則可矣, 而承旨雖曰近侍, 續續奏達, 事體不當矣. 向者朴泰晦事, 大臣陳達, 而臺臣防塞, 以國法之嚴論之, 則臺臣之所執, 是矣. 泰晦, 卽先正臣朴世采之子也. 其罪狀, 誠爲絶痛, 而朝家所以施恩者, 爲其親喪, 而非論其罪之輕重, 則或許或否, 事涉不均, 從前竄配之人, 許令歸葬者, 非止一二, 而此後亦未必其永塞此路, 則每因續續煩請, 以致恩歸於下者, 極爲未安. 臣意則此事亦依日昨聖敎, 定式施行, 似爲得當矣. 上曰, 除死罪外, 在謫在囚之遭親喪者, 許令歸葬事, 定式施行. 左相曰, 朴泰晦事, 小臣曾有所達, 而非謂泰晦罪輕也. 世采以平日禮待儒相, 其妻死而子與孫, 皆遠配, 無主喪者, 誠爲憫惻. 古語云, 猶將十世宥之. 其子之罪雖重, 爲其葬事, 暫令來見, 寧有所害? 雖是濟州仰役官奴, 厥父母, 在陸地而死, 則給由出見, 不是異事. 泰晦之許見其母葬事, 豈在於緩罪撓法乎? 聞泰晦母臨死, 使勿永

窆. 以待泰晦云, 其言可矜. 今若定式, 則泰晦亦宜自在其中矣. 右相曰, 旣有定式之命, 則泰晦之許令歸葬, 亦自在其中矣. 上曰, 然矣.

❖ 숙종 31년(1705) 을유년 2월 6일(경오)

□ 인견(引見)에 이유(李濡)가 입시하여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의 차송(差送) 등에 대하여 논의함

○ 우의정 이유(李濡)[728]가 아뢰기를, "제주시재어사를 차출하여 파견하는 일은 일찍이 계미년(1703)에 본주(本州)의 장계에 따라 결재를 얻은 뒤였는데, 마침 큰 흉년을 만났고 또한 시급한 일이 아니었기에 일단 멈추고 형세를 보아가면서 차출하여 파견하기로 했었습니다. 지난해 농사가 비록 흉년이라고는 하나 그 전에 비하면 조금은 낫다고 하였지만 미처 다시 여쭈어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한결같이 미룰 수만은 없으니 강도(江都)의 예(例)에 따라 이때에 차출하여 파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형상(李衡祥)[729] 때의 일이냐?"라고 하니 우상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좌상이 말하기를, "작년의 형세는 실로 보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한 농사철을 만났으니 농사일이 한가해질 때를 기다린 후에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좌승지 남치훈(南致熏)[730]이 말하기를, "제주의 시사(試士)는 농사철에 구애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기미년(1679) 가을에 이증(李增)[731]이 어사로 내려가서 경신년(1680) 봄에 돌아온 적이 있다."라고 하였다. 남치훈이 말하기를, "윤심(尹深)[732]이 또한 갑진년(1664) 가을에 내려갔다가 다음해인 을사년(1665) 봄에 복명(復命) 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좌상이 말하기를, "피차간 왕래할 때에 풍세(風勢)가 봄과 가을의 순역(順逆)이 같지는 않지만 3~4월 사이에는 오히려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금년 가

728) 이유(1645~1721): 본관 전주(全州). 자 자우(子雨). 호 녹천(鹿川). 시호 혜정(惠定). 1668년(현종 9) 문과 급제. 경상도관찰사, 대사헌, 병조판서, 영의정 역임.

729) 이형상(1653~1733): 본관 전주(全州). 자 중옥(仲玉). 호 병와(甁窩)·순옹(順翁). 1680년(숙종 6) 문과 급제. 영광군수, 경주부윤 역임. 저서 《병와집》. 제주목사로 1702년(숙종 28) 6월에 도임하여 1703년(숙종 29) 6월에 떠났음.

730) 남치훈(1645~1716): 본관 의령(宜寧). 자 훈연(熏然). 호 지산(芝山). 1678년(숙종 4) 문과 급제. 도승지, 형조참판, 강원도감찰사 역임.

731) 이증(1628~1686): 1677년(숙종 3) 문과 급제. 의주부윤, 부사직 역임. 저서 《남사일록(南槎日錄)》.

732) 윤심(1633~1692): 본관 파평(坡平). 자 현통(玄通). 호 징암(懲庵). 1660년(현종 1) 문과 급제. 경기도관찰사, 도승지, 강화유수, 개성유수 역임.

을농사 또한 어찌될지 알지 못하여 기다림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어사를 차출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를 차출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주의 물정(物情)에 대해 일찍이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어사의 일로 감히 아룁니다. 조정이 어사를 차출하여 파견하는 것은 실로 섬 백성들을 위열(慰悅)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시재(試才)하여 사람을 선발한 뒤에 다시 수용(收用)하는 일이 없다면 어디에 위열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까? 앞뒤 문무(文武) 출신(出身)[733] 중에 나와서 벼슬살이 하는 자가 전혀 없고, 근년에 와서는 더욱 수습(收拾)함이 없으니, 지금 비록 시재를 한다고 해도 또 다시 이와 같다면 도리어 쓸쓸한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전조(銓曹)[734]에 근무하고 있을 때 마침 교수(敎授)의 결원이 있어서 아뢰어 진달하여 본토(本土)의 문관을 차출하려 했지만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대개 이때부터 차출하여 파견하는 교수라는 자는 미미한 문관에 불과하여 반드시 본토의 문관보다 낫지 않으며, 녹봉 또한 심히 변변치 못하여 바다를 건너서 들어가는 것을 으레 다분히 싫어하여 괴롭게 여기고, 또한 사람을 얻기가 어렵기에 다만 폐해만 끼치고 이로움이 없습니다. 본토의 사람은 이미 먼 곳에서 와서 벼슬살이를 할 수 없기에 이 교수의 직임을 얻는 것도 또한 족히 위열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본주(本州)에서 각별히 가려 차출하고, 그 직무의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살펴서 전최(殿最)[735]하여 출척(黜陟)한다면 반드시 착실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수가 결원할 때를 대비해서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하였다.[736] 또 아뢰기를, "어제 삼가 비망기[737]를 보니, 사형의 죄를 범한 죄수 외에 친상(親喪)을 당한 자에게 성복(成服)에 한하여 보방(保放)[738]한다는 하교가 있었는데, 감격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지되는 까닭은 사대부에 있는데, 사대부라는 자가 우러러 성의(聖意)를 본받지 않고 나쁜 짓을 하여 법을 어긴다면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옥에 갇힌 죄수가 친상을 당하면 혹은

733) 출신(出身): 과거에 급제하고 아직 출사(出仕)하지 못한 사람. 주로 무과 급제자를 지칭함.
734) 전조(銓曹): 문·무관의 전형(銓衡)을 맡아 보던 이조와 병조.
735) 전최(殿最): 포폄(褒貶). 관원의 근무 성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행해졌다. 외관(外官)은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가 성적을 평가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까지 계본(啓本)을 올리도록 함.
736) 이상의 내용은 《비변사등록》 1705년(숙종 31) 2월 9일자 기사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이, 이하의 내용은 《숙종실록》 1705년(숙종 31) 2월 6일자 기사에서 이보다 간략한 내용이 확인됨.
737) 비망기(備忘記): 임금의 명령이나 의견을 적어서 승지(承旨)에게 전하는 문서.
738) 보방(保放): 죄수를 일정기간 동안 보증인을 세우고 풀어주던 것. 병으로 인한 보방과 친상(親喪)으로 인한 보방 등이 있으며, 병이 낫거나 친상을 치른 뒤에는 재수감하였음.

병이 중하다는 이유로 보방을 계청(啓請)하였지 실상으로 바로 아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성명(聖明)의 아래 백성들에 대한 곡진한 진념(軫念)이 곧 여기에 이르렀으니, 실로 효로써 다스리는 세상에 광채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조참(朝參)[739] 때 승지가 김태윤(金泰潤)[740]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 조부를 장사지내게 하는 일로 진달(進達)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특별히 베푸는 은혜는 위에서 나와야 할 것이며, 대신은 혹 진달하고 아뢰어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곧 가하다 할 것입니다. 승지가 비록 근시(近侍)[741]라 할지라도 이어서 주달(奏達)하는 것은 일의 체통이 마땅하지 않을 듯합니다. 지난번에 박태회(朴泰晦)의 일을 대신(大臣)[742]이 진달하였지만 대신(臺臣)[743]이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국법의 엄함으로 논한다면 대신(臺臣)이 고집하는 것이 맞습니다. 태회는 곧 선정신(先正臣) 박세채(朴世采)[744]의 아들입니다. 그 죄상이 실로 절통(絶痛)한데도 조정이 은혜를 베푼 까닭은 그 친상을 위함이지 그 죄의 경중을 논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혹자는 허락하고 혹자는 허락하지 않는다면 일이 공평하지 않은 것에 이르는 것입니다. 종전에 귀양살이 하고 있는 죄인을 집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르게 한 것이 한 둘에 그치지 않는데, 차후에도 또한 이 길을 영원히 막지 않는다면 매번 잇달아 번거로운 청으로 인하여 은혜가 아랫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 지극히 미안하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일을 또한 며칠 전의 성교(聖敎)대로 정식(定式)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수를 제외하고, 유배에 있거나 옥에 갇혀 있는 죄수 중에 친상을 당한 자를 집으로 돌아가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는 일을 정식하여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좌상이 말하기를, "박태회의 일은 소신(小臣)이 일찍이 진달한 바가 있는데, 태회의 죄가 가볍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세채는 평소에 예로써 대우했던 유상(儒相)[745]입니다. 그의 처가 죽었고, 자식과 손자가 모두 먼

739) 조참(朝參): 한 달에 네 번 중앙에 있는 문무백관이 정전(正殿)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政事)를 아뢰던 일.

740) 김태윤(金泰潤): 희빈(禧嬪) 장씨(張氏)가 신당을 차려 놓고 인현왕후(仁顯王后)를 저주한 것이 발각되어 그 오라비인 장희재(張希載)와 함께 처형되었던 1701년(숙종 27)의 옥사(獄事)에 연루된 자. 진도군(珍島郡)에 유배되었음.

741) 근시(近侍): 임금님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

742) 대신(大臣): 의정부의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총칭. 정승. 여기서는 자기 자신 곧 좌상(左相)을 가리킴.

743) 대신(臺臣): 사헌부 관원의 통칭. 대관(臺官)·헌관(憲官)이라고도 함.

744) 박세채(1631~1659): 본관 반남(潘南). 자 화숙(和叔), 호 현석(玄石)·남계(南溪). 시호 문순(文純). 집의, 동부승지, 영의정 역임. 저서 《동유사우록》, 《남계집》.

745) 유상(儒相):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선비의 신분으로서 정승(政丞)이 된 사람.

곳에 유배되어 주상(主喪)할 자가 없으니 실로 불쌍하고 측은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오히려 10대의 자손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746].'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식의 죄가 비록 중하지만 그의 장사를 위해 잠시 와서 보게 한다면, 어찌 해로운 바가 있겠습니까? 비록 이것이 제주의 앙역관노(仰役官奴)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육지에 있으면서 죽었다면, 말미를 주어 나가서 보게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태회를 그 어미의 장사를 보게 허락하는 일이 어찌 죄를 느슨히 하고 법을 어지럽히는 것이겠습니까? 들으니, 태회의 어미가 죽음에 임해서 완전히 장사를 지내지 말고 태회를 기다리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 정식을 한다면 태회 또한 마땅히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좌상이 말하기를, "이미 정식의 명이 있었으니 태회를 집으로 돌아가 장사지내도록 허락하는 것이 또한 절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유, 제주시재어사, 남치훈, 교수, 박태회.

746) 오히려 10대의 자손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 《춘추좌씨전》 양공(襄公) 21년조에,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기해(祁奚)가 선자(宣子)를 만나 진(晉)나라의 대부인 숙향(叔向)의 공과(功過)를 논하면서 "오히려 10대의 자손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였던 것을 말함.

❖ 康熙 四十四年 乙酉 二月 六日 庚午

○ 右議政李濡所啓, 濟州以海外孤島, 距陸絶遠, 脫有海寇, 無他應援之勢, 而要害防護之所有九, 稱以助防將, 以武士中差定云. 其爲任事, 甚關緊, 擇其最緊兩處, 陞爲萬戶, 以其餘助防將之有久勤才能者, 隨闕陞差萬戶. 又以本牧將官之有久勤者, 陞差助防將, 以次次遷轉 激勵之地, 則亦合於慰悅之道, 問于曾經牧使之人, 則皆以爲便云. 使之依此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濟州之民, 私賤居多, 士夫家奴婢, 或因其官員稱念, 徵貢之弊不絶, 或放賣於本土之人, 則侵虐之端, 尤不能支當. 若依北道之例, 自朝家給價於本主, 買作公賤, 則在本主, 反有所利, 作爲公賤, 以除被傷之苦, 而仍屬軍伍, 則可以安保樂生, 緩急得力. 聞本州所在公賤, 則雖是內奴婢, 一年所納之貢, 不過二斗之米, 故皆以爲便云, 令該曹依此爲之, 似好矣. 上曰, 依爲之. …….

❖ 숙종 31년(1705) 을유년 2월 6일(경오)

□ 인견(引見)에 이유(李濡)가 입시하여 제주(濟州) 조방장(助防將)의 차정과 노비수공(奴婢收貢)의 폐단 등에 대한 논의함

○ 우의정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제주는 바다 밖의 외딴 섬으로 육지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일 해구(海寇)가 있으면 다른 응원이 없는 형세인데, 요해(要害)를 방호하는 곳 9군데를 갖추고, 조방장(助防將)이라 칭하는 이를 무사 중에서 차정(差定)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맡은 일이 심히 긴요함에 관계되니, 그 가장 긴요한 두 곳을 가려서 승격시켜 만호로 삼고, 그 나머지 조방장 중에 오래 근무하고 재능이 있는 자로 결원에 따라 만호로 승차(陞差)하며, 또 본목(本牧) 장관(將官) 중에 오래 근무한 자를 조방장으로 승차하길 차례대로 옮겨간다면, 격려가 되는 것이 또한 위열(慰悅)하는 방법에 합당할 것입니다. 일찍이 목사를 지냈던 사람에게 물으니, 모두가 편리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주의 백성들은 사천(私賤)[747]이 대부분인데, 사대부의 노비들은 혹은 관원의 칭념(稱念)[748]으로 인하여 신공(身貢)을 징수하는 폐단이 끊

747) 사천(私賤): 개인에 의해 사역되고, 매매 상속되었던 노비. 사노비(私奴婢). 공천(公賤)에 대한 대칭임.

748) 칭념(稱念): 관원이 외방에 나아갈 적에 고관들이 사적으로 은근히 부탁하는 것을 뜻함.

이지 않고, 혹은 본토(本土) 사람에게 팔리게 되니 곧 침학(侵虐)의 폐단을 더욱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북도(北道)[749]의 예(例)에 따라 조정에서 본 주인에게 값을 지급하여 사서 공천(公賤)[750]으로 삼는다면 본 주인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이로운 바가 있으니 공천을 만들어서 해를 입는 고통을 없애고 그대로 군오(軍伍)에 소속시킨다면 편안히 보존하며 삶을 즐길 수 있고 위급한 경우에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들으니, 본주(本州)에 있는 공천은 비록 이것이 내노비(內奴婢)라 하더라도 1년에 바치는 신공이 2말의 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두가 편리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이대로 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751]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유, 조방장, 사천, 공천, 만호.

749) 북도(北道): 함경도.

750) 공천(公賤): 관에 딸린 사내종과 계집종의 총칭. 죄를 짓고 종이 된 자, 관청 소속의 기생(妓生)·나인(內人)·관노비(官奴婢)·역졸(驛卒) 등임.

751) 《비변사등록》 1705년(숙종 31) 2월 9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四年 乙酉 二月 十日 甲戌

○ 右議政李濡所啓, 此乃南兵使尹就五狀啓也, 上年秋操, 旣已設行, 春操設行與否, 有所陳稟矣. 飢荒之餘, 纔行秋操, 卽今農節不遠, 春操不必行之, 只令營將巡點, 似可矣. 上曰, 依爲之. …… 又所啓, 葛頭山可合設鎭之狀, 前已陳達, 而因其養松之蟲損, 自賑廳下送差人, 今方斫伐發賣, 措備賑穀矣. 蓋聞此地, 乃是海防賊路最緊之處, 邊將在所不已, 而各邑戰船, 例多虛疎, 以靈巖戰船移給, 則形勢亦甚便宜. 詢問利害於本道, 則亦以爲可合設鎭, 故廟堂之議, 已爲完定, 而設鎭事體不輕, 不可以報狀施行, 使之具由啓聞, 當待其啓聞定奪, 差出僉使, 而康津·海南等處, 設倉儲穀, 以備濟州移轉事, 旣有所定奪, 而兩邑之去濟州, 水路之便順, 皆不如葛頭山倉舍, 林木亦難辦出云. 自賑廳, 爲先分付於下去別將, 以其蟲損之木, 造作倉舍, 而穀物每每推移入送, 似爲未易. 上年濟州移轉穀中, 數千石, 使本州, 從民願, 以魚藿代捧, 出送于葛頭山, 而換穀儲置, 値凶歲輸送, 則事涉着實, 依此擧行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

❖ 숙종 31년(1705) 을유년 2월 10일(갑술)

□ 인견(引見)에 이유(李濡) 등이 입시하여 갈두산(葛頭山)에 제주(濟州)의 흉년에 대비한 곡식을 쌓아둘 창사(倉舍)를 짓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우의정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이것은 곧 남병사 윤취오의 장계입니다. 작년 가을철 군사조련을 이미 설행(設行)하고, 봄 군사조련 설행 여부를 여쭌 바가 있습니다. 기근으로 황폐한 끝에 겨우 가을 군사조련을 설행하였고, 지금은 농사철이 멀지 않았으니 봄 군사조련을 반드시 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장(營將)으로 하여금 순점(巡點)하게 하는 것이 옳은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갈두산[752]이 진(鎭)을 설치하기에 합당하다는 장계는 전에 이미 진달(陳達)하였는데, 그곳에서 기르는 소나무의 충해로 인해 진청(賑廳)에서 내려 보낸 차인(差人)이 지금 베어 내어 팔아서 진휼곡(賑恤穀)을 조처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들으니, 이곳은 곧 해안 방어에 있어 적로(賊路)의 가장 긴요한 곳으로 변장(邊將)을 그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읍의 전선(戰船)은 으레 허술함이 많으니, 영암(靈巖)의 전선을 옮겨 지급한다면 형세가 또한 매우 편리하고 마땅할 것입니

752) 갈두산(葛頭山):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소재. 해발 156m.

다. 본도(本道)에 이로움과 해로움을 물으니 또한 진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묘당(廟堂)의 논의는 이미 완전히 결정되었지만, 진을 설치하는 일의 체통이 가볍지 않기에 보장(報狀)으로 시행할 수 없어 사유를 갖추어 계문(啓聞)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땅히 그 계문을 기다렸다가 결정하고 첨사(僉使)를 차출해야 할 것입니다. 강진(康津)·해남(海南) 등에 창(倉)을 설치하여 제주로 이전하는 것을 대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읍에서 제주로 갈 때 수로(水路)의 편리함은 모두가 갈두산 창사(倉舍)만 못하고, 목재 또한 갖추어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진청에서 우선 내려가는 별장(別將)에게 분부하여 그 충해 입은 나무를 가지고 창사를 짓도록 하고, 곡물을 매번 추이(推移)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니, 작년 제주로 이전한 곡물 중에 수천 석을 본주(本州)로 하여금 백성들의 소원에 따라 어곽(魚藿)으로 대신 받아서 갈두산으로 내어 보내어 곡식으로 바꿔 쌓아두게 하였다가 흉년을 당했을 때 실어 보낸다면 일이 착실해질 것입니다. 이대로 거행하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753]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유, 갈두산, 창사, 어곽, 흉년.

753) 《비변사등록》 1705년(숙종 31) 2월 13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四年 乙酉 三月 十一日 乙巳

○ 晝講入侍時, 知事趙泰采所啓, 頃日備局引見時, 除死罪外, 在謫在囚之遭親喪者, 許令歸葬定式事傳敎, 故濟州定配罪人朴泰晦, 則已爲發關分付, 使之歸見其母葬, …….

❖ 숙종 31년(1705) 을유년 3월 11일(을사)

□ 주강에 조태채(趙泰采)가 입시하여 모친상을 당한 제주(濟州) 정배죄인 박태회(朴泰晦)의 귀장(歸葬)을 허락하였다는 조태채의 계

○ 주강(晝講)에 입시할 때 지사 조태채[754]가 아뢰기를, "지난번 비국을 인견할 때, 사죄(死罪)를 제외한 나머지로, 적소(謫所)에 있거나 감옥에 있으면서 친상(親喪)을 당한 자에게 귀장(歸葬)을 허락하는 것에 대해 정식(定式)하는 일을 전교하였습니다. 때문에 제주 정배죄인 박태회를 공문을 보내어 분부하여 그 어미의 장례를 돌아가 보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박태회, 정배죄인, 귀장.

754) 조태채(1660~1722): 본관 양주(楊州). 자 유량(幼亮). 호 이우당(二憂堂). 시호 충익(忠翼). 1686년(숙종 12) 문과 급제. 한성부판윤, 판의금부사, 좌의정 역임. 저서《이우당집》.

❖ 康熙 四十四年 乙酉 三月 十五日 己酉

○ 吏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觀此副校理李肇上疏, 則□□□□□□□□□□□□□□□□□□□□□駭也. 李濡曰, 閫帥安敢狀啓辭職乎? 此乃輕蔑朝廷之故也. 上曰, 此若置之, 則有關後弊, 拿問, 可也. 又所啓, 此乃濟州牧使宋廷奎狀啓也, 前後試才御史之行, 皆秋來春去, 今番御史, 若於歲前入來, 春末回還, 則不妨農時, 且得風便云, 頃者李師尙, 差下御史, 旋卽遞差之後, 尙未出代矣. 本州牧使狀啓如此, 御史則雖預爲差出, 使之趁冬前入去, 待歲後出來, 似合事宜矣. 上曰, 依爲之. 又所啓, 此則全羅監司徐文裕狀啓也. 小臣曾以葛頭山可合設鎭之意, 有所陳達, 仍令備局, 分付本道, 使水使, 看審形便啓聞矣. 今此狀啓, 枚擧水使所報, 以爲果合設鎭云, 令兵曹差出僉使, 磨鍊節目, 而此地曾前長養船材之木, 盡被蟲損, 設鎭後山腰以上, 則定其界限, 更爲養松, 本官靈巖戰船藏泊守護之道, 多有疎虞之端, 移屬本鎭, 似爲着實. 且令賑廳, 料理聚穀之道, 設倉留置, 以備凶歲, 濟州移粟, 俾無臨時窘迫之弊事, 亦已定奪分付矣. 使僉使, 兼管賑廳所設倉穀, 亦涉便當, 故敢達. 上曰, 事甚便當, 以此分付爲之, 可也. ……. 【備局謄錄】

❖ 숙종 31년(1705) 을유년 3월 15일(기유)

□ 송정규(宋廷奎)의 장계 등에 대한 이조(吏曹)의 계목

○ 이조(吏曹)의 계목에, "계하(啓下)하신 것을 점련(粘連)하였습니다. 부교리 이조(李肇)의 상소를 보니, □□□□□□□□□□□□□□□□□□□□□□ 놀랍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곤수(閫帥)가 어찌 감히 장계를 올려 사직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곧 조정을 경멸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을 만약에 그냥 놔둔다면 훗날 폐단에 관계가 있을 것이니 잡아다가 심문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것은 곧 제주목사 송정규(宋廷奎)[755]의 장계입니다. '전후 시재어사(試才御史)의 행차는 모두 가을에 왔다가 봄에 가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어사가 만약 설을 쇠기 전에 들어와서 늦봄에 돌아간다면 농사철을 방해하지 않고 또 바람을 얻기에 편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이사상(李師尙)[756]을 어사로 차하(差下)하였다가, 곧

755) 송정규(1656~1710): 본관 여산(礪山). 자 원경(元卿). 호 우수(迂叟). 1683년(숙종 9) 문과 급제. 제주목사로 1706년(숙종 32) 9월 도임, 1709년(숙종 35) 5월 체임. 사간원정언, 사헌부지평, 경성판관 역임. 저서 《해외문견록(海外聞見錄)》.

756) 이사상(1656~1725): 본관 전주(全州). 자 성망(聖望). 1689년(숙종 15) 문과급제. 예조참판, 이조참

바로 체차(遞差)한 뒤로 아직까지 대신할 사람을 차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사는 비록 미리 차출하더라도 겨울에 이르기 전에 들어가서 설이 지난 뒤에 나오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는 전라감사 서문유(徐文裕)[757]의 장계입니다. 소신은 일찍이 갈두산(葛頭山)이 진(鎭)을 설치하기에 합당하다는 뜻으로 진달(陳達)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본도(本道)에 분부하여 수사(水使)로 하여금 형편을 자세히 살펴 계문(啓聞)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장계에서 수사가 보고한 것을 하나하나 들면서 과연 진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조로 하여금 첨사를 차출하여 절목을 마련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일찍이 전에 길게 자란, 배를 만드는데 쓰는 나무가 모두 충해를 입었으니, 진을 설치한 후 산허리 이상은 그 경계를 정해서 다시 소나무를 기르게 하고, 본관(本官) 영암(靈巖)이 전선(戰船)을 감추어 정박시켜 보호하는 방법에 다분히 허술한 폐단이 있으니, 본진(本鎭)으로 옮겨 붙이는 것이 착실할 듯합니다. 또한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곡물 모으는 방법을 요리하여 창(倉)을 설치하여 놓아두었다가 흉년에 대비하게 하여, 제주로 옮기는 곡물이 때를 당해 군색한 폐단이 없도록 하는 일을 또한 이미 결재하여 분부한 바가 있습니다. 첨사로 하여금 겸하여 진휼청에서 설치한 창고의 곡식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또한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매우 편리하고 마땅하다. 이대로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758] 〈하략〉. 【비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송정규, 시재어사, 서유문, 갈두산, 진휼청.

판, 대사헌 역임.

757) 서문유(1651~1707): 본관 달성(達城). 자 계용(季容). 시호 정간(貞簡). 1684년(숙종 10) 문과 급제. 전라도관찰사, 예조판서, 중추부지사 역임. 저서《만산유고(晩山遺稿)》.

758)《비변사등록》1705년(숙종 31) 5월 17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四年 乙酉 四月 十七日 庚辰

○ 晝講入侍, 知事徐宗泰所啓, 濟州試才御史, 自前以侍從中擇差, 臣不知李師尙之有老母, 而以其有文望, 且在閑散, 故擬望受點矣. 師尙, 連爲呈狀吏曹, 以七十餘歲偏母, 宿病沈綿, 朝夕難支, 越海之役, 揆以分義, 雖不敢辭, 而情理實有所不忍捨去者, 孝理之下, 宜有矜察爲言. 御史事體, 與他差遣不同, 本曹則不敢有所稟達變通, 故使之呈於備局矣. 師尙情理如此, 以聖上體下之仁, 似宜有特賜處分, 而備局久未開坐, 已過兩月, 而未有啓稟之事, 御史行期不遠, 必當預出, 事涉可慮矣. 上曰, 越海之役, 與他奉命有異, 而情理如此, 改差出代, 可也. …….【以上朝報】

❖ 숙종 31년(1705) 을유년 4월 17일(경진)

□ 주강(晝講)에 서종태(徐宗泰) 등이 입시하여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 이사상(李師尙)의 개차(改差) 등에 대해 논의함

○ 주강(晝講)에 입시(入侍)하여 지사 서종태(徐宗泰)[759]가 아뢰기를,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는 전부터 시종(侍從)[760] 중에 가려서 차출했었습니다. 신은 이사상(李師尙)이 노모가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가 학문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과 덕망이 있으면서 또한 한산직(閑散職)에 있기 때문에 의망(擬望)[761]하여 수점(受點)[762]하였던 것입니다. 사상이 연이어 이조(吏曹)에 소장(訴狀)을 올려 70여 세의 편모가 오래된 병이 깊어 위중함으로 아침저녁으로 보존하기가 어렵다 합니다. 바다를 건너는 일은 분수와 의리로써 헤아려 본다면 비록 감히 사양하지는 않지만 인정과 도리가 실로 차마 버려두고 가지 못하는 바가 있으니, 효로써 다스리는 세상에서 마땅히 가엾게 여겨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사의 체통은 여타 차출하여 파견하는 것과는 같지가 않아서 본조(本曹)에서는 감히 변통(變通)을 아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비국에 소장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사상의 인정과 도리가 이와 같으니, 성상(聖上)께서 아랫사람을 생각하는 어짊

759) 서종태(1652~1719): 본관 대구(大丘). 자 노망(魯望). 호 만정(晩靜)·서곡(瑞谷)·송애(松厓). 시호 문효(文孝). 1680년(숙종 6) 문과 급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역임. 저서 《만정당집》.

760) 시종(侍從): 시종신(侍從臣). 홍문관·사헌부·사간원 전원과 예문관의 검열(檢閱), 승정원의 주서(注書) 등 왕을 항상 가까이에서 모시던 신하의 총칭.

761) 의망(擬望): 관원을 임명할 때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던 일.

762) 수점(受點): 전조(銓曹)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를 올리면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아 임명하던 것을 말함.

으로 마땅히 특별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국이 오랫동안 개좌(開坐)[763]하지 않은 지가 이미 두 달이 지나고 있기에 아직 계품(啓稟)한 일이 없고, 어사가 떠날 기일이 멀지 않았으니 반드시 미리 차출해야 하는데, 일이 염려가 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바다를 건너는 일은 다른 봉명(奉命)과 다름이 있지만, 정리가 이와 같으니 개차하여 대신할 다른 사람으로 차출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764] 〈하략〉. 【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서종태, 제주시재어사, 이사상, 개차.

763) 개좌(開坐): 관서에서 공사(公事)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원들이 자리를 정하고 기구를 갖추어 벌여 앉는 것.

764) 《비변사등록》 1705년(숙종 31) 4월 19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四年 乙酉 閏 四月 三日 丙申

○ 濟州牧使書目, 大靜縣監金弘瑞, 病重罷黜事.

❖ 숙종 31년(1705) 을유년 윤 4월 3일(병신)

□ 병이 위중한 김홍서(金弘瑞)의 파직에 관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

○ 제주목사의 서목에, "대정현감 김홍서(金弘瑞)[765]가 병이 위중하니 파직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대정현감, 김홍서, 파직.

765) 김홍서(?~?): 대정현감으로 1704년(숙종 30) 3월에 도임하여, 1705년(숙종 31) 3월 파직되어 떠남.

❖ 康熙 四十四年 乙酉 閏 四月 六日 己亥

○ 有政. 吏批, 以權尙夏爲贊善, …… 金舜臣爲大靜縣監 …….

❖ 숙종 31년(1705) 을유년 윤 4월 6일(기해)

□ 김순신(金舜臣)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766]에 따라 권상하를 참선으로 삼고, 〈중략〉 김순신(金舜臣)[767]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김순신.

766) 이비(吏批): 이조의 인사 행정에 참여하는 당상관(堂上官). 즉 이조(吏曹)의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와 이방 승지(吏房承旨)를 말함.

767) 김순신(1668~?): 본관 김해(金海). 자 화중(華仲). 1702년(숙종 28) 문과 급제. 대정현감으로 1705년(숙종 31) 7월에 도임하여 1708년(숙종 34) 8월에 체임.

❖ 康熙 四十四年 乙酉 五月 十八日 庚辰

○ 下直, 大靜縣監金舜臣.

❖ **숙종 31년(1705) 을유년 5월 18일(경진)**

□ **대정현감(大靜縣監) 김순신(金舜臣)이 하직함**

○ 대정현감(大靜縣監) 김순신(金舜臣)이 하직했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김순신.

❖ 康熙 四十四年 乙酉 七月 十三日 甲戌

○ 右議政李畬所啓, 此乃全羅監司徐文裕狀啓, 而濟州官婢昆生擊錚事, 非本道所可查覈, 令廟堂稟處云矣. 蓋聞濟州前牧使李喜泰, 據一境大小民人等齊訴, 推治昆生之五母女, 其中三人杖斃. 所謂昆生之女, 以妓生, 皆有姿色, 爲前後官員之所眄, 妖惡之罪, 不一而足, 人皆憤惋, 而以其干連官家之故, 不敢發言. 至於李喜泰, 因其不近女色, 遂乃相率呈狀, 有此推治之擧, 而三邑守令 眼同, 刑推推案俱存云. 以此觀之, 則其中雖有受刑致斃者, 元非出於私喜怒, 而其時亦以昆生母女之生存者, 定配陸地, 以絶其奸之意, 論報備局, 則可見其初無濫殺隱諱之跡也. 濟州牧使事面, 與監司無異, 而絶島愚氓, 不識體統之嚴截, 輒生告愬之計, 則其害尤不可言, 而旣云濫殺, 則不可不問其曲折而後, 處之矣. 禮曹判書尹世紀曰, 臣之先臣, 曾經濟州牧使, 故本州之事, 有聞知之便矣. 濟州, 在於絶域, 故朝家待之之道, 無異監司. 此事詳聞之, 則官婢輩, 分黨傾軋, 其來已久. 此邊得寵, 則此女作亂, 彼邊得寵, 則彼女作亂, 實多害及民間者矣. 喜泰則元無親近女色之事, 故近千之民, 齊聲告訴, 三邑守令, 同會刑推云. 此與以一時私怨, 無端杖斃者, 有異矣. 且島中女人, 元無上京之事, 而何以越海上來而擊錚耶? 甚可怪而固未可知也. 喜泰, 雖緣私嫌杖殺, 而其罪, 不過奪告身罷職之罰. 若因其一官婢之擊錚, 而論罪其新遞之官, 非但事體之不當, 其流之弊, 有不可勝言矣. 判尹閔鎭厚曰, 濟州人, 元無上來之事, 而女人出來, 故怪而問之, 則傳言以爲, 渠以至冤, 訴于新倅, 則交承之間, 勢難聽理, 必欲伸枉, 則擊錚之外, 別無他道云. 受由上來云, 而女人之出來, 實爲異常矣. 李濡曰, 濟州妓生之私自出陸, 至於擊錚於闕庭, 實是曾所未有之事. 其所防禁之嚴, 比諸西北官妓, 尤嚴, 則雖或有抱冤之端, 自本州覈實啓聞, 可也, 何可任其出往乎? 此路一開, 則爲官員及軍官輩所眄之妓生, 托以訴冤而出陸者, 必多有之, 牧使果爲許送, 則殊極非矣. 第其擊錚之事, 令新牧使查啓, 則必以交承爲嫌, 使御史按覈, 則事涉太重矣. 聞李喜泰, 以推案謄本, 呈納于刑曹云, 故臣亦取見, 則濟妓妖惡之狀, 俱在其中. 此則比公家文書, 雖不足憑信, 本州所在推案, 令該曹, 卽爲取來, 查考後稟處, 似當矣. 上曰, 試令刑曹, 取考文書後稟處, 可也.【以上備局謄錄】

❖ 숙종 31년(1705) 을유년 7월 13일(갑술)

□ 이여(李畬) 등이 입시하여 제주관비(濟州官婢) 곤생(昆生)이 격쟁한 사건의 처리에 대해 논의함

○ 우의정 이여(李畬)[768]가 아뢰기를, “이것은 전라감사 서문유(徐文裕)의 장계입니다. ‘제주관비(濟州官婢) 곤생(昆生)이 격쟁(擊錚)한 일은 본도(本道)에서 조사할 바가 아니어서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들으니, 전 제주목사 이희태(李喜泰)[769]가 온 지역의 크고 작은 백성들이 일제히 호소함에 의거해서 곤생(昆生)의 다섯 모녀를 심문하고 벌을 주었는데, 그 가운데 세 사람이 형장을 맞고 죽었습니다. 이른바 곤생의 딸들은 기생으로 모두 자태가 고와서 앞뒤 관원의 눈길을 받아 요사하고 간악한 죄가 하나뿐이 아니고 아주 많아서 사람들이 모두 분개하였지만, 관가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었습니다. 이희태가 부임함에 이르러 그가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마침내 연달아 정장(呈狀)하여 이렇게 심문하여 벌을 주는 일이 있게 되었고, 3읍 수령이 함께 한 자리에서 형추(刑推)한 추안(推案)이 모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가운데 비록 형을 받다가 죽게 된 자가 있었지만 본래는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때 또한 곤생 모녀 중에 생존한 자를 육지로 정배(定配)하여 그 간사함을 끊으려는 뜻으로 비국에 보고하였으니, 곧 그것이 애초에 함부로 죽여서 감추거나 숨기려한 자취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목사의 체통은 감사(監司)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득히 먼 섬의 어리석은 백성이 체통이 매우 엄격한 것을 알지 못하고, 문득 고하여 하소연할 계획을 내었으니 그 해로움을 더욱 말할 수 없는데, 이미 죄가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고 말했으니 그 곡절을 물은 후에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예조판서 윤세기(尹世紀)[770]가 말하기를, “신의 선신(先臣)[771]이 일찍이 제주목사를 지냈기 때문에 본주(本州)의 일에 대해 들어서 아는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는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정에서 이를 대우하는 도리가 감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 일을 자세히 들어보면, 관비(官婢)들이 무리를 갈라서 서로 간에 질투하며 상대를 모함에 빠뜨리는 것이 이미 오래 되어서, 이쪽이 총애를 얻으면 이쪽 여자들이 난리를 피우고, 저쪽이 총애를 얻으면 저쪽 여자들이 난리를 피워서 실로 피

768) 이여(1645~1718): 본관 덕수(德水). 자 치보(治甫). 호 수곡(睡谷)·포음(浦陰). 시호 문경(文敬). 1680년(숙종 6) 문과 급제. 의금부판사, 좌의정, 역의정 역임. 저서《수곡집》.

769) 이희태(?~?): 본관 광주(廣州). 자 대숙(大叔). 1702년(숙종 28) 문과 급제. 고부군수 역임. 제주목사로 1703년(숙종 29) 6월에 도임하고, 1704년(숙종 30) 10월 파직.

770) 윤세기(1647~1712): 본관 해평(海平). 자 중강(仲綱). 호 용포(龍浦). 시호 효헌(孝獻). 1675년(숙종 1) 문과 급제. 우참찬, 한성부판윤, 예조판서 역임.

771) 선신(先臣): 임금 앞에서 자신의 작고한 부모나 조부모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는 윤세기의 선친인 윤계(尹堦. 1622~1692)를 가리킨다. 윤계는 제주목사로 1672년 5월에 도임하여 동년 10월에 떠남.

해가 민간에 미치는 것이 많았습니다. 희태는 곧 본래 여색을 가까이 한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천에 가까운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 내어 고소를 하였고, 3읍의 수령이 한 자리에 모여 형장(刑杖)을 가하여 심문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한때의 사사로운 원한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장형(杖刑)을 가하여 죽게 한 것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또한 섬 중의 여인은 본래 서울로 올라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다를 건너와서 격쟁을 한 것입니까? 심히 괴이쩍지만 실로 (어떻게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희태가 비록 사사로운 혐의 때문에 장살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는 고신(告身)[772]을 빼앗고 파직하는 벌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관비 하나의 격쟁으로 인하여 그 새로 교체된 관원을 논하여 벌을 준다면, 일의 체통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흘러나오는 폐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판윤 민진후(閔鎭厚)[773]가 말하기를, "제주사람은 본래 올라오는 일이 없는데, 여인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괴이쩍어서 이에 대해 물으니 말을 전하기를, '저이가 지극히 원통한 일로 새로운 수령에게 호소하니, 전임자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동안에는 형편 상 들어서 처리하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억울한 것을 펴고자 한다면 격쟁 외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여 말미를 받아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여인이 나온 것은 실로 이상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제주기생이 사사로이 스스로 육지로 나와서 대궐의 뜰에서 격쟁에 이른 것은 실로 이것은 일찍이 없던 일입니다. 그 금지가 엄격한 것이 서북(西北)의 관기(官妓)에 비해 더욱 엄한즉, 비록 혹여 원한을 품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본주에서 실상을 조사하여 계문(啓聞)하는 것이 옳은데, 어찌 그 나와서 가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했단 말입니까? 이 길이 한번 열리면 관원 및 군관들의 눈길을 받은 기생은 원통함을 호소한다는 핑계로 육지에 나오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목사가 과연 보내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그 격쟁의 일을 신임 목사에게 조사하여 아뢰게 한다면 필시 인수인계를 들어 싫어할 것이고, 어사를 시켜 조사하여 살피게 한다면 일이 너무 무거울 것입니다. 들으니, 이희태가 추안(推案)[774]의 등본을 형조에 보내어 바쳤다고 해서 신이 또한 가져다 보니, 제주기생의 요악스러운 정상이 그 안에 갖추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가(公家)의 문서에 비하면 비록 의지하여 믿기에 부족하지만 본주에 있는 추안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즉시 가져오게 하여 조사하고 자세

772) 고신(告身):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

773) 민진후(1659~1720): 본관 여흥(驪興). 자 정순(靜純). 호 지재(趾齋). 1686년(숙종 12) 문과 급제. 시호 충문(忠文). 사간원정언, 홍문관부교리, 부응교 역임. 저서《지재집》.

774) 추안(推案): 죄인을 추문(推問)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히 살핀 후에 아뢰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형조로 하여금 문서를 가져다 자세히 살핀 후에 아뢰어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775] 【이상은 비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곤생, 격쟁, 이여, 서문유, 이희태, 제주기생.

775) 《비변사등록》 1705년(숙종 31) 7월 1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四年 乙酉 九月 五日 丙寅

○ 吏曹判書洪受瀗箚子. 大概, 敢陳區區所懷, 以備裁察事. 入啓. 答曰, 省箚具悉. 李海朝, 雖云旣有所遭, 義同往役, 則違牌坐罷, 已極未安, 而至於李大成·申鐔兩人之相繼圖罷, 顯有厭避之意. 今日紀綱, 雖曰解弛, 安敢乃爾? 平時如此, 臨危可知, 不可不別樣論責, 以勵他人, 故欲處分而未果矣. 今觀卿箚, 正合予意, 李大成·申鐔, 竝拿問定罪, 耽羅御史, 不宜隨罷隨差, 徒損事體, 仍以當初受點人差送焉.

❖ 숙종 31년(1705) 을유년 9월 5일(병인)

□ 제주어사(濟州御史)를 사직한 이해조 등에 대한 의견을 진달하는 홍수헌(洪受瀗)의 차자에 대한 비답

○ 이조판서 홍수헌(洪受瀗)[776]의 차자(箚子)는 대개 감히 구구한 생각을 진술하여, 잘 헤아리고 살피는 일을 갖추시라고 아뢰었습니다.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고 모든 것을 알았다. 이해조(李海朝)[777]는 비록 당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고, 뜻으로는 가는 것에 동의했다고 한다면 패초(牌招)[778]를 어겼다하여 파직된 것은 지극히 미안한 일이다. 하지만 이대성(李大成)[779]과 신심(申鐔)[780] 두 사람이 서로 이어서 파직되기를 도모한 것에 이르러서는 싫어서 피한 뜻이 분명히 있다. 오늘날 기강이 비록 해이해졌다고는 하나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는가? 평상시가 이와 같으니, 위급함에 임했을 때를 알만하다. 각별히 잘못을 따져 꾸짖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처분하고자 했지만 아직 실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경의 차자를 보니 바로 나의 뜻과 부합된다. 이대성과 신심을 모두 잡아다가 심문하여 죄를 정하라. 탐라어사(耽羅御史)를 파직하는 대로 차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만 일의 체통을 손상시킬 뿐이니 그대로 당초 수점(受點)

---

776) 홍수헌(1640~1711): 본관 남양(南陽). 자 군택(君澤). 호 담포(淡圃). 시호 문정(文靖). 1682년(숙종 8) 문과 급제. 대사헌,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역임.

777) 이해조(1660~1711): 본관 연안(延安). 자 자동(子東). 호 명암(鳴巖). 1702년(숙종 28) 문과 급제. 대제학, 전라도관찰사 역임. 저서《명암집》.

778) 패초(牌招): 승지가 왕명을 받아 신하를 부름. '명(命)' 자를 쓴 주색(朱色) 패의 한 면에 부름을 받은 신하의 성명을 기입하여 승정원의 하례(下隷)를 시켜 송달하였음.

779) 이대성(1651~1718): 본관 전주(全州). 자 시숙(時叔). 호 삼취헌(三翠軒). 1699년(숙종 25) 문과 급제. 이조참의, 대사성, 병조참판 역임.

780) 신심(1662~1715): 본관 평산(平山). 자 익중(翼仲). 호 봉주(鳳洲). 1704년(숙종 30) 문과 급제. 이조참의, 대사간 역임.

한 사람을 차출하여 보내라."라고 하였다.[781)]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홍수헌, 차자, 이해조, 어사, 이대성, 신심.

781) 《숙종실록》 1705년(숙종 31) 9월 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四年 乙酉 九月 六日 丁卯

○ 吏曹, 濟州試才御史李海朝, 仍爲差送事, 傳敎.

❖ 숙종 31년(1705) 을유년 9월 6일(정묘)

□ 이조에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로 이해조(李海朝)를 그대로 차출하여 보내도록 전교함

○ 이조(吏曹)에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로 이해조(李海朝)를 그대로 차출하여 보내도록 전교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시재어사, 이해조.

❖ 康熙 四十四年 乙酉 九月 七日 戊辰

○ 備忘記, 今觀濟州牧使宋廷奎啓本, 前牧使李喜泰所爲, 節節無狀矣. 噫, 人命至重, 雖以君上之尊, 三覆死囚, 求生必死, 則喜泰是何狀人, 而敢以私怒, 別造大杖, 二日之內, 酷施六次之刑, 撲殺多人之命, 若是其無忌憚乎? 況其發狀, 不過五人, 而預書侤音, 勒捧着名, 有若齊聲告訴者然, 而仍又瞞報備局, 欲爲藉口之資, 其所用意, 尤極奸譎, 而頃間前席, 全羅監司狀啓稟奪時, 入侍諸臣, 相繼伸救, 喜泰可謂有勢力之人也. 論其罪狀, 萬萬絶痛, 此而若不別樣處斷, 則挾其私怒, 濫殺無辜, 及稍有勢力, 公然白脫之弊, 無以防禁. 李喜泰, 卽爲拿囚, 嚴問定罪.

❖ 숙종 31년(1705) 을유년 9월 7일(무진)

□ 많은 사람을 장살(杖殺)한 이희태(李喜泰)를 즉시 잡아와 가두고 엄하게 국문하여 죄를 정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에 이르기를, "지금 제주목사 송정규(宋廷奎)의 계본(啓本)을 보니, 전 목사 이희태(李喜泰)가 한 짓은 한 마디 한 마디가 형편이 없다. 아!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하니, 비록 군상(君上)의 존귀함으로도 사형수를 삼복(三覆)[782]하여 반드시 죽을 자도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데, 희태는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기에 감히 사사로운 분노로써 특별히 큰 장(杖)을 만들고 이틀 안에 여섯 차례의 형신(刑訊)을 혹독하게 시행하여 많은 사람의 목숨을 박살내기를 이와 같이 기탄없이 하였던 것인가? 하물며 그 소장(訴狀)을 낸 것이 5인에 불과한데도 미리 고음(侤音)[783]을 쓰고 강제로 착명(着名)을 받아서, 마치 여러 사람이 일제히 고소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하고, 이어서 또 비국에다 거짓 보고를 하여 핑계 삼을 구실거리로 삼으려 하였다. 마음 쓴 것이 더욱 지극히 간사하고 음흉한데도, 지난번 전석(前席)에서 전라감사의 장계를 품탈(稟奪)[784]할 때에 입시(入侍)한 모든 신하가 서로 잇따라 신구(伸救)하였으니, 희태는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 말할 만하다. 그 죄상을 논하자면 너무나도 통탄스럽다. 이런데도 각별히 처단하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분노를 가지고 무고한 자를 함부로 죽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력이 있는 자에 이르러서 공공연하게 무죄로 벗어나는 폐

782) 삼복(三覆): 중죄인을 신중하게 심리(審理)하기 위하여 초복(初覆)·재복(再覆)·삼복(三覆) 등과 같이 반복하여 임금에게 아뢰는 것을 말함.
783) 고음(侤音): 관(官)에 대하여 맹세와 증언 등의 다짐을 하는 문서의 명칭. '다짐'으로 발음함.
784) 품탈(稟奪): 임금에게 여쭈어서 결재를 받음.

단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희태를 즉시 잡아와 가두고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죄를 정하라."라고 하였다.[785]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송종규, 이희태, 국문.

785) 《숙종실록》 1705년(숙종 31) 9월 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四年 乙酉 九月 九日 庚午

○ 禮曹判書閔鎭厚上疏. 大槪, 臣於濟州牧使宋廷奎啓聞事, 亦有不可晏然者, 敢此陳章, 乞蒙罷斥事. …… 答曰, 省疏具悉. 卿其勿辭行公.

❖ 숙종 31년(1705) 을유년 9월 9일(경오)

□ 제주목사 송정규(宋廷奎)의 계문을 이유로 파직을 청하는 민진후(閔鎭厚)의 상소

○ 예조판서 민진후[786]의 상소에, "대개 신은 제주목사 송정규[787]가 계문(啓聞)한 일에 대해서 또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이렇게 소장(疏章)을 올리니 파직하여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소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보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송정규, 계문, 민진후, 상소.

---

786) 민진후(1659~1720): 본관 여흥(驪興). 자 정순(靜純). 호 지재(趾齋). 시호 충문(忠文). 1684년(숙종 10) 문과 급제. 강화부유수, 형조참의, 한성부판윤 역임. 저서 《지재집》.

787) 송정규(1656~1710): 본관 여산(礪山). 자 원경(元卿). 호 우수(迂叟). 1683년(숙종 9) 문과 급제. 사간원 정언, 사헌부지평, 경성판관 역임.

❖ 康熙 四十四年 乙酉 九月 十二日 癸酉

○ 晝講時, 今年濟州試才御史, 待明秋差送事, 榻前下敎.

❖ 숙종 31년(1705) 을유년 9월 12일(계유)

□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를 내년 가을에 차출하여 보내도록 하교함

○ 주강(晝講)할 때 금년 제주시재어사를 내년 가을을 기다렸다 차출하여 보내도록 어전(御前)에서 하교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시재어사.

❖ 康熙 四十四年 乙酉 九月 十七日 戊寅

○ 獻納李海朝上疏. 大槪, 臣頃在鄕廬, 忝叨館職, 而素患脚痿之症, 日漸沈苦, 不得不冒法, 就浴於延豐地溫井矣. 中路, 聞有濟州御史換差之命, 違牌諸人, 一併就理, 驚悚罔措, 蒼黃徑返, 行到廣州地, 始聞試才之行, 特命退定於明秋. 又有諫職新命, 一倍惶感, 不敢退在郊外, 偃然投疏, 力疾前進, 來伏城裏, 而臣以兼職違命, 曾非一二, 則向日不得承召者, 誠非厭避遠役, 有意圖免之計, 而政官之疏, 辭意切峻, 聖批極嚴, 責之以未安, 前後違牌之人, 至於被拿坐罷, 則臣安得獨爲幸免, 而當初嚴命之下, 亦不卽奔走俟罪於金吾之外, 臣罪至此, 萬殞難贖, 席藁私次, 仰請鈇鉞之誅. 乞遞臣職名, 下臣司敗, 仍勘臣帶職擅行之律, 違牌圖遞之罪, 以肅朝綱, 以謝公議事. 入啓. 答曰, 省疏具悉. 爾其勿辭察職.

❖ 숙종 31년(1705) 을유년 9월 17일(무인)

□ 제주어사(濟州御使)를 환차(換差)하라는 명이 있을 때 패초(牌招)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직(遞職)과 감죄(勘罪)를 청하는 이해조(李海朝)의 상소

○ 헌납 이해조(李海朝)의 상소는 "대체로 신은 지난번 향려(鄕廬)에 있을 때 외람되게 관직(館職)[788]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앓던 각위(脚痿)의 증세가 날로 점점 심해져서 부득불 법을 어기고 연풍(延豐)에 있는 온천으로 목욕을 갔습니다. 도중에 들으니, 제주어사를 환차(換差)한다는 명이 있었고, 패초(牌招)를 어긴 이들이 모두 의금부에 나아가 심리(審理)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놀랍고 송구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황급히 길을 되돌려 광주(廣州)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시재어사로 가는 것을 특명으로 내년 가을로 기한을 미루어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간직(諫職)으로 임명한다는 새로운 명이 있어서 더욱 더 황송하고 감격스러웠기에 감히 교외에 물러나 있으면서 거만하게 상소를 올릴 수가 없어서 병을 무릅쓰고 나아가 성 안으로 와서 엎드려 있습니다. 하지만 신이 겸직으로 명을 받들지 못한 것이 일찍이 한두 번이 아닌즉, 저번에 명을 받들지 못한 것은 진실로 먼 곳으로 가는 것을 싫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의도적으로 벗

788) 관직(館職): 조선시대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이하의 관원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이하의 관원에 대한 총칭. 부제학 및 대사성보다 높은 직책은 의정(議政) 등의 고위 관직자가 겸임했고, 이들 관원들이 실질적으로 관서에서 일을 맡아보았기 때문에 관직이라고 하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함.

어나고자 하였다 하여 정관(政官)[789]이 올린 상소의 사의(辭意)가 너무나도 준엄하였습니다. 하지만 임금께서 내린 비답이 지엄하면서도 '미안'으로 꾸짖었습니다. 앞뒤로 패초를 어긴 이들이 잡혀 와서 파직됨에 이르렀으니 신이 어찌 혼자서 요행히 면책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당초 엄명이 내려왔을 때 또한 즉시 달려와서 금오(金吾)의 밖에서 죄를 기다리지 않았으니, 만 번을 죽어도 속죄되기 어렵습니다. 사차(私次)에 거적을 깔고 부월(鈇鉞)로 죽임을 당하기를 청하오니, 바라건대 신의 직책을 체직시켜 형관(刑官)에게 보내고, 이어서 신이 대직(帶職)을 제멋대로 한 율(律)과 패초를 어기고 체직을 도모한 죄를 조사하여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여 공의(公議)에 사죄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룁니다. 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모든 것을 알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해조, 상소, 패초, 제주어사.

789) 정관(政官): 도목정(都目政)을 맡은 관원이라는 뜻으로 이조의 벼슬을 이름.

❖ 康熙 四十四年 乙酉 九月 十七日 戊寅

○ 晝講入侍時, 知事閔鎭厚所啓, 臣於日昨筵中, 以備局事務積滯, 時急公事, 則就議大臣, 趁卽回啓之意, 稟定矣. …… 又所啓, 濟州牧使宋廷奎狀啓, 盛陳本州大無之狀, 條陳賑救之策, 而其中第一條, 以爲丙寅年, 朝家以萬餘石穀入送, 今則必倍得此數, 然後可以救活云矣. 連歲飢饉, 積蓄蕩竭, 湖南沿海, 亦無餘穀, 而絶島凶荒如此, 不所不別樣顧恤, 雖不得盡如所請之數, 勢當料理鳩聚, 連續入送矣. 上曰, 當送幾許石耶? 鎭厚曰, 曾前不無經意措置之穀, 而其數不多, 姑未詳其必爲幾許, 而欲以七八千石, 先爲入送矣. 上曰, 絶島異於他處, 必滿萬石入送, 好矣. 鎭厚曰, 苟可容力, 雖過萬石, 亦何所惜耶? 聖敎如此, 當限萬石, 某條料理入送矣. 上曰, 依爲之. 鎭厚曰, 其狀啓中, 又請免賤帖文二十五張成送, 而補充隊價木, 依近例作米補賑矣. 依此啓施行之意, 分付該曹, 該院, 何如? 上曰, 依爲之. …… 又所啓, 濟州各司奴婢, 則一年身貢, 不過二斗米, 而每過凶年, 或減半, 或全減. 內司奴婢, 則所納大鹿皮·長髦·長席·藿蕖·全鰒, 凶年亦無裁減之事, 極爲冤抑, 合有變通之道. 本土雜役, 則束伍·城丁等役外, 一切頉免云矣. 本土雜役, 固當依狀啓頉減, 而所謂身役, 亦宜有變通之道矣. 上曰, 宜乎稱冤, 變通, 可也. 鎭厚曰, 今內司, 更稟應減之數乎? 抑直爲減半乎? 上曰, 減半, 可也.【備局謄錄】

❖ 숙종 31년(1705) 을유년 9월 17일(무인)

□ 주강에 민진후(閔鎭厚) 등이 입시하여 흉년이 든 제주(濟州)에 진휼미를 보내는 것 등에 대해 논의함

○ 주강(晝講)에 입시(入侍)할 때, 지사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신은 며칠 전 경연(經筵)에서 비국의 사무가 적체되니 시급한 공사(公事)는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여 좀 더 일찍 회계(回啓)할 것을 여쭈어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 송정규(宋廷奎)의 장계에 본주(本州)에 크게 흉년이 든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면서 진휼의 대책을 조목조목 진술하였는데, 그 가운데 제1조는 ‘병인년(1666)에 조정에서 1만 여 석의 곡식을 들여보냈는데, 지금은 필시 이 숫자의 배를 얻은 연후에야 구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마다 기근이 들어 쌓아둔 것을 다 써버렸고, 호남지방의 연해에도 또한 남은 곡물이 없습니다. 절도(絶島)의 흉년이 이와 같으니, 각별히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요청한 숫자처럼 다할 수는 없더라도 형세 상

마땅히 요리하고 모아서 계속해서 들여보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당 몇 석을 보내야 하는가?"라고 하였다. 진후가 말하기를, "일찍이 전에 조치해둔 곡식이 없지 않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고, 일단 그것이 반드시 몇이나 되는지는 자세하지 않은데, 7,8천 석을 우선 들여보내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절도는 다른 곳과는 다르니, 반드시 1만 석을 채워서 들여보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하였다. 진후가 말하기를, "만일 힘이 닿는다면, 비록 1만 석이 넘더라도 또한 어찌 아낄 바가 있겠습니까? 성교(聖敎)가 이와 같으니, 의당 1만 석으로 한해서 아무쪼록 요리해서 들여보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진후가 말하기를, "그 장계 가운데 또 면천첩문(免賤帖文) 25장(張)을 만들어 보내고, 보충대(補充隊)의 가목(價木)을 근래의 예에 의거해서 쌀로 바꾸어 진휼에 보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장계대로 시행할 뜻을 해조(該曹)와 해원(該院)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제주의 각사노비(各司奴婢)는 1년에 신공(身貢)으로 내는 쌀이 2말에 불과합니다만 매번 흉년이 지날 때면 혹은 반을 줄이거나 혹은 전부를 줄여줍니다. 내사노비(內司奴婢)는 바치는 것이 대폭피(大鹿皮)·장체(長髢)·장석(長席)·곽표(藿蔈)·전복(全鰒)인데, 흉년이라도 또한 줄여주는 일이 없어 매우 억울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변통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토(本土)의 잡역은 속오(束伍)·성정(城丁) 등의 역 외에 일체 탈감(頉減)[790]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본토의 잡역을 진실로 마땅히 장계대로 탈감하고, 이른바 신역(身役)은 또한 마땅히 변통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원통함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변통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진후가 말하기를, "지금 내사에게 줄여주어야 할 숫자를 다시 여쭈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절반을 줄입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791] 【비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민진후, 송정규, 진휼, 면천첩문, 보충대, 내사노비.

790) 탈감(頉減): 뜻밖에 일어난 사고나 변고로 인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나 의무에서 벗어남.
791) 《비변사등록》 1705년(숙종 31) 9월 19일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四年 乙酉 十月 二十八日 戊午

○ 李彦經啓曰, 卽伏見濟州牧使宋廷奎啓本, 則增廣文科初試入格儒生成冊上送事, 而本道監司科目行會關文謄啓中, 文武科會試, 以十二月二十四日, 改啓下云. 此似由於文移謄出之際, 添書二字於十字之下, 以致傳訛, 而入格儒生, 因此錯認試期, 不得來赴於會試, 則事涉不察. 濟州牧使宋廷奎, 推考, 何如? 傳曰, 允.

❖ 숙종 31년(1705) 을유년 10월 28일(무오)

□ 관문을 등계(謄啓)하면서 문과와 무과의 회시(會試) 날짜를 잘못 써서 유생이 응시할 시기를 놓치게 만든 송정규(宋廷奎)의 추고를 청하는 이언경(李彦經)의 계

○ 이언경(李彦經)[792]이 아뢰기를, "바로 삼가 제주목사 송정규(宋廷奎)의 계본(啓本)을 보니, 증광문과(增廣文科) 초시에 입격한 유생을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도(本道) 감사가 과거일자를 통지하는 관문(關文)을 등계(謄啓)하는 가운데 문무과 회시(會試)를 12월 24일로 계하(啓下)한 것을 고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문을 베껴 옮길 때에 십(十)자 아래에 이(二)자를 더 써넣은 것으로 말미암아 와전된 것인 듯한데, 입격한 유생이 이것으로 시험기일을 잘못 알아서 회시에 나아갈 수 없었으니, 일이 살피지 못한 데에 관계됩니다. 제주목사 송정규를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언경, 송정규, 증과문과, 회시, 추고.

792) 이언경(1653~1710): 본관 전주(全州). 자 사상(士常). 호 천유(天遊). 1691년(숙종 17) 문과 급제. 대사간, 충청도관찰사, 황해도관찰사 역임.

❖ 康熙 四十四年 乙酉 十一月 十三日 癸酉

○ 備邊司堂上請對入侍時, 閔鎭厚所啓, 臣頃以黃海監司李濟狀啓稟定, 而措語繁多, 故其中歲抄停止一事, 未免落漏, 不勝惶恐. …… 又所啓, 此卽慶尙監司金演狀啓, 而北路所送賑廳換給之穀, 雖不可不送, 移轉八千石, 特許停止, 湖南沿海邑米租一萬石, 特爲劃給嶺南等事也. 上曰, 湖南穀移轉之請, 已再次矣. 鎭厚曰, 曾以此事馳啓, 而湖南亦有濟州移轉之事, 故廟堂回啓防塞矣. 近年北路荐飢, 嶺南偏被其害, 誠可矜悶, 而北路元無生穀之道, 若非嶺南穀物, 則決難救濟. 移轉之擧, 實出於不得已, 湖南米租, 亦無推移之勢, 當依前廟堂覆啓, 此外, 事係賑政者, 可以拔例顧見, 而今此狀啓, 則皆難許施矣. 上曰, 湖南穀移轉之請, 已至再次, 如有移轉之道, 豈不念及, 而湖南形勢, 實無波及他道. 至於北關移轉, 朝家非不知其切憫, 而北關無生穀之道, 故有此不得已之擧, 一依朝令擧行事, 分付, 可也. …….【備局謄錄】

❖ 숙종 31년(1705) 을유년 11월 13일(계유)

□ 민진후(閔鎭厚) 등이 청대 입시하여 제주로 이전하는 일이 있는 호남의 곡식을 이전해 달라는 경상감사의 장계에 대해 논의함

○ 비변사 당상이 청대(請對)하여 입시할 때, 민진후(閔鎭厚)[793]가 아뢰기를, "신은 지난번 황해감사 이제의 장계에 대해서 품정(稟定)하였는데, 조어(措語)가 번다하였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것은 경상감사 김연(金演)의 장계인데, 북로(北路)[794]에 보낼 진휼청에서 환급(換給)할 곡식은 보내지 않을 수 없지만 이전(移轉)할 8천 석은 특별히 정지하여 주고, 호남 연해 읍의 미조(米租) 1만 석을 특별히 영남에 획급(劃給)하는 일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호남의 곡식을 이전해 달라는 청은 이미 두 차례나 있었다."라고 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일찍이 이 일을 가지고 치계(馳啓)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호남 또한 제주로 이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때문에 묘당에서 회계(回啓)[795]하여 막았습니다. 근래 몇 해 사이 북로에 거듭 기근이 들고, 영남이 그로 인한 폐해를 편중

793) 민진후(1659~1720): 본관 여흥(驪興). 자 정순(靜純). 호 지재(趾齋). 시호 충문(忠文). 1684년(숙종 10) 문과 급제. 예조판서, 한성부판윤, 개성부유수 역임. 저서 《지재집》.

794) 북로(北路): 서울에서 함경도로 통하는 길을 이르던 말로, 여기서는 북관(北關) 곧 함경도를 통칭하는 말로 씀.

795) 회계(回啓):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심의하여 상주(上奏)함.

되게 입고 있으니 실로 가엽습니다. 그렇지만 북로는 본래 나는 곡식이 없는 도(道)입니다. 만약에 영남의 곡물이 아니라면 결코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하는 조치는 실로 부득이 해서입니다. 호남의 미조 또한 추이(推移)할 형편이 아닙니다. 마땅히 전에 묘당이 복계(覆啓)한 것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일이 진정(賑政)에 관계되는 것은 전례에 없더라도 특별히 돌아볼 수 있지만 이번 장계는 모두 허락하여 시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호남의 곡식을 이전해 달라는 청은 이미 두 차례에 이르렀다. 만약에 이전하는 도가 있다면 어찌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호남의 형세가 실로 다른 도에까지 미칠 수가 없다. 북관(北關)으로 이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정이 그러한 고민을 모르지 않지만, 북관이 곡식을 생산하는 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부득이 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으니, 한결같이 조령(朝令)에 의거해서 거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796] 〈하략〉.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호남, 진휼청, 진정, 북로, 민진후.

796) 《비변사등록》 숙종 31년 11월 14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四年 乙酉 十一月 二十日 庚辰

○ 傳曰, 世子宮, 濟州冬至方物, 無復舊之事. 世子宮封進單子, 還爲下送.【禮曹謄錄】

❖ 숙종 31년(1705) 을유년 11월 20일(경진)

□ 제주(濟州)의 세자궁 동지방물 봉진단자를 도로 내려 보내라는 전교

○ 전교하기를, "세자궁에 바치는 제주의 동지방물(冬至方物)을 복구한 일이 없다. 세자궁에 들이는 봉진단자(封進單子)를 다시 내려 보내라."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세자궁, 동지방물, 봉진단자.

❖ 康熙 四十四年 乙酉 十一月 二十日 庚辰

○ 藥房入診時, 提調閔鎭厚所啓, 卽伏見下禮曹傳敎, 則有濟州方物, 世子宮封進單子, 還給之敎矣. 考見文書, 則乙亥年方物權減時, 本曹, 以濟州結弓獐皮, 依前例封進之意, 入啓, 允下. 今後則此亦權減乎? 竊恐睿照, 偶未省察, 敢此仰達. 上曰, 濟州之不入權減, 予未思得矣. 還入, 可也.【禮曹謄錄】

❖ 숙종 31년(1705) 을유년 11월 20일(경진)

□ 약방의 입진에 민진후(閔鎭厚)가 입시하여 세자궁에 들이는 제주(濟州)의 방물과 결궁장피의 임시 감면 여부에 대해 논의함

○ 약방(藥房)이 입진(入診)할 때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바로 삼가 예조에 내린 전교를 보니, 제주 방물로 세자궁에 들이는 봉진단자를 돌려주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니, 을해년(1695)에 방물을 임시로 감하여 줄 때 본조(本曹)가 제주의 결궁장피(結弓獐皮)를 가지고 전례대로 봉진할 뜻을 입계(入啓)하니 윤허를 내렸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이 또한 임시로 감해주는 것입니까? 아마도 예조(睿照)가 우연히 살피지 못한 듯합니다.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가 임시 감면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생각해내지 못했다. 도로 들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민진후, 세자궁, 봉진단자, 결궁장피.

❖ 康熙 四十四年 乙酉 十二月 六日 丙申

○ 又所啓, 辛未年城役時, 三軍門貸用本府軍餉米一萬石, 至今十五年, 無一石還償, 極爲未安. …… 又所啓, 辛酉年, 故參判李選爲留守時, 以濟州三邑精造交子弓一百張, 間三年輸送江都事, 啓聞定奪, 而其後二十五年之間, 只一番造送而已, 更無來納之事. 自備局申飭, 明年則必令造送, 何如? 上曰, 各別申飭, 可也. …….

❖ 숙종 31년(1705) 을유년 12월 6일(병신)

□ 유득일(兪得一) 등이 입시하여 교자궁을 만들어 보내게 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유득일(兪得一)[797]) 또 아뢰기를, "신미년(1691)에 성을 쌓는 역사를 할 때 삼군문이 대신 쓴 본부(本府) 군향미 1만 석을 지금 15년째인데도 1석도 갚지 않으니 지극히 미안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신유년(1681)에 고 참판 이선(李選)[798]이 유수(留守)로 있을 때 제주 3읍이 교자궁(交子弓) 1백 장(張)을 정밀하게 만들어서 3년 간격으로 강도(江都)로 실어 보내는 일을 계문(啓聞)하여 정탈(定奪)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25년 사이에 단지 한번만 만들어 보냈을 뿐 다시 와서 바친 일이 없습니다. 비국에서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만들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유득일, 이선, 교자궁.

797) 유득일(1650~1712): 본관 창원(昌原). 자 영숙(寧叔). 호 귀와(歸窩). 1677년(숙종 3) 문과 급제. 대사헌, 이조참판, 병조판서 역임.

798) 이선(1632~1692): 본관 전주(全州). 자 택지(擇之). 호 지호(芝湖)·소백산인(小白山人). 시호 정간(正簡). 1664년(현종 5) 문과 급제. 이조좌랑, 응교, 이조참판 역임. 저서 《지호집》.

1706年

❖ 康熙 四十五年 丙戌 一月 十日 己巳

○ 有政. 吏批, 以韓宗揆爲典牲主簿, …… 以鄭會爲濟州判官 …….

❖ 숙종 32년(1706) 병술년 1월 10일(기사)

□ 정회(鄭會)를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따라 한종규를 전생주부(典牲主簿)로 삼고, 〈중략〉 정회(鄭會)[799]를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정사, 정회, 제주판관.

799) 정회(?~?): 제주판관으로 1706년(숙종 32) 4월에 도임하여, 1707년(숙종 33) 3월에 파직되어 떠남.

❖ 康熙 四十五年 丙戌 二月 二十九日 戊午

○ 禁府啓目, 粘連慶尙道放未放啓本云云, …… 又啓目, 粘連濟州牧使放未放啓本云云, 未放秩, 依啓聞施行, 何如? 啓依允. …….

❖ 숙종 32년(1706) 병술년 2월 29일(무오)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방미방 계본에 대해 미방질(未放秩)을 계문대로 시행할 것 등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목

○ 의금부의 계목에 첨부한 경상도 방미방계본에서 운운한, 〈중략〉 또 의금부의 계목에 첨부한 제주목사 방미방계본[800]에서 운운한 미방질(未放秩)은 아뢴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방미방계본, 미방질.

800) 방미방계본(放未放啓本): 사면령이 내린 뒤 각 도의 감사(監司)가 그 도의 배소(配所)에 있는 죄인들을 풀어 줄 부류[放秩],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仍秩], 풀어 주지 않을 부류[未放秩], 여쭈어 결정할 부류[稟秩], 아직 그 도의 배소에 도착하지 않은 부류[未至配所秩] 등으로 나누어 보고하는 계본으로, 이를 토대로 사면이 시행됨.

❖ 康熙 四十五年 丙戌 三月 三日 辛酉

○ 下直, 金海府使南嵓, 濟州判官鄭會, 永達萬戶張時翼.

❖ 숙종 32년(1706) 병술년 3월 3일(신유)

□ 제주판관(濟州判官) 정회(鄭會) 등이 하직함

○ 김해부사(金海府使) 남륜, 제주판관(濟州判官) 정회(鄭會), 영달만호(永達萬戶) 장시익이 하직했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정회, 하직.

❖ 康熙 四十五年 丙戌 三月 八日 丙寅

○ 備局啓曰, 濟州漂海人, 押送京中之意, 纔已啓下矣. 異國人遠路押來之際, 不可無譯舌通語者. 當令該院, 別定善解漢語譯官一員, 給馬下送海上, 以爲領來之地, 而今聞濟州譯學箇滿, 新差譯學, 纔已下去云. 新譯學, 使之回下公事, 一時入海, 漂到人出來, 則使舊譯學領來, 事甚便當. 且押送北京時齎咨官, 預爲差定治行, 咨文, 亦令該院撰出, 以待漂人到京後, 卽爲發送, 宜當. 以此分付, 何如?【備局謄錄】

❖ 숙종 32년(1706) 병술년 3월 8일(병인)

□ 제주(濟州)에 표류한 자를 북경에 압송할 재자관(齎咨官)을 차정하고 자문을 지어 내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을 북경으로 압송할 뜻을 막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이국인을 먼 길 압송할 때 통역하여 말을 통하게 하는 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의당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별도로 한어(漢語)를 잘 이해하는 역관 한 사람을 정하여 말을 주어서 해상으로 내려 보내어 데려오게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제주 역학(譯學)이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차정(差定)된 역학이 막 내려간다고 합니다. 새 역학에게 공사(公事)에 대한 회하(回下)[801]로서 일시에 바다로 들어가게 하고, 표도(漂到)한 사람이 나올 때면 구 역학으로 하여금 데리고 오게 한다면 일이 심히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북경으로 압송할 때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는 역관을 미리 차정하여 행장을 꾸리게 하고, 자문 또한 해원으로 하여금 지어내게 하여, 표도한 이들이 서울에 도착한 후에 즉시 떠나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802] 【비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표류, 북경, 역학, 자문.

---

801) 회하(回下): 임금이 신하가 올린 안건에 대하여 다시 살펴서 답변을 내리는 일.
802) 《비변사등록》 1706년(숙종 32) 3월 9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五年 丙戌 四月 六日 癸巳

○ 備局啓曰, 卽接忠淸監司朴泰恒狀啓, 則濟州漂人十三名, 今月初四日, 已到恩津縣云, 計其日子, 數日內似當入京, 依前例令該曹, 預爲修治所入家舍, 以爲接置之地, 禁軍一人, 領率衛軍, 別爲防守及供饋等事, 亦爲依前擧行. 且其入京後, 令本司郎廳一員, 與解語譯官數人, 更爲盤問漂到情實, 押送北京時, 齎咨譯官, 到鳳城交付之後, 自彼次次押送, 而譯官則只齎咨文, 入往北京, 亦是曾前已行之例, 分付義州府, 使之通報鳳城, 何如? 答曰, 允.

❖ 숙종 32년(1706) 병술년 4월 6일(계사)

□ 제주(濟州)에 표류한 13명에 대한 방수(防守)와 공궤(供饋) 및 압송 시의 전례를 보고하고 의주부에 분부하여 봉황성(鳳凰城)에 통보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충청감사 박태항(朴泰恒)[803]의 장계를 바로 보니, 제주에 표도(漂到)한 13명이 금월 4일에 이미 은진현(恩津縣)[804]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 수일 내에 서울로 들어올 듯합니다. 전례대로 해조(該曹)로 하여금 미리 들어갈 집을 정비하여 접치(接置)하는 장소로 삼게 하고, 금군(禁軍) 한 사람이 위군(衛軍)을 거느려서 따로 방비하여 지키고 공궤(供饋)하는 등의 일을 또한 예전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 또한 그들이 서울에 들어간 뒤에 본사(本司) 낭청 1원(員)으로 하여금 말의 뜻을 아는 역관 몇 사람과 함께 표도한 실정을 다시 자세하게 물어 조사하게 하십시오. 북경으로 압송할 때에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는 역관이 봉황성(鳳凰城)[805]에 도착하여 교부(交付)한 후에는 저곳에서부터 차례대로 압송하고, 역관은 단지 자문을 가지고 북경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일찍이 전에 이미 시행했던 사례임을 의주부(義州府)에 분부하여 봉황성에 통보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박태항, 표류, 역학, 자문, 의주부.

---

803) 박태항(1647~1737): 본관 반남(潘南). 자 사심(士心). 1687년(숙종 13) 문과 급제. 경기도관찰사, 형조판서, 우참찬 역임.

804) 은진현(恩津縣): 현 충남 논산군 은진면 일대의 조선시대 행정 구역.

805) 봉황성(鳳凰城): 중국 만주 땅 요령(遼寧)에 있는 봉천성(奉天城)의 별명. 압록강 북쪽에 있으며, 조선에서 연경으로 가는 사신들이 경유했던 곳임.

❖ 康熙 四十五年 丙戌 四月 十三日 庚子

○ 備局啓曰, 濟州漂到人十三名, 再昨入來, 故令本司郎廳與譯官等問情, 則與當初去濟州時問答, 大略相同, 別單書入, 以備睿覽, 而漂人不可久留, 十五日當爲發送矣, 敢啓. 答曰, 知道.【以上備局謄錄】

❖ 숙종 32년(1706) 병술년 4월 13일(경자)

□ 제주(濟州)에 표도한 사람을 조사한 내용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며 15일에 발송하겠다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제주에 표도(漂到)한 13명이 그저께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본사(本司) 낭청으로 하여금 역관과 함께 문정(問情)하도록 하니, 당초 제주를 떠날 때의 문답과 대략 서로 동일합니다. 별단(別單)[806]으로 써서 들여 예람(睿覽)[807]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표도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머물게 할 수 없으니, 15일에 발송해야 할 것입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808] 【이상은 비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표도, 별단, 발송.

---

806) 별단(別單): 주본(奏本)에 덧붙이는 문서.
807) 예람(睿覽): 임금의 열람.
808) 《비변사등록》 1706년(숙종 32) 4월 13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五年 丙戌 七月 十二日 丁卯

○ 吏批, 以洪受瀗·李寅燁·徐文裕·宋相琦·朴權爲承文提調, …… 沈益三爲旌義縣監. …….

❖ 숙종 32년(1706) 병술년 7월 12일(정묘)

□ 심익삼(沈益三)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따라 홍수헌·이인엽·서문유·송상기·박권을 승문제조로 삼고, 〈중략〉 심익삼(沈益三)[809]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심익삼, 정의현감.

809) 심익삼(?~?): 정의현감으로 1706년(숙종 32) 9월에 도임하여, 1709년(숙종 35) 4월에 체임.

❖ 康熙 四十五年 丙戌 七月 二十六日 辛巳

○ 吏批, 以李坦爲兵曹正郎, 李奎成爲濟州牧使, …….

❖ 숙종 32년(1706) 병술년 7월 26일(신사)

□ 이규성(李奎成)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따라 이탄(李坦)을 병조정랑(兵曹正郎)으로 삼고, 이규성(李奎成)[810]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중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규성, 제주목사.

810) 이규성(?~?): 제주목사로 1706년(숙종 32) 9월에 도임하여, 1709년(숙종 35) 5월에 체임.

❖ 康熙 四十五年 丙戌 八月 五日 庚寅

○ 吏曹判書李寅燁所啓, 濟州試才御史, 以李海朝累次啓下, 而尙不發送矣. 卽今風勢漸高, 若過此時, 則雖欲發送, 決難涉海云. 李海朝以爲使事, 雖有往役之義, 情勢決無冒往之理, 尙不應命, 今又坐罷, 似有變通之道, 故敢達. 上曰, 備局以此草記矣. 崔錫鼎曰, 果以草記稟達矣. 李海朝所執, 有二款事, 一則以誣及先世爲言云, 而此事聖批, 旣以開釋, 少無難安之端. 至於科事, 則當初論啓之人, 重入臺閣, 則一番疏陳, 在所不已, 何可以此, 每每爲嫌乎? 變通改差, 則事體未安矣. 上曰, 李海朝敍用, 催促發送, 可也. …….

❖ 숙종 32년(1706) 병술년 8월 5일(경인)

□ 이인엽(李寅燁) 등이 입시하여 임지로 떠나지 않고 있는 이해조(李海朝)를 변통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이조판서 이인엽(李寅燁)[811]이 아뢰기를, "제주시재어사를 이해조(李海朝)로 여러 차례 계하(啓下)하였는데,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이제 풍세가 점점 높아져서 만약 이때를 놓치게 되면 비록 떠나보내고자 해도 결코 바다를 건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조는 사신으로서의 일은 비록 왕역(往役)의 의리(義理)[812]가 있지만 사정과 형세 상 결코 무릅쓰고 갈 이유가 없다고 여기면서 아직까지도 명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은 또 파직되었으니 변통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국이 이것을 가지고 초기(草記)[813]를 올린 적이 있다."라고 하였다. 최석정(崔錫鼎)[814]이 아뢰기를, "과연 초기로써 품달했었습니다. 이해조가 고집하는 것에는 두 조목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함(誣陷)이 선세(先世)에 미쳤다는 것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일은 성비(聖批)에 이미 잘못이 없음을 밝혀서 마음을

---

811) 이인엽(1656~1710): 본관 경주(慶州). 자 계장(季章). 호 회와(晦窩). 1686년(숙종 12) 문과 급제. 이조판서, 홍문관대제학 역임.

812) 왕역(往役)의 의리(義理): 군주가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를 때에는 개인의 사정을 돌보지 말고 나아가서 일하는 것이 의리에 합당하다는 뜻. 《맹자》〈만장 하(萬章下)〉에 맹자가 "가서 일하는 것은 의(義)요, 가서 만나 보는 것은 의가 아니기 때문이다.[往役, 義也, 往見, 不義也.]"라고 한 데에서 유래함.

813) 초기(草記): 각 관서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간략하게 요지만 적어 상주(上奏)하는 문서.

814) 최석정(1646~1715): 본관 전주(全州). 자 여시(汝時)·여화(汝和). 호 존와(存窩)·명곡(明谷). 시호 문정(文貞). 1671년(현종 12) 문과 급제. 이조판서, 우의정, 영의정 역임. 저서 《명곡집》.

풀어주었기에 조금도 편안하지 못한 단서가 없습니다. 과거(科擧)에 관한 일에 이르러서는 당초 논계(論啓)한 사람이 거듭 대간(臺閣)에 들어갔으니, 한번 소진(疏陳)한 것은 부득이 해서인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매양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입니까? 변통하여 개차(改差)하다면 일의 체통이 미안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해조를 서용(敍用)하여 떠나보내는 것을 재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815]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시재어사, 이해조, 이인엽, 최석정.

815) 《비변사등록》 1706년(숙종 32) 8월 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五年 丙戌 八月 二十二日 丁未

○ 鞫廳大臣以下請對入侍時, 罪人林溥絶島定配事及金春澤濟州定配事, 榻前下敎.

❖ 숙종 32년(1706) 병술년 8월 22일(정미)

□ 김춘택(金春澤)을 제주(濟州)에 유배시키라고 어전(御前)에서 하교함

○ 국청대신(鞫廳大臣) 이하가 청대(請對)하여 입시한 때에 죄인 임부를 절도에 유배시키는 일과 김춘택(金春澤)[816]을 제주에 유배시키는 일을 어전(御前)에서 하교하였다.[817]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춘택, 유배.

---

816) 김춘택(1670~1717): 본관 광산(光山). 자 백우(伯雨). 호 북헌(北軒). 시호 충문(忠文). 1701년(숙종 27)의 이른바 '무고(巫蠱)의 옥사(獄事)' 사건에 연루되어, 1706년 제주에 유배됨. 이조판서 추증. 저서《북헌집》.

817)《숙종실록》1706년(숙종 32) 8월 22일자 기사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五年 丙戌 八月 二十四日 己酉

○ 下直, 古阜郡守曺漢遇, 旌義縣監沈益三, …….

❖ 숙종 32년(1706) 병술년 8월 24일(기유)

□ 정의현감(旌義縣監) 심익삼(沈益三) 등이 하직함

○ 고부군수(古阜郡守) 조한우(曺漢遇), 정의현감(旌義縣監) 심익삼(沈益三)이 하직했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심익삼.

❖ 康熙 四十五年 丙戌 八月 二十七日 壬子

○ 禁府, 罪人林溥羅州黑山島減死定配, 金春澤濟州定配. 啓.

❖ 숙종 32년(1706) 병술년 8월 27일(임자)

□ 의금부에서 김춘택(金春澤)을 제주(濟州)에 유배시켰다고 아룀

○ 의금부에서 죄인 임부를 나주 흑산도로 사형을 면하여 유배시키고, 김춘택(金春澤)을 제주(濟州)에 유배시켰다고 아뢰었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춘택, 유배.

❖ 康熙 四十五年 丙戌 九月 四日 己未

○ 備邊司啓辭, 濟州試才御史李海朝, 今將發送矣. 濟州, 以海外絶區, 御史之承命往來, 甚爲間闊, 從前以試才, 兼視軍器, 或以巡撫御史, 兼行試才, 而巡撫則自廟堂磨鍊節目, 試才則自兵曹爲之, 事面差別, 今番試才之入往, 不可不檢察軍政, 雖不以巡撫啓下, 以試才兼行巡撫, 恐或便當, 使之依此擧行, 而節目, 亦自本司, 參酌磨鍊啓下, 何如? 答曰, 允.

❖ 숙종 32년(1706) 병술년 9월 4일(기미)

□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 이해조(李海朝)에게 순무어사까지 겸행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절목을 본사(本司)에서 마련하여 계하(啓下)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의 계사(啓辭)에, "제주시재어사 이해조(李海朝)가 지금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바다 밖의 외딴 지역이어서 어사가 명을 받들어 가고 오는 데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터 시재어사가 겸하여 군기(軍器)를 살피기도 하였고 혹은 순무어사(巡撫御史)가 시재(試才)를 겸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순무어사는 묘당(廟堂)에서 절목을 마련하고, 시재어사는 병조에서 이것을 하여 일의 체통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금번 시재어사가 들어가니, 군정(軍政)을 검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순무로써 계하(啓下)하지는 않았지만 시재로써 순무를 겸행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당연한 듯하니 이대로 거행하게 하고, 절목을 또한 본사(本司)에서 참작하여 마련하도록 계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818]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시재어사, 이해조, 순무어사.

818) 《비변사등록》 1706년(숙종 32) 9월 4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五年 丙戌 九月 十五日 庚午

○ 李震休啓曰, 濟州試才御史李海朝, 明日辭朝, 而大提學金昌協在外, 藝文提學崔錫恒, 明朝牌招, 書題使之書入, 且宣陵丁字閣, 今月二十一日, 當爲上樑云, 上樑文趁期製進事, 分付, 何如? 傳曰, 允.

❖ 숙종 32년(1706) 병술년 9월 15일(경오)

□ 최석항(崔錫恒)을 패초(牌招)하여 제주시재(濟州試才)의 서제(書題)를 써서 들이게 할 것 등을 청하는 이진휴(李震休)의 계

○ 이진휴(李震休)[819]가 아뢰기를, "제주시재어사 이해조(李海朝)가 내일 하직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제학 김창협이 밖에 나가 있으니, 예문제학 최석항(崔錫恒)[820]을 내일아침 패초(牌招)하여 서제(書題)를 써서 들이라 하고, 또 선릉 정자각이 금월 21일 상량한다고 하니 상량문을 기한 내에 지어 올리는 일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시재어사, 이해조, 최석항, 서제, 이진휴.

819) 이진휴(1657~1710): 본관 여흥(驪興). 자 백기(伯起). 호 성재(省齋)·성암(省菴). 1682년(숙종 8) 문과 급제. 동지의금부사, 안동부사, 예조참판 역임.

820) 최석항(1654~1724): 본관 전주(全州). 자 여구(汝久). 호 손와(損窩). 1680년(숙종 6) 문과 급제. 경상도관찰사, 이조판서, 좌의정 역임.

❖ 康熙 四十五年 丙戌 九月 十六日 辛未

○ 濟州試才御史李海朝, 出去.

❖ 숙종 32년(1706) 병술년 9월 16일(신미)

□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 이해조(李海朝)가 떠남

○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 이해조(李海朝)가 떠났다.[821]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시재어사, 이해조.

821) 《숙종실록》 1706년(숙종 32) 9월 16일자 기사에 본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五年 丙戌 十一月 二十四日 戊寅

○ 又所啓, 今番進宴時, 自上布德施惠, 舊年逋欠, 悉爲蕩減, 一國之民, 無不懽忻感祝, 而濟州三邑, 則元會付還穀, 本來零星, 戊寅以上未收, 皆是移轉賑穀, 而移轉穀, 則不入於蕩減中, 故島民獨未霑恩, 濟州則異於他處, 移轉賑穀, 別爲蕩減, 恐無所妨, 下詢而處之, 何如? 上曰, 此事, 如何? 知事趙泰采曰, 各邑元會則數小, 而未收, 皆是軍餉及賑廳移轉, 如關西則管餉, 係是軍需, 雖有蕩滌之令, 元會無多, 民不得蒙惠云矣. 濟州, 則旣是絶島而屢經年凶, 年舊未收移轉穀, 竝許蕩減, 似可矣. 上曰, 移轉賑穀則蕩減, 軍餉則問于廟堂而稟處, 可也.【以上備局謄錄】

❖ 숙종 32년(1706) 병술년 11월 24일(무인)

□ 송정규(宋廷奎)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의 이전한 진휼곡을 탕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송정규가) 또 아뢰기를, "금번 진연(進宴) 때, 임금께서 덕을 펴고 은혜를 베풀어서 환납(還納)이 지체된 묵은해의 곡식을 모두 탕감해 주었기에 온 나라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감축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주 3읍은 원회부(元會付)[822]의 환곡이 본래 수량이 보잘 것 없고, 무인년(1698) 이상의 미수(未收)는 모두가 이전(移轉)한 진휼곡(賑恤穀)인데, 이전한 곡물은 탕감하는 것 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섬 백성들이 유독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제주는 다른 곳과 달라서 이전한 진휼곡을 별도로 탕감해 주어도 꺼릴 것이 없을 듯하니 신하들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을 어찌해야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지사 조태채(趙泰采)[823]가 말하기를, "각 읍의 원회(元會)는 수량이 작고, 미수는 모두가 군향(軍餉) 및 진청(賑廳)의 이전곡(移轉穀)인데, 관서(關西) 같은 경우는 관향(管餉)[824]이 군수(軍需)와 관계되기 때문에 비록 탕척(蕩滌)의 명이 있었지만 원회가 많지 않아서 백성들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주는 이미 절도(絶島)이면서 여러 차례 흉년을 겪은 이

---

822) 원회부(元會付): 환곡을 분급하여 10분의 1의 이자를 받아 그중 10분의 1은 원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10분의 9는 고을에 모아 두는데, 이것을 장부에 회록(會錄)하여 계상(計上)한 것을 원회부라 함.

823) 조태채(1660~1722): 본관 양주(楊州). 자 유량(幼亮). 호 이우당(二憂堂). 시호 충익(忠翼). 1686년(숙종 12) 문과 급제. 평안감사, 좌참찬 겸 판의금부사, 좌의정 역임. 저서《이우당집》.

824) 관향(管餉): 국가의 비상시에 군량으로 쓰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하던 양곡.

상 해묵은 미수와 이전곡을 아울러 탕감해 주는 것이 옳은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전한 진곡은 탕감하고, 군향은 묘당(廟堂)에 물어서 아뢰어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825] 【이상은 비국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송정규, 탕감, 진휼곡.

825) 《비변사등록》 1706년(숙종 32) 11월 25일자 기사에서 같은 내용이 확인됨.

1707年

❖ 康熙 四十六年 丁亥 一月 二十一日 乙亥

○ 濟州試才御史李海朝入來.

❖ 숙종 33년(1707) 정해년 1월 21일(을해)

□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 이해조(李海朝)가 들어옴

○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 이해조(李海朝)가 들어왔다.[826]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시재어사, 이해조.

826) 《숙종실록》 1707년(숙종 33) 1월 21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六年 丁亥 一月 二十一日 乙亥

○ 政院啓曰, 濟州試才御史, 旣已收取試券上來矣. 藝文提學崔錫恒, 卽爲牌招, 使之科次, 何如? 傳曰, 允.

❖ 숙종 33년(1707) 정해년 1월 21일(을해)

□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가 이미 시권을 거두어 올라 왔으므로 최석항(崔錫恒)을 패초하여 과차하게 할 것을 청하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제주시재어사가 이미 시권(試券)을 거두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예문제학 최석항(崔錫恒)을 즉시 패초(牌招)하여 과차(科次)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827]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시재어사, 최석항, 과차.

827) 《숙종실록》 1707년(숙종 33) 1월 21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六年 丁亥 一月 二十八日 壬午

○ 備邊司啓曰, 觀此義禁府啓目, 則大靜前縣監金弘瑞, 虛張穀數, 受賞一節, 都是其矣身要求恩榮是如爲白臥乎所, 冒受賞典一款, 令廟堂稟處亦爲白有置. 向前金弘瑞冒受賞典, 旣已自服, 則所授加資, 不可仍置, 令該曹卽爲還收, 何如? 依允.【吏曹謄錄】

❖ 숙종 33년(1707) 정해년 1월 28일(임오)

□ 거짓으로 곡수(穀數)를 과장한 김홍서(金弘瑞)에게 내린 가자(加資)의 환수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이 의금부의 계목(啓目)을 보니, 전 대정현감 김홍서(金弘瑞)가 곡수(穀數)를 거짓으로 부풀려서 상을 받은 일절(一節)은 '모두가 본인이 임금의 은혜를 입는 영광을 바래서 한 것'이라고 하는 바, 상전(賞典)을 법을 어겨 함부로 받은 한 조목에 대해 묘당(廟堂)에게 여쭈어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김홍서가 상전을 법을 어겨 함부로 받은 것을 이미 자복하였으니, 주었던 가자(加資)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즉시 환수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이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김홍서, 곡수, 가자.

❖ 康熙 四十六年 丁亥 二月 十九日 壬寅

○ 韓城君李基夏疏曰, 軍門戰馬, 最爲緊重, 而近來太僕分養, 漸不如前, 體小才駑, 不合戰陣. 若無變通, 何以成樣? 曾前將臣, 陳白此弊, 就濟州入山馬中, 擇其骨體壯大者, 加數上送, 分給軍兵矣. 貢馬之期, 又復不遠, 令太僕行會本牧, 山馬中擇其體大可合戰騎者, 限百匹趁歲貢, 一時上送, 分給於都監馬兵, 幸甚. 上曰, 令太僕依施焉.【太僕謄錄】

❖ 숙종 33년(1707) 정해년 2월 19일(임인)

□ 이기하(李基夏)가 상소하여 전진(戰陣)에 적합한 제주마(濟州馬)를 특별히 가려 세공하도록 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 한성군 이기하(李基夏)[828]의 상소에,“군문(軍門)에는 전마(戰馬)가 가장 긴요하고 중한데, 근래 태복시(太僕寺)에서 분양하는 것이 점점 전과 같지가 않아서 체구가 작고 재주가 둔하여 전진(戰陣)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변통함이 없으면 어찌 모양새를 갖추겠습니까? 일찍이 전에 장신(將臣)[829]이 이러한 폐단을 진술하여 아뢰니, 이에 제주 산마(山馬)에 드는 것 중에서 그 골체(骨體)가 장대한 것을 골라서 숫자를 더하여 올려 보내어 군병(軍兵)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공마(貢馬)의 기일이 또 다시 멀지 않았으니, 태복시로 하여금 본목(本牧)에 통지하여 산마 중에서 몸집이 커서 전시(戰時)에 기마에 합당할 만한 것을 골라 1백 필에 한하여 세공(歲貢)을 좇아 한꺼번에 올려 보내어 훈련도감의 마병에게 나누어 준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복(太僕)[830]으로 하여금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라.”라고 하였다.【태복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기하, 태복시, 산마, 훈련도감.

---

828) 이기하(1646~1718): 본관 한산(韓山). 자 하경(夏卿). 시호 정희(貞僖). 훈련대장, 총융사, 지훈련원사 역임.

829) 장신(將臣): 각 군문(軍門)의 대장.

830) 태복(太僕): 사복시의 별칭.

❖ 康熙 四十六年 丁亥 二月 二十二日 乙巳

○ 司僕寺官員, 以都提調意啓曰, 因韓城君李基夏疏陳, 依舊例濟州入山馬一百匹, 以體大骨駿者, 各別擇捉, 今年歲貢馬, 一時上來, 分給訓局馬兵事, 命下矣. 以此意, 分付全羅監司及濟州牧使之意, 敢啓. 傳曰, 知道.【太僕謄錄】

❖ 숙종 33년(1707) 정해년 2월 22일(을사)

□ 제주(濟州)의 산마(山馬)를 훈련도감의 마병에게 나누어주라고 전라감사와 제주목사에게 분부하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의 관원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한성군 이기하(李基夏)가 올린 상소에서 진술한 것에 따라 구례(舊例)대로 제주의 산마(山馬) 1백 필을 몸집이 크고 뼈대가 굳센 것으로 각별히 골라잡아서 금년 세공마(歲貢馬)로 한꺼번에 올려 보내어 훈련도감의 마병에게 나누어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 뜻으로 전라감사와 제주목사에게 분부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태복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기하, 산마, 훈련도감, 전라감사, 제주목사.

❖ 康熙 四十六年 丁亥 二月 二十九日 壬子

○ 兵曹啓曰, 昨因訓鍊大將李基夏陳疏, 濟州入山馬捉來, 分給馬兵事, 蒙允矣. 近來禁軍等所受官馬, 不但體小, 亦皆駑駘, 其在軍政, 殊涉可慮. 依訓局例, 限百匹, 加數捉來, 禁軍等處, 一體分給事, 分付該寺, 何如? 傳曰, 允. 【太僕謄錄】

❖ 숙종 33년(1707) 정해년 2월 29일(임자)

□ 근래 금군에게 나누어준 제주마(濟州馬)가 느리고 둔하므로 100필을 더 잡아와서 금군 등에게 나누어주도록 해시(該寺)에 분부할 것을 청하는 병조의 계

○ 병조에서 아뢰기를, "어제 훈련대장 이기하(李基夏)의 상소에 따라 제주의 산마(山馬)를 잡아와서 마병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대해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래 금군(禁軍) 등이 받은 관마(官馬)가 몸집이 작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두 느리고 둔하여서 군정(軍政)에 있어 매우 염려가 됩니다. 훈련도감의 예에 따라서 1백 필에 한하여 수를 더해 잡아와서 금군 등에게 모두를 나눠줄 것을 해시(該寺)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태복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기하, 산마, 훈련도감, 금군.

❖ 康熙 四十六年 丁亥 三月 十八日 辛未

○ 今日晝講時, 知事李寅燁所啓, 直赴殿試人, 許赴於式年, 自是法例, 而外方直赴人, 多數上來之時, 則許赴於別試者, 亦多有之. 今聞外方擧子上來者甚多, 且濟州直赴人, 亦已來待云. 濟州則非但絶島, 且有越海往來之事, 竝許赴於今番別試, 何如? 上曰, 前旣許赴別試, 則今亦許赴, 可也. …….

❖ 숙종 33년(1707) 정해년 3월 18일(신미)

□ 주강에 이인엽(李寅燁) 등이 입시하여 별시에 지방에서 과거를 보러온 사람들을 별시에 응시하게 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오늘 주강(晝講)할 때 지사 이인엽(李寅燁)이 아뢰기를, "직부전시인(直赴殿試人)을 식년(式年)에 응시하게 하는 것은 본래의 법례입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직부인(直赴人)이 다수 올라올 때에는 별시(別試)에 응하게 한 적도 또한 많았습니다. 지금 들으니, 지방에서 과거를 보러 올라온 자가 아주 많고, 또 제주(濟州)에서 직부한 사람이 또한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는 절도(絶島)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바다를 건너서 오고가는 일이 있으니 모두를 금번 별시에 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이미 별시에 응하게 했다면 지금 역시 응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인엽, 직부전시인, 별시.

❖ 康熙 四十六年 丁亥 三月 十八日 辛未

○ 禮曹啓曰, 今三月十八日晝講入侍時, 直赴殿試之類, 許赴於今番別試殿試事, 榻前定奪矣. …… 丙戌十二月二十七日, 賜柑居首進士趙錫命, 及濟州試才文科入格, 幼學鄭敞遠, 進士吳廷賓, 幼學高萬瞻等, 曾有直赴殿試之命矣. 依榻前定奪, 竝爲許赴於今番別試殿試之意, 敢啓. 傳曰, 知道.【禮曹謄錄】

❖ 숙종 33년(1707) 정해년 3월 18일(신미)

□ 정창원(鄭敞遠) 등이 별시전시에 응시하기를 허락하겠다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오늘 3월 18일 주강(晝講)에 입시하였을 때, 직부전시(直赴殿試)할 응시자들에게 금번 별시전시(別試殿試)를 보도록 허락하는 일에 대해 탑전(榻前)에서 정탈(定奪) 하였습니다. 〈중략〉 병술년(1706) 12월 27일 사감(賜柑)[831]에서 수석을 차지한 진사 조석명과 제주시재 문과에 입격(入格)한 유학 정창원(鄭敞遠)[832], 진사 오정빈(吳廷賓)[833], 유학 고만첨(高萬瞻)[834] 등에게 일찍이 직부전시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탑전에서 정탈한 것에 따라서 아울러서 금번 별시전시를 보도록 허락하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직부, 전시, 정창원, 오정빈, 고만첨.

---

831) 사감(賜柑): 황감시(黃柑試). 해마다 제주도에서 진상하는 황감을 성균관 및 사학(四學)에 내리고 거행하는 과거.

832) 정창원(1667~?): 본관 동래(東萊). 현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출신. 1706년(숙종 32) 가을 문과 초시 합격. 1707년(숙종 33) 문과 급제. 청암찰방 역임.

833) 오정빈(1663~1711): 본관 군위(軍威). 자 흥숙(興叔). 호 조헌(兆軒). 현 서귀포시 토평동 출신. 1706년(숙종 32) 가을 문과 초시 합격. 1707년(숙종 33) 문과 급제. 성균관전적, 예조좌랑, 만경현령 역임. 저서《조헌집》.

834) 고만첨(1672~1730): 본관 제주(濟州). 자 사앙(士昻). 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출신. 1706년(숙종 32) 가을 문과 초시 합격. 1707년(숙종 33) 문과 급제. 성균관전적, 예조좌랑, 평해군수 역임.

❖ 康熙 四十六年 丁亥 三月 二十日 癸酉

○ 崔錫恒, 以禮曹言啓曰, 今三月十八日晝講入侍時, 直赴殿試之類, 【缺】今番別試殿試事, 榻前定奪矣. …… 丙戌十二月二十七日賜柑居首進士【缺】及濟州試才文科入格幼學鄭敞遠, 進士吳挺賓, 幼學高萬瞻等, 曾有直赴殿試事, 命下矣. 依榻前【缺】竝爲許赴於今番別試殿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33년(1707) 정해년 3월 20일(계유)

□ 직부전시하도록 명한 정창원(鄭敞遠) 등을 이번 별시전시에 응시하도록 하겠다는 예조의 계

○ 최석항(崔錫恒)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금번 3월 18일 주강(晝講)에 입시한 때에 직부전시(直赴殿試)할 응시자, 【글자 빠짐】 금번 별시전시(別試殿試)의 일을 어전(御前)에서 정탈(定奪)하였습니다. 〈중략〉 병술년(1706) 12월 27일 감시(柑試)[835]에서 수석을 차지한 진사【글자 빠짐】와 제주시재(濟州試才)에서 문과에 입격한 유학 정창원(鄭敞遠)[836], 진사 오정빈(吳挺賓)[837], 유학 고만첨(高萬瞻)[838] 등에게 일찍이 직부전시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어전(御前)【글자 빠짐】한 대로 모두를 금번 별시전시에 응시하게 하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최석항, 직부전시, 정창원, 오정빈, 고만첨.

---

835) 감시(柑試): 황감시(黃柑試). 해마다 제주도에서 진상하는 황감을 성균관 및 사학(四學)에 내리고 거행하는 과거.

836) 정창원(1667~?): 본관 동래(東萊). 현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출신. 1706년(숙종 32) 가을 문과 초시 합격. 1707년(숙종 33) 문과 급제. 청암찰방 역임.

837) 오정빈(1663~1711): 본관 군위(軍威). 자 흥숙(興叔). 호 조헌(兆軒). 현 서귀포시 토평동 출신. 1706년(숙종 32) 가을 문과 초시 합격. 1707년(숙종 33) 문과 급제. 성균관전적, 예조좌랑, 만경현령 역임. 저서《조헌집》.

838) 고만첨(1672~1730): 본관 제주(濟州). 자 사앙(士昻). 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출신. 1706년(숙종 32) 가을 문과 초시 합격. 1707년(숙종 33) 문과 급제. 성균관전적, 예조좌랑, 평해군수 역임.

❖ 康熙 四十六年 丁亥 三月 二十日 癸酉

○ 禮曹啓曰, 濟州試才文科入格幼學鄭敞遠, 進士吳廷賓, 幼學高萬瞻等, 許赴於今別試殿試事, 啓稟蒙允矣. 高萬瞻則未及上來云, 許赴後科之意, 敢啓. 傳曰, 知道. 【禮曹謄錄】

❖ 숙종 33년(1707) 정해년 3월 20일(계유)

□ 별시전시에 응시할 고만첨(高萬瞻)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다음 과거에 응시하도록 하겠다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시재(濟州試才)에서 문과에 입격한 유학 정창원(鄭敞遠), 진사 오정빈(吳廷賓), 유학 고만첨(高萬瞻) 등을 금번 별시전시(別試殿試)에 응시하도록 하는 일을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만첨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니, 다음번 과거에 응시하게 하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시재, 정창원, 오정빈, 고만첨.

❖ 康熙 四十六年 丁亥 三月 二十五日 戊寅

○ 禮曹啓曰, 濟州試才文科入格幼學鄭敞遠, 進士吳廷賓, 幼學高萬瞻等, 許赴於今別試殿試事, 啓稟蒙允矣. 高萬瞻則未及上來云, 許赴後科之意, 敢啓. 傳曰, 知道. 【禮曹謄錄】

❖ 숙종 33년(1707) 정해년 3월 25일(무인)

□ 별시전시에 응시할 고만첨(高萬瞻)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다음 과거에 응시하도록 하겠다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시재(濟州試才)에서 문과에 입격한 유학 정창원(鄭敞遠), 진사 오정빈(吳廷賓), 유학 고만첨(高萬瞻) 등을 금번 별시전시(別試殿試)에 응시하도록 하는 일을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만첨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니, 다음번 과거에 응시하게 하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시재, 정창원, 오정빈, 고만첨.

❖ 康熙 四十六年 丁亥 四月 十日 壬辰

○ 濟州牧使書目, 判官鄭會, 唯酒是務, 全不省事, 大小政令, 無一可觀, 官庫蕩敗, 不得已罷黜事.

❖ 숙종 33년(1707) 정해년 4월 10일(임진)

□ 일을 돌보지 않는 정회(鄭會)의 파직에 대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

○ 제주목사의 서목은, '판관 정회(鄭會)가 오로지 술 마시기만을 일삼으며 전혀 일을 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정령(政令)이 하나도 볼만한 것이 없이 관아의 곳간만을 탕진하고 있으니 파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판관, 정회, 파직.

❖ 康熙 四十六年 丁亥 四月 十一日 癸巳

○ 以金重泰爲濟州判官, 洪重亨爲永同縣監.【吏曹謄錄】

❖ 숙종 33년(1707) 정해년 4월 11일(계사)

□ 김중태(金重泰)를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김중태(金重泰)[839]를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고, 홍중형(洪重亨)을 영동현감(永同縣監)으로 삼았다.【이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중태, 제주판관.

839) 김중태(1663~1735): 본관 상산(商山). 자 대래(大來). 호 수졸헌(守拙軒). 1690년(숙종 16) 문과 급제. 홍덕현감, 고성현령, 예조정랑 역임. 제주판관으로 1707년(숙종 33) 4월에 도임하여, 1709년(숙종 35) 10월 체임.

❖ 康熙 四十六年 丁亥 五月 十二日 癸亥

○ 下直, 濟州判官金重泰.

❖ 숙종 33년(1707) 정해년 5월 12일(계해)

□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중태(金重泰)가 하직함

○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중태(金重泰)가 하직했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김중태, 제주판관.

❖ 康熙 四十六年 丁亥 五月 二十五日 丙子

○ 今日引見時, 刑曹判書姜鋧所啓, 滯囚實爲近來痼弊 …… 又所啓, 自祖宗朝, 別遣濟州御史時, 勿論常漢, 年八十以上, 連有加資之命, 而今番則不然, 蓋遵昨年慶禮後定奪之例, 而絶島, 異於陸地, 特施恩典, 似爲得宜矣. 右議政李頤命曰, 前旣有勿論常漢加資之例, 則當此以慶覃恩之日, 特敎加資, 未爲不可矣. 吏曹判書李益壽曰, 推恩之擧, 出於特霈, 邦域之內, 宜無異同, 只以絶島之故, 別爲加資, 未知如何. 上曰, 恩典之獨及於濟州, 似爲不均, 該曹防啓得宜, 故允下矣. 兵判及大臣所達如此, 考見前例, 果連有加資之事, 則海島, 異於他地, 特爲加資, 可也. 益壽曰, 濟州御史李海朝書啓中, 常漢年八十以上加資事, 本曹旣已防啓, 允下矣. 御史書啓及牧使啓本中, 應爲加資者, 兩相憑準, 則無大段違錯之事, 而御史書啓中, 正兵韓德男, 以一百五歲懸錄, 牧使啓本中, 則落漏不書, 書啓及啓本上送月日, 不甚相遠, 而所錄如是相左, 事殊可訝, 牧使啓本, 則以考見帳籍, 從實年啓聞爲辭, 而有此相違之端, 其將更問於本牧乎? 上曰, 御史書啓中懸錄, 而牧使則落漏, 旣以侍從臣差送御史, 從御史書啓, 何如? 頤命曰, 考見京兆帳籍, 如無差爽, 依上敎施行, 似當矣. 上曰, 旣登於御史書啓, 考見京兆帳籍後, 依御史書啓施行, 可也. 益壽曰, 帳籍中或爲見漏如牧使啓本, 則何以爲之乎? 寅燁曰, 問於牧使, 似可矣. 益壽曰, 有明白下敎, 然後方可處之矣. 上曰, 問于本牧, 可也. …….【備局謄錄】

❖ 숙종 33년(1707) 정해년 5월 25일(병자)

□ 인견에 강현(姜鋧)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의 80세 이상 되는 상한(常漢)에 대한 가자(加資) 등에 대해 논의함

○ 오늘 인견(引見)할 때 형조판서 강현(姜鋧)[840]이 아뢰기를, "죄가 결정되지 않아서 오래 갇혀 있는 죄수의 문제가 실로 근래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제주에 어사를 특별히 파견할 때에는 상한(常漢)을 막론하고 80세 이상인 자에게는 가자(加資)하라는 명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대개 작년 경례(慶禮)를 거행한 후 정탈(定奪)한 예(例)를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절도(絶島)는 육지와 다르니 특별히 은전(恩典)을 베푸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

840) 강현(1650~1733): 본관 진주(晉州). 자 자정(子精). 호 백각(白閣)·경암(敬庵). 시호 문안(文安). 1680년(숙종 6) 문과 급제. 이조참의, 예조참판, 대제학 역임.

우의정 이이명(李頤命)[841]이 아뢰기를, “전에 이미 상한을 막론하고 가자했던 사례가 있다면 이처럼 경례로써 은혜를 베푸는 날을 당하여 특별히 가자하도록 하교하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조판서 이익수(李益壽)[842]가 말하기를, “추은(推恩)[843]하는 일은 특별한 은택에서 나오는 것이니, 나라 안에서는 마땅히 서로 같지 아니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절도인 까닭에 특별히 가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은전을 유독 제주에만 베푸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해조(該曹)의 방계(防啓)[844]가 마땅하였기에 윤허하였던 것이다. 병조판서와 대신이 아뢰는 바가 이와 같으니, 전례를 살펴보고 과연 계속해서 가자를 한 일이 있다면 해도(海島)가 다른 지역과 다르니 특별히 가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수익이 말하기를, “제주어사 이해조(李海朝)의 서계(書啓) 중에 상한으로 80세 이상인 자를 가자하는 일은 본조(本曹)가 방계했기에 윤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사의 서계와 목사의 계본(啓本) 중에서 응당 가자해야 할 자를 둘을 서로 대조해 보니 크게 어긋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사의 서계 중에는 정병 한덕남(韓德男)이 105세로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의 계본 안에는 누락되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서계와 계본을 올려 보낸 월일이 심히 서로 멀지 않은데 기록한 것이 이와 같이 서로 다르니 일이 자못 의아합니다. 목사의 계본은 장적(帳籍)을 살펴 실지 나이대로 계문(啓聞)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처럼 서로 다른 단서가 있으니 그것을 본목(本牧)에 다시 물어봐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의 서계 안에는 기록되어 있고 목사는 누락했다면, 기왕 시종신(侍從臣)으로 차출하여 어사를 보냈으니 어사의 서계를 따르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이명이 말하기를, “한성부(漢城府)의 장적을 살펴보아서 만약에 어긋남이 없다면, 하교한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어사의 서계에 올라있으니, 한성부의 장적을 살펴본 뒤에 어사의 서계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익수가 말하기를, “장적 안에 혹 목사의 계본처럼 누락되었다면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이인엽(李寅燁)이 말하기를, “목사에게 묻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익

841) 이이명(1658~1722): 본관 전주(全州). 자 지인(智仁)·양숙(養叔). 호 소재(疎齋). 1680년(숙종 6) 문과 급제. 홍문관정자, 병조판서, 우의정 역임.

842) 이익수(1653~1708): 본관 전주(全州). 자 구이(久而). 호 백묵당(白默堂). 시호 문간(文簡). 1682년(숙종 8) 문과 급제. 대사간, 판의금부사, 이조판서 역임.

843) 추은(推恩): 임금이 은혜를 미루어 관작(官爵)이나 품계를 더 높여주는 것.

844) 방계(防啓): 상주(上奏)된 안건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 그 일의 부당성을 제시하여 아뢰는 것을 말함.

수가 말하기를, “명백한 하교가 있은 연후에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목사에게 묻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845] 〈하략〉. 【비국 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상한, 가자, 강현, 절도, 어사.

845) 《비변사등록》 1707년(숙종 33) 5월 2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六年 丁亥 五月 二十八日 己卯

○ 申時, 上御宣政殿, 夕講入侍時, 侍講官李師尙進講. …… 李世維曰, 濟州牧使全家罪目抄啓中, 徙邊罪人四戶, 爲奴罪人五戶矣. 當初疏決時, 大臣所達及自上下敎, 皆以全家徙邊罪目太多, 欲爲變通, 故令各道徙邊罪人抄啓, 而元【缺】爲奴罪人擧論之事, 今此濟州狀啓, 乃以爲奴之類, 【缺】置於徙邊罪人之中, 不察之失, 在所難免, 請推考警責,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諸臣以次退出.

❖ 숙종 33년(1707) 정해년 5월 28일(기묘)

□ 석강에 이사상(李師尙) 등이 입시하여 전가죄인(全家罪人)의 명목을 뽑아 아뢰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주목사를 추고하여 경책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함

○ 신시(申時)에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석강(夕講)에 입시할 때 시강관(侍講官) 이사상(李師尙)이 나아가 강론하였다. 〈중략〉 이세유(李世維)[846]가 말하기를, "제주목사가 전가죄인(全家罪人)[847]의 명목(名目)을 뽑아서 아뢴 것 중에는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한 죄인이 4호(戶), 노비가 된 죄인이 5호였습니다. 당초 소결(疏決)[848]할 때 대신이 아뢴 것과 위에서 분부를 내린 것에는 모두가 전가죄인을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한 죄인의 명목이 아주 많아서 변통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각 도로 하여금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한 죄인의 명단을 뽑아서 아뢰도록 하였고, 본래 노비가 된 죄인을 거론한 일은【글자 빠짐】지금 이 제주의 장계에는 곧 노비가 된 죄인들로【글자 빠짐】변방으로 옮겨 살게 한 죄인들 안에다 두었으니, 살피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청컨대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내었음[849]】모든 신하가 차례대로 나갔다.

---

846) 이세유(李世維): 본관 부평(富平). 자 지정(持正), 호 기국(杞菊). 1694년(숙종 20) 문과 급제. 사헌부 장령, 사헌부 집의, 여주목사 역임.

847) 전가죄인(全家罪人): 죄인의 전 가족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음. 하나는 역모와 같은 대죄를 범했을 경우로, 가족이 전부 중죄인으로 처리되어 사형 또는 노비로 입역(入役)되었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경질(輕質)의 죄인으로 변방으로 이주시키는 것임.

848) 소결(疏決):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은전(恩典)을 베풀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 재판.

849) 거조(擧條): 거행조건(擧行條件)의 줄임. 군신이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은 주서에 의해서 《승정원일기》에 기록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서로 남겨지지는 않음. 그런데 군신의 대화 내용 중에는 대중에게 공개해야 할 사안을 뽑아서 주서(注書)가 정서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아 조보(朝報)에 반포하게 되는데, 이를 거조라고 함. 거조를 냈다는 것은 군신 간의 대화 내용을 문서화했다는 의미와 대중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세유, 전가죄인, 제주목사, 추고.

에게 공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康熙 四十六年 丁亥 七月 十六日 丙寅

○ 司僕寺啓曰, 濟州出來先運歲貢馬二百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合二百六十匹, 二十一匹到中路病留, 一匹船中病留, 三匹故失, 四匹到本寺病留, 一匹故失, 合三十匹計除, 實納馬二百三十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司僕謄錄】

❖ 숙종 33년(1707) 정해년 7월 16일(병인)

□ 제주(濟州) 세공마와 진상마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에서 나온 선운 세공마(先運歲貢馬) 2백 필, 삼명일[850] 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합 260필 중에 21필은 도중에 병이 들어 머물고 있고, 1필은 배 안에서 병이 들어 머물고 있고, 3필은 고실(故失)하였고, 4필은 본시(本寺)에 도착한 후에 병이 들어 머물고 있고, 1필은 고실하여 합 30필을 제외하고, 실지로 바치는 말이 230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사복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세공마, 진상마, 별단.

850) 삼명일(三名日): 세 명절날을 가리키는 말로, 임금의 탄신일[大殿誕日], 정월초하루[正朝], 동지(冬至) 또는 정월 초하루, 단오(端午), 동지를 이름.

❖ 康熙 四十六年 丁亥 七月 二十一日 辛未

○ 司僕寺啓曰, 濟州出來後運年例進上馬八匹內, 一匹到中路病留, 凶咎駑駘, 合五十一匹內, 六匹到中路病留, 四匹故失, 一匹船中故失, 二匹到本寺病留, 今春別啓請 訓局馬兵所給山屯馬一百匹, 兵曹禁軍所給山屯馬一百匹, 合二百匹內, 八匹到中路病留, 一匹故失, 二匹到本寺病留, 二匹故失, 合二十七匹計除, 實納馬二百三十二匹, 禾毛色別單書入, 而兩衙門所給山屯馬, 則依前例直爲移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33년(1707) 정해년 7월 21일(신미)

□ 제주(濟州) 진상마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에서 나온 후운 연례진상마(後運年例進上馬) 8필 안에 1필은 도중에 병이 들어 머물고 있습니다. 흉구(凶咎馬)와 노태(駑駘馬) 합 51필 안에 6필은 도중에 병이 들어 머물고 있고, 4필은 고실(故失)하였고, 1필은 배 안에서 고실하였고, 2필은 본시(本寺)에 도착하여 병이 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특별히 계청(啓請)하여 훈련도감 마병에게 줄 산둔마(山屯馬) 1백 필과 병조 금군(禁軍)에게 줄 산둔마 1백 필 합 2백 필 안에 8필은 도중에 병이 들어 머물고 있고, 1필은 고실하였고, 2필은 본시(本寺)에 도착하여 병이 들어 머물고 있고, 2필은 고실하였기에 합 27필을 제외하여 실지로 바치는 232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고, 두 아문(衙門)에 줄 산둔마는 전례에 따라 바로 이송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진상마, 산둔마, 훈련도감, 금군, 별단.

❖ 康熙 四十六年 丁亥 八月 二十日 己亥

○ 濟州牧使書目, 定配罪人吳碩夏物故事.

❖ 숙종 33년(1707) 정해년 8월 20일(신미)

□ 오석하(吳碩夏)의 사망에 대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

○ 제주목사의 서목(書目)은, '유배된 죄인 오석하(吳碩夏)[851]가 사망한 일'이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서목, 유배, 오석하, 사망.

851) 오석하(?~?): 본관 나주(羅州). 1681년(숙종 7) 문과 급제. 1699년(숙종 25) 과거시험 등록관(謄錄官)이었는데, 과거시험 부정 혐의에 연루된 혐의로 1703년(숙종 29) 10월 대정(大靜)으로 유배.

❖ 康熙 四十六年 丁亥 十月 十八日 丙申

○ 晝講入侍時, 特進官閔鎭遠所啓, 濟州爲奴罪人朴弼渭, 乃先正臣朴世采之奉祀孫也. 弼渭, 無子女而死, 宗祀無主, 而其家無主張請後之人云. 儒賢立後, 事體自別, 似當自朝家定給主祀之人, 而判書趙泰采, 有親嫌, 故臣仰達矣. 世采三子長泰殷無後, 第四子泰晦之子弼渭, 有後矣. 今弼渭已死〈矣〉. 世采第二子泰輿, 有二子, 二子中可以立後矣. 知事趙泰采曰, 朴世采, 於臣爲五寸親, 立後事, 嫌不敢仰達矣. 弼渭生時, 諸宗之議, 皆以不可以此人, 爲儒賢後事, 有變通之議, 而無主張者, 尙未爲之矣. 弼渭旣已身死, 儒相宗事, 將無所托, 大臣及儒賢家立後事, 在前亦有自朝家定給之例, 泰輿之子, 有二人而長子已成長云矣. 鎭遠曰, 聞泰輿二子, 皆已長成, 而長子則法典所不許, 非有特命, 則不得循例立後矣. 上曰, 以泰輿之長子, 特爲之後, 可也.【禮曹謄錄】

❖ 숙종 33년(1707) 정해년 10월 18일(병신)

□ 주강에 민진원(閔鎭遠)이 입시하여 선정신 박세채(朴世采)의 봉사손인 박필위(朴弼渭)가 아들 없이 죽었으므로 박태흥(朴泰輿)의 장자로 후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주강(晝講)에 입시한 때 특진관 민진원(閔鎭遠)[852]이 아뢰기를, "제주(濟州)에 노비가 된 죄인 박필위(朴弼渭)는 곧 선정신 박세채(朴世采)의 봉사손(奉祀孫)입니다. 필위가 자녀가 없이 죽어서 종사(宗祀)에 주인이 없는데도 그 집안에서 후(後)를 청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유현(儒賢)의 후를 세우는 것은 일의 체통이 본래 각별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조정에서 제사를 받들어 모실 사람을 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서 조태채(趙泰采)는 친혐(親嫌)[853]이 있기 때문에 신이 우러러 아뢰는 것입니다. 세채의 3자와 장자인 태은(泰殷)에게는 후가 없고, 4자 태회(泰晦)의 아들은 필위로 후가 있었습니다. 지금 필위가 이미 죽었습니다. 세채의 2자 태여(泰輿)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두 아들 중에서 후를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지사 조태채가 말하기를, "박세채는 신에게는 5촌친(五寸親)이 되기에 후를 세우는 일을 꺼

852) 민진원(1664~1736): 본관 여흥(驪興). 자 성유(聖猷). 호 단암(丹巖)·세심(洗心). 시호 문충(文忠). 1691년(숙종 17) 문과 급제. 대사성, 이조판서, 좌의정 역임.

853) 친혐(親嫌): 친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을 말함.

려서 감히 아뢰지 않았습니다. 필위가 살아있을 때 제종(諸宗)의 의론이 모두 이 사람이 불가하다고 하였기에 유현의 후를 삼는 일에 대해 변통하는 의론이 있었지만 주장하는 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필원이 이미 죽었으니, 유상(儒相)의 종사(宗事)를 장차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대신과 유현의 집안에 후를 세우는 일은 예전에 또한 조정에서 정해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태여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장자는 이미 장성하였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진원이 말하기를, "들으니, 태여의 두 아들이 모두 이미 장성하였고, 장자는 법으로 허락하지 않는 바이어서 특명이 있지 않으면 관례에 따라 후를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여의 장자로 특별히 후를 삼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죄인, 박필위, 박세태.

❖ 康熙 四十六年 丁亥 十月 二十七日 乙巳

○ 司僕寺啓曰, 大靜縣監金舜臣, 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而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太僕謄錄】

❖ 숙종 33년(1707) 정해년 10월 27일(을사)

□ 김순신(金舜臣)의 체임 진상마 2필이 올라왔으므로 별단에 써서 들이고 전례대로 내구에서 입양하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대정현감(大靜縣監) 김순신(金舜臣)의 체임 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이제 겨우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고, 전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태복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김순신, 진상마.

❖ 康熙 四十六年 丁亥 十一月 三日 辛亥

○ 備邊司啓目, 粘連濟州牧使狀啓云云. 本州, 邈在海島, 無他聚穀之路, 且當年事, 荐飢之餘, 民間形勢, 如是遑急, 誠可矜念. 大靜縣監金舜臣, 雖已瓜滿, 治績可尙, 限明年麥秋, 使之仍任, 何如? 傳曰, 允.

❖ 숙종 33년(1707) 정해년 11월 3일(신해)

□ 제주(濟州)에 계속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므로 임기가 찬 김순신(金舜臣)을 내년 보리가 익는 시절까지 유임시킬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목

○ 비변사의 계목(啓目)에 "점련(粘連)한 제주목사의 장계에 운운하였습니다. 본주(本州)는 아득히 바다에 있는 섬이라 달리 곡물을 모을 길이 없습니다. 또 농사가 거듭 기근이 든 끝을 당하여 민간의 형세가 이와 같이 황급하니 실로 가엽게 여기고 생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정현감 김순신이 비록 이미 임기가 찼지만 내년 보리가 익는 시절까지만 그대로 유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장계, 대정현감, 김순신, 유임.

1708年

❖ 康熙 四十七年 戊子 一月 十日 戊午

○ 孟萬澤, 以奉常寺郎廳, 以提調意啓曰, 臣以濟州封進, 宗廟十一月朔薦新唐柚子看品事, 進詣本寺坼見, 則宗廟薦新五十五箇內, 二箇則全體俱靑, 元不成熟, 十五箇則半體腐傷, 不合薦進, 其餘全熟不致傷者, 只三十七箇, 不滿於曾前薦進之元數, 極爲未安, 而今無退送更封之路, 不得已仍爲薦進, 而其中全不成熟者封進, 事體極爲未安. 當該濟州牧使, 推考警責, 何如? 傳曰, 依啓.

❖ 숙종 34년(1708) 무자년 1월 10일(무오)

□ 제주(濟州)에서 봉진하여 종묘에 천신(薦新)한 당유자가 온전하지 못하므로 제주목사를 추고하여 경책(警責)할 것을 청하는 봉상시의 계

○ 맹만택(孟萬澤)[854]이 봉상시 낭청으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신이 제주에서 봉진(封進)하여 종묘에 11월 초하루에 천신(薦新)할 당유자(唐柚子)를 간품(看品)하는 일로 본시(本寺)에 나아가 열어 보았더니, 종묘에 천신하는 55개 안에 2개는 전체가 모두 파래서 본래가 익지 않았고, 15개는 알맹이가 각각 반 정도가 썩어서 그 나머지 온전히 익고 상하지 않은 것은 다만 37개로, 일찍이 전에 천신에 올렸던 원래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매우 미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물려 보내어 다시 봉진할 길이 없으므로 부득이 그대로 천신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온전히 익지 않은 것을 봉진한 것은 일의 체통이 매우 미안한 것입니다. 해당 제주목사를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맹만택, 천신, 당유자, 제주목사, 추고.

---

854) 맹만택(1660~1710): 본관 신창(新昌). 자 시중(施中). 1698년(숙종 24) 문과 급제. 의금부도사, 사복시주부, 강원도감진어사 역임.

❖ 康熙 四十七年 戊子 一月 二十四日 壬申

○ 江原監司宋廷奎疏曰, 臣適被誤恩, 授之重任, 輒竭悃愊, 以祈鐫免 …… 抑臣又有所惶恐忸怩不自安者, 臣前任濟州時, 以貢馬變通事, 有所論啓矣. 近見濟州牧使李奎成啓本, 則盛陳其不便之狀, 而至擧船人所訴, 謂臣初不問其便否, 而不量船隻之不足, 致有此擧, 有若臣率意妄啓, 而歸之於誣罔之科, 臣雖無狀, 粗知事君之義, 平生自勉, 惟在勿欺二字, 而橫被此名, 私心痛恨, 不容不辨, 惟聖明之垂察焉. 臣嘗見濟州貢馬之自南上來也, 玄黃甚多, 踣斃相續, 及其到京, 半生半死, 只存沒骨, 分養於州縣, 則罪及守宰, 斥賣於市肆, 則匹直數貫, 逐年分費, 歸於等棄, 私竊怪歎, 及至濟州, 求其弊源, 都在於節晩過海, 過海之晩, 專由於陸邑船隻之不以時到, 槪載馬之船, 必得十分快風, 一日過海, 方免病損, 而自四月五月望間, 得風常多, 過此以後, 霖霪海惡, 掛席未易, 陸邑艱募之船, 每失其時, 浦口待風之馬, 閱月留滯, 上船之前, 固已瘦敗, 越海之後, 何得不然, 臣於丙戌年載馬時, 除靈光一隻外, 皆是濟船之受價陸邑者, 故五月初越海, 暑雨前入京, 則馬之肥壯, 斷異於前, 已然之效如此, 故臣於是乎遂爲變通, 仍爲定式, 於都沙工李雲, 面問便否, 不翅再三, 而價米之每馬一石, 實循采願, 初非臆定, 船格之有裕無闕, 昭載官案, 無敢異辭, 及今朝家覆詢之日, 其言如此, 豈此輩已諾後悔, 慮有所弊而然耶? 抑隨時變舌, 務順官旨而然歟, 是未可知也. 奎成, 以收船二十隻內, 以逐朔進上, 不得遷動者十二隻, 餘七隻, 皆體小未完, 男丁鮮少, 許多船格, 勢難責立爲辭, 臣之遞來時, 案付二十二隻, 皆擇完固, 準信格軍, 而私船之無官格者, 又在此外矣. 今未及一年, 而船數遽縮, 格軍散亡, 臣實訝之, 本州, 固有十一朔進上而【二字缺】兼載順付之【一字缺】十三隻之說, 已過其實, 雖排朔整待, 而至於七月以後諸船, 寧〈有〉一併繫置, 不得遷動之理乎? 借令悉如其言, 所餘七隻, 若以大中船抄出, 則常貢之數, 足以容載, 蓋陸邑船, 則雖以每艘, 三十五匹爲限, 而濟州之大者, 則能載七八十匹, 臣所親驗如此, 守臣, 苟能專心奉公, 務濟國事, 則以本州之力, 年例載馬, 自可優爲, 臣未見其不足也. 且濟州船人, 果以載馬爲難堪之弊, 則何以應募陸邑而每年自當乎? 其樂於私雇, 而憚於官差者, 不過利遠邑之格價稍優, 而嫌本州之定式有拘也. 其意果出於此, 則雖量增格價, 變通之策, 恐不可已也. 乞以此章, 下之廟堂, 更商得宜, 處之幸甚, 臣無任云云. 答曰, 省疏具悉. 疏辭, 令廟堂稟處, 卿勿過辭, 速往欽哉.

❖ 숙종 34년(1708) 무자년 1월 24일(임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부임 당시 자신이 변통한 공마(貢馬)의 정식(定式)에 대해 제주목사 이규성(李奎成)이 폐단이 많다고 장계를 올렸으므로 처분할 것을 청하는 송정규(宋廷奎)의 상소**

○ 강원도감사 송정규(宋廷奎)의 상소에, "신은 마침 잘못된 성은을 입어 무거운 직임을 제수하였기에 문득 성심을 다하면서 직임에서 물러나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략〉 신에게는 또한 황공하고 부끄러워서 절로 편안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신이 전에 제주에 부임했을 때 공마(貢馬)를 변통하는 일로 논계(論啓)한 적이 있습니다. 근래 제주목사 이규성(李奎成)의 계본(啓本)을 보니 그 불편한 상황을 자세히 아뢰었는데, 심지어 뱃사람이 호소한 것을 들먹이면서 신이 애당초 그것의 편리와 불편을 묻지 않고 선척의 부족함을 헤아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 마치 신이 경솔한 생각으로 망령되게 아뢴 것과 같다고 하여 무망(誣罔)의 죄과(罪科)로 돌리고 있습니다. 신은 비록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임금을 섬기는 의리를 대강은 알아서 평생 스스로 힘쓰기는 것이 오직 '속이지 말라[勿欺]'는 두 글자에 있는데, 뜻밖에 이러한 죄과의 이름을 받게 되었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분하여 변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명(聖明)께서 살펴주십시오. 신이 일찍이 제주의 공마가 남쪽에서 올라올 때를 보니, 지치고 병든 것이 아주 많아서 자빠져 죽는 것이 서로 이어져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반은 살고 반은 죽어서 단지 볼품없는 것들만 남게 되니, 주현(州縣)에 분양하면 죄가 수령에 미치고 시장에다 마구 헐값으로 팔면 필(匹)은 겨우 몇 관(貫)에 지나기 않기에, 해마다 분담하는 비용을 탐탐치 않게 여기며 버리는 것으로 돌리기에 속으로 괴이하게 여기며 탄식했었습니다. 제주에 부임했을 때 그 폐단의 근원을 찾아보니 모든 것이 시기적으로 바다를 건너는 것을 늦게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이 늦어지는 이유는 전적으로 육지 읍의 배가 때에 맞춰 도착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대개 말을 실은 배는 반드시 충분한 쾌풍(快風)을 얻어야만 하루에 바다를 건너서 병이 들어 손실되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5월 보름 사이에는 바람을 얻는 날이 언제나 많지만 이때를 지난 이후에는 장마로 바다 상태가 나빠져서 돛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지 읍에서 어렵게 모집하는 배는 매번 그 시기를 놓치기에 포구에서 바람을 기다리는 말은 한 달을 머물면서 배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병이 들어버리니, 바다를 건넌 후에는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병술년(1706)에 말을 실을 때에는 영광(靈光)의 한 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제주의 배가 육지 읍

에서 값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5월 초에 바다를 건너서 여름 장맛비가 내리기 전에 서울로 들어가니 말의 몸집과 씩씩함이 단연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나타난 효과가 이와 같았기에 신은 이때에 마침내 변통을 하여 그대로 정식(定式)을 삼고 도사공(都沙工) 이운(李雲)에게 편리한지 불편한지 직접 묻기를 두세 번에 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미(價米)를 말마다 1석(石)으로 정한 것은 실로 채원(采願)을 따라서였지 애당초 억측하여 결정하지 않았으며, 배의 격군(格軍)을 넉넉히 갖추고 결원이 없게 한 것은 소상하게 관안(官案)에 기록되어 있으며 감히 다른 말을 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지금 조정에서 복순(覆詢)하는 날에 이르러서 그 말이 이와 같으니, 어쩌면 이들이 이미 승낙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폐단을 일으키는 것이 있을까 염려해서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 힘써 관지(官旨)를 따라서 그러한 것입니까?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규성은 거둬 모집한 20척의 배 가운데 매달 진상하는 것 때문에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것이 12척이고, 남은 7척은 모두 몸체가 작고 온전하지 못하며, 남정(男丁)은 수가 적어서 허다한 격군을 형편상 책립(責立)하기 어렵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신이 체임되어 올 때 대장(臺帳)에 기록되어 있던 22척은 모두 완고(完固)한 것으로 택한 것이었고 격군은 기준에 비추어 믿을 만 했으며, 사선(私船) 중에 관아에 이르지 않은 것이 또한 이외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1년도 안되어 배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었고 격군은 흩어져 없어졌으니 신은 실로 의아합니다. 본주(本州)는 본디 11삭(朔)의 진상이 있습니다. 【두 글자 빠짐】겸하여 순부(順付)의 【한 글자 빠짐】싣는데, 13척이라는 말은 이미 그 실정을 초과한 것으로, 비록 달[朔]을 배정하여 정대(整待)하더라도 7월 이후에 모든 배들을 어찌 한꺼번에 메어두어서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령 모든 것이 그 말과 같다 하더라도 남은 7척을 만약에 대중선(大中船)으로 뽑아낸다면 상례(常例)로 바치는 공물의 수는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육지 읍의 배들은 비록 매 척에 35필까지이지만 제주의 큰 배는 7,80필을 실을 수 있습니다. 신이 직접 경험했던 바가 이와 같습니다. 수신(守臣)이 만일 능히 전심봉공(專心奉公)하여 나랏일을 돕는 데에 힘쓴다면 본주의 힘으로 연례적으로 말을 실어 운반하는 것을 절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신은 그 부족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제주의 뱃사람들이 말을 실어 운반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운 폐단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육지 읍에서의 모집에 응하여 매년 스스로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들이 사사로운 고용을 즐기고 관에 차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멀리 있는 읍의 격가(格價)가 조금 낮고 본주의 정식에는 구애됨이 있어서 싫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뜻이 과연 여기에서 나왔으니 비록 격가를 헤아려 더해준다 해도 변

통하는 계책은 그칠 수가 없을 듯합니다. 바라건대 이 소장(疏章)을 묘당(廟堂)에 내려서 다시 마땅함을 얻었는지 상량하여 처리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모든 것을 알았다. 상소한 글을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라 할 것이니 경은 지나치게 사양하지 말고 속히 가서 공경히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송정규, 이규성, 공마, 정식, 변통.

❖ 康熙 四十七年 戊子 二月 二十日 丁酉

○ 李基夏所啓, 自前都監馬兵, 分授馬匹, 疲羸之時, 或以濟州入山馬, 取來分給矣. 上年亦爲取來, 而上來時適値潦雨, 多致病斃, 分授者亦多兒駒, 所見甚不實矣. 以兒馬養作戰馬爲難, 故國家以分養馬, 分給各軍門, 而此亦馴養後, 方可爲戰馬, 況直以生馬分授者乎? 曾有數三百匹上來之時, 而上年則只百匹矣. 臣待罪濟州時見之, 馬匹有至老, 而不出來者. 今年則限三百匹, 擇其體大可合戰馬者, 趁潦前取來, 使各邑分養, 待秋分給本局軍兵, 似爲得當. 且不宜使好馬, 空老於島中, 故敢達. 上曰, 馬匹之空老島中, 誠爲無益, 依所達爲之, 可也.【出擧條】

❖ 숙종 34년(1708) 무자년 2월 20일(정유)

□ 인견에 이기하(李基夏) 등이 입시하여 제주마(濟州馬) 300필을 장마 전에 취하여 와서 각 읍에 분양하였다가 훈련도감의 마병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대해 논의함

○ 이기하(李基夏)가 아뢰기를, "예전부터 훈련도감의 마병에게 나눠주는 말이 파리하고 잔약할 때에는 제주의 산마(山馬)를 가져와서 나눠주었습니다. 지난해 또한 취하여 올라올 때 마침 장맛비를 만나서 많은 수가 병에 걸려 죽었고, 나누어 준 것에는 또한 어린 망아지가 많아서 보는 것들이 심히 알차지 못했습니다. 어린 말을 전마(戰馬)로 길러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나라에서는 분양한 말을 가지고 각 군문(軍門)에 나눠주는데, 이 또한 잘 길들인 후에야 전마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곧바로 생마(生馬)로 나눠주는 것입니까? 일찍이 3백 필이 올라온 때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단지 1백 필이었습니다. 신이 제주에 부임하였을 때 보니, 말 중에 늙을 때까지 육지로 나오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은 3백 필에 한하여 몸집이 크고 전마에 합당한 것을 골라서 장마 전까지 취하여 와서 각 읍에 분양하게 하였다가 가을을 기다려 본국(本局)의 군병에게 나눠주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한 좋은 말을 섬 안에서 헛되이 늙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말을 헛되이 섬 안에서 늙게 하는 것은 실로 무익하다. 아뢴 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에 나옴】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기하, 산둔마, 훈련도감, 마병.

❖ 康熙 四十七年 戊子 二月 二十六日 癸卯

○ 又啓曰, 濟州牧使封進, 今二月令宗廟·永昭殿·敬寧殿薦新靑橘, 明日薦進事, 旣已入啓矣. 奉常寺提調有故, 臣泰東, 謹詣本寺看品, 則宗廟薦新靑橘一百九十八箇內, 一百七箇完全, 其餘九十一箇腐傷, 永昭殿·敬寧殿所封進各十八箇竝完, 通計全完之數一百四十三箇矣. 在前如此之時, 雖未滿常數, 亦有推移封進之例, 三殿各室, 皆以十一箇薦進之意, 敢啓. 傳曰, 知道.【禮曹謄錄】

❖ 숙종 34년(1708) 무자년 2월 26일(계묘)

□ 종묘 등에 천신(薦新)하는 청귤의 수효가 부족하지만 추이(推移)하여 봉진하고, 삼전의 각실에 모두 11개를 천진(薦進)하겠다는 예조의 계

○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封進)한 2월령 종묘·영소전·경녕전에 천신(薦新)하는 청귤을 내일 천진(薦進)하는 일을 이미 입계(入啓)하였습니다. 봉상시 제조가 사정이 있어서 신 태동(泰東)이 삼가 본시(本寺)에 나아가 간품(看品)하니 종묘에 천신하는 청귤 198개 가운데 107개는 온전하였지만 그 나머지 91개는 썩어 상하였고, 영소전과 경년전에 봉진하는 각각 18개는 모두 온전하였습니다. 통계하면 온전한 수는 143개였습니다. 전에 이러한 때에는 비록 정하여진 수량을 채우지 못했어도 또한 추이(推移)하여 봉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삼전(三殿)[855]의 각실(各室)에는 모두 11개를 천진하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청귤, 천신, 삼전.

855) 삼전(三殿): 왕대비전(王大妃殿), 대전(大殿), 중궁전(中宮殿)을 아울러 이름.

❖ 康熙 四十七年 戊子 三月 三日 庚戌

○ 濟州牧使書目, 去六月爲始, 紅疫熾發, 死亡者居多, 極爲悶慮事.

❖ 숙종 34년(1708) 무자년 3월 3일(경술)

□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

○ 제주목사의 서목(書目)은, '지난 6월을 시작으로 홍역이 크게 발생해서 사망한 자가 아주 많아 심히 답답하고 염려가 되는 일'이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서목, 홍역, 사망자.

❖ 康熙 四十七年 戊子 三月 二十二日 己巳

○ 禮曹判書李寅燁請對入侍所啓, 此則黃海監司李彦經狀啓也. …… 又啓曰, 此乃濟州牧使李奎成狀啓也. 前牧使宋廷奎, 以本州船隻, 載運歲貢馬事, 馳啓蒙允, 而今牧使李奎成, 因船人李雲等呈狀, 枚擧其難便之端啓聞, 而又因廷奎陳疏, 已以本州船載運之意, 覆啓分付矣. 其啓下關未及入去, 而節序漸晩, 故有此馳啓. 今不必更爲覆啓, 以依前分付擧行之意, 回移何如? 上曰, 依爲之.【備局謄錄】…….

❖ 숙종 34년(1708) 무자년 3월 22일(기사)

□ 이인엽(李寅燁) 등이 입시하여 세공마를 제주(濟州)의 배로 실어 운반하는 문제에 대해 송정규((宋廷奎)의 상소에 계하(啓下)한 대로 거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예조판서 이인엽(李寅燁)이 청대(請對) 입시(入侍)하여 아뢰기를, “이것은 황해감사 이언경의 장계입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이것은 곧 제주목사 이규성(李奎成)의 장계입니다. 전 목사 송정규(宋廷奎)가 본주(本州)의 배로 세공마(歲貢馬)를 실어 운반하는 일을 치계(馳啓)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지금 목사 이규성이 선인(船人) 이운(李雲) 등이 올린 소장(訴狀)에 따라 그것이 편리하지 않은 단서를 일일이 들어서 계문(啓聞)하였고, 또 정규의 상소에 따라서 이미 본주의 배를 가지고 실어 나르는 뜻을 복계(覆啓)[856]하여 분부하였습니다. 그 계하(啓下)된 관문(關文)이 미처 들어가지 않았고 절서(節序)가 점점 늦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치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시 복계할 필요가 없으니 전에 분부했던 대로 거행하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857] 【비국등록에 의함】〈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규성, 송정규, 세공마, 이운.

856) 복계(覆啓): 임금에게 복명(復命)하여 아룀.
857) 《비변사등록》 1708년(숙종 34) 3월 27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七年 戊子 閏 三月 十一日 戊子

○ 禮曹啓曰, …… 丁亥年濟州試才, 文科入格高萬瞻, 未及上來, 許赴後式年事, 入啓蒙允. …… 竝一體許赴於今戊子式年文科殿試, 何如? 傳曰, 允.【禮曹謄錄】

❖ 숙종 34년(1708) 무자년 윤 3월 11일(무자)

□ 고만첨 등을 금년 식년 문과전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해주기를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략〉 정해년(1707) 제주시재에서 문과에 입격(入格)한 고만첨(高萬瞻)이 미처 올라오지 않아서 뒤에 오는 식년에 응시하는 일로 입계(入啓)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중략〉 아울러 모두를 금번 무자년 식년 문과전시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시재, 고만첨, 식년, 문과전시.

❖ 康熙 四十七年 戊子 五月 十二日 丁亥

○ 泰采曰, 今式年武科出身, 所當依例赴防, 而以西北凶荒, 自上年·上上年, 連歲除防納米矣. 今年西北年事, 失稔尤甚, 必有主客俱困之弊, 依近例除防納米, 似涉便好. 其中壯元一人·禁軍九人, 依例除防, 平安道五人, 咸鏡道一人, 江華·濟州各二人, 亦依前例赴防於本道及本府·本島, 不入於納米中矣. …… 上曰, 出身後赴防, 意有所在, 不可每每除防, 而所達如此, 依爲之.【出擧條】

❖ 숙종 34년(1708) 무자년 5월 12일(정해)

□ 조태채(趙泰采)가 입시하여 식년무과 출신의 부방(赴防)과 납미(納米)의 변통에 대해 논의함.

○ 조태채(趙泰采)가 아뢰기를, "이번 식년무과(式年武科) 출신(出身)은 마땅히 전례대로 부방(赴防)[858]해야 할 것이지만, 서북 지역의 흉황(凶荒)으로 작년과 재작년부터 연이어 부방을 면제하여 쌀을 바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서북 지역의 농사가 흉년이 더욱 심하니, 반드시 주객이 모두 곤란해지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사례에 따라서 부방을 면제하여 쌀을 바치게 하는 것이 편하고 좋을 듯합니다. 그 가운데 장원 1인, 금군 9인은 사례대로 부방을 면제하고, 평안도 5인, 함경도 1인, 강화·제주 각 2인을 또한 전례대로 본도(本道) 및 본부(本府)·본도(本島)에 부방하게 하여 쌀을 바치는 데에 들지 않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출신한 후에 부방하는 것은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매번 부방을 면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뢴 바가 이와 같으니,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내었음】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조태채, 식년무과, 출신, 부방.

858) 부방(赴防): 무과에 급제한 자가 변방의 고을에 가서 방어 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하는 것을 말함.

❖ 康熙 四十七年 戊子 八月 五日 戊申

○ 又啓曰, 葛頭山設鎭儲穀者, 蓋爲濟州, 有連年移轉之故也. 此島, 當初則多有松木, 故爲煮鹽之利, 民多聚居, 今則松木旣盡, 鹽利亦絶矣. 若干居民, 無以資生, 已多離散, 誠爲可悶, 露兒島, 頃有特罷之命, 聞此島, 乃宮家所買云, 今宜給價冒取, 移鎭設會[859], 且會此島, 爲各路要衝, 合置水軍僉使, 造給戰船, 使之防守, 而趁今秋移設, 似宜, 故敢達. 上曰, 依爲之.

❖ 숙종 34년(1708) 무자년 8월 5일(무신)

□ 이인엽(李寅燁)이 입시하여 갈두산의 진(鎭)을 노아도로 옮기고 전선을 만들어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이인엽이) 또 아뢰기를, "갈두산(葛頭山)에 진(鎭)을 설치하고 곡식을 쌓아두는 것은 대개 제주(濟州)를 위하여 해마다 이전(移轉)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섬에는 당초 소나무가 많아서 자염(煮鹽)을 만들기에 이롭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모여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나무가 이미 다하여 소금을 만드는 이로움도 또한 끊겼습니다. 거주하던 약간의 백성들은 살아갈 길이 없자 이미 많이 떠나서 흩어졌으니 실로 민망합니다. 노아도(露兒島)는 지난번에 특별히 혁파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들으니, 이 섬은 곧 궁가(宮家)에서 산 것이고 합니다. 지금 의당 값을 주고 취하여 진을 옮겨 창고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보면 이 섬은 각로(各路)의 요충이 되어 수군첨사를 두기에 적합합니다. 전선(戰船)을 만들어 지급하여 방수(防守)하게 하고, 금번 가을까지 이설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860]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이인엽, 갈두산, 노아도, 이설, 수군첨사.

---

859) 會: 倉의 오기(誤記)로 보임.
860) 《비변사등록》 1708년(숙종 34) 8월 8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康熙 四十七年 戊子 十一月 十日 壬午

○ 掌令梁聖揆啓曰, 耽羅歲貢良馬數百, 以備國家之使用, 其事體之不輕而重也, 較然矣. 第於渡海之後, 次次傳送之際, 所經各邑, 不謹護送, 多有病傷之弊, 已極可駭, 而間或有奸僞冒濫之習, 有識之竊歎, 蓋亦久矣. 臣頃忝太僕, 考閱馬籍, 則乙酉以後四年之間, 進上濟馬之病留各邑, 尙今未納者, 至於二十六匹之多. 自本寺累度發關催捉, 則各邑互相推諉, 慢不擧行, 事之寒心, 莫此爲甚. 請令各道監司, 另加申飭, 斯速起送, 而其中官吏, 或有冒占駿駒, 而替納他馬者, 或有假稱故失, 而換送皮張者. 如此之類, 明査摘發, 隨現啓聞, 繩以重律, 以爲懲一勵百之地. 答曰, 依啓.

❖ 숙종 34년(1708) 무자년 11월 10일(임오)

□ 준마를 차지하고 다른 말로 바꾸어 바치는 관리 등을 적발하여 중률로 다스릴 것을 청하는 양성규(梁聖揆) 계

○ 장령 양성규(梁聖揆)가 아뢰기를, "탐라(耽羅)에서 양마 수백 필을 세공(歲貢)하는 것은 나라에서 사용할 것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의 체통이 가볍지 않고 중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바다를 건넌 후 차례대로 전송(傳送)할 때에 거치는 각 읍이 호송하는 것을 삼가지 않아서 병이 들어 상하는 폐단이 많이 있어 심히 놀랄 만하고, 간혹 간사하게 속이면서 함부로 하는 습관이 있어서 식견 있는 자들의 탄식한 지가 대개 또한 오래 되었습니다. 신이 지난번 태복시(太僕寺)에 근무할 때 마적(馬籍)을 자세히 살펴보니, 을유년(1705) 이후 4년간에 걸쳐 진상하는 제주마가 병이 들어 각 읍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도 바치지 않은 것이 26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본시(本寺)에서 여러 차례 관문(關文)을 띄워서 재촉을 하였는데, 각 읍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태만하게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일의 한심함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각 도의 감사로 하여금 별도로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속히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관리가 혹은 준마를 차지하고는 다른 말로 바꾸어 바치는 자가 있거나, 혹은 고실(故失)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죽으로 바꾸어 보내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류들을 명확히 조사하고 적발하여, 드러나는 대로 계문(啓聞)하고 중률(重律)로 다스려서 하나를 징벌하여 백을 권면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양성규, 탐라, 세공, 제주마, 호송.

❖ 康熙 四十七年 戊子 十二月 十四日 丙辰

○ 獻納李允文啓曰, 臣以減死罪人鄭八翼還囚事, 及江原監司宋廷奎罷職不敍事, 有所論啓, 不惟不賜允兪, 及下嚴旨, 斥之以未安, 疑之以擊去, 臣不勝駭惑焉. …… 廷奎, 少時窮約, 家有病母, 生養死葬, 專靠其妻, 及其宦成卜妾, 與妻爲仇, 迫逐操切, 靡有紀極 …… 其在濟州, 則土產珍奇, 竝行搜括, 剝割肥己, 姑舍勿論, 諂事要津, 甚於武夫, 駿帽駿笠, 貝器貝纓, 逐月贈遺. 臣所謂巧行包饋者, 此也. …….

❖ 숙종 34년(1708) 무자년 12월 14일(병진)

□ 전 제주목사인 강원감사 송정규(宋廷奎)를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 것 등을 논계(論啓)했다가 엄지(嚴旨)로 배척되었다며 체직(遞職)을 청하는 이윤문(李允文)의 계

○ 헌납 이윤문[900]이 아뢰기를, "신은 사형을 면하여 준 죄인 정팔익을 도로 가두는 일과 강원감사 송정규를 파직하여 서용(敍用)하지 말 것을 논계한 바가 있습니다. 윤유(允兪)를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엄지(嚴旨)를 내렸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물리쳤겠지만 내쫓는 것으로 의심이 되니 신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중략〉 정규는 젊은 시절 궁양(窮約)하였고, 집에 병든 어머니가 있었기에 낳아서 기르고 죽어서 장사지내는 것을 전적으로 그의 처에게 의지했었습니다. 그가 벼슬하여 출세하게 되자 첩을 얻었는데, 처와는 원수가 되어 핍박하여 내쫓고 단단히 잡아서 단속한 것이 끝이 없었습니다. 〈중략〉 그가 제주에 있을 때 그 지방에서 나는 진기한 것들을 모두 찾아 모으면서 백성들을 착취하여 자기를 살찌운 것은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요직(要職)을 아첨하며 일삼는 것이 무부(武夫)보다 심하였으니, 종모(駿帽)와 종립(駿笠), 패기(貝器)와 패영(貝纓)을 달마다 선물로 보냈습니다. 신이 '교묘하게 뇌물을 쓴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략〉"라고 하였다.[901]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송정규, 이윤문.

---

900) 이윤문(1646~?): 본관 광주(廣州). 자 사옹(士雍). 1692년(숙종 18) 문과 급제. 사간원 헌납, 임실현감, 부평부사 역임.

901) 《숙종실록》 숙종 34년 12월 14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康熙 四十七年 戊子 十二月 十四日 丙辰

○ 以全羅監司濟州居寺奴金訥叱延等十四名溘死事狀啓, 傳于李墹曰, 事極驚慘. 令本道各別恤典擧行.

❖ 숙종 34년(1708) 무자년 12월 14일(병진)

□ 김눌질연(金訥叱延) 등 14명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전라감사의 장계에 대한 전교

○ 전라감사가 제주(濟州)에 거주하는 시노(寺奴) 김눌질연(金訥叱延) 등 14명이 바다에 빠져 죽은 일로 올린 장계에 대해 이야(李墹)[861]에게 전교하기를, "일이 매우 놀랍고 참담하다. 본도(本道)로 하여금 각별히 휼전(恤典)을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전라감사, 장계, 김눌질연, 이야, 휼전.

861) 이야(李墹; 1648~1719): 본관 완산(完山). 자 중선(仲先). 1691년(숙종 17) 문과 급제. 강원도관찰사, 형조참판, 동래부사 역임.

❖ 康熙 四十七年 戊子 十二月 二十七日 己巳

○ 正言具萬理 …… 又啓曰, 日昨前獻納李允文之論劾江原監司宋廷奎也, 啓避中臚列罪狀, 罔有紀極, 而以其所論貪汚不法事言之, …… 一則曰, 其在濟州時, 土產珍奇, 竝行搜括, 諂事要津, 以騣帽笠·貝器·貝纓, 逐月贈遺 …… 請江原監司宋廷奎拿問覈處. 上曰, 依啓.【以上朝報】

❖ 숙종 34년(1708) 무자년 12월 27일(기사)

□ 구만리(具萬理)가 입시하여 전 제주목사인 강원감사 송정규(宋廷奎)의 탐오함에 대해 논핵하면서 나문하여 조사하여 처리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정언 구만리[903]가 〈중략〉 또 아뢰기를, "일전에 전 헌납 이윤문(李允文)이 강원감사 송정규를 논핵(論劾)할 때 피혐(避嫌)을 아뢰는 가운데 열거한 죄상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가 논한 바 탐오(貪汚)하여 불법을 저지른 일을 말한다면, 〈중략〉 하나는 그가 제주에 있을 때, 그 지방에서 나는 진기한 것을 찾아내어 모으고, 요직(要職)을 아첨하며 일삼았으니, 종모(騣帽)와 종립(騣笠), 패기(貝器)와 패영(貝纓)을 달마다 선물로 보내었습니다. 〈중략〉 청컨대, 강원감사 송정규를 나문(拿問)하고 조사하여 처리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송정규, 나문, 구만리, 이윤문.

---

903) 구만리(1656~1721): 본관 능성(綾城). 자 일원(一元). 1699년(숙종 25) 문과 급제. 사헌부장령, 세자시강원설서 역임.

1709年

❖ 康熙 四十八年 己丑 一月 六日 戊寅

○ 又啓曰, 濟州牧使, 今當以文官差出, 海外重地, 不可不擇送, 而堂上中擬望之人乏少, 堂下侍從中可合人, 竝擬, 何如? 傳曰, 允.

❖ 숙종 35년(1709) 기축년 1월 6일(무인)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의망(擬望)에 당하관(堂下官) 중 적합한 자도 포함시키기를 청하는 이비(吏批)의 계

○ (이비가)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를 지금 마땅히 문관으로 차출하는 것은 해외가 중요한 곳이어서 가려 보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당상관 중 의망할 사람이 아주 적어서 당하관 시종 중에 적합한 자도 아울러 의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의망, 당상관.

❖ 康熙 四十八年 己丑 一月 六日 戊寅

○ 吏批, 以下缺二行餘 以朴泰徵爲雲山郡守, …… 崔啓翁爲濟州牧使, 金萬胄爲順天府使, 鄭東里爲旌義縣監, …… 濟州牧使崔啓翁通訓, 今加通政加資事傳敎. …….

❖ 숙종 35년(1709) 기축년 1월 6일(무인)

□ 최계옹(崔啓翁)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정동리(鄭東里)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이비(吏批)가 이하【2행 빠짐】남고, 박태징(朴泰徵)을 운산군수(雲山郡守)에, 〈중략〉 최계옹(崔啓翁)[862]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김만주(金萬胄)를 순천부사(順天府使)에, 정동리(鄭東里)[863]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하였고, 〈중략〉 제주목사 최계옹의 통훈대부 품계를 바로 통정대부로 올려 가자(加資)하는 일을 전교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최계옹, 정동리, 제주목사, 정의현감.

---

862) 최계옹(1654~?): 본관은 삭녕(朔寧). 자는 내심(乃心). 호는 동량(幢梁),우와(迂窩). 남원 출신. 부친은 최휘지(崔徽之), 모친은 양준우(梁俊遇)의 딸. 1681년(숙종 7)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정언, 장령, 승지를 거쳐, 제주목사 역임. 제주목사 재임기간은 1709년(숙종 35) 5월~1710년(숙종 36) 12월.

863) 정동리(1663~?):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자윤(子潤). 부친은 정세빈(鄭世彬). 1696년(숙종 22) 식년문과 병과 급제. 정의현감 재임기간은 1709년(숙종 35) 4월~1711년(숙종 37) 9월. 제주판관 재임기간은 1726년(영조 2) 9월~1728년(영조 4) 6월.

❖ 康熙 四十八年 己丑 一月 十日 壬午

○ 吏批, 以金泳爲宗廟奉事, …… 康友諒爲濟州敎授.

❖ 숙종 35년(1709) 기축년 1월 10일(임오)

□ 강우량(康友諒)을 제주교수(濟州敎授)에 제수함

○ 이비(吏批)가 김영(金泳)을 종묘봉사(宗廟奉事)[864]에, 〈중략〉 강우량(康友諒)[865]을 제주교수(濟州敎授)에 제수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강우량, 제주교수.

---

864) 종묘봉사(宗廟奉事): 종묘서(宗廟署)의 종8품 벼슬. 봉사(奉事)는 조선시대 돈녕부(敦寧府)와 각 시(寺)·사(司)·서(署)·원(院)·감(監)·창(倉)·고(庫)·궁(宮)에 설치된 종8품의 관직임.

865) 강우량(1656~?): 본관은 신천(信川). 자는 신보(信甫). 부친은 강익청(康益淸). 1696년(숙종 22) 식년문과 병과에 급제. 부사과, 봉상시첨정, 승문원 판교 등을 역임.

❖ 康熙 四十八年 己丑 一月 十五日 丁亥

○ 崔錫鼎又啓曰, 今此江邊七邑, 遣御史試才事, 禮曹, 依遣重臣例, 旣已磨鍊節目, 行會云. 在前, 西北道遣重臣設科時, 仍爲唱榜賜花, 遣御史時則不然. 濟州·南漢等處取才時, 皆許直赴, 而無唱榜之規矣. 今因權愔狀啓, 只於七邑設行, 則與前日遣重臣有異, 而事體差輕, 依前遣御史例, 武才則兵判, 旣已稟定, 儒生則抄出若干人, 或直赴, 或給分似好. 入侍諸臣處, 下詢而處之, 何如? 上曰, 遣重臣時, 則令宣傳官, 齎紅牌賜花下去, 仍爲唱榜, 遣御史時不然. 江都·南漢·水原設科時, 皆取才上來, 今亦依此例爲之, 可也. 泰采曰, 北路, 卽興王之地, 而爲豐沛之鄕也. 朝家待之, 異於他道, 故設科取文武者屢矣, 而西路, 則有一番遣重臣試取之事矣. 今此江邊七邑, 本是弓馬之鄕, 其在慰悅勸勵之道, 試取武藝則可也, 而此與通一道遣重臣設科時有異, 文武俱設, 旣無前例, 且關後弊, 臣意則只取武才, 爲宜矣. 錫鼎曰, 趙泰采所達似是. 而權愔狀啓, 旣以設科爲請, 該曹關文, 亦依此行會, 今不可猝改前令, 雖歸重於武才, 而文亦取其一二人, 似無妨矣. 上曰, 諸臣之意, 何如? …… 得一拜曰, 聖敎至此, 敢不仰對? 北路則固有遣重臣試取文武之規, 濟州設科時, 亦以絶島, 竝取文武, 而今此關西試才, 視彼有異, 遣御史, 只令試才於江邊七邑, 則與遣重臣通行一道者, 事體不同. 雖以慰悅之意言之, 道內多士, 亦必有向隅缺望之嘆, 且無前例, 則有關後弊. 趙泰采所達誠然矣, 而臣意, 亦以爲只取武才可也. …… 上曰, 只取武才事, 定奪可也.

❖ 숙종 35년(1709) 기축년 1월 15일(정해)

□ 강변칠읍(江邊七邑)에 시재어사(試才御使)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866]

○ 최석정(崔錫鼎)이 또 아뢰기를, "지금 이 강변칠읍(江邊七邑)[867]에 어사를 파견하여 시재(試才)하는 일에 대해 예조는 중신(重臣)을 파견하는 예에 의거 이미 절목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서북도(西北道)에 중신을 파견하여 과거를 시행할 때는 곧 급제자를 발표하고 어사화를 내렸는데, 어사를 파견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주(濟州)와 남한(南漢)[868] 등에서 취재(取才)할 때 모두

866) 《숙종실록》 권47, 1709년(숙종 35) 1월 15일에도 동일 내용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음.

867) 강변칠읍(江邊七邑): 압록강 연변에 위치한 의주(義州)·강계(江界)·초산(楚山)·창성(昌城)·삭주(朔州)·위원(渭原)·벽동(碧潼)의 일곱 개 고을.

868) 남한(南漢): 경기도 광주부(廣州府)의 옛 이름인데,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신했던 남한산성을 일컫기도 함.

직부(直赴)[869]는 허용하였으나 급제자를 발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평안도관찰사)[870] 권성(權惺)의 장계로 인해 다만 칠읍에서 과거를 시행하려는 것은 전일에 중신을 파견한 것과 더불어 차이가 있어 일의 본체가 조금 가벼우니, 전에 어사를 파견한 예에 의거 무재(武才)는 병조판서가 이미 의논하여 결정하였고 유생(儒生)은 약간 명을 뽑아 혹은 직부하고 혹은 급분(給分)[871]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입시한 여러 신하에게 물어 보아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신을 파견할 때는 선전관에게 명하여 홍패와 어사화를 가지고 내려가고 이어서 급제자를 발표하라고 하는데, 어사를 파견할 때는 그렇지 않다. 강도(江都), 남한(南漢), 수원(水原)에 과거를 시행할 때는 모두 취재하여 올라오도록 지금 또한 이 예에 의거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조태채(趙泰采)가 말하기를, "북로(北路)[872]는 왕업을 일으킨 땅으로 풍패지향(豐沛之鄕)[873]입니다. 조정에서 대우하는 것이 다른 도와 달라서 과거를 시행하여 문무관을 뽑은 것이 여러 번입니다. 서로(西路)[874]는 중신을 파견하여 과거를 시행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강변칠읍은 본시 궁마지향(弓馬之鄕)[875]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무예를 시험하여 인재를 뽑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온 도를 통틀어 중신을 파견하여 과거를 시행하는 것과는 다름이 있어 문무를 모두 시행하는 것은 일찍이 전례가 없고 또 훗날의 폐단에 관계되니 신의 뜻은 단지 무예만 시행하여 인재를 뽑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최석정이 말하기를, "조태채가 아뢴 바가 옳은 듯합니다만 권성의 장계에 이미 과거를 시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해당 관아의 공문 역시 이에 의거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전의 명령을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비록 무예만 시험하는 것이 중요하나 문 또한 한 두 사람을 뽑아도 무방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

869) 직부(直赴): 과거에 초시(初試)를 면제받고, 직접 복시(覆試)나 전시(殿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함. 이를 직부회시(直赴會試) 또는 직부전시(直赴殿試)라고 하였음.

870) 《숙종실록》 권47, 1709년(숙종 35) 1월 15일에 의하면 권성(權惺)은 당시 평안도관찰사로 장계를 올린 사실이 확인되어 역주자가 보충함.

871) 급분(給分): 과거에 응시할 때 합격 점수에는 미달되었으나, 성적이 다소 좋아 차기 시험에 가산점수를 주는 것을 말함.

872) 북로(北路): 함경도를 일컬음.

873) 풍패지향(豐沛之鄕): 패현(沛縣)의 풍읍(豐邑)을 말함. 한(漢)나라를 개국한 유방(劉邦)은 원래 패현 풍읍의 양리(陽里) 사람이었으므로, 이후로 풍패는 제왕의 고향을 이르는 말로 쓰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선조가 함경도 함흥 등지에 살았기 때문에 함흥과 그 일대 지방을 풍패지향이라 일컬음.

874) 서로(西路): 평안도를 일컬음.

875) 궁마지향(弓馬之鄕): 무(武)의 정체성이 강해서 예로부터 평안도 지역을 일컫는 말임.

〈중략〉 유득일(俞得一)이 배례하며 말하기를, “임금의 말씀이 이에 이르니 감히 우러러 말씀 올리지 않겠습니까? 북로는 진실로 중신을 파견하여 과거를 시행하여 문무(文武)를 뽑는 규정이 있으며, 제주에서 과거를 시행할 때 역시 절도(絶島)이기 때문에 아울러 문무를 뽑았습니다만 지금 이 관서(關西)에서 시험하여 인재를 뽑는 것은 저들과 차이가 있으니 어사를 파견하여 단지 강변칠읍에서 시행하라 하였은즉 중신을 파견하여 온 도를 통틀어 시행하는 것과는 일의 본체가 같지 않습니다. 비록 위로하는 뜻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도내에 많은 선비 또한 반드시 원망하며 한탄하겠지만, 또한 전례가 없고 훗날의 폐단과 관련이 있으니 조태채가 아뢴 바가 참으로 그럴듯하여 신의 뜻 또한 그리하여 단지 무예만 시행하여 뽑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무예만 시험하여 인재를 뽑는 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최석정, 권성, 조태채, 유득일, 강변칠읍, 시재, 서북도, 제주, 남한, 직부, 급분.

❖ 康熙 四十八年 己丑 二月 十五日 丙辰

○ 下直, 旌義縣監鄭東里.

❖ 숙종 35년(1709) 기축년 2월 15일(병진)

□ 정의현감(旌義縣監) 정동리(鄭東里)가 하직함

○ 정의현감(旌義縣監) 정동리(鄭東里)가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정동리, 하직.

❖ 康熙 四十八年 己丑 二月 二十一日 壬戌

○ 晝講時, 侍讀官李世最所啓, 近來國綱解弛, 在外除拜者, 或四五朔, 或數三朔, 稽謝恩命, 雖未知疾病事故之如何, 而揆諸分義事體, 殊甚未安. 此後則各別申飭, 何如? 上曰, 稽謝之弊, 果如儒臣所達, 此後則令政院各別申飭. 知事趙相愚所啓, 前冬大臣入侍時, 因慶源府使有窠, 以文臣擇差事稟定矣. 近來文臣堂上, 不爲不多, 而六曹參議·判決事·承旨塡差之外, 可合此任者絶少, 以李衡祥, 未擬而受點矣. 上曰, 衡祥治績素著, 故未擬下點矣. 相愚曰, 衡祥曾除東萊·濟州, 而猶不辭免矣. 頃年嶺邑遞歸之時, 仍留永川, 卽今受任塞外, 在渠分義, 固當承命, 而聞水土所傷, 重患風痺, 實無上來輦下之勢云, 而此時邊上之任, 不可泛然啓罷, 故敢達矣. 上曰, 實病如此, 罷黜, 可也.

❖ 숙종 35년(1709) 기축년 2월 21일(임술)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형상(李衡祥)을 다시 변방의 관리에 임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건의함

○ 주강(晝講)[876] 때 시독관(侍讀官) 이세최(李世最)가 아뢴 바, "근래에 국가의 기강이 해이하여 지방관에 제수된 자가 혹은 4~5개월, 혹은 2~3개월 사은의 명을 계사(稽謝)[877]하니 비록 질병 때문에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여러 분수에 합당한 도리를 다하는 일의 본체를 가늠하건대 매우 편치 않습니다. 이후로는 각별히 신칙(申飭)[878]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계사의 폐단은 과연 유신(儒臣)[879]이 아뢴 바와 같으니 이후로는 승정원에서 각별히 신칙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지경연사[知事] 조상우(趙相愚)가 아뢴 바, "지난 겨울 대신(大臣)이 입시할 때 경원부사(慶源府使)의 자리 때문에 문신으로써 뽑아 보내는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근래 문신 당상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나 육조참의, 판결사, 승지를 임명하는 외에는 이런 임명에 합당한 자가 절대적으로 부족

876) 주강(晝講): 낮에 경연(經筵)을 열어 임금이 관료들과 함께 경사(經史)의 내용이나 정치의 득실에 관해 토론함.
877) 계사(稽謝): 은혜를 베푼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더딤.
878) 신칙(申飭):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
879) 유신(儒臣): 통상 유학에 조예가 깊은 신하를 일컬으나, 홍문관 관원을 지칭하는 뜻도 있음. 여기서는 홍문관 관원인 이세최를 가리킴.

하여 이형상(李衡祥)[880]이 삼망(三望)의 끝자리로 추천되었으나 낙점 받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형상의 치적이 본래 뛰어났기 때문에 삼망의 끝자리이지만 낙점하였다."라고 하였다. 조상우가 말하기를, "이형상은 일찍이 동래부사(東萊府使),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되었으나 오히려 그만두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영남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어서 영천(永川)에 머물고 있는데 곧 지금 변방의 관직을 맡기면 그의 도리는 진실로 마땅히 명을 받들어야 하나, 들으니 풍토병의 손상을 입어 풍비(風痺)의 중한 병으로 실로 임금께 올라올 형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변방 임무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듯 파면을 아뢸 수는 없으니 그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실로 병이 이와 같다면 파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이형상, 제주목사, 동래부사, 영천.

880) 이형상(1653~1733):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옥(仲玉), 호는 병와(甁窩)·순옹(順翁). 효령대군의 10대손, 부친은 이주하(李柱厦). 1680년(숙종 6)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경주부윤, 제주목사, 영광군수 등을 역임한 청백리. 제주목사 재임기간은 1702년(숙종 28) 3월~1703년(숙종 29) 6월. 제주목사 재임시 광양당(廣壤堂) 등 신당 129개를 모두 불태워 음사(淫祠)를 철저히 단속함. 또한《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및《남환박물(南宦博物)》을 저술하여 제주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음. 저서《병와집》.

❖ 康熙 四十八年 己丑 三月 十一日 壬午

○ 下直, 濟州牧使崔啓翁, 濬源殿參奉韓杓.

❖ 숙종 35년(1709) 기축년 3월 11일(임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계옹(崔啓翁)이 하직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계옹(崔啓翁), 선원전(璿源殿) 참봉 한표(韓杓)가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최계옹, 하직.

❖ 康熙 四十八年 己丑 四月 二日 癸卯

○ 今日全羅監司李震壽留待引見入侍時, 全羅監司所啓, 臣待罪喉司時, 得見使臣別單書啓, 海賊剽掠, 誠甚可慮. 陰雨之備, 不可不念, 各營軍務, 中軍主之, 而本營前中軍申命式, 旣已遞歸云, 其代所當另擇. 前濟州牧使李奎成, 素稱廉謹, 且有治績, 臣於到營後, 欲爲啓下, 而此等武弁, 京軍門, 輒以千摠·別將等任差下, 外方營門, 不能挽置, 見差不久, 旋卽遞還, 軍務疎虞, 職由於是. 今此奎成, 則臣營啓下之後, 姑勿差塡於千摠·別將等之意, 分付諸軍門, 何如? 上曰, 依所達爲之.【以上禁營謄錄】

❖ 숙종 35년(1709) 기축년 4월 2일(계묘)

□ 전라감사 이진수(李震壽)가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규성(李奎成)을 전라감영에 임명할 뜻에 대해 논의함

○ 금일 전라감사 이진수(李震壽)가 머물러 기다리다 인견하러 입시할 때 전라감사가 아뢰기를, "신이 승정원에 대죄할 때 사신의 별단 서계를 얻어 보았는데 해적의 약탈이 참으로 매우 염려할 만합니다. 미리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각 군영의 군사에 관한 일은 중군(中軍)이 맡는데, 본영의 전 중군 신명식(申命式)이 이미 관직을 내놓고 고향에 돌아갔다고 하니 그 후임을 마땅히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규성(李奎成)[881]이 본래 청렴하며 신중하고 또 치적이 있어서 신이 감영에 이른 후에 임금의 재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이들 무인을 서울의 군영에서 문득 천총(千摠), 별장(別將) 등의 직임을 맡기니 지방의 군영에서는 끌어 둘 수 없고 임명이 되어도 오래지 않아 돌려 교체하여 귀환하니 군무가 소홀하여 잘못되는 것이 오로지 여기에 연유합니다. 지금 이 이규성을 곧 신의 감영에서 임금의 재가를 받은 후에는 우선 천총, 별장에 임명하지 않을 뜻을 여러 군문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이상은 금영(禁營)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전라감사, 이진수, 신명식, 제주목사, 이규성.

---

881) 이규성(1653~?):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문보(文甫). 부친은 이태영(李泰英), 형은 이행성(李行成). 1684년(숙종 10) 식년시 무과 병과 급제. 가산군수, 회령부사, 경상우도병마절도사 등을 역임. 제주목사 재임기간은 1706년(숙종 32) 9월~1709년(숙종 35) 5월.

❖ 康熙 四十八年 己丑 四月 二日 癸卯

○ 未時, 上御熙政堂, 全羅監司李震壽留待引見入侍時, 左承旨李敏英, 假注書申兼濟, 記事官李萬根, 記事官洪啓迪. …… 李寅燁, 乃持各道狀啓, 進伏于上前曰, 多有稟定之事, 而大臣以病不出, 適値連日晝講亦停, 且西道七邑試才之後, 尙無朝家處分, 西土之人, 必切顒望, 故敢來請對矣. 上曰, 然. 寅燁曰, 今番江邊試才御史試取之類, 依濟州例, 缺二行二字西關則三技入格者一人, 二技入格者二十六人, 朝家當初限五十人, 直赴定奪, 而今此入格之數, 僅二十七人, 未知盡許直赴乎? 依濟州例, 計其分數而直赴乎? 濟州則不過一州, 江邊則乃七邑也. 朝家創設試才之擧, 以爲慰悅邊民之地, 而今其試取者, 猶未滿五十之額, 則似當皆令直赴, 大臣及諸議, 皆以爲然矣. 上曰, 江邊取才之數, 依濟州例擧行事, 纔已判下矣. 今觀其數, 則只二十七人, 盡爲直赴, 固爲未過, 皆令直赴, 可也. …….【以上燼餘移謄 擧條竝見上】

❖ 숙종 35년(1709) 기축년 4월 2일(계묘)

□ 강변칠읍(江邊七邑)의 시재(試才) 급제자들을 직부(直赴)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미시(오후 1~3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전라감사 이진수(李震壽)가 머물며 인견하러 입시할 때 좌승지 이민영(李敏英), 가주서 신겸제(申兼濟), 기사관 이만근(李萬根), 기사관 홍계적(洪啟迪)이 참석하였다. 〈중략〉 이인엽(李寅燁)이 이에 각도의 장계를 가지고 임금 앞에 나아가 엎드려 말하기를, "아뢰어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대신들이 병으로 나오지 못하고, 때마침 계속되던 주강(晝講) 역시 정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도(西道) 칠읍(七邑)에서 시재(試才)한 이후 여태까지 조정의 처분이 없어 서토(西土)의 사람들이 반드시 간절히 바랄 것이기에 감히 와서 청대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이인엽이 말하기를, "금번 강변 시재어사 시취의 일들은 제주의 예에 따르면【2행 2자 빠짐】서관(西關)인 경우 3기(技)에서 입격한 자가 1명이고, 2기(技)에서 입격한 자가 26명입니다. 조정에서는 당초에 50명 한도로 직부(直赴)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지금 이번 입격한 자들의 수는 겨우 27명입니다. 모두에게 직부를 허락할지 아니면 제주(濟州)의 예에 따라 수를 나눠 직부를 허락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는 하나의 주에 불과하지만 강변은 바로 일곱 개의 읍입니다. 조정에서 시재(試才)를 시행하도록 창설한 것은 변경 백성

의 지역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지금 시취(試取)된 자가 오히려 50명이라는 정원에 못 미치니 모두에게 직부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대신들과 여러 논의도 모두 그렇다고 여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변에서 취재하는 인원은 제주의 예에 의거해 거행할 일이라고 좀 전에 이미 결정하였다. 지금 그 수를 보니 겨우 27명이어서 모두 직부(直赴)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모두 직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을 등록에 옮김. 아뢰는 조항이 모두 앞에 보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강변칠읍, 서관, 시재, 시취, 직부.

❖ 康熙 四十八年 己丑 四月 十二日 癸丑

○ 以韓祉爲正言, …… 愼惟益爲忠淸都事, 李商雨爲濟州敎授.

❖ 숙종 35년(1709) 기축년 4월 12일(계축)

□ 이상우(李商雨)를 제주교수(濟州敎授)에 제수함

○ 한지(韓祉)를 정언에, 〈중략〉 신유익(愼惟益)을 충청도사(忠淸都事)에, 이상우(李商雨)를 제주교수(濟州敎授)에 제수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이상우, 제주교수.

❖ 康熙 四十八年 己丑 四月 十八日 己未

○ 吏批啓曰, 新除授濟州敎授李商雨呈狀內, 情病俱難赴任云, 改差, 何如? 傳曰, 允.

❖ 숙종 35년(1709) 기축년 4월 18일(기미)

□ 이상우(李商雨)의 개차(改差)를 청하는 이비(吏批)의 계

○ 이비(吏批)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제주교수(濟州敎授) 이상우(李商雨)의 정장(呈狀) 속에 이유가 될 만한 사정과 질병 때문에 부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이상우, 제주교수, 개차.

❖ 康熙 四十八年 己丑 四月 二十日 辛酉

○ 有政. 行吏曹判書趙相愚進, 參判李廷謙呈辭受由, 參議權尙游在外, 右承旨金致龍進. 兵批, 判書李寅燁病, 參判姜銑病, 參議李墅病, 參知趙泰老進, 右副承旨韓配夏進. 以安時相爲正言, 元聖兪爲刑曹參議, 金相元爲兵曹佐郎, 李龍徵爲濟州敎授, 金國礪單爲校書正字. 兵曹無政事.

❖ 숙종 35년(1709) 기축년 4월 20일(신유)

□ 이비(吏批)와 병비(兵批)의 관원 현황

○ 정사가 있었다. 행이조판서 조상우(趙相愚)가 나아갔고, 참판 이정겸(李廷謙)이 휴직을 청하여 말미를 받았으며, 참의 권상유(權尙游)는 지방에 있고, 우승지 김치룡(金致龍)이 나아갔다. 병비(兵批)에는 판서 이인엽(李寅燁)이 병중에 있고, 참판 강선(姜銑)도 병중이고, 참의 이야(李墅)도 병중이며, 참지 조태로(趙泰老)가 나아갔고, 우부승지 한배하(韓配夏)가 나아갔다. 안시상(安時相)을 정언으로 삼고, 원성유(元聖兪)를 형조참의로, 김상원(金相元)을 병조좌랑으로, 이용징(李龍徵)[882]을 제주교수로, 김국려(金國礪)는 단망(單望)[883]으로 교서정자(校書正字)로 삼았다. 병조에서는 정사가 없었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이용징, 제주교수.

---

882) 이용징(李龍徵):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자운(子雲). 부친은 이승민(李承敏). 1691년(숙종 17) 증광문과에 병과 급제. 교서관 교리 역임.

883) 단망(單望): 관리 임명에 있어서 단 1인의 후보자만 기입한 망단자(望單子, 임용대상자 명단). 조선시대는 관리 임명에 삼망(三望, 3배수 후보자 추천)이 원칙이었으나, 일부 특정 관직의 경우 단망자가 법제화되기도 함. 홍문관의 박사, 저작, 정자, 세자시강원의 찬선, 진선, 성균관의 좨주, 사업은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단망 추천을 허용함.

❖ 康熙 四十八年 己丑 四月 二十一日 壬戌

○ 午時, 上御宣政殿晝講時, 知事趙相愚, 特進官李基夏, 參贊官李世維, 侍讀官李世瑾, 檢討官林象德, 假注書洪尙寅, 記事官趙之重, 記事官洪啓迪, 武臣李漢章入侍, …… 相愚曰, 濟州敎授有闕之代, 差出之後, 連爲遞改, 迎新官屬之久滯京中, 極爲可慮. 新除授李龍徵, 旣在本道便近之地, 除朝辭赴任之意, 敢啓. 上曰, 依爲之. 出擧條 …… 上曰, 武臣進來. 武臣李漢章進伏, 上曰, 達其履歷. 漢章曰, 以宣傳官陞六, 歷訓鍊主簿御營將官, 出守旌義縣, 丁丑, 自上特爲加資, 其後歷千摠營將五衛將, 卽今待罪禁軍將矣. 上曰, 有何可達之語耶. 漢章曰, 小臣, 十餘年前, 作宰旌義, 而無大段弊端, 厥後不爲外任, 故無所達之語矣. …….【以上燼餘】

❖ 숙종 35년(1709) 기축년 4월 21일(임술)

□ 제주교수(濟州敎授)의 교체에 대해 논의함

○ 오시(11시~13시)에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주강(晝講)할 때 지사 조상우(趙相愚), 특진관 이기하(李基夏), 참찬관 이세유(李世維), 시독관 이세근(李世瑾), 검토관 임상덕(林象德), 가주서 홍상인(洪尙寅), 기사관 조지중(趙之重), 기사관 홍계적(洪啓迪), 무신 이한장(李漢章)이 입시하였다. 〈중략〉 조상우가 아뢰기를, "제주교수의 결원(缺員)을 대신하여 뽑은 일이 있었는데, 임명 후 잇달아 교체되면서 맞이하러 올라온 관속들이 도성에서 오래 체류하고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새로 제수된 이용징(李龍徵)은 이미 본도(本道)의 가깝고 편리한 곳에 있으니, 조사(朝辭)[884]를 생략하고 부임시킬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거조(擧條)[885]에 나옴】〈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무신은 나아오라."라고 하였다. 무신 이한장(李漢章)[886]이 나아가 엎드리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력을 아뢰어라."라고 하였다. 이한장이 말하기를, "선전관으로 육품(六品)에 올라 훈련주부(訓鍊主簿)·어영장관(御

884) 조사(朝辭): 새로 임명된 관리나 외국으로 나갈 사신이 떠나기에 앞서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는 일. 사조(辭朝)라고도 함.

885) 거조(擧條): 거행조건(擧行條件)의 줄인 말. 연중(筵中)에서 임금과 신하들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문서로 재가 받아 두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입시(入侍)했던 주서(注書)가 정서하여 입계(入啓)하는 것이며, 재가 받은 뒤에는 그 내용을 베껴서 조지(朝紙)에 내는 것이 관례였음.

886) 이한장(?~?): 정의현감 재임기간은 1697년(숙종 23) 9월~1700년(숙종 26) 2월.

營將官)을 역임하였고 정의현(旌義縣)의 수령으로 나갔었습니다. 정축년 임금께서 특별히 가자해주셨습니다. 그 후 천총·영장·오위장을 거쳐 지금은 금군장(禁軍將)을 맡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떤 아뢸만한 말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한장이 말하기를, "소신은 10여 년 전에 정의현의 수령이 되어 큰 폐단이 없었는데 그 후로 지방관을 하지 않아 그 때문에 아뢸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교수, 이용징, 이한장, 정의현감.

❖ 康熙 四十八年 己丑 六月 二十三日 壬戌

○ 慶尙道幼學閔斗杓等疏曰, …… 臣等道內山陰縣, 古有贈左承旨臣吳長, 處士朴文瑛·吳僩三人焉, 或以先正之親子, 或以大賢之門弟, 俱有卓犖之行, 而可躋於俎豆者也. …… 當龍蛇播遷之日, 有旨求賢, 筵臣金宇顒, 竝擧張顯光·吳長, 以應上旨, 則當時輿望之隆, 推此可知矣. 昏朝政亂, 身在言職, 誅大君之議, 始起於三司, 廢慈殿之論, 又發於造訒, 則吳長, 草疏將上, 見遞還鄕, 先正臣鄭蘊, 方以弼善上來, 遇於金陵驛館, 長, 憤慨時事, 執手流涕, 仍書公平正大四字, 以贈之, 蘊受而藏之袖中曰, 當不負故人之托, 遂立角於凶論, 以致耽羅之竄, 士論驚動, …… 答曰, 省疏具悉. 疏辭如此, 令該曹議處.

❖ 숙종 35년(1709) 기축년 6월 23일(임술)

□ 정온(鄭蘊)을 옹호한 오장(吳長) 등을 모신 서원을 철폐하지 말라는 경상도 유학 민두표(閔斗杓) 등의 상소

○ 경상도 유학(幼學) 민두표(閔斗杓) 등이 상소하기를, "〈전략〉 신 등의 도내 산음현(山陰縣)에 예전 추증 좌승지 신 오장(吳長), 처사 박문영(朴文瑛)·오간(吳僩) 3인이 있습니다. 혹은 선정신(先正臣)의 아들이요, 혹은 훌륭한 현인의 제자로써 모두 높고 빛나는 행실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며 모실 수 있었습니다. 〈중략〉 임진왜란 때 파천(播遷)하던 날을 당해 현명한 이를 구한다는 교지가 있었는데, 연신(筵臣) 김우옹(金宇顒)이 장현광(張顯光)과 오장(吳長)을 함께 천거함으로써 임금의 교지에 응하여 당시 여망의 융성을 이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광해군 때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몸은 언직(言職)에 있어서 대군(大君)을 주살하자는 논의가 처음 삼사(三司)에서 일어나고 자전(慈殿)을 폐하자는 논의가 다시 조인(造訒)[887]에서부터 시작되니 오장은 상소를 초(草)해 올렸다가 체직 당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선정신(先正臣) 정온(鄭蘊)[888]은 바야흐로 필선(弼善)[889]으로 올

887) 조인(造訒): 인목대비 폐비의 폐모론(廢母論)을 내세우고, 서궁(西宮) 유폐에 앞장섰던 인물인 정조(鄭造)와 윤인(尹訒)을 아울러 일컫는 말.

888) 정온(1569~1641):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휘원(輝遠). 호는 동계(桐溪)·고고자(鼓鼓子). 부친은 정유명(鄭惟明), 모친은 강근우(姜謹友)의 딸. 1610년(광해군 2) 별시문과에 을과 급제. 1614년 영창대군이 강화부사 정항(鄭沆)에 의해서 피살되자 그의 처벌과 당시 폐모론의 부당함을 주장하다 제주 대정현에 유배됨. 인조반정 후 광해군 때 절의를 지킨 인물로 지목되어 대제학·이조참판 등 청요직(淸要職)을 역임.

889) 필선(弼善): 세자시강원에 소속된 정4품 관직. 세자의 강학(講學)에 참여함.

라오다가 금릉역관(金陵驛館)에서 만났다. 오장이 시사(時事)에 분개하면서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며 이어서 '공평정대(公平正大)'라는 네 글자를 써서 (정온에게) 주었는데 정온이 받아서 소매 안에 넣으며 말하길 '마땅히 오랜 친구의 부탁을 저버리지 않으리라.'하고, 드디어 흉론(凶論)에 각을 세웠다가, 이 때문에 탐라(耽羅)로 유배 되자 사론(士論)이 경동(警動)하였습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의 말이 이와 같으니 해당 부서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오장, 정온, 탐라.

❖ 康熙 四十八年 己丑 七月 五日 甲戌

○ 徐宗泰進曰, 近來日氣, 晨昏則新凉乍動, 而亭午則老炎愈熾, 聖體, 若何? 上曰, 無事. …… 金宇杭曰, 頃者, 關西江邊七邑, 發遣御史, 試取武才, 其別單書啓之類, 自該曹有論賞之事, 而前兵判李寅燁, 於榻前定奪, 一依濟州例, 只取其兩技俱中者二十七人, 許參直赴, 其他各技入格者則或給分, 或給米布, 而今者沈壽賢, 以當初主試之人, 陳疏稱冤, 自上, 有令該曹議處之敎, 故敢此稟達. …… 上曰, 大臣所見, 何如? …… 宗泰曰, 柳葉箭四中一人, 則許參直赴, 而其他各技優等者, 則給分, 似好矣. 宇杭曰, 柳葉箭貫三中一人, 壽賢, 亦爲單擧邊四中, 若許及第, 則貫三中, 必爲稱冤矣. 纔見濟州人上言, 則亦似有稱冤之端, 故有所回啓, 而自上, 特令一體直赴矣. 泰耆曰, 七邑同於六鎭, 罕有赴擧之時, 今別樣奬勸, 似爲得宜矣. 上曰, 柳葉箭一巡四中, 付單技而入於米布中耶? 宇杭曰, 入於米布中矣. 米十斗, 布四疋矣. 上曰, 依濟州例爲之事, 前已命下, 而至如江華·廣州·水原等處, 無此例乎? 宇杭曰, 試才不沒技則不爲直赴矣. 上曰, 七邑則依濟州例爲之, 而江華·水原·南漢等處, 別試才時, 規例如何耶? 不沒技而直赴者, 亦有之乎? 相考後, 更爲稟處, 可也. …….【以上燼餘】

❖ 숙종 35년(1709) 기축년 7월 5일(갑술)

□ 관서(關西)의 강변칠읍(江邊七邑)에 어사를 파견해서 무재(武才)를 시취(試取)할 때, 제주(濟州)의 예를 따르는 일에 대해 논의함

○ 서종태(徐宗泰)가 나아가 말하기를, "최근 날씨가 아침저녁에는 초가을 서늘한 기운이 잠깐 일어나지만 정오에는 늦더위가 더욱 기승인데, 임금님의 몸은 어떠신지요?"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사하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우항(金宇杭)이 말하기를, "전번에 관서(關西) 강변칠읍(江邊七邑)에 어사를 파견해서 무재(武才)를 시취(試取)했는데, 그 별단으로 서계(書啓)한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논상(論賞)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 병조판서 이인엽(李寅燁)이 어전에서 결정하기를, 한 결 같이 제주(濟州)의 예에 의거하는데 다만 2기(技)에 모두 입격한 자 27명만을 취해 직부(直赴)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고, 기타 각 기(技)에 입격한 자들은 혹 급분(給分)해주고 혹 미포(米布)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수현(沈壽賢)이 당초 시험을 주관한 사람으로서 상소를 올려 억울하다 말하고 있으니, 임금께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하라는 전교가 있었기에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들이 보는 바는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중략〉 서종태가 말하기를, "유엽전(柳葉箭)에서 4발을 맞춘 한 사람은 직부에 참여하도록 허락하고, 기타 각 기(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들은 분급(分給)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김우항이 말하기를, "유엽전에서 관삼중(貫三中)[890]한 한 사람을 심수현이 역시 홀로 추천했는데, 변사중(邊四中)[891]한 이들까지 만약 급제를 허락한다면 관삼중인 경우 반드시 억울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사람이 올린 말을 잠깐 보아도 역시 억울하다고 할 만한 단서가 있는 것 같아 그 때문에 임금의 물음에 대답한 바가 있어서 임금께서 특별히 모두를 직부(直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조태구(趙泰耉)가 말하기를, "칠읍(七邑)은 육진(六鎭)과 같아 과거를 보러 갈 때가 드물게 있었는데, 지금 특별히 격려하고 권장하는 것이 옳은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엽전에서 일순(一巡)[892]하여 네 발을 맞추어 단기(單技)에 붙이면 미포(米布) 중에 드는가?"라고 하였다. 김우항이 말하기를, "미포(米布) 중에 드는 것은 쌀 10두, 포 4필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예에 의거해 할 일'이라고 전에 이미 명을 내렸다. 그런데 강화(江華)·광주(廣州)·수원(水原) 같은 여러 곳에도 이러한 예가 없는가?"라고 하였다. 김우항이 말하기를, "시재(試才)할 때 몰기(沒技)하지 않으면 직부(直赴)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칠읍인 경우 제주(濟州)의 예에 의거해 시행하는데, 강화(江華)·수원(水原)·남한(南漢) 같은 곳을 별도로 시재할 때 규례는 어찌하는가? 몰기(沒技)하지 않았는데 직부(直赴)하는 것이 또한 있었는가? 서로 살펴본 후에 다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강변칠읍, 시취, 유엽전, 직부, 제주.

890) 관삼중(貫三中): 과녁의 중심을 맞춘 것이 3발인 경우.
891) 변사중(邊四中): 과녁 변두리에 4발을 맞춘 경우.
892) 일순(一巡): 유엽전(柳葉箭)에서 일순(一巡)이란 다섯 발.

❖ 康熙 四十八年 己丑 七月 二十一日 庚寅

○ 許玧,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歲貢進上先後運馬, 一時來到, 元數四百八十三匹內, 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內, 三匹到中路病留, 訓局山屯馬一百匹內, 一匹到中路故失, 六匹病留, 一匹逃逸, 一匹船中病留, 一匹到本寺病留, 取種馬七十匹內, 六匹到中路病留, 三匹到本寺病留, 歲貢馬二百匹內, 二十匹到中路病留, 一匹逃逸, 凶咎馬二十六匹內, 三匹到中路病留, 一匹逃逸, 駑駘馬二十九匹內, 一匹船中故失, 五匹到中路病留, 合五十三匹計除, 實納馬四百三十匹, 禾毛色別單書入, 而其中訓局山屯馬, 則依例分養各邑, 明春上來後, 分給軍兵, 取種馬則湖西三牧場添放之意, 曾已草記定奪矣. 今將下送牧場, 沿路率軍, 同出替傳事, 畿·湖兩道監司處, 行移知委, 馬匹領去理馬·養馬各一人, 依前例給馬下送, 何如? 傳曰, 允.

❖ 숙종 35년(1709) 기축년 7월 21일(경인)

□ 제주(濟州)의 진상마(進上馬) 계 430필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에 써서 들이고 이를 처리할 내용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허윤(許玧)이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세공진상마(歲貢進上馬) 선운(先運), 후운(後運)이 일시에 들어왔습니다. 원래의 수는 483필인데,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중 3필은 도중에 병들어 머물었으며, 훈국산둔마(訓局山屯馬) 100필 중 1필은 도중에 사고로 잃고 6필은 병으로 머물고 1필은 도망쳤고 1필은 배 안에서 병들어 머물고 1필은 본 관아에 도착하여 병들어 머물었으며, 취종마(取種馬)[893] 70필 중 6필은 도중에 병들어 머물고 3필은 본 관아에 도착하여 병들어 머물었으며, 세공마(歲貢馬) 200필 중 20필은 도중에 병들어 머물고 1필은 도망쳤으며, 흉구마(凶咎馬) 26필 중 3필은 도중에 병들어 머물고 1필은 도망쳤으며, 노태마(駑駘馬) 29필 중 1필은 배 안에서 사고로 잃어버렸고 5필은 도중에 병들어 머물러 합계 53필을 제외하고 실제로 바친 말이 430필입니다.[894] 나이와 털빛을 별단(別

---

893) 취종마(取種馬): 씨를 받기 위해 기르는 말.

894) 제주에서 보낸 말을 합계하면 493필이 됨. 따라서 문장 앞부분에 원래의 수가 483필은 493필이라 해야 옳음. 또한 도중에 병들거나 잃어버린 말의 합계는 53필이 맞고, 실제로 바친 말이 430필이라면 483필이 맞게 되어 각종 말의 총계에서 10필이 잘못 표기되었을 경우도 있음. 《승정원일기》 원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국편위 탈초본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음.

單)에 써서 들이고, 그 중 훈국산둔마는 예에 의거 각 고을에 분양하고 내년 봄에 올라 온 후에 군병에게 나누어 지급하겠습니다. 취종마는 호서(湖西) 세 목장에 추가하여 방목시킬 뜻이니 일찍이 이미 초기(草記)에 결정한 바입니다. 지금 장차 내려 보낼 목장 연로(沿路)의 견군(牽軍)[895]에게 같이 나와 교대하며 전할 일을 경기와 호서 양도의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 알리고, 마필을 데리고 갈 이마(理馬)[896]와 양마(養馬)[897] 각 1명에게 전례에 의거 말을 지급하여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허윤, 제주, 세공진상마, 호서.

---

895) 견군(牽軍): 사람이 타거나 짐이 실린 말을 끌던 마부.
896) 이마(理馬): 사복시에 소속된 관직. 궁중의 마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6품 잡직.
897) 양마(養馬): 사복시의 하급관리로서 직접 말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음.

❖ 康熙 四十八年 己丑 七月 二十九日 戊戌

○ 全羅監司書目, 濟州牧使崔啓翁弊瘼上疏上送事. 啓. 答曰, 省疏具悉. 條陳弊瘼事, 令廟堂稟處.

❖ 숙종 35년(1709) 기축년 7월 29일(무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계옹(崔啓翁)의 폐막상소(弊瘼上疏)를 올려 보낸다는 전라감사(全羅監司)의 계

○ 전라감사의 서목에, 제주목사 최계옹의 폐막 상소를 올려 보내는 일을 아뢰었다. 답하기를, "상소문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잘 알았다.[898] 조목조목 폐막을 진달하는 일은 묘당(의정부)에 맡겨서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최계옹, 폐막상소.

898) 성소구실(省疏具悉): 임금이 신하의 상소문을 살펴보고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았다는 뜻으로 이르는 투식어.

❖ 康熙 四十八年 己丑 八月 十六日 甲寅

○ 吏批, 以朴致遠單付學錄, …… 申善浣爲濟州判官. …….【以上朝報】

❖ 숙종 35년(1709) 기축년 8월 16일(갑인)

□ 신선완(申善浣)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박치원(朴致遠)을 단망(單望)으로 학록(學錄)에, 〈중략〉 신선완(申善浣)[899]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하였다. 〈하략〉.【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신선완, 제주판관, 이비.

899) 신선완(?~?): 제주판관 재임기간은 1709년(숙종 35) 10월~1712년(숙종 38) 12월.

❖ 康熙 四十八年 己丑 十二月 十六日 壬子

○ 司饔院啓曰, 濟州乳柑進上, 今始來納, 而宗廟薦新, 不爲來到, 招問曲折於陪持人, 則薦新所載船, 相失於海中, 未及來到云, 進上旣到之後, 遷就薦新, 事甚未安, 進上乳柑元數內, 二百五十枚, 依前移送禮曹, 宗廟及永昭殿·敬寧殿, 明曉膺進後, 還爲內入, 何如? 傳曰, 允.【以上禮曹謄錄】

❖ 숙종 35년(1709) 기축년 12월 16일(임자)

□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할 제주(濟州) 유감(乳柑)이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진상 유감으로 종묘 등에 천신할 것을 청하는 사옹원의 계

○ 사옹원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 유감(乳柑) 진상이 지금 비로소 들어 왔는데, 종묘(宗廟)에 천신(薦新)[902]할 것은 들어오지 않아 배지인(陪持人)을 불러 곡절을 물어보니 천신을 실은 배가 바다에서 서로 잃어버려 와서 도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상이 이미 도착한 후인데 천신이 지체되어 일이 매우 편치 않게 되었습니다. 진상 유감 원래 수 중 250매(枚)는 전례에 의거 예조로 이송하고, 종묘(宗廟) 및 영소전(永昭殿)·경녕전(敬寧殿)에는 내일 새벽에 올린 후에 도로 궁중에 들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유감, 진상, 종묘, 영소전, 경녕전.

902) 천신(薦新): 새로 나는 물건을 먼저 신위(神位)에 올리는 일. 월령천신(月令薦新)은 다달이 정례로 종묘에 올리는 천신을 말함.

❖ 康熙 四十八年 己丑 十二月 二十一日 丁巳

○ 禮曹啓曰, 濟州牧使所封進, 去十一月令, 宗廟·永昭殿·敬寧殿, 薦新乳柑·洞庭橘等, 今始上來, 洞庭橘, 則來二十二日薦進, 而乳柑, 則前因司饔院啓辭以進上, 旣已薦進, 今此封進乳柑, 則令該院捧入, 何如? 傳曰, 允.【以上禮曹謄錄】

❖ 숙종 35년(1709) 기축년 12월 21일(정사)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보낸 유감(乳柑)이 뒤늦게 도착하여 사옹원에 들일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밀봉하여 올린 지난 11월 월령(月令)으로, 종묘(宗廟)·영소전(永昭殿)·경녕전(敬寧殿)에 천신(薦新)할 유감(乳柑)과 동정귤(洞庭橘) 등이 지금 비로소 올라 왔습니다. 동정귤은 오는 22일에 올리고, 유감은 전에 사옹원에서 올린 글로 인해 진상으로써 이미 올렸습니다. 지금 이 봉진한 유감은 해당 사옹원에 들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유감, 동정귤, 진상, 종묘, 영소전, 경녕전.

1710年

❖ 康熙 四十九年 庚寅 三月 十六日 辛巳

○ 義禁府啓曰, 以全羅右水使及濟州牧使狀啓, 刑曹粘目, 前梨津萬戶池友漢, 於蘭萬戶洪重臣等, 移本府處置事, 允下矣. 池友漢今方待命, 卽爲拿囚, 而洪禹臣時在任所, 依例發遣府羅將, 拿來, 何如? 傳曰, 允.【禁府謄錄】

❖ 숙종 36년(1710) 경인년 3월 16일(신사)

□ 어란만호(於蘭萬戶) 홍우신(洪禹臣) 등을 잡아 오도록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 및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형조가 점목(粘目)[904]한 '전 이진만호(梨津萬戶) 지우한(池友漢)과 어란만호(於蘭萬戶) 홍우신(洪禹臣)[905] 등을 본 의금부로 이송하여 처리할 일'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지우한(池友漢)은 금방 대명하였으니 즉시 잡아 가두고, 홍우신(洪禹臣)은 지금 임소에 있으니 예에 의거 본 의금부의 나장을 파견하여 잡아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의금부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전라우수사, 제주목사, 이진만호, 어란만호, 지우한, 홍우신.

---

904) 점목(粘目): 서류에 덧붙인 목록.

905) 홍우신(洪禹臣): 국편위 탈초본 활자에는 홍중신(洪重臣)으로 되어 있음. 《승정원일기》 1708년(숙종 34) 5월 6일 및 동년 5월 21일 기사에 의하면 어란만호(於蘭萬戶)로 임명되어 하직했던 인물이 홍우신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편위 탈초본 활자가 잘못 표기되어 역자가 바로 잡음.

❖ 康熙 四十九年 庚寅 五月 六日 庚午

○ 戶曹參判李思永疏曰, 伏以臣, 年深病篤, 精神筋力, 殆無餘地, …… 且臣於樂安·濟州放未放回啓, 有不可參涉之嫌, 故本府開坐, 而臣病且有嫌, 不得隨參, 不能備員, 而不得開坐者數矣. 以臣之故, 而至令王府公事稽滯, 臣誠惶恐悶慮, 不知所措, …… 答曰, 省疏具悉. 卿其勿辭, 調理察職.

❖ 숙종 36년(1710) 경인년 5월 6일(경오)

□ 제주(濟州) 등의 방미방(放未放) 회계(回啓)에 참여할 수 없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본직과 겸임의 교체를 청하는 이사영(李思永)의 상소

○ 호조참판 이사영(李思永)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삼가 소신이 해마다 병이 고질로 깊어져 정신과 근력에 거의 여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중략〉 또 신에게는 낙안(樂安)과 제주(濟州)의 방미방(放未放)[906] 계본에 대한 회계(回啓)에 끼어들어 간섭하는 것이 불가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부(本府)에서 회의를 열어 일을 볼 때 신은 병(病)과 혐의 있음[有嫌]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원을 갖추지 못해 (결국) 회의 정원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신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왕부(王府)[907] 공사(公事)의 일을 늦추라는 명이 있기에 이르렀으니, 신은 진실로 황공하고 염려스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모두 알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조섭(調攝)하며 직무를 살피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방미방 계본.

906) 방미방(放未放): 죄인을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음.
907) 왕부(王府): 의금부(義禁府)의 다른 이름.

❖ 康熙 四十九年 庚寅 五月 二十七日 辛卯

○ 又以兵曹言啓曰, 卽接濟州人夫燦所志, 則戊子式年初試入格之後, 因風高, 不得來赴於本科會試, 而今始上來, 願赴於今番增廣覆試矣. 本州, 卽候風越海之孤島, 不得任意上來, 旣有別試許赴之例, 夫燦, 許赴於今此增廣, 何如? 傳曰, 允.

❖ 숙종 36년(1710) 경인년 5월 27일(신묘)

□ 제주(濟州) 사람으로 초시에 급제한 부찬(夫燦)을 증광시(增廣試)에 응시하도록 허락을 청하는 병조의 계

○ 또 병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 사람 부찬(夫燦)의 소지(所志)를 접한즉 무자년(1708) 초시에 급제한 후 바람이 세게 불어 대과 회시에 응시할 수 없다가 지금 비로소 올라 와 금번 증광시 복시(覆試)에 응시를 원한다고 합니다. 본주는 바람을 기다리는 바다 건너 먼 섬이어서 임의로 올라 올 수가 없기에 별시에 응시를 허락한 사례가 있으니 부찬을 이번 증광시에 응시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부찬, 증광시.

❖ 康熙 四十九年 庚寅 五月 二十八日 壬辰

○ 江界府使崔重泰疏曰, …… 江邊七邑, 卽同北道六鎭, 苟謂弓馬之鄕, 不可取文士, 則六鎭亦然, 何獨七邑, 而又況於弓馬之鄕, 拔取二三文士, 有觀感興起之地, 則尤豈非作成人才之一大政耶? 其時朝令之變更, 不但其擧措顚倒而已, 其爲失信失懽於邊人大矣. 以聖上一視同仁之德意, 時遣御史, 更令試才於江邊, 而竝取文武, 如濟州·六鎭激勸之典, 一以振作人才, 一以慰悅邊情, 不但已, 伏願聖明, 俯詢廟堂而裁處焉. …… 答曰, 省疏具悉. 疏辭, 令廟堂稟處.

❖ 숙종 36년(1710) 경인년 5월 28일(임진)

□ 강변에 시재(試才)를 설과하여 문무(文武)를 취할 것 등을 청하는 최중태(崔重泰)의 상소

○ 강계부사(江界府使) 최중태(崔重泰)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중략〉 강변칠읍(江邊七邑)은 북도(北道)의 육진(六鎭)과 같아, 진실로 궁마(弓馬)의 고향이라고 불리면서 문사(文士)를 뽑을 수 없었습니다. 육진 또한 그렇고, 어찌 칠읍(七邑)만 그렇겠습니까만 또한 하물며 궁마의 고향에서 두 세 문사를 뽑아 관감흥기(觀感興起)하는 방도가 있다면, 어찌 더욱 '인재(人才)를 키우는 일대 다스림'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조령(朝令)이 변경되자[908], 그 조치가 뒤바뀌졌을 뿐만 아니라, 변경 사람들에게 그 믿음 잃고 기쁨 잃게 한 것은 큰 것이었습니다. 성상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덕의(德意)로 때맞추어 어사를 파견하여 다시 강변(江邊)에서 시재(試才)하여 문무(文武)를 아울러 취재(取才)하라고 명하신다면, 제주(濟州)와 육진(六鎭)에 격려하고 권하는 규범과 같이 한편으로는 인재를 진작시키고 한편으로는 변경의 정서를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것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임금께서 묘당(廟堂)에게 물어, 이 일을 재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의 말은 묘당(廟堂)에서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강변칠읍, 육진, 취재, 제주.

---

908) 앞 내용에 강변(江邊)에서 설과(設科)하기로 되었다가 취소되어, 변경사람들이 실망했다는 내용이 보임.

❖ 康熙 四十九年 庚寅 六月 十二日 丙午

○ 藥房入診時, 提調閔鎭厚所啓, 濟州牧使啓本中, 罪人吳時復[校][吳始復], 置之稟秩矣. 始復, 罪名甚重, 有難輕議, 而外議或以爲, 初旣待之以不死, 則十年栲棘, 又當無前大霈, 參酌差減, 亦無所妨云, 未知何如. 以濟州啓本, 旣已發端, 故竝此仰稟. 上曰, 吳始復罪名甚重, 崔啓翁之置之稟秩, 亦極可怪, 雖當大霈, 不可輕易減等, 仍配, 可也.

❖ 숙종 36년(1710) 경인년 6월 12일(병오)

□ 유배인 오시복(吳始復)의 형벌을 경감 시켜달라는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계옹(崔啓翁)의 계본에 대해 논의함[909]

○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할 때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뢴 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계본(啓本)[910] 중, 죄인 오시복(吳始復)[911]을 품질(稟秩)[912]에 두는 일입니다. 오시복은 죄명이 매우 중하여 가볍게 논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세상의 평이 혹 '처음에 이미 죽이지 않는 것으로 대우하여, 10년 동안 울타리를 가시나무로 둘러쳤고 또 전에 없던 대사면을 당했으니 참작하여 줄여주는 것 또한 꺼릴 바가 없습니다.'고 운운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 계본이 이미 발단되었기 때문에 아울러 이처럼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시복의 죄명은 매우 중한데 최계옹(崔啓翁)이 (오시복을) 품질에 두자고 한 것 또한 매우 괴상하다. 비록 대사면을 당했어도 대수롭지 않게 가벼이 형벌을 감해줄 수 없으니, 그대로 유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민진후, 제주목사, 오시복, 최계옹, 유배.

---

909) 《숙종실록》 권48, 1710년(숙종 36) 6월 12일에도 동일 내용이 실려 있음.

910) 계본(啓本): 중앙과 지방의 직계아문(直啓衙門)이 국왕에게 담당 업무를 보고, 건의하기 위해 올리던 문서.

911) 오시복(1637~1716): 본관은 동복(同福). 자는 중초(仲初), 호는 휴곡(休谷). 부친은 오정규(吳挺奎), 모친은 이여황(李如璜)의 딸. 1662년(현종 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이조참판, 호조판서를 역임. 1701년 무고(巫蠱)의 옥사에 연루되어 대정현에 안치됨. 1712년 함평·강진, 이듬해 영해부로 이배되어, 1716년 그곳에서 죽음. 당시 제주목사 이형상과 교류했던 간찰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재하는데, 3권에 걸쳐 최근에 완역됨.

912) 품질(稟秩): 임금에게 여쭙기 위해 모아 놓은 문서철.

❖ 康熙 四十九年 庚寅 六月 十二日 丙午

○ 又所啓, 濟州牧使崔啓翁, 因赦令放未放區別啓本中, 金春澤置之放秩矣. 金春澤, 初無顯著之罪, 只以持身不謹, 特爲遠竄, 及溥獄辭連之後, 非緊出, 而必爲拿致, 事皆歸虛, 則當還發配所, 而鞫廳, 徒以移配濟州, 人皆以無名爲言, 其時參鞫大臣, 亦自以爲太過, 今此啓翁之置之放秩, 似由於此, 而然而其律名甚重, 以牧使而直請全釋, 殊涉率爾, 若自禁府, 循例覆奏, 依啓本施行, 則事體亦恐未安, 故敢此仰稟, 仍爲放送乎? 抑或減等乎? 自下不敢擅斷, 上裁, 何如? 上曰, 出陸減等, 可也.【燼餘】

❖ 숙종 36년(1710) 경인년 6월 12일(병오)

□ 김춘택(金春澤)의 석방을 요청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계옹(崔啓翁)의 계본에 대해 논의함[913]

○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계옹(崔啓翁)이 사면령으로 인해 방미방(放未放)[914]을 구별하여 올린 계본 중에 김춘택(金春澤)[915]을 방질(放秩)[916]에 두자는 것입니다. 김춘택은 처음에는 현저한 죄가 없었고, 다만 몸가짐이 삼가지 않아서 특히 먼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임부(林溥)[917]의 옥사에 연루된 이후 중요한 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반드시 잡아오도록 하였고, 일이 모두 거짓으로 돌아갔으면 마땅히 배소로 돌려보내야 할 것인데 국청(鞫廳)에서 제주(濟州)에 옮겨 유배시키니 사람들이 모두 명분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그 때 추국에 참여한 대신 또한 너무 지나쳤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최계옹의 방면 처리 사안은 이로

---

913) 《숙종실록》 권48, 1710년(숙종 36) 6월 12일에도 동일 내용이 실려 있음.

914) 방미방(放未放): 죄인을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는 것.

915) 김춘택(1670~1717):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백우(伯雨), 호는 북헌(北軒). 조부는 숙종의 장인인 김만기(金萬基), 부친은 김진구(金鎭龜). 종조부 김만중(金萬重)으로부터 문장을 배웠다. 서인·노론의 중심가문에 속하였으므로 항상 정쟁의 와중에 있었음.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때는 정의현에 유배 온 부친 김진구를 따라와 제주에서 지냈고, 1706년(숙종 32)에는 그 자신이 제주에 유배됨. 시호는 충문(忠文). 저서 《북헌집(北軒集)》.

916) 방질(放秩): 방면할 죄수 명단.

917) 임부(?~?): 본관은 평택(平澤). 부친은 임한교(林漢喬), 형은 경종 모해설의 연루자인 임완(林浣). 경종 모해설의 발설자인 윤순명(尹順命)의 처형과 윤증(尹拯)의 처벌을 청하는 내용의 소를 올렸으나 당시 초사에는 오르지 않음. 그러나 1706년에 재차 거론된 그의 상소 때문에 김춘택 등은 제주에 유배당하고 당시 그의 세 형제도 사실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문을 당함. 그 결과 당시의 초사에 의도적으로 발설하지 않은 내용이 있음이 밝혀져 흑산도에 유배를 갔다가 죽임을 당함.

써 말미암은 듯하나 율명(律名)이 아주 중하고 목사가 직접 석방을 청한 것은 자못 경솔한 데 관계됩니다. 만약 금부에서 예에 따라 아뢰고 계본대로 시행한다면 일의 본체 또한 편치 못할까 두려워서 감히 이처럼 여쭙니다. 그대로 풀어 보내줄까요? 아니면 혹 형벌을 줄여 줄까요? 허락 없이 감히 멋대로 처리하지 못하니 임금의 결재를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육지로 내보내 형벌을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최계옹, 김춘택, 임부.

❖ 康熙 四十九年 庚寅 閏七月 二十三日 丙辰

○ 院啓, 近日朝廷之上, 死黨之習成, 搢紳之間, 相敬之風衰, 趨合則唱聲和附, 天聰可眩, 議岐則恚訾力迫, 惡言肆行, 有識者之寒心, 固已久矣. …… 請副司果申鐔, 削奪官爵, 門外黜送. …… 請兵曹正郎李相成, 削去仕版. 己卯科賊, 實是稀有之變怪, 海外編管, 未足以懲其罪惡, 輿情之憤惋, 至今未已. 濟州牧使崔啓翁, 乃敢以移配之說, 肆然陳疏, 此輩旣已爲奴, 係屬本州, 則雖有犯科橫侵之弊, 身爲地主, 拘束操縱, 在其一號令之間, 而莫敢誰何, 至煩馳啓, 其疲軟庸懦之狀, 據此可知. 若或陽排陰庇, 故爲此請, 則其所用意, 誠極叵測. 且今春大霈, 雖是無前邦慶, 而苟係罪名至重, 干係非常者, 則不宜揀在此中. 罪人吳始復·金春澤, 是何等罪名, 何等干係, 而或置稟秩, 或請全釋, 蔑法循情, 不少留難, 其顚妄怪駭之習, 不可不懲, 請濟州牧使崔啓翁, 罷職不敍. 答曰, 不允. 末端事, 依啓.

❖ 숙종 36년(1710) 경인년 윤 7월 23일(병진)

□ 오시복(吳始復)을 비호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계옹(崔啟翁)의 파직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근래 조정에서는 붕당을 위해 죽을힘을 다하는 버릇이 생겨나 관리들 사이에 서로 공경하는 풍토가 쇠퇴해지고 (붕당을) 따르며 합한즉 소리 내며 아부하니 임금의 총명을 흐리고, 의견이 갈리면 성내고 헐뜯으며 힘껏 핍박하고 악담하며 방자하게 행동하니 배웠다는 이들의 한심이 진실로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중략〉 청컨대 부사과 신심(申鐔)을 삭탈관작하고 사대문 밖으로 내쫓으십시오. 〈중략〉 청컨대 병조정랑 이상성(李相成)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십시오.[918] 기묘년의 과적(科賊)[919]은 실로 드문 변괴여서 바다 밖으로 유배되었지만, 그 죄악을 징계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여론의 분개가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최계옹(崔啟翁)이 이에 감히 이배(移配)의 말로써 방자하게 소를 올렸은 즉, 이 무리들은 이미 노비가 되어 본주(本州)에 묶여있는데 비록 과거(科擧)를 범하고 함부로 불법을 저지른 폐단이 있어도 신분은 지주가 되어 구속을 조종하는 것이 한 번의 호령(號令) 사이에 달

918) 삭거사판(削去仕版): 사판(仕版)에서 이름을 제거함. 죄를 지은 관리를 처벌하는 규정의 하나로 처음 벼슬 이후의 모든 임관(任官)을 말소하는 규정. 삭판(削版).
919) 과적(科賊):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 옳지 못한 일을 꾀하는 사람.

렸으니 감히 누가 어찌할 수 없다고 번거롭게 치계(馳啟)하니 그 나약하고 용렬한 실상이 이로써 알만 합니다. 만약 혹시 겉으로는 배척하면서 몰래 감싸느라 이러한 청을 한 것이라면, 그 뜻을 쓰는 바가 진실로 매우 불측합니다. 또한 이번 봄의 대사면이 비록 전에 없던 나라의 경사이지만 죄명이 진실로 지중한 데에 연계되어 있고 비상(非常)한 것에 관계되었으니 이 (상소) 중에 분간하여 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죄인 오시복(吳始復)과 김춘택(金春澤), 이들이 어떤 등급의 죄명이며 어떤 등급에 관계 되었어도 혹 품질(稟秩)[920]에 두거나 혹 온전한 석방을 청하니, 법을 능멸하고 사사로운 정을 따르는데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아 사리에 어긋나고 망령되며 괴이하고 놀라운 버릇에 대해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제주목사 최계옹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마지막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과적, 대패, 오시복, 김춘택, 최계옹.

920) 품질(稟秩): 임금께 여쭙기 위해 모아 놓은 문서철.

❖ 康熙 四十九年 庚寅 八月 十六日 戊寅

○ 府啓, 藍浦縣監朴荃, 到任以後, 無一善狀, 目不識丁, 政委猾吏, 民之受害, 不一其端. 凡有牒訴之事, 一任其論題, 恣意操縱, 每當歲抄之時, 多受其賂物, 潛自頓減. 且於公糴文書, 暗錄私債, 混同督徵, 民不能措手, 利歸私橐, 而荃身爲守宰, 矇不致察, 如此尸居不職之人, 不可仍置字牧之任, 請藍浦縣監朴荃罷職不敍. 耽羅, 卽海外之重鎭, 從前武臣之差送也, 必以曾經閫任有聲績者, 另加擇擬, 意非偶然, 而新除授牧使李壽民, 名望素輕, 履歷且少, 除目之下, 物情未允, 請濟州牧使李壽民遞差. 答曰, 不允. 末端事, 依啓.

❖ 숙종 36년(1710) 경인년 8월 16일(무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수민(李壽民)의 교체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남포현감(藍浦縣監) 박전(朴荃)이 도임한 이후 하나도 잘한 정상이 없고 무식하여[921] 정사는 간교한 아전들에 맡겨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그 사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릇 공문서 및 소장의 일이 있으면 그 논제(論題)[922]를 일임하는데 자의로 조종하여 매번 세초(歲抄)[923]의 때를 당하여 뇌물을 많이 받고 몰래 스스로 조세를 덜어줍니다. 또 공적(公糴) 문서에 몰래 사채(私債)를 기록하여 뒤섞여 독촉을 징수하니 백성들이 손을 댈 수 없어 이익이 개인주머니로 돌아갑니다. 박전은 수령이 되었는데도 사리가 어두워 살피지 못하고 이처럼 자리만 차지한 채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직임에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청컨대 남포현감 박전을 파직하여 서용치 마십시오. 탐라(耽羅)는 해외의 중요한 군진(軍鎭)으로 이전까지 무신을 파견하는데 반드시 일찍이 곤임(閫任)[924]을 역임하여 명성과 공적이 있는 자를 한층 더 가려 의망(擬望)[925]함은 뜻이 우연이 아닙니다. 새로 제수한 목사 이수민(李壽民)[926]은 명

---

921) 목불식정(目不識丁): 고무래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 정(丁)자인 줄 모른다. 이른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말로써 글자를 전혀 모르는 일자무식을 이르는 말.

922) 논제(論題): 아래 관아의 보고에 대하여 위 관아에서 처분을 결정하여 보내는 지령.

923) 세초(歲抄): 매년 6월과 12월의 인사이동에 앞서 허물이 있는 관원의 이름을 적어서 국왕에게 올린 문서.

924) 곤임(閫任): 병사(兵使)나 수사(水使)와 같은 지방 군지휘관의 직임.

925) 의망(擬望): 삼망(三望)의 후보자를 추천함. 삼망은 1인의 관원을 채용할 때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3인의 후보자를 임금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임금은 그 중 1인에게 낙점(落點)하여 결정함.

926) 이수민(1651~1724): 본관은 청해(靑海). 자는 일경(一卿). 개국공신 이지란(李之蘭)의 후손. 1676년

망이 본디 가볍고 이력 또한 적어서 제목(除目)[927]이 내리면 물정이 허락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수민을 교체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고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남포현감, 박전, 탐라, 제주목사, 이수민.

(숙종 2) 무과에 급제. 장흥부사,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삼도통제사 등을 역임. 1710년(숙종 36) 이때는 제주목사로 부임하지 않았고, 이후 1721년(경종 1) 신임사화로 노론 대신 김창집(金昌集)이 유배도중 통영을 지나자, 그를 호행(護行)하였다 하여 소론의 탄핵을 받아 파직, 제주 정의현에 유배된 지 1년 만에 그곳에서 죽음.

927) 제목(除目): 이조나 병조에서 관리를 제수한 후 만드는 목록. 곧 관리 명단을 일컬음.

❖ 康熙 四十九年 庚寅 八月 十七日 己卯

○ 有政. 吏批, 以權世恒爲修撰, 洪重休爲修撰, 李夏源爲校理, 柳霅爲扶安縣監, 白時耆爲濟州牧使.

❖ 숙종 36년(1710) 경인년 8월 17일(기묘)

□ 백시구(白時耆)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권세항(權世恒)을 수찬으로, 홍중휴(洪重休)을 수찬으로, 이하원(李夏源)을 교리로, 유암(柳霅)을 부안현감으로, 백시구(白時耆)[928]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제수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백시구, 제주목사, 이비.

928) 백시구(1649~1722): 본관은 수원(水原). 자는 덕로(德老). 부친은 백원진(白元振). 1680년(숙종 6) 무과에 응시하여 급제. 함경도와 평안도의 병마절도사를 역임. 제주목사 재임기간은 1710년(숙종 36) 12월~1711년(숙종 37) 5월. 1722년(경종 2) 목호룡의 고변으로 노론 관련자들이 문초받던 도중 옥사. 시호는 충장(忠莊). 유저(遺著)로 《충장부군시고(忠莊府君詩稿)》.

❖ 康熙 四十九年 庚寅 八月 二十六日 戊子

○ 入診時, 提調閔鎭厚所啓, …… 又所啓, 賑恤廳物力凋弊, 北路私賤買得之價, 無以措備, 故故判書李寅燁, 以待蘇殘出給之意, 陳達蒙允矣. 但賑廳, 無蘇殘之期, 而旣買其奴, 不給其價, 有同罔民, 事體未安. 且各司裁減之代, 亦多未給, 各司之漸至殘敗, 職由於此, 此亦非細慮也. 似聞濟州公私賤買賣之價, 置在掌隷院者, 至於錢文累千兩, 而近因防塞買賣, 姑無用處云, 爲先取來此錢, 分給北路奴婢之主, 而濟州買賣, 如或復開, 則自賑廳, 依數備送, 亦無不可. 且宣惠, 嶺南有銀子萬餘兩, 而貢物上下之際, 雖無此銀, 亦可以推移支用, 此亦移送賑廳, 使之補用於奴婢價, 裁減貸用則似好, 故敢達. 上曰, 依爲之. …….【備局謄錄】

❖ 숙종 36년(1710) 경인년 8월 26일(무자)

□ 민진후(閔鎭厚)가 입시하여 북로(北路)의 노비 매득가를 지불할 방도 등에 대해 논의함

○ (약방) 입진 시에,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진휼청(賑恤廳) 물력(物力)이 거의 없어져, 북로(北路) 사노비들의 매득가를 조치하여 준비할 도리가 없기에 여러 번 판서 이인엽(李寅燁)이 사정이 좋아지기를 기다려 출급할 뜻을 진달하여 윤허 받았었습니다. 다만 진휼청 사정이 좋아질 기약이 없는데 이미 노비를 사들여 그 가격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니 백성을 속이는 것과 같아서 상황이 편치 않습니다. 또 각 사(司)에서 헤아려 줄여준 대금 역시 대부분 지급하지 못해 각 사가 점점 쇠잔하여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이 이로부터 연유하니 이 역시 자잘한 우려가 아닙니다. 들으니 제주(濟州)의 공노비와 사노비의 사고 판 자금을 장예원(掌隷院)에 둔 것이 전문(錢文) 수 천 냥에 달하는데, 근자에 매매를 막아놓아서 일단 사용처가 없다고 합니다. 먼저 이 돈을 취해서 북로의 노비 주인들에게 나눠주고, 제주의 매매가 혹시라도 다시 열린다면 진휼청에서 그 숫자대로 갖춰 보내는 것도 역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또 선혜청(宣惠廳)이 영남(嶺南)에 은자 만 여 량이 있는데, 공물이 오고 갈 때 비록 이 은자가 없어도 또한 옮겨 지출할 만하다 하니 이 역시 진휼청으로 옮겨 보내 그로써 노비 가격에 보태 쓰게 하여 빌려 쓴 것을 헤아려 줄이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진휼청, 제주공사노비, 매매가, 장예원, 선혜청.

❖ 康熙 四十九年 庚寅 八月 二十六日 戊子

○ 提調閔鎭厚所啓, 近來禁軍, 無馬者多, 有者亦不好, 蓋因司僕馬乏少而然矣. 聞訓局, 請得濟州山屯馬, 分養各邑, 仍爲取給於軍兵, 而請得之數, 已準於今年云, 此馬, 比他馬頗勝, 若自明年, 以三百匹爲限, 一依訓局例劃給禁軍, 則似好, 故敢達. 上曰, 近來禁軍之馬, 漸不如前, 所達是矣. 依都監例, 限三百匹劃給, 可也.【司僕謄錄】

❖ 숙종 36년(1710) 경인년 8월 26일(무자)

□ 금군(禁軍)의 말을 훈련도감의 예와 같이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뢴 바, "근래 금군(禁軍)[929]에 말이 없는 자가 많고 있는 자도 또한 좋아하지 않으니 대개 사복시 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들으니 훈련도감에서 청하여 허락받은 제주(濟州) 산둔마(山屯馬)를 각 고을에 나눠주고 이어서 군병에게 지급하였는데 청해 허락받은 수가 금년에 이미 찼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에 비해 자못 뛰어나 만약 내년부터 300필로 한정하여 훈련도감의 예와 동일하게 금군에게 지급하면 좋을 듯하여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금군의 말이 점차 전과 같지 않아 아뢴 바가 이러하다. 도감의 예에 의거 300필에 한하여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사복시 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민진후, 금군, 훈국, 제주산둔마.

929) 금군(禁軍): 궁궐을 수비하고 임금을 호위하던 군사. 금병(禁兵).

❖ 康熙 四十九年 庚寅 十二月 二十一日 辛巳

○ 都政. 吏批, 以李師中爲氷庫別提, …… 權倫爲大靜縣監. …….

❖ 숙종 36년(1710) 경인년 12월 21일(신사)

□ 권륜(權倫)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도목정사(都目政事)[930]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이사중(李師中)을 빙고별제(氷庫別提)로, 〈중략〉 권륜(權倫)[931]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권륜, 대정현감, 도정.

930) 도목정사(都目政事): 도정(都政). 도목(都目). 도목정(都目政).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중앙과 지방관리의 치적을 종합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진, 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던 일.
931) 권륜(?~?): 대정현감 재임기간은 1711년(숙종 37) 3월~1713년(숙종 39) 9월.

1711年

❖ 康熙 五十年 辛卯 二月 七日 丙寅

○ 下直, 鐵山府使李弘規, 大靜縣監權倫, 成歡察訪陳溟翰, 彌助項僉使崔斗明.

❖ 숙종 37년(1711) 신묘년 2월 7일(병인)

□ 대정현감(大靜縣監) 권륜(權倫)이 하직함

○ 철산부사(鐵山府使) 이홍규(李弘規), 대정현감(大靜縣監) 권륜(權倫), 성환찰방(成歡察訪) 진명한(陳溟翰), 미조항첨사(彌助項僉使) 최두명(崔斗明)이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권륜, 하직.

❖ 康熙 五十年 辛卯 二月 九日 戊辰

○ 又啓曰, 濟州牧使白時耆, 拿來之代, 今當差出, 而擬望之人乏少, 堂下曾經侍從中, 可合人備擬, 何如? 傳曰, 允.

❖ 숙종 37년(1711) 신묘년 2월 9일(무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의망(擬望)을 시종(侍從) 경력이 있는 당하관(堂下官)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비망(備擬)할 것을 청하는 이비(吏批)의 계

○ (이비가)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백시구(白時耆)를 잡아오고 나서 그 후임을 지금 마땅히 차출해야 하는데, 의망(擬望)에 올릴 사람이 모자라 당하관으로 일찍이 시종(侍從)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비의(備擬)[932]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백시구, 당하관, 비의.

932) 비의(備擬): 비망(備望). 의망(擬望). 관원을 임명할 때 이조, 병조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던 일.

❖ 康熙 五十年 辛卯 二月 九日 戊辰

○ 吏批, 以尹行敎爲承旨, 尹德駿爲判決事, 成壽雄爲金川郡守, 李翊亮爲交河縣監, 李翊漢爲濟州牧使, 李喜聃爲禁府都事, 鄭纘先爲文學, 崔錫恒爲兵曹判書, 鄭栻爲執義, 前縣監宋奎明, 今加通政承傳, 濟州牧使李翊漢, 今加通政, 訓鍊都提調御營廳提調崔錫恒.

❖ 숙종 37년(1711) 신묘년 2월 9일(무진)

□ 이익한(李翊漢)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하고 가자(加資)함

○ 이비(吏批)에 윤행교(尹行敎)를 승지로, 〈중략〉 이익한(李翊漢)[933]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하였다. 〈중략〉 제주목사 이익한은 곧 통정대부(通政大夫)로 가자(加資)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이익한, 제주목사, 가자.

933) 이익한(1659~1735): 본관은 전주. 자 여익(汝翼). 부친은 이상연(李尙淵). 1700년(숙종 26) 춘당대 문과에서 장원급제. 1709년(숙종 35) 임양군(臨陽君)이 진하사(進賀使)로 청나라에 갔을 때 서장관으로 수행하여 외교적 수완을 발휘함. 1710년(숙종 36) 다시 장령에 임명되었는데, 장령 재임 시 재략만 있으면 신분적 제한을 초월하여 발탁하자고 주장하여 숙종의 호의적 반응을 얻음. 제주목사 재임기간은 1711년(숙종 37) 5월~1713년(숙종 39) 7월.

❖ 康熙 五十年 辛卯 二月 十四日 癸酉

○ 備忘記, 傳于李墜曰, 濟州牧使, 以大靜居寺奴, 應先等七名, 溘死狀啓矣. 溘死人等, 令本道恤典擧行.

❖ 숙종 37년(1711) 신묘년 2월 14일(계유)

□ 익사한 대정(大靜) 관아노비 응선(應先) 등 7명에게 휼전(恤典)을 거행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로 이야(李墜)에게 전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대정(大靜)에 사는 관아노비 응선(應先) 등 7명이 익사하였다는 장계에 대해 익사한 사람들은 본도에서 휼전을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대정, 응선, 휼전.

❖ 康熙 五十年 辛卯 二月 二十一日 庚辰

○ 行副護軍權以鎭疏曰, …… 自倭奴上松浦長崎島, 直西以泛則, 出於我國濟州之南, 過羅州黑山島, 以達於中國之閩浙地方. 崇禎己巳年間, 平調興, 因譯舌, 自言渠在江戶時, 將倭等以漢商往來時, 路經一島, 水險而人惡, 頗有所拘礙, 將率兵往攻, 以便往來, 而渠審其處, 則乃我國濟州, 故極力沮止云. 其言固不可信, 而嘉靖乙卯, 倭與唐商, 來犯濟州·長興等處, 姜沆久在倭中, 審知水路, 而乃曰閑山島以西, 海路遙遠, 不可容易過涉, 此我國與倭奴, 西南界相通之海路也, …… 故高麗末, 倭寇侵掠, 陸至燕岐, 水至江華, 必以東萊爲窟穴, 四出剽掠, 不可支吾而後, 用朴葳·鄭地等議, 城金海·東萊·蔚山三處, 使寇來無所止接而後, 海氛以息. …… 答曰, 省疏具悉. 有懷諸陳, 深用嘉之. 宜令廟堂, 商確稟處.

❖ 숙종 37년(1711) 신묘년 2월 21일(경진)

□ 왜적을 방어하는 방안 등을 청하는 권이진(權以鎭)의 상소[934]

○ 행부호군 권이진(權以鎭)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전략〉 일본의 상송포(上松浦) 장기도(長崎島)로부터 곧바로 서쪽으로 뜨면 우리나라 제주(濟州)의 남쪽으로 나가 나주(羅州) 흑산도(黑山島)를 거쳐 중국 민절(閩浙)[935] 지방에 도달합니다. 숭정(崇禎)[936] 기사(己巳)[937] 연간에 평조흥(平調興)[938]이 역관을 통해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에도[江戶]에 있을 때, 장왜(將倭) 등이 한상(漢商)과 왕래할 때 뱃길이 한 섬을 지나는데 물이 험하고 사람들이 나빠서 자못 구애되는 바가 있어서 장차 병졸들을 데리고 가서 공격하여 왕래를 편리하게 하고자 했는데, 저들이 그 곳을 살펴본 즉 우리나라 제주(濟州)여서 극력 저지했다 합니다. 그 말을 곧이 믿을 수는 없지만, 가정(嘉靖)[939] 을묘(乙卯)[940] 왜(倭)와 당상(唐商)이 제주(濟州)와 장흥(長興) 등을 침범했습니다. 강항(姜沆)[941]은 오랫동안 왜에 잡혀있

---

934) 《숙종실록》 권50, 1711년(숙종 37) 2월 21일에도 동일 내용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음.
935) 민절(閩浙): 중국 복건성(福建省)과 절강성(浙江省).
936) 숭정(崇禎): 중국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의종 때 연호. 1628년~1644년임.
937) 기사(己巳): 숭정 연간의 기사년은 1629년임.
938) 평조흥(平調興): 대마도(對馬島) 도주(島主)의 부관(副官). 실제로 그는 대마도를 떠나 에도에서 오랫동안 살았음.
939) 가정(嘉靖): 중국 명나라 세종 때 연호. 1522년~1566년임.
940) 을묘(乙卯): 가정 연간의 을묘년은 1555년임. 이른바 을묘왜변을 가리킴.
941) 강항(1567~1618): 조선 선조 때의 문인, 의병장. 자는 태초(太初). 호는 수은(睡隱), 사숙재(私淑齋).

어서 수로에 대해 잘 알기에 곧 말하기를, 한산도 서쪽은 해로가 아득히 멀어 용이하게 건너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우리나라와 왜노(倭奴)들의 서남 경계가 서로 통하는 바닷길입니다. 〈중략〉 그러므로 고려말 왜구 침략이 육지는 연기(燕岐)에 이르고, 바다는 강화(江華)에 이르는데, 반드시 동래(東萊)를 소굴로 삼아 사방에서 나타나 약탈하니 버틸 수 없게 된 연후 박위(朴葳)·정지(鄭地) 등의 논의를 써서 김해(金海)·동래(東萊)·울산(蔚山) 세 곳에 성을 쌓아 왜구들로 하여금 와서 붙어 살 곳을 없게 한 연후에 바다의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여러 진술한 것에 감회가 있으니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마땅히 묘당(廟堂)에 명령하여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상송포, 장기도, 제주, 나주, 흑산도, 민절, 평조흥, 강항, 연기, 강화, 박위, 정지, 김해, 동래, 울산.

정유재란 때에 남원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싸웠으며, 경사백가(經史百家)에 통달하고, 포로로 일본에 있으면서 그곳에 성리학을 전함. 저서《간양록》,《수은집》.

❖ 康熙 五十年 辛卯 四月 二十四日 壬午

○ 李鳳祥,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旌義縣監鄭東里, 遞任進上馬二匹上來, 俱有步才, 實合於駕轎馬. 且以體小, 似不可立養於內寺, 而遞任進上馬, 內寺立養, 從前規例, 故依例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37년(1711) 신묘년 4월 24일(임오)

□ 정의현감(旌義縣監) 정동리(鄭東里)의 체임진상마 2필의 털빛을 별단으로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이봉상(李鳳祥)이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 정동리(鄭東里)의 체임진상마 2필이 올라 왔는데 모두 보재(步才)가 있어서 실로 가교마(駕轎馬)로 적합합니다. 또 체구가 작아서 내시(內侍)에서 입양(立養)할 수 없을 듯하니 체임진상마의 내시 입양은 예전 규례를 따르겠습니다. 예에 의거 털빛을 별단에 써서 들일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정동리, 체임진상마, 이봉상.

❖ 康熙 五十年 辛卯 四月 二十六日 甲申

○ 濟州牧使狀啓, 寺奴海一等二十六名溺死事, 傳于李鳳祥曰, 事極驚慘, 令本州各別恤典擧行.

❖ 숙종 37년(1711) 신묘년 4월 26일(갑신)

□ 해일(海一) 등 26명이 익사했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관아노비 해일(海一) 등 26명이 익사한 일에 대해 이봉상(李鳳祥)에게 전교하기를, "일이 매우 놀랍고 비참하니 본주(本州)에서 각기 특별히 휼전(恤典)을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해일, 이봉상.

❖ 康熙 五十年 辛卯 六月 二十九日 丁亥

○ 有政. 吏批, 以崔仁厓爲長連縣監, 趙命周爲旌義縣監. …….

❖ 숙종 37년(1711) 신묘년 6월 29일(정해)

□ 조명주(趙命周)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최인후(崔仁厚)을 장련현감(長連縣監), 조명주(趙命周)[942]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조명주, 정의현감, 이비.

942) 조명주(1665~?): 본관은 배천[白川]. 자는 유성(有聖). 부친은 조술행(趙述行). 1702년(숙종 28) 식년 무과에 병과 급제. 정의현감 재임기간 1711년(숙종 37) 9월~1713년(숙종 39) 8월.

❖ 康熙 五十年 辛卯 七月 六日 癸巳

○ 又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年例進上馬八匹內, 一匹到中路病留, 一匹逃逸, 御乘馬二十匹內, 二匹到中路病留, 一匹逃逸, 三名日進上馬六十匹內, 二匹到中路病留, 一匹故失, 差備進上馬八十匹內, 七匹到中路病留, 一匹船中故失, 兵曹別請山屯馬一百匹內, 三匹到中路病留, 一匹到本寺故失, 合二十匹計除, 實納馬二百四十八匹. 禾毛色別單書入, 而其中兵曹山屯馬, 則今方喂養各邑, 明春上來後, 當爲分給軍兵, 而今此年例進上馬·御乘馬·三名日進上馬·差備進上馬, 名目與他有別, 其在事體, 所當益加惕念封進, 而擧皆品劣, 所見無形. 近來濟州馬種, 雖云漸不如舊, 苟能十分精擇, 則何至於此? 事甚可駭, 濟州牧使, 姑先從重推考, 以警日後. 且聞自前船運下陸之後, 各邑曾無着實護送之道, 循例出給於村民, 以致不善喂養, 惟以急速遞傳爲主, 故雖幸而不至於傷斃, 率多未免疲瘠之患者, 實由於此, 而今番之馬, 疲瘠亦甚矣. 此弊不可不嚴加申飭, 各道監司及一路守令, 竝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숙종 37년(1711) 신묘년 7월 6일(계사)

□ 제주(濟州) 진상마(進上馬)의 품질이 좋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말을 육로로 운반할 때 신중히 하도록 각도의 감사 등에게 신칙할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또 사복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先運)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중 1필은 도중에 병들어 머물고 1필은 도망쳤으며, 어승마(御乘馬) 20필 중 2필은 도중에 병들어 머물고 1필은 도망쳤으며,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중 2필은 도중에 병들어 머물고 1필은 잃어버렸으며, 차비진상마(差備進上馬) 80필 중 7필은 도중에 병들어 머물고 1필은 배 안에서 잃어버렸으며, 병조에서 별도로 요청한 산둔마(山屯馬) 100필 중 3필은 도중에 병들어 머물고 1필은 본 관아에 도착해서 잃어버려 합계 20필을 제외한 실제로 말을 바친 것은 248필입니다. 나이와 털빛을 별단에 써서 들이고 그 중에 병조 산둔마는 곧 지금 각 고을에서 잘 기르도록 하여 내년 봄 올라온 후에 마땅히 군병에게 나누어 지급하고, 지금 이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어승마(御乘馬)·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차비진상마(差備進上馬)는 명목이 다른 것과 특별히 달라 그 일의 본체에 있어 마땅히 더욱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해 봉

진해야 하는데, 대부분 품질이 낮고 볼만한 형체도 없습니다. 근래 제주(濟州)의 마종(馬種)이 비록 점차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참으로 최선을 다해 정밀하게 가려 뽑았다면 어찌 여기에 이르겠습니까? 일이 매우 놀라우니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짐짓 먼저 종중추고(從重推考)하여 이로써 훗날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전부터 들으니 배로 운송하여 육지에 내린 후 각 고을에서 일찍이 착실히 호송하는 방도 없이 관례에 따라 촌민(村民)에게 내주어 잘 기르도록 하지 않고 오직 급속히 교대로 전하는 것이 주가 되어, 비록 요행히 다쳐 죽는데 이르지 않아도 대략 피폐하고 야위게 되는 근심을 면치 못한 것이 많아 실로 이로 말미암아 금번의 말도 피폐하고 야윈 것 또한 심합니다. 이런 폐단에 엄하게 신칙을 더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각 도의 감사 및 도중의 수령들도 아울러 추고하여 정신 차리도록 꾸짖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연례진상마, 어승마, 삼명일진상마, 차비진상마, 산둔마, 제주목사.

❖ 康熙 五十年 辛卯 七月 十五日 壬寅

○ 今日召對時, …… 上曰 金春澤, 昨年六月間, 因判義禁陳稟, 有出陸減等之命矣. 當初春澤之定配濟州, 意有所在, 今雖出陸, 至於減等, 則爲徒三年, 過三年後, 當至全釋, 殊甚不當, 減等則還寢, 可也. 參贊官任舜元曰, 配所仍前乎? 抑移配乎? 上曰, 仍其出陸, 而只寢其減等, 非移配也. 舜元曰, 當爲勿限年定配乎? 上曰, 然矣.【已上朝報】

❖ 숙종 37년(1711) 신묘년 7월 15일(임인)

□ 유배인 김춘택(金春澤)의 감등(減等) 취소에 대해 논의함[943]

○ 금일 소대(召對)[944]할 때,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김춘택(金春澤)은 작년 6월 사이에 판의금부사의 진술 때문에 출륙(出陸)하여 감등(減等)하라는 명을 내렸다. 당초에 김춘택을 제주(濟州)에 정배(定配)한 것은 뜻을 둔 바가 있어서이다. 지금 비록 출륙하여 감등에 이르면 도(徒) 3년이 되고, 3년이 지난 후에는 마땅히 완전 석방해야 하니 심히 부당하여 감등을 중단함이 옳다."라고 하였다. 참찬관(參贊官)[945] 임순원(任舜元)이 말하기를, "배소는 예전대로 둡니까? 아니면 이배(移配)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로 출륙하되 다만 감등하지 말고, 이배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임순원이 말하기를, "기한을 정하지 말고 정배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조보(朝報)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김춘택, 임순원, 제주, 출륙, 정배.

---

943) 《숙종실록》 권50, 1711년(숙종 37) 7월 16일에도 동일 내용이 간략히 실려 있음.

944) 소대(召對): 임금의 부름에 응함. 왕명으로 입대(入對)하여 정사에 관한 의견을 상주함. 임금이 경연의 참찬관 이하를 불러서 몸소 글을 강론함.

945) 참찬관(參贊官): 경연에 참석했던 정3품 관직. 승정원의 6승지와 홍문관 부제학 1명, 총 7명으로 구성.

❖ 康熙 五十年 辛卯 七月 十八日 乙巳

○ 韓配周, 以義禁府言啓曰, 今七月十六日召對入侍時, 上曰, 金春澤, 昨年六月間, 因判義禁陳稟, 有出陸減等之命矣. 當初春澤之定配濟州, 意有所在, 今雖出陸, 至於減等, 則爲徒三年, 准三年後, 當至全釋, 殊甚不當, 減等則還寢, 可也. 舜元曰, 配所仍前乎? 抑移配乎? 上曰, 仍其出陸, 而只寢其減等, 非移配也. 舜元曰, 當爲不限年定配乎? 上曰, 然矣事, 命下矣. 減等罪人金春澤, 仍前罪目, 不限年定配事, 徒流案中改錄之意, 本道監司處, 分付, 何如? 傳曰, 允.

❖ 숙종 37년(1711) 신묘년 7월 18일(을사)

□ 김춘택(金春澤)의 감등(減等) 내용을 도류안(徒流案)에 고쳐 적겠다는 의금부의 계

○ 한배주(韓配周)가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금번 7월 16일 소대(召對) 입시할 때 임금께서 말하기를, '김춘택(金春澤)은 작년 6월 사이에 판의금부사의 진술 때문에 출륙(出陸)하여 감등(減等)하라는 명을 내렸다. 당초에 김춘택을 제주(濟州)에 정배(定配)한 것은 뜻을 둔 바가 있어서이다. 지금 비록 출륙하여 감등에 이르면 도(徒) 3년이 되고, 3년에 이른 후에는 마땅히 완전 석방해야 하니 심히 부당하여 감등을 중단함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임순원(任舜元)이 말하기를, '배소는 예전대로 둡니까? 아니면 이배(移配)합니까?'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로 출륙하되 다만 감등하지 말고, 이배는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임순원이 말하기를, '기한을 정하지 말고 정배해야 합니까?'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라는 일을 명령 내렸습니다. 감등 죄인 김춘택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정배하는 일을 도류안(徒流案)[946] 중에 고쳐 적으라는 뜻을 본도 감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한배주, 김춘택, 임순원, 제주, 출륙, 정배, 도류안.

---

946) 도류안(徒流案):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에 처해진 자의 이름을 적은 명부.

❖ 康熙 五十年 辛卯 七月 二十八日 乙卯

○ 今春夏等褒貶, 濟州判官申善綄, 旌義縣監鄭東里, 大靜縣監權倫, 以上中.

❖ 숙종 37년(1711) 신묘년 7월 28일(을묘)

□ 제주판관(濟州判官) 신선완(申善浣)[947] 등의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 결과

○ 이번 봄여름 지방관 평가로 제주판관(濟州判官) 신선완(申善浣), 정의현감(旌義縣監) 정동리(鄭東里), 대정현감(大靜縣監) 권륜(權倫) 이상은 '중(中)'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신선완, 정의현감, 정동리, 대정현감, 권륜.

947) 원문에는 신선환(申善綄)으로 되어 있으나, 본서 1709년(숙종 35) 8월 16일(갑인)에 의하면 제주판관에 임명된 인물은 신선완(申善浣)으로 되어 있으며, 이후 기사에도 신선완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역주자가 신선완으로 바로 잡음.

❖ 康熙 五十年 辛卯 八月 十六日 癸酉

○ 下直, 淮陽府使鄭齊斗, 成川府使尹趾慶, 知世浦萬戶朴秀山, 旌義縣監趙命周, 和順縣監金夏明, 德山縣監崔尙鼎, 鎭安縣監洪禹傳, 柒原縣監全聖徵.

❖ 숙종 37년(1711) 신묘년 8월 16일(계유)

□ 정의현감(旌義縣監) 조명주(趙命周) 등이 하직함

○ 회양부사(淮陽府使) 정제두(鄭齊斗), 성천부사(成川府使) 윤지경(尹趾慶), 지세포만호(知世浦萬戶) 박수산(朴秀山), 정의현감(旌義縣監) 조명주(趙命周), 화순현감(和順縣監) 김하명(金夏明), 덕산현감(德山縣監) 최상정(崔尙鼎), 진안현감(鎭安縣監) 홍우전(洪禹傳), 칠원현감(柒原縣監) 전성징(全聖徵)이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조명주, 하직.

❖ 康熙 五十年 辛卯 八月 十六日 癸酉

○ 以權憘擢承旨, …… 柳廷喬爲濟州敎授, …….

❖ 숙종 37년(1711) 신묘년 8월 16일(계유)

□ 유정교(柳廷喬)를 제주교수(濟州敎授)에 제수함

○ 권업(權憘)을 승지에, 〈중략〉 유정교(柳廷喬)[948]를 제주교수(濟州敎授)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유정교, 제주교수.

948) 유정교(1649~?):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중고(仲高). 부친은 유제(柳堤). 1679년(숙종 5) 식년문과에 병과 급제.

❖ 康熙 五十年 辛卯 十一月 二十五日 庚戌

○ 李世最,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判官申善浣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而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37년(1711) 신묘년 11월 25일(경술)

□ 제주판관(濟州判官) 신선완(申善浣)의 체임진상마 3필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내구(內廐)에서 입양하겠다는 사복시의 계

○ 이세최(李世最)가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 신선완(申善浣)의 체임진상마 3필이 이제 겨우 올라 왔습니다. 나이와 털빛을 별단에 써서 들이고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에 입양(立養)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신선완, 체임진상마, 이세최.

❖ 康熙 五十年 辛卯 十二月 十八日 壬申

○ 李世最, 以刑曹言啓曰, 備忘記內, 邦慶非常, 詎無曠蕩之典, 禁府·刑曹時囚中, 除綱常贓汚殺人强盜咀呪外, 雜犯死罪以下, 該承旨卽爲馳往, 一一放釋, 徒配罪人一併放送. 吏兵曹歲抄, 竝爲蕩滌, 諸道留獄罪人, 一體爲之事, 命下之後, 已自政院, 下諭諸道, 而本曹所管徒配罪人中, 或有到配, 而未及啓聞者, 亦爲一體放釋事, 發關分付于八道及開城府·江華府·濟州牧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37년(1711) 신묘년 12월 18일(임신)

□ 나라의 경사를 맞이하여 도배(徒配) 죄인 등을 모두 석방하라고 제주목(濟州牧) 등에 분부하겠다는 형조의 계[949]

○ 이세최(李世最)가 형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비망기 속에 '나라의 경사가 보통이 아닌데, 어찌 광탕(曠蕩)의 은전(恩典)[950]이 없겠는가? 의금부와 형조에 현재 갇혀 있는 죄수 중 강상(綱常), 장오(贓汚), 살인(殺人), 강도(强盜), 저주(詛呪)를 제외한 나머지 잡범으로 사죄(死罪) 이하는 해당 승지가 즉시 달려가 일일이 석방하고, 도배(徒配) 죄인은 한 결 같이 아울러 석방하여 돌려보내며, 이조·병조의 세초(歲抄)에 모두 죄명을 씻어주고, 여러 도(道)의 유옥(留獄)[951] 죄인도 똑같이 하라.'는 일을 명령 내린 후 이미 승정원에서 여러 도에 하유(下諭)하였습니다. 본조 소관 도배 죄인 중 혹은 유배지에 도착했거나 아직 아뢰지 못한 것 또한 일체 석방하라는 일을 공문으로 8도 및 개성부(開城府), 강화부(江華府), 제주목(濟州牧)에 분부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이세최, 도배, 개성부, 강화부, 제주목.

---

949) 《숙종실록》 권50, 1711년(숙종 37) 12월 16일에는 동일 내용이 임금의 교서로 실려 있음.
950) 광탕지전(曠蕩之典):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내리는 대사면 또는 특별사면의 은전(恩典).
951) 유옥(留獄): 처결하지 않고 미루어 둔 옥사.

❖ 康熙 五十年 辛卯 十二月 十九日 癸酉

○ 李世最,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泰安漂到人處, 問情譯官手本, 則漂人等, 俱是登萊等州商販之類, 一如監司·水使狀聞, 而諭以修葺船隻後, 放回之意, 則渠等以爲, 若再涉海洋, 則必無可生之路, 深願朝廷, 從旱路送到鳳凰城, 其言縷縷反覆, 意望不啻懇迫云. 蓋其遇風漂蕩之際, 同船十人, 已爲凍傷致死, 生存者, 爲三十七人, 而旣經風濤艱險, 僅得生活, 故畏懼海路, 有此從陸之願. 伴送弊端, 雖爲不貲, 渠等旣是大國之人, 而以關係死生爲言, 登萊雖隔一海, 迫令還由來路, 就其危地, 事涉矜惻. 且有甲子丙戌, 珍島·濟州漂到人, 從陸路押送之前例, 今亦缺一行獲, 仍令問情譯官, 竝其物件缺一行似當, 供饋守直等事, 所缺俾無淹滯之意, 兩道監司處, 竝爲分付, 何如? 傳曰, 允.

❖ 숙종 37년(1711) 신묘년 12월 19일(계유)

□ 태안(泰安)에 표류해 온 중국 상인들이 육로로 압송하는 문제에 대해 감사에게 분부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이세최(李世最)가 비변사의 말로써 아뢰기를, "태안(泰安)에 표류한 사람들에게 문정(問情)[952]한 역관(譯官)의 글을 본 즉 표류한 사람들은 모두 등주(登州), 내주(萊州) 등의 상인 부류로 감사, 수사가 임금에게 아뢴 글과 한 결 같은데 배를 수리한 후에 되돌아 갈 뜻을 물으니 '저희들이 만약 다시 바다를 건너면 반드시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조정에 간절히 원하기를, 육로를 따라 봉황성(鳳凰城)에 보내달라고 그 말을 누누이 반복하며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라'고 운운하였습니다. 대개 바람을 만나 표류할 즈음 같은 배에 탔던 10인은 이미 동상에 걸려 치사하였고, 생존자는 37인인데 이미 풍랑으로 고통을 겪어 겨우 살아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해로가 두려워 이처럼 육지로 가는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반송(伴送)의 폐단으로 비록 재물이 없다 해도 저들은 이미 대국의 사람이고 죽고 사는데 관계된다고 말하여 등주, 내주가 비록 한 바다로 떨어져 있지만 강제로 왔던 길로 돌아가도록 해서 위험한 지경에 보내면 일이 불쌍하고 가엾게 됩니다. 또 갑자년(1684), 병술년(1706)에 진도(珍島), 제주(濟州)에 표류한 사람들을 육로로 압송한 전례가 있으니 지금 또한 【1행이 빠짐】, 문정한 역관에게 명하여 모두 그 물건을 【1행이 빠짐】, 음식을 주고 지키는 등의 일은 【빠짐】 지체 없이 할

952) 문정(問情): 외국 배가 처음 항구에 들어오면 관리를 보내 그 사정을 묻는 일.

뜻을 양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이세최, 태안, 표류, 등주, 내주, 봉황성, 진도, 제주.

1712年

❖ 康熙 五十一年 壬辰 一月 十七日 辛丑

○ 吏批啓曰, 判書趙泰耉牌招不進, 參判李健命在外,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只出緊任. 又啓曰, 左議政金昌集, 旣已遞職, 今當置處, 而本曹無相當之窠, 依例送西之意, 敢啓. 傳曰, 知道. 又啓曰, 新除授濟州敎授柳廷喬呈狀內, 素有風痰之病, 自去秋, 眩症越添, 委頓寢席, 萬無赴任之勢, 入啓處置云, 海外敎授之任, 不可輕遞, 而聞其所患甚重, 有難强令赴任, 改差, 何如? 傳曰, 允.

❖ 숙종 38년(1712) 임진년 1월 17일(신축)

□ 새로 제수된 제주교수(濟州敎授) 유정교(柳廷喬)가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여 교체를 건의하는 이비(吏批)의 계

○ 이비(吏批)가 아뢰기를, "판서 조태구(趙泰耉)는 패초(牌招)[953]했는데도 나오지 않았고, 참판 이건명(李健命)은 지방에 있어서 소신(小臣)이 홀로 정무를 처리하는 것이 편치 않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단지 긴요한 직임만 차출하라."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은 이미 교체되어 지금 마땅히 치처(置處)[954]해야 하나 본조(이조)에는 상당한 관직이 없으니 예에 의거 병조로 보낼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제주교수(濟州敎授) 유정교(柳廷喬)가 올린 글 속에 '본래 풍담(風痰)[955]의 병이 있어서 지난 가을부터 어지럼증이 점점 더해 병석에 누워 있어 결코 부임할 형편이 못되니 임금께 글을 올려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해외 교수의 직임은 가벼이 교체할 수 없고 병환이 매우 중한 바를 들으니 강제로 부임토록 명령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조태구, 이건명, 김창집, 유정교, 제주교수.

---

953) 패초(牌招): 임금이 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르는 일. 일명 패소(牌召)·명소(命召)·명초(命招)라고도 함. 임금이 필요한 신하를 불러서 국사를 의논할 때 주간에는 승정원에 명령을 내려 입시하도록 하였으나, 긴급사태나 야간에 신하를 대면할 경우, 임금은 승지에게 부를 신하의 직위와 이름을 말하면 승정원에서 '명(命)'자를 새긴 나무패 뒷면에 부를 신하의 이름을 적어 보냄.

954) 치처(置處): 사직한 정승을 돈녕부(敦寧府)나 중추부(中樞府)의 관직에 임명하는 것을 말함.

955) 풍담(風痰): 풍증(風症)을 일으키는 담(痰), 또는 풍증으로 인해 생기는 담.

❖ 康熙 五十一年 壬辰 一月 二十六日 庚戌

○ 以金泳爲軍資主簿, …… 鄭希良爲濟州敎授, …….

❖ 숙종 38년(1712) 임진년 1월 26일(경술)

□ 정희량(鄭希良)을 제주교수(濟州敎授)에 제수함

○ 김영(金泳)을 군자시(軍資寺) 주부에, 〈중략〉 정희량(鄭希良)[956]을 제주교수(濟州敎授)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정희량, 제주교수.

956) 정희량(1662~1751):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국경(國卿). 정희관(鄭希寬)으로 개명함. 부친은 정종지(鄭宗智). 제주도 구좌읍 상도리(上道里) 출신. 1680년(숙종 6) 제주안핵 겸 순무어사 이증(李增)이 제주도에 들어와 시취(試取)를 하였는데, 이 시험에 응시함. 시제가 〈승부부해론(乘桴浮海論)〉이었는데 혼자 문과 별시 병과에 급제. 경북 문경의 유곡찰방(幽谷察訪)을 역임. 그의 제주교수 제수 사실은 본 《승정원일기》 1694년(숙종 20) 5월 19일(병진)에도 전하여 전후 두 차례 제주교수에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의 아들 정창선(鄭敞選)도 식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함[본 《승정원일기》 1717년(숙종 43) 11월 신해일 참조].

❖ 康熙 五十一年 壬辰 一月 二十八日 壬子

○ 李世最, 以禮曹言啓曰, 濟州十二月令宗廟·永昭殿·敬寧殿薦新唐柚子, 來到奉常寺. 而本寺提調有故, 臣鎭圭進來看品, 則宗廟薦新五十五箇, 永昭殿·敬寧殿各五箇, 竝與其加封者. 而腐傷甚多, 擇其全體不爲腐傷者, 則僅滿十三箇, 在前如此之時, 不得已宗廟各室及兩殿, 各以一箇薦進矣. 今亦他無變通之道, 不得已依前例, 各一箇薦進. 而海外遠道, 有難計其路程, 中路遲滯之際, 腐傷之患, 勢所難免. 而若加定其剩數, 則雖多腐傷, 亦不無推移之端, 前頭封進時, 使之依此擧行, 何如? 傳曰, 允.

❖ 숙종 38년(1712) 임진년 1월 28일(임자)

□ 제주(濟州)에서 종묘 등에 천신(薦新)한 당유자(唐柚子)가 거의 상해서 앞으로 봉진할 때 더 많을 수량을 보내도록 청하는 예조의 계

○ 이세최(李世最)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12월 월령(月令)으로, 종묘(宗廟)·영소전(永昭殿)·경녕전(敬寧殿)에 천신(薦新)[957]할 당유자(唐柚子)가 봉상시(奉常寺)에 들어 왔습니다. 본 관아의 제조(提調)가 유고(有故)이므로 신(臣) 진규(鎭圭)[958]가 가서 품질을 살펴보니 종묘에 천신할 55개, 영소전, 경녕전 각 5개는 모두 더 바친 것과 더불어 썩고 상한 것이 매우 많아서 전체 중에 썩지 않은 것을 고르니 겨우 13개여서 전에도 이럴 때는 부득이 종묘의 각 실(室) 및 양전에 각 1개씩 올렸습니다. 이제 또한 달리 변통할 도리가 없으니 부득이 전례에 의거 각 1개씩 올리겠습니다. 해외의 먼 지방에서 그 노정을 가늠하기 어려워 중도에 지체할 즈음 썩고 상하는 걱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남는 수량을 더 정해서 비록 썩고 상한 것이 많아도 또한 일을 추진해 갈 실마리가 있게 되니 앞으로 봉진할 때 이에 의거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이세최, 김진규, 제주, 종묘, 영소전, 경녕전, 당유자.

---

957) 천신(薦新): 새로 나는 물건을 먼저 신위(神位)에 올리는 일. 월령천신(月令薦新)은 다달이 정례로 종묘에 올리는 천신을 말함.

958) 진규(鎭圭): 김진규(金鎭圭). 조선왕조실록 1712년(숙종 38) 1월~2월 기록을 살펴보면 김진규는 당시 예조참판으로 재직하고 있었음.

❖ 康熙 五十一年 壬辰 二月 五日 戊午

○ 趙泰耉所啓, 濟州敎授, 曠任已久矣. 新除授敎授鄭希良, 以濟州人候風越海, 往還遲速, 有難預期. 此雖與在官移職者有異, 海外絶島, 亦異於陸地, 詢問大臣, 使之除朝辭赴任, 何如? 上曰, 絶島之人, 與他似異, 大臣之意, 何如? 李頤命曰, 在家者除朝辭, 雖異常例, 絶島之人, 與他有別. 在前直赴者, 不及殿試, 則或許付他科, 朝意軫念之意如此, 特令除朝辭赴任, 不妨爲優恤之典矣. 上曰, 依爲之. 出擧條 遂罷出.【以上燼餘】

❖ 숙종 38년(1712) 임진년 2월 5일(무오)

□ 제주교수(濟州敎授) 정희량(鄭希良)에게 조사(朝辭) 없이 부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조태구(趙泰耉)가 아뢴 바, "제주교수(濟州敎授)는 임용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랩니다. 새로 제수한 교수 정희량(鄭希良)은 제주인(濟州人)으로서 바람을 기다려 바다를 건너 왕복하는데 빠르고 늦음을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비록 현직에 있으면서 다른 관직으로 옮기는 것과 다르며, 해외의 절도(絶島)는 또한 육지와 다르니 대신에게 물어서 조사(朝辭)[959]를 하지 않고 부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절도의 사람은 다른 곳과 다른 듯하니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집에 있는 자를 조정에 하직 인사 없이 보내는 것이 비록 상례에 달라도 절도의 사람은 다른 곳과 다름이 있습니다. 전에도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가 전시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혹 다른 과거에 응시를 허용하여 조정의 뜻과 임금의 마음 쓰는 뜻이 이와 같았으니 특별히 조사 없이 부임하도록 명령하여 두텁게 은혜를 베푸는 은전으로 삼아도 무방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거조(擧條)에 나옴】 드디어 끝나고 나갔다.【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조태구, 이이명, 제주교수, 정희량.

---

959) 조사(朝辭): 사조(辭朝). 지방관에 임명된 사람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림.

❖ 康熙 五十一年 壬辰 四月 四日 丙辰

○ 禮曹啓曰, 濟州, 去二月令宗廟·永昭殿·敬寧殿薦新靑橘, 來到奉常寺, 而本寺提調有故, 臣大成, 進來看品, 則宗廟薦新一百九十八箇, 永昭殿·敬寧殿各十八箇, 竝與其加封者, 而腐傷甚多. 擇其全體不爲腐傷者, 則堇備五十二箇. 在前如此之時, 不得已宗廟各室及兩殿, 減其數, 薦進矣. 今亦無他變通之道, 依前例, 各以四箇推移封進之意, 敢啓. 傳曰, 允.【以上禮曹謄錄】

❖ 숙종 38년(1712) 임진년 4월 4일(병진)

□ 제주(濟州)에서 봉진한 청귤(靑橘)이 썩고 상한 것이 많아 종묘 등에 줄여서 올리겠다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지난 2월 월령(月令)으로, 종묘(宗廟)·영소전(永昭殿)·경녕전(敬寧殿)에 천신(薦新)할 청귤(靑橘)이 봉상시(奉常寺)에 들어왔습니다. 본 관아의 제조(提調)가 유고(有故)이므로 신(臣) 대성(大成)[960]이 가서 품질을 살펴보니 종묘에 천신할 198개, 영소전, 경녕전 각 18개는 모두 더 바친 것과 더불어 썩고 상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전체 중에 썩지 않은 것을 고르니 겨우 52개입니다. 전에도 이럴 때는 부득이 종묘의 각 실(室) 및 양전에 그 수량을 줄여 올렸습니다. 이제 또한 달리 변통할 도리가 없으니 부득이 전례에 의거 각 4개씩으로 바꾸어 올릴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종묘, 영소전, 경녕전, 청귤, 이대성.

960) 대성(大成): 이대성(李大成). 《숙종실록》 1712년(숙종 38) 2월~4월 기록을 살펴보면 이대성은 당시 이조참의로 재직하고 있었음.

❖ 康熙 五十一年 壬辰 五月 二十日 壬寅

○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行兵曹判書崔錫恒所啓, 武科出身元數二百七十一人內, 壯元一人, 禁軍二十三人, 年過六十者一人, 依例除防. 平安道三十人, 咸鏡道二人, 濟州一人, 依例本道分付. 廣州五人, 依例納米於南漢山城, 此外二百八人, 依前定奪, 使之納於北漢之意敢達. 上曰, 依爲之.

❖ 숙종 38년(1712) 임진년 5월 20일(임인)

□ 무과 출신(出身)들의 제방(除防)과 납미(納米) 배속을 결정하는 병조판서 최석항(崔錫恒)의 계

○ 대신과 비변사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할 때, 행병조판서 최석항(崔錫恒)이 아뢴 바, "무과 출신 원래 인원 271인 중 장원 1인, 금군 23인, 나이 60세가 넘은 자 1인은 예에 의거 제방(除防)[961] 하겠습니다. 평안도 30인, 함경도 2인, 제주(濟州) 1인은 예에 의거 본도에 나누어 주겠습니다. 광주(廣州) 5인은 예에 의거 남한산성에 납미(納米)하고, 이밖에 208인은 전에 결정한 것에 의거 북한산성에 납미하도록 할 뜻을 감히 올립니다."하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최석항, 제주.

---

961) 제방(除防): 부방(赴防)을 면제함. 부방은 서북 변경의 국경지대에 파견되어 방위 임무를 맡은 일이다. 조선 성종 때부터 실시하였으며, 무과 출신으로서 60세가 지난 자, 양친이 80세 이상인 자, 남한산성 근무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북 국경지대의 변경과 해안에 한 번씩 부방함. 이에 면제된 자는 그 대가로 규정된 수량의 곡식을 납부하였는데, 이를 제방미(除防米)라고 함.

❖ 康熙 五十一年 壬辰 六月 十四日 丙寅

○ 李世最, 以司饔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濟州五月朔進上, 今日來納, 而物種中搥鰒元數二百四十貼內, 十貼欠縮, 莫重進上, 如是不謹, 事甚駭然, 不可無警責之道. 濟州牧使李翊漢, 推考, 何如? 傳曰, 允.

❖ 숙종 38년(1712) 임진년 6월 14일(병인)

□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추복(搥鰒)의 수량이 부족하다고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한(李翊漢)의 추고를 청하는 사옹원의 계

○ 이세최(李世最)가 사옹원 관원으로 감선(監膳)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5월 초하루 진상이 오늘 와서 들였습니다. 물종 중 추복(搥鰒)의 본래 수량 240첩 중 10첩이 부족합니다. 막중한 진상이 이처럼 삼가지 않아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크게 꾸짖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한(李翊漢)을 추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추복, 진상, 제주목사, 이익한, 이세최.

❖ 康熙 五十一年 壬辰 六月 二十日 壬申

○ 引見時, …… (領議政徐宗泰所啓), …… 又所啓, 濟州牧使李翊漢狀啓, 以本牧逃故貧殘奴婢未收貢米, 特蒙蕩減事, 陳請矣. 頃因特敎, 以辛卯以上軍兵奴婢逃故之侵徵隣族者, 一倂精査蕩減事, 行會諸道矣. 今此狀啓以爲, 本島軍兵奴婢, 元無米布上納之規, 只以寺奴婢貢米, 會錄於戶曹, 以爲各樣公料之地矣. 連値凶歉, 丙戌·戊子·庚寅三年條未捧貢米, 至於一千五百石零, 而就其中, 明査抄出, 則物故逃亡奴婢未收之米, 合爲四十三石零, 貧殘奴婢未收米, 爲二百十三石零, 逃故未收, 宜入於蕩減之中, 而至於貧殘, 毋論豐凶, 持瓢行乞之民也. …… 吏曹參判尹趾仁曰, 以狀啓觀之, 三年條未收奴婢貢米, 一千五百石云, 而逃故貧殘未收二百餘石之外, 其餘未捧, 無區別之事, 措語似不分明矣. 左參贊趙泰采曰, 各司奴婢身貢之未收與軍兵逃故身布之逋欠有異, 牧使初不狀啓請減則已, 旣請之後, 則數百石穀物, 元非關重, 其在一視之道, 宜許蕩減, 以慰海外窮民之望, 似不可已矣. 上曰, 絶島之民, 與他有異, 牧使旣已狀請, 特爲蕩減, 可也. 又所啓, 濟州牧使狀啓, 以今春移轉穀物, 又於收捧後, 仍留本州, 以爲待變之需之意, 陳請矣. 本州頻有災荒, 前後入送穀物, 其數甚多, 魚藿代捧之令, 亦不得擧行. 近來魚藿之產, 視前罕貴, 收捧之難, 其勢使然矣. 每於移穀之後, 輒無還報之事, 而其請未已, 則朝家應副, 亦將難繼, 而本州旣是絶海, 運粟還納, 固是不易事. 民業素甚窮殘, 朝家常加特恤, 今春移轉, 只是租太竝三千五百石, 待秋捧留, 會錄取耗事, 特依狀請施行, 三邑還穀, 元來不裕, 仍以爲待變救荒之資, 今後毋復請粟之意, 竝爲申飭, 何如? 上曰, 狀啓以若許捧留此穀, 則更勿請移粟之意, 爲語矣. …… 左參贊趙泰采曰, 濟州之民, 雖以漁採爲業, 而衣食尙患難繼, 有何餘力, 可以充報所食之穀乎? 以魚藿收捧, 其勢似難, 莫如依牧使狀聞, 以穀物從便收捧, 仍留本牧, 以爲糶糴賑救之資, 第旣許捧留之後, 則其着實收捧, 有未可必, 前後移轉, 待秋捧置, 使之牒報備局, 而自備局仍爲句管, 則似無虛踈之慮矣. 上曰, 前後所給穀物, 使本牧着實捧留, 而自備局句管, 可也.

❖ 숙종 38년(1712) 임진년 6월 20일(임신)

□ 인견에 서종태(徐宗泰) 등이 입시하여 제주의 공미(貢米) 탕감 등에 대해 논의함

○ 인견할 때, 〈전략〉 [영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아뢰기를], 〈중략〉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 이익한(李翊漢)의 장계로 본목(本牧)의 도망하여 죽거나 가난한 노비

들의 걷지 못한 공미(貢米)를 특별히 탕감해주는 은혜를 입는 일을 진달해 요청하였습니다. 전번에 특별한 교지로 인해 신묘년 이전의 군병(軍兵) 노비(奴婢) 도망하거나 죽어서 가까운 친족에게 징수를 당한 자들인 경우, 한꺼번에 낱낱이 조사해서 탕감해주는 일을 여러 도에서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지금 이 장계에서 이르기를, '본 섬의 군병노비들에게는 원래 미포(米布)를 상납하는 규례가 없고, 다만 관청노비 공미(貢米)만을 호조(戶曹)에 회록(會錄)하여, 각종 공료(公料)의 방도로 삼았습니다. 연이어 흉년으로 병술(丙戌)·무자(戊子)·경인(庚寅) 삼년 조의 거두지 못한 공미가 1,500석 남짓에 달하는데, 그 중에 철저히 조사해 뽑아 보니 죽거나 도망한 노비에게서 거둬들이지 못한 쌀이 모두 43석 남짓이고 가난한 노비에게서 거둬들이지 못한 쌀이 213석 남짓이 됩니다. 도망하거나 죽어서 거두지 못한 것은 마땅히 탕감해주어야 하지만 가난한 지경에 이른 경우는 풍년과 흉년을 막론하고 바가지를 들고 걸식하는 백성들입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이조참판 윤지인(尹趾仁)이 말하기를, "장계를 보건대 삼년 조의 거둬들이지 못한 노비 공미가 1,500석이라 하는데 도망하거나 죽고 가난한 노비들에게 거둬들이지 못한 200여 석 외 그 나머지 거두지 못한 것은 구별한 일이 없으니 얽어 만든 말이 불분명한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좌참찬 조태채(趙泰采)가 말하기를, "각 사(司) 노비 신공(身貢)을 거두지 못한 것과 군병(軍兵) 노비 도망하거나 죽어 신포(身布)를 거두지 못한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목사가 처음 장계하여 감해줄 것을 청하지 않았다면 그 뿐이겠지만 이미 청한 이후라면 수 백석의 곡물이 원래 중대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봐주는 도리에 있으니, 마땅히 탕감을 허락함으로써 바다 밖 곤궁한 백성의 바램을 위로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는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절해고도의 백성들은 다른 지역과 다름이 있고 목사가 이미 장계하여 청했으니 특별히 탕감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서종태가)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가 장계하여 올 봄에 이전할 곡물을 징수한 이후에도 그대로 본주(本州)에 두어 변고에 대비하는 수요로 삼을 뜻을 진달하여 청했습니다. 본주는 재난이 빈번하여 전후로 들여보낸 곡물의 수량이 매우 많습니다. 해산물로 대신 거두라는 명 역시 거행할 수 없습니다. 근래 해산물의 생산이 예전에 비해 드물고 귀해져 징수하는데 어려워 그 형세가 그렇습니다. 매번 곡식을 옮긴 이후 번번이 보상하는 일이 없으니 그 청이 그치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정에서 부응하는 것 역시 장차 계속하기 어려운데, 본주는 이미 절해고도인지라 운송한 곡식을 도로 돌려주는 것이 진실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먹고사는 일이 평소에도 매우 곤궁해 조정에서 항상 특별한 휼전을 더해주지만, 올 봄에 옮겨 나른 곡식이 다만 조태(租太) 합계 3,500

석에 불과합니다. 가을을 기다려 거둔 것을 보관하고 모곡을 받아 회록(會錄)[962] 하는 일을 특별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해주십시오. 삼읍(三邑)의 환곡이라 해봐야 원래 풍족하지 않으니, 그대로 두어 변고를 대비하는 구황(救荒)의 자본으로 삼게 하고, 지금부터는 다시는 곡식을 청하지 말라는 뜻까지 아울러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계대로 만약 이 곡식을 거두어 보관하도록 해주되, 다시는 곡식 옮기는 것을 청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좌참찬 조태채가 말하기를, "제주의 백성들이 비록 어채(漁採)로써 생업을 삼는다하나 의식이 항상 걱정되고 계속되기 어렵습니다. 무슨 여력이 있어 먹는 바의 곡식을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 해산물을 거둬들이는 일 역시 그 형세가 어려울 것 같으니 제주목사가 장계로 아뢴 바와 같이 곡물을 편의대로 거둬들여 그대로 본주(本州)에 남겨두고는 환곡을 빌려주거나 거둬들일 때 및 진휼 구제하는 데 자본으로 삼게 하십시오. 다만 이미 거두어 보관하도록 허락한 이후 착실하게 거둬들이는 일은 꼭이라고 할 수 없음이 있으니, 전후로 이전할 때는 가을을 기다려 거두어 두고 그로써 비변사에 보고하여 비변사에서 이어서 관리하게 하면 허전하고 미덥지 못할 우려는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후로 지급한 바의 곡물은 본목이 착실히 거두어 보관하고 비변사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익한, 공미, 서종태, 윤지인, 조태채.

962) 회록(會錄): 정부 소유물, 주로 곡물 등을 본창고(本倉庫)에 두지 못할 경우에 다른 창고에 보관하는 일.

❖ 康熙 五十一年 壬辰 七月 三日 甲申

○ 李世最, 以義禁府言啓曰, 本府都事李世鴻, 以大靜縣圍籬安置罪人吳始復出陸移配事, 下去濟州, 其越海之行, 遲速難期當此鎭日開坐之時, 不可無變通之道. 都事李世鴻, 令該曹依近例, 閑官換差, 何如? 傳曰, 允.

❖ 숙종 38년(1712) 임진년 7월 3일(갑신)

□ 오시복(吳始復)을 이배(移配)하는 일로 제주(濟州)에 내려가는 이세홍(李世鴻)을 한관(閑官)으로 바꿔 임명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이세최(李世最)가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본부의 도사(都事) 이세홍(李世鴻)이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 된 죄인 오시복(吳始復)을 육지로 나와 이배(移配)하는 일로 제주(濟州)에 내려가는데, 바다를 건너는 행차가 느리고 빠름이 기약하기 어려워 이를 당해 평상시 업무 볼 때 변통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도사 이세홍에 대해 해당 부서에 가까운 사례에 의거 한관(閑官)으로 바꿔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오시복, 이세최, 이세홍, 대정현, 제주, 이배.

❖ 康熙 五十一年 壬辰 七月 四日 乙酉

○ 禁府啓曰, 本府都事李世鴻, 以大靜縣圍籬安置罪人吳始復出陸移配事, 下去濟州, 其越海之行, 遲速難期, 當此鎭日開坐之時, 不可無變通之道. 都事李世鴻, 令該曹依近例, 閑官換差, 何如? 傳曰, 允.【以上吏曹謄錄】

❖ 숙종 38년(1712) 임진년 7월 4일(을유)

□ 오시복(吳始復)을 이배(移配)하는 일로 제주(濟州)에 내려가는 이세홍(李世鴻)을 한관(閑官)으로 바꿔 임명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본부의 도사(都事) 이세홍(李世鴻)이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 된 죄인 오시복(吳始復)을 육지로 나와 이배(移配)하는 일로 제주(濟州)에 내려가는데, 바다를 건너는 행차가 느리고 빠름이 기약하기 어려워 이를 당해 평상시 업무 볼 때 변통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도사 이세홍에 대해 해당 부서에 가까운 사례에 의거 한관(閑官)으로 바꿔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이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오시복, 이세최, 이세홍, 대정현, 제주, 이배.

❖ 康熙 五十一年 壬辰 八月 十一日 壬戌

○ 公州幼學崔奎一等疏曰, …… 臣等竊見故工曹典書林蘭秀, 卽麗季名臣也. …… 蓋蘭秀, 以間世之才, 蘊濟世之略, 其在恭愍朝, 與崔瑩討平耽羅, 于時耽羅, 環城四面, 枳棘成林, 雖有堅甲, 不敢通城, 蘭秀, 令取茅葦之種, 潛播其間, 俟其繁茂, 火以焚之, 然後一鼓而城遂陷, 且於臨戰之時, 右臂爲賊所斷, 取其所斷之臂, 捭諸韔中, 而左手握劍, 督戰自若, 終以得捷, 此則俱載於譜牒及金石文字, 焉可誣也? …… 如蘭秀, 古往今來, 絶無而僅有也. 當耽羅之役, 若非蘭秀之智勇權略, 則越千里之絶海, 平二字缺之逋寇, 豈不難乎? 功成於一時, 利及於萬世, 此已鬼然大矣. 而況其卓卓之節, 炳炳之忠, 可以質天地鬼神而無媿, 則古所謂俎豆享之, 百世不忘者, 捨斯人其誰歟. 況蘭秀, 與吉再竝時而生, 同朝而立, 及夫勝國運訖之後, 其所成就, 彼此一般, 則立國家酬報之道, 宜若無薄厚隆殺之殊, 而先賢吉再, 則建祠宣額, 而獨於蘭秀, 闕焉不行, 此豈朝家一例尊尙之道, 而士林之咨嗟, 公議之抑鬱, 庸有極乎? …… 伏惟殿下, 覽察蘭秀事業節義, 宜爲多士所尊奉, 特命有司, 宣賜恩額以褒奬之, 使下邑之士, 得遂尊賢之誠, 而來者有以觀感興起, 不勝大願. 答曰, 省疏具悉. 疏辭令該曹, 稟處.

❖ 숙종 38년(1712) 임진년 8월 11일(임술)

□ 탐라(耽羅)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임난수(林蘭秀)의 사우(祠宇)에 사액할 것을 청하는 최규일(崔奎一) 등의 상소

○ 공주(公州) 유학(幼學) 최규일(崔奎一) 등이 상소하기를, "〈전략〉 신 등이 보건대 고 공조전서(工曹典書) 임난수(林蘭秀)[963]는 고려말의 명신입니다. 임난수는 드물게 뛰어난 인재로서 세상을 구할 방략을 품고 공민왕 시절에 최영(崔瑩)과 더불어 탐라를 토벌하였습니다. 당시 탐라는 사면에 성을 두르고 탱자나무와 가시나무가 수풀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단단한 갑옷이 있어도 감히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임난수가 띠와 갈대 따위를 가져다가 그 사이에 몰래 흩뜨려 무성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불로써 그것을 태운 연후에 북 한 번 쳐서 성을 함락시

963) 임난수(1342~1407): 본관은 부안. 부친은 임숙(林淑). 1374년(공민왕 23) 최영과 함께 탐라를 정벌하는 공을 세움. 낭장, 호군 등의 관직을 거쳐 공조전서에 이르렀으나 고려가 멸망하자 조선에 출사하지 않고 충청도 공주로 낙향. 조선에서 그의 충절의 기려 1419년(세종 1) '임씨가묘(林氏家廟)'의 편액을 내리고 불천지위(不遷之位)로 받들도록 함. 1682년(숙종 8)에는 '고려임장군신도비(高麗林將軍神道碑)'가 세워지고, 송시열이 불사이군의 충절을 기록한 비문을 씀.

켰습니다. 또 전투에 임하였을 때는 오른쪽 팔이 적에게 잘리자 그 잘린 팔을 취해 활집에다 넣고 왼손으로 칼을 잡고 태연하게 싸움을 독려해 끝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족보와 금석문자(金石文字)에 모두 실려 있으니, 어찌 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임난수 같은 이는 고금이래로 거의 끊어져 없다가 겨우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탐라의 역(役)에 만약 임난수의 지략과 용기, 권도와 방략이 없었다면 천리의 절해를 넘어 평정하여【2자 빠짐】 적들을 사로잡는 것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한 때 공을 이루어 이익이 만세에 미쳤으니, 이는 이미 우뚝하여 대단한 것입니다. 하물며 그 탁월한 절개와 빛나는 충성은 가히 천지 귀신의 품성이라 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옛적에 이른바 조두(俎豆)로 제사 드리며 백세토록 잊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람 말고 그 누구이겠습니까? 하물며 임난수는 길재(吉再)[964]와 더불어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같은 조정에서 입신하였고 저 승국(勝國)[965]의 운이 다한 후에도 그 성취한 바가 같았습니다. 국가에서 보답하는 도리를 세우려면 의당 두텁고 얕음, 높이고 낮춤의 다름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현(先賢) 길재는 사당을 세우고 선액(宣額)하고 다만 임난수만 거기에서 빠져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어찌 조정의 일관된 존상(尊尙)의 도리이며, 사림(士林)의 탄식과 공의(公議)의 억울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중략〉 삼가 전하께서 임난수의 절의를 숭상한 일을 두루 살피고 의당 여러 선비들이 존경하고 받들도록 유사에게 특별히 명을 내려 편액을 하사하고 그를 표창하여 여러 고을의 선비들로 하여금 마침내 현인을 존경하는 정성을 갖게 하고 오는 자들에게 보고 느끼고 분발하도록 하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의 말은 해당 부서에 명령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탐라, 최영, 임난수, 길재, 지극(枳棘).

---

964) 길재(1353~1419):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재보(再父), 호는 야은(冶隱)·금오산인(金烏山人). 부친은 길원진(吉元進), 모친은 김희적(金希迪)의 딸. 이색·정몽주와 함께 고려의 삼은(三隱)으로 칭함. 1400년(정종 2) 가을 세자 방원이 그를 불러 봉상시 박사(博士)에 임명했으나, 글을 올려 두 왕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을 펴니 그 절의를 존중하고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줌. 고향에서 성리학을 강독하며 김숙자(金叔滋) 등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음. 저서《야은집(冶隱集)》.

965) 승국(勝國): 바로 전대의 왕조.《주례(周禮)》〈사사(士師)〉편에 주(周)나라에서 은(殷)나라를 멸망시키고 은나라를 '승국'이라 불렀음. 여기서는 고려(高麗)를 일컬음.

❖ 康熙 五十一年 壬辰 九月 四日 甲申

○ 下直, 茂山府使閔濟章, 咸平縣監黃懰, 濟州判官南九明.

❖ 숙종 38년(1712) 임진년 9월 4일(갑신)

□ 제주판관(濟州判官) 남구명(南九明)이 하직함

○ 무산부사(茂山府使) 민제장(閔濟章), 함평현감(咸平縣監) 황류(黃懰), 제주판관(濟州判官) 남구명(南九明)[966]이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남구명, 하직.

966) 남구명(1661~1719): 본관은 영양(英陽). 자는 기서(箕瑞), 호는 우암(寓菴). 경상북도 영해 출신. 부친은 남상주(南尙周). 1693년(숙종 19)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제주판관 재임기간은 1712년(숙종 38) 10월~1715년(숙종 41) 5월. 제주판관 재임 중, 흉년에 도민구제에 공을 세움. 뒤에 순천부사를 역임. 《숙종실록》 1716년(숙종 42) 11월 27일 제주별견어사 황구하(黃龜河)의 건의로 전 제주판관 남구명이 파직되었다고 함. 순천에 동비(銅碑)가 세워지고 제주의 죽림사(竹林祠)에 제향됨. 저서 《우암집》.

❖ 康熙 五十一年 壬辰 十二月 三日 壬子

○ 禮曹啓曰, 今日朝因司饔院啓辭, 濟州乳柑·洞庭橘, 進上來到, 而宗廟薦新所載船, 相失於海中, 進上元數內, 乳柑二百箇, 洞庭橘二百五十二箇, 移送禮曹, 宗廟·永昭殿·敬寧殿薦新後, 還爲內入事, 允下矣. 卽者薦新乳柑·洞庭橘, 追到奉常寺, 纔已看品, 來初六日當爲薦進, 進上柑橘, 則不必移送, 以此分付該院, 何如? 傳曰, 允.【以上禮曹謄錄】

❖ 숙종 38년(1712) 임진년 12월 3일(임자)

□ **제주(濟州)에서 종묘에 올릴 유감(乳柑), 동정귤(洞庭橘)이 올라 왔으므로 진상 감귤은 이송할 필요 없다고 사옹원에 분부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오늘 아침 사옹원에서 올린 글에 의하면 제주(濟州)의 유감(乳柑)·동정귤(洞庭橘) 진상이 도착하였는데 종묘에 천신(薦新)을 실은 배가 바다에서 실종되어 진상 원래 수량 중 유감 200개, 동정귤 252개가 예조로 이송되어 종묘(宗廟)·영소전(永昭殿)·경녕전(敬寧殿)에 천신한 후에 되돌려 궁중에 들일 일을 윤허했습니다. 얼마 전 천신한 유감과 동정귤은 봉상시에 들어왔고 품질을 살펴보고 나서 오는 초6일에 응당 올릴 것이니 진상 감귤은 이송할 필요 없다고, 이를 해당 사옹원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유감, 동정귤, 종묘, 영소전, 경녕전.

❖ 康熙 五十一年 壬辰 十二月 十日 己未

○ 又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牧使李翊漢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而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38년(1712) 임진년 12월 10일(기미)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한(李翊漢)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내구(內廐)에서 입양(立養)하겠다는 사복시의 계

○ 또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한(李翊漢)의 체임진상마 3필이 이제 겨우 올라 와서 나이와 털빛을 별단에 써서 들이고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에 입양(立養)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익한, 체임진상마, 내구.

❖ 康熙 五十一年 壬辰 十二月 十四日 癸亥

○ 訓鍊廳啓曰, 軍器所用加時·槍柄等木, 自前分定於全羅左右水營及濟州牧取用, 而限長養間, 不爲卜定, 故丙戌年因其匱乏, 加時·槍柄木各二千條, 自都監啓請取用矣. 卽今雖有若干餘存者, 腐傷屈曲, 不合於軍器之用, 前頭月課鳥銃打造及旗槍改造之役, 當爲連續爲之, 而他無覓得之路, 誠甚悶慮. 依丙戌年例, 加時·槍柄木各二千柄斫伐之意, 令廟堂分付于全羅左右水營及濟州牧, 何如? 傳曰, 允.【以上訓局謄錄】

❖ 숙종 38년(1712) 임진년 12월 14일(계해)

□ 가시목(加時木)과 창병목(槍柄木) 2천 자루를 벌채하겠다고 전라좌우수영(全羅左右水營) 및 제주목(濟州牧)에 분부할 것을 청하는 훈련청의 계

○ 훈련청에서 아뢰기를, "군기(軍器)로 쓰일 가시목(加時木), 창병목(槍柄木) 등의 나무는 전부터 전라좌우수영(全羅左右水營) 및 제주목(濟州牧)에 나누어 정해 가져다 썼는데, 잘 자랄 기간에 한해서는 부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병술년(1706)에는 다 없어져버려 가시목, 창병목 각 2,000조를 도감에서 아뢰어 가져다 쓰도록 청했었습니다. 지금 비록 약간 남은 것이 있지만 썩고 상하고 휘어져 군기로 쓰기에는 적합지 않아 앞으로 달마다 정례적으로 조총을 만들고 기창(旗槍)을 개조하는 일을 응당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찾아 얻을 길이 달리 없어 참으로 매우 걱정됩니다. 병술년 예에 의거 가시목, 창병목 각 2,000자루를 벌채할 뜻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전라좌우수영 및 제주목에 분부하도록 명을 내리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훈련도감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가시목, 창병목, 제주목, 전라좌우수영.

1713年

❖ 康熙 五十二年 癸巳 一月 九日 丁亥

○ 以全羅監司柳鳳輝, 以濟州私奴義俊等十二名溘死事狀啓, 傳于李世最曰, 溘死人等, 令本道恤典擧行.

❖ 숙종 39년(1713) 계사년 1월 9일(정해)

□ 제주(濟州)의 사노비 의준(義俊) 등 12명이 익사하였다는 전라감사 유봉휘(柳鳳輝)의 장계에 대한 전교

○ 전라감사(全羅監司) 유봉휘(柳鳳輝)가 제주(濟州)의 사노비(私奴婢) 의준(義俊) 등 12명이 익사한 일로 장계를 올린 데 대해 이세최(李世最)에게 전교하기를, "익사한 사람들은 본도에서 휼전(恤典)을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유봉휘, 제주, 의준, 이세최, 익사, 휼전.

❖ 康熙 五十二年 癸巳 二月 二日 庚戌

○ 吏批. 以洪禹瑞爲校理, …… 蔡以章爲濟州牧使, …….

❖ 숙종 39년(1713) 계사년 2월 2일(경술)

□ 채이장(蔡以章)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홍우서(洪禹瑞)를 교리에, 〈중략〉 채이장(蔡以章)[967]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채이장, 제주목사.

967) 채이장(1647~1714):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용경(用卿). 부친은 채시흠(蔡時欽). 장흥부사, 영흥부사, 경상좌병사 역임. 제주목사로 부임하지는 않음.

❖ 康熙 五十二年 癸巳 三月 七日 甲申

○ 義禁府啓曰, 以全羅監司·濟州牧使狀啓, 刑曹粘目, 古阜前郡守張孝源, 軍威前縣監朴斗寅, 聞慶前縣監宋廷蕃, 濟州前判官申善浣等, 移本府處置事, 允下矣. 張孝源, 朴斗寅, 宋廷蕃, 今方待命, 卽爲拿囚, 而申善浣, 時在全羅道淳昌地本家云, 依例發遣府書吏, 拿來, 何如? 傳曰, 允.【義禁府謄錄】

❖ 숙종 39년(1713) 계사년 3월 7일(갑신)

□ 제주전판관(濟州前判官) 신선완(申善浣)을 순창(淳昌) 본가에서 잡아오기를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라감사(全羅監司)와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형조에서 덧붙인 목록은 고부전군수(古阜前郡守) 장효원(張孝源), 군위전현감(軍威前縣監) 박두인(朴斗寅), 문경전현감(聞慶前縣監) 송정번(宋廷蕃) 제주전판관(濟州前判官) 신선완(申善浣) 등을 본부로 옮겨 처리하는 일을 윤허하셨습니다. 장효원, 박두인, 송정번은 지금 명을 기다리며 잡아 가두었습니다만 신선완은 현재 전라도 순창(淳昌) 지경 본가에 있다고 하니 예에 의거 본부의 서리(書吏)를 파견하여 잡아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의금부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전라감사, 제주목사, 제주전판관, 신선완, 순창.

❖ 康熙 五十二年 癸巳 三月 二十一日 戊戌

○ 府前啓, 請還收黃順中放釋之命, 仍令該曹, 嚴加窮問, 依律處斷. 請李獻英·獻章試券, 令該曹更加考覈, 拔去榜中. 請還收柳赫然·李元禎復官之命. 請還收朴鳳齡·李喬岳·李眞儉加資之命. 康津安置罪人吳始復, 當辛巳國哀, 夤緣邪逕, 密探後宮之服制, 其陰兇情節, 罪關名義, 至於締結宦官, 私相賂遺, 亦是王法之所不容貸, 則當初不施訊問而酌處者, 已不免爲失刑, 而前夏, 乃以其年老無子, 自海島移陸地者, 尤非所以嚴懲討之道. …… 請康津安置罪人吳始復移配絶島. 吳始復之自大靜移配康津也, 以其歸裝之多, 勒令康津·海南兩邑, 運致其寓所, 則海南縣監李增祿, 責應夫馬五十駄於百里之地, 而亦不計給雇價, 邑民呼冤, 至於昏夜風山, 竝擧增祿與始復, 而極口醜辱. 康津縣監鄭以規, 則以夫馬之遽難責立, 往見而宛轉爲辭, 被始復面罵捽逐, 而伈伈俔俔, 不敢示怒色, 南中之人, 莫不唾鄙, …… 請海南縣監李增祿削奪官職, 康津縣監鄭以規削去仕版. 全羅右水使閔純, …… 且於康津安置罪人吳始復, 專以諂媚饋遺, 爲後日徼恩之計, …… 請全羅右水使閔純拿問定罪. 答曰, 不允.

❖ **숙종 39년(1713) 계사년 3월 21일(무술)**

□ **오시복(吳始復)의 이배(移配)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 전계(前啟)에서 황순중(黃順中)을 풀어주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해당 관아로 하여금 엄하게 신문 조사를 가하고 법률대로 처단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이헌영(李獻英)과 이헌장(李獻章)의 시권(試卷)을 해당 관아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밝혀 방중(榜中)에서 이름을 뺄 것을 청하였다. 유혁연(柳赫然)과 이원정(李元禎)을 복관(復官)시키라는 명을 도로 거둘 것을 청했다. 박봉령(朴鳳齡)·이교악(李喬岳)·이진검(李眞儉)에게 가자하라는 명령을 도로 거두기를 청했다. 강진(康津) 안치죄인 오시복(吳始復)은 신사(辛巳)년 국상(國喪) 때, 남몰래 삿된 경로를 통해 후궁(後宮)의 복제(服制)를 몰래 탐문했습니다. 그 음흉한 궂은일의 정황은 죄가 명의(名義)에 관계되고 환관(宦官)과 결탁하여 사사로이 뇌물을 보내기까지 하였으니 진실로 왕법의 용납하지 않는 바입니다. 당초에 신문하여 처단하지 않아 이미 형벌의 원칙을 잃은 데에 면치 못했는데도, 작년 여름에 연로하고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해도(海島)에서 육지로 이배시킨 일은 더욱 엄히 징벌하여 처단하는 방도가 아니었습니다. 〈중략〉 강진 안치죄인 오시복을 절도(絶

島)로 이배시킬 것을 청합니다. 오시복은 대정(大靜)에서 강진으로 이배될 때 그 돌아갈 때의 행장이 많아 강진과 해남 두 읍을 윽박질러 그 적소로 옮기는데, 해남현감(海南縣監) 이증록(李增祿)이 백 리의 경로에 마부와 짐 실을 말 50마리를 맡아 준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고용한 대가를 치러주지 않아 고을 사람들이 원통해서 외치는 소리가 어두운 밤, 바람 부는 산까지 이르러 이증록과 오시복을 같이 거론하며 잡된 욕지거리로 갖은 말을 다했습니다. 강진현감(康津縣監) 정이규(鄭以規)는 급히 말을 차출하기 어려워 가서 보고는 전전하며 거절하자 오시복이 면전에서 꾸짖으며 잡아 내쫓자 두려워 쩔쩔매며 감히 분함을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더럽다고 침을 내뱉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중략〉 청컨대 해남현감 이증록을 삭탈관직하고 강진현감 정이규를 관리 명부에서 삭제하십시오. 전라우수사 민순(閔純)은 〈중략〉 또 강진 안치죄인 오시복에 대해 오로지 아첨하며 각종 물건을 대고는 뒷날에 보답 받을 계략으로 삼았습니다. 〈중략〉 전라우수사 민순을 잡아들여 신문하고 정죄할 것을 청합니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오시복, 강진, 대정, 이배, 해남현감, 이증록, 강진현감, 정이규, 전라우수사, 민순.

❖ 康熙 五十二年 癸巳 四月 九日 丙辰

○ 備邊司啓目, 粘連濟州牧使狀啓云云. 高厓各項罪犯, 殊涉痛駭, 大靜前縣監李漵, 遽爾出給進上果園, 難免其責, 前牧使崔啓翁, 以此奸濫之人, 置之幕裨之列, 貽弊至此, 不可無論責之擧, 高厓, 令該曹囚禁重勘, 大靜前縣監李漵, 濟州前牧使崔啓翁, 罷職, 何如? 啓依允.

❖ 숙종 39년(1713) 계사년 4월 9일(병진)

□ 제주전목사(濟州前牧使) 최계옹(崔啓翁)과 대정전현감(大靜前縣監) 이격(李漵) 등의 파직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목

○ 비변사 계목에, 덧붙인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이르기를, "고후(高厚)가 각 항목별 죄가 매우 놀랍고, 대정전현감(大靜前縣監) 이격(李漵)[968]은 갑자기 진상을 과원에 내주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전목사(前牧使) 최계옹(崔啓翁)은 이런 간사하고 탐욕한 사람들을 막비(幕裨)[969]의 반열에 두어 폐를 끼친 것이 이에 이르렀으니 그 죄를 묻는 처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고후는 해당 부서에서 잡아 가두어 중벌에 처하고, 대정전현감 이격과 제주전목사 최계옹은 파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대정전현감, 최계옹, 이격, 고후.

---

968) 이격(?~?): 대정현감의 재임기간은 1708년(숙종 34) 8월~1711년(숙종 37) 3월.

969) 막비(幕裨): 비장(裨將). 감사, 절도사 등이 데리고 다니던 막료. 막객(幕客)·막빈(幕賓)·막중(幕中)·좌막(佐幕)이라고도 부름. 조선 후기에는 의주·동래·강계·제주의 수령 및 방어사를 겸한 모든 수령들이 비장을 거느리는 것을 관례화함.

❖ 康熙 五十二年 癸巳 四月 十八日 乙丑

○ 有政. 吏批, 朴鳳齡爲廣州府尹, 申漢章爲濟州牧使, …….

❖ 숙종 39년(1713) 계사년 4월 18일(을축)

□ 신한장(申漢章)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박봉령(朴鳳齡)을 광주부윤(廣州府尹)에, 신한장(申漢章)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신한장, 제주목사, 이비.

❖ 康熙 五十二年 癸巳 五月 二十六日 壬寅

○ 下直, 濟州牧使申漢章, 濬源殿[校][璿源殿]參奉沈漢規.

❖ 숙종 39년(1713) 계사년 5월 26일(임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신한장(申漢章) 등이 하직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신한장(申漢章), 선원전(璿源殿) 참봉 심한규(沈漢規)가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신한장, 하직.

❖ 康熙 五十二年 癸巳 閏 五月 一日 丁未

○ 府啓, …… 濟州, 以海中重地, 間因貪倅之毒害, 久貽島民之怨苦, 則不可不擇差廉謹之人, 而新除授牧使申漢章, 性本麤戾, 手甚濫猾, 居家, 以財利而得談, 在庄, 因攘奪而取怨, 處事悖妄, 見絶鄕黨, 屢典名邑, 專事肥己. 就其近事言之, 防禦嶺西, 船運私橐, 竟以不治, 見遞於殿最, 專闍湖西, 政多贓虐, 又以不廉, 遭罷於臺劾, 及除是任, 物議喧騰, 決不可仍畀海外重地, 以貽一島之害, 請濟州牧使申漢章, 罷職. 答曰, 不允. 申漢章遞差.

❖ 숙종 39년(1713) 계사년 윤 5월 1일(정미)

□ 제주목사(濟州牧使) 신한장(申漢章)의 파직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970]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중략〉 "제주(濟州)는 바다 가운데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그 사이에 탐욕스런 수령의 악독한 피해 때문에 섬 백성들의 원성과 고통을 오래도록 끼쳐왔으니 청렴하고 삼가는 사람으로 가려 뽑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제수된 목사 신한장(申漢章)은 성품이 본래 거칠고 포악하며, 재주는 외람되고 교활하여 집에 있을 때는 재물과 이익을 취하여 구설수에 오르고 농장에서는 힘으로 탈취하여 원성을 들으니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망령되며 마을사람과 보기를 끊고 누차 이름난 고을을 다스릴 때는 오로지 자신을 살찌우는 일만 했습니다. 가까운 때의 일을 말한다면 영서(嶺西) 방어사(防禦使)일 때는 사사로이 모은 돈을 배에 실어 날라 마침내 다스리지 않는다 하여 전최(殿最)[971] 때 교체를 당하고, 호서(湖西) 절도사 때는 정사가 많이 탐욕하고 포악했고 또 청렴하지 못해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면되었으며 지금 직책에 제수될 때도 물의가 매우 시끄러웠는데 해외의 중요한 지역을 그대로 주어 온 섬에 해악을 끼칠 수는 결코 없으니 청컨대 제주목사(濟州牧使) 신한장을 파직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신한장은 교체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신한장. 영서, 호서.

---

970) 《숙종실록》 1713년(숙종 39) 5월 28일(갑진)의 기록에도 동일 내용이 간략히 실려 있음.

971) 전최(殿最): 관찰사(감사)가 수령의 치적을 조사하여 성적을 매기는 일. 포폄(褒貶)이라고도 함. 전(殿)은 최하의 등급, 최(最)는 최상의 등급을 말함.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등급을 매겨 왕에게 보고하도록 함.

❖ 康熙 五十二年 癸巳 閏 五月 一日 丁未

○ 吏曹口傳政事, 以邊是泰爲濟州牧使, 柳重碩爲楊根郡守, 朴泰圭爲通津縣監. 以上春坊朝報.

❖ 숙종 39년(1713) 계사년 윤 5월 1일(정미)

□ 변시태(邊是泰)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조의 구전(口傳) 정사에 변시태(邊是泰)[972]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유중석(柳重碩)을 양근군수(楊根郡守)에, 박태규(朴泰圭)를 통진현감(通津縣監)에 제수하였다.【이상은 춘방(春坊)[973]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변시태, 제주목사.

---

972) 변시태(?~?): 제주목사 재임기간 1713년(숙종 39) 7월~1716년(숙종 42) 3월. 재임 중 3년 여에 걸쳐 흉년과 태풍으로 조정에 진휼곡을 요청하여 진휼에 힘씀. 이때 진휼에 잘못이 있었다는 제주별견어사 황구하(黃龜河)의 건의로 1716년 11월 전 제주목사 변시태가 조사를 당하기도 함.

973) 춘방(春坊):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별칭. 세자를 모시고 경사를 강독하고 도의를 올바로 계도하는 일을 관장. 모두 문관을 씀.

❖ 康熙 五十二年 癸巳 閏 五月 一日 丁未

○ 吏批, 以邊是泰爲濟州牧使, 朴泰圭爲通津縣監, 柳重碩爲楊根郡守.

❖ 숙종 39년(1713) 계사년 윤 5월 1일(정미)

□ 변시태(邊是泰)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변시태(邊是泰)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박태규(朴泰圭)를 통진현감(通津縣監)에, 유중석(柳重碩)을 양근군수(楊根郡守)에 제수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변시태, 제주목사.

❖ 康熙 五十二年 癸巳 閏 五月 十二日 戊午

○ 吏批, 洪重休爲獻納, …… 李斗三爲大靜縣監, …….

❖ 숙종 39년(1713) 계사년 윤 5월 12일(무오)

□ 이두삼(李斗三)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홍중휴(洪重休)를 헌납에, 〈중략〉 이두삼(李斗三)[974]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이두삼, 대정현감.

974) 이두삼(1677~?): 본관은 함평(咸平). 자는 자건(子建). 부친은 이백년(李百年). 1708년(숙종 34) 식년 문과 병과 급제. 예조좌랑, 양산군수, 결성현감을 역임. 대정현감으로 부임하지는 않음.

❖ 康熙 五十二年 癸巳 閏 五月 二十四日 庚午

○ 下直, 濟州牧使邊是泰, 海南縣監李塘.

❖ 숙종 39년(1713) 계사년 윤 5월 24일(경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 등이 하직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 해남현감(海南縣監) 이당(李塘)이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변시태, 하직.

❖ 康熙 五十二年 癸巳 六月 九日 甲申

○ 吏批, 以李國休爲禮曹佐郎, …… 李顯徵爲大靜縣監, …….【以上出吏·兵曹政單】

❖ 숙종 39년(1713) 계사년 6월 9일(갑신)

□ 이현징(李顯徵)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이국휴(李國休)를 예조좌랑에, 〈중략〉 이현징(李顯徵)[975]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하였다. 〈하략〉.【이상은 이조, 병조의 정단(政單)에 나옴】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이현징, 대정현감.

975) 이현징(1671~1723):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회경(晦卿). 부친은 이희민(李熙民). 1705년(숙종 31) 식년 문과에 병과 급제. 대정현감 재임기간 1713년(숙종 39) 9월~1716년(숙종 42) 11월. 제주별견어사 황구하(黃龜河)의 건의로 파직.

❖ 康熙 五十二年 癸巳 八月 十一日 丙戌

○ 吏批, 以柳近爲泰仁縣監, …… 李國休爲禮曹正郎, …… 金楚寶爲旌義縣監.

❖ 숙종 39년(1713) 계사년 8월 11일(병술)

□ 김초보(金楚寶)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유근(柳近)을 태인현감(泰仁縣監)에, 〈중략〉 이국휴(李國休)를 예조정랑에, 〈중략〉 김초보(金楚寶)[976]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김초보, 정의현감, 이국휴.

976) 김초보(1667~?):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유선(惟善). 부친은 김소하(金韶夏). 1702년(숙종 28) 식년문과 병과 급제. 정의현감 재임기간은 1713년(숙종 39) 9월~1716년(숙종 42) 3월. 제주별견어사 황구하(黃龜河)의 건의로 1716년 11월 전 정의현감 김초보가 조사를 당하기도 함.

❖ 康熙 五十二年 癸巳 八月 二十四日 己亥

○ 義禁府啓曰, 濟州牧爲奴罪人李聖輝, 頃遭母喪於恩津地, 故依定式啓稟, 許令歸葬矣. 卽接忠淸監司牒報內, 罪人李聖輝母葬, 今月十四日定行云, 還發配所事, 分付該道, 何如? 傳曰, 知道.【出義禁府謄錄】

❖ 숙종 39년(1713) 계사년 8월 24일(기해)

□ 제주목(濟州牧)에 노비가 된 죄인 이성휘(李聖輝)의 모친상이 끝나서 배소로 돌려보내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 노비가 된 죄인 이성휘(李聖輝)[977]가 근자에 은진(恩津) 지경에서 모친상을 당해 그 때문에 정식(定式)에 의거 아뢰어 돌아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곧 충청감사의 첩보 내용을 접하니 죄인 이성휘의 모친 장례가 금월 14일에 정행(定行)하였다고 하니 배소로 돌려보내는 일을 해당 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의금부등록에 나옴】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 이성휘, 은진, 충청감사.

---

977) 이성휘(1670~?):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인경(麟卿). 부친은 이선(李選). 1699년(숙종 25) 증광시 문과에 을과 급제. 그러나 곧 과옥(과옥, 과거부정)이 드러나 나주 지도(智島)로 유배되었다가 제주로 노비가 되어 이배됨. 《숙종실록》 1713년(숙종 39) 4월 16일(계해)에 의하면, 그의 종 계남(季南)이 "이성휘는 세종의 십세손(十世孫)이고, 또 정사공신(靖社功臣) 이후원(李厚源)의 증손이니, 마땅히 그 음덕을 입어야 합니다."라고 격쟁하였으나 불허했다고 전함.

❖ 康熙 五十二年 癸巳 九月 八日 壬子

○ 濟州牧使狀啓. 傳曰, 壓死人等, 令本州恤典擧行, 而一島被災此酷, 民事誠甚悶慮. 待牧使畢巡審狀聞, 劃卽移粟, 以爲濟活之地事, 言于備局.

❖ 숙종 39년(1713) 계사년 9월 8일(임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해 내린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해 전교하기를, "압사한 사람[978]들은 본주(本州)에서 휼전(恤典)을 거행하도록 하고, 온 섬이 이토록 참혹하게 재난을 입어 백성의 일이 참으로 답답하고 염려스럽다. 목사가 순력하여 살피고 나서 아뢰는 장계를 기다려 계획하고 곧 곡식을 옮겨 구제하여 살릴 지경의 일은 비변사에 말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휼전.

978) 압사한 사람:《숙종실록》 동년 동일자 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 대정, 정의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중략〉 무너진 인가가 2천여 호나 되도록 많고, 사람이 또한 많이 압사하고, 우마 4백여 필이 죽었다."

❖ 康熙 五十二年 癸巳 九月 十五日 己未

○ 又所啓, 濟州漂到福建人等, 敗船死者甚多, 只有八人生存, 今將出來. 問情譯官李樞, 纔已入送, 而曾在丁卯年, 濟州亦有漂到人. 其時亦爲入送齎咨官, 而漂人交付於鳳城, 譯官, 仍令齎咨, 入往北京矣. 今此濟州漂到人等領來後, 亦依前例送付鳳城, 而譯官李樞, 則仍爲入送於北京, 何如? 上曰, 依爲之.

❖ 숙종 39년(1713) 계사년 9월 15일(기미)

□ 김창집(金昌集)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에 표류해 온 복건인(福建人)의 송환에 대해 논의함

○ (김창집이) 또 아뢴 바, "제주(濟州)에 표류한 복건인(福建人)들 중 배가 파손되어 죽은 자가 매우 많아 다만 8인만 생존하여 이제 거느려 나왔습니다. 문정한 역관(譯官) 이추(李樞)[979]가 방금 전 들여보냈는데, 일찍이 정묘년(丁卯年)에도 제주에 또한 표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 역시 재자관(齎咨官)[980]을 들여보내 표류한 사람을 봉성(鳳城)에 교부하였는데 역관에게 이어서 재자하여 북경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지금 이 제주에 표류한 사람들을 데리고 온 후 또한 전례에 의거 봉성에 보내고 역관 이추에게 곧 이어서 북경(北京)에 들여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표도, 복건인, 이추, 봉성.

---

979) 이추(?~?): 숙종, 경종, 영조 대에 활약한 청어(淸語) 역관. 부친은 이군(李君). 사람됨이 청렴하고 성실했다고 한다. 사역원정으로서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음. 《명사(明史)》에 인조반정에 대한 기사가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조정에서 13차례나 사신을 보냈는데, 그는 그때마다 역관으로 동행. 1783년(영조 14)에 마침내 이를 바로잡기에 이름. 연경에 모두 33회나 왕래함.

980) 재자관(齎咨官): 조선시대 국경을 넘어선 일이나 역서(曆書)를 받아오는 등의 일과 이러한 일로 중국의 예부(禮部)에 보내는 공문서인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는 임시관원을 말함. 또는 같은 이유로 보내오는 중국 관원을 말함.

❖ 康熙 五十二年 癸巳 九月 十五日 己未

○ 又所啓, 今年風災, 八道皆然, 而觀此濟州牧使邊是泰狀啓, 則濟州, 以海中之故, 風災特甚, 至於家舍頹毁, 民物致傷者甚多, 則穀物之傷損, 可推而知之矣. 海島與陸地有異, 尤無料生之道, 聞來極可驚慘. 待牧使畢巡狀聞, 劃卽移粟事, 有言于備局之敎, 而畢巡狀啓, 來到遲速, 有未可預料, 必須預爲料理, 可無後時之患. 葛頭山, 曾有所儲穀物, 專爲濟州賑資, 而前後入送之後, 餘存之穀數不敷, 而頃觀賑廳文書, 葛頭山, 尙有米租千餘石, 沿海諸邑, 亦有賑廳會付穀物. 雖未知其遺在實數之如何, 而以此等穀物, 收合實數, 入送嶺南附近邑, 亦爲次次移送, 似爲便好, 故敢達矣. 上曰, 海外狀啓之來到遲速, 姑未可知, 預爲講定好矣. 昌集曰, 穀數則賑恤廳堂上, 以限萬石入送, 爲宜云矣. 戶曹判書趙泰耉曰, 湖南沿海, 無非尤甚, 而絶海窮民, 朝家尤不可不顧念, 先以附近處穀物, 入送濟州, 沿海各邑, 則次次移轉以賑, 似爲便好矣. 上曰, 限萬石入送可也. 昌集曰, 萬石皆以米入送, 爲難, 皮雜穀並計, 以準萬石之數, 入送爲宜矣. 上曰, 雜穀竝計以送, 可也.

❖ 숙종 39년(1713) 계사년 9월 15일(기미)

□ 김창집(金昌集) 등이 입시하여 풍해를 심하게 입은 제주(濟州)의 진휼을 위해 곡물을 들여보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또 아뢰기를, "금년 풍재(風災)는 팔도(八道)가 모두 그러한데 이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의 장계를 보니 제주는 바다가운데 있어서 풍재가 특히 심합니다. 집이 무너지고 훼손되어 백성과 물건들이 상하게 된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즉 곡물의 상하고 축난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해도와 육지는 다름이 있으니 더욱 살릴 방도가 없어서 들으니 극히 놀랍고 참혹합니다. 목사가 순력을 마치고 장계로 아뢰기를 기다려 즉시 곡식을 옮기는 일을 계획하라는 비변사에 말로 전한 교지가 있었는데, 순력을 마치고 장계가 올라오는데 빠르고 느림을 미리 짐작할 수 없으니, 반드시 모름지기 미리 처리해야 때 늦은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갈두산(葛頭山)[981]에는 일찍이 저축해둔 곡물이 있으니 오로지 제주를 위한 진휼의 밑천으로 삼는데, 전후로 들여보낸 후 나머지 곡물의 수량을 나누지 않았고 근자에 진휼청 문서를 보니 갈두산에 아직도 쌀 천여 석이 있고 연해 여러 고을 역시 진휼청에 넘겨준 곡물이 있습니다. 비록 남아 있는 실제

981) 갈두산(葛頭山):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 마을(갈두리)에 있는 산.

수량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나 이들 곡물들의 실수를 수합하여 영남 부근 고을로 들여보냈다가 역시 차례대로 이송하면 편할 듯하기에 감히 진달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바다 밖에서 장계가 빨리 올지 늦게 올지 우선 알 수 없으니 미리 강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곡물의 수량은 진휼청 당상이 만석에 한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호조판서 조태구(趙泰耉)가 말하기를, "호남 연해도 매우 심하지만 절해의 곤궁한 백성을 조정에서 더욱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서 먼저 가까운 곳의 곡물로 제주에 들여보내고, 연해 각 고을은 차례로 옮기며 진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석에 한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만석 모두 쌀로 들여보내기가 어려우니 껍질 안 벗긴 잡곡을 함께 계산하여 만석에 준하는 수량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잡곡을 함께 계산해서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변시태, 풍재, 진휼, 갈두산.

❖ 康熙 五十二年 癸巳 九月 十五日 己未

○ 又所啓, 湖西·湖南, 災荒孔慘, 尤甚之邑, 今將設賑, 宜送監賑御史, …… 禮曹判書閔鎭厚曰, 外方賑事, 本道監司, 固可以專管, 而但湖南沿海, 則監司所在處稍遠, 有難周察, 況御史, 事體自別, 例爲便宜從事, 似勝於監司之獨當. 且濟州, 凶荒特甚, 雖不得別遣御史, 若使湖南御史, 督送穀物而救之, 則亦必有益, 不可不從速差遣矣. 上曰, 北道·江原·忠淸諸道, 曾有差遣監賑御史之例, 而使道臣專察, 亦似便好, 故姑爲不送, 湖南則別遣監賑御史, 可也.

❖ **숙종 39년(1713) 계사년 9월 15일(기미)**

□ **김창집(金昌集) 등이 입시하여 호남 연해의 고을을 구호하기 위해 감진어사(監賑御史)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또 아뢰기를,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의 재황(災荒)이 매우 참혹한데 특별히 심한 고을에는 지금 진휼하려 하니, 마땅히 감진어사(監賑御史)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지방 진휼의 일은 본도 감사가 진실로 전적으로 관리할 만하나 다만 호남 연해는 감사가 있는 곳에서 조금 멀어 두루 살피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어사는 일의 정황이 분명히 다르니 예컨대 편의를 좇아 일하는 것이 감사가 홀로 당하는 것보다는 나을 듯합니다. 또 제주(濟州)는 흉황(凶荒)이 특히 심하니 비록 별견어사를 보낼 수 없지만 만약 호남어사로 하여금 곡물을 보내는 일을 감독하여 구제하게 한다면 또한 반드시 유익할 것입니다. 속히 파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북도(北道)와 강원(江原) 그리고 충청(忠淸) 여러 도에 일찍이 감진어사를 파견했던 사례가 있지만, 관찰사로 하여금 오로지 살피게 하는 것도 또한 좋을 듯하므로 일단 보내지 말고, 호남에는 감진어사를 별도로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민진후, 제주, 감진어사.

❖ 康熙 五十二年 癸巳 九月 二十四日 戊辰

○ 下直, 咸安郡守田萬春, 旌義縣監金楚寶, 懷德縣監崔沈, 平山萬戶李世檀, 黔毛浦萬戶趙震文, 法聖僉使姜元楨, 古群山僉使洪震雄, 宣沙浦僉使申珩, 花梁僉使具台柱.

❖ 숙종 39년(1713) 계사년 9월 24일(무진)

□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초보(金楚寶) 등이 하직함

○ 함안군수(咸安郡守) 전만춘(田萬春),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초보(金楚寶), 회덕현감(懷德縣監) 최침(崔沈), 평산만호(平山萬戶) 이세단(李世檀), 검모포만호(黔毛浦萬戶) 조진문(趙震文), 법성첨사(法聖僉使) 강원정(姜元楨), 고군산첨사(古群山僉使) 홍진웅(洪震雄), 선사포첨사(宣沙浦僉使) 신형(申珩), 화량첨사(花梁僉使) 구태주(具台柱)가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김초보, 하직.

❖ 康熙 五十二年 癸巳 九月 二十五日 己巳

○ 又所啓, 頃於筵對時, 濟州穀物, 限一萬石入送事, 旣已定奪矣. 今聞葛頭山所置之穀, 皆已分給, 時存之數, 實爲零星. 且見濟州牧使前日狀啓, 則以爲前日入送穀物, 仍爲會錄, 一以備軍餉, 一以爲賑資, 而此後如非大殺之歲, 則不當狀聞請穀云, 而又聞李翊漢, 七月遞歸之時, 留儲之穀, 元數一萬五千石云. 然則今不必又爲移粟, 而朝家旣以入送定奪之後, 全然不送, 亦以顚倒, 改以五千石入送事, 分付賑廳, 何如? 上曰, 前牧使, 七月遞來, 留在之數, 一萬五千石云耶? 右議政金宇杭曰, 李翊漢以爲, 元數一萬五千石, 而七月遞來時, 留庫一萬三千石云矣. 上曰, 然則限五千石入送可也.【出備局謄錄】

❖ 숙종 39년(1713) 계사년 9월 25일(기사)

□ 김창집(金昌集) 등이 입시하여 제주에 곡물을 들여보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또 아뢰기를, "저번 연대(筵對)할 때 제주로 보낼 곡물을 만석(萬石)에 한하여 들여보내는 일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지금 들으니 갈두산(葛頭山)에 보관 중인 곡물은 모두 이미 분급되어, 지금 남은 수가 실제로 보잘 것 없게 되었습니다. 또 제주목사(濟州牧使) 예전의 장계를 보니 전일에 들여보낸 곡물은 그대로 회록(會錄)[982]하였다가 한편으로는 군량미로 대비하고 한편으로는 진휼의 밑천으로 삼는데, 차후 만약 대흉년이 아니라면 장계로 곡식을 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익한(李翊漢)에게 들으니 7월 교체되어 돌아올 때, 남겨 저축한 곡물의 원래 수량이 15,000석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지금 다시 곡식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이미 들여보내는 것을 결정한 후인지라 전혀 보내지 않으면 역시 일을 그르칠 것이니 5,000석으로 고쳐 들여보낼 일을 진휼청에 분부하심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 목사가 7월에 교체되어 돌아올 때, 남아있는 숫자가 15,000석이라고 하였는가?"라고 하였다. 우의정 김우항(金宇杭)이 아뢰기를, "이익한이 말하기를, 원래 수량이 15,000석이고 7월 교체되어 돌아올 때, 창고에 남은 수량이 13,000석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5,000석에 한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비변사등록에 나옴】

---

982) 회록(會錄): 정부 소유물, 주로 곡물 등을 본창고(本倉庫)에 두지 못할 경우에 다른 창고에 보관하는 일.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익한, 갈두산.

❖ 康熙 五十二年 癸巳 九月 三十日 甲戌

○ 備邊司啓目, 粘連濟州牧使狀啓云云. 旌義縣監趙命周, 三年居官, 一境晏如, 可見其治理, 而瓜期旣近, 民情惜去. 前頭賑政, 誠不可付之生手, 限明年麥秋仍任, 以除荒年迎送之弊, 何如? 啓依允.

❖ 숙종 39년(1713) 계사년 9월 30일(갑술)

□ 정의현감(旌義縣監) 조명주(趙命周)의 선정으로 진휼 행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시킬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목

○ 비변사 계목에, 덧붙인 제주목사 장계에 이르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 조명주(趙命周)는 3년 동안 재임하여 온 지경이 편안하고 태평스러워 다스린 이치가 볼만 했는데, 임기 만료가 가까워지자 민심이 떠나가는 것을 애석해합니다. 향후의 진휼 행정도 참으로 미숙한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니 내년 맥추(麥秋)[983]까지는 그대로 근무하게 하여 흉년에 수령을 교체하는 폐단을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조명주.

983) 맥추(麥秋): 보릿가을. 익은 보리를 거두어들이는 철. 즉 5월 전후의 늦봄, 초여름을 말함.

❖ 康熙 五十二年 癸巳 十月 五日 己卯

○ 備忘記, 連觀爾狀啓, 風旱之災, 實爲非常, 年事大無, 景像極慘. 冬前如此, 來春可知, 念及于斯, 食不下咽. 窮溟絶島, 殊異陸地, 若不移粟, 何以濟活? 況飢民之望哺, 不啻轍鮒之待水, 故穀物, 才已分定兩南, 連續入送, 明年進上馬預養穀物, 移補賑資事, 特爲許施, 爾其須體予如傷之意, 悉心賙賑, 使我無辜之赤子, 無一人捐瘠之患事, 濟州牧使邊是東處, 下諭.

❖ 숙종 39년(1713) 계사년 10월 5일(기묘)

□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에게 재해와 흉년으로 백성을 잘 구휼하도록 유지를 내리라는 비망기[984]

○ 비망기에, '이어서 너의 장계를 보니 폭풍과 가뭄의 재해로 실로 정상이 아니고 농사가 큰 흉년이 들어 형편이 극히 참혹하게 되었다 한다. 겨울이 되기 전에 이와 같으면 내년 봄도 알 만하고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먹는 것이 목구멍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먼 바다 외딴 섬은 육지와 아주 다르니, 만약 곡식을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구제해 살리겠는가? 하물며 굶주린 백성들이 먹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철부(轍鮒)[985]가 물을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곡물을 바야흐로[986] 이미 경상도와 전라도에 나누어 정해 잇따라 들여보내게 하였다. 내년 진상마(進上馬)를 기르려 비축한 곡물도 진휼에 보태도록 옮겨 보충하는 일을 특별히 허락하니 너는 모름지기 나의 백성을 다친 사람 돌보듯 하는 뜻을 본받아 마음을 다해 구휼하여 나로 하여금 무고한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방치되어 쇠약해지는 근심이 없도록 할 일'이라고,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987]에게 유지를 내렸다.

---

984) 《숙종실록》(권54)에는 1713년(숙종 39) 10월 4일(무인)의 기록으로 되어 있으며, 동일 내용이 간략히 실려 있음.

985) 철부(轍鮒): 학철부어(涸轍鮒魚). 수레바퀴 자국의 고인 물에 있는 붕어라는 뜻. 몹시 곤궁하거나 위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비유. 《장자(莊子)》, 〈외물(外物)〉에 나온 말로 철부지급(轍鮒之急), 학철지부(涸轍之鮒)라고도 함.

986) 바야흐로: 《승정원일기》의 탈초본에는 재(才)로 되어 있으나, 《숙종실록》에는 방(方)으로 되어 있음. 실록의 방(方)이 문맥상 옳은 듯하여 '바야흐로'라고 해석함.

987) 변시태(邊是泰): 《승정원일기》 탈초본에는 변시동(邊是東)으로 되어 있음. 《숙종실록》에는 당시 제주목사가 변시태(邊是泰)로 되어 있고, 1713년(숙종 39) 7월부터 1716년(숙종 42) 3월까지 제주목사를 역임한 인물은 변시태가 옳다. 역주자가 바로 잡음.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변시동, 풍한재, 진상마, 진휼.

❖ 康熙 五十二年 癸巳 十月 七日 辛巳

○ 左議政金昌集所啓, 頃者又見濟州牧使邊是泰狀啓, 則島中民事, 十分切急, 故又以嶺南穀五千石劃給之意, 方爲覆啓之際, 自上特下別判付, 可謂盛德事矣. 濟州牧使以貿穀事, 軍官今方上來以爲, 雖已請粟於朝家, 官家亦不可無料理之道, 故官庫所儲盡物取來, 今方貿得穀物, 而所持者狹, 恐不能滿船上載, 來船二隻, 亦到忠淸道地, 而其船則皆可容千石云. 當此風高之時, 越海運穀, 難保其無事, 彼間形勢甚急, 若以京倉所儲穀物劃給, 則似爲便當, 故敢達. 上曰, 依所達, 先爲因便入送, 似好. 昌集曰, 卽今風勢漸高, 滿船載送, 難保利涉, 只以千餘石劃給, 何如? 上曰, 依爲之. 兵曹判書朴權曰, 千餘石則似爲太少, 以二千石劃給, 而分載於四船, 以爲得當矣. 上曰, 千石則四船分載似太小, 二千石載送, 可也. 昌集曰, 或以爲濟州人心不淑, 常時公私船載之物, 多有中間消費之患, 今此載送物, 亦不無闕失之慮云, 此弊亦涉可慮. 所經沿海邊將, 次日護送交付, 而入往濟州之時, 使其軍官領去, 則似爲着實矣. 權曰, 穀物載船後, 使沿海邊將, 次日護送, 則船人輩似不得留滯於中路矣. 禮曹判書閔鎭厚曰, 自京江至湖南, 則使邊將次日護送, 而康津以後, 則使濟州軍官上來者, 先往留待, 仍爲領去, 似好矣. 上曰, 依爲之.

❖ 숙종 39년(1713) 계사년 10월 7일(신사)

□ 제주(濟州)에 진휼 곡식을 운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뢴 바, "근자에 또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의 장계를 보면 섬 안 백성들의 일이 더없이 급박해서 그 때문에 영남(嶺南)의 곡식 5,000석을 지급해 달라는 뜻이었는데, 바야흐로 임금께 아뢰자마자 임금의 특별한 허락이 내려진 것은 성덕(盛德)의 일이라 할 만 합니다. 제주목사가 곡물을 사들일 일로 군관(軍官)이 이제 막 올라 와 그 일로 비록 이미 조정에 곡식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관가 또한 처리할 방도가 없을 수 없어서 관고(官庫)에 쌓인 모든 물건을 가져와 지금 곡물과 바꾸었는데 가져온 것은 협소하여 배에 가득 실을 수 없을까 두렵고, 온 배 2척 또한 충청도(忠淸道) 지경에 도착하였는데 그 배에는 모두 1,000석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람이 강한 때를 당해 바다를 건너 곡물을 운반하는 것은 무사함을 보전하기 어렵고 그 사이 형세는 매우 급박하니 만약 경창(京倉)에 있는 곡물로 지급하는 것이 편리에 합당할 듯해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고 먼저 편리

한 대로 들여보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곧 이제 바람의 형세가 점점 강해져 배에 가득 실은 채 보내면 편리하게 건너기가 어려우니 다만 1,000여석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병조판서 박권(朴權)이 말하기를, "1,000여석은 너무 적을 듯하니 2,000석을 지급하고 4척에 나누어 싣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1,000석을 4척에 나누어 싣는 것은 너무 적은 듯하니 2,000석을 싣고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혹 제주(濟州)의 인심이 좋지 못하여 평상시 공사선(公私船)에 실은 물건을 중간에 써서 없애는 근심이 많이 있으며, 지금 이렇게 실어 물건을 보내면 또한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 않다고 해서 이런 폐단 또한 염려될 만합니다. 지나는 연해의 변장(邊將)이 다음날 호송하며 물건을 인도하고 제주에 들어간 때에는 군관(軍官)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면 충분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박권이 말하기를, "곡물을 배에 실은 후 연해의 변장으로 하여금 다음날 호송하면 뱃사람들이 중도에서 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한강에서 호남(湖南)까지는 변장으로 하여금 다음날 호송하고 강진(康津) 이후에는 제주군관(濟州軍官)으로 올라 온 자에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이어서 가져가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김창집, 박권, 민진후, 제주목사, 변시태, 제주군관, 영남, 충청도, 호남, 강진, 경창.

❖ 康熙 五十二年 癸巳 十月 七日 辛巳

○ 又所啓, 頃見濟州牧使邊是泰初巡狀啓, 又聞出來軍官之言, 則島中風災之慘, 甚於陸地, 柑橘盡落, 進上充數, 恐無其路, 非但柑橘爲然, 凡係進上物種, 亦多可慮云. 進上事體重大, 自下請減, 極涉未安, 而頃日備忘中養馬穀物, 特命移補賑資矣. 今此進上, 若又量減, 則絶島人心, 必將感祝德意矣. 上曰, 濟州各樣進上, 令該曹書入, 可也.

❖ 숙종 39년(1713) 계사년 10월 7일(신사)

□ 풍재(風災)가 심한 제주(濟州)의 진상 물품을 감해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또 아뢴바 "지난번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가 처음 순력한 장계를 보고, 또한 (제주에서) 나온 군관(軍官)의 말을 듣건대 섬 안의 풍재(風災)가 참혹함이 육지보다 심하고 감귤(甘橘)이 모두 떨어져 진상하기에 충분한 수량을 댈 방도가 없을까 두렵고 비단 감귤만 그런 게 아니라 무릇 진상 물종에 연계된 것 또한 염려스러운 바가 많다고 합니다. 진상의 일은 본체가 중대한데 아래로부터 감소해 달라 요청하니 극히 편치 않은 지경이지만, 지난번 비망기(備忘記) 중에 말을 기를 곡물까지 진휼에 보태도록 옮겨 보충하도록 특명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진상을 만약 또 감량하면 절도(絶島)의 인심이 반드시 장차 임금의 뜻을 감축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각종 진상을 해당 관아에서 써서 들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변시태, 군관, 풍재, 감귤, 진상.

❖ 康熙 五十二年 癸巳 十月 十日 甲申

○ 又以寺僕寺[校][司僕寺]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旌義縣監趙命周, 遞任進上馬二匹及山馬兼監牧官旌義縣監趙命周封進馬三匹, 一時來到, 禾毛色別單書入, 而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39년(1713) 계사년 10월 10일(갑신)

□ 정의현감(旌義縣監) 조명주(趙命周)가 진상한 말에 대해 화모색(禾毛色)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며 전례대로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사복시의 계

○ 또 사복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 조명주(趙命周)의 체임진상마 2필 및 산마겸감목관(山馬兼監牧官) 정의현감 조명주의 봉진마 3필이 일시에 와서 도착하니, 나이와 털빛을 별단에 써서 들이고 예에 의거 내구(內廐)에 입양(立養)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조명주, 체임진상마, 산마겸감목관, 내구.

❖ 康熙 五十二年 癸巳 十一月 十三日 丁巳

○ 柳泰明, 以司饔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濟州柑子代酸橘, 今始來到, 而宗廟薦新不爲來到, 招問曲折於陪持人, 則薦新所載船, 相失於海中, 未及來到云. 進上旣到之後, 遷就薦新, 事甚未安. 進上金橘元數二百八十箇, 依前例移送禮曹, 宗廟及永昭殿·敬寧殿, 明曉薦新後, 還爲內入, 而中宮殿, 九月朔進上單子中柚子箇字, 以貼字誤書, 難免不察之失, 濟州牧使邊時泰, 推考, 何如? 傳曰, 允.【以上燼餘】

❖ 숙종 39년(1713) 계사년 11월 13일(정사)

□ 진상 단자(單子)에 오서(誤書)가 있어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의 추고를 청하는 사옹원의 계

○ 유태명(柳泰明)이 사옹원 관원으로 감선제조(監膳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신귤을 대신한 제주(濟州)의 감자(柑子)가 지금 비로소 들어왔는데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할 것은 들어오지 않아서 갖고 온 사람을 불러 곡절을 물으니 천신을 실은 배가 바다에서 서로 잃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상이 이미 도착한 뒤인데 천신을 미루는 것은 일이 매우 편치 않습니다. 진상 금귤(金橘)의 원래 수량 280개는 전례에 의거 예조로 이송하여 종묘 및 영소전(永昭殿)·경녕전(敬寧殿)에 내일 새벽 천신한 후에 되돌려 궁중으로 들이겠습니다. 중궁전(中宮殿)의 9월 초하루 진상 단자(單子) 중에 유자(柚子)의 개수 글자가 첨부한 문서의 글자와 잘못 써 있어 살펴보지 못한 실수를 면하기 어려우니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988]를 추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유태명, 감자, 금귤, 종묘, 영소전, 경녕전, 중궁전, 유자, 제주목사, 변시태.

---

988) 《승정원일기》 원본에는 변시태(邊是泰)로 되어 있으나, 탈초본에는 변시태(邊時泰)로 잘못 되어 있다. 역주자가 바로 잡음.

❖ 康熙 五十二年 癸巳 十一月 十三日 丁巳

○ 備邊司啓曰, 卽接濟州漂人領來譯官李樞手本, 則十月二十八日, 領率漂人, 自於蘭鎭離發, 今月十一日到公州, 十六日當進京云. 日寒如此, 聞其中又有病人, 然趁十六日無弊入京, 姑未可知, 而事當依前例, 豫爲分付該曹, 修置所入家舍, 以爲接置之地, 禁軍一人, 領率衛軍, 別爲防守及供饋等事, 亦令依前擧行. 且其入京後, 本司郎廳一員, 解語譯官數人, 別爲定送, 其漂到情實, 更加盤問, 押送北京時, 齎咨譯官, 到鳳城交付後, 譯官則依前例, 只齎咨文入往北京事, 曾已定奪矣. 分付義州府尹, 使之豫爲通報於鳳城, 何如? 傳曰, 允.【備局謄錄】

❖ 숙종 39년(1713) 계사년 11월 13일(정사)

□ 제주(濟州)에 표류한 자들을 북경으로 압송할 절차에 대해 미리 준비하도록 분부하기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 표류인들을 이끌고 온 역관(譯官) 이추(李樞)의 보고서를 방금 접수했는데, 10월 28일 표류인들을 이끌고 어란진(於蘭鎭)[989]에서 길을 떠나 이번 달 11일 공주(公州)에 도착, 16일 서울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추위가 이와 같고 들으니 그 중에 또 병자가 있다고 하나 16일쯤이면 아무 변고 없이 서울에 들어온다고 하니 짐짓 알 수는 없지만 일은 마땅히 전례에 따라 미리 해당 관아에 분부하여 들어가 살 집을 고쳐 두고, 그 인접한 곳에 금군(禁軍) 1인이 위군(衛軍)을 거느려 특별히 그들을 지키고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 또한 전례에 따라 거행토록 명을 내리십시오. 또 서울에 들어온 후에 본사의 낭청(郎廳) 1인이 말을 알아듣는 역관 몇 사람을 별도로 정해 보내어 표류하다 들어온 실정을 다시 더 세밀하게 캐묻고, 북경(北京)으로 압송할 때 중국에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는 역관은 봉성(鳳城)[990]에 도착해 넘긴 뒤, 역관은 전례에 따라 단지 자문을 가지고 북경에 들어 갈 일을 일찍이 결정해야 합니다. 의주부윤(義州府尹)에게 분부하여 미리 봉성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표류, 이추, 어란진, 공주, 북경, 봉성, 의주부윤.

---

989) 어란진(於蘭鎭):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등에 있었던 조선시대 수군 진영.
990) 봉성(鳳城): 펑청.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남동부의 도시. 현재 단둥(丹東)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음.

❖ 康熙 五十二年 癸巳 十一月 十八日 壬戌

○ 備邊司啓曰, 再昨日濟州漂人入來後, 使本廳郎廳與譯官等問情, 則與在濟州及渡海後譯官李樞所問答者一樣, 故前後問答, 竝爲別單書入, 而漂人等久留, 雖似無弊, 冒寒遠來之人, 不可旋卽發送, 姑留五六日, 以爲調息離發之地, 宜當. 曾前漂人處衣袴等物, 自戶曹造給矣, 今亦使之考例擧行, 而行過平安道之時, 每人銀子二兩, 令管餉特爲依前例分給事, 亦爲分付于平安監司, 何如? 傳曰, 依啓. 再明發送, 可也.【備局謄錄】

❖ 숙종 39년(1713) 계사년 11월 18일(임술)

□ 제주(濟州) 표류인을 며칠간 머물도록 하고 평안도를 지날 때 은자(銀子)를 나눠 주라고 평안감사(平安監司)에게 분부하기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991]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그저께 제주(濟州)의 표류인이 들어 온 후에 본청의 낭청 및 역관들로 하여금 그 사정을 물은 즉 제주에 있을 때 및 바다 건넌 뒤 역관 이추(李樞)가 문답한 바와 더불어 한결 같기 때문에 전후의 문답을 모두 별단에 써서 들이고 표류인들이 오래 머물러 비록 폐단이 없는 듯하지만 추위를 무릅쓰고 멀리 온 사람들을 곧바로 보낼 수 없어서 짐짓 5~6일 머물러 좀 쉬게 하고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찍이 표류인에게 저고리와 바지 등의 물품을 호조에서 만들어 지급할 것을 이제 또한 전례를 참고하여 거행하도록 하고, 평안도(平安道)를 지날 때는 사람마다 은자(銀子) 2냥(兩)씩을 관향사(管餉使)[992]에게 특별히 전례에 의거 나누어 지급하도록 명령내릴 일을 또한 평안감사(平安監司)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고, 모레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표류, 이추, 평안도, 은자, 관향사.

---

991) 《숙종실록》 권54, 1713년(숙종 39) 11월 18일에는 동일 내용이 간략히 실려 있음.
992) 관향사(管餉使): 평안도의 군량을 관리하던 벼슬. 평안감사가 겸직함.

❖ 康熙 五十二年 癸巳 十一月 二十日 甲子

○ 入侍時, 左議政金昌集所啓, 濟州柑橘, 盡爲風落, 進上將無以充數云, 故曾以參酌蠲減之意陳達矣. 得見啓下別單, 各樣進上物種, 特爲半減, 此實無前之惠澤矣. 濟州, 又有各司所納雜物, 奉常寺所納祭享物種, 雖不敢擧論, 如繕工監榧子板等物, 遺儲尙多, 雖不納可也, 他司亦有不緊物種, 而絶島之人, 來納京司, 極其有弊. 進上旣已特減, 此亦似當參量裁減, 以示朝家別樣軫恤之意矣. 上曰, 各司所納物種, 當爲裁減者, 令該曹, 詳問別單書入, 可也. 禮曹判書閔鎭厚曰, 該曹當就議廟堂而書入矣. 上曰, 依爲之. 又所啓, 濟州漂到人, 今日當爲出送, 而今聞渠等所持物貨折價換賣, 尙未停當云, 今日內出送, 恐未可必, 似當差退矣. 上曰, 彼人, 不當久留, 而換賣之事, 今日未及停當, 則明日出送, 可矣. 昌集曰, 彼人物件, 方有換賣之事, 咨文措語, 亦當改送矣. 上曰, 咨文措語, 勢當改送矣.

❖ 숙종 39년(1713) 계사년 11월 20일(갑자)

□ 제주(濟州)에서 각 관아에 납입하는 여러 물종들의 감소, 제주 표류인을 중국에 돌려보내는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입시할 때,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뢴 바, "제주(濟州) 감귤(柑橘)이 모두 바람에 떨어져 진상하는데 장차 충분한 수량이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찍이 줄일 뜻을 참작해 달라 아뢰었습니다. 결정내린 별단(別單)을 보니 각종 진상의 물종을 특별히 절반으로 줄이라고 하니 이는 실로 전에 없던 혜택입니다. 제주에서 또한 각 관아에 바칠 여러 물품이 있는데 봉상시(奉常寺)에 바칠 제향(祭享) 물종은 비록 감히 거론치 않으나 선공감(繕工監)의 비자판(榧子板) 등과 같은 물건은 남겨 쌓인 것이 아직도 많아 비록 거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관아 역시 긴요하지 않은 물종이 있는데 절도(絶島)의 사람에게 서울 관아에 와서 바치라고 하면 극심한 폐단이 됩니다. 진상은 이미 특별히 감소하였고 이 또한 응당 참작하여 줄여줄 만하니 이로써 조정에서 특별한 진휼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이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 관아에 바칠 물종으로 마땅히 줄여줄 것은 해당 관아에 명령하여 상세히 묻고 별단으로 써서 들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해당 관아에서 응당 묘당(廟堂)에서 논의할 것을 써서 들이라고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또 아뢴 바, "제주의 표류인들은 오늘 마땅히 내보내야

하는데 지금 들으니 그들이 소지한 물품과 재화를 값을 깎으면서 바꾸어 판다고 하니 오히려 사리에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오늘 내로 내보내지 못할까 염려되니 조금 물려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이 부당하게 오래 머무르고 있으나 바꾸어 파는 일로 오늘은 합당치 못한 즉 내일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저들이 물건을 바야흐로 바꾸어 파는 일이 있으니 자문(咨文)에 쓰인 말도 또한 응당 고쳐 보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자문에 쓰인 말도 형세가 마땅히 고쳐 보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김창집, 민진후, 제주, 감귤, 비자판, 봉상시, 선공감, 표류인.

❖ 康熙 五十二年 癸巳 十一月 二十日 甲子

○ 左議政金昌集所啓, 今年北路年事, 南關則差勝, 而六鎭三·甲, 凶荒特甚, 民事可慮, 今見本道監司狀啓, 以其移轉事勢, 極其罔措. 請得嶺南穀一萬三千石, 又以無土飢民白給次, 鍾城·穩城·茂山·會寧四邑所在, 賑恤·常平兩廳耗穀, 限一千五百石劃給, 及空名帖成給事爲請矣. 嶺南穀物五千石, 已爲移送於耽羅, 本道沿邊所在穀物, 似必不敷, 今又劃給北路, 事勢極難, 其漕運之艱險, 又非西南海路之比, 亦難保其無事到泊. 南關農形稍勝, 則以還上及耗穀, 似可推移賙賑, 嶺南穀物移給, 似爲重難, 故敢稟. 右議政金宇杭曰, 六鎭中四邑, 凶荒特甚, 西南關稍實, 當有推移賙賑之道. 嶺南沿海, 又未免被災, 旣有濟州五千石移轉之事, 又以萬餘石, 移送北道, 其勢誠難.

❖ 숙종 39년(1713) 계사년 11월 20일(갑자)

□ 김창집(金昌集) 등이 입시하여 북로(北路)의 진자(賑資)로 영남의 곡물을 이송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금년 북로(北路)의 농사가 남관(南關)[993]은 조금 낫습니다만, 육진(六鎭)과 삼수(三水), 갑산(甲山)은 흉년이 특히 심해 백성들의 일이 우려할 만합니다. 지금 본도(本道, 함경도) 감사의 장계를 보니, 곡식을 옮기는 일의 형세가 어찌 해야 할지 매우 난감하다며 영남(嶺南)의 곡물 13,000석을 청해 얻어서 다시 이로써 굶주린 토민(土民)이 없게끔 차례대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일과 종성(鍾城)·온성(穩城)·무산(茂山)·회령(會寧) 네 고을에 있는 진휼청(賑恤廳)·상평청(常平廳)의 모곡(耗穀)을 1,500석에 한하여 나누어주고, 공명첩(空名帖)을 발급해주는 일을 청했습니다. 영남 곡물 5,000석은 이미 탐라(耽羅)로 이송해버려 본도(本道) 연변(沿邊) 소재의 곡물은 반드시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북로(北路)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일의 정황이 매우 어려우니, 그 조운(漕運)의 험난함이야 서남(西南)의 바닷길과는 비교되지 않아, 역시 무사하게 도착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남관(南關)의 농사 형편이 조금 나으니 환상미(還上米)와 모곡(耗穀)을 구휼에 옮겨 써도 될 듯하고 영남의 곡물을 옮겨 지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듯하여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우의정 김우항(金宇杭)이 아뢰기를, "육진(六鎭) 중 네 읍은 흉황(凶荒)이

993) 남관(南關): 마천령 남쪽 지방. 함경남도를 일컫는 말.

특히 심한데, 남관(南關) 서쪽은 조금 수확이 있어서 마땅히 이를 옮겨서 구휼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남 연해 지방이 또 재난을 면하지 못했는데, 이미 제주(濟州)로 5,000석을 이전했는데 다시 10,000여 석을 북도(北道)로 이송해야한다면 그 사세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탐라, 제주, 육진, 삼수, 갑산, 종성, 온성, 무산, 회령, 남관.

❖ 康熙 五十二年 癸巳 十一月 二十日 甲子

○ 行禮曹判書閔鎭厚所啓, 臣竊聞湖南凶荒甚酷, 流丐載路, 而稍實處, 元民不許容接, 至有擧杖驅逐者, 守令亦無顧護之事, 故持男易粟, 棄兒道傍者, 間或有之云, 極爲驚慘. 監賑御史旣已下去, 本道監司亦必善處, 而若自朝家, 嚴明申飭, 凡流丐之入境者, 或自官家接濟, 或使富民饋養, 徐徐給糧, 送付原籍官, 以爲賑恤之地, 而前頭暗行御史下去時, 詳細廉問, 如有餓死之人, 則勿論土民與流民, 餓死處守令論罪, 則恐爲得宜矣. 昌集曰今聞濟州漂人領來譯官之言, 則下去時見有流民, 繈屬於道路矣, 上來時還歸本土者, 亦然, 皆以爲朝家特遣監賑御史, 今又還歸云, 而海南近處, 凶荒慘酷, 官屬盡散, 守令坐於空衙, 調度極難, 不得行官事, 而村間旣有死亡之報云. 到此地頭, 朝家軫恤之道, 宜無所靳惜, 監賑御史近將上來, 廟堂自當隨其所言, 有所許施, 而至於流丐, 到處輒被驅逐, 不見接濟, 則必有道路之餓孚, 誠爲悶惻, 宜有申飭之道矣. 上曰, 雖非本土之民, 何可驅逐乎? 漸次還送爲宜, 以此各別申飭, 可也.

❖ 숙종 39년(1713) 계사년 11월 20일(갑자)

□ 호남(湖南)의 흉년에 따라 서둘러 진휼의 방도를 마련하고 굶어죽은 백성이 있는 지역의 수령을 논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994]

○ 행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신이 가만히 듣건대 호남(湖南)의 흉년이 매우 심하여 떠도는 거지가 길에 가득하고 조금 넉넉한 곳의 원래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지팡이를 치켜들고 내쫓는 자가 있는데 이르고 수령 또한 돌보아 보호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팔아 곡식과 바꾸고 버려진 아이들이 길가에 간혹 있다고 하여 매우 놀랍고 참혹합니다. 감진어사(監賑御史)가 이미 내려갔고 본도 감사 또한 반드시 선처하도록 이에 조정에서 엄격하고 명백하게 단단히 타일러 경계해야 합니다. 무릇 거지가 경계에 들어오면 혹은 관가(官家)에서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주고, 혹은 부자들로 하여금 먹여 주거나 천천히 양식을 주어 원래 살던 고을로 보내어 진휼하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암행어사가 내려 갈 때 상세하게 알아내어 만일 굶어죽는 사람이 있으면 토착민이든 유민(流民)을 막론하고 굶어죽은 곳의 수령은 논죄하는 것이 아마도 적절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지금 들으니 제주(濟州)

994) 《숙종실록》 권54, 1713년(숙종 39) 11월 20일에는 동일 내용이 간략히 실려 있음.

의 표류인들을 데리고 온 역관의 말인즉 내려 갈 때 유민들이 도로에 이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올라 올 때 본토로 돌아오는 자도 또한 그리하여 모두 조정에서 특별히 감진어사를 파견하여 이제 또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해남(海南) 근처의 흉년이 참혹하여 관속들은 모두 흩어졌고 수령은 빈 관아에 앉아 있으니 공물을 부과하기 매우 어렵고 관아의 일을 시행할 수가 없으며 마을마다 이미 사망의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경에 이르니 조정에서 진휼하는 방도가 마땅히 인색함이 없어야 하고 감진어사가 가까운 장래에 올라오면 묘당(廟堂)은 스스로 그 말한 바에 따라 책임져 요구하는 대로 베푸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거지들에 대해서는 도처에서 문득 내쫓기만 하고 살아갈 방도를 받지 못하니 반드시 길에는 굶주려 죽은 시체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측은합니다. 마땅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는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본래 살던 백성이 아니라 해도 어찌 몰아서 내쫓을 수 있겠는가? 점차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로써 각별하게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민진후, 김창집, 호남, 감진어사, 해남, 제주, 표류인.

❖ 康熙 五十二年 癸巳 十一月 二十五日 己巳

○ 禮曹啓曰, 濟州三邑, 各司上納物件存減事, 謹依聖敎, 就議廟堂, 別單書入, 而今年條已納, 或載船者, 則移施於明年條, 恐爲得宜矣. 以此分付於各司及濟州牧, 何如? 傳曰, 允.【以上備局謄錄】

❖ 숙종 39년(1713) 계사년 11월 25일(기사)

□ 제주(濟州) 삼읍(三邑)에서 각 관아에 상납한 금년 조목의 물건 및 배에 실은 것은 내년 조목으로 옮겨 시행하도록 분부를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삼읍(三邑)에서 각 관아에 상납할 물건 중 살펴보고 줄여줄 일은 삼가 왕의 교지에 의거 묘당에 모여 의논해서 별단으로 써서 들였는데, 금년 조목에 이미 납부했거나 혹 배에 실은 것은 내년 조목으로 옮겨 시행하는 것이 알맞을 듯합니다. 이로써 각 관아 및 제주목(濟州牧)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삼읍, 제주목.

❖ 康熙 五十二年 癸巳 十二月 十八日 辛卯

○ 今日入侍時, 監賑御史洪錫輔所啓, …… 右議政金宇杭曰, 湖南與擧一道被災設賑有異, 而本道各樣糶糴之穀, 幾至八十餘萬石, 自其道內, 亦不無推移接濟之道. 今年凶歉, 諸路同然, 嶺南雖云稍勝, 沿邑五千石之穀, 旣已入送, 濟州還上難捧, 嶺湖一般, 山郡僻邑之穀, 轉輸亦難, 累萬石之穀, 決難一時責出, 不可不參量許給矣. …… 上曰, 別會米五千石, 租一萬石劃給, 可也. …….【以上備邊司謄錄】

❖ 숙종 39년(1713) 계사년 12월 18일(신묘)

□ 감진어사(監賑御史) 홍석보(洪錫輔) 등이 입시하여 곡물을 옮기는 일에 관해 논의함

○ 금일 입시할 때, 감진어사(監賑御史) 홍석보(洪錫輔)가 아뢰기를, "〈상략〉."라고 하였다. 우의정 김우항(金宇杭)이 아뢰기를, "호남(湖南)은 한 도(道) 전체가 재해를 입어 진휼을 베푸는 데 차이가 있고 본도(本道) 각종 조적(糶糴)의 곡물이 거의 80여 만 석에 이르니, 도내(道內)에서 역시 옮기면서 구제하여 살아갈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금년의 흉년은 여러 지방이 같이 그러하니 영남(嶺南)이 비록 조금 낫다하나 연읍(沿邑)의 5,000석의 곡물이 이미 제주(濟州)로 들여보냈고 환상미(還上米)도 거두기 어려워, 영남과 호남이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산읍(山邑)과 벽읍(僻邑)의 곡물들을 실어 나르는 일 역시 어려운데 몇 만(萬) 석의 곡물을 일시에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작하여 허락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별도로 모아둔 쌀 5,000석과 조 10,000석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감진어사, 제주, 호남, 영남.

1714年

❖ 康熙 五十三年 甲午 三月 十七日 戊午

○ 備邊司啓曰, 今月十二日藥房入侍時, 都提調李頤命所啓, 伏聞濟州進貢人入來, 命召致差備門外, 下問本州飢饉與賑政, 其人迷甚, 雖不能詳對, 若歸語島中, 一島之人聞之, 雖至飢死, 亦必感結. 本州在海外, 本是可憂之地, 平時固當加意撫綏, 況此大無之年, 不可不各別顧恤. 牧使邊是泰, 以武人, 盡心賑恤, 極爲可嘉, 而若無賑穀, 則有同無麵不托, 其前後狀聞所請者四萬餘石, 而朝家所給, 不過雜穀數萬石, 則太半不足矣, 今須加數入送, 可以接續賑活矣. 廟堂爲此之慮, 行文本道, 使以某樣穀, 連續入送, 其代, 自京當充送云, 而旣非啓下之事, 監司亦有不敢擅便者. 若令本道, 無論軍餉儲置漕米, 以某樣穀限一萬石, 急急輸送, 其代, 自賑廳, 以京船運送本道, 則可以及時救一島民命矣. 廟堂諸臣, 久未入侍, 事不可緩, 故敢此仰達, 令廟堂稟處, 何如? 上曰, 予於民事, 豈嘗暫忘耶? 以濟州牧使狀啓見之, 昨年凶荒甚慘, 而所送穀數, 終不如意, 予甚悶之, 大臣所達好矣. 令廟堂急速稟處可也事, 命下矣. 濟州在於絶海之外, 若値凶歲, 則民絶轉身流丐之勢, 官無措手料辦之路, 其公私艱急, 倍甚於陸邑. 昨年本州凶歉之慘, 近所罕有, 賑救之道, 不容少緩, 故兩湖及畿甸, 則皆以京倉米及江都軍餉米賑貸, 濟州則爲便運送, 以湖南·嶺南穀米租竝二萬二千六百餘石, 僅得推移入送, 而其視本州所請, 則太半不足, 前頭賑活, 實有難續之慮, 以某樣穀連續入送, 則其代, 自京充送之意, 纔已行移于全羅監司處矣. 伏聞聖上, 於靜攝之中, 命招致濟州進貢人於差備門外, 下問本州民事與賑政, 其惓惓軫念, 至於如此, 此不但一島之民, 死無所憾, 凡在八域含生, 孰不感動乎? 仰體聖意, 卽當以某穀拮据入送, 而京倉則設有餘儲, 運致未易, 依原任大臣所達, 令本道毋論軍餉儲置漕米限一萬石, 急急輸送, 以爲及時賑救之地, 其代, 與該廳及本道, 相議充數以送, 宜當. 以此意, 全羅監司·監賑御史及濟州牧使處, 星火分付, 何如? 傳曰, 依啓. 道臣, 體予至意, 無或遲滯, 星火入送, 使我絶海飢民, 無一捐瘠, 而本州請得種穀狀啓, 纔已啓下, 此亦不可少緩, 依狀請施行, 亦宜急急輸送, 俾無耕播失時之患, 可也.

❖ 숙종 40년(1714) 갑오년 3월 17일(무오)

□ 제주(濟州)의 진휼을 위해 추가로 곡식 1만석을 수송하기를 청하는 비변사(備邊司)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이번 달 12일 약방(藥房)이 입시할 때 도제조 이이명(李

頤命)이 아뢴 바, '삼가 들으니 제주(濟州)의 진공인(進貢人)이 들어왔는데, 차비문(差備門) 밖으로 불러서 본주의 기근 및 진휼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미혹됨이 심하여 비록 상대할 수 없으나 만약 돌아가 섬 안에 말한다면 온 섬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비록 굶어 죽는데 이르더라도 또한 반드시 느낄 것입니다. 본주는 바다 밖에 있어 본시 근심할만한 땅이어서 평시에도 진실로 마땅히 어루만져 편안히 할 뜻을 더해 왔습니다. 하물며 이 심한 흉년에 각별히 돌아보아 구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 변시태(邊時泰)는 무인으로 마음을 다해 진휼하니 매우 가상합니다. 그러나 만약 진휼 곡식이 없으면 밀가루 없이 수제비를 만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995] 전후 장계로 아뢰어 요청한 바는 4만여 석인데, 조정에서 지급한 바는 불과 잡곡 수만 석이니 태반이 부족합니다. 지금 모름지기 수량을 더해 들여보내 진휼로 살리는 일을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묘당(廟堂)에서 이런 우려 때문에 본도(전라도)에 공문을 보내 모양곡(某樣穀)으로 연속해서 들여보내면, 그 대신 서울에서 충당하여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이미 재가한 일이 없으니 감사 또한 감히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도에 명을 내려 군량미 및 축적된 조세미를 막론하고 모양곡으로 일만 석에 한하여 급히 수송하고 그 대신 진휼청에서 경선(京船)으로 본도에 운송하면 온 섬 백성들의 목숨을 시급히 구제할 수 있습니다. 묘당의 여러 신하들은 오래도록 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일은 늦출 수 없으니 그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아뢰고, 묘당에서 처리하도록 명령하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백성의 일에 대해 어찌 일찍이 잠시라도 잊었던 적이 있는가? 제주목사의 장계를 보건대 작년 흉년이 매우 참혹하여 보낸 곡식 수량은 끝내 내 뜻과 같지 않아 내가 이를 매우 안타까워했다. 대신이 아뢴 바가 좋다. 묘당에 급속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명하였습니다. 제주는 절해 밖에 있어 만약 흉년을 만나면 백성들이 떠돌이 거지 형세가 되고 관에서는 손을 써 이리저리 변통할 길이 없으니 공사(公私)의 어렵고 위급함이 육지 고을보다 배나 심합니다. 작년 본주 흉년의 참혹함이 근래 보기 드물어 진휼의 방도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호남, 호서 및 경기 모두 경창미(京倉米) 및 강화도 군량미를 빌리기로 하고, 제주에는 편리한 운송을 위해 호남과 영남의 조세곡 2만 2천 6백여 석을 겨우 얻어 옮겨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본주에서 요청한 바를 보니 태반이 부족하여 앞으로 진휼하여 살리는 일이 실로 지속되기 어려운 우려가 있어 모양곡으로 연속해서 들여보내고 그 대신 서울로부터 충당하여 보낼 뜻을 겨우 이제 전라감사에게 공문 보

995) 무면불탁(無麵不托): 밀가루 없이 수제비를 만들라고 하는 것. 즉 물력이 없이 일을 경영하게 함을 비유.

냈습니다. 삼가 들으니 성상께서 안정을 취하는 중에 제주 진공인을 차비문 밖에 불러서 본주 백성의 일과 진휼을 물어보시고는 간절하게 근심함이 이에 이르니 이는 비단 온 섬의 백성들이 죽어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무릇 팔도의 모든 백성들이 누군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의 뜻을 우러러 본받은 즉 마땅히 모곡(某穀)을 시급히 들여보내고 경창은 곧 저축해 둔 것을 풀어 운반하여 바꾸지 말고 원임대신이 아뢴 바에 의거 본도에 명을 내려 군량미 및 축적된 조세미를 막론하고 일만 석에 한하여 급히 수송해서 제 때 진휼하여 구제하고 그 대신 해당 청 및 본도와 더불어 충분한 수량을 상의하여 운송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전라감사 및 감진어사(監賑御史)와 제주목사에게 급히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전라)감사는 나의 지극한 뜻을 잘 알아 혹 지체함이 없이 급히 들여보내, 내 절해의 굶주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도 굶주리거나 쇠약해지는 일 없게 하라. 본주에서 종곡(種穀)을 얻으려 요청한 장계는 이미 재가하였으니 이 또한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장계의 요청대로 시행하고 또한 마땅히 시급히 수송하여 밭 갈고 파종하는 시기를 놓치는 우환이 없어야 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진공인, 이이명, 변시태, 제주목사, 감진어사.

❖ 康熙 五十三年 甲午 四月 二十一日 壬辰

○ 司饔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濟州三月朔別進上搥鰒開閣汁數, 則大殿進上四十貼內二十貼欠縮, 莫重御供, 不謹封進, 殊甚可駭, 當該牧使推考, 何如? 傳曰, 允.

❖ 숙종 40년(1714) 갑오년 4월 21일(임진)

□ 제주(濟州) 진상품 추복개각즙(搥鰒開閣汁)을 살피지 못한 목사의 추고를 청하는 사옹원의 계

○ 사옹원 관원이 감선(監膳)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3월 초하루 별진상 추복개각즙(搥鰒開閣汁) 수량은 곧 대전 진상 40첩인데 그 중 20첩이 모자랍니다. 임금에게 바치는 물건이 막중한데 봉진을 삼가지 못해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목사를 추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추복개각즙, 별진상.

❖ 康熙 五十三年 甲午 四月 二十一日 壬辰

○ 傳于南就明曰, 今日濟州貢人, 又招差備門, 詳問本州賑政牟麥形止及前日狀啓中染病寢息與否矣. 賑穀陸續到泊, 牟麥茂盛云, 此則可幸, 而所謂癘疫, 非染病, 四五日臥痛, 一朔之內物故者, 四百餘名云, 似是怪疾之類, 極爲驚慘, 其令醫司, 相當藥物優數下送, 以爲各別救療之地事, 分付.

❖ 숙종 40년(1714) 갑오년 4월 21일(임진)

□ 제주(濟州)의 괴질(怪疾)에 약물을 내려 보내 구호하라는 전교[996]

○ 남취명(南就明)에게 전교하여 말하기를, "오늘 제주(濟州)의 공인(貢人)을 다시 차비문(差備門)으로 불러서 자세히 본주(本州)의 진휼 행정, 밀과 보리의 형편 및 예전의 장계 중 전염병이 그쳤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진휼 곡식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배가 와 닿았고, 밀과 보리도 무성하다고 하니 이는 가히 다행이다. 하지만 이른바 여역(癘疫)은 전염병도 아닌데 4~5일 누워 앓다가 1개월 안에 죽은 자가 4백여 명이라고 한다. 이 같은 괴질(怪疾)의 유형은 지극히 놀랍고 참혹하니 의사(醫司)에 명하여 상당한 약품을 넉넉하게 내려 보내 각별히 구제하여 치료할 일을 분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남취명, 제주, 공인, 차비문, 여역, 의사.

---

996) 《숙종실록》 권55, 1714년(숙종 40) 4월 21일에는 동일 내용이 간략히 실려 있음.

❖ 康熙 五十三年 甲午 四月 二十二日 癸巳

○ 黃一夏, 以禮曹言啓曰, 因傳敎濟州藥物優數下送事, 知委於當該醫司, 則以荊防敗毒散·升麻葛根湯·九味羌活湯·旣濟解毒湯各一百貼, 二聖投告凡四劑生材進排, 故別定湖南界首官主人, 朝已發送於本道監營, 而又爲行關所經各邑, 使之次次替員, 急速傳送矣, 敢啓. 傳曰, 知道.

❖ 숙종 40년(1714) 갑오년 4월 22일(계사)

□ 제주(濟州)의 괴질(怪疾)에 약물을 내려 보내 구호하라는 전교

○ 황일하(黃一夏)가 예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전교(傳敎)에 의거 제주(濟州)에 보낼 약물(藥物)을 넉넉히 내려 보내는 일은 해당 의사(醫司)에 명을 내려 알려주니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기제해독탕(旣濟解毒湯) 각 100첩(貼)과 이성구고환(二聖救苦丸)[997] 4제(劑)를 생약재로 바쳐서, 호남(湖南) 계수관주인(界首官主人)을 특별히 정해 아침에 이미 본도 감영에 발송하였고 또 지나는 각 고을에 공문을 보내 차례로 관원을 교대하며 급속히 전송하도록 할 것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황일하, 제주, 의사, 형방패독산, 승마갈근탕, 구미강활탕, 기제해독탕, 이성구고환, 호남.

---

997) 이성구고환(二聖救苦丸): 《승정원일기》 탈초본에는 이성투고범(二聖投告凡)으로 되어 있으나 탈초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역주자가 바로 잡음. 본 《승정원일기》 1714년(숙종 40) 8월 18일(정해) 기사에도 이성구고환(二聖救苦丸)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한약재의 하나로 상한(傷寒), 온역(瘟疫), 대두온(大頭瘟)에서 인후가 붓는 증상을 치료하는 약재.

❖ 康熙 五十三年 甲午 六月 五日 乙亥

○ 今日藥房入診入侍時, 左議政金昌集所啓, 纔見濟州牧使邊是泰狀啓, 則以爲本州土品, 不宜牟麥, 耕種本少, 而及其發穗之後, 又被黃蚤之災, 全不成實, 民事極爲渴急, 須得一萬穀物, 可爲麥後繼賑之資云矣. 頃日自上招問本州貢人之時, 以牟麥向茂爲對, 又聞移轉連續入去, 庶有救活之望矣. 卽今麥凶又如此, 則不可無別樣顧恤之道矣. 當初有萬石加給之命, 方欲劃送之際, 全羅監司狀啓適至, 而其中以爲得見濟州牧使報狀, 則若得米一千五百餘石, 則可以補賑爲言云, 故依此數入送矣. 今此所請又如此, 不可不施行, 而目今京倉, 雖有若干餘儲, 當此夏月, 海船難通, 決無趁時輸往之勢, 湖南各樣米穀, 似已傾儲用之於賑資, 而本州形勢, 亦甚切急, 卽爲分付本道監司處, 不問軍餉與某樣穀物, 或有餘儲可以推移者, 則米則限二千石入送, 湖南麥事, 珍島等諸邑外, 亦不至大段失稔云, 卽今還上牟麥, 政當收捧, 各邑所在牟麥, 亦限七千石, 急急入送, 何如? 元狀啓所當覆奏, 而不如登對陳稟之爲詳盡, 故敢此仰達矣. 上曰, 濟州上年麥農失稔, 今又如此, 若無別樣顧恤之道, 海島民事, 誠甚可慮矣. 今欲入送者, 合米麥其數幾千石乎? 左議政金昌集曰, 雖請得萬石, 而若以米二千石牟麥七千石代送, 則似可補賑矣. 上曰, 然則合米麥, 依此數, 急急入送事, 分付, 可也.

❖ 숙종 40년(1714) 갑오년 6월 5일(을해)

□ 재해를 당한 제주(濟州)에 진휼 곡물 분담 및 수송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오늘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고 (신하들이) 입시할 때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겨우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의 장계를 보니 본주의 토지 품질은 밀과 보리에 적합하지 않고 씨 뿌려 가꾸는 곳도 본래 적으며 이삭이 팬 이후에는 또한 황모(黃蚤)의 재해를 입어 온전히 결실을 이루지 못하니 백성의 일은 목마르듯 위급하여 모름지기 일만 곡물을 얻으면 가히 보릿고개 이후에 진휼을 계속하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합니다. 지난번 위에서 본주 공인(貢人)을 불러 물었을 때 보리와 밀이 무성하다고 대답했고 또 (진휼 곡식을) 옮겨 운반하는 것이 연속해서 들어가 거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보리의 흉작이 또 이와 같으니 특별히 돌보아 구휼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당초에 일만 석을 더 지급하라는 명이 있어서 바야흐로 분담시켜 보내려고 할 즈음에 전라감사(全羅監司)의 장계가 마침 이르렀고 그 속에 제

주목사가 보고하는 공문을 볼 수 있었는데, 만일 쌀 1,500여석이면 가히 진휼에 보탬이 되겠다는 말을 하므로 이 수량에 의거 들여보냈습니다. 지금 요청한 바가 또 이와 같으니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바로 지금 경창(京倉)에 비록 조금 비축한 것이 있지만 이런 여름철을 당하면 바다로 배가 통하는 것이 어려워 결코 좀 더 일찍이 날라 갈 형편이 안 됩니다. 호남(湖南) 각 곳의 미곡은 이미 진휼에 보태기 위해 저축한 것이 기운 듯하고 본주의 형세 역시 매우 절박하고 급한 즉 본도 감사에게 분부하여 군량 및 여러 곡물을 불문하고 혹 비축한 여유분이 있으면 형편이 되는 대로 쌀은 2,000석에 한하여 들여보내고 호남의 보리농사가 진도(珍島) 등 여러 고을 외에는 또한 대단한 흉년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니 지금 환곡의 밀과 보리를 정당하게 거두어 각 고을에 있는 밀과 보리 역시 7,000석에 한하여 급속히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장계(元狀啓)를 응당 검토하여 임금께 아뢰는바, 어전에서 직접 아뢰는데 자세히 다하지 못할까 하여 그 때문에 감히 이를 우러러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지난해 보리농사가 흉년이었는데 지금 또 이와 같으니 만약 특별히 돌보아 진휼하는 방도가 없으면 바다 섬 백성들의 일이 참으로 매우 염려스럽다. 지금 들여보내려 하는 것이 쌀과 보리 합쳐 그 수량이 몇 천석인가?"라고 하였다. 좌의정 김창집이 말하기를, "비록 만석을 얻고자 청했으나, 대략 쌀 2,000석과 밀과 보리 7,000석으로 대신 보내면 진휼에 보탬이 될 만한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쌀과 보리 합쳐 이 수량에 의거 급속히 들여보낼 일을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김창집, 제주목사, 변시태, 공인, 황모, 전라감사, 경창, 호남, 진도.

❖ 康熙 五十三年 甲午 六月 十九日 己丑

○ 今日, 左議政金昌集請對引見入侍時, 左議政金昌集所啓, 以濟州狀聞事, 欲爲稟定, 玆敢請對矣. 上曰, 三件事耶? 金昌集曰, 濟州狀請, 卽女人及雌牛馬出送陸地, 罪人移配等事, 而纔見監賑御史洪錫輔狀啓, 則島中牛馬之屠食者, 至於二十萬頭云. 卽今餘存, 未知幾何, 而人將盡劉矣. 固無可惜, 而宰食殆盡, 又許出陸, 則前頭孳殖之路將絶矣. 自前朝家之著爲禁令, 不許出陸, 意有所在, 實難變通, 女人出送, 亦無前規, 尤涉重難, 以此三件事, 與廟堂諸宰商議, 則雌牛馬, 或以爲民牧盡死之日, 固守禁令, 不許出陸, 有非貴人賤畜之道, 許之爲可, 至於女人, 亦以爲與其枯死於島中, 寧許出陸就食, 待年刷還, 亦或一道云, 而旣出之後, 豈可一一刷還乎? 恐不可輕許矣. 旣許出陸之後, 島中必將空虛, 而終始不許, 言其事情, 則誠亦憫矣. 定配罪人, 則取見刑曹文書, 自前爲奴者頗多, 而定配罪人之自京及陸地入去者, 竝與科獄罪人, 合爲二十餘人矣. 上曰, 通爲二百餘人云矣. 金昌集曰, 各人所率竝計, 則其數至於此多矣. 他罪人移配陸地, 似無所妨, 而科獄罪人, 則當初朝家之永屬官奴於絶島者, 以其情狀絶痛, 故前日覆啓之時, 不得擧論, 而五人之去留, 在本州, 亦何損益之有哉? 在前爲奴外, 他罪人, 參酌移配, 科獄罪人, 置之, 宜矣. 女人及雌牛馬出陸之事, 亦難輕許矣. 上曰, 濟州事, 雖出於切迫, 而若許其出陸, 則必將空虛, 亦甚重難矣. 金昌集曰, 御史狀啓中, 朝家分付米麥, 方自本道, 拮据入送, 嶺南未運穀物一千石, 亦欲觀勢移轉云. 似有濟活之道, 似當觀勢而處之矣. 上曰, 依爲之. 牛馬防塞, 自有禁令, 卽今則猝難變通, 姑觀事勢而處之, 可也. 金昌集曰, 女人及雌牛馬, 竝姑勿許出陸, 而科獄外, 他定配罪人, 則移配乎? 上曰, 依爲之. 科獄外, 他罪人, 陸邑移配, 可也.【以上備局謄錄】

❖ 숙종 40년(1714) 갑오년 6월 19일(기축)

□ 제주(濟州)의 문제인 우마(牛馬)의 도식(屠食), 암컷 우마와 여인을 육지로 내보내는 일, 죄인의 이배(移配) 등에 대해 논의함

○ 오늘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이 뵙기를 청하여 불러서 입시할 때, 좌의정 김창집이 아뢴 바, "제주(濟州)에서 장계로 아뢴 일을 결정하고자 해서 이에 감히 청대하였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 건의 일인가?"하고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제주에서 장계로 요청한 것은 여인 및 암컷 우마(牛馬)를 육지로 내보내고 죄인을 이배시키는 등의 일입니다. 감진어사(監賑御史) 홍석보(洪錫輔)

의 장계를 잠깐 보니, 섬 안에 우마를 잡아먹은 것이 20만 두(頭)에 이른다 합니다. 지금은 남은 것이 그 얼마인가 알지 못하고, 사람이 장차 다 없앨 듯합니다. 참으로 애석함이 없으나 수령의 식사도 이미 없는데 또 육지로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면 향후 번식시킬 길이 장차 끊어집니다. 전부터 조정에서 드러내어 금령으로 삼아 출륙을 불허한 것이 뜻이 있었던 바로써, 실로 변통하기 어렵습니다. 여인을 내보내는 것 또한 예전 규례에 없어서 더욱 곤란합니다. 이 세 건의 일을 묘당의 여러 재상과 상의한 즉 암컷 우마는 혹 백성이 기르다 다 죽는 날에 대비해서라도 참으로 금령을 지켜 출륙을 불허해야 합니다. 귀인(貴人)이 아니면 천축(賤畜)하는 방도를 허락하는 것도 가합니다. 여인에 이르러도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섬 안에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출륙을 허가하여 살 길을 찾고는 해를 기다린 뒤 돌아오게 하는 것도 또한 하나의 방도라고는 하나, 이미 나간 뒤에 어찌 일일이 돌아오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게도 가벼이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미 출륙을 허가한 뒤에는 섬 안이 반드시 텅 비게 되어 시종 불허합니다. 그 사정을 말한 즉 참으로 또한 슬픕니다. 정배죄인(定配罪人)은 형조문서를 취해 보니 전부터 노비가 된 자가 매우 많은데, 정배죄인은 서울 및 육지로부터 들어간 자이니 모두 과옥죄인(科獄罪人)과 더불어 합계 20여 명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200여 명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각 사람이 데려온 바를 모두 합하면 그 수가 이보다 더 많습니다. 타 죄인을 육지로 이배하는 것은 거리끼는 바가 없을 듯합니다만, 과옥죄인은 당초에 조정에서 절도에 영원히 관노로 배속한 것은 그 정상이 매우 나빴기 때문에 전날에 다시 아뢸 때에도 거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5명을 남겨 두는 것은 본주에 있어서 또한 무슨 손익이 있겠습니까? 전부터 노비였던 자 외에, 타 죄인은 참작하여 이배하고 과옥죄인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인 및 암컷 우마를 출륙하는 일은 또한 가벼이 허락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의 일은 비록 절박한데서 나왔으나, 만약 출륙을 허가하면 반드시 장차 텅 빌 것이니 또한 매우 어렵다."라고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어사의 장계 속에 조정에서 분부한 쌀과 보리는 바야흐로 본도에서 바삐 들여보냈고, 영남은 곡물 일천 석을 아직 운송하지 않았으니 또한 형세를 보아가면 이전한다고 합니다. 구제하여 살릴 방도가 있을 듯하고 형세를 보아가며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우마는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금령이 옛 부터 있다. 지금 갑자기 변통하기 어려우니 잠시 형세를 보고나서 처리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여인 및 암컷 우마는 모두 잠시 출륙을 허가하지 말고, 과옥 외에 타 정배죄인은 곧 이배할

까요?"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과옥 외에 타 죄인을 육지 고을로 이배하는 것은 가하다."라고 하였다.【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김창집, 홍석보, 제주, 감진어사, 출륙, 정배, 과옥.

❖ 康熙 五十三年 甲午 六月 二十二日 壬辰

○ 李德英, 以義禁府言啓曰, 以濟州牧使狀啓, 大臣陳達於筵中, 本牧緣坐定配之類, 出陸移配事, 命下矣. 所當卽爲擧行, 而第念今此移配之擧, 本爲島中凶荒特甚, 勢難保存, 故有此出陸之擧, 而定配已久, 稍成根着之人, 今若移配, 則或不無狼狽怨苦之端, 移關本牧, 問其情願後, 擧行, 何如? 傳曰, 允.

❖ 숙종 40년(1714) 갑오년 6월 22일(임진)

□ 제주목(濟州牧)에 정배(定配)된 부류를 육지로 이배(移配)하라는 명에 대해 진정 바라는 바를 물은 후 거행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이덕영(李德英)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로 대신들이 경연 중에 사정을 진술하여 알린 바, 본 목(牧)에 연좌되어 정배(定配)된 부류를 육지로 내오는 이배(移配)의 일을 하명하였습니다. 마땅히 즉시 거행해야 할 바이지만 다만 지금 이 이배의 거행에 대해 생각해보면 본래 섬 안의 흉년이 너무 심하여 형세가 보존하기 어려우니 그 때문에 이 육지로 내오는 일에 있어서는 정배된 지 이미 오래되어 점차 생활 근거를 갖춘 사람을 이제 이배할 것 같으면 혹 어긋나고 원성의 단서가 없을 수 없어서 본 목에 이관하여 진정 바라는 바를 물은 후에 거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이덕영, 제주목사, 정배, 이배.

❖ 康熙 五十三年 甲午 八月 五日 甲戌

○ 又所啓, 濟州民人等, 呈于備邊司, 以爲朝家軫念島中飢饉, 移粟賑救, 又減進上, 凡干民役, 亦皆蠲免, 而內奴婢貢膳, 獨未蒙蠲減之惠, 實涉冤悶. 粘移內司, 則內司, 以爲不可以一張報狀聽施, 令本州, 狀聞變通, 而啓聞之際, 自當稽久, 故不得不來訴云. 濟州災荒孔劇, 朝家別樣軫念, 自前內奴婢貢膳, 如此之時, 皆許蠲免, 而今年獨未蒙減, 宜有稱冤之端. 今亦一體蠲減, 何如? 上曰, 未及深思, 偶然見漏矣. 竝爲一體蠲減, 可也.

❖ 숙종 40년(1714) 갑오년 8월 5일(갑술)

□ 제주(濟州) 내노비(內奴婢)의 공선(貢膳)을 감면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또 아뢰기를, "제주(濟州) 백성들이 비변사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조정에서 섬 안의 기근을 진휼하여 곡식을 옮겨 곤궁한 백성을 구하고 또 진상을 줄이고 무릇 백성의 역(役) 또한 모두 감면시켰지만 내노비(內奴婢)의 공물만 홀로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실로 원통하고 답답함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 서류를 덧붙여 내사(內司)[998]로 이송하였는데, 내사에서 한 장의 보고 공문으로써 청원을 들어주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본주에서 임금에게 변통해달라는 장계를 올리라 하였으나, 임금에게 장계를 올리려면 저절로 오래 지체될까 해서 부득불 와서 소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의 재해와 흉년이 매우 급박하여 조정에서 특별히 진휼할 때 전부터 내노비의 공물도 이와 같을 때는 모두 감면을 허락하였는데, 금년은 홀로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 마땅히 원통함을 들어서 말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일체 감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깊이 생각지 못했으니 저절로 눈물이 나는구나. 아울러 일체 감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내노비, 내사, 공선.

---

998) 내사(內司): 내수사(內需司). 왕실 재정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이조 소속의 정5품 아문으로 왕실의 쌀, 베, 잡화 및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 康熙 五十三年 甲午 八月 十六日 乙酉

○ 濟州牧使書目, 本島三邑民人等, 因癘疫死亡之由, 及下送藥物, 分送三邑, 使之救療事. 啓. 傳曰, 本州癘疫, 尙未寢息, 死亡甚多, 極爲驚慘, 而藥物救療得活者亦多云, 相當藥物, 更加下送事, 分付醫司.【朝報】

❖ 숙종 40년(1714) 갑오년 8월 16일(을유)

□ 여역(癘疫) 구제 약물을 내려 보내 줄 것을 청하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에 '본도 삼읍(三邑)의 백성들이 여역(癘疫)으로 사망한 말미로 인하여 약물을 내려 보내고 삼읍에 나눠 보내 구제하도록 하는 일'을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본주의 여역이 아직도 그치지 아니하여 사망자가 매우 많다 하니 극히 놀랍고 참혹하다. 약물로 치료하여 살아난 자가 또한 많다 하니 상당한 약물을 다시 더해 내려 보내는 일을 의사(醫司)에 분부하라."라고 하였다.【조보(朝報)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여역, 의사.

❖ 康熙 五十三年 甲午 八月 十八日 丁亥

○ 禮曹啓曰, 因傳敎, 濟州藥物, 更加下送事, 知委於當該醫司, 則以荊防敗毒散·升麻葛根湯·九味羌活湯·旣濟解毒湯, 各一百貼, 二聖救苦丸四劑, 生材進排, 故別定界首官主人, 今日發送於本道監營, 而又爲行關所經各邑, 使之次次替負, 急速傳送矣. 敢啓. 傳曰, 知道.【禮曹謄錄】

❖ 숙종 40년(1714) 갑오년 8월 18일(정해)

□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 등의 약을 제주(濟州)로 보냈다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교(傳敎)에 의해 제주(濟州)의 약물을 다시 더해 내려 보내는 일은 해당 의사(醫司)에 맡긴 즉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 기제해독탕(旣濟解毒湯) 각 100첩(貼), 이성구고환(二聖救苦丸) 4제(劑)의 생약재를 지급하여 특별히 정한 계수관주인(界首官主人)으로 하여금 오늘 본도 감영에 발송하고 또 공문을 지나는 각 고을마다 차례로 교대하며 부담 지워 급속히 전송하도록 할 것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예조 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형방패독산, 승마갈근탕, 구미강활탕, 기제해독탕, 이성구고환, 계수관주인.

❖ 康熙 五十三年 甲午 八月 十九日 戊子

○ 又以司僕司[校][司僕寺]言啓曰, 濟州出來再運馬一百八匹內, 五匹到中路病留, 實納馬一百三匹, 禾毛色別單書入, 而年例馬八匹·御乘馬二十匹, 例爲別養肥澤, 成材上送矣. 今此兩色馬, 擧皆瘦瘠, 固難免其責. 第仍本州飢荒孔棘, 曾有所養穀物, 除出補賑, 待秋上送之傳敎, 而其後自本州馳啓, 一體趁限封進, 故未及別養, 其勢固然. 似當有參酌之道, 敢啓. 傳曰, 知道. 未及別養, 其勢則然, 置之.

❖ 숙종 40년(1714) 갑오년 8월 19일(무자)

□ 제주(濟州)의 재운(再運) 진상마 103필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에 써서 들인다는 사복사의 계

○ 또 사복시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재운(再運) 진상마 108필 중 5필은 중도에서 병들어 머물러 두고 실제로 들어온 말 103필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에 써서 들이고, 연례마(年例馬) 8필, 어승마(御乘馬) 20필은 예컨대 특별히 살찌우고 윤택하게 하여 재질이 쓸 만하면 올려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이 두 종류의 말은 대부분 여위고 말라서 진실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듭된 본주의 기근과 흉년이 매우 심하여 일찍이 (말들을) 기르기 위한 곡물도 진휼에 보태도록 지출하고 추수 후에 올려 보내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본주로부터 급히 아뢰기를, 일체 기한에 다다른 공물 진상 때문에 특별히 기르지 못하였다고 하니 그 형세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마땅히 참작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특별히 기르지 못하는 것은 그 형편이 그러하니 내버려 두어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재운마, 연례마, 어승마.

❖ 康熙 五十三年 甲午 九月 十日 戊申

○ 濟州牧使書目, 大靜縣監李顯徵, 病重罷黜事.

❖ 숙종 40년(1714) 갑오년 9월 10일(무신)

□ 신병이 있는 이현징(李顯徵)의 파출(罷黜)을 청하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

○ 제주목사(濟州牧使) 서목은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현징(李顯徵)의 병이 중하여 파직하는 일이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대정현감, 이현징.

❖ 康熙 五十三年 甲午 九月 十一日 己酉

○ 吏批, 以康友諒爲靑巖察訪, …… 金熙潤爲大靜縣監, …….

❖ 숙종 40년(1714) 갑오년 9월 11일(기유)

□ 김희윤(金熙潤)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강우량(康友諒)을 청암찰방(靑巖察訪)으로, 〈중략〉 김희윤(金熙潤)[999]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김희윤, 대정현감.

999) 김희윤(?~?): 대정현감의 재임기간 1714년(숙종 40) 8월~1716년(숙종 42) 5월.

❖ 康熙 五十三年 甲午 九月 十九日 丁巳

○ 今日進宴入侍時, 右議政金宇杭所啓, …… 近來良役偏苦, 民不支堪, 故近有戶布口錢之議. 而卽今連歲失稔, 民間赤立, 諸般身役中, 二疋之役, 今年所納, 減其一疋, 則實合於與民同樂之意, 而爲惠大矣. 軍門各司, 儲蓄不贍, 如有支用難繼之憂, 而若節省浮費, 又自朝家, 別爲經紀, 有所推移, 則一年身布, 雖減一疋, 亦豈有難支之慮乎? 若於今日, 渙發德音, 特許減給, 以示與民同樂之意, 則實爲聖德事. 臣適有所懷, 敢此仰達. 上曰, 大臣所達, 實是根本之言, 諸大臣之意, 何如? 左議政金昌集曰, 右相所達, 其意固好. 第自前國有大慶, 則必有惠政, 而至於此事, 恐不可輕議. 卽今軍門各司, 儲蓄蕩然, 難以成樣, 蠲減一疋之後, 實無推移拮据之勢. 必須從容商確, 知其形勢之可行, 然後可以決定. 是豈今日之所可率爾變通者乎? …… (行判中樞府事)李濡曰, 以上年湖南與濟州民事言之, 聖上之憂念救恤, 特出尋常, 則民之感祝聖德, 固已極矣. 今日進宴, 實是千古所無之慶. 其在與民同樂之道, 不但身布之減一疋. 雖有加於此者, 顧何所惜? 第念凡事, 自有本末. 今年三南農事, 雖云稍勝於上年, 亦多有被災處云. 前日移轉穀物, 如賑廳所儲及江都與各其該道山城軍餉, 殆盡傾出. 其他散在民間之物, 待秋當捧者, 其數甚多, 勢難竝爲收拾. 而若不就其稍勝之邑而有所收拾, 以爲前頭推移救濟之地, 而不問優劣, 一例減其一疋, 則旣難充給其代. 而勿論國家經用, 軍門若干舊儲, 欲爲充數, 則觸處蕩然之後, 復有災荒, 將無以救民, 而反有呼冤之弊. 脫有邊虞, 亦何以爲計乎? 右相所達, 誠是忠懇所發, 而恐不可率爾斷定, 從容商度事勢而行之, 似爲得宜矣. …… 上曰, 近來良役偏重, 大臣所達, 是矣. 第商量然後, 可以爲之. 廟堂從容商確, 更爲稟定, 可也.【以上備局謄錄】

❖ 숙종 40년(1714) 갑오년 9월 19일(정사)

□ 양역(良役)을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오늘 궁궐 연회로 입시할 때 우의정 김우항(金宇杭)이 아뢴 바, "〈중략〉 근래 양역(良役)이 치우치게 고통스러워 백성이 버티어 감당하지 못하니 가까운 시일 내에 호포구전(戶布口錢)[1000]의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해마다 흉년이 닥쳐 민간이 몹시 가난하고 여러 신역(身役) 중 2필의 역(役)에 대해 금년에 거둘

1000) 호포구전(戶布口錢): 호포는 집집마다 봄, 가을로 걷던 가호세이며, 구전은 16세~60세의 평민 남자 개인별로 부과되던 인두세이다.

것을 1필로 줄여주면 실로 백성과 함께 즐기는 뜻에 부합하여 은혜가 클 것입니다. 군문(軍門) 각사의 비축한 것이 넉넉지 않아 지출하여 쓰는데 지속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더라도 만약 낭비되는 비용을 절약하고 또 조정부터 특별히 계획을 잘 세워 다스려 변하는 바가 있으면 1년의 신포(身布)에서 비록 1필을 감소하더라도 또한 어찌 지탱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겠습니까? 만약 금일에 임금의 말씀을 천하에 널리 선포하여 특별히 줄여주도록 허락하여 백성과 함께 즐기는 뜻을 보인다면 실로 성덕의 일이 될 것이니 신이 마침 품은 바가 있어서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아뢴 바는 실로 근본의 말씀인데 여러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우상(右相)이 아뢴 바 그 뜻은 진실로 좋습니다. 다만 전부터 국가에 큰 경사가 있으면 반드시 은혜를 베푸는 정사가 있는데, 이 일에 이르러서는 두렵게도 가벼이 의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군문 각사에 비축한 것이 텅 비어 모양 갖추기가 어려우니 1필을 줄여준 뒤에도 실로 바삐 옮겨갈 형세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름지기 침착하게 의논하여 결정하고 형세가 시행할 만한 것을 안 연후에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어찌 금일에 갑자기 변통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중략〉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지난해 호남과 제주(濟州) 백성의 일로써 말하건대, 성상께서 구휼을 근심하고 염려하기가 특별히 예사롭지 않았으니 백성이 성덕을 감축하는 것이 진실로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 궁궐 연회는 실로 옛적에도 없던 경사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즐기는 도에 있어서 비단 신포(身布)를 1필 줄여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이보다 더한 것이 있더라도 돌아보면 어찌 애석함이 있겠습니까? 다만 모든 일을 생각해보건대 스스로 본말이 있습니다. 금년 삼남(三南)의 농사가 비록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나 또한 재해를 입은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전일에 곡물의 이전으로 진휼청 비축분 및 강화도와 각기 해당 도(道)의 산성(山城) 군량미 등은 거의 다 쏟아 부었습니다. 기타 여기저기 있는 민간의 곡물도 가을을 기다려 마땅히 거두어들여야 할 그 수량이 매우 많아 형세를 모두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나은 고을을 취하지 않고 수습하는 바가 있으면 앞으로 구제할 곳으로 변하게 되며, 우열을 묻지 않고 일례로 1필을 줄인다면 그 대신 충분히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늘 필요한 경비는 물론 군문에서 약간의 일상적 비축분도 충분한 수량이 되어야 하는데 닥치는 곳마다 텅 빈 후에 다시 재난이 있게 되면 장차 백성을 구제할 수가 없으니 도리어 원통을 부르짖는 폐단이 있게 됩니다. 만일 변경에 우환이라도 있으면 또한 어찌 대비하겠습니까? 우상(右相)이 아뢴 바는 진실로 충정에서 발한 바이나, 두렵게도 갑자기 단정할 수

가 없어서 침착하게 계획하며 일의 형세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양역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한 대신의 아뢴 바는 옳다. 다만 잘 헤아려 계획한 연후에 시행함이 좋겠다. 묘당은 침착하게 계획하여 다시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김우항, 김창집, 이유, 신포, 양역, 흉년, 감세.

❖ 康熙 五十三年 甲午 九月 二十三日 辛酉

○ 司僕寺官員, 以都提調意啓曰, 八月二十九日引見時, 因兵曹判書朴權所啓, 大捉馬時, 大將及兵判, 同往捉馬, 先擇邊馬後, 次擇禁軍馬兵事, 分付可也事, 命下矣. 取考本寺謄錄, 則自丙子以後, 箭串大捉之規, 廢而不行, 只送該色郎廳捉給者, 不過數年而亦廢, 以至于今. 論其事例, 殊涉埋沒. 而第軍兵官給之馬, 率多體少駑駘云者, 非緣箭串大捉馬之廢却, 職由於近年濟州與各牧場, 馬種之大不如前. 而每年秋, 以濟州歲貢馬上來者, 竝與各牧場所在之馬, 磨鍊分養於各邑, 至翌年春後, 肥澤上納, 則先爲擇立邊馬, 其餘移送各軍門, 使軍兵擇執, 又其餘分給於各樣熟馬帖後, 例放于箭串, 以爲待秋區處之地. …… 故在前只令該色郎廳捉給者, 蓋出於此. 今亦依此擧行, 自明年爲始, 觀其無馬軍兵數多之後, 依舊例齊會捉給, 似爲得宜, 敢啓. 傳曰, 知道.【禁營謄錄】

❖ 숙종 40년(1714) 갑오년 9월 23일(신유)

□ 제주(濟州) 세공마(歲貢馬) 등의 분배와 관련한 사복시의 계

○ 사복시 관원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8월 29일 인견 때, 병조판서 박권(朴權)이 아뢴 바로 인해 크게 말을 가를 때 대장 및 병판이 함께 가서 말을 가르는데, 먼저 변방의 말을 선택한 후에 그 다음 금군마병(禁軍馬兵)을 선택하는 일, 나누어 주는 것은 옳은 지의 일을 하명하였습니다. 본 사복시등록을 취해 살펴보니 병자년(1696) 이후부터 뚝섬[箭串]에서 크게 가르는 규정이 폐지되어 시행하지 않았고 다만 그 직무를 맡은 낭청에게 보내 선택하여 지급하는 것도 수년에 지나지 않아 역시 폐지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례를 논한 것도 아주 묻혀 졌습니다. 여러 군병들의 관에서 지급한 말이 거의가 체구가 작고 둔한 말이라고 한 것은 뚝섬에서 크게 말을 가르는 것을 폐기한 데 있지 않고, 유일한 까닭은 근년에 제주 및 각 목장 마종(馬種)의 크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가을 제주(濟州) 세공마(歲貢馬)가 올라오면 모두 각 목장에 있는 말과 함께 계획을 세워 각 고을에 분양하고 다음해 봄에 이른 후 몸채가 좋으면 상납한 즉 먼저 변방의 말을 가려 뽑고 그 나머지는 각 군문에 옮겨 보내 군병으로 하여금 선택하여 고르도록 했습니다. 또 그 나머지는 각종 숙마첩(熟馬帖)에 나누어 지급한 후 예에 따라 뚝섬에 방목하여 가을을 기다려 변통하여 처리하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중략〉 그 때문에 예전에 다만 그 직무를 맡은 낭청에게 가려 지급하

도록 한 것이 대개 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또한 이에 의거 시행하고 내년부터 시작하고 그 말 없는 군병의 수가 많은 지 살펴본 후에 옛 규례에 의거 일제히 모여 지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금영등록(禁營謄錄)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박권, 뚝섬[箭串], 제주, 세공마, 숙마첩.

❖ 康熙 五十三年 甲午 十月 三日 辛未

○ 下直, 公州牧使趙泰果, 大靜縣監金熙潤, 柔院僉使盧遠明.

❖ 숙종 40년(1714) 갑오년 10월 3일(신미)

□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희윤(金熙潤) 등이 하직함

○ 공주목사(公州牧使) 조태과(趙泰果),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희윤(金熙潤), 유원첨사(柔院僉使) 노원명(盧遠明)이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김희윤, 하직.

❖ 康熙 五十三年 甲午 十一月 三十日 戊辰

○ 政院啓曰, 卽伏見濟州牧使邊是泰狀, 橘進上中, 大橘二箇封進. 雖云枯落於酷旱, 其在事體, 極爲未安, 不無警責之道. 濟州牧使邊是泰, 推考, 何如? 傳曰, 允.【禮曹謄錄 日記廳郎廳 崔一奎 書. 趙景觀 校正】

❖ 숙종 40년(1714) 갑오년 11월 30일(무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의 추고를 청하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삼가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의 장계를 보건대, 귤 진상 중에 대귤(大橘) 2개를 봉진하였습니다. 비록 심한 가뭄 탓에 시들어 떨어졌다고 하나 일의 정황에 있어서는 극히 편치 못합니다. 제주목사 변시태를 추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일기청낭청 최일규(崔一奎) 씀, 조경관(趙景觀) 교정】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변시태, 대귤.

1715年

❖ 康熙 五十四年 乙未 一月 十七日 甲寅

○ 奉常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前薦新唐柚子, 來到本寺, 臣進詣看品, 則宗廟薦新五十箇, 永昭·敬寧殿各五個, 竝令加封, 而腐傷過年, 擇其體全可合薦進者, 則僅滿四十箇, 在前如此之時, 不得已宗廟各室及永昭·敬寧兩殿, 減其數薦進矣. 今亦他無變通之道, 依前例, 各以三箇, 推移薦進, 而越海上來之際, 寒凍腐傷, 勢雖固然, 莫重薦新, 如是苟簡, 事體誠甚未安, 當該封進官, 濟州牧使邊是泰, 推考, 何如? 傳曰, 允. 【以上奉常寺謄錄】

❖ 숙종 41년(1715) 을미년 1월 17일(갑인)

□ 제주(濟州)의 당유자(唐柚子) 상당수가 썩고 상했으니 해당 봉진관인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의 추고를 청하는 봉상시의 계

○ 봉상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전에 천신(薦新)한 당유자(唐柚子)가 본 관아에 올라왔습니다. 신(臣)이 나아가 품질을 살펴보니 종묘(宗廟)에 올릴 50개, 영소전(永昭殿), 경녕전(敬寧殿)에 각 5개씩 더 바치라 했습니다만 해가 지나면서 썩고 상하여 온전히 신위에 올릴 만한 것을 가리니 겨우 40개가 찼습니다. 예전에 이 같은 때는 부득이 종묘 각 실과 영소전, 경녕전 양전에는 신위에 올릴 것을 줄였습니다. 지금 또한 다른 변통할 도리가 없어서 전례에 의거 각기 3개씩 바꿔 올리고, 바다 건너올라 올 즈음 춥고 얼어서 상한 것은 형세가 비록 그렇다하나 신위에 올릴 막중한 것이 이처럼 구차히 간소하게 되었으니 일의 본체가 참으로 편치 않습니다. 해당 봉진관인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를 추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봉상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당유자, 종묘, 영소전, 경녕전, 제주목사, 변시태.

❖ 康熙 五十四年 乙未 一月 二十七日 甲子

○ 吏曹啓目, 粘連. 觀此全羅右道暗行御史金相玉書啓, …… 珍島郡守李基福段, 勤於聽斷, 留意賑政, 捐出捧米, 白給飢民, 頗有譽言, 而賑穀分給, 精麤有殊, 沈醬和水, 民怨朋興, 出給一匹騎於邑內人, 使之貿貿, 入送耽羅, 買來四匹之馬. 又以近百兩錢, 買取二匹良駒是白遣, 所畊邑妓, 以租三十石, 婢一口, 納官免役, 而其實則出自官家, 傳說藉藉是如爲乎旀. …… 李基福所犯, 俱係不法, 爲先罷黜, 罪狀, 令攸司稟處爲白乎旀. …… 何如? 啓依允.【以上朝報】

❖ 숙종 41년(1715) 을미년 1월 27일(갑자)

□ 진도군수(珍島郡守) 이기복(李基福)의 파직을 청하는 이조의 계목

○ 이조 계목에, "덧붙인 전라우도(全羅右道) 암행어사 김상옥(金相玉)의 서계를 살펴보니, 〈중략〉 진도군수(珍島郡守) 이기복(李基福)은 송사를 처리하는데 부지런하고 진휼의 정사를 새기며 봉미(捧米)를 출연하여 굶주린 백성에게 거저 주어 자못 칭찬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휼곡을 나누어 주는데 정밀하고 거친 데의 다름이 있고, 장을 담그는데 물을 섞어 백성의 원성도 자자하게 일어났습니다. 고을 나인에게 말 1필을 내주고는 그에게 팔도록 하였는데, 탐라(耽羅)에 들여보내 4필의 말을 사왔습니다. 또 거의 백냥의 돈으로 2필의 좋은 망아지라 하고는 매입하였고, 정분을 쌓던 고을 기생은 조(租) 30석과 비(婢) 1구(口)를 관에 바쳐 면역하였다고 하니 그것은 바로 관가에서 나간 것으로 전하는 말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중략〉 이기복이 범한 바는 모두 불법입니다. 우선 파직하고 죄상을 유사에서 처리하도록 명령내리길 아뢰오니 〈중략〉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다.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김상옥, 진도군수, 이기복, 탐라.

❖ 康熙 五十四年 乙未 三月 二十一日 丁巳

○ 院前啓, …… 全羅兵使張漢相, 一生伎倆, 專在於善事要譽, 及授本閫, 手段亦滑, 前春運穀耽羅時, 潛給營錢於領船軍官, 多貿駿馬, 以爲肥己之資. 且廣求京鄕病廢之馬, 別養官廐, 待其稍蘇, 勒賣於管下諸驛, 不過一兩月, 病棄者甚多, 貽弊殘驛, 不可勝言. …… 請全羅兵使張漢相罷職不敍. 答曰, 不允.

❖ 숙종 41년(1715) 을미년 3월 21일(정사)

□ 전라병사(全羅兵使) 장한상(張漢相)의 파직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전에 아뢰기를, 〈중략〉 "전라병사(全羅兵使) 장한상(張漢相)은 평생 기량이 오로지 잘하는 일이 명예를 구하는 데만 있었는데, 본 장수를 제수받자 수단이 또한 교활해져 지난 봄 탐라(耽羅)로 곡식을 운송할 때 영선군관(領船軍官)에게 군영의 돈을 몰래 지급하여 좋은 말을 많이 사고는 자신을 살찌우는데 썼습니다. 또 널리 경향 각지에서 병들어 몹쓸 말을 구해 특별히 관아 마구간에서 기르고 조금 나아지기를 기다려 관하의 역(驛)에 억지로 팔았기에 불과 한 두 달 만에 병들어 버리는 것이 매우 많아 역의 기능을 못 쓰게 한 것이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중략〉 청컨대 전라병사 장한상을 파직시켜 서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전라병사, 장한상, 탐라.

❖ 康熙 五十四年 乙未 三月 二十五日 辛酉

○ 院前啓, …… 臣以全羅兵使張漢相罷職事, 有所論啓矣. 及承聖批, 不惟不賜允兪, 至以御史書啓, 繡衣廉問, 未見其不治不法, 勒賣諸驛, 尤不近理等語爲敎, 臣竊有所未曉也. 漢相本以濫猾武夫, 屢除閫任, 專出於善事要譽, 到底疑謗, 固不可勝言, 而及授本閫, 已有物議, 冒赴之後, 事多不法. 耽羅運穀時, 潛給營錢於領船軍官李順裁, 多貿駿馬, 此則其時監賑御史之所已親聞, 嚴關于本營者也. 至於勒賣諸驛一款, 亦甚明白, 京鄕病廢之馬, 廣求歇賣, 別養官廐, 待其稍蘇, 出賣於靑巖·碧沙等驛, 衆人耳目, 有所難掩, …… 今玆擧劾, 實出於十分審愼, 而更無加詳之端, 如此之人, 決不可仍畀閫任, 請全羅兵使張漢相罷職不敍. 答曰, 勿煩.

❖ 숙종 41년(1715) 을미년 3월 25일(신유)

□ 전라병사(全羅兵使) 장한상(張漢相)의 파직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전에 아뢰기를, "〈중략〉 신이 전라병사 장한상(張漢相)을 파직시키는 일을 논계(論啟)[1001]한 바 있습니다. 임금께서 비답을 내렸는데, 윤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사 서계에서도 어사가 탐문해도 그의 다스리지 못하고 불법에 대해 보지 못했으며 역(驛)에 강제로 판 것은 더욱 사리에 가깝지 않다는 말로 교서를 내리니, 신은 삼가 깨우치지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 장한상은 본래 탐오하고 교활한 무부(武夫)로 누차 병사에 제수되어 오로지 잘하는 일이 명예를 구하는 데만 나갔으니, 의심하고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는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본 장수를 제수 받을 때 이미 물의가 있었으며 무릅쓰고 부임한 뒤에는 일에 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탐라(耽羅)에 곡식을 운송할 때 영선군관(領船軍官) 이순재(李順裁)에게 군영의 돈을 몰래 지급하여 좋은 말을 많이 샀는데, 이는 그 때 감진어사가 이미 친히 아뢴 바로 본영에 엄중한 관문을 보냈습니다. 역(驛)에 억지로 팔았다는 한 조목에 이르러도 또한 매우 명백하여 경향 각지에서 병들어 몹쓸 말을 널리 구해 싸게 사들여 특별히 관아 마구간에서 기르고 조금 나아지기를 기다려 청암(靑巖), 벽사(碧沙) 등의 역(驛)에 내다 판 것에 여러 사람의 이목이 있어 가려지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중략〉 이제 죄상을 들어 탄핵하는 것은 실로 충분히 조심스럽고 삼가는 데서 나온 것이니 더는 자세히 살필 단서가 없습니다. 이 같은 사람은 결코 장수의 직임에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1001) 논계(論啟):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따져 아룀.

청컨대 전라병사 장한상을 파직시켜 서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전라병사, 장한상, 탐라, 이순재, 청암, 벽사.

❖ 康熙 五十四年 乙未 四月 二日 丁卯

○ 院前啓, …… 臣以全羅兵使張漢相罷職不敍事, 有所論啓, 冒瀆宸嚴, 未蒙允兪, 臣竊有所慨然也. 漢相, 特一濫猾武夫耳, 曾莅北兵營也, 不謹邊事, 致有犯越生梗之患, 軍校至於梟示. 漢相爲其主帥, 則厥罪較重, 而罰止罷職, 人情之憤惋, 至今未已, 論其負犯, 偃息亦幸, 而只以善事, 收用如舊, 復授本閫, 物議喧騰, 而冒沒赴任, 專事貪婪. 耽羅之多貿駿騾, 諸驛之勒賣病馬, 營穀之利歸私橐, 俱出於乘時肥己之計, 此已可駭, 而土卒軍官梁禹甸, 以其奸黠之故, 最受信任, 從中用事. 凡諸罪罰之輕重, 一隨賄賂之多少, 雖事係巡營, 已爲勘律者, 百計營護, 必欲全釋而後已, 其他大少政令, 專出於此漢之手, 怪駭之擧, 不一而足. 南來之人, 莫不有喧罵者, 臣之所聞, 旣甚明的, 今玆論劾, 亦加審愼, 則更無詳察之端, 如此之人, 決不可仍畀閫任, 請全羅兵使張漢相罷職不敍. 答曰, 不允. 張漢相, 遞差.

❖ 숙종 41년(1715) 을미년 4월 2일(정묘)

□ 전라병사(全羅兵使) 장한상(張漢相)의 파직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전에 아뢰기를, "〈중략〉 신이 전라병사 장한상(張漢相)을 파직시켜 서용하지 마는 일로 논계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의 권위를 모독하여 윤허를 받지 못하니 신은 삼가 개연한 바가 있습니다. 장한상은 다만 하나의 탐오하고 교활한 무부(武夫)일 뿐입니다. 일찍이 북병영(北兵營)[1002]을 관장할 때 변경의 일을 조심하지 않아 불화가 생겨 국경을 넘어가는 우환이 있게 되자 군교(軍校)를 효시하였습니다. 장한상이 장수가 되어 그 죄가 더욱 중한데 벌은 파직하는데 그치니 인정이 분개하고 지금도 그치지 않으니 그 저지른 죄를 논하면 오히려 편안히 쉬는 게 또한 다행입니다. 다만 잘하는 일로써 예전 같이 수용되어 다시 장수에 제수되자 물의가 시끄럽게 올랐음에도 염치없게도 무릅쓰고 부임하여 오로지 탐욕만 일삼았습니다. 탐라(耽羅)에서 좋은 말을 많이 사고, 여러 역(驛)에 병든 말을 강제로 팔고, 군영 곡식의 이자를 개인 주머니로 돌린 것이 모두 때를 타서 자기를 살찌우는 계책으로 나아갔으니 이것이 이미 해괴하다 할 만합니다. 〈중략〉 이제 죄상을 들어 탄핵하는 것 또한 조심스럽고 삼감을 더 했으니 다시 자세히 살필 단서가 없습니다. 이 같은 사람은 결코 장수의 직임에 그대로 둘 수

1002) 북병영(北兵營): 함경도 경성(鏡城)에 설치되었던 병마절도사의 진영. 정식 명칭은 함경도북도병마절도사영(咸鏡道北道兵馬節度使營)임.

없습니다. 청컨대 전라병사 장한상을 파직시켜 서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장한상은 교체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전라병사, 장한상, 북병영, 탐라.

❖ 康熙 五十四年 乙未 四月 六日 辛未

○ 備邊司啓曰, 濟州判官南九明, 以善賑陞資之後, 因本牧啓請, 限今春賑政, 使之仍存矣. 今聞本州新迎下人, 已爲上來, 而以銓曹長席引入之故, 未卽出代, 絶島之人, 久留京邸, 饑困方甚, 殊可愍然. 令該曹另擇差出, 以爲斯速赴任之地, 何如? 答曰, 允.【備局謄錄】

❖ 숙종 41년(1715) 을미년 4월 6일(신미)

□ 제주판관(濟州判官) 남구명(南九明)의 후임을 차출하여 속히 부임시키기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 남구명(南九明)이 진휼을 잘하여 당상관에 오른 후, 본 제주목의 계청 때문에 올 봄에 한하여 진휼의 정사를 그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들으니 제주에서 신영(新迎) 나온 하인들이 이미 올라 와 있는데, 인사부서[이조와 병조]의 장관이 나오지 않은 까닭에 곧바로 후임을 차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도의 사람들이 오래도록 서울에 머물러 주리고 곤궁하기가 매우 심하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가려서 후임을 차출하여 이에 속히 임지로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남구명.

❖ 康熙 五十四年 乙未 四月 六日 辛未

○ 吏批, 以鄭揀爲濟州判官, …….

❖ 숙종 41년(1715) 을미년 4월 6일(신미)

□ 정간(鄭揀)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정간(鄭揀)[1003]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정간, 제주판관.

1003) 정간(?~?): 제주판관 재임기간 1715년(숙종 41) 5월~1718년(숙종 44) 6월. 재임 중 판관으로 양곡을 많이 비축하여 굶주리는 도민을 진휼한 공로가 인정되어 통정대부로 승진.

❖ 康熙 五十四年 乙未 四月 二十日 乙酉

○ 下直, 濟州判官鄭棟, 統虞候李遂良.

❖ 숙종 41년(1715) 을미년 4월 20일(을유)

□ 제주판관(濟州判官) 정간(鄭揀) 등이 하직함

○ 제주판관(濟州判官) 정간(鄭揀)[1004], 통우후(統虞候) 이수량(李遂良)이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정동, 하직.

1004) 국사편찬위원회의 탈초본에는 정간(鄭揀)이 정동(鄭棟)으로 오기 되어 있음. 역주자가 바로 잡음.

❖ 康熙 五十四年 乙未 六月 八日 壬申

○ 吏批, 以趙遠命爲兵曹佐郎, …… 金始煥爲濟州牧使, …….

❖ 숙종 41년(1715) 을미년 6월 8일(임신)

□ 김시환(金始煥)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조원명(趙遠命)을 병조좌랑(兵曹佐郎)에, 〈중략〉 김시환(金始煥)[1005]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김시환, 제주목사.

1005) 김시환(1673~1739):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회숙(晦叔), 호는 낙파(駱坡). 부친은 김홍주(金弘柱). 1700년(숙종 26) 춘당대시 을과 급제. 지평, 정언, 판서를 역임. 아우 김시혁(金始爀), 김시형(金始炯)과 함께 기로소에 들어감. 한 집에서 무려 열 사람이 급제했고, 성실하고 삼갔으며 우애가 깊었음. 시호는 효헌(孝憲). 제주목사로 부임하지 않음.

❖ 康熙 五十四年 乙未 六月 二十一日 乙酉

○ 獻納洪好人啓曰, 臣之情勢病狀, 實無供職之望, 一向含默, 罪戾亦大, 陳章請譴, 以祈遞免, 而濟州前牧使邊是泰之徑報瓜狀, 徑先遞任, 臣實慨然, 故附陳於疏末矣. 卽伏見該曹覆啓辭意, 則有若臣全昧定式之本意, 而有所論列者然, 臣竊瞿然, 繼之以訝惑也. 蓋銓曹回啓, 以頃年御史書啓所定節目, 爲徑出交代之證, 此有大不然者, 御史書啓本旨, 六月以後十月以前瓜滿者, 則新除之人, 勢當秋冬越海, 而秋冬, 則得風甚難, 故參酌事勢. 且據先朝古例, 更請變通, 欲使之三四月內遞易, 而至於至月臘月之瓜滿應遞者, 不爲擧論者, 其代, 當於冬月差出, 至翌年二三月風和時, 自可赴任, 無容更議故也. 今此邊是泰瓜限, 若在於今年十月以前, 則當依新定節目, 徑先許遞, 春末使之出來, 而是泰瓜限, 旣在於十一月, 則固當於冬間許遞, 明春使之出來, 不失先朝定限之法意, 今豈可援據十月以前箇滿徑出之例, 適中其徑遞之願耶. 至於李益漢, 則瓜限在於九月, 故其年春, 送報瓜狀, 依新定定式而出代, 則今不可與十月以後十一月瓜滿之邊是泰, 混引爲例也明矣. 無乃銓曹未及詳考定式本意而然耶. 噫, 瓜期定限, 自是金石之典, 苟有違例之事, 則前頭之弊, 有不可勝言, 十月至月, 相去不遠, 而分朔定式, 法意裁[校][截]然, 今若以十一月以後, 謂無擧論之事, 援例於十月以前之定式, 則臘月與明春瓜滿之人, 亦當因此爲例, 徑先遞易耶? 臣以爲朝家守成憲遵定規之意, 恐不當如此也. 臣之迷見, 只在於嚴瓜限杜後弊之道, 而緣臣疲劣, 言不見施, 何敢抗顔仍冒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 答曰, 勿辭, 退待物論.

❖ 숙종 41년(1715) 을미년 6월 21일(을유)

□ 제주(濟州) 전 목사 변시태(邊是泰)의 교대 시기와 관련한 헌납 홍호인(洪好人)의 계

○ 헌납 홍호인(洪好人)이 아뢰기를, “신(臣)의 형편으로 병 휴직을 청하는 글을 올린 것은 참으로 공직수행을 바랄 수 없고 한 결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려니 죄를 짓고 어그러진 것 또한 커서 견책을 청하는 소장을 올림으로써 교체하여 면직시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주(濟州) 전목사 변시태(邊是泰)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미리 보고하여 앞질러 교체하였으니 신이 참으로 개탄하여 상소 말미에 진술을 덧붙였습니다. 곧 해당 부서에 사의(辭意)를 아뢰도록 알렸으며, 만약 신이 정식(定式)의 본의를 전혀 모르고 그랬다며 죄를 논할 것이 있다고 그러니 신은 마음속으로 매우 놀랍고 이어서 괴이하고 의심스럽습니다. 대개 인사 담당 부서에서 아뢴 바, 근년 어사의 서계(書啓)로 정한 절목(節目)은 일찍

교대하여 물러간 증거가 되는데 이는 크게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으며, 어사 서계의 본지는 6월 이후 10월 이전에 임기가 다할 때는 새로 제수한 사람이 형세가 가을에서 겨울을 당해 바다를 건너는데, 가을에서 겨울은 바람을 만나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일의 형편을 참착하라는 것입니다. 또 앞선 왕대의 옛 관례에 따라 다시 변통을 청하여 3~4월 내에 교대하려면 11월~12월에 임기가 다해 교대할 자는 거론하지 말고 그 대신 겨울철을 당해 차출하고 익년 2월~3월 바람이 온화할 때에 이르러 부임할 수 있다 했으니 다시 논의할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변시태의 임기는 금년 10월 이전에 있다면 마땅히 새로 정한 절목에 따라 앞질러 교대를 허용하여 (올해) 늦봄에 나오게 할 것인데, 변시태의 임기가 이미 11월에 있으니 진실로 겨울철에 교대를 허용하여 다음해 봄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앞선 왕대에 정한 법의 뜻을 잃지 않는 것이니 지금 어찌 10월 이전 임기가 다해 미리 나오는 예를 따르는 것이 앞질러 교대하는 바램에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이익한(李翊漢)[1006]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가 9월이었기 때문에 그해 봄에 임기가 찼다고 보고하는 장계를 보내 알렸고 새로 정한 정식에 의거 후임을 차출한 것인데, 지금 10월 이후 11월에 임기가 다하는 변시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니 잘못 적용하여 예로 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사 담당 부서에서 정식의 본의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수령) 임기는 일정한 기한이 이로부터 변치 않는 법도인데 만일 예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앞날의 폐단도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10월과 11월은 서로 먼 것도 아니나 달을 나누어 규칙을 정한 것은 법의 뜻이 확연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11월 이후에도 거론하는 일 없이 10월 이전의 정해진 규칙의 예를 따르라 하시면 12월과 다음해 봄에 임기가 다한 사람 역시 이로 인해 예를 삼아서 앞질러 교체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신은 조정의 이전 법전을 지켜서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려는 뜻인데, 이와 같이 하면 부당할 듯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의견은 다만 임기를 엄격히 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으려는 도리에 있는데 신의 용렬함으로 인해 말한 바가 시행을 보지 못하니 어찌 감히 얼굴 들고 건방지게 간관의 자리에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청컨대 신의 직책을 교체하여 내쫓는 명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여러 논의를 기다려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변시태, 이익한, 홍호인, 제주목사, 임기.

1006) 《승정원일기》 탈초본에는 이익한(李益漢)으로 잘못 되어 있음. 역주자가 이익한(李翊漢)으로 바로잡음.

❖ 康熙 五十四年 乙未 七月 一日 甲午

○ 備邊司啓目, 粘連吏曹堂上聯名上疏云云, 濟州, 爲涉海之地, 牧使以下官交替之際, 彼此候風, 或致淹延, 供億有弊, 瓜期在六月以後, 十月以前者, 許令正·二月出代, 瓜期在五月以前, 十一月以後, 冬春間出代之意, 雖不足論, 擧一包二, 自可推見, 諫臣所論, 誠爲得宜. 邊是泰瓜期, 在今十一月, 則春間報瓜, 出於錯認近例, 該曹之今月出代, 亦未審察定式本意, 已定之制, 今無復可以稟定者, 固當遵承而施行, 邊是泰仍任, 新差牧使金始煥遞改, 自今一切以此定式施行之意, 申飭該曹, 何如? 啓依允.

❖ 숙종 41년(1715) 을미년 7월 1일(갑오)

□ 제주(濟州) 전 목사 변시태(邊是泰)를 그대로 두고 새로 제수된 김시환(金始煥)의 교체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목

○ 비변사 계목에 이조 당상이 연명하여 올린 상소에 덧붙여 운운하기를, "제주(濟州)는 바다 건너의 땅으로 목사 이하 관리를 교체할 때 이런저런 바람을 기다려 혹 시일을 질질 끄는데 이르니 공물을 바치는데 폐단이 있고 임기 만료가 6월 이후 10월 이전에 있는 자는 1월, 2월에 후임 차출을 명하도록 허용하고, 임기가 5월 이전 11월 이후에 있는 자는 겨울과 봄 사이에 후임을 차출하는 뜻은 비록 논하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를 들어 둘을 포함하는 것이니 저절로 미루어 볼 만하여 간언하는 신하가 논한 바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입니다. 변시태(邊是泰)의 임기가 이제 11월에 있는데 봄 사이에 임기를 보고한 것은 잘못 인용된 가까운 예에서 나온 것이니 해당 부서에서 이번 달 후임을 차출하는 것 또한 정식(定式)의 본의를 깊이 살펴보지 못한 것이어서, 이미 정해진 규칙으로 지금 다시 여쭈어 결정할 것 없이 참으로 계승한 바를 준수하고 시행하여 변시태를 그대로 임용하고 새로 임명된 목사 김시환(金始煥)을 교체하여 이제부터 일체 이 정식으로써 시행할 뜻을 해당 부서에 엄중히 타이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변시태, 김시환, 임기.

❖ 康熙 五十四年 乙未 七月 二日 乙未

○ 吏批, 以南道揆爲司僕正, …… 邊是泰爲濟州牧使, …….

❖ 숙종 41년(1715) 을미년 7월 2일(을미)

□ **변시태(邊時泰)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남도규(南道揆)를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중략〉 변시태(邊時泰)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변시태, 제주목사.

❖ 康熙 五十四年 乙未 七月 十三日 丙午

○ 以濟州牧使, 以全家定配罪人金㺚男等及從人德萬等四十一名滌死事, 狀啓, 傳于許玩曰, 事極驚慘, 令本州, 各別恤典擧行.

❖ 숙종 41년(1715) 을미년 7월 13일(병오)

□ 김끝남(金㺚男) 등 41명이 익사하였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해 내린 전교

○ 온 가족이 정배(定配)된 죄인 김끝남(金㺚男) 등과 하인 덕만(德萬) 등 41명이 익사한 일에 대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허윤(許玩)에게 전교하기를, "일이 매우 놀랍고 참혹하여 본주에 각별히 휼전(恤典)을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김끝남, 덕만, 익사, 제주목사, 휼전.

❖ 康熙 五十四年 乙未 七月 十四日 丁未

○ 韓重熙啓曰, 濟州牧使邊是泰, 出陸罪人移配啓本中, 左議政金字之下, 不書其名, 有違格例, 難免疎漏之失, 濟州牧使邊是泰, 推考, 何如? 傳曰, 允.【以上燼餘】

❖ 숙종 41년(1715) 을미년 7월 14일(정미)

□ 계본(啓本)에 잘못이 있으므로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의 추고를 청하는 한중희(韓重熙)의 계

○ 한중희(韓重熙)가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의 육지로 내보내는 이배(移配) 죄인 계본 중에 좌의정 김(金) 자의 아래 그 이름을 쓰지 않아 격식에 맞지 않는 예가 있어서 소홀히 다룬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제주목사 변시태를 추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한중희, 제주목사, 변시태, 계본.

❖ 康熙 五十四年 乙未 七月 十九日 壬子

○ 許玧啓曰, 濟州牧使, 以旌義縣甲午條軍民貢物進上及年例進上所載船, 致敗於大洋, 人物二名淹死事, 狀啓. 傳曰, 淹死人等, 令本州恤典擧行.【燼餘】

❖ 숙종 41년(1715) 을미년 7월 19일(임자)

□ 정의현(旌義縣)의 공물 진상선이 침몰하여 익사자 2명이 발생하였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

○ 허윤(許玧)이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정의현(旌義縣)의 갑오(甲午)조 군민(軍民) 공물 진상 및 연례 진상을 실은 배가 큰 바다에서 침몰하여 사람 2명이 익사한 일에 대한 장계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익사한 사람들은 본주에서 휼전(恤典)을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정의현, 진상, 익사, 휼전.

❖ 康熙 五十四年 乙未 九月 六日 戊戌

○ 院前啓, 請還收罪人河滅死定配之命, 更加嚴刑得情, 依律處斷事. 請謝恩正使晉平君澤, 副使權愇, 書狀官兪崇, 竝命削奪官爵, 門外黜送事. 請前捕盜大將李基夏, 削奪官爵事. 新啓, 濟州牧使邊是泰, 到任以後, 無一善狀, 連歲賑政, 不能盡心撫摩, 移粟救民之至澤, 不得洽被一島, 而剋減賑穀, 私貿魚藿, 取漢拏山松板, 以爲牟利之資, 而不時役民, 鞭扑狼藉. 頃日臺臣, 以預報瓜期, 論啓仍任, 如此貪汚不法之人, 不可一日留置, 以貽島民之害, 請濟州牧使邊是泰, 罷職不敍. 答曰, 不允. 末端事, 更加詳察處之.

❖ 숙종 41년(1715) 을미년 9월 6일(무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의 실정에 파직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 전계(前啓)에, 죄인 이하(李河)의 사형을 줄여 정배(定配)하는 명을 거두고 다시 실정에 맞게 엄한 형벌을 더해 법에 의거 처단하는 일을 청했다. 사은정사(謝恩正使) 진평군(晉平君) 이택(李澤), 부사 권성(權愇), 서장관 유숭(兪崇)을 모두 삭탈관작 하여 사대문 밖으로 추방하는 일을 청했다. 전 포도대장 이기하(李基夏)를 삭탈관작 하는 일을 청했다. 새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는 도임 이후 하나도 선정을 베푼 정황이 없고, 해마다 진휼의 정사는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위로하지 않았고, 곡식을 옮겨 백성을 구제하는 은택이 온 섬에 골고루 입혀지지 않았으며, 진휼 곡식을 깎고 줄여서 사사로이 해산물을 무역하였으며, 한라산(漢拏山) 송판(松板)을 취하여 개인의 이익 챙기기에 보탰고, 불시에 백성을 일시키며 매질하는 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사헌부 관리가 임기를 미리 알려 만료된 그를 그대로 머무르게 한 잘못을 아뢨는데, 이처럼 탐오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하루라도 그대로 두어 섬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둘 수 없으니 청컨대 제주목사 변시태를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아뢴 일은 다시 더 자세히 살펴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변시태, 한라산, 송판, 이하, 진평군, 이택, 권성, 유숭, 이기하.

❖ 康熙 五十四年 乙未 九月 九日 辛丑

○ 院前啓, 請還收罪人河滅死定配之命, 更加嚴刑得情, 依律處斷事. 請謝恩正使晉平君澤, 副使權愔, 書狀官兪崇, 竝命削奪官爵, 門外黜送事. 請前捕盜大將李基夏, 削奪官爵事. 請濟州牧使邊是泰, 罷職不敍事. 新啓, 太廟薦新, 事體至重, 而襄陽都會七月令生鰱魚, 終至闕封, 極爲可駭. 薦享之羞, 比御供亦異, 聖上, 雖軫守令數遞之弊, 特下勿罷之敎, 而事有輕重, 不可原恕, 請還收當該闕封官只推之命, 依道臣啓聞罷黜. 答曰, 不允.

❖ 숙종 41년(1715) 을미년 9월 9일(신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의 실정에 파직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 전계에, 죄인 이하(李河)의 사형을 줄여 정배(定配)하는 명을 거두고 다시 실정에 맞게 엄한 형벌을 더해 법에 의거 처단하는 일을 청했다. 사은정사(謝恩正使) 진평군(晉平君) 이택(李澤), 부사 권성(權愔), 서장관 유숭(兪崇)을 모두 삭탈관작 하여 사대문 밖으로 추방하는 일을 청했다. 청컨대 전 포도대장 이기하(李基夏)를 삭탈관작 하는 일을 청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를 파직하고 서용하지 않는 일을 청했다. 새로 아뢰기를, "태묘(太廟)의 천신(薦新)은 일의 본체가 지극히 중한데 양양(襄陽) 도회(都會)의 7월령 생연어(生鰱魚)가 마침내 봉진을 빠뜨렸으니 지극히 놀랄 만합니다. 신위에 제향으로 올리는 것은 임금에게 바치는 것에 비해 또한 다르며 성상(聖上)께서 비록 수령을 자주 교체하는 폐단을 염려하여 특별히 파직하지 말라는 교지를 내렸으나 일의 경중에 있어서 참작하여 용서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해당 봉진을 빠뜨린 관리를 추고만 하라는 명을 거두시고 관찰사가 아뢴 대로 파면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변시태, 이하, 진평군, 이택, 권성, 유숭, 이기하, 양양, 생연어.

❖ 康熙 五十四年 乙未 九月 十日 壬寅

○ 院前啓, 請還收罪人河滅死定配之命, 更加嚴刑得情, 依律處斷事. 請謝恩正使晉平君澤, 副使權愔, 書狀官兪崇, 削奪官爵, 門外黜送事. 請前捕盜大將李基夏, 削奪官爵事. 請濟州牧使邊是泰, 罷職不敍事. 請還收襄陽都會宗廟薦新闕封官只推之命, 依道臣啓聞罷黜事. 入啓. 答曰, 不允. 末端事, 依啓.

❖ 숙종 41년(1715) 을미년 9월 10일(임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의 실정에 파직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 전계(前啓)에, 죄인 이하(李河)의 사형을 줄여 정배(定配)하는 명을 거두고 다시 실정에 맞게 엄한 형벌을 더해 법에 의거 처단하는 일을 청했다. 사은정사(謝恩正使) 진평군(晉平君) 이택(李澤), 부사 권성(權愔), 서장관 유숭(兪崇)을 모두 삭탈관작 하여 사대문 밖으로 추방하는 일을 청했다. 전 포도대장 이기하(李基夏)를 삭탈관작 하는 일을 청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를 파직하고 서용하지 않는 일을 청했다. 양양(襄陽) 도회(都會)의 종묘(宗廟) 천신(薦新) 봉진을 빠뜨린 관리를 추고만 하라는 명을 거두고 관찰사가 아뢴 대로 파면할 일을 청하는 입계(入啓)에 대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마지막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변시태, 이하, 진평군, 이택, 권성, 유숭, 이기하, 양양.

❖ 康熙 五十四年 乙未 九月 十一日 癸卯

○ 院前啓, 請還收罪人河滅死定配之命, 更加嚴刑得情, 依律處斷事. 前捕盜大將李基夏, 偏聽訐告之言, 拘執買燈之人, 酷施亂杖, 仍卽致斃, 雖在强盜應死者, 尙有三覆審愼之規, 則況人非竊盜, 罪非可殺者乎? 設或有侵辱之說, 固當移送法司, 依律勘治, 而勒成罪名, 徑先撲殺, 該廳軍校輩, 旣自秋曹覈實, 勘律定配, 則主將之用刑慘殘, 枉殺人命之罪, 決不可罷職薄罰而止, 請前捕盜大將李基夏, 削奪官爵. 請濟州牧使邊是泰, 罷職不敍事. 入啓. 答曰, 不允. 李基夏削奪之請, 已涉太過, 而强盜本不待時, 則三覆之說, 未免爽實也. 勿煩. 末端事, 依啓. 前啓, 謝恩正使晉平君澤, 副使權愔, 書狀官兪崇, 竝命削奪官爵, 門外黜送事, 停啓.

❖ 숙종 41년(1715) 을미년 9월 11일(계묘)

□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의 실정에 파직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 전계(前啓)에, 죄인 이하(李河)의 사형을 줄여 정배(定配)하는 명을 거두고 다시 실정에 맞게 엄한 형벌을 더해 법에 의거 처단하는 일을 청했다. 전 포도대장 이기하(李基夏)는 비방하는 말을 편벽되게 듣고 등(燈)을 사는 사람을 체포하고는 가혹하게 닥치는 대로 마구 쳐서 곧 치사케 했는데 비록 강도라도 죽음에 처할 자는 오히려 삼복(三覆)[1007]하여 조심하고 삼가는 법칙이 있거늘 하물며 사람이 절도도 아닌데 그 죄가 죽일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혹 모욕을 당한 말이 있더라도 거듭 법사(法司)[1008]로 이송하여 법률에 의거 죄의 경중을 감안하여 다스리면 되는데 억지로 죄명을 얽고 앞질러 죽여 버렸으니 해당 관아의 군교(軍校) 무리는 이미 형조로부터 실상을 조사받고 법을 적용하여 정배(定配)하였고 주장(主將)이 참혹하게 죽여 형벌을 적용한 것은 인명을 미친 듯 죽이는 죄여서 결코 파직하여 가볍게 벌을 주는데 그쳐서는 불가합니다. 청컨대 전 포도대장 이기하를 삭탈관작 하십시오.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를 파직하고 서용하지 않는 일을 청하는 입계(入啓)에 대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기하의 삭탈관작 요청은 이미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강도는 본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죽이는 것인즉 삼복의 말은 사실에 어긋남을 면할 수 없다. 번거롭게 하

1007) 삼복(三覆):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 번 심리하던 일.

1008) 법사(法司): 사법 업무를 담당하던 관서로 형조, 사헌부, 한성부, 의금부, 장예원 등을 가리킴. 이 중 사법 업무의 중요 부분은 형조, 한성부, 의금부에서 행해졌는데, 이를 삼법사(三法司)로 칭하였고, 때로는 의금부 대신 사헌부를 넣어 삼성(三省)이라고 부르기도 함.

지 말라. 마지막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전에 아뢴 사은정사(謝恩正使) 진평군(晉平君) 이택(李澤), 부사 권성(權惺), 서장관 유숭(兪崇)을 모두 삭탈관작 하여 사대문 밖으로 추방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계(停啓)[1009]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변시태, 이하, 이기하, 진평군, 이택, 권성, 유숭.

1009) 정계(停啓): 사헌부, 사간원에서 죄인의 성명과 죄명 등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서류 가운데서 죄인의 이름을 삭제하는 일.

❖ 康熙 五十四年 乙未 十月 七日 己巳

○ 濟州牧使書目, 本島年事, 酷被獰風暴雨之災, 望斷西成事.

❖ 숙종 41년(1715) 을미년 10월 7일(기사)

□ 폭풍과 폭우의 피해를 입었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은 본도의 농사가 혹심한 폭풍과 폭우의 재난을 당해 추수할[1010] 희망이 끊어졌다는 일이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서목.

1010) 서성(西成): 가을에 곡식이나 과일이 익는 것, 또는 가을철 수확. 오행설(五行說)에서 가을철은 서(西)쪽에 해당한 데서 나온 말.

❖ 康熙 五十四年 乙未 十月 三十日 壬辰

○ 備邊司啓曰, 大臣·備局有司堂上, 明日來會賓廳事, 昨有下敎, 臣等今方來詣, 而有司堂上四員中, 兵曹參判李光佐在外, 皆以病故不進矣. 判尹閔鎭厚, 禮曹判書趙泰耉, 戶曹判書李健命, 竝卽牌招, 而且以濟州賑穀事, 有稟定之事, 賑廳堂上趙泰采, 亦令入侍, 何如? 傳曰, 允.

❖ 숙종 41년(1715) 을미년 10월 30일(임진)

□ 제주(濟州) 진휼 곡식에 대해 아뢰어 결정할 일로 조태채(趙泰采)를 입시하도록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대신과 비변사의 유사(有司) 당상관들을 내일 빈청(賓廳)[1011]에 와서 모이는 일로 어제 하교하였는데, 신(臣) 등이 이제 와서 이르니 유사당상 4명 중에 병조참판 이광좌(李光佐)는 지방에 있고, 모두 병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윤 민진후(閔鎭厚), 예조판서 조태구(趙泰耉), 호조판서 이건명(李健命)을 아울러 부르고 또 제주(濟州) 진휼 곡식의 일로 아뢰어 결정할 일이 있어서 진휼청(賑恤廳) 당상 조태채(趙泰采) 또한 입시하도록 명을 내리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진휼, 조태채.

1011) 빈청(賓廳): 조선시대 궁궐 내에 설치한 고관들의 회의실. 경복궁에는 근정전 서남의 승정원 남쪽에 있었고, 경희궁에는 숭정문 밖 승정원과 시강원의 동쪽에 있었음. 다른 궁에서도 역시 승정원 인근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정승을 비롯한 비변사 당상관, 즉 정2품 이상의 주요 고위 관리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변란, 국상 기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의논하던 회의실로 사용됨. 비변사의 정기회합은 이곳에서 매월 3회씩 있었으나 1698년(숙종 24)부터는 6회씩으로 늘어남.

❖ 康熙 五十四年 乙未 十月 三十日 壬辰

○ 備邊司啓辭, 大臣及備局有司堂上, 明日來會賓廳事, 昨有下敎, 臣等今方來詣, 有司堂上四員中, 兵曹參判李光佐外, 皆以病故不進矣. 行漢城府判尹閔鎭厚, 行禮曹判書趙泰耉, 戶曹判書李健命, 竝卽牌招, 而且以濟州賑穀事, 有稟定之事, 賑廳堂上趙泰采, 亦令入侍, 何如? 答曰, 允.

❖ 숙종 41년(1715) 을미년 10월 30일(임진)

□ 제주(濟州) 진휼 곡식에 대해 아뢰어 결정할 일로 조태채(趙泰采)를 입시하도록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대신 및 비변사의 유사(有司) 당상관들을 내일 빈청(賓廳)에 와서 모이는 일로 어제 하교하였는데, 신(臣) 등이 이제 와서 이르니 유사 당상 4명 중에 병조참판 이광좌(李光佐)는 지방에 있고, 모두 병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한성부판윤 민진후(閔鎭厚), 행예조판서 조태구(趙泰耉), 호조판서 이건명(李健命)을 아울러 부르고 또 제주(濟州) 진휼 곡식의 일로 아뢰어 결정할 일이 있어서 진휼청(賑恤廳) 당상 조태채(趙泰采) 또한 입시하도록 명을 내리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진휼, 조태채.

❖ 康熙 五十四年 乙未 十月 三十日 壬辰

○ (今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又所啓, 濟州農事, 牧使邊是泰, 當更爲狀啓, 而姑未上來, 或由於越海之際, 淹滯之致, 未知九月後農形, 果復, 何如? 雖或視初秋, 有一分稍勝, 而想其災歉形勢, 不可不入送穀物, 必當趁今有所措處矣. 兩南沿邑各穀, 連爲入送, 所儲無多, 且沿邑, 皆自以荒政, 爲憂民不贍, 必難又爲移轉, 事甚可慮. 統營穀物, 本來爲累十萬石, 近雖有減, 當爲數多, 此外亦有賑廳等穀, 以此等穀, 酌量除出, 爲入送之數爲當, 而大約合大米雜穀, 爲萬石, 可以爲入救之資, 前頭更觀緩急, 而處之似當. 賑廳堂上趙泰采, 方爲入侍, 以此下詢, 何如? 左議政金昌集曰, 濟州連年饑荒, 前牧使邊是泰, 以農形又將失稔之狀馳啓矣, 民事極爲可慮, 新牧使來言, 島中人口, 死亡已多, 比前雖曰減少, 而須得萬斛米, 始可救活云. 前此入送穀物, 未知還捧爲幾何, 而絶島異於陸邑, 自今預爲分定, 趁開春入送, 庶無未及之弊矣. 上曰, 賑廳堂上, 所見, 何如? 兼吏曹判書趙泰采曰, 新牧使旣未目覩島中形勢, 則以萬石穀, 可以濟之云者, 此乃臆料矣. 然而八月以後農形, 雖未知如何, 大抵凶歉則判矣. 遠地之事, 必須預爲拮据, 可無窘急之患, 而京廳所儲, 亦爲潰竭, 實難推移, 勢將以嶺南巡統營穀及湖南巡檢營常賑兩廳穀, 推移入送矣. 在前統營會付穀三萬石, 而監營穀, 不下四十萬石, 累經凶年, 薄減甚多. 今年又未免失稔, 本道形勢, 亦涉可慮, 而若以山郡之穀, 次次移轉, 而豈無推移充數之道乎? 毋論米租, 以萬石爲限, 四千石, 定於嶺南, 六千石, 則定於湖南, 以都事, 差督運官, 裝載入送後, 使之復命, 似好矣. 而丙子年間, 故判書朴權爲督運官, 亦往嶺南, 今亦依此例, 使都事督運, 則尤爲着實, 故敢達. 上曰, 賑廳堂上之言, 是矣. 分付兩道都事, 督運入送, 可也. 金昌集曰, 年前嶺南, 以濟州穀物移轉, 民弊不些云, 而以山郡穀物, 次次移送沿邑之外, 恐無他道, 而湖南各邑, 還上牟麥, 亦爲劃送, 則可以補賑矣. 上曰, 分嶺南·湖南, 以此分付, 而入送穀物, 分明定數, 可也. 徐宗泰曰, 若以萬石入送, 則大米四千石, 小米六千石, 定數以送好矣. 上曰, 大米四千石, 雜穀六千石合萬石, 定送似好, 以此分付, 可也.

❖ 숙종 41년(1715) 을미년 10월 30일(임진)

□ 기황(饑荒)이 심한 제주(濟州)의 백성을 구휼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금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할 때) 또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농사는 목사 변시태(邊是泰)가 다시 장계를 보내와야 하는데도 아직 올라오지 않

아 혹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지체하는지 9월 이후의 농사 형편을 알 수 없으니 과연 다시 어찌해야 합니까? 비록 혹 초가을 (기후를) 보건대 약간 조금 나아지기는 했으나 재해를 말미암은 흉년의 형세를 생각해보면 곡물을 들여보내지 않을 수 없어 반드시 지금 조처가 있어야 합니다. 영호남 연안 고을의 각 곡식을 계속해서 들여보내야 하는데 비축한 것이 많지 않고, 또 연안 고을 모두 자신들의 흉년 구제 정책으로 백성들을 근심하는데 넉넉지 못하여 반드시 어려우며 또한 이전까지 하게 되면 일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통영(統營)의 곡물은 본래 십만 석이 쌓여 있는데 근래에 비록 감소되었다 해도 수량이 많고, 이 밖에 또한 진휼청 등의 곡식이 있으니 이들 곡식을 양을 헤아려 덜어내 들여보내는 수량으로 삼는 것이 합당합니다. 대략 쌀과 잡곡을 합해 만 석이 되어 들여서 구제하는 비용이 될 만하고 이후 다시 닥치는 상황의 완급을 보며 처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진휼청 당상 조태채(趙泰采)가 바야흐로 입시하였다 하니 이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해마다 계속된 기근은 전 목사 변시태가 농사 형편에 대해 또 장차 흉년의 상황이라고 급히 아뢰어 백성의 일이 매우 우려되고 새 목사가 올린 말은 섬 안의 인구가 사망한 자가 이미 많으니 전에 비해 비록 감소했다 하나 모름지기 만 곡(斛)의 쌀을 얻어야만 비로소 구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 들여보낸 곡물이 돌려받아야 할 것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절도(絶島)는 육지 고을과 다르니 지금부터 미리 나누어 정해 봄이 시작될 때부터 들여보내야 거의 미치지 못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진휼청 당상은 의견이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겸이조판서(兼吏曹判書) 조태채가 말하기를, "새 목사가 아직 섬 안의 형세를 보지 않은 즉 만 석의 곡식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억측입니다. 그러나 8월 이후 농사 형편이 아직 어떤지 알지 못하니 대개 흉년으로 판단됩니다. 먼 곳의 농사는 반드시 미리 바쁘게 대처해야 궁색하고 위급한 우환이 없고 서울 진휼청에 비축한 것 역시 고갈되어 실로 형편이 어려우니 형세는 장차 영남순통영(嶺南巡統營) 및 호남순검영(湖南巡檢營) 두 곳의 상시 진휼청 곡식을 옮겨 들여보내야 합니다. 이전 통영에서 곡식 3만 석을 넘겨주어 감영의 곡식은 40만 석에 모자라고 누차 흉년을 겪으며 매우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또한 흉년을 면치 못하여 본도의 형세 또한 매우 우려할 만한데 만약 산골 고을의 곡식을 차차 이전하면 어찌 충분한 수량을 갖출 방도가 없겠습니까? 미조(米租)를 논하지 말고 만 석으로 한정하여 4천 석은 영남에 정하고, 6천 석은 호남에 정하여 도사(都事)를 독운관(督運官)으로 파견, 적재하여 들여보낸 뒤 그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병자(1696)

년간에 고(故) 판서 박권(朴權)을 독운관으로 삼아 역시 영남에 간 적이 있는데, 지금 또한 이 예에 의거 도사로 하여금 감독 운송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여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진휼청 당상의 말이 옳다. 양도 도사에 분부하여 운송을 감독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작년에 영남에서 제주로 곡물을 이전함으로써 민폐가 작지 않았다고 하니 산골 고을의 곡물을 차차 연해 고을로 이송하는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호남 각 고을의 환자[還上] 밀과 보리 또한 떼어 보내서 진휼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남과 호남이 나누어 이로써 분부하여 곡물을 들여보내고, 정해진 수량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서종태(徐宗泰)가 말하기를, "만약 만 석을 들여보내려면 쌀[大米] 4천 석과 좁쌀[小米] 6천 석으로 수량을 정해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쌀 4천 석, 잡곡 6천 석, 도합 만 석을 정해서 보내는 것이 좋을듯하니 이로써 분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변시태, 김창집, 조태채, 박권, 서종태, 통영, 진휼.

❖ 康熙 五十四年 乙未 十一月 二十九日 辛酉

○ 備邊司啓曰, 日昨濟州追後狀啓啓下後, 本司, 以頃日所稟定一萬石穀物, 勿待開春, 趁歲前督運急送事, 覆啓分付兩南, 且以此後某樣穀, 連續入送之意, 竝爲稟達矣. 本島三邑, 比前益復慘酷, 民事十分遑汲, 本牧狀啓辭緣之外, 所聞亦皆如此, 朝家賙賑之惠, 宜有所另加常例, 歲前載運之穀, 雖能趁時得達, 追送之穀, 若於歲後分定, 則必無以接濟, 而易致後時之患, 殊甚可慮. 米三千石, 太·麥合一萬石, 更爲酌量分定, 而聞本牧船隻多有出來云, 連續裝載發送爲當. 以此分付賑廳, 趁卽擧行, 何如? 答曰, 允.【備局謄錄】

❖ 숙종 41년(1715) 을미년 11월 29일(신유)

□ 제주삼읍(濟州三邑)에 올해 안에 영호남의 쌀 이외에 콩 등을 추가로 보내 진휼하기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일전에 제주(濟州)의 추후(追後) 장계를 재가한 뒤에 본사에서 지난번 의논해 결정한 일만 석 곡물을 봄을 기다리지 말고 해가 지나기 전에 운송을 감독하여 보내는 일을 다시 아뢰어 영호남에 분부했고, 또 이후에 모양곡(某樣穀)을 계속해서 들여보낼 뜻을 모두 아뢰었습니다. 제주 삼읍(三邑)은 전에 비해 다시 참혹함이 더해져 백성의 일이 더욱 황급하여 본목의 장계 사연 외에도 들리는 바 또한 모두 이와 같아 조정에서 진휼의 혜택이 마땅히 상례보다 별도로 더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 안에 실어 운송하는 곡물이 비록 때에 맞춰 도달해도 추가로 운송할 곡식이 만약 해를 넘겨 나누어 정한 즉 반드시 구제할 수가 없어 도리어 뒷날의 우환이 올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쌀 3천석과 콩과 보리 합해 1만석을 다시 헤아려 나누어 정하고, 들으니 본목의 배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 연속해서 실어서 보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로써 진휼청에 분부하여 곧바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진휼.

❖ 康熙 五十四年 乙未 十二月 二十日 壬午

○ 司饔院啓曰, 濟州洞庭橘進上, 今始來到, 而宗廟薦新, 不爲同封, 問其曲折於陪持人, 則薦新所載船, 相失於海中, 未及來到云. 進上先到, 則推移薦新, 已有前例, 洞庭橘三百二十箇, 移送禮曹, 使於明日宗廟·永昭殿·敬寧殿薦新後, 還爲內入, 何如? 傳曰, 允.【司饔院謄錄】

❖ 숙종 41년(1715) 을미년 12월 20일(임오)

□ 제주(濟州)에서 진상한 동정귤(洞庭橘)을 먼저 종묘(宗廟) 등의 신위에 올린 뒤 도로 안으로 들이기를 청하는 사옹원의 계

○ 사옹원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동정귤(洞庭橘) 진상이 이제 처음 올라왔는데 종묘(宗廟) 신위에 올리는 것은 함께 넣어서 봉하지 않아 그 곡절을 배지인(陪持人)[1012]에게 물으니 신위에 올릴 것을 실은 배가 바다에서 서로 잃고는 올라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상이 먼저 도착했으니 신위에 바꿔 올리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동정귤 320개를 예조로 이송하여 내일 종묘, 영소전(永昭殿), 경녕전(敬寧殿)에 올린 뒤 되돌려 궁중으로 들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사옹원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동정귤, 종묘, 영소전, 경녕전.

1012) 배지인(陪持人): 지방 관아에서 임금께 올리는 장계나 진상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

❖ 康熙 五十四年 乙未 十二月 二十二日 甲申

○ 政院啓曰, 伏見全羅監司金普澤, 濟州三邑守令, 今秋冬等褒貶啓本, 則判官鄭揀, 誤以前判官南九明書塡, 鄭揀辭陛, 在於今四月念間, 到任已久, 而以前判官姓名, 泛然等第, 難免不察之失, 而此與等第文字之差誤有異. 監司金普澤, 濟州前牧使邊是泰, 竝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 숙종 41년(1715) 을미년 12월 22일(갑신)

□ 전라감사(全羅監司) 김보택(金普澤)과 제주(濟州) 전 목사 변시태(邊是泰)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기를 청하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삼가 전라감사(全羅監司) 김보택(金普澤)과 제주(濟州) 삼읍(三邑) 수령의 금년 가을 겨울 지방관 근무 평가[秋冬等褒貶] 계본을 보건대, 판관 정간(鄭揀)을 전 판관 남구명(南九明)으로 잘못 써놓았습니다. 정간이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린 게 금년 4월 20일 전후여서 도임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전 판관의 성명으로 태연히 근무성적을 매겼으니 살피지 못한 실수를 면하기 어려우며 이는 근무성적 글자 착오와는 다름이 있습니다. 감사 김보택과 제주(濟州) 전 목사 변시태(邊是泰)를 함께 종중추고(從重推考)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김보택, 제주, 정간, 남구명, 변시태.

❖ 康熙 五十四年 乙未 十二月 二十二日 甲申

○ 司饔院啓曰, 濟州牧十月朔進上六運七運, 大殿所封金橘三百箇, 分入二閣, 柑子一千二百箇, 分入六閣, 中宮殿所封柑子七百二十箇, 分入四閣, 世子宮所封柑子七百二十箇, 分入四閣, 今日到來, 而進上單子, 稱以海中漂失, 不爲現納, 不得已取考本官路次物目, 照數捧上以入, 而涉海風浪, 或致漂失, 不無其弊. 莫重進上單子, 不善護來之罪, 不可不懲, 陪持人, 令攸司科罪, 封進官亦有不能檢飭之失, 推考, 何如? 傳曰, 允.【司饔院謄錄】

❖ 숙종 41년(1715) 을미년 12월 22일(갑신)

□ 제주목(濟州牧)의 10월삭(十月朔) 진상단자 분실에 대해 배지인(陪持人)을 처벌하도록 청하는 사옹원의 계

○ 사옹원에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의 10월 초하루 진상 6운(運), 7운은 대전(大殿)에 바치는 금귤(金橘) 300개를 이각(二閣)에 나누어 들이고, 감자(柑子) 1,200개는 육각(六閣)에 나누어 들이고, 중궁전(中宮殿)에 바치는 감자 720개는 사각(四閣)에 나누어 들이고, 세자궁(世子宮)에 바치는 감자 720개는 사각(四閣)에 나누어 들여 금일 올라왔는데, 진상단자(進上單子)는 바다에서 물에 빠져 잃어버렸다고 하여 관아에 바치지 아니해서 부득이 본관의 노차물목(路次物目)[1013] 과 개수를 대조하여 진상물을 들이고, 바다를 건너며 풍랑으로 혹 빠뜨려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막중한 진상단자를 잘 간수해 가져오지 못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배지인을 유사에서 그 죄를 처벌하도록 하고, 봉진관 또한 점검하여 단속하지 못한 실수가 있으니 추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사옹원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 금귤, 감자, 진상단자.

1013) 노차물목(路次物目): 먼 길을 가는 동안 먹고 자고 하는 등에 쓸 물건을 적은 목록.

1716年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一月 一日 壬辰

○ 傳曰, 臘盡春來, 東作不遠, 災荒尤甚處, 亦當設賑勸農, 賑政不可不別樣申飭. 自本院供辭, 下諭, 而濟州賑穀, 令備局另加嚴飭, 連續入送, 俾蒙終始軫恤之澤.

❖ 숙종 42년(1716) 병신년 1월 1일(임진)

□ 제주(濟州)의 재해가 심하여 진휼 곡식을 더 보내라는 전교[1014)]

○ 전교하기를, "섣달이 다가고 봄이 왔으니 봄갈이가 멀지 않다. 재해가 더욱 심한 곳에도 진휼을 베풀고 농사를 권장해야 하는데 진휼의 정사는 특별히 신칙(申飭)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원에서 올린 글로부터 명령 내리니, 제주(濟州)의 진휼 곡식은 비변사로 하여금 각별히 더 엄히 신칙하여 잇따라 들여보내 시종 가엾이 여겨 동정하는 은택을 입게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재황(災荒), 진휼.

1014) 《숙종실록》 권57, 1716년(숙종 42) 1월 1일에도 동일 내용이 실려 있음.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一月 五日 丙申

○ 備邊司啓曰, 濟州上年災荒, 視前特甚, 觀本牧前後狀啓, 則島內三邑之民, 生業已盡, 實無蘇活之勢, 朝家特加軫念, 兩南穀物, 隨續入送之數, 通計爲二萬三千石, 而裝載越海之際, 未知其果能趁時入達, 得以接濟, 而春後饑饉, 想益艱急, 殊極可慮. 在前朝家, 爲一道賑事, 間多有別遣御史之時, 而本島則前此雖無此事, 朝家視本島特重, 卽今民事之遑急如此, 撫循拯恤之道, 似當另加於陸地. 御史一員, 別爲擇差, 疾速入往, 使之慰諭遐氓, 且察賑事, 隨其緩急而狀請, 或以便宜而措處, 兼除民瘼, 使一島之民, 咸知朝家德意, 何如? 傳曰, 依啓.

❖ 숙종 42년(1716) 병신년 1월 5일(병신)

□ 제주(濟州)에 어사(御史) 1인을 차출하여 들여보내 진휼 정사를 살피도록 하기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1015)]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지난해 재해가 이전 보다 더욱 심하여 본 제주목의 전후 장계를 살펴본 즉 섬 안 삼읍(三邑) 백성들의 생업이 이미 다하여 실로 소생할 형세가 못되어 조정에서 특별히 진휼을 더하여 양남(兩南)의 곡물을 계속해서 들여보낸 수가 합쳐 2만 3천석이 되는데 이를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널 즈음 그것이 과연 진휼할 때에 맞춰 들어가 도달할지 모르겠으며, 바다를 건넌다 해도 봄 이후의 기근이 더욱 어렵고 위급할거로 생각되니 매우 염려가 됩니다. 이전 조정에서도 한 도(道) 진휼의 일은 틈틈이 별견어사(別遣御史)를 파견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제주 섬은 이전에 비록 이러한 일이 없다 해도 조정에서 제주 섬을 특별히 중히 여겼으니 이제 백성의 일이 황급함이 이와 같아 위로하고 구휼하는 도리를 육지보다 더욱 늘려야 마땅할 듯합니다. 어사 1인을 별도로 가려 차출하여 빨리 들어가서 먼 지방의 백성을 위로하고 타이르며 또 진휼의 일을 살펴 완급에 따라 장계로 요청하고 혹 편의에 따라 조처하며 아울러 백성의 폐해도 없애 온 섬의 백성에게 조정의 훌륭한 뜻을 다 알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진휼, 어사.

1015) 《숙종실록》 권57, 1716년(숙종 42) 1월 5일에도 동일 내용이 간략히 실려 있음.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一月 六日 丁酉

○ 吏曹口傳〈政事〉, 以鄭栻爲水原試才御史, 黃龜河爲濟州別遣御史.

❖ 숙종 42년(1716) 병신년 1월 6일(정유)

□ 황구하(黃龜河)를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에 제수함[1016]

○ 이조의 구전 〈정사(政事)〉에, 정식(鄭栻)을 수원시재어사(水原試才御史)에, 황구하(黃龜河)[1017]를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에 제수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황구하, 제주별견어사.

1016) 황구하(黃龜河)의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 차출에 대한 기사가 《숙종실록》에는 1716년(숙종 42) 1월 5일에 실려 있음.

1017) 황구하(1672~1728):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성징(聖徵). 부친은 황건(黃鍵), 모친은 이문행(李文行)의 딸. 1705년(숙종 31)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대사성, 호조판서, 한성부판윤을 역임. 1716년 별견어사(別遣御史)가 되어 제주도에 다녀와서 굶어 죽은 제주도민을 치제(致祭), 조위(吊慰)하도록 하였으며, 진상품인 전복의 양을 3분의 2로 감해주도록 주청하여 실현시킴. 또한 도민의 진대(賑貸)와 제주유생의 전시직부(殿試直赴)를 주청함.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一月 十日 辛丑

○ 有政. 吏批, 以鄭栻爲水原試才御史, 黃龜河爲濟州別遣御史. …….

❖ 숙종 42년(1716) 병신년 1월 10일(신축)

□ 황구하(黃龜河)를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정식(鄭栻)을 수원시재어사(水原試才御史), 황구하(黃龜河)를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황구하, 제주별견어사, 이비.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一月 二十二日 癸丑

○ 濟州別遣御史黃龜河請對入侍, 入侍時, 濟州牧使洪重周, 催促發送事, 及旌義縣監金楚寶瓜滿之代, 令該曹口傳差出, 給馬催促發送事, 榻前定奪.

❖ 숙종 42년(1716) 병신년 1월 22일(계축)

□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 황구하(黃龜河)가 입시할 때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중주(洪重周)와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초보(金楚寶) 후임을 재촉하여 보내는 일을 어전에서 결정함[1018]

○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 황구하(黃龜河)가 뵙기를 청하여 입시하는데, 입시할 때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중주(洪重周)[1019]를 재촉하여 보내는 일과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초보(金楚寶)가 임기가 차서 후임을 해당 부서에서 구전으로 차출하도록 해서 말을 지급하여 재촉해서 보내는 일을 어전에서 결정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별견어사, 황구하, 제주목사, 홍중주, 정의현감, 김초보.

1018) 《숙종실록》 권57, 1716년(숙종 42) 1월 22일에도 동일 내용이 실려 있음.

1019) 홍중주(1659~?):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성범(聖範). 부친은 홍만운(洪萬運). 1691년(숙종 17) 증광시 문과 병과 급제. 정언, 장령, 제주목사 등을 역임. 1694년(숙종 20) 장희빈(張禧嬪)의 오빠 장희재(張希載)와 이의징(李義徵)이 역적 누명을 벗었는데도 극률(極律)로 처벌하려는 것은 지나치다는 발언을 하였다가 관직에서 쫓겨났음. 1716년(숙종 42)과 1717년(숙종 43) 제주목사 재임 시절 거듭되는 가뭄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이 늘어가자 조정으로부터 진휼할 곡식을 얻기 위해 수차례 장계를 올림.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一月 二十二日 癸丑

○ 濟州別遣御史黃龜河, 請對入侍時, 上曰, 別遣御史, 意有所在, 下去後, 凡係爲民之事, 必須着心奉行, 而連年入送賑穀, 其數甚多, 飢民死亡, 必有指徵無處之弊矣. 曾前邊是泰, 若不善賑, 以致飢民死亡, 則御史仍爲廉問, 爲宜. 流亡絶戶, 無依丐乞難捧之類, 各別精覈, 可以蕩滌者, 蕩滌, 可以白給者, 白給, 而至於民瘼邑弊之可以釐革者, 亦爲一一搜訪, 詳思變通之道, 條列以聞, 使我窮溟絶域之民, 得被惠澤, 俾知予各別軫念之意, 而此則以特敎, 出擧行條件, 可也.

❖ 숙종 42년(1716) 병신년 1월 22일(계축)

□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 황구하(黃龜河)가 입시하여 제주(濟州)에 진휼을 열심히 하라는 임금의 당부[1020]

○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 황구하(黃龜河)가 임금에게 뵙기를 청하여 입시할 때,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를 특별히 보내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내려간 뒤에는 무릇 백성을 위하는 데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착실한 마음으로 봉행하여야 할 것이며 해마다 진휼곡식을 들여보낸 수량이 매우 많거니와 굶주린 백성이 사망하니 반드시 징수할 데가 없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일찍이 변시태(邊是泰)가 만약 진휼을 잘하지 못하여 굶주린 백성이 사망하는데 이르렀는지 어사는 탐문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망하여 가호가 없어져 의지할 데 없이 빌어먹으며 바치기 어려운 무리들은 각별히 정밀하게 조사하여 탕감해줄 만한 이는 탕감해주고 거저 줄만한 이는 거저주어 백성의 고통과 고을의 폐단을 없앨만한 데 이른 것은 또한 일일이 찾아가서 보아 변통할 방도를 자세히 생각해 조목마다 예를 들어 아뢰어 나로 하여금 곤궁한 먼 바다 변방의 백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나의 각별히 진휼을 다하는 뜻을 알게 하여 이를 임금의 특지(特旨)로 거행 조건을 삼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별견어사, 황구하, 변시태, 진휼.

1020) 《숙종실록》 권57, 1716년(숙종 42) 1월 22일에도 동일 내용이 간략히 실려 있음.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一月 二十二日 癸丑

○ 別遣御史黃龜河所啓, 濟州賑穀入送事, 已於上年十月晦日筵中, 大臣稟定, 行關于兩道監司, 而蓋歲前則還穀, 雖曰未及准捧, 歲翻已久, 尙無裝載入送之擧, 想其濟州形勢, 誠爲渴急矣. 斯速擧行之意, 兩道監司處, 令備局更爲別關, 各別申飭, 督運官, 爲先警責. 如或一向遲滯, 別爲論罪事, 分付, 何如? 上曰, 督運官, 爲先從重推考, 令備局別關嚴飭, 各別催促, 可也. 龜河曰, 各邑所送各穀, 守令, 當初若不擇送, 則難保其盡爲精實, 而裝運之際, 又爲欠縮, 則賑穀之無實, 誠甚可慮. 令兩道道臣, 別定差員, 收捧各邑穀物, 裝載海船之時, 另加看審, 各別擇捧, 俾無麤劣欠縮之弊, 而入島之後, 親審斗量, 如有不實之患, 則當該差員, 當爲啓聞, 請罪之意, 敢達. 上曰, 依爲之. 龜河曰, 各邑穀物, 臣發船之時, 當爲一竝督運, 同時入去, 而各邑守令, 趁未裝載, 如有稽緩之弊, 亦爲啓聞請罪之意, 敢達. 上曰, 依爲之.

❖ 숙종 42년(1716) 병신년 1월 22일(계축)

□ 별견어사(別遣御史) 황구하(黃龜河)가 입시하여 제주(濟州)에 보낼 진휼 곡식의 마련 및 운송과 관련 지체 없이 추진할 것에 대해 논의함

○ 별견어사(別遣御史) 황구하(黃龜河)가 아뢴바, "제주(濟州)의 진휼 곡식을 들여보내는 일은 이미 지난해 10월 그믐날 경연 석상에서 대신이 아뢰어 결정하여 양도(兩道) 감사에 공문을 보냈는데 대략 세전의 환곡이 비록 준봉(准捧)에 미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해가 바뀐 지 이미 오래되었고 아직도 배에 실어 들여보냈다는 조치가 없으니 제주의 형세를 생각해보건대 참으로 목마르듯이 급합니다. 이에 속히 거행할 뜻을 양도 감사에게 알리도록 비변사에 다시 별도의 공문을 내리도록 명령하여 각별히 타일러 경계하며, 독운관(督運官)[1021]을 먼저 정신 차리도록 꾸짖고, 간혹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특별히 논죄할 것이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독운관을 먼저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비변사에 별도의 공문으로 엄하게 경계하도록 명령하여 각별히 재촉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였다. 황구하가 말하기를, "각 읍에서 보낸 바 각 곡식은 수령이 당초에 가려 보내지 않으면 참된 마음을 다한 것을 보전하기 어렵고 배에 실어 운송할 즈음 또 부족하게 되어 진휼 곡식이 실상이 없게 될까 참으로 매

1021) 독운관(督運官): 독운사(督運使). 군량이나 세곡을 독촉하여 운반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하는 임시 벼슬.

우 염려됩니다. 양도(兩道)의 관찰사에게 명령 내려 차사원(差使員)을 특별히 정해 각 읍의 곡물을 거두어들여 바다를 건널 배에 실을 때 더욱 더 자세히 보아 살피고 각별히 가려 바쳐 졸렬하게 부족한 폐단을 없게 하고, 섬에 들어간 뒤에는 분량을 자세히 살펴 부실한 우환이 있을 것 같으면 해당 차사원을 마땅히 아뢰어 죄를 청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황구하가 말하기를, "각 읍의 곡물은 신(臣)이 배를 띄울 때 마땅히 일체 감독하여 운송하고 동시에 들어가게 하되 각 읍의 수령이 배에 싣지 아니하고, 더디고 늦은 폐단이 있을 것 같으면 또한 아뢰어 죄를 청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별견어사, 황구하, 제주, 진휼 곡식.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一月 二十二日 癸丑

○ 濟州別遣御史黃龜河請對入侍時, 所啓, 濟州昨年年事, 比癸巳, 雖曰稍優, 而連三年荐歉之餘, 民間飢饉, 反有甚於癸巳. 飢民之數, 至於四萬七千餘口之多, 聞來極爲驚慘. 以濟州牧使邊是泰狀啓觀之, 必得二萬石米穀, 然後庶可計口分賑於麥前云, 而朝家之所劃給者, 米太皮穀合二萬三千石, 臣之請得於廟堂者, 又是賑廳米四千石, 稅太二千石, 今當行關本道, 以沿海邑所在各營軍保米, 相換運送. 蓋前後所劃得之穀, 厥數雖似頗然, 第當初濟州牧使所請得中, 皮雜穀, 旣是凶年災邑中所捧, 則人皆謂必是太半空殼. 舂正時, 必皆糜碎, 十石租所舂, 當不過數石云. 以此計之, 則雖以臣所請得之米, 合而計之, 猶不滿於濟州牧使狀請之數. 又於其中, 計除船價, 則一千五六百石之數, 又將爲欠縮, 到彼之後, 如有不足之患. 島中, 異於陸地, 雖欲隨便措處, 計沒奈何? 狀請回還之際, 動經時月, 將束手無策, 坐而視死. 若如是, 則朝家別遣御史, 另加軫恤之道, 果安在哉? 濟州旣是海外, 其間事勢, 有難遙度, 而想其民事, 萬分切急, 其在萬全之道, 不可不十分詳盡, 俾無後悔. 臣意則沿海邑所儲某樣穀中, 別爲分定, 使之整待於各其邑, 而臣於入島之後, 觀其民間形勢, 若以所已運之穀, 足可繼賑, 則不必更爲持去. 不然則急送本州船隻, 一邊運去, 一邊馳啓, 以爲及時賙賑之地, 似爲得宜. 或以江都米移轉之留在沿邊者, 或以各邑儲置米, 分付廟堂, 限三千石, 更爲劃給, 何如? 上曰, 耽羅一域, 三年飢荒, 民事矜慘. 今年年事, 雖曰勝於癸巳, 窮溟絶域, 異於陸地, 荐飢之餘, 民困尤極. 御史體予矜憫憂念之意, 凡於賑政, 必須十分惕念. 入去之後, 賑穀若或不足, 未能救活, 坐而視死, 則實無自朝家別遣之意, 所達誠是矣. 其令廟堂稟處, 穀物依此劃給, 使各邑預爲整待, 而詳察民間形勢而處之, 可也.

❖ 숙종 42년(1716) 병신년 1월 22일(계축)

□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 황구하(黃龜河)가 입시하여 제주의 진휼에 대해 논의함

○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 황구하(黃龜河)가 임금에게 뵙기를 청하여 입시할 때 아뢴 바, "제주(濟州)의 작년 농사가 계사년(1713, 숙종 39)에 비해 비록 조금 낫다고 하더라도 연이어 3년간 거듭된 흉년 뒤에 민간의 굶주림이 도리어 계사년보다 더욱 심합니다. 굶주린 백성의 수효가 4만 7천여 구(口)에 이를 정도로 많아 들으니 매우 놀랍고 비참합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의 장

계를 보건대 반드시 2만 석(石)의 미곡을 얻은 연후에야 거의 보리농사 전까지 사람을 헤아려 나누어 진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정에서 지급하는 것은 쌀과 콩 겉곡식 합계 2만 3천 석(石)이라 하여 신(臣)이 조정에 얻기를 청한 것이 또한 진휼청의 쌀 4천 석과 세금으로 바친 콩 2천 석은 지금 마땅히 본도에 공문을 보내 연해 고을 소재 각 영군(營軍)의 보인으로부터 받은 쌀과 서로 바꾸어 운송하겠습니다. 대개 전후에 계획하여 얻은 곡식이 그 수량이 비록 많은 듯하나 다만 당초에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요청하여 얻은 것 중에 껍질을 벗기지 않은 잡곡은 이미 올 흉년 재난을 입은 고을에서 걷은 바인 즉 사람이 모두 반드시 이것은 태반이 빈껍데기라고 말합니다. 곡식을 찧을 때 반드시 모두 부서져서 10석의 조(租)를 찧으면 의당 수 석에 불과할 것이라 합니다. 이로써 헤아려보면 비록 신이 요청해서 얻은 쌀을 합해서 계량하면 제주목사가 장계로 요청한 수량에 미치지 못하고 또 그 중에 배 삯을 제하면 일천 오륙백 석의 수량이어서 또한 장차 부족하게 됩니다. 저곳에 도착한 후 부족한 우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섬 안은 육지와 달리 비록 편의대로 조처하고자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장계로 요청하여 갔다가 다시 돌아올 즈음에 움직여 이 달을 넘기면 장차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죽음을 볼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조정의 별견어사가 따로 더하는 진휼의 도리가 과연 어찌 있겠습니까? 제주는 바다 밖이고 그간 일의 형세가 먼 곳에서 미루어 헤아리기 어려워 그 백성의 일을 상상해보면 매우 절박하고 급해 만전을 다하는 방도에 있어서 충분히 자세하게 다하지 않으면 안 되어 후회가 없게 해야 합니다. 신의 뜻은 연해 고을에서 비축한 모양곡 중에 별도로 나누어 정해 그로써 각 고을에서 잘 준비해두면, 신이 섬에 들어간 뒤에 민간의 형세를 보아 만약 이미 운송한 곡식으로 족히 이어서 진휼할 만하면 다시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주의 배를 급히 보내 한편으로 운송해 가고, 한편으로 급히 아뢰어 때에 맞춰 진휼하는 처지가 마땅할 듯합니다. 혹은 강화도의 쌀을 연해 부근에 이전하여 쌓아두고, 혹은 각 고을의 비축미를 묘당에 분부하여 3천석에 한하여 다시 차례로 지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탐라(耽羅) 온 지역이 3년 동안 굶주려 황폐한데 백성의 일이 참 괴롭고 참혹하다. 금년 농사 형편이 비록 계사년보다 낳다고 하나 먼 바다 절역이어 육지와 다르고 굶주림이 해마다 더해져 백성이 곤궁이 더욱 극에 달했다. 어사는 나의 불쌍히 여겨 근심하는 뜻을 체득하여 무릇 진휼의 정사를 반드시 충분히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들어간 뒤에 진휼 곡식이 만약 혹 부족하여 구제하여 살릴 수 없고 앉아서 죽음을 본다면 실로 조정에서 특별히 파견한 뜻이 없게 될 터이니 아뢴 바가 진실로 옳다. 묘당에 처리하

도록 명을 내려 곡물을 이에 의거 차례로 지급하고 각 고을로 하여금 미리 잘 준비해서 민간의 형세를 자세히 살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별견어사, 황구하, 제주목사, 변시태, 탐라, 진휼.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一月 二十二日 癸丑

○ 濟州別遣御史黃龜河引見入侍時, 所啓, 當初因濟州牧使狀請, 劃給二萬三千石之穀, 自本道似已分定運送, 今不必擧論, 而臣之所請得賑廳米四千石, 稅太二千石之內, 米一千石, 換得戶曹稅太二千石, 合爲七千石, 而種子各穀, 廟堂今方分定, 亦不過七百餘石, 槪其元數, 旣如是零星. 又於其中, 船價計除之數, 將至八百餘石, 賑穀之減縮, 誠甚可悶. 曾於癸巳年運穀時, 以各邑耗穀, 有計除船價之規. 今此臣之所請得各穀船價, 以耗穀依前計除之意, 敢達. 上曰, 以耗穀, 依前計給船價事, 分付, 可也. 同月二十四日, 曹爲相考事云云. 所啓內辭緣及傳敎內事意, 奉審施行爲乎矣. 同稅太四千石, 以濟州附近沿邊各邑中乙未條稅太船馬價, 竝以照數劃送後, 邑各數爻成冊, 急速修正上送, 以爲憑考之地爲旀, 今此稅太四千石段, 以元船價計給, 則各邑耗穀, 不必計除是旀, 本道請買稅太三千石段置, 色各成冊, 一體修正上送, 宜當, 竝以相考施行向事. 右關全羅道觀察使. 同日曹爲相考事, 濟州監賑御史所請得本廳米四千石內, 一千石段, 以本曹所管全羅道乙未條稅太二千石, 相換運送之意, 旣已定奪於榻前爲有置, 上項米四千石內, 一千石乙良, 移送本曹, 宜當, 相考施行爲只爲. 右牒賑恤廳. 同年二月十二日, 守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爲上送事, 節到付曹關內用良, 本道買得稅太及濟州入送監賑御史請得稅太分定數爻, 邑各開錄成冊, 一件修正上送爲去乎, 捧上回移向事. 堂上手決內, 憑考次成冊捧上如在果, 元稅太, 依數移給爲乎矣. 倉役價元人情雜費數, 依例稅船添載上納之意, 各邑良中, 知委施行向事. 堂上着押踏印.【戶曹謄錄】

❖ 숙종 42년(1716) 병신년 1월 22일(계축)

□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 황구하(黃龜河)의 요청에 의해 진휼미를 이송할 때 배삯을 제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 황구하(黃龜河)를 인견 입시할 때 아뢴 바, "당초에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 요청 때문에 2만 3천석의 곡식을 정해 지급하는데 본도에서 이미 나누어 정해 운송한 듯하니 지금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이 요청한 바 진휼청 쌀 4천석과 세태(稅太) 2천석 중 쌀 1천석은 호조(戶曹)에서 세태 2천석과 바꾸면 합계 7천석이 되는데, 각 종자곡을 묘당에서 지금 바야흐로 나누어 정한 것이 또한 7백여 석에 불과하여 대개 그 원래 수량이 이미 보잘 것 없게 되었습니다. 또 그 중 뱃삯으로 제해야 할 수량이 장차 8백여

석에 이르러 진휼 곡식의 감축이 참으로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일찍이 계사년(1713, 숙종 39) 곡식 운송 때에는 각 고을의 모곡(耗穀)으로 뱃삯을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신이 요청하여 얻은 각 곡식의 뱃삯도 모곡으로 전에 제한 뜻에 의거할 것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모곡으로 전에 뱃삯을 제한 일에 의거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같은 달 24일, 조(曹, 호조)에서 상고(相考) 할 일 운운하기를, '아뢴 바 안의 사연과 전교(傳敎) 안의 일 뜻을 봉심(奉審)하여 시행하되, 마찬가지로 세태 4천 석과 제주 부근 연변의 각 읍 가운데 을미년 조(條)의 세태 운반비를 아울러 수를 조사해 획송(劃送)한 후, 각 읍의 수효를 성책(成册)하여 신속하게 수정하여 올려 보내면 이로써 빙고(憑考)할 방도로 삼고자 하니, 지금 이 세태 4천 석은 원래의 뱃삯으로 계산하여 줘버린다면 각 읍의 계산하여 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본도(本道)에서 사기를 요청한 세태 3천 석으로 말하자면, 담당이 각각 성책하여 일체를 수정해 올려 보내고 마땅히 아울러 상고하여 시행할 일'이라 하였습니다. 이상의 관문(關文)은 전라도관찰사에게 보냈습니다. 같은 날, 조(曹, 호조)에서 상고 할 일 운운하기를, '제주감진어사가 얻기를 청한 바의 진휼청의 쌀 4천 석 안에 1천 석은, 본조(本曹) 소관의 전라도 을미년 조(條)의 세태 3천 석으로 바꿔 운송할 뜻을 이미 어전에서 결정하였으니, 위 항목의 쌀 4천 석 안에 1천 석은 본조로 이송하고 마땅히 상고하여 시행해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첩정(牒呈)은 진휼청에 보냈습니다. 동년 2월 12일, 수(守)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를 올려 보낼 일에 절도사가 본조로 보낸 관문 안의 내용에 따르면, '본도(本道)에서 사들인 세태와 감진어사가 요청해 얻어 제주로 들여보낸 세태의 분정(分定)한 수효를 각 읍에서 개록(開錄) 성책(成册)하여 한 건을 수정해 올려 보내니 받아들이시어 조회(照會)할 일.'이라 하였습니다. (호조의) 당상관의 수결(手決)한 내용에, '빙고(憑考)한 다음 성책(成册)하여 봉상(捧上)하되 원래의 세태(稅太)는 숫자대로 이급(移給)해주고, 창역가(倉役價)나 원인정(元人情) 잡비(雜費)의 수량은 전례대로 세선(稅船)에 끼워 실어 상납하라는 뜻을 각 읍에 알려 시행할 일'이라 하였습니다. 당상관이 착압(着押)하고 관인(官印)을 찍었습니다.【호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별견어사, 황구하, 제주목사, 진휼, 세태.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一月 二十三日 甲寅

○ 吏曹口傳政事, 以魏赫萬爲旌義縣監.

❖ 숙종 42년(1716) 병신년 1월 23일(갑인)

□ 위혁만(魏赫萬)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이조의 구전 정사(政事)에 위혁만(魏赫萬)[1022]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위혁만, 정의현감.

1022) 위혁만(?~?): 정의현감 재임기간 1716년(숙종 42) 3월~1718년(숙종 44) 4월.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그는 1725년(영조 1)에는 부호군, 1728년(영조 4)에는 법성첨사(法聖僉使)를 역임함.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一月 二十六日 丁巳

○ 判府事李畬, 領議政徐宗泰, 左議政金昌集留待引見時, 領議政徐宗泰所啓, 今此朝家之別遣濟州御史, 出於慰諭島民, 且察賑事, 設科似難竝行, 而曾前御史入往之時, 每輒設行試才, 島中士民, 雖在顚連飢困之中, 其情歡忭, 必以是爲望, 此亦可爲慰悅之道. 賑政垂畢後, 令御史依前設行文武科試才, 何如? 上曰, 今番試才事, 予亦有意, 而但自前試才時, 例以試才御史, 爲名. 濟州, 以窮溟絶島之地, 三年荐飢, 故別遣御史, 出於必行濟活之意, 而一邊設賑, 一邊試才, 或似非時, 故予且趑趄, 而未果焉矣. 畬曰, 絶島之中, 王人入去, 甚爲稀闊. 御史入去, 而不爲如前設科, 則人心必缺望矣. 雖以監賑爲任, 畢賑後試取, 似好矣. 昌集曰, 御史請遣之啓, 雖有竝行試才之意, 而今以監賑入送, 而事涉非時, 故不爲擧論矣. 頃年李海朝往來, 已至十年, 島中民情, 雖在此時, 其所顒望, 必切, 今亦待罷賑試取以來, 似爲慰悅之道矣. 上曰, 御史之入去絶島, 旣甚未易, 賑事畢後, 仍爲試才, 書題及武科規矩, 亦爲齎去, 可也.

❖ **숙종 42년(1716) 병신년 1월 26일(정사)**

□ **제주어사(濟州御史)가 진휼을 끝낸 후에 문무과시재(文武科試才)를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영부사(判府事) 이여(李畬), 영의정 서종태(徐宗泰), 좌의정 김창집(金昌集) 남겨두고 인견할 때, 영의정 서종태가 아뢰기를, “지금 이제 조정에서 제주어사(濟州御史)를 특별히 파견하여 섬사람을 위로하러 나가고 또 진휼의 일을 살피는데 과거시행을 병행하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일찍이 이전 어사가 들어갈 때 매번 문득 시재(試才)를 시행하여 섬 안의 유생과 백성들이 비록 연이은 기근 속에 빠져 있어도 그 정황이 기뻐하여 반드시 이를 바랄 터이니 이 또한 조금의 위로하는 방도가 될 만합니다. 진휼의 정사를 마친 후에 어사에게 이전 문무과(文武科) 시재 시행에 의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번 시재의 일은 나 또한 뜻이 있으나 다만 이전 시재 때부터 시재어사의 예는 이름만 되었다. 제주(濟州)는 먼 바다 절도의 땅으로 3년 동안 굶주림에 닥쳤기 때문에 별견어사에게 반드시 구제하여 살리는 뜻을 시행하도록 내보내는 것인데, 한편으로 진휼을 펴고 한편으로 시재를 시행하는 것은 혹 때가 아닌 듯하고 나 또한 머뭇거려 망설여지니 시행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

여가 말하기를, “절도 안에 왕명을 받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어사가 들어가는데 이전처럼 과거를 시행하지 않으면 인심이 반드시 원망할 것입니다. 비록 진휼 감독의 일이라도 진휼을 마친 뒤에 시취(試取)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어사를 파견하라고 아뢴 것은 시재를 함께 시행하려는 뜻이 있었으나 지금은 진휼 감독의 일로 들여보내고 일이 때를 놓칠까봐 거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년에 이해조(李海朝)[1023]가 갔다 온 지 이미 10년이 되었고 섬 안의 민정이 비록 굶주림에 빠졌어도 우러러 바라는 바는 반드시 절실할 것이니 지금 또한 진휼을 마친 뒤에 시취하고 오는 것이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방도가 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가 절도에 들어가면 이미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 진휼의 일을 마친 뒤에 이어서 시재하라고 시험문제 및 무과 규칙 또한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이여, 서종태, 김창집, 이해조, 제주어사, 진휼, 문무과 시재.

1023) 이해조(1660~1711): 본관 연안(延安). 자 자동(子東). 호 명암(鳴巖). 부친은 대제학 이일상(李一相). 1702년(숙종 28) 문과 급제. 대제학, 전라도관찰사를 역임. 할아버지 이래 3대가 대제학을 지냈으며, 시문에 뛰어나 김창흡(金昌翕)으로부터 천재라는 격찬을 받음. 저서《명암집(鳴巖集)》.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一月 二十六日 丁巳

○ 領議政徐宗泰所啓, 守禦使閔鎭厚, 摠戎使李基夏, 開城留守宋徵殷狀啓, 以今春春操設行與否, 陳稟矣. 松都則自前不得逐年擧行, 本府民人, 例多行商. 近年專屬之後, 冬春之間, 聚集尤未易. 上年畿內, 年事未稔, 南漢組練, 摠廳巡歷, 俱令停止, 則今當窮春, 軍卒之累日聚會, 其弊殊可愍念. 軍政之連爲寢廢, 誠涉疎虞, 而卽今事勢, 似當竝令姑停, 以此分付, 何如? 上曰, 三處春操, 皆停止, 可也. 左議政金昌集〈曰〉, 伏見御史入侍時擧條中聖敎, 軫念島中民事, 如傷惻怛之意, 溢於辭表, 非但遠民之必將感泣, 臣等亦不勝欽嘆之至. 自前諸路歲飢民困之時, 朝家特遣御史, 宣諭, 而仍命主文之臣, 代撰布告之文矣. 朝家之視濟州, 與陸邑有別, 以筵中下敎外餘意, 演爲文字, 御史齎入島中, 聚會二邑父老, 播告十行綸綍, 則雖在頒顧之類, 擧將扶杖來聽, 必益感頌德音矣. 宗泰曰, 伏覩特敎, 誠爲懇惻, 而代撰之文, 若以餘意爲辭, 朝家雖悉心救濟, 而力有所不贍, 島民數多, 惠澤必有所不能周及而遍沾. 汝等, 宜體朝家軫念至意, 某條安頓之意, 善爲敷揚, 以爲頒示之地, 則好矣. 上曰, 依爲之. 使主文之臣, 製進之意, 令政院分付, 可也. 上曰, 湖南沿海米穀三千石, 令本道預爲整待, 觀勢入送濟州事, 令廟堂稟處矣. 宗泰曰, 濟州前後入送米租太等穀, 與御史所請得, 幾至三萬石, 果能無他患入島, 則似或可以繼賑, 而御史, 又以此預待爲請者, 亦出於周詳之慮. 聖敎, 有稟處之命, 臣等今欲於入侍時陳達後, 分付本道, 使之預待矣. 且御史處所許米四千石, 太二千石內, 太則爲戶曹稅太, 此雖正稅, 朝家, 爲濟州有何所惜? 使之白給, 何如? …… 上曰, 所達好矣. 依此分付, 而稅太, 亦依此數特爲劃給, 後勿還捧, 可也.

❖ 숙종 42년(1716) 병신년 1월 26일(정사)

□ 서종태(徐宗泰) 등이 입시하여 금년 봄에 춘조(春操)를 설행하는 문제, 제주에 선유(宣諭)할 주문(主文)을 제진(製進)하는 일, 호남 연해의 미곡을 제주로 입송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영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아뢰기를, "수어사(守禦使) 민진후(閔鎭厚), 총융사(摠戎使) 이기하(李基夏), 개성유수(開城留守) 송징은(宋徵殷) 등이 장계하여 금년 봄 춘조(春操)[1024] 실행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아뢰었습니다. 송도(松都)인 경우 전부터 해마다 거행 할 수 없었는데, 본부(本府)의 백성들이 행상(行商)하는 사

1024) 춘조(春操): 봄철에 행하는 군사 조련.

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사이에 한 곳에만 있게 한 이후 겨울과 봄 사이 사람들을 모으기가 더욱 쉽지 않아졌습니다. 작년 경기지역 농사가 흉작이어서 남한산성에서의 조련(組練)과 총융청의 순력(巡歷) 모두 정지하라 해두었으나 지금 춘궁기를 맞아 군졸들을 며칠씩이나 모이게 한다면 그 폐단이 매우 염려됩니다. 군정(軍政)의 연이은 침폐(寢廢)는 진실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일의 형세가 아울러 우선 정지시키라는 명을 내려야 마땅할 것 같으니, 이 일을 분부하심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 곳의 춘조 모두를 정지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삼가 어사(御史)가 입시할 때 임금께 아뢴 조항 중 성상(聖上)의 교지를 보니 섬 백성들의 일에 진념(軫念)함이 마치 다친 이를 돌보듯 불쌍히 여겨 슬퍼하는 뜻이 문장 밖으로 넘쳐나니 먼 지방의 백성들만 반드시 장차 감읍(感泣)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신 등 역시 지극한 흠모의 탄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부터도 전국에 해마다 굶주려 백성들이 위태로울 때면 조정에서 특별히 어사를 파견하여 선유(宣諭)하였으니 이에 주문(主文)의 신하[1025]에게 명해 대신 포고문을 짓게 하십시오. 조정이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육지와 다름이 있는데, 경연(經筵) 중의 하교(下敎) 외의 뜻까지도 문자로 자세히 설명하게 하여 어사에게 주어 섬으로 들어가게 하여 삼읍(三邑)의 부로(父老)들을 불러 모아 열 줄의 윤음(綸音)을 반포한다면 비록 굶어 얼굴이 누렇게 뜬 이들이 있다 해도 모두 장차 지팡이에 의지해서라도 와서 들을 것이고[1026] 반드시 더욱 덕음을 마음에 깊이 느껴 기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서종태가 아뢰기를, "삼가 특별히 내리신 교지를 보니 진실로 간절하고 지극하신데 대신 짓는 문장이 만약 함축한 뜻으로 글을 짓는다면, '조정이 비록 마음을 다해 구제한다고 해도 역량이 넉넉하지 못한 바가 있어 섬 백성들 중 다수는 혜택이 반드시 두루 미치고 두루 받을 수 없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조정이 진념(軫念)하는 지극한 뜻을 알아주어야 한다.'고 아무쪼록 안정시키는 뜻을 널리 잘 알리고 반포하여 두루 알리는 입장을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대제학으로 하여금 글을 지어 올리라는 뜻을 승정원에 명해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

1025) 주문(主文): 문한(文翰)을 주재한다는 뜻으로 예문관의 대제학이나 제학, 홍문관의 응교, 부응교 등을 가리킴.

1026) 부장래청(扶杖來聽): 산동조(山東詔)라고도 한다. 《한서(漢書)》 권51 열전21, 가산(賈山)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신(臣)이 듣건대, 산동(山東)의 관리가 조령(詔令)을 반포하니 백성들이 비록 나이 들고 질병이 있어도 지팡이를 짚고 가서 이를 듣고는 잠시 죽지 않기를 원하고 임금의 인자한 교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臣聞山東吏布詔令 民雖老羸癃疾 扶杖而往聽之 願少須臾毋死 思見德化之成也)." 이후로 '산동조'는 조서를 좋게 칭하는 말이 되었음.

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호남(湖南) 연해(沿海) 미곡 3,000석을 본도(本道)에 명해 미리 준비시켜, 제주로 들여보낼 형세를 주관하는 일은 묘당(廟堂, 의정부)에서 처리해 결정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서종태가 아뢰기를, “전후로 제주로 들여보낸 미조(米租)와 태(太) 등의 곡식과 어사가 청해 얻은 것을 합하면 거의 30,000석에 이르는데 과연 다른 걱정거리 없이 섬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혹 계속 진휼이 가능할 것 같고 어사가 다시 이렇게 미리 준비해주도록 청한 것 역시 두루 마음 쓴 염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임금의 교시에 ‘처리해 결정하라’는 명이 있어 신 등은 지금 입시할 때 아뢴 후, 본도에 분부하여 미리 준비하라고 하고자 했습니다. 또 어사에게 허락한 바의 쌀 4,000석과 태(太) 2,000석 중 태는 호조의 세태(稅太)[1027]인데, 이는 비록 정규 세금이지만 조정이 제주를 위해서인데 어찌 아까워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거저 주게끔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진달한 바가 좋다. 이대로 분부하고 세태(稅太) 역시 이 수대로 특별히 나누어 지급하고, 나중에라도 되돌려 받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서종태, 김창집, 춘조, 진휼, 호남, 세태.

1027) 세태(稅太): 세금으로 받는 콩.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一月 二十九日 庚申

○ 午時, 上御大造殿. 行判中樞府事李濡, 留待引見入侍時, 同副承旨李緈, 假注書趙最壽, 記事官尹惠教·兪拓基入侍. …… 上曰, 卿素有宿患, 今則無別無添加之症乎? 濡曰, 小臣近來有患, 時時添劇, 經冬及春, 小得間歇, 而病勢如此, 不得進參候班, 有請譴之章, 而數行缺仍使太僕官員, 貿穀於湖南沿邊地, 入送島中, 貿馬匹而來, 故飢民, 以此而賴活, 御乘, 亦因此而得備矣. 今又依此例, 送一千貫錢文, 貿穀於全羅地入送, 而仍令理馬, 偕往御史之行入去, 似宜. 上曰, 然矣. 入送, 可也. …….【以上燼餘】

❖ 숙종 42년(1716) 병신년 1월 29일(경신)

□ 전문(錢文)을 가지고 전라도에서 곡식을 사서 제주(濟州)로 보내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오시(11~13시)에 임금이 대조전(大造殿)에 나갔다. 행판중추부사 이유(李濡)를 남겨두고 인견하여 입시할 때, 동부승지 이재(李縡), 가주서 조최수(趙最壽), 기사관 윤혜교(尹惠敎)·유척기(兪拓基)가 입시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평소에 숙환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더한 증세가 없지는 않은가?"라고 하였다. 이유가 말하기를, "소신이 근래 병환이 있어 때때로 더하고 심했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조금 낳았다 심했다 합니다. 병세가 이와 같아서 반열에 참석할 수가 없어 죄를 청하는 소장을 올렸습니다.【여러 행이 빠짐】 이어서 태복시(太僕寺) 관원으로 하여금 호남(湖南) 연해 지역에서 곡식을 사서 섬 안으로 들여보내 마필과 거래해서 왔고, 이 때문에 굶주린 백성들이 이로써 구제되었고, 어승마 역시 이로 인해 얻어 갖추었습니다. 지금 또한 이 예에 의거 1천 관(貫)의 돈을 보내 전라도 지역에서 곡식을 사서 들여보내고 이어서 이마(理馬)[1028]에게 어사의 행차와 함께 들어가도록 명령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들여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하략〉.【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대조전, 이유, 전문, 전라도, 이마.

1028) 이마(理馬): 사복시에 속한 관직으로 궁중의 마필에 관한 일을 담당함. 조선후기에는 정6품 1명 등 정9품까지 4명의 관원을 둠.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二月 二日 癸亥

○ 下直, 濟州牧使洪重周, 茂長縣監李滋.

❖ 숙종 42년(1716) 병신년 2월 2일(계해)

□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중주(洪重周) 등이 하직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중주(洪重周), 무장현감(茂長縣監) 이자(李滋)가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홍중주, 하직.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二月 三日 甲子

○ 濟州別遣御史黃龜河, 出去.

❖ 숙종 42년(1716) 병신년 2월 3일(갑자)

□ 황구하(黃龜河)가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로 나감

○ 황구하(黃龜河)가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로 나갔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황구하, 제주별견어사.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二月 三日 甲子

○ 政院啓曰, 平安監司趙泰先, 以病陳疏. 黃海監司金楹, 引情勢兼附海州設科事. 江原監司沈宅賢, 陳情理乞遞. 留院許久, 而俱未得入啓. 諸道春巡已迫, 廢事可慮. 稍竢上候之漸勝, 當次第捧入, 而全羅監司金普澤, 則以濟州褒貶守令姓名誤書事, 問備之後, 上疏引嫌, 推緘未勘之前, 徑先陳籲, 殊甚未安. 此疏還爲下送, 何如? 傳曰, 允.

❖ 숙종 42년(1716) 병신년 2월 3일(갑자)

□ 전라감사(全羅監司) 김보택(金普澤)이 제주(濟州)의 근무 성적 평가 수령들의 이름을 잘못 써서 사퇴한다는 상소를 돌려보낼 것 등을 청하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평안감사(平安監司) 조태선(趙泰先)이 병 때문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황해감사(黃海監司) 김유(金楹)는 사정과 형세 때문에 해주(海州)에 과거를 시행할 일을 겸하여 붙였습니다. 강원감사(江原監司) 심택현(沈宅賢)은 인정과 도리를 진술하며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승정원의 허락을 기다린 지 오래되었으나 모두 들여 아뢰지 못했습니다. 여러 도(道)의 봄의 순찰이 이미 다가왔는데 폐지할 일이 염려됩니다. 차츰 임금의 안부가 점점 나아지기를 기다려 마땅히 차례대로 바쳐 올리고, 전라감사(全羅監司) 김보택(金普澤)은 제주(濟州)의 근무 성적 평가 수령들의 이름을 잘못 쓴 일로 심문한 뒤에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올린 상소에 대해 추고하는 서류를 채 마감하지 않기 전에 가볍게 앞질러 부르게 하는 것은 매우 편치 않습니다. 이 상소를 되돌려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전라감사, 김보택, 제주.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三月 三日 甲午

○ 前洗馬崔錫文等上疏曰, 伏以臣等, 師事先正臣尹拯, 雖學識魯下, 不能窺其造詣之萬一, 區區慕德之誠, 則竊自謂不後於人, 而不幸數十年來, 世道乖亂, 論議潰裂, 誣辱臣師之言, 愈出愈奇, 其在師生之義, 豈不欲一籲天門, 使我聖明, 洞察是非之所在, 而以辨邪正之實哉? …… 臣師之父, 先正臣文敬公宣擧, 與時烈弱冠相從, 結爲道義之交, 言言而切磨, 事事而質難, 嘗以爲, 雖不敢當明廷之憲臣, 猶可爲尤門之諍友, 尤門者, 時烈自號尤齋故也. 知無不言, 未嘗放過, 至於末年, 言不見信, 有未得盡意者, 而惓惓之誠, 未嘗已也. …… 又若時烈己巳之禍, 則聖明實燭其本末矣. 此何與於臣師父子之事, 而人之爲言, 乃至於此耶? 此蓋由於時烈之被謫耽羅也, …….

❖ 숙종 42년(1716) 병신년 3월 3일(갑오)

□ 스승인 윤증(尹拯)의 명예회복을 청하는 최석문(崔錫文) 등의 상소

○ 전(前) 세마(洗馬)[1029] 최석문(崔錫文) 등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삼가 신 등이 스승으로 모시는 선정신(先正臣) 윤증(尹拯)은 비록 학식이 노둔하고 낮으나, 그 학문의 경지가 만에 하나라도 엿볼 수 없었으니 구구(區區)하게 덕을 사모하는 정성인 즉 가만히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 수십 년 이래 세상의 도가 일그러지고 어지러워져 논의가 무너지고 갈라져 신의 스승의 말을 무고하고 욕되게 하는 말이 더욱 나오고 더욱 기이해져 갑니다. 스승과 제자의 의리로써 어찌 한번이라도 임금께 호소해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시비(是非)의 소재를 통찰하게 하여 이단과 정통의 실재를 분간하고자 바라지 않겠습니까? 〈중략〉 신 스승의 아비는 선정신 문경공(文敬公) 윤선거(尹宣擧)로 송시열(宋時烈)과 더불어 약관(弱冠)에 상종하여 도의(道義)로 사귐을 맺어 말할 때마다 학문을 갈고 닦았으며 일할 때마다 여쭈었습니다. 일찍이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밝은 조정의 언관을 맡지 않아도 오히려 우문(尤門)에 참된 충고를 해주는 벗이 되었습니다. 우문(尤門)이란 송시열의 자호(自號)가 우재(尤齋)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다 말하고 일찍이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으며, 말년에 이르러서는 말이 신임 받지 못하고 참뜻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나 간절한 정

1029) 세마(洗馬):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9품 잡직. 동궁을 모시고 경호하는 일을 맡아보았음. 좌우세마 각 1인을 둠.

성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중략〉 또 만약 송시열의 기사지화(己巳之禍)[1030] 같은 경우, 성명(聖明)께서 실제로 그 본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신의 스승의 부자(父子)가 참여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여 이내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이는 대개 송시열이 탐라(耽羅)에 유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최석문, 윤증, 윤선거, 송시열, 기사환국, 탐라.

1030) 기사지화(己巳之禍): 기사환국(己巳換局). 1689년(숙종 15) 후궁 소의 장씨(昭儀 張氏) 소생을 원자로 정호(定號)하는 문제를 계기로 서인(노론)이 축출되고 남인이 장악한 정국. 당시 노론의 영수 송시열이 원자 책봉에 반대하자 숙종은 그를 제주에 유배 보냈다가 이후 사사하였음.

❖ 康熙 五十五年 丙申 閏 三月 九日 己巳

○ 御製, 濟州餓死人等, 設壇賜祭文, 王若曰, 嗚呼, 毛羅一域之民, 生此不辰, 荐罹饑饉, 于今三載, 加以毒癘所遘, 十無一瘳, 矧茲絶海, 殊異陸地, 聚穀旣艱, 謀生亦難, 一島遑遑, 如逢兵燹, 予爲民主, 當作何懷. 憂悶之極, 渾忘疾疢, 勅諭道臣, 船粟以哺, 而往來候風, 每致遲滯, 繼令醫司, 優送藥物, 而殆同勺水, 莫能遍救, 首尾四年之間, 餓死病亡, 計以累千, 村閭空虛, 景象愁痛, 哀我赤子, 無罪無辜, 天胡降災, 若是偏酷耶? 予以若割, 寧丁我躬, 而不可得也. 嗚呼, 予病雖在沈綿, 爲民一念, 罔或少弛, 貢人之來, 輒問疾苦, 御史之往, 又下箚敎, 用心非不勤矣. 而事與心違, 卒不能自保吾民, 靜言思之, 良由無德, 曷勝慙靦, 嗚呼, 一婦抱冤, 尙且召災, 況近萬生靈, 相率而塡于溝壑者乎? 嗚呼, 孤魂無托, 不其餒, 而天陰雨濕, 鬼聲啾啾, 予念至此愍惻, 爰命監賑之臣, 擇地爲壇, 侑以淸酌庶羞, 用慰煩冤, 嗟爾衆神, 携挈朋儔, 來享飮食, 永除災沴, 保我餘氓, 故茲敎示, 想宜知悉.【出牖餘】

❖ 숙종 42년(1716) 병신년 윤 3월 9일(기사)

□ 제주(濟州)의 굶어 죽은 사람들에게 내린 어제제문(御製祭文)[1031]

○ 임금이 지은 제주(濟州)의 굶어 죽은 사람들에게 제단을 세워 제문을 내림. "왕은 이르노라. 아! 탁라(毛羅) 온 고장의 백성이 이런 불운한 때에 태어나서 기근을 거듭 당한 지 이제 3년째에 이르고, 게다가 혹독한 염병을 만나 열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낫지 못하며, 더구나 해외에 떨어져 있는 것이 육지와 달라서 곡식을 모으기가 어렵고 살길을 도모하기도 또한 어려우므로, 온 섬 안이 어쩔 줄 몰라 마치 전쟁을 만난 듯하니, 내가 백성의 임금으로서 당연히 어떠한 생각을 하겠는가? 근심과 번민이 지극하여 내 병마저 모두 잊고 관찰사에게 직접 명령하여 곡식을 배로 날라다가 먹이게 하였으나 왕래할 때에 순풍을 기다리느라 번번이 지체되고, 이어서 의사(醫司)를 시켜 약물을 넉넉히 보내게 하였으나 거의 한 움큼의 물과 같아서 두루 구완하지 못하니, 전후 4년 동안에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자가 수천을 헤아리게 되고 마을이 텅 비어 상황이 근심스럽고 가슴 아프다. 가엾은 우리 백성은 죄가 없고 허물이 없건만, 하늘이 어찌하여 이처럼 혹독하게 재앙을 내리는가? 내 마음을 에이는 듯하여 차라리 내 몸이 당하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없구나. 아! 내 병이 낫지 않고 오래 끄는 중이기는 하나 백성

1031) 《숙종실록》 권57, 1716년(숙종 42) 윤3월 9일에도 동일 내용이 실려 있음.

을 위하는 일념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아서 공인(貢人)이 오면 문득 그 고통을 묻고 어사가 갈 때에는 또 교서[筵敎]를 내려 마음 쓰는 것이 부지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일은 마음과 어그러져서 끝내는 우리 백성을 스스로 보전하지 못하였다. 고요히 생각하면 참으로 덕이 없기 때문이니, 어찌 부끄러워 견디겠는가? 아! 한 지어미가 원한을 품어도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데, 더구나 일만에 가까운 백성이 서로 좇아서 구덩이를 메워 죽은 것이겠는가? 아! 외로운 넋은 의탁할 데가 없어 굶주리고 하늘은 흐려 비마저 축축하니, 귀신의 울음소리가 처연하다. 내 생각이 이에 이르니 더욱 가엾고 측은하여 진휼 감독하는 신하에게 명하여 터를 가려 제단을 만들고 청작서수(淸酌庶羞)[1032]로 보답하여 번거로운 원한을 위로하게 하였다. 아! 너희 뭇 귀신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음식을 흠향하고 영구히 재앙을 없애서 우리 남은 백성을 보전하라. 이렇게 교시하니 이 뜻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불타고 남은 기록에서 나옴】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탁라, 공인, 어제제문.

1032) 청작서수(淸酌庶羞): 제사에 쓰는 술과 음식으로 제주(祭酒)와 제수(祭需)를 일컬음. 제사의 축문에서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함.

❖ 康熙 五十五年 丙申 閏 三月 十日 庚午

○ 政院啓曰, 臣等伏見下本院濟州餓死人等, 親製祭文, 哀傷惻怛之意, 溢於辭表, 臣等莊誦再三, 有以見我聖上, 深仁至誠, 足以聳遐邇而泣鬼神也. 不幸一島生民, 三歲荐飢, 船粟而救其急, 齎藥而濟其病, 凡所以闕活之道, 靡不用極, 而今此御史狀聞中, 前後死亡, 殆過累千, 此聖上所以盡然惻怛, 特降賜祭之命也. 當此靜攝之中, 親撰祭文, 至於累百餘言, 而一通辭旨, 懇悼采切, 雖文王之掩骼埋骨, 無以加此, 凡在聽聞, 孰不欽仰而感歎也哉? 親製祭文, 令香室淨書, 而他餘應行之事, 分付該曹, 使之擧行, 何如? 傳曰, 依啓.

❖ 숙종 42년(1716) 병신년 윤 3월 10일(경오)

□ 제주(濟州) 아사인(餓死人)에 대한 어제제문(御製祭文)을 향실(香室)에서 정서(淨書)할 것을 청하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삼가 본원에 내린 제주(濟州) 아사인(餓死人)에 대해 친히 지은 제문을 보았습니다. 슬프고 가슴 아픈 뜻이 글에 흘러넘쳐 신들이 장중하게 두세 번 외니 우리 성상의 깊은 어짊과 지극한 정성을 보아, 족히 모든 곳을 솟게 하며 귀신도 울게 함이 있습니다. 불행히 온 섬의 백성이 3년 동안 굶주림에 빠지니 배에 곡식 싣고 그 위급함을 구휼하고 약을 가지고 가 질병을 구제하여 무릇 진휼하여 살리는 방도를 극에 달하도록 했는데도 이번 어사의 장계로 아뢴 글 속에 전후에 사망한 이가 거의 수천을 넘었다 해서 이런 성상의 비통해하는 슬픔으로 특별히 제문을 내리는 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신을 조신하는 때를 당해 친히 제문을 짓는데 수백의 말이 글 뜻에 하나로 관통하여 간절한 애도가 점점 절박해져 비록 문왕(文王)의 시신을 가리고 뼈를 묻는 인정도 이보다 더함이 없을 터이니 무릇 들으면 누군들 공경하여 우러르며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친히 지은 제문을 향실(香室)에서 정서(淨書)하도록 명하고 다른 나머지 해야 할 일은 해당 부서에 분부하여 그렇게 거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아사인, 어제제문, 향실, 정서.

❖ 康熙 五十五年 丙申 閏 三月 二十日 庚辰

○ 備忘[校][備忘記], 禮記月令曰, 掩骼埋胔, 蓋推其所愛於生者, 以及其死者之意也. 況耽羅一域之民, 前後餓死者, 至於累千, 則其中無依之類, 初不着實收尸, 暴露者必多有之, 予念至此, 不覺惻然, 其令攸司, 分付道臣, 定監官, 各別埋瘞後以聞.

❖ 숙종 42년(1716) 병신년 윤 3월 20일(경진)

□ 탐라(耽羅) 백성 중 아사(餓死)한 자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한 뒤 아뢰라는 비망기[1033]

○ 비망기(備忘記)에,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이르기를, '마른 해골을 덮고 썩은 육신을 묻는다.'하였는데, 대개 산 자에 대한 사랑을 미루어 죽은 자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는 뜻이다. 하물며 탐라(耽羅) 온 지역의 백성들 중 전후에 굶어 죽은 자가 수천에 이르니 그 가운데 의지할 데가 없는 무리는 처음에 착실히 시신을 거두지 못하여 비바람 치는데 드러난 것이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이다. 내 생각이 여기에 이르러 절로 측은해지니, 유사(有司)로 하여금 수령에게 분부하여 감관(監官)을 정하여 각별히 매장한 후에 아뢰게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예기, 월령, 탐라, 아사.

1033) 《숙종실록》 권57, 1716년(숙종 42) 윤3월 19일에도 동일 내용이 실려 있음.

❖ 康熙 五十五年 丙申 四月 二十一日 庚戌

○ 傳曰, 今番濟州試才時書題單子, 不踏啓字, 御史還朝後, 單子還入啓下.

❖ 숙종 42년(1716) 병신년 4월 21일(경술)

□ 계자(啓字)를 찍지 않은 제주시재(濟州試才)의 서제(書題) 단자를 어사가 돌아온 뒤 도로 들이라는 전교

○ 전교하기를, "금번 제주시재(濟州試才)의 서제(書題) 단자에 계자(啓字)[1034]를 찍지 않았으니 어사가 조정에 돌아온 뒤 단자를 도로 들여 승낙을 받아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계자, 제주, 제주시재.

1034) 계자(啓字): 계자인(啓字印). 계자를 새긴 도장. 이를 찍어 임금의 승낙을 받았음[계하(啓下)]을 표시함.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五月 六日 乙丑

○ 司饔院啓曰, 濟州牧四月朔別進上, 今日來到, 本院, 看品捧上, 則大殿所封引鰒八十注之, 綜頭擧爲腐傷, 自前海外進上, 雖或有所傷, 而亦無退送之例, 故不得已捧上, 而莫重享上之物, 有所未盡, 其在事體, 不可無警責之道, 當該封進官推考, 陪持人, 亦不無不善護來之罪, 自本院, 治罪, 何如? 傳曰, 允.【廚院謄錄】

❖ 숙종 42년(1716) 병신년 5월 6일(을축)

□ 부패한 인복(引鰒)을 진상한 제주목(濟州牧) 해당 봉진관(封進官)의 추고 등을 청하는 사옹원의 계

○ 사옹원에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의 4월 초하루 별진상(別進上)이 오늘 와서 도착했는데 본원에서 품질을 살펴보고 받아들인즉 대전(大殿)에 들이는 인복(引鰒) 80주지(注之)가 머리를 모아 들춰보니 상했습니다. 전부터 해외의 진상은 비록 상한 바가 있어도 또 되돌려 보내는 예가 없어서 부득이 받아들였습니다. 임금에게 올리는 막중한 물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바가 있으니 일의 본체에 있어서 꾸짖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 되어 해당 봉진관을 추고하고 배지인 또한 잘 호송해 오지 못한 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본원에서 치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주원(廚院)[1035] 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 별진상, 인복.

1035) 주원(廚院): 조선시대 사옹원(司饔院)을 달리 이르는 말.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五月 十日 己巳

○ 禮曹啓目, 粘連濟州別遣御史黃龜河狀啓, 灰全鰒難辦, 稟處云云, 上供之物, 自下不敢擅便, 上裁何如? 啓, 特爲姑減, 而島民難支之勢如此, 不可不更加矜恤, 癸巳年本州進上物種裁減付標別單, 還入.

❖ 숙종 42년(1716) 병신년 5월 10일(기사)

□ 회전복(灰全鰒) 진상의 면제를 청한 제주(濟州) 별견어사 황구하(黃龜河)의 장계에 대해 임금의 결재를 청하는 예조의 계목

○ 예조 계목에 덧붙인 제주(濟州) 별견어사 황구하(黃龜河)의 장계에 회전복(灰全鰒)은 준비하기 어렵다고 아뢰어 처리해주기를 운운합니다. 대궐에 필요한 공물은 스스로 감히 멋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임금의 재가를 어찌해야 합니까? 아뢰자, 특별히 우선 감해 주되 섬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와 같으니 더욱더 가엾게 여겨 돌보아주지 않을 수 없어서 계사년(1713, 숙종 39) 제주(濟州)의 진상(進上) 물건 종류 중 가볍게 덜어줄 표식의 별단을 도로 거두게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별견어사, 황구하, 회전복.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五月 十一日 庚午

○ 禮曹, 癸巳年濟州進上物種裁減付標別單, 還入. 傳曰, 別單中減半付標者, 特加裁減, 竝減三分之二事, 分付.

❖ 숙종 42년(1716) 병신년 5월 11일(경오)

□ 제주(濟州)의 진상(進上) 물건 종류를 2/3로 경감시키라는 전교

○ 예조에서 계사년(1713, 숙종 39) 제주(濟州)의 진상(進上) 물건 종류 중 가볍게 덜어줄 표식의 별단을 도로 거두어 들였다. 전교하기를, "별단 중 절반으로 줄일 것으로 표식한 것은 특별히 더 덜어주어 모두 2/3로 줄이는 일을 분부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진상, 재감.

❖ 康熙 五十五年 丙申 六月 二十二日 庚戌

○ 濟州別遣御史書目, 大靜縣監金熙潤, 爲先罷黜事.

❖ 숙종 42년(1716) 병신년 6월 22일(경술)

□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희윤(金熙潤)의 파직에 대한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의 서목

○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의 서목은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희윤(金熙潤)을 우선 파직하여 내보내는 일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별견어사, 대정현감, 김희윤.

❖ 康熙 五十五年 丙申 六月 二十二日 庚戌

○ 有政. 吏批, 吳命峻爲刑曹參判, …… 朴以文爲大靜縣監. …….

❖ 숙종 42년(1716) 병신년 6월 22일(경술)

□ 박이문(朴以文)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오명준(吳命峻)을 형조참판에, 〈중략〉 박이문(朴以文)[1036]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박이문, 대정현감, 이비.

1036) 박이문(朴以文): 박이문은 방목에 의하면 3명이 소개되고 있음. 박경응(朴慶應)의 아들로 자가 숙회(叔會)인 경우는 1626년(인조 4)생으로 1716년(숙종 42) 대정현감 제수 당시는 90세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2명임. 이들은 모두 1653년(효종 4)생으로 등장하는데 1명은 박봉원(朴鳳元)의 아들로 1705년(숙종 31) 증광시 문과 병과에 급제한 이요, 다른 1명은 박위량(朴偉量)의 아들[자 여질(汝質)]로 1678년(숙종 4) 증광시 무과 병과에 급제한 이임. 아마도 이 2명 중 1명으로 추정됨.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七月 二十五日 壬午

○ 下直, 大同察訪李斗三, 大靜縣監朴以文.

❖ 숙종 42년(1716) 병신년 7월 25일(임오)

□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이문(朴以文) 등이 하직함

○ 대동찰방(大同察訪) 이두삼(李斗三),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이문(朴以文)이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박이문, 하직.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九月 一日 丁巳

○ 禮曹啓曰, 卽接濟州牧使洪重周移文, 則今此誕日所封方物弓帒筒箇四部外, 結弓獐皮十張, 織毛馬粧一部代, 結弓獐皮五張, 今始上來, 而取考謄錄, 則自前三名日方物權減之時, 濟州牧所封結弓獐皮, 則仍有封進之規, 今亦依此例, 看品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禮曹謄錄】

❖ 숙종 42년(1716) 병신년 9월 1일(정사)

□ 제주목(濟州牧)의 방물 궁대동개(弓帒筒箇) 등을 살펴서 들이겠다는 예조의 계

○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중주(洪重周)의 문서를 접한즉 이번 탄신일에 봉한 방물 궁대동개(弓帒筒箇)[1037] 4부(部)외에 결궁장피(結弓獐皮)[1038] 10장(張), 직모마장(織毛馬裝)[1039] 1부(部)를 대신한 결궁장피 5장이 지금 비로소 올라왔는데 등록을 취하여 살펴보니 전부터 삼명일(三名日) 방물을 임시로 줄일 때 제주목(濟州牧)에서 봉한 결궁장피는 그대로 봉진한 규례가 있어서 지금 또한 이 예에 의거 물품을 살펴보고 들일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홍중주, 궁대동개, 결궁장피, 직모마장.

1037) 궁대동개(弓袋筒箇): 활 넣는 통을 궁대(弓袋)라 하는데, 동개(筒箇)는 화살집과 활을 넣는 통을 한 줄로 묶어 왼편 어깨에 매달도록 줄로 연결된 제구. 화살집은 시복(矢腹)이라고 함.

1038) 결궁장피(結弓獐皮): 활에 매는 노루 가죽.

1039) 직모마장(織毛馬裝): 털로 짠 말 장식.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九月 六日 壬戌

○ 李喬岳疏曰, 伏以, 臣以疎迂譾薄之資, 濫叨畿輔重鎭之命, 辭避無路, 黽勉就任, 牧民禦衆之責, 非臣所可堪承, 惟思竭心殫慮, 撫摩軍民, 以圖其萬一報效, 而適値無前大殺, 目見民間惶急之狀, 有若時刻難保者, 臣若以猥屑爲懼, 不卽陳聞, 將見一方民物, 盡歸於丘壑之中, 玆敢忘其僭越, 疾聲仰籲於宸嚴之聽, 惟聖明之澄省, 亟降處分焉. 本府幅員之廣, 甲於畿輔, 論其地形, 則通一境合五十七面, 而海內之闊大, 此陸面殆三之二也. 民戶則一萬二十戶, 男女老弱竝五萬餘口也. 軍額馬步軍及雜色名目摠六千兵馬也. 處輦轂宿舂之地, 朝令夕發, 臨難捍衛之功, 屢驗前事, 而至蒙聖祖之褒賞, 頃年聖上, 亦以緩急得力, 無異輦下之親兵, 下敎於筵中, 朝家之所以倚重者, 視他鎭迥別, 不幸近年以來, 連値災荒, 民生日漸困瘁, 缺日漸凋耗, 至于今年, 年事之孔慘, 視左捕諸邑, 最爲尤甚之尤甚數三行缺, …… 又於昨歲, 深軫耽羅一域荐被飢荒之慘, 逐年船粟, 使之往哺, 而憂傷惻怛之敎, 屢下筵席, 臣於入侍之時, 親承聖訓, 至今莊誦矣. 臣叨忝股肱之重鎭, 目擊民事之罔極, 冒萬死條陳一二緊急之事, 而誠恐玉候靜攝之中, 添一若恫之憂, 臣於此, 一倍悚慄, 而旣受芻牧之寄, 不得不唐突瀆撓, 臣誠死罪死罪. 懇乞聖明, 俯垂採納, 速許施行, 以活一方之民, 不勝幸甚.【批答見上 以上纔餘】

❖ 숙종 42년(1716) 병신년 9월 6일(임술)

□ 경기(京畿) 지역의 흉년의 실상을 보고하고 진휼책을 건의하는 이교악(李喬岳)의 상소

○ 이교악(李喬岳)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삼가 신이 속이 좁고 천박한 자질로 기내(畿內)의 중요한 진(鎭)을 맡으라는 명을 외람되게 맡아 사퇴를 피할 길이 없어서 민면(黽勉)하여 취임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돌보고 대중을 제어하는 책임은 신이 감당하여 이을만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마음과 생각을 다해 군민(軍民)을 무마(撫摩)함으로 (성은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전에 없던 큰 흉년을 만나 민간(民間)의 황급한 상황을 목도하니 마치 시시각각으로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신이 마치 보잘것없고 자잘함을 두렵게 여겨질 듯해 즉시 아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차 한 지방의 민물(民物)을 보니, 죄다 도랑으로 떨어질 것 같아, 이에 감히 참월(僭越)을 잊고 소리 질러 우러러 임금의 위엄에 호소하여 아룁니다. 오직 성명께서 밝게 살펴주시기를 바라

며 속히 처분을 내려 주십시오. 본부(本府)의 폭이 넓음은 기내(畿內)에서 으뜸인데, 지형을 논하자면 한 지경을 통틀어 57개 면(面)이 합쳐져 나라 안에서 매우 넓어, 육지 면적이 거의 3분의 2가 됩니다. 민호인 경우, 1만 20호이고 남녀노소를 합쳐 5만여 명입니다. 군인의 수는 마보군(馬步軍)과 잡색명목(雜色名目) 총 6천의 병마(兵馬)입니다. 임금이 계신 곳으로부터 백 리 길에 위치하는 땅이라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이면 출발할 수 있는데, 한위(捍衛)하기 어려움에 임한 공을 누차 전의 일로 체험했는데 성조(聖祖)의 포상까지 입기에 이르렀었고, 근년에는 성상(聖上)께서도 역시 완급으로 힘을 얻음이 자신의 친병(親兵)과 다름이 없다고, 경연 자리에서 하교(下敎) 하셨습니다. 조정이 (이곳을) 두텁게 신임하는 까닭은 (이곳이)다른 진(鎭)과는 전혀 다르게 보기 때문인데, 불행히도 근년 이래 계속되는 재난을 만나 민생이 날로 점점 곤궁하고 고달파져【글자 빠짐】 연일 점점 조잔(凋殘)하고 쇠모(衰耗)해져 올 해에 이르러 한 해의 농사가 매우 참혹해 좌포(左捕)의 여러 읍을 보니, 특히 심한 가운데서도 가장 특히 심합니다.【몇 행의 글자 빠짐】〈중략〉 또 작년에 탐라(耽羅) 일역(一域)이 연이어 기황(飢荒)의 참혹함을 입음에 깊이 슬퍼하시어 해마다 곡식 실은 배로 하여금 가서 먹이게 하였으며 경연 자리에서 누차 근심하고 슬퍼하는 측달(惻怛)의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신이 입시하였을 때, 직접 성상의 훈시를 받아 지금까지 소리 높여 읽고 있습니다. 신이 외람되이 고굉의 중진을 맡아 직접 민사의 망극함을 목도(目睹)하고,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조진(條陳)한 한두 건의 긴요한 일이 진실로 성상의 건강이 정섭(靜攝)되는 가운데 슬픔 같은 우환을 하나 더하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신은 이에 더욱 죄송스럽고 두렵습니다만 이미 추목(芻牧)의 맡김을 받았기에 당돌하게 성상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진실로 죽을죄라면 죄로 죽겠습니다. 간절히 성명(聖明)께서 굽어 살펴 채납(採納)해주시기를 바라며 속히 시행하기를 허락해 주시어 한 지방의 백성들을 살려주신다면, 심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비답이 앞에 보임,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탐라, 진휼.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九月 八日 甲子

○ 濟州試才別遣御史黃龜河, 入來.

❖ 숙종 42년(1716) 병신년 9월 8일(갑자)

□ 제주시재별견어사(濟州試才別遣御史) 황구하(黃龜河)가 들어옴

○ 제주시재별견어사(濟州試才別遣御史) 황구하(黃龜河)가 들어왔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시재별견어사, 황구하.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九月 八日 甲子

○ 又啓曰, 濟州別遣御史黃龜河, 旣已收取試券上來矣. 大提學宋相琦, 卽爲牌招, 使之科次以入, 何如? 傳曰, 允.

❖ 숙종 42년(1716) 병신년 9월 8일(갑자)

□ 제주(濟州)의 시권(試券)을 대제학 송상기(宋相琦)에게 과차(科次)하도록 청하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또 아뢰기를,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 황구하(黃龜河)가 이미 시권(試券)을 거두어 올라 왔습니다. 대제학 송상기(宋相琦)를 불러들여 그에게 과차(科次)하여 들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별견어사, 황구하, 시권, 송상기.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九月 八日 甲子

○ 政院啓曰, 大提學宋相琦牌不進, 推考傳旨, 今方捧入, 而濟州試券科次, 不可遷就, 更爲牌招, 何如? 傳曰, 依啓. 試券不可經宿, 强疾入來科次, 可也.

❖ 숙종 42년(1716) 병신년 9월 8일(갑자)

□ 제주(濟州) 시권(試券)의 과차(科次)를 연기할 수 없으므로 송상기(宋相琦)를 다시 부르기를 청하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대제학 송상기(宋相琦)를 불러도 출석하지 않았으니 추고하라는 전지(傳旨)를 이제 봉입하였는데 제주(濟州) 시권(試券)의 과차(科次)는 늦출 수가 없으니,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시권은 하루라도 지나서는 안 되니, 신속하게 들어와 과차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시권, 송상기.

❖ 康熙 五十五年 丙申 九月 十四日 庚午

○ 藥房入診時, 提調閔鎭厚所啓, …… 又所啓, 濟州御史黃龜河, 旣已還歸, 其書啓未及入啓云, 而臣適逢龜河, 私問濟州形勢, 則以爲, 離彼時, 秋成尙遠, 未知結實之如何, 而設令無他災害, 似未免凶歉, 況今年則橡實全無所收, 民情尤增迫切, 賑餘穀物留儲者, 雖有數千石, 須更以一萬五千石入送, 則庶可以救得云, 近年以來, 因濟州賑恤, 國力殆至罄竭, 到今又爲船粟, 其勢極難, 而若使孑遺之民, 終不免盡爲塡壑, 則朝家累年勤恤之意, 未免有始無終之歸, 其爲矜惻, 當如何哉? 宜令賑廳, 別樣料畫, 務爲措置, 待春入送, 拯濟島中生靈矣. 上曰, 自初旣已各別軫恤, 而恩澤無終, 則寧有是哉? 分付賑廳, 各別料理送穀濟活, 可也.【備局謄錄】

❖ 숙종 42년(1716) 병신년 9월 14일(경오)

□ 제주(濟州)에 진휼 곡식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할 때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뢴 바, "〈상략〉 또 아뢰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 황구하(黃龜河)가 이미 돌아왔지만 서계(書啓)를 아직 들여 아뢰지 못했다 합니다. 신이 마침 황구하를 만나 사적으로 제주(濟州)의 형세를 물으니, '저곳을 떠날 때 가을철 곡식이 익기에는 아직 멀어 수확이 어떤지 알지 못하나 설령 다른 재해가 없다 해도 흉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올해는 도토리도 수확하는 바가 전무해서 민정이 더욱 절박하고 진휼하고 남은 비축 곡물도 비록 수천석이 있어도 모름지기 다시 일만 오천 석을 들여보내면 거의 구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년 이래 제주의 진휼 때문에 국력이 거의 소진되었고 지금도 또한 배에 곡식을 실고 있으니 그 형세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만약 살아남은 사람도 끝내 면치 못해 모두 골을 메우게 되면 조정에서 해마다 부지런히 구휼한 뜻이 처음은 있고 끝이 없는 데로 돌아감을 면치 못하니 그 불쌍하고 가여움이 마땅히 어찌 되겠습니까? 의당 진휼청에 명령하여 특별 대책을 힘써 조치하고 봄을 기다려 들여보내 섬 안의 생명을 건져 구제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부터 이미 각별히 진휼하여 은택이 끝이 없은 즉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진휼청에 분부하여 각별히 헤아려 곡식을 보내 구제하여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어사, 황구하, 진휼.

❖ 康熙 五十五年 丙申 十月 十三日 己亥

○ 全羅監司書目, 順天府使南九明, 稱以名入濟州監賑御史書啓中, 不爲受由, 擅離官次, 不得已罷黜事.

❖ **숙종 42년(1716) 병신년 10월 13일(기해)**

□ **남구명(南九明)을 파면시키라는 전라감사(全羅監司)의 서목**

○ 전라감사(全羅監司)의 서목은 순천부사(順天府使) 남구명(南九明)이 (자신) 이름이 제주(濟州) 감진어사(監賑御史)의 서계 중에 들어갔다고 칭하면서, 말미를 받지 않고 관사를 함부로 떠났으니 부득이 파면시키라는 일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전라감사, 순천부사, 남구명, 제주, 감진어사.

❖ 康熙 五十五年 丙申 十月 十八日 甲辰

○ 賑恤廳啓曰, 今九月十四日, 藥房入診時, 因提調閔鎭厚所啓, 濟州年事, 又未免失稔, 更以一萬五千石之穀, 分付賑廳, 各別料理, 待春入送, 濟活可也事, 命下矣. 近年以來, 因濟州移轉, 兩南所在穀物, 殆至罄竭. 目今京倉, 雖有若干餘儲, 明春諸道賑需, 及都下飢民接濟之資, 專靠於此, 則決難畫送, 兩南災荒之慘, 又復如此, 亦難推移入送. 大抵上年, 自朝家入送之穀, 將至三萬石, 則今秋, 雖不盡數還捧, 亦當救活, 且穡事, 稍勝於昨秋云, 不必又爲移粟, 而旣以入送定奪之後, 全然不送, 則海外民生, 必將有缺望之心, 得聞統檢營穀物, 庶有推移入送之道云. 統營會外穀七千石, 檢營三千石, 合爲一萬石, 以本州附近各邑所在雜穀, 道臣句管, 使之待明春入送, 其代, 以所產魚藿, 出送萬頭鎭, 料理立本之意, 兩道監司·統制使, 及濟州牧使處, 分付, 何如? 傳曰, 允.【備局謄錄】

❖ 숙종 42년(1716) 병신년 10월 18일(갑진)

□ 제주의 진휼을 위해 통영(統營)의 회외곡(會外穀) 7천석과 검영(檢營)의 3천석을 보낼 것 등을 청하는 진휼청의 계

○ 진휼청에서 아뢰기를, "금년 9월 14일 약방(藥房) 입진 시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아뢴 바, '제주(濟州)의 일 년 농사가 또 흉년을 면치 못해 다시 15,000석의 곡식을 진휼청에 분부해서 각별하게 처리하여 봄을 기다려 들여보내 구제하여 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일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년 이래 제주로 곡식을 옮기는 일로 인해 호남과 영남 소재의 곡물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지금 경창(京倉)을 보니 비록 약간의 남는 저장분이 있지만, 다음 봄 여러 도(道) 진휼의 수요와 서울의 굶주린 백성들이 살아갈 방도의 밑천이 오로지 여기에 의지하고 있으니 결코 나누어 보내기 어렵습니다. 호남과 영남 흉년의 참혹상이 또 다시 이와 같으니, 역시 변통하여 들여보내기 어렵습니다. 대저 작년 조정에서 들여보낸 곡물이 거의 30,000석에 이르는데, 올 가을 비록 수대로 다 돌려 거둘 수도 없고 또 구제하여 살릴 때를 당했습니다. 또 추수가 작년 가을보다 조금 낫다 하여 반드시 곡식을 다시 옮길 필요는 없으나, 이미 들여보내기로 결정한 후 전혀 보내지 않는다면 바다 밖의 민생(民生)에 반드시 장차 실망하는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들으니 통영(統營) 검영(檢營)의 곡물을 거의 변통하여 들여보낼 방도가 있다고 합니다. 통영의 회계 외에 남는 곡식 7,000석과 검영의 3,000석,

합쳐 10,000석이 됩니다. 본주(本州) 부근의 각 읍 소재 잡곡(雜穀)을 관찰사가 관할하여 내년 봄을 기다려 들여보내게 하고, 그 대신 채취한 해산물을 만두진(萬頭鎭)으로 내보내 처리하여 밑천을 세울 뜻으로 양도(兩道)의 감사(監司)와 통제사(統制使) 및 제주목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진휼청, 제주, 통영, 검영.

❖ 康熙 五十五年 丙申 十一月 十二日 戊辰

○ 御營廳啓曰, 因賑恤廳啓辭, 本廳餉米八千石許貸事, 允下矣. 軍門財穀, 無非不虞之備, 至於軍食, 尤爲緊重, 而近緣兩湖之連歲失稔, 所捧漸縮, 且如賑事, 朝家取用之數, 亦甚不貲, 莫重軍需, 將未免枵然一空, 誠非細慮. 卽今本廳所儲餉米, 都數三萬七千餘石內, 若依他倉例, 一石所縮, 米三升式計減, 則自本廳設立後, 流來所縮之數, 將至一萬二千石, 實遺在, 不過二萬五千石零, 而常時一朔軍兵料下者, 一千二百餘石. 鄕軍則今雖姑爲停番, 標下軍諸將校, 一朔之料, 亦過八百餘石, 而今年則各道災減之外, 湖南米三千石, 又自備局定奪, 入送于濟州, 明春所捧, 不過千餘石, 而凶歲赤立之民, 亦難保其必捧, 今此賑廳之請貸者, 又至八千石之多. 此雖出於救民之意, 本廳實留庫, 二萬五千石內, 又除出此近萬石之穀, 則所餘存者, 只是一萬七千石. 以此算計於逐朔放料之數, 則僅支明年十二朔而止, 其後許多軍食, 於何辦出耶? 且賑廳之所以請貸者, 非以賑資之全無所儲也, 爲慮明年麥農之如何, 欲爲撙節儲蓄之地, 則實與目前切急有間, 前頭之彼此無異, 備豫之道, 軍政亦重, 而麥秋之豐歉, 旣不可預料, 則明秋之還捧, 亦何能必乎? 揆以事勢, 實難輕許, 而一切防塞, 〈非〉共濟之道, 本廳軍餉米, 限四千石, 參酌許貸後, 趁明秋卽爲還償, 俾無軍餉絶乏之患, 何如? 傳曰, 允. 【備局謄錄】

❖ 숙종 42년(1716) 병신년 11월 12일(무진)

□ 어영청(御營廳)의 군량미 중 4천 석을 진휼청에 대여한 뒤 내년 가을에 돌려 갚아 군량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을 청하는 어영청의 계

○ 어영청에서 아뢰기를, "진휼청의 계사로 인해 본청의 군량미 8,000석 대여를 허락하는 일을 명하셨습니다. 군문(軍門)의 재정과 곡식은 뜻밖의 일에 대한 대비가 없을 수 없고, 군식(軍食)인 경우 더욱 긴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호남, 호서의 연이은 흉년으로 인해 거둬들이는 바가 점점 줄어들고, 또 진휼하는 일 같은 경우에도 조정에서 취해 쓰는 수량 역시 예측할 수 없이 심합니다. 군대의 수요가 막중한데 덩그러니 일시에 비어버리면 (이는) 진실로 작은 우려가 아닙니다. 지금 본청에 저축된 군량미가 전부 37,000여 석 안쪽인데 만약 다른 창(倉)의 예에 따른다면 1석(石)이 줄어들면 쌀 3승(升)이 감소했다고 계산하는 방식인데, 본청이 설립한 이후부터 여러 해 동안 계속된 줄어든 수량이 무릇 12,000석에 이르러 실제로 남아있는 수량은 불과 25,000석 남짓입니다. 평상시

한 달마다 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1,200여 석이고, 향군(鄕軍)[1040]인 경우 지금 비록 잠시 번상을 정지하였지만, 표하군(標下軍)[1041]의 여러 장교들 한 달 급료 역시 800여 석이 넘습니다. 그런데 금년인 경우 각 도(道) 재해로 감해준 세(稅) 외에 호남미 3,000석이 다시 비변사에서 제주(濟州)로 들여보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봄에 거둘 것이 1,000여 석에 불과하고, 흉년으로 헐벗은 백성들이 역시 반드시 바친다고 보장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진휼청이 빌려달라고 청한 것이 또 8,000석으로 많습니다. 이는 비록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본청 창고에 실재로 남은 것이 25,000석 안쪽이고, 또 이렇게 10,000석에 가까운 곡식을 빼간다면, 여유분으로 남는 것이 다만 17,000석입니다. 여기에다 달마다 급료로 지출하는 수를 계산해보면 겨우 내년 12월까지 버티다가 끝나버립니다. 그 후 허다한 군식(軍食)은 어떻게 마련해내겠습니까? 또 진휼청이 빌려주기를 청하는 까닭은 이로써 진휼할 밑천이 저축된 바가 전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년 보리농사가 어찌될지 염려하기 때문이고, 저축을 절약하고자 하는 입장이니, 실제로 눈앞에 절박하고 급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피차(彼此)가 미리 준비하는 방도에는 차이가 없으나, 군정(軍政) 또한 중요합니다. 보리수확이 풍년인지 흉년인지 미리 예측할 수 없으니, 내년 가을에 돌려 거두는 것 또한 어찌 장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의 형세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가벼이 허락하기 어려우나 일체 못하게 해버리면 함께 살려는 방도가 아니니, 본청의 군량미에서 4,000석에 한하여 참작하여 빌려주기를 허락한 후, 내년 가을에 즉시 돌려받아 군량이 끊어질 우려가 없게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진휼청, 어영청, 제주, 향군, 표하군.

1040) 향군(鄕軍): 지방에서 번상한 군인.
1041) 표하군(標下軍): 각 군영의 대장(大將)이 친히 거느리는 부하.

1717年

❖ 康熙 五十六年 丁酉 一月 十八日 癸酉

○ 慶尙監司書目, 敢陳本道還穀難捧之狀, 請寢濟州移轉之令事, 上疏上送事. 啓. 答曰, 省疏具悉. 疏辭如此, 令廟堂稟處.【已上朝報】

❖ 숙종 43년(1717) 정유년 1월 18일(계유)

□ 제주(濟州)로 보낼 환곡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경상감사(慶尙監司)의 서목

○ 경상감사(慶尙監司)의 서목은 본도 환곡을 거두어들이기 어려운 정상을 감히 진술하고 제주(濟州)로 옮기라는 명령을 그쳐달라는 일을 청하며 상소가 올라온 일을 아뢰었다. 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내용을 자세히 알았다.[1042] 상소의 글이 이러하니 의정부에 명령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이상은 조보(朝報)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경상감사, 제주, 환곡.

1042) 성소구실(省疏具悉): 임금이 신하의 상소문을 살펴보고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았다는 뜻으로 이르는 형식적인 어투.

❖ 康熙 五十六年 丁酉 二月 十二日 丁酉

○ 提調閔鎭厚所啓, 頃日筵中, 溫陽設科一款, 未有明白下敎矣. 臣意則此時設科, 終涉重難, 待秋別設, 恐爲便當, 而如不可已, 則亦宜早定期日, 使無擧子輩預爲聚會之弊, 下詢于大臣而處之, 何如? 上曰, 予方欲下詢矣. 凶荒雖甚, 頃送監賑御史於濟州時, 亦令設科, 則今此溫幸設科, 何可已乎? 日昨筵中, 已爲下敎, 而先朝旣有兩次設科之例, 今若不設, 必致缺望. 臨幸時卽設與追後別設, 何者爲宜耶? 大臣之意, 何如? …….

❖ 숙종 43년(1717) 정유년 2월 12일(정유)

□ 민진후(閔鎭厚) 등이 입시하여 온양(溫陽)의 설과(設科)를 가을에 별도로 설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전일 경연(經筵) 중 온양(溫陽)에 설과(設科)하는 한 조목에 관해서는 명백한 하교가 있지 않았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이러한 때의 설과(設科)는 끝내 매우 어렵다고 보아 가을을 기다려 별도로 설과하는 일이 마땅하다 여겼는데 그만 둘 수는 없을 것 같아 역시 마땅히 일찌감치 기일을 정해 응시생들이 미리 모이는 폐단을 없게 하도록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물어보려 한다. 흉년의 비록 심하다 해도 지난 번 제주(濟州)로 감진어사(監賑御史)를 보낼 때, 역시 설과를 명했는데 지금 이 온양 행차에 설과하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전일 경연 중에 이미 교지를 내렸고 선조(先朝)에서도 이미 두 차례의 설과를 한 예가 있으니, 지금 만약 설과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터이자. 임행(臨幸) 시 바로 설과하는 일과 추후 별도로 설과하는 일 중, 어떤 것이 마땅한 것인가? 대신들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온양, 설과, 제주, 감진어사.

❖ 康熙 五十六年 丁酉 二月 二十六日 辛亥

○ 以濟州牧使賑穀催運事狀啓, 傳曰, 觀此狀啓, 本島劃給穀物, 尙不入來云. 哀我島民, 其將盡劉, 而使予年年特加軫念之意, 歸於虛奪, 思之至此, 不覺傷心. 其令廟堂嚴飭該道, 星火入送, 以濟涸轍之急.

❖ 숙종 43년(1717) 정유년 2월 26일(신해)

□ 진곡(賑穀)의 운반을 재촉하는 일에 관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해 곡물을 시급히 들여보내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진휼 곡식의 운반을 재촉하는 일의 장계에 대해 전교하기를, "이 장계를 보건대 본도에 주어야 할 곡물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가련한 나의 섬 백성들이 장차 다 없어져 나로 하여금 해마다 특별히 더한 근심의 뜻이 허탈한 데 돌아가리니,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도 모르고 마음이 아프다. 조정에서 해당 도에 엄하게 타일러 신속하게 들여보내 매우 위급한 처지를[1043] 구제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진곡.

1043) 학철지급(涸轍之急): 학철부어(涸轍鮒魚). 수레바퀴 자국에 괸 물에 있는 붕어라는 뜻으로, 곤궁한 처지나 다급한 위기를 비유한 말. 《장자(莊子)》〈외물편(外物篇)〉에 나옴.

❖ 康熙 五十六年 丁酉 七月 二十三日 乙亥

○ 吏批啓曰, 濟州牧使洪重周拿來之代, 今當以武臣差出, 而擬望之人乏少, 時任閫帥中, 可合人, 竝擬何如? 傳曰, 允.

❖ 숙종 43년(1717) 정유년 7월 23일(을해)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후임으로 현재의 절도사들 중에서도 아울러 의망할 것을 청하는 이비의 계

○ 이비(吏批)가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중주(洪重周)를 잡아오고 그 후임을 지금 마땅히 무신으로써 차출해야 하는데 의망(擬望)[1044]할 사람이 매우 적어 현재 곤수(閫帥)[1045] 중에서 합당할만한 사람을 아울러 의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홍중주.

1044) 의망(擬望): 후보자를 천거함. 관원을 임명할 때 세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던 일. 임금은 추천자 명단을 참조하여 결정하였음. 유사어로 비의(備擬), 의차(擬差), 의천(擬薦), 주의(注擬) 등이 있음.

1045) 곤수(閫帥):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 조선시대에는 특히 함경도와 평안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이르는 말이었음. 이는 곤외(閫外) 즉, 문지방 밖, 대궐 밖의 신하라는 뜻의 곤외지신(閫外之臣)에서 나온 말로, 대궐 밖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에서 변경으로 나가는 장군을 이르는 말이 됨.

❖ 康熙 五十六年 丁酉 七月 二十三日 乙亥

○ 以趙鳴鳳爲輔德, …… 鄭碩賓爲濟州牧使, …….

❖ 숙종 43년(1717) 정유년 7월 23일(을해)

□ 정석빈(鄭碩賓)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조명봉(趙鳴鳳)을 보덕(輔德)에, 〈중략〉 정석빈(鄭碩賓)[1046]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정석빈, 제주목사.

1046) 정석빈(1656~1719):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덕로(德老). 부친은 정시광(鄭始光), 모친은 정문(鄭文)의 딸. 21세에 무과에 급제한 후 내삼청(內三廳)에 들어갔으나,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때 관직에서 물러난 후 두문불출. 1694년(숙종 20) 갑술옥사 후에 다시 관직에 나아가 훈련원첨정, 덕천군수, 전라우수사, 제주목사를 역임. 제주목사 재임기간은 1717년(숙종 43) 9월~1719년(숙종 45) 6월. 제주목사 재임 중 사망.

❖ 康熙 五十六年 丁酉 七月 二十七日 己卯

○ 司饔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濟州牧六月朔別進上烏賊魚·搥鰒·引鰒, 今日到院, 而中宮殿進上烏賊魚十四貼中, 六貼水沈腐傷. 陪持人, 令攸司, 囚禁科罪, 何如? 傳曰, 允.【刑曹謄錄】

❖ 숙종 43년(1717) 정유년 7월 27일(기묘)

□ 부패한 오적어(烏賊魚)를 진상한 제주목(濟州牧) 배지인(陪持人)을 잡아가두고 죄를 청하는 사옹원의 계

○ 사옹원 관원이 감선(監膳)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의 6월 초하루 별진상 오적어(烏賊魚), 추복(搥鰒), 인복(引鰒)이 오늘 관아에 도착하였는데 중궁전 진상 오적어 14첩(貼) 중 6첩이 물에 잠겨 썩고 상했습니다. 배지인을 유사에 명령하여 잡아가두고 죄를 묻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형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 별진상, 오적어, 추복, 인복.

❖ 康熙 五十六年 丁酉 十月 三日 癸未

○ 李箕翊達曰, 卽者濟州前牧使洪重周奪符宣傳官金澱, 發船狀達到院, 而觀其狀本, 多有違式處, 推考警責, 何如? 令曰, 依.

❖ **숙종 43년(1717) 정유년 10월 3일(계미)**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중주(洪重周)를 잡아오기 위한 선전관 김전(金澱)의 장계가 격식에 어긋난 곳이 많으므로 추고를 청하는 이기익(李箕翊)의 건의**

○ 이기익(李箕翊)이 아뢰기를, "앞서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중주(洪重周)의 부절(符節)을 회수하기 위한 선전관(宣傳官) 김전(金澱)이 배를 띄우며 보낸 장계가 본원에 도착하였는데 그 장계를 살펴보니 격식에 어긋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추고하여 꾸짖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명령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이기익, 제주목사, 홍중주, 김전.

❖ 康熙 五十六年 丁酉 十一月 日 辛亥

○ 又啓曰, 壬辰二月別製居首幼學柳汝霖, 乙未五月式年文科會試入格生員金應商, 以在喪, 不得赴甲午式年文科殿試, 許赴後科事, 及乙未九月九日儒生課試居首幼學南壽彦, 同年十一月賜柑製述居首進士成德章, 丙申三月三日儒生課試居首幼學朴弼夔, 丙申九月濟州別遣御史試才入格幼學高萬甲, 幼學高處亮, 幼學鄭敞選, 同年九月九日儒生課試居首生員尹光天, 同年十二月賜柑製述居首生員柳復明等, 直赴殿試事, 命下矣. 柳汝霖等十人, 依前例, 許赴於今丁酉式年文科殿試, 何如? 傳曰, 允.【以上禮曹謄錄】

❖ 숙종 43년(1717) 정유년 11월 일(신해)

□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의 시재에 급제한 고만갑(高萬甲), 고처량(高處亮), 정창선(鄭敞選)을 이번 정유년 식년 문과에 직부전시 하도록 요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임진년(1712, 숙종 38) 2월 별제(別製)[1047]에 장원한 유학(幼學) 유여림(柳汝霖)과 을미년(1715, 숙종 41) 5월 식년 문과 회시에 급제한 생원 김응상(金應商)은 상중에 있어서 갑오년(1714, 숙종 40) 식년 문과 전시에 응시할 수 없어서 훗날 과거에 응시를 허락하는 일, 을미년 9월 9일 유생과시(儒生課試)[1048]에 장원한 유학 남수언(南壽彦)과 동년 11월 사감제술(賜柑製述)[1049]에 장원한 진사 성덕장(成德章), 병신년(1716, 숙종 42) 3월 3일 유생과시에 장원한 유학 박필기(朴弼夔), 병신년 9월 제주별견어사(別遣御史) 시재(試才)에 급제한 유학 고만갑(高萬甲)[1050], 유학 고처량(高處亮)[1051], 유학 정창선(鄭敞選)[1052], 동년

1047) 별제(別製): 나라에 특별한 경사 등의 행사가 있을 때에 의정부와 6조, 각 관청의 당상관들이 성균관에 모여 거재생(居齋生)과 지방 유생(儒生)들에게 제술(製述)만 보게 하는 시험.

1048) 유생과시(儒生課試): 절일제(節日製) 중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 성균관 및 지방 유생들에게 보이던 시험. 우수자를 문과 회시나 전시에 직부 하도록 함.

1049) 사감제술(賜柑製述): 황감제(黃柑製) 또는 황감과(黃柑科). 매년 12월 전후 제주도의 특산물인 감귤이 진상되어 올 때 성균관의 명륜당에 관학(성균관과 사학) 유생들을 모아놓고 감귤을 나누어준 뒤 치렀던 과거. 1564년(명종 19) 처음 시행되었으며, 합격자는 당일에 결정함. 합격자는 직부전시(直赴殿試) 혹은 직부회시(直赴會試)함.

1050) 고만갑(1681~?):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성백(星伯), 제주시 이호(梨湖) 출신. 증조부는 고홍진(高弘進), 부친은 고환(高瑍)이다. 1717년(숙종 43) 식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성균관전적, 사헌부감찰, 예조정랑을 역임. 1728년(영조 4) 김일경(金一鏡) 등이 일으킨 무신란(戊申亂)을 진압하여 그 공으로 분무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으로 녹훈됨.

9월 9일 유생과시에 장원한 생원 윤광천(尹光天), 동년 12월 사감제술에 장원한 생원 유복명(柳復明) 등에게 전시에 곧장 응시하는 일에 대해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유여림 등 10인은 전례에 의거 이번 정유년 식년 문과 전시에 응시를 허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별견어사, 고만갑, 고처량, 정창선, 직부전시.

1051) 고처량(1688~1762):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명숙(明叔). 제주시 화북동(禾北洞) 출신. 부친은 고의찰(高義察). 1717년(숙종 43) 식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이조좌랑, 구례현감을 역임. 1733년(영조 9) 제주독운위유어사(濟州督運慰諭御史) 심성희(沈聖希)의 추천으로 봉상시판관이 되고, 이듬해 진해현감을 역임. 귀향하여 제주향교의 교수(敎授)로 활동.

1052) 정창선(1683~1746):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현보(顯甫). 제주도 구좌읍(舊左邑) 상도리(上道里) 출신. 부친은 정희량(鄭希良). 1717년(숙종 43) 식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고창현감, 옥구현감, 성균관전적, 교서관정자 등을 역임. 1744년(영조 20) 고성현감을 역임.

❖ 康熙 五十六年 丁酉 十二月 十三日 癸巳

○ 又啓曰, 德川郡守金鼎夏, 濟州判官鄭揀, 以善治善賑, 加資事, 達下矣. 雖已資窮, 俱未經準職, 何以爲之? 敢稟. 傳曰, 竝特爲加資.

❖ 숙종 43년(1717) 정유년 12월 13일(계사)

□ 제주판관(濟州判官) 정간(鄭揀)을 가자(加資)하는 일에 대한 이비(吏批)의 계

○ 또 아뢰기를, "덕천군수(德川郡守) 김정하(金鼎夏), 제주판관(濟州判官) 정간(鄭揀)이 잘 다스리고 진휼을 잘하여 가자(加資)하는 일을 왕세자께서 재가하였습니다. 비록 이미 자궁(資窮)[1053]이긴 하나 모두 아직 준직(準職)[1054]을 지내지 않았으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울러 특별히 가자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정간, 가자.

1053) 자궁(資窮): 조선시대 당하관(堂下官)으로서 제일 높은 품계에 오른 벼슬자리, 곧 정3품 통훈대부의 벼슬자리를 이르는 말. 계궁(階窮).

1054) 준직(準職): 당하관으로서 가장 높은 정3품의 관직.

❖ 康熙 五十六年 丁酉 十二月 十三日 癸巳

○ 以李健命爲大司憲, …… 德川郡守金鼎夏, 濟州判官鄭揀, 今加通政, 已上以善治善賑, 加資事, 承傳.

❖ 숙종 43년(1717) 정유년 12월 13일(계사)

□ 제주판관(濟州判官) 정간(鄭揀)을 가자(加資)함

○ 이건명(李健命)을 대사헌에 제수하였고, 〈중략〉 덕천군수(德川郡守) 김정하(金鼎夏), 제주판관(濟州判官) 정간(鄭揀)에게 지금 통정대부로 가자하였다. 이상은 잘 다스리고 진휼을 잘하여 가자하는 일이다. 임금의 명을 전달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정간, 가자.

❖ 康熙 五十六年 丁酉 十二月 二十二日 壬寅

○ 以李健命爲右參贊, …… 閔致龍爲濟州判官, …….

❖ 숙종 43년(1717) 정유년 12월 22일(임인)

□ 민치룡(閔致龍)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이건명(李健命)을 우참찬에, 〈중략〉 민치룡(閔致龍)[1055]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민치룡, 제주판관.

1055) 민치룡(1668~1746):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희서(羲瑞). 부친은 민몽석(閔夢錫). 1702년(숙종 28) 식년시 을과 급제. 사헌부장령을 역임. 제주판관 재임기간은 1718년(숙종 44) 6월~1720년(숙종 46) 4월.

1718年

❖ 康熙 五十七年 戊戌 一月 六日 乙卯

○ 都承旨趙道彬上書曰, 伏以臣於憲臣書中, 論斥該房承旨之事, 亦有不自安者, 新及第鄭敞選, 卽耽羅人, 而其文翰人地, 自是一島中佼佼者, 臣與注書趙鎭禧, 酬酢之際, 言其可合於假官, 日昨廳注書之差出也, 堂郎相議, 終至擬差, 而今臺臣, 斥以冒濫, 專責該房與堂后, 臣誠瞿然, 無以自解, 第念記注之任, 雖曰遴揀, 實假有別, 輕重不同, 從前絶島之人見差者, 非止一再, 而刊汰之論, 獨及於敞選, 問備之罰, 替加於同僚, 臣以當初與議之人, 何敢仍冒於職次乎? 玆敢露章自列, 伏乞邸下, 亟遞臣職, 仍治臣罪, 以謝臺議, 以安賤分, 不勝幸甚, 臣無任云云.【書答見上】

❖ **숙종 44년(1718) 무술년 1월 6일(을묘)**

□ **탐라인(耽羅人) 정창선(鄭敞選)을 가주서에 임명한 일로 탄핵 당했다고 교체를 청하는 조도빈(趙道彬)의 상서**

○ 도승지 조도빈(趙道彬)이 상서하여 말하기를, "삼가 신(臣)은 사헌부 신하의 글 속에 해당 승지를 논척(論斥)하는 일로 또한 편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새로 급제한 정창선(鄭敞選)은 곧 탐라인(耽羅人)으로 문장과 인품 및 문벌이 당연히 온 섬 중에 출중한 사람이어서 신이 주서(注書) 조진희(趙鎭禧)와 더불어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가관(假官)[1056]에 합당하다고 말하여 어제 승정원 주서로 임명하는 것을 (본 관아의) 당상관 및 낭관과 상의하여 마침내 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헌부의 신하가 함부로 결정하였다고 논척하여 해당 승지와 당후관만을 견책하니 신이 참으로 놀랍고 진실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기주관(記注官)의 임명은 비록 신중히 선택한다 하여도 실직과 가관의 구별이 있고 경중이 같지 않으며 종전에도 절도(絶島)의 사람을 임명한 게 한 두 번이 아닌데, 허물 있다고 배척하는 논의가 유독 정창선에게만 미치고 문비(問備)[1057]의 벌이 참람하게도 동료에게 더해지니 신이 당초부터 함께 논의했던 사람인데 어찌 감히 관직의 서열에 기대어 계속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상소를 올려 스스로의 죄를 나열하오니 삼가 바라건대 저하(邸下)께서는 신의 직책을 신속히 교체하고 이어서 신의 죄를 다스려 대관(臺官)의 논의에 답하고 미천한

1056) 가관(假官): 임시관직으로 권설직(權設職)이라고도 함. 정원 외에 추가로 임용하는 경우와 중요관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 다른 관직에 있는 자가 겸임하는 경우로 구분됨.

1057) 문비(問備): 죄가 있는 관원을 조사하고 신문하는 일. 죄상을 관원 명부에 기록하였다가 인사 사무에 반영하였는데, 이는 부과(附過)라고 함.

본분을 편안하게 해주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1058]"라고 하였다.【글로 답한 것이 앞에 보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탐라인, 정창선, 조도빈, 조진희.

1058) 신무임운운(臣無任云云): '신무임황송(臣無任惶悚)~신은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또는 '신무임운월(臣無任隕越)~신은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와 같이 '신무임(臣無任)'은 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또는 금할 길 없습니다와 같이 해석됨. 여기서 '운운(云云)'은 황송, 운월 등의 용어를 뜻함.

❖ 康熙 五十七年 戊戌 一月 七日 丙辰

○ 持平兪拓基達曰, 臣卽於詣臺之後, 得見都承旨趙道彬辭本, 盛稱鄭敞選之文翰人地, 而末復以實假有別, 爲言, 繼又伏見小報, 則至有見枳堂后假官, 宜乎稱冤之令, 臣於此誠不勝瞿然惶悚之至. 夫堂后爲任之勿論實假, 俱係淸選之意, 臣之書中, 已備言之矣. 從前絶島之人, 雖其人地文翰, 素稱錚錚, 亦必出身年久, 分隷成均, 然後, 間或有得差者, 而實未嘗間如敞選等之釋褐數朔, 未及分館, 遽然擬差, 無少特難者也. 今此下令, 固知出於不外疎遠之盛意, 而未知敞選等之人地文翰, 比前數輩, 優劣果如何也. 設令或有佼佼之譽, 稍待分館之後, 採取公議, 漸次擧論, 亦何所不可, 而顧必汲汲提擬於新榜多出才彦林立之日者, 抑獨何哉? 臣聞其時望記草上之後, 承宣中, 旣有顯言持難之人, 而禁直諸人, 亦多直斥其不似, 則物議之爲駭, 此亦可知, 臣之論列, 亦不欲其無端枳塞, 蓋出於稍示澄汰之意, 而知申, 旣稱其可合, 令旨, 又示以未安, 臣之妄言枳才, 使人稱冤之罪, 於是乎不可逭矣. 何敢一刻晏然於言議之地乎? 請令遞斥臣職. 答曰, 勿辭.

❖ 숙종 44년(1718) 무술년 1월 7일(병진)

□ 탐라인(耽羅人) 정창선(鄭敞選) 문제로 도승지 조도빈(趙道彬)과의 불협화음을 일으킨 연유를 들어 교체를 청하는 유척기(兪拓基)의 글

○ 지평 유척기(兪拓基)가 아뢰기를, "신(臣)이 대관(臺官)으로서 상소를 올린 후에 도승지 조도빈(趙道彬)의 사직을 청하는 글에서 '정창선(鄭敞選)의 문장과 인품 및 문벌이 뛰어나다고 칭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실직과 가관(假官)에 구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또 삼가 소보(小報)를 보니 당후(堂后)의 가관(假官)에 임명되지 못하여 원통하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세자의) 명령에 이르니 신은 이에 참으로 놀랍고 황송한 마음 이길 수 없습니다. 대저 당후(堂后)의 직임은 실직과 가관을 막론하고 모두 청환(淸宦)[1059]의 관리를 뽑는 뜻에 관계된다고 신의 글 속에 이미 갖추어 말했습니다. 종전에 절도(絶島)의 사람이 비록 그 인품과 문벌 및 문장이 본래 뛰어나다고 칭하며 또한 과거에 급제한[1060] 지 오래되어도 반드시 성균관에 소속된 연후에 간혹 천거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

1059) 청환(淸宦): 학식과 인품, 문장이 높아 선비들로부터 흠모를 받는 이들이 임명되는 벼슬로 규장각, 홍문관 등의 관직을 말함.

1060) 출신(出身): 문무과 또는 잡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나 처음 벼슬길에 나선 사람. 여기서는 과거에 급제했다는 뜻으로 쓰임.

만 실로 정창선 등과 같이 처음 관리가 된[1061] 지 수개월도 안 되어 분관(分館)[1062] 하지도 않고 갑자기 천거하는데 조금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처럼 내린 명령이 진실로 변방을 멀리하지 않으려는 두터운 뜻에서 나왔음을 알겠으나 정창선 등의 인품과 문벌 및 문장이 이전 여러 무리에 비해 우열이 과연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혹 뛰어난 영예가 있다 하더라도 차츰 분관을 기다린 뒤에 공론을 취하여 점차 거론하는 것 또한 어찌 불가한 바이며, 돌아보면 새로 급제한 사람 중 재능 있는 사람이 즐비할 날이 많이 나올 텐데 반드시 천거를 제기하는데 급급한 것은 유독 어째서입니까? 신이 듣기에 그 당시 망기(望記)[1063] 초안을 올린 뒤에 승선 중에는 이미 드러내놓고 미루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궁중에 근무하는 여러 사람 또한 많이들 적합하지 않다고 그 자리에서 배척하였다고 한 즉 비난의 논의가 놀라웠던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잘못 또한 아무런 사유 없이 벼슬길을 막고자 한 것은 아니고 대개 조금이라도 무능한 관리는 정리하려는 뜻을 보이는 데서 나온 것인데, 도승지가 이미 합당하다고 말했고, 세자의 말씀 또한 온당치 않다고 보이시니 신의 망언으로 재능을 막고 사람으로 하여금 억울하다는 얘기를 들은 죄는 이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 감히 잠깐이라도 언관(言官)의 지위에서 태연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신의 직책을 교체하여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유척기, 조도빈, 정창선.

1061) 석갈(釋褐): 평민의 옷을 벗고 관복(官服)으로 갈아입는다는 뜻으로 처음으로 관리가 됨을 이름.

1062) 분관(分館): 새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의 삼관(三館)에 배속시켜 실무를 익히게 하는 일.

1063) 망기(望記): 그 직임에 합당한 자 3명을 적은 문서. 망단자(望單子).

❖ 康熙 五十七年 戊戌 一月 七日 丙辰

○ 令于李德英曰, 昨觀都承旨趙道彬上書, 鄭敞選, 耽羅人, 而文翰人地, 自是一島中佼佼者云. 果如書辭, 則見枳堂后.【二行缺】

❖ 숙종 44년(1718) 무술년 1월 7일(병진)

□ 탐라인(耽羅人) 정창선(鄭敞選)에 대한 세자(世子)[1064]의 명령[1065]

○ 이덕영(李德英)에게 명령내리기를, "어제 도승지 조도빈(趙道彬)의 상서를 보니 정창선(鄭敞選)은 탐라인(耽羅人)인데 문장과 인품 및 문벌이 뛰어난 사람으로 당연히 온 섬 중에서 출중한 사람이라고 한다. 과연 글의 사연 같으면 당후(堂后)[1066]에 막힌 것을 보니【2행이 빠짐】[1067]"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정창선, 탐라인.

1064) 《숙종실록》 권61, 1718년(숙종 44) 1월 7일에 동일 내용이 실려 있는데, 세자(世子)가 내린 명령으로 되어 있음.

1065) 《숙종실록》 권61, 1718년(숙종 44) 1월 7일에도 동일 내용이 실려 있음.

1066) 당후(堂后): 당후관(堂后官)의 약칭. 승정원의 주서(注書)를 말함.

1067) 【2행이 빠짐】: 《숙종실록》(권 61, 숙종 44년 1월 7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음. "… 則見枳堂后假官, 宜乎稱冤. 採取公議, 勿復枳礙, 無使絶島人, 有抑鬱之歎." 蓋敞選之見擬堂后, 道彬與聞兪拓基書後, 道彬於引咎之書, 因言其冤, 故有此命. 拓基以此引避, 處置出仕. 이상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음. "…그가 당후(堂后)의 가관(假官)으로 임명되지 못한 것을 원통하다고 일컫는 것이 마땅하다. 공의(公議)를 채택할 것이요 다시 구애받는 것이 없게 함으로써 절도(絶島)의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하다는 탄식이 없도록 하라." 대개 정창선이 당후관에 의망(擬望) 되었을 때 조도빈이 유척기(兪拓基)의 상서에 함께 아뢴 후에 조도빈이 스스로 책임지는 글을 올리면서 그가 원통하다는 것을 말하였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있었음. 유척기가 이로써 책임지고 사직을 청했는데, 없던 일로 하고 관직에 나오도록 함.

❖ 康熙 五十七年 戊戌 一月 七日 丙辰

○ 都承旨趙道彬書曰, 伏以臣於憲臣書中, 論斥該房承旨之事, 亦有不自安者, 新及第鄭敞選, 卽耽羅人, 而其文翰人地, 自是一島中佼佼者, 臣與注書趙鎭禧, 酬酢之際, 言其可合於假官, 日昨廳注書之差出也. 堂郎相議, 終至擬差, 卽今臺臣, 斥以冒濫, 專責該房與堂后, 臣誠瞿然, 無以自解, 第念記注之任, 雖曰遴揀, 實假有別, 輕重不同, 從前絶島人之見差者, 非止一再, 而刊汰之論, 獨及於敞選, 問備之罰, 替加於同僚, 臣以當初與議之人, 何敢晏然仍冒於職次乎? 玆敢露章自列, 伏乞邸下, 亟遞臣職, 仍治臣罪, 以謝臺言, 以安賤分, 不勝幸甚, 臣無任云云. 答曰, 覽書具悉. 卿其勿辭察職.

❖ **숙종 44년(1718) 무술년 1월 7일(병진)**

□ **탐라인(耽羅人) 정창선(鄭敞選)을 가주서에 임명한 일로 탄핵 당했다고 교체를 청하는 조도빈(趙道彬)의 상서**

○ 도승지 조도빈(趙道彬)이 상서하여 말하기를, "삼가 신(臣)은 사헌부 신하의 글 속에 해당 승지를 논척(論斥)하는 일로 또한 편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새로 급제한 정창선(鄭敞選)은 곧 탐라인(耽羅人)으로 문장과 인품 및 문벌이 당연히 온 섬 중에 출중한 사람이어서 신이 주서(注書) 조진희(趙鎭禧)와 더불어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가관(假官)에 합당하다고 말하여 어제 승정원 주서로 임명하였습니다. (본 관아의) 당상관 및 낭관과 상의하여 마침내 천거하였으나, 지금 사헌부의 신하가 함부로 결정하였다고 논척하여 해당 승지와 당후관만을 견책하니 신이 참으로 놀랍고 진실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기주관(記注官)의 임명은 비록 신중히 선택한다 하여도 실직과 가관의 구별이 있고 경중이 같지 않으며 종전에도 절도(絶島)의 사람을 임명한 게 한 두 번이 아닌데, 허물 있다고 배척하는 논의가 유독 정창선에게만 미치고 문비(問備)[1068]의 벌이 참람하게도 동료에게 더해지니 신이 당초부터 함께 논의했던 사람인데 어찌 감히 편안하게 관직의 서열에 기대어 계속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상소를 올려 스스로의 죄를 나열하오니 삼가 바라건대 저하(邸下)께서는 신의 직책을 신속히 교체하고 이어서 신의 죄를 다스려 대관(臺官)의 논의에 답하고 미천한

1068) 문비(問備): 죄가 있는 관원을 조사하고 신문하는 일. 죄상을 관원 명부에 기록하였다가 인사 사무에 반영하였는데, 이는 부과(附過)라고 함.

본분을 편안하게 해주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서를 보고 잘 알았다.[1069] 경(卿)은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잘 보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탐라인, 정창선, 조도빈, 조진희.

1069) 남서구실(覽書具悉): 세자가 대리청정 할 때 신하가 올린 상서문을 읽었음을 표시하는 용어. 왕이 신하의 상소문을 잘 읽었음을 표시할 때는 성소구실(省疏具悉)이라 함. 《영조실록》 권126, 1775년(영조 51) 12월 18일 기사에 의하면 "왕세손이 청정할 때에 … 계목(啓目)은 신목(申目)이라 하고, 장계(狀啓)는 장달(狀達), 상소(上疏)는 상서(上書), 전왈윤(傳曰允)은 영왈의(令曰依), 성소구실(省疏具悉)은 남서구실(覽書具悉), 교지(敎旨)는 휘지(徽旨), 전(傳)은 영(令), 입시(入侍)는 입대(入對), 인견(引見)은 인접(引接)이라 고쳐 칭한다."라고 되어 있음.

❖ 康熙 五十七年 戊戌 一月 七日 丙辰

○ 令于李德英曰, 昨觀都承旨趙道彬上書, 鄭敞選, 耽羅人, 而文翰人地, 自是一島中佼佼者云, 果如書辭, 則見枳堂后.【二行缺】

❖ 숙종 44년(1718) 무술년 1월 7일(병진)

□ 탐라인(耽羅人) 정창선(鄭敞選)에 대한 세자의 명령

○ 이덕영(李德英)에게 명령내리기를, "어제 도승지 조도빈(趙道彬)의 상서를 보니 정창선(鄭敞選)은 탐라인(耽羅人)인데 문장이 뛰어난 사람으로 당연히 온 섬 중에서 출중한 사람이라고 한다. 과연 글 속의 언사 같은 것은 지당후(枳堂后) 보니【2행이 빠짐】"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정창선, 탐라인.

❖ 康熙 五十七年 戊戌 三月 四日 癸丑

○ 下直, 濟州判官閔致龍, 朱峴僉使尙維周.

❖ 숙종 44년(1718) 무술년 3월 4일(계축)

□ 제주판관(濟州判官) 민치룡(閔致龍) 등이 하직함

○ 제주판관(濟州判官) 민치룡(閔致龍), 주현첨사(朱峴僉使) 상유주(尙維周)가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민치룡, 하직.

❖ 康熙 五十七年 戊戌 三月 八日 丁巳

○ 下直, 旌義縣監宋來柏.

❖ 숙종 44년(1718) 무술년 3월 8일(정사)

□ 정의현감(旌義縣監) 송래백(宋來栢)[1070]이 하직함

○ 정의현감(旌義縣監) 송래백(宋來栢)[1071]이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정의현감, 송래백, 하직.

1070) 국편위 탈초본에는 송래백(宋來柏)으로 되어 있음. 방목 및 실록에는 송래백(宋來栢)으로 기록되어 있어 역자가 바로 잡음.

1071) 송래백(1659~?):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무경(茂卿). 부친은 송진현(宋震賢). 1691년(숙종 17) 증광시 문과 장원급제.

❖ 康熙 五十七年 戊戌 三月 十八日 丁卯

○ 正言成震齡達曰, …… 李翊漢之耽羅治績, 隔海傳聞, 臣未得詳, 而至於湍邑, 與臣鄕莊相近, 其不治之狀, 臣所稔聞. 詞訟立落, 多出於下吏之低昂, 田結軍政, 半歸該色之盜食, 民間云云. 雖未必盡爲取信, 要之, 昏劣之目, 則斷不可辭也. 廉簡之稱, 人不欲傷人之美名, 而剸理之才, 臣終不能妄許於翊漢也. 臣之昨日停達, 蓋出於不爲已甚之意而已, 豈以其人, 眞有可恕而然哉? 至於殿中, 素稱寒微, 又以雜術行世, 而職階於天文敎授, 全無參下履歷, 則臺監之授, 決是濫叨. 齋郎鄙瑣, 前後非一, 僞造手決, 幾至對吏之境, 假成藥帖, 傳播衆人之口, 又嘗隨父嶺州, 爭賄物於五十金百金之間, 此特其鄙瑣之一事, 而臣之達辭中, 微發其端, 不敢索言者也. 重臣之稱冤, 無奈相厚之間, 迫於顔情而然耶? 且其書中, 頗自信其得人, 而欲使言者, 不得議其可否, 臣竊疑怪也. 然臣旣被重臣之斥, 累承未安之敎, 臣何敢强執己見, 一向仍冒於臺地乎? 請令遞斥臣職.

❖ **숙종 44년(1718) 무술년 3월 18일(정묘)**

□ **이익한(李翊漢)을 탄핵한 것은 정당하다고 항변하고 그로 인해 배척을 받았으니 교체해 줄 것을 청하는 정언 성진령(成震齡)의 아룀**

○ 정언(正言) 성진령(成震齡)이 진달하여 아뢰기를, "〈상략〉 이익한(李翊漢)이 탐라(耽羅)에서의 치적은 먼 바다에서 전해 들어 신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읍(湍邑, 장단)에 대해서는 신의 시골집과 서로 가까워 그 다스려지지 못한 상황을 신이 익히 들은 바, 송사(訟事)의 결정이 다수 하리(下吏)의 처리에서 나오고 전결(田結)과 군정(軍政)의 절반은 해당 아전이 몰래 훔쳐가는 데 돌아간다고 민간에서 운운하고 있습니다. 비록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둡고 미숙한 안목은 결단코 핑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청렴하고 대쪽 같다는 평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미명(美名)인데, 다스리는 재주에 대해서만은 신은 끝내 익한(翊漢)을 망령되이 허여할 수 없습니다. 신이 어제 아룀을 멈춘 것은 대개 정도에 지나치지 않으려는 뜻에서 나왔을 뿐이지, 어찌 그 사람이 진실로 용서할만해서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대궐 안에서는 평소 한미(寒微)하다 불리면서 다시 잡술(雜術)로 행세하여 직계(職階)가 천문교수(天文敎授)로 참하(參下)[1072]의 이력이 전무한데도 대감(臺監)[1073]에 제수됐으니

1072) 참하(參下): 조회(朝會)에 참여하지 못하는 정7품 이하의 관직.
1073) 대감(臺監): 사헌부 감찰(정6품)의 이칭.

이는 결단코 외람되이 벼슬을 탐낸 것입니다. 재랑(齋郞)[1074]으로 비루하고 천하여 앞뒤로 한 결 같은 바가 없었고, 수결(手決)을 위조하여 거의 아전과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며, 약첩(藥帖)을 거짓으로 꾸민 일이 여러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찍이 아버지를 따라 영주(嶺州, 영남)로 갔을 때, 50금이나 100금이나 하며 뇌물을 다툰 적도 있습니다. 이는 다만 그 비루하고 자잘했던 하나의 일이며, 신의 진달한 언사 중에 그 단서를 은미하게 드러냈으나 감히 말을 다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중신(重臣)이 원통하다 하니 어쩔 수 없이 서로 친밀한 사이라 쌓인 정 때문에 박절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 글 중에 자못 적절한 사람이라 자신하였는데, 말하고자 한 바는 그 가부를 논의할 수 없어 신이 몰래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이미 중신의 배척을 받았고 여러 번 편치 않다는 교지를 받았으니, 신이 어찌 감히 이미 보았다고 고집하며 계속 대신(臺臣)의 지위를 무릅쓰겠습니까? 청컨대 신의 직책을 교체하여 내치라고 명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이익한, 성진령, 탐라, 단읍, 영주, 천문교수, 재랑.

1074) 재랑(齋郞): 봉상시(奉常寺)와 관습도감(慣習都監)에서 임시로 연주 활동을 맡았던 어린 소년. 원래는 이조에 소속되었던 20세 미만의 소년들로 모두 양인 출신이었으며, 이들은 제례 의식 때 등가(登歌)의 노래와 문무(文舞)를 담당함.

❖ 康熙 五十七年 戊戌 六月 二十一日 戊戌

○ 又所啓, 此亦慶尙監司李墀狀達也. 備陳本道民事切急之狀, 且以爲甲午年移送湖南穀物四萬七千八百石內, 一萬四千二百十石零, 濟州移轉及該道飢民白給計除外, 尙爲三萬三千五百八十八石七斗零, 使之趁今秋未寒前, 準數還報, 而若或違拒朝令, 不卽擧行, 入達論罪之意, 各別申飭事, 令廟堂稟處云矣. …… 上曰, 今此折半還報之令, 其奉行與否, 亦未可必, 而各別分付, 可也.【以上備局謄錄】

❖ 숙종 44년(1718) 무술년 6월 21일(무술)

□ 경상감사가 호남곡물의 환보(還報) 등에 대해 아룀

○ 또 아뢰기를, "이 역시 경상감사(慶尙監司) 이집(李墀)의 장달(狀達)입니다. 본도 백성들 일의 절박하고 급한 상황을 갖추어 진달했는데, 또한 갑오년에 이송한 호남곡물 47,800석 중 14,210석 남짓을 제주(濟州)로 이전하고 해당 도(道)의 기민들에게 거저 줄 계획을 제외하여도 아직도 33,588석 7두 남짓이 되어 이것을 올 가을 추워지기 전까지 수에 맞춰 되돌려 갚는다고 합니다. 만약 혹 조정의 명령을 위반하여 즉시 거행치 못하면 논죄할 뜻을 아뢰고 각별히 타일러 경계할 일에 대해 묘당(廟堂)에 명해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중략〉 상이 말하기를, "지금 이번 돌려주는 것을 절반으로 깎아주라는 명령에 대해 그 시행 여부 또한 반드시 그러겠다고 할 수 없으나, 각별히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경상감사, 이집, 호남, 제주, 환보.

❖ 康熙 五十七年 戊戌 十二月 二十一日 甲子

○ 掌令宋思胤達曰, 臣以寧邊府使張漢相罷職不敍事, 有所論列, 累次爭執, 而徽聽愈邈, 尙靳准許, 今於答辭中, 至以監賑御史別單道臣殿最題目觀之, 決知風聞爽實爲敎, 臣竊不勝瞿然惶惑之至. 漢相貪汚濫猾之狀, 臣之所聞, 不啻明的, 今不必更論, 而人之所見, 各自不同, 豈可以御史·道臣之言, 謂有治績之可稱, 而至歸臣言於全然爽實之科, 自前重被臺劾之人, 或不無見褒而居最者, 未聞以一時之偶然褒稱, 而反謂臺言之不信也. 雖以漢相前日之事言之, 其在南閫也. 以多貿耽羅駿馬, 勒買管下諸驛及嬖妾受賂等事, 重被臺劾, 終至遞改, 其貪饕不法之狀, 自是本來伎倆, 而邸下至擧繡衣道臣之言, 以爲牢拒之地, 臣竊恐离明於此, 有所未盡照察而然也. 臣論一貪猾之武夫, 遽承未安之敎, 此莫非臣辭拙誠淺, 不能見信之致, 將何顔面, 仍冒於職次乎? 請令遞斥臣職. 答曰, 勿辭. 退待物論.

❖ 숙종 44년(1718) 무술년 12월 21일(갑자)

□ 장한상(張漢相)에 대해 논열(論列)한 것과 관련하여 왕세자의 배척을 받은 것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는 송사윤(宋思胤)의 아룀

○ 장령 송사윤(宋思胤)이 진달하기를, "신이 영변부사(寧邊府使) 장한상(張漢相)을 파직하여 서용치 않는 일로 주장한 바가 있어 누차 논쟁했으나, 여태 허락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답사(答辭) 중 감진어사(監賑御史) 별단(別單)과 관찰사 전최(殿最)의 제목을 보기에 이르러, 풍문이 사실에 어긋난다고 하교하셨음을 분별해 알겠습니다만, 신은 적이 매우 놀랍고 당혹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장한상의 탐욕스럽고 마음이 바르지 못한 정황은 신이 들은 바 명백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반드시 다시 논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바가 각자 다르겠지만, 어찌 어사(御使)와 관찰사의 말 때문에 치적(治積)이 칭찬할 만 한 게 있다고 말하며 신의 말은 모조리 사실과 어긋나는 데로 돌아가 버리고, 전부터 거듭 대간의 탄핵을 받은 이가 혹 표창을 받아 최우수의 관직 평가를 받은 경우가 없진 않으나, 한 때 우연한 칭찬으로써 도리어 대간의 말이 믿음직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전일 장한상의 일로 말씀드리자면, 그가 남쪽 지방의 수령으로 있을 때, 탐라(耽羅)의 준마를 자주 거래하여 관할 여러 역에 억지로 사게 하거나 애첩이 뇌물을 받는 등의 일로 인해 거듭 대간의 탄핵을 받아 끝내 교체되기에 이르렀으니 그 재물을 탐내고 불법을 저지른 정황은 진실로

본래의 기량(技倆)입니다. 저하(邸下)께서 어사나 관찰사의 말을 들어 굳이 거절하신다면, 신은 적이 이에 대해서는 총명한 임금께서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그런 바가 있다고 봅니다. 신이 일개 탐욕스럽고 마음이 바르지 못한 무부(武夫)를 논열(論列)했는데, 갑자기 편치 못하다는 교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의 언사가 졸렬하고 정성이 얕아서 신뢰받을 수 없는 지경이니, 장차 무슨 낯짝으로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신의 직책을 교체하고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물러나 세상의 평판을 기다려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송사윤, 장한상, 영변부사, 전최, 탐라, 준마.

❖ 康熙 五十七年 戊戌 十二月 二十五日 戊辰

○ 有政. 吏批, 以安汝恒爲桃源察訪, …… 金世華爲大靜縣監. …….

❖ 숙종 44년(1718) 무술년 12월 25일(무진)

□ 김세화(金世華)를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안여항(安汝恒)을 도원찰방(桃源察訪)에, 〈중략〉 김세화(金世華)[1075]를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김세화, 대정현감, 이비.

1075) 김세화(1684~?): 본관은 김해, 자는 중보(重輔). 부친은 행충좌위부사과(行忠佐衛副司果) 김철명(金哲明). 1714년(숙종 40) 31세로 증광시 무과 장원급제. 방목에 김세화(金世華)가 3명 등장하는데, 1718년(숙종 44) 기준으로 1명은 나이가 80세가 넘고, 1명은 훨씬 뒤에야 과거에 급제함. 따라서 이때 대정현감에 부임한 이는 자가 중보(重輔)인 김세화(金世華)로 추정. 한편 1719년(숙종 45) 격쟁(擊錚)했던 김만일(金萬鎰)의 후손 김세화는 다른 인물임. 당시 대정현감으로 재임했던 이가 격쟁할 수는 없음.

1719年

❖ 康熙 五十八年 己亥 二月 七日 庚戌

○ 下直, 大靜縣監金世華, 雲寵萬戶申漢昌.

❖ 숙종 45년(1719) 기해년 2월 7일(경술)

□ 대정현감(大靜縣監) 김세화(金世華) 등이 하직함

○ 대정현감(大靜縣監) 김세화(金世華), 운총만호(雲寵萬戶) 신한창(申漢昌)이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김세화, 하직.

❖ 康熙 五十八年 己亥 二月 八日 辛亥

○ 申時, 王世子坐尊賢閣, 諸承旨持公事入對. 左承旨申思喆, 右副承旨權熀, 同副承旨趙榮福, 文學鄭錫五, 假注書金始燁, 記事官朴師聖. 申思喆讀咸鏡監司狀達, 端川郡人漂風溆死事. 令曰, 令本道恤典擧行. …… 又讀濟州牧使狀達, 讀畢後起伏曰, 此以大靜縣監朴以文仍任事狀達矣, 新除授縣監, 旣已辭朝赴任, 此狀達還下送, 何如? 令曰, 依. …… 時日色已暮, 東宮命小宦, 開南窓通明. 公事讀畢後, 趙榮福起伏曰, 臨筵已久, 日勢且暮, 判付則退出後從容書入乎? 令曰, 唯. 遂以次退出.

❖ 숙종 45년(1719) 기해년 2월 8일(신해)

□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이문(朴以文)의 연임 요청에 대해 논의함

○ 신시(오후 3~5시), 왕세자가 존현각(尊賢閣)에 좌정하고 도승지가 공무로 입대하였다. 좌승지 신사철(申思喆), 우부승지 권엽(權熀), 동부승지 조영복(趙榮福), 문학(文學) 정석오(鄭錫五), 가주서 김시엽(金始燁), 기사관 박사성(朴師聖)이 동석하였다. 신사철이 함경감사(咸鏡監司)의 장계를 읽었는데, 단천군(端川郡) 사람이 표류하다 익사한 일이다. 〈중략〉 또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를 읽었는데, 읽기를 마친 후 일어났다 다시 엎드려 말하기를, "이는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이문(朴以文)을 그대로 연임하는 일로써 아뢴 것인데, 새로 제수된 현감이 이미 하직 인사하고 임지로 떠났는데 이 장계는 되돌려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명령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때에 햇빛이 이미 저물자 동궁(東宮)이 어린 환관에게 명하여 남쪽 창문을 열고 밝게 하였다. 공무를 다 읽고 난 후 조영복이 일어났다 다시 엎드려 말하기를, "경연에 임한지 이미 오래되었고 날이 또 저물었으니 판부(判付)[1076]는 물러난 후 천천히 글로 써서 들일까요?"라고 하였다. 명령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차례로 물러나갔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대정현감, 박이문.

1076) 판부(判付): 신하들이 아뢴 사안에 대한 임금의 재가 사항.

❖ 康熙 五十八年 己亥 二月 二十日 癸亥

○ 又所達, 濟州農形, 前年亦不免凶歉, 還上新分給外, 舊未捧則停捧, 各寺奴婢身貢二斗內一斗, 請爲減除事, 牧使狀達, 而第此狀, 昨年十月成貼, 今始入來, 殊不知中間緣何遲滯, 而各樣捧納之事, 今已歲飜, 則更無可論矣. 然海外形勢, 有難遙度, 依此狀達施行之意, 分付, 何如? 令曰, 依爲之.

❖ 숙종 45년(1719) 기해년 2월 20일(계해)

□ 제주(濟州)의 흉년이 연이어 각종 납세 및 노비 신공(身貢) 감면을 청하는 제주 목사의 장계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는 이건명의 건의

○ (우의정 이건명(李健命)이) 또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농사 형편이 지난해 역시 흉년을 면치 못해 환곡(還穀) 새로 나누어 준 것 외에 이전에 납세하지 못한 것은 납세를 중지하고 각 관아 노비 신공(身貢) 2두(斗) 중 1두를 덜어서 없애줄 것을 목사의 장계로 아뢰었는데, 다만 이 장계는 작년 10월에 관인을 찍어 보낸 문서로 이제 비로소 들어왔으며 특히 중간에 어떤 연유로 지체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갖가지 물건을 바쳐 올릴 일은 지금 이미 해가 바뀌었은즉 다시 논할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 밖 형세를 미루어 헤아리기 어려우니 이 장계로 아뢴 것에 따라 시행할 뜻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명령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환상, 신공.

❖ 康熙 五十八年 己亥 三月 二日 甲戌(乙亥)

○ 以李廷弼爲兵曹佐郎, …… 金台壽爲濟州牧使, …….

❖ 숙종 45년(1719) 기해년 3월 2일(갑술/을해)

□ 김태수(金台壽)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정필(李廷弼)을 병조좌랑에, 〈중략〉 김태수(金台壽)[1077]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김태수, 제주목사.

1077) 김태수(1660~?):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거산(巨山), 부친은 김만익(金萬翼). 1699년(숙종 25)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 사헌부 지평, 장령을 역임. 제주목사로는 부임하지 않음.

❖ 康熙 五十八年 己亥 三月 三日 乙亥(丙子)

○ 韓重熙讀禮曹草記, 濟州牧使鄭碩賓身死, 弔祭致賻, 依定奪擧行.

❖ 숙종 45년(1719) 기해년 3월 3일(을해/병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석빈(鄭碩賓)의 조제(弔祭)와 치부(致賻)를 거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한중희(韓重熙)가 예조 초기(草記)를 읽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정석빈(鄭碩賓)의 죽음에 조제(弔祭)와 치부(致賻)는 임금의 재가에 의거 거행한다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정석빈, 조제, 치부.

❖ 康熙 五十八年 己亥 三月 十六日 己丑

○ 讀濟州牧使所達, 境內染病, 方痛死亡相繼事, 達下禮曹.

❖ 숙종 45년(1719) 기해년 3월 16일(기축)

□ 제주목(濟州牧)에 염병(染病)이 극성하여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논의함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진술한 바를 읽었다. 경내에 전염병으로 고통과 사망이 계속 이어지는 일이다. 왕세자가 재가하여 예조에 보냈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염병.

❖ 康熙 五十八年 己亥 四月 三日 乙巳

○ 吏曹政事, 刑曹參判兪命弘, …… 濟州牧使柳憲章, …….

❖ 숙종 45년(1719) 기해년 4월 3일(을사)

□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유헌장(柳憲章)을 제수함

○ 이조 정사에 형조참판에 유명홍(兪命弘),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유헌장(柳憲章)[1078]을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유헌장.

1078) 유헌장(1658~1721):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자유(子維). 부친은 장령 유성삼(柳星三), 모친은 이석신(李碩臣)의 딸. 1681년(숙종 7) 통덕랑으로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1690년 홍문록(弘文錄)에 이름을 올림. 이후 중앙에서는 수찬, 교리, 형조참의를 역임. 외직으로는 종성·강릉의 부사를 지냄. 제주목사로는 부임하지 않음.

❖ 康熙 五十八年 己亥 四月 三日 乙巳

○ 吏批, 以兪命弘爲刑曹參判, …… 柳憲章爲濟州牧使, …….

❖ 숙종 45년(1719) 기해년 4월 3일(을사)

□ 유헌장(柳憲章)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유명홍(兪命弘)을 형조참판에, 〈중략〉 유헌장(柳憲章)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유헌장, 제주목사.

❖ 康熙 五十八年 己亥 四月 二十二日 甲子

○ 吏曹, 正言金礪, …… 濟州牧使鄭東後, …….

❖ 숙종 45년(1719) 기해년 4월 22일(갑자)

□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정동후(鄭東後)를 제수함

○ 이조에서 정언에 김려(金礪),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정동후(鄭東後)[1079]를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정동후.

1079) 정동후(1659~1735):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후경(厚卿), 호는 송애(松崖). 좌찬성 정갑손(鄭甲孫)의 후손으로, 부친은 정여탁(鄭汝倬), 모친은 기수백(奇秀栢)의 딸. 45세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사릉참봉(思陵參奉)·군자감봉사를 지낸 뒤 1705년(숙종 31) 식년문과에 장원급제, 정언·장령·제주목사 등을 역임.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시폐개혁(時弊改革)에 대한 상소를 거듭 올렸다. 제주목사 재임기간은 1719년(숙종 45) 6월~1720년(숙종 46) 7월.

❖ 康熙 五十八年 己亥 四月 二十二日 甲子

○【疊】, 吏批, 以金礪爲正言, …… 鄭東後爲濟州牧使, 閔鎭厚爲司譯提調.

❖ 숙종 45년(1719) 기해년 4월 22일(갑자)

□ 정동후(鄭東後)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중첩 기록】 이비(吏批)에 김려(金礪)를 정언에, 〈중략〉 정동후(鄭東後)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민진후(閔鎭厚)를 사역원제조에 제수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정동후, 제주목사.

❖ 康熙 五十八年 己亥 六月 七日 戊申

○ 藥房入診時, 提調閔鎭遠所啓, 頃年濟州, 連値慘凶, 朝家別爲軫念, 船粟往哺者, 幾至二十萬石, 京廳及湖南穀物, 蕩竭無餘, 後或逢凶, 以何穀而救活耶? 事必預爲區劃, 然後可無臨急狼狽之患, 聞曾經濟州守令者之言, 則其地錢貴, 若備置四五萬兩錢, 凶年使本州民人, 以此錢, 或貿穀或貿魚藿, 出陸轉販, 則不勞朝家之軫念, 而自可全活, 秋後還捧其錢, 則亦可備日後賑資云. 此言誠然, 而數萬兩錢, 亦無出處, 自前有鑄錢之議, 而爲慮奸弊之難杜, 持難未果矣. 濟州僻在絶島, 有異京衙門, 防奸之道, 似勝於他處, 只令牧使, 親率解事軍官監鑄, 而自朝家隨便顧助其物力, 則庶成矣. 令廟堂稟處, 何如? 上曰, 鑄錢之說似好, 令廟堂稟處.

❖ 숙종 45년(1719) 기해년 6월 7일(무신)

□ 제주(濟州)의 흉년에 대비, 구휼할 방도를 제시하는 민진원(閔鎭遠)의 건의[1080]

○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할 때 제조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근년 제주(濟州)에 연이어 참혹한 흉년을 당해 조정에서 특별히 근심하며 배에 곡식을 실어 가서 먹인 것이 거의 20만 석(石)에 이르니, 경청(京廳)과 호남(湖南)의 곡물을 다 써버려 남은 게 없어서 이후에 혹 흉년이 든다면 무슨 곡식으로 구제하여 살리겠습니까? 일은 반드시 미리 대책을 세운 연후라야 위급함을 당해 낭패하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일찍이 제주(濟州) 수령을 지낸 자의 말을 들으니 그 땅에서는 돈이 귀하여 만약 4~5만 냥(兩)의 돈을 비축하여 두었다가 흉년에는 본주(本州) 백성들로 하여금 이 돈으로 혹 곡식을 사거나 혹 해산물을 사서 육지에 나가 팔게 하면 조정의 근심을 살 일이 없고 스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며, 추수 후에 그 돈을 거두어들이면 또한 훗날의 진휼 자금으로 비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진실로 그러한데, 수만 냥의 돈 또한 나올 곳이 없어서 예부터 돈을 주조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간사한 폐단을 막기 어렵다고 염려하여 미루기만 하고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제주(濟州)는 궁벽한 절도(絶島)에 있어서 서울의 관아와 다르니 간사한 짓을 막는 방도가 다른 곳보다는 낫습니다. 단지 목사에게 친히 사리에 밝은 군관(軍官)을 데리고 주조를 감독하게 하고 조정에서는 편의에 따라 그 물력을 돌보며 도와주면 거의 이룰 수 있습니다. 묘당(廟堂)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돈을 주조하

1080) 《숙종실록》 권63, 1719년(숙종 45) 6월 7일에도 동일 내용이 실려 있음.

자는 말은 좋은 듯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민진원, 흉년, 호남, 경청(京廳), 주전(鑄錢).

❖ 康熙 五十八年 己亥 六月 十八日 己未

○ 讀江華留守沈宅賢狀達, 本府軍餉米一千石, 濟州凶年時入送代米, 當使賑廳還報, 而尙不擧行. 分付賑廳, 從速劃送事. 達下.

❖ 숙종 45년(1719) 기해년 6월 18일(기미)

□ 강화부(江華府)에서 제주(濟州)의 흉년 때에 들여보낸 군향미(軍餉米)를 돌려받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강화유수 심택현(沈宅賢)의 장계로 알린 바를 읽었다. 본부의 군량미 1,000석을 제주(濟州) 흉년 때 들여보낸데 대한 대미(代米)를 마땅히 진휼청에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거행치 않고 있어 진휼청에 분부하여 속히 지급하여 보내도록 할 일입니다. 왕세자가 재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강화유수, 심택현, 제주, 흉년.

❖ 康熙 五十八年 己亥 六月 二十五日 丙寅

○ 大臣·備局堂上入對時, 右議政李健命所達, 江華留守沈宅賢狀達, 甲午年全羅道癸巳田稅, 以軍餉米二萬三千石相換京運後, 其代米令本道輸納本府, 而一千石則丁酉年賙賑後, 入送濟州, 令賑廳還報矣. 今至三年, 賑廳終無劃送之事, 有此狀請矣. 莫重軍餉, 貸用後久不還償, 殊極未安, 分付賑廳劃給, 何如? 令曰, 依爲之.

❖ 숙종 45년(1719) 기해년 6월 25일(병인)

□ 강화도(江華道)에서 제주(濟州)에 들여보낸 군량미를 진휼청에서 갚지 않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대신과 비변사 당상이 입대(入對)[1081]할 때, 우의정 이건명(李健命)이 아뢰기를, "강화유수(江華留守) 심택현(沈宅賢)이 장계로 아뢴 바, '갑오년(1714, 숙종 40)에 전라도 계사년(1713)의 전세는 군량미 23,000석과 서로 맞바꿔 서울로 운송한 후, 공물 대신 바치는 쌀을 전라도에서 강화부로 옮겨 바치도록 하였는데, 1,000석은 정유년(1717, 숙종 43) 진휼 후에 제주(濟州)로 들여보내 진휼청에서 돌려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3년이 되었지만 진휼청이 끝내 보내지 않은 일'로 이 장계를 올려 청하였습니다. 막중한 군량을 빌려 사용한 후 오래도록 되갚지 않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으니 진휼청에 보내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명령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이건명, 강화유수, 심택현, 전라도, 제주, 진휼청.

1081) 입대(入對): 궁궐에 들어가 임금을 뵙고 자문에 응함. 여기서는 임금이 아닌 세자와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임. 《숙종실록》 권63, 1719년(숙종 45) 6월 25일에 의하면,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접견한 인물이 '세자'라고 되어 있음.

❖ 康熙 五十八年 己亥 六月 二十五日 丙寅

○【疊】. 又達曰, 此乃江華留守沈宅賢狀達也. 甲子年全羅道癸巳田稅, 以本府軍餉二萬三千石相換京運後, 其代米令本道輸納本府, 而一千石則丁酉年賙賑次, 入送濟州, 其代令賑廳推移還報矣. 今至三年, 賑廳終無劃送之事, 故有此狀請矣. 江都軍餉, 事體重大, 貸用之後, 久不還償, 殊極未安, 一千石元數不多, 分付賑廳. 令曰, 依爲之.【出擧條】

❖ 숙종 45년(1719) 기해년 6월 25일(병인)

□ 강화도(江華道)에서 제주(濟州)에 들여보낸 군량미를 진휼청에서 갚지 않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중첩 기록】 또 아뢰기를, "이것은 강화유수(江華留守) 심택현(沈宅賢)이 장계로 아뢴 것입니다. 갑오년(1714, 숙종 40)[1082]에 전라도 계사년(1713)의 전세를 강화부의 군량미 23,000석과 서로 맞바꿔 서울로 운송한 후, 공물 대신 바치는 쌀을 전라도에서 강화부로 옮겨 바치도록 하였는데, 1,000석은 정유년(1717, 숙종 43) 진휼로 제주(濟州)로 들여보내 그 대신 진휼청이 추이를 보아가며 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3년이 되었지만 진휼청이 끝내 돌려보내지 않는 일 때문에 이 장계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도의 군량은 일의 본체가 중대한데 빌려 사용한 후 오래도록 되갚지 않아 매우 온당치 않으며 1,000석 본 수량은 많지도 않으니 진휼청에 (돌려주도록) 분부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명령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거조(擧條)에 나옴】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강화유수, 심택현, 전라도, 강화부, 제주, 진휼청.

1082) 《승정원일기》 탈초본에는 갑자년(甲子年)으로 되어 있지만, 갑오년의 오기로 역주자가 바로 잡음. 바로 앞의 《승정원일기》 동일 내용의 기사에 갑오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갑자년은 1684년(숙종 10) 또는 1744년(영조 20)인데 당시의 시기로는 거리가 멈.

❖ 康熙 五十八年 己亥 八月 二十八日 戊申

○ 藥房提調閔鎭遠入診時, 以濟州鑄錢事陳達, 則有令廟堂稟處之命矣. 所入物力, 須自朝家顧助, 可以成就其事, 而凡事固在於得人, 監造之人, 尤不可不另擇. 令賑廳議于廟堂, 各別擇定, 作爲節目達下, 以爲入送鑄錢之地宜當, 以此分付該廳, 何如? 答曰, 允.

❖ 숙종 45년(1719) 기해년 8월 28일(무신)

□ 제주(濟州)에서 돈을 주조하는 일은 감조관(監造官)을 가려 뽑고 절목(節目)을 작성해서 내려 보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 논의함

○ 약방(藥房) 제조 민진원(閔鎭遠)이 입진할 때, 제주(濟州)에서 돈을 주조하는 일을 아뢴 바, "묘당(廟堂)에서 처리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들인 바의 물력이 모름지기 조정에서 생각하고 도와주어 그 일이 성취할 만한데, 모든 일은 참으로 (그만한) 사람을 얻는데 있으니 감조관(監造官)을 더욱 별달리 가려 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휼청은 묘당에서 논의하게 해서 각별히 가려 정해 절목(節目)을 지어 재가하여 들여보내 돈을 주조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로써 해당 관청에 분부함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민진원, 제주, 주전.

❖ 康熙 五十八年 己亥 九月 十三日 壬午

○ 今春夏等褒貶, 大靜縣監金世華, 中.

❖ 숙종 45년(1719) 기해년 9월 13일(임오)

□ 대정현감(大靜縣監) 김세화(金世華)의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

○ 금년 봄여름 관리 성적 평가에서 대정현감(大靜縣監) 김세화(金世華)는 중(中)이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대정현감, 김세화, 춘하등포폄.

❖ 康熙 五十八年 己亥 九月 二十日 己丑

○ 讀京畿監司黃一夏狀達, 濟州賑廳納鐵所載舟, 咸悅各衙門納穀物所載舟放舟事. 達下.

❖ 숙종 45년(1719) 기해년 9월 20일(기축)

□ 제주(濟州)에서 진휼청에 납부하는 철(鐵)을 실은 배에 대해 논의함

○ 경기감사 황일하(黃一夏)의 장계로 알린 바를 읽었다. 제주(濟州)에서 진휼청에 납부하는 철(鐵)을 실은 배, 함열(咸悅)[1083]에서 각 아문에 납부하는 곡물을 실은 배 등, 배를 띄우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왕세자가 재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황일하, 제주, 철, 함열.

1083) 함열(咸悅): 전라북도 익산 지역의 옛 지명. 금강 남쪽 호남평야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임천, 한산, 홍산 등지와, 남쪽으로는 임피, 김제, 만경 등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발달함. 조선시대에는 금강연안에 성당(聖堂) 조운창이 있어 이곳의 곡식을 경창으로 날랐음.

❖ 康熙 五十八年 己亥 九月 二十五日 甲午

○ 讀濟州牧使鄭東後申本, 司僕寺貿得私屯馬案後錄事. 達下.

❖ 숙종 45년(1719) 기해년 9월 25일(갑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동후(鄭東後)가 보고한 사둔마안(私屯馬案)의 후록(後錄)에 대해 논의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동후(鄭東後)의 신본(申本)[1084]을 읽었다. 사복시에서 사들인 사둔마안(私屯馬案)에 덧붙일 기록에 대한 일입니다. 왕세자가 재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정동후, 신본, 사둔마안.

1084) 신본(申本): 왕세자가 대리청정 할 때 신하가 업무를 보고하면서 올리던 문서임. 국가의 큰 사안을 보고할 경우에 사용하였다. 작은 사안에 대해 보고할 때 아뢰는 문서는 신목(申目)이라 하였음. 신본의 결재 절차는 모두 승정원에서 담당함. 왕세자의 재가를 의미하는 달자인(達字印)을 찍음. 신하가 국왕에게 큰일을 보고할 때 사용하던 계본(啓本)에 해당.

❖ 康熙 五十八年 己亥 九月 二十五日 甲午

○ 讀濟州牧使申本, 元牧場馬案後錄事. 達下.

❖ 숙종 45년(1719) 기해년 9월 25일(갑오)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보고한 원래 목장마안(牧場馬案)의 후록(後錄)에 대해 논의함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신본(申本)을 읽었다. 원래 목장마안(牧場馬案)에 덧붙인 기록에 대한 일입니다. 왕세자가 재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신본, 목장마안.

❖ 康熙 五十八年 己亥 九月 二十五日 甲午

○ 讀濟州牧使申本, 將官仕滿後錄事. 達下. 諸臣, 以次退出.

❖ 숙종 45년(1719) 기해년 9월 25일(갑오)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보고한 임기가 찬 장관(將官)의 후록(後錄)에 대해 논의함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신본(申本)을 읽었다. 장관(將官)의 임기만료 다음에 덧붙인 기록에 대한 일입니다. 왕세자가 재가하였다. 여러 신하가 차례로 물러 나갔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신본, 장관.

❖ 康熙 五十八年 己亥 十月 十七日 丙辰

○ 承旨持公事入對時, 右副承旨黃龜河所達, 今見濟州牧使鄭東後狀達, 則今年失稔, 無異癸甲之慘云. 朝家雖有賑救之令, 若不及時接濟, 則民難蒙惠, 而第本州三月以後, 則魚藿方時, 商船多萃, 庶有資生之道, 正二間, 料活無策, 曾前移轉, 趁不擧行, 輒有後時之歎, 御史監督, 猶於二月, 始乃入送, 今無別樣申飭之擧, 則賑政之愆期, 誠甚可慮. 令廟堂別爲行關於穀物分定之邑, 趁歲前入送, 以爲及時賙賑之地, 何如? 令曰, 依爲之.

❖ 숙종 45년(1719) 기해년 10월 17일(병진)

□ 제주(濟州)의 진휼이 제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황구하(黃龜河)의 건의

○ 승지가 공사(公事)로 입대할 때 우부승지 황구하(黃龜河)가 아뢴 바, "금번 제주목사(濟州牧使) 정동후(鄭東後)의 장계를 본 즉 금년은 흉년이 들어 계사년(1713), 갑오년(1714)의 참혹함에 다름없다고 합니다. 조정에서 비록 진휼의 명령이 있어도 만약 제 때 구휼의 방도를 마련치 않으면 백성들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주는 3월 이후에는 해산물이 두루 나오는 때이고 상선이 많이 도달해서 거의 살아갈 방도가 있는데, 정월과 2월 사이에는 삶을 헤아리기에 대책이 없어 일찍이 곡식 이전이 제 때 거행치 않아 문득 때늦은 한탄이 있었습니다. 어사가 감독하여 오히려 2월에야 비로소 들여보내고, 지금은 특별히 단단히 타일러서 거행하라는 말도 없으니 진휼의 정사가 기한을 어길까 참으로 매우 염려할 만합니다. 묘당에서 특별히 곡물을 나누어 정할 고을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여 올해 전까지는 들여보내 제 때 구휼하는 처지에 이르도록 함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명령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황구하, 정동후, 제주목사, 진휼.

❖ 康熙 五十八年 己亥 十月 十七日 丙辰

○ 藥房入診時, 閔鎭遠所啓, 濟州鑄錢事, 小臣陳達廟堂許鑄矣. 諸宰多以爲, 絶島鑄錢, 必多奸弊, 爭執勿爲擧行, 故敢達其由矣. 上曰, 此事初以爲好矣, 誠如諸臣之慮矣. 都提調李健命曰, 濟州, 今年又有風災, 飢荒如前, 極爲可慮, 不可坐視, 賑廳當預爲區劃矣. 令廟堂稟處, 何如? 上曰, 令廟堂稟處.【以上備謄】

❖ 숙종 45년(1719) 기해년 10월 17일(병진)

□ 제주(濟州)에서의 주전(鑄錢) 및 구휼 문제에 대해 논의함[1085)]

○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할 때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주전(鑄錢)하는 일은 소신이 묘당(廟堂)에 진술하여 주전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 재상들도 많이들 그렇다고 하였는데, 절도(絶島)에서 주전하면 반드시 간교한 폐단이 많으리라 서로 옥신각신 다투며 거행하지 말도록 하니 감히 그 연유를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처음에는 좋다고 하였는데 참으로 여러 신하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도제조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 “제주는 금년에도 또 풍재(風災)가 있어서 굶주리고 황폐하기가 전과 같아 매우 염려스러워 앉아서 볼 수 없어 진휼청에서 응당 미리 구획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묘당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묘당에서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민진원, 이건명, 제주, 주전, 풍재.

1085) 《숙종실록》 권64, 1719년(숙종 45) 10월 17일에도 관련 내용이 실려 있음.

❖ 康熙 五十八年 己亥 十月 十八日 丁巳

○ 又讀濟州牧使尹東俊[校][尹東浚]狀達, 風雲雷雨壇祭享復設, 香祝下送事. 達下.

❖ 숙종 45년(1719) 기해년 10월 18일(정사)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동후(鄭東後)[1086]의 보고에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의 제향 복설과 향축 하사에 대해 논의함**

○ 또 제주목사(濟州牧使) 정동후(鄭東後)가 세자에게 올린 장계를 읽었다.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의 제향을 다시 베풀어 향축(香祝)을 내려 보내는 일입니다. 왕세자가 재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정동후, 풍운뇌우단.

1086) 국편위 탈초본에는 윤동준(尹東浚)이라 되어 있고, 이는 윤동준(尹東俊)을 교정한 내용임을 밝히고 있으나, 1719년(숙종 45) 10월에 재임 중인 제주목사는 정동후(鄭東後)임. 역자가 바로 잡음.

❖ 康熙 五十八年 己亥 十月 二十二日 辛酉

○【此下缺】又讀掌隷院申目, 濟州吳得善等私賤施行事. 達下.

❖ 숙종 45년(1719) 기해년 10월 22일(신유)

□ 제주(濟州)의 오득선(吳得善) 등 사천(私賤)을 시행하는 문제를 논의함

○【이 아래로는 빠짐】 또 장례원(掌隷院)[1087]의 신목(申目)[1088]을 읽었다. 제주(濟州)의 오득선(吳得善) 등 사노비(私奴婢)를 시행하는 일입니다. 왕세자가 재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오득선, 사천.

1087) 장례원(掌隷院): 노비의 호적과 소송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정3품 관청. 사헌부, 한성부와 더불어 사법삼사(司法三司)라 함.

1088) 신목(申目): 왕세자가 대리청정 할 때 올리는 문서. 왕에게 올리는 계목(啓目)에 해당하는 문서임.

❖ 康熙 五十八年 己亥 十月 二十四日 癸亥

○ 又讀濟州牧使鄭東後申本, 進上船滀死人鄭日先等, 恤典題給事. 達下.

❖ 숙종 45년(1719) 기해년 10월 24일(계해)

□ 제주(濟州)의 진상선 익사한 사람 정일선(鄭日先) 등에게 휼전 시행을 재가함

○ 또 제주목사(濟州牧使) 정동후(鄭東後)의 신본(申本)[1089]을 읽었다. 진상선의 익사한 사람 정일선(鄭日先) 등에게 휼전의 판결문을 내리는 일입니다. 왕세자가 재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정동후, 정일선, 휼전.

1089) 신본(申本): 왕세자가 섭정할 때에 판서, 병사, 감사, 제조 등이 올리던 문서.

❖ 康熙 五十八年 己亥 十月 二十九日 戊辰

○ 禮判閔鎭厚所達, 請京畿·黃海兩水營, 竝勿挈眷, 濟州牧使一人亦足, 判官可革罷. 左副承旨黃龜河曰, 臣前日奉命時, 亦知其弊, 論列書啓, 只革其萬戶兩窠, 至於革罷判官, 則與其時監司金普澤商確, 濟〈州〉牧, 便是監司褒貶三邑, 身行判官之事, 事有難便, 非倉卒可決, 令廟堂稟處, 好矣. 鎭厚曰, 使其道狀達, 而後令廟堂稟處, 好矣. 令曰, 問于道臣後處之.

❖ 숙종 45년(1719) 기해년 10월 29일(무진)

□ 제주판관(濟州判官) 혁파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아뢴바, 경기(京畿)와 황해(黃海)의 두 수영(水營)에는 모두 가족을 데리고 가지 말 것과 제주목사(濟州牧使)는 1인이 또한 족하니까 판관 혁파가 가능함을 청하였다. 좌부승지 황구하(黃龜河)가 말하기를, "신(臣)이 전날에 명을 받들 때[1090] 또한 그 폐단을 알고서 서계(書啓)[1091]로 늘어놓았는데 다만 만호(萬戶) 두 관직은 혁파하되, 판관 혁파에 이른 즉 그 당시 감사 김보택(金普澤)과 함께 서로 의논하여 확정한 것이 제주목(濟州牧)은 곧 감사가 삼읍을 포폄하는데 몸소 판관의 일을 하는 것은 일이 불편함이 있다 해서 급작스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니 조정에 아뢰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그 도(道)의 장계에 대해 이후 조정에서 처리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명령하기를, "관찰사에게 물은 이후에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민진후, 황구하, 김보택, 제주목사, 제주판관.

1090) 황구하가 제주의 재해를 극복하고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제주별견어사(濟州別遣御史)로 파견된 때는 1716년(숙종 42) 1월부터 동년 9월까지임.

1091) 서계(書啓): 국왕의 명을 받은 관리가 임무를 완수하고 보고하는 문서. 주로 암행어사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서로 이때에는 별단(別單)도 함께 올렸음.

❖ 康熙 五十八年 己亥 十一月 十八日 丙戌

○ 十八日未時, 王世子坐尊賢閣, 承旨持公事入對時, 右副承旨黃龜河, 司書趙榮世, 假注書崔熽, 記事官申昉, 持平洪禹傳同爲入對. 黃龜河讀禮曹草記覆達, 濟州風雲雷雨壇復設事, 收議大臣後, 依領相議稟處事. 令曰, 依.

❖ 숙종 45년(1719) 기해년 11월 18일(병술)

□ 제주(濟州)에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을 다시 설치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 18일 미시(未時, 13시~15시)에 왕세자가 존현각(尊賢閣)에 좌정하고 승지가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대할 때, 우부승지 황구하(黃龜河), 사서(司書) 조영세(趙榮世), 가주서(假注書) 최집(崔熽), 기사관(記事官) 신방(申昉), 지평(持平) 홍우전(洪禹傳)이 함께 입대하였다. 황구하가 예조 초기를 다시 아뢰며 읽었다. 제주(濟州)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을 다시 설치하는 일로써 대신들의 의논을 거둔 후 영의정에 의해 논의를 처리하는 일입니다. 명령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 풍운뇌우단.

1720年

❖ 康熙 五十九年 庚子 二月 八日 乙巳

○ 以趙永命爲宗簿主簿, …… 崔東逸爲濟州判官, …….

❖ 숙종 46년(1720) 경자년 2월 8일(을사)

□ 최동일(崔東逸)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조영명(趙永命)을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에, 〈중략〉 최동일(崔東逸)[1092]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최동일, 제주판관.

1092) 최동일(?~?): 제주판관의 재임기간은 1720년(숙종 46) 4월~1722년(경종 2) 7월.

❖ 康熙 五十九年 庚子 二月 二十一日 戊午

○ 政院達曰, 都目政, 新除授, 豐川府使李遇新, 永平縣令南漢紀, 衿川縣監金彦熙, 濟州判官崔東逸, 忠淸都事姜必慶, 俱未署經, 諫院則纔已署經, 而憲府則大司憲沈宅賢外, 皆在外, 備員署經, 遲速難期, 夫馬留滯, 亦甚可慮, 合有變通之道, 何以爲之? 敢稟. 令曰, 除署經發送.

❖ 숙종 46년(1720) 경자년 2월 21일(무오)

□ 사헌부(司憲府)의 인원이 미비하여 제주판관(濟州判官) 최동일(崔東逸) 등이 서경(署經)을 받지 못하므로 대책을 묻는 승정원의 달(達)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도목정(都目政)에 새로 제수된 풍천부사(豐川府使) 이우신(李遇新), 영평현령(永平縣令) 남한기(南漢紀), 금천현감(衿川縣監) 김언희(金彦熙), 제주판관(濟州判官) 최동일(崔東逸), 충청도사(忠淸都事) 강필경(姜必慶)은 모두 서경을 갖추지 못했는데, 사간원은 겨우 서경을 마쳤으나 사헌부는 대사헌 심택현(沈宅賢) 외에 모두 지방에 있어서 관원을 갖추어 서경하는데 늦고 빠름이 기약하기 어렵고 말도 오래도록 묶어두는 것 또한 매우 염려할 만합니다. 모두 변통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명령하기를, "서경(署經)을 면제하고 보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판관, 최동일, 서경.

❖ 康熙 五十九年 庚子 五月 十一日 丁丑

○ 以備邊司, 粘連全羅監司狀達云云. 濟州牧使鄭東後, 到任之後, 身病危重, 公務廢閣, 已至累朔, 今姑許遞事, 依準.

❖ 숙종 46년(1720) 경자년 5월 11일(정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동후(鄭東後)를 교체하는 일에 대한 비변사의 계목에 대해, 아뢴 대로 하도록 함

○ 비변사가 전라감사(全羅監司)의 장계에 관계 서류를 덧붙여 운운하였다. 제주목사(濟州牧使) 정동후(鄭東後)가 도임한 후에 신병이 위중하여 공무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지 이미 여러 달에 이르렀으니, 지금 우선 교체를 허용해달라는 일입니다.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정동후.

❖ 康熙 五十九年 庚子 五月 十二日 戊寅

○ 吏曹口傳政事, 濟州牧使閔齊章.

❖ 숙종 46년(1720) 경자년 5월 12일(무인)

□ 민제장(閔濟章)[1093]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조의 구전 정사(政事)에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민제장(閔濟章)[1094]을 제수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민제장.

1093) 민제장(閔濟章): 원문에는 민제장(閔齊章)으로 되어 있으나 방목 및 실록 등의 사료에는 민제장(閔濟章)으로 되어 있어 역자가 바로잡음.

1094) 민제장(1671~1729):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회백(晦伯), 호는 삼금당(三錦堂). 아버지는 민후경(閔後慶)이다. 1708년(숙종 34) 식년시 병과로 급제하여 전라도병마절도사를 역임. 1728년(영조 4) 안성군수로 부임하여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아우 민제만(閔濟萬)과 함께 안성·죽산에서 반란군을 평정하는 데 큰 공을 세워 분무일등원종공신에 훈록됨. 제주목사 재임기간은 1720년(숙종 46) 7월~1721년(경종 1) 8월.

❖ 康熙 五十九年 庚子 五月 二十八日 甲午

○ 政院達曰, 卽伏見濟州牧使鄭東後狀達, 則本州式年文科初試, 以考官未備, 至於退行. 東後身病之輕重, 雖未知如何, 旣有旌義縣監, 則二員掌試, 自有定式, 而稱有身病, 任自退行, 其在事體, 極爲未安. 從重推考, 何如? 令曰, 依.【禮曹謄錄】

❖ 숙종 46년(1720) 경자년 5월 28일(갑오)

□ 제주(濟州)의 식년문과초시(式年文科初試)를 연기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정동후(鄭東後)의 추고를 청하는 승정원의 달(達)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금방 제주목사(濟州牧使) 정동후(鄭東後)의 장계를 살펴보니 본주 식년 문과 초시에 고시관이 없어서 뒤로 물려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동후의 신병이 가벼운지 중한지 비록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정의현감(旌義縣監)은 2명이 시험을 관장하여 저절로 정해진 규칙대로 했다 하는데, 신병이 있다 칭하여 임무를 뒤로 물려서 시행하는 것은 일의 본체가 매우 편치 않습니다. 종중추고(從重推考)하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다. 명령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예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제주목사, 정동후, 정의현감, 추고.

❖ 康熙 五十九年 庚子 六月 二十二日 丁巳

○ 韓重熙啓曰, 守禦使·摠戎使及諸道監兵水使處, 新造密符傳授時, 仍用當初所授諭書中書塡第次乎? 己亥·甲寅前例, 皆如此, 今則何以爲之乎? 且每道, 宣傳官各一人下送事, 旣已稟定, 而至於濟州, 乃是候風越海之地也. 水路險遠, 遲速難期, 他處分授之人, 不可兼往濟州, 則別爲定送, 何如? 敢稟. 傳曰, 依爲之.

❖ 숙종 46년(1720) 경자년 6월 22일(정사)

□ 제주(濟州)에 선전관(宣傳官) 1인을 별도로 정하여 내려 보내기를 청하는 한중희(韓重熙)의 계

○ 한중희(韓重熙)가 아뢰기를, "수어사(守禦使)·총융사(摠戎使) 및 여러 도(道)의 감사(監使), 병사(兵使), 수사(水使)에게 새로 지은 밀부(密符)[1095]를 전해 줄 때, 그대로 당초에 준 바의 유서(諭書)[1096] 속의 글을 써 넣은 차례대로 사용합니까? 기해년(1659)과 갑인년(1674)의 전례가 모두 이와 같으니 지금은 어찌 해야 합니까? 또 도(道)마다 선전관(宣傳官) 각 1인을 내려 보내는 일은 이미 결정되었는데 제주(濟州)에 대해서는 바람을 기다리고 바다를 건너는 곳인지라 수로가 험하며 멀어 늦고 빠름을 기약하기 어렵고, 다른 곳에 나누어 맡길 사람이 겸임할 수 없어서 제주에 가는 것은 별도로 정하여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8〉

△ 주제어: 한중희, 제주, 선전관.

1095) 밀부(密符): 왕이 유수(留守), 관찰사(觀察使), 총융사(摠戎使), 수어사(守禦使), 통제사(統制使), 절도사(節度使), 방어사(防禦使) 등에게 주어 병난 등에 대비하여 유사시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쓰던 병부(兵符).

1096) 유서(諭書): 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렸던 명령서.

인명 색인

ㄱ

갈강 556, 564
강두찬 605
강만철 286, 288, 290, 292, 294, 296, 299, 301, 303, 305, 307, 309
강상망 174
강석창 89
강성좌 182, 187
강세귀 406, 408, 409, 413, 414, 693
강우량 1116
강치완 605
강항 1167
강현 568, 569, 1084
고기종 102, 104
고남 104
고만갑 1366
고만첨 1075, 1076, 1077, 1078
고부사 50
고운준 353
고처량 1366
고홍진 615
고후 1209
곽제화 62, 63
구만리 1112
구음 224
권개 140
권대운 152, 179, 185, 189, 631, 640, 643, 700
권대재 52, 184, 192, 193
권륜 1159, 1162, 1175
권성 1119, 1292, 1293, 1294, 1296
권시경 187
권해 548, 550
권환 195, 542
권흠 703
길운절 185, 286, 288, 290, 292, 294, 296, 299, 301, 303, 305, 307, 309
길재 1197
김경 796, 873
김계륭 150, 152
김계무 104
김계홍 102, 499, 502
김귀만 596
김끝남 1289
김눌질연 1111
김대진 143, 278
김덕원 117, 588, 589, 593, 594, 649, 719, 788, 795
김두명 277
김만기 64, 284
김만일 48
김만채 299, 301, 303, 305, 307, 309
김문하 406
김보택 1305, 1330, 1416
김부영 105, 106
김삼달 416, 417

김상옥 1275
김상하 386, 387, 388
김상헌 334
김석 257
김석달 421
김석령 329
김석민 923, 933
김석주 72, 152, 185, 225, 228, 311, 324, 334, 335, 337, 342, 362, 378
김선필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4,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김성구 192, 193, 589, 590, 591, 594
김세귀 371, 396, 410, 487
김세량 371, 381
김세화 1387, 1390, 1406
김속 538, 549
김수익 205, 207, 210, 211
김수항 282, 297, 317, 403, 424, 449, 454, 456, 465
김수흥 273, 376, 402, 517
김순신 1024, 1025, 1092, 1093
김시영 238
김시환 1284, 1287
김언갑 605
김여성 605
김연 249, 272, 359
김우석 124
김우인 88
김우천 935
김우항 1268
김운흥 104
김원호 913
김유 616
김응남 363
김응운 313
김응하 487
김이준 847
김익구 824, 825, 833
김재현 425
김전 1364
김정 334
김정길 196
김정태 372
김준상 205
김중삼 756, 758, 762, 763, 764, 765, 766
김중우 487
김중원 383
김중태 1080, 1081
김진구 583, 737
김진귀 327, 399, 740
김진규 1186
김진욱 349, 397, 591
김진휘 104
김창집 1184, 1232, 1239, 1243, 1255, 1258, 1268, 1302, 1323, 1326
김초보 1218, 1225, 1312
김춘택 1058, 1060, 1150, 1152, 1173, 1174
김탕 271
김태수 1393
김태정 901, 904
김태황 532, 572

김하세 382
김하천 121
김홍경 420
김홍서 942, 943, 946, 1002, 1003, 1023, 1070
김환 474
김홍운 54, 75
김희윤 1265, 1271, 1341

ㄴ

남구만 479, 489, 497
남구명 1198, 1281, 1305, 1351
남급 520
남세번 312
남용익 459, 462, 473
남유성 100
남이성 299, 301, 303, 305, 307, 309
남익훈 210
남지훈 816, 847
남취명 1252
남치훈 850, 1013
남헌 852, 853
노삼석 707, 753, 759
노정 112

ㄷ

덕만 1289
돌운 566
동량 768
동언 768
동엽 768

ㅁ

맹만택 1096
모세번 445
목래선 203, 216, 223, 256, 525, 637, 638, 639
목임기 730, 731
목존선 151
목차명 244
목창명 172, 554, 563
문영후 359, 400, 401, 606, 615, 631
민석재 281
민순 1208
민시준 936
민암 106, 219, 222, 593, 646, 700, 705, 706, 711
민용 526, 539
민점 99
민정중 233, 235, 236, 237, 238, 239, 297, 311, 324, 327, 337, 342, 378
민제장 1423
민종도 184, 234, 241, 646
민진원 1401, 1405, 1412
민진후 1035, 1040, 1043, 1045, 1148, 1158, 1224, 1232, 1239, 1243, 1416
민취도 176, 188
민치룡 1369, 1380
민희 154, 179

ㅂ

박경후 173
박계운 353
박권 1232, 1270, 1302
박동주 421
박두선 349
박립 467, 468, 470, 472
박만정 659
박봉상 240
박사돈 462, 473
박상하 894, 898, 929, 999
박선 257
박성석 854, 864
박세길 438, 439, 446, 543
박세준 721
박세태 1091
박세화 822, 823
박순 310
박승학 433
박양검 994
박옥한 264
박위 1167
박이문 1342, 1343, 1391
박장원 244
박전 1154
박제 584, 585, 641
박진규 233
박진익 281
박창한 390
박치도 114, 118, 119, 320, 322
박태상 262
박태손 264
박태항 1052
박태회 1013, 1018
박필위 1091
반윤위 633, 634
반처렴 704, 712
배지인 310
백시구 1155, 1163
범제 322
변시동 1230
변시태 1213, 1214, 1216, 1223, 1232, 1233, 1235, 1250, 1255, 1272, 1274, 1286, 1287, 1288, 1290, 1292, 1293, 1294, 1296, 1302, 1305, 1313, 1318
변이구 636

ㅅ

상인첨 78, 199, 200, 203, 216
서문유 1029
서문중 354, 746
서유문 1020
서종태 297, 1022, 1193, 1302, 1323, 1326
성진 350
성진령 1383
소두산 64, 65, 66, 67, 68, 69, 79, 376
손유 379
송래백 792, 803, 1381
송사윤 1386
송상기 1348, 1349
송상주 892
송성 936
송시열 523, 548, 550, 551, 552, 553,

554, 563, 565, 1332
송인수 334
송정규 797, 961, 993, 1020, 1035, 1040, 1041, 1065, 1100, 1104, 1110, 1112
송정렴 128
송종규 1034
송창 278
숙정 879
신경유 364
신경윤 362, 373, 374, 378, 385
신명규 44, 126, 127, 130, 132, 138, 189, 252
신명백 642
신명식 1124
신선완 1139, 1175, 1178, 1206
신성원 773, 873
신심 1031
신양 301, 303, 305, 307, 309, 464, 467, 468, 470, 472
신언화 580
신여철 243, 435, 437
신엽 441
신완 383, 858
신임 771, 772
신재만 121
신학 205, 210, 211
신한장 1210, 1211, 1212
심단 172
심당 688
심득원 675
심유 347
심익삼 1054, 1059
심익현 50
심택현 1402, 1403, 1404

안여석 197
안여악 205, 235
안집 71
안후 328
애숙 125
양성규 1109
양우한 520
양응도 484, 485
양정진 144
어진익 338, 339
엄귀현 829, 832
엄집 386
여성제 259, 489
오득선 1414
오석하 936, 940, 941, 1089
오시복 116, 697, 890, 895, 914, 915, 916, 1148, 1152, 1194, 1195, 1208
오시수 112, 171, 191, 207, 216, 217, 223
오식 249, 272, 359
오장 1133
오정빈 1075, 1076, 1077, 1078
오정위 103, 260
오태현 104
오후주 605
우정 819, 821
원공우 360
원상 242, 243, 244, 270

위혁만 1321
유덕삼 540
유득일 1046, 1119
유명견 221
유명필 216
유명현 153, 165, 631
유봉서 804, 805, 806, 809, 810
유봉휘 1204
유상운 253
유서 260
유석창 160
유성년 438, 439, 443, 445
유숭 1292, 1293, 1294, 1296
유신원 80
유연 465, 467, 470, 472
유정교 1177, 1184
유준 555
유중기 128, 129
유지발 410, 617, 619
유척기 1375
유태명 1235
유필명 122, 189
유하익 90, 535
유한명 767, 813, 873
유항 885
유헌장 1396, 1397
유혁연 84, 170, 194, 245, 247, 248, 255, 256, 260, 268
윤가적 366
윤경교 340
윤계 497, 948
윤명철 248
윤반 259, 320
윤선거 1332
윤선도 71
윤세초 398, 420, 422, 423, 440
윤심 238
윤유 583
윤의제 203
윤이림 89, 91, 113
윤이제 637, 638, 646
윤이취 447
윤재 621
윤정화 645, 649, 650, 652, 674, 675, 676
윤증 1332
윤지선 388
윤지원 866, 867
윤지인 1193
윤창형 85, 86, 87, 88, 90, 105, 106, 112, 122, 123,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41, 145, 147, 152, 153, 199, 200, 203, 205, 207, 210, 211, 216
윤천뢰 270
윤휴 55, 77, 220
응선 1165
의준 1204
이건명 1184, 1403, 1412
이격 1209
이경억 173, 210
이관징 126, 127, 128, 593
이국휴 1218
이규성 1055, 1100, 1104, 1124
이극성 137
이기복 1275
이기서 269

이기익 1364
이기정 785
이기하 653, 700, 702, 715, 717, 720, 786, 1071, 1072, 1073, 1101, 1292, 1293, 1294, 1296
이기한 529, 537
이담명 198
이당 188, 195, 318
이대성 1031, 1188
이덕영 1259
이덕주 196
이돈 257
이동식 845, 848
이동욱 362
이두삼 1215
이만성 329
이만재 801, 802, 804
이만지 159, 161
이만흥 797, 798, 799, 800
이몽석 277
이무 255
이문흥 675
이민장 409
이봉상 1168, 1169
이빈 350
이사명 374, 433, 454, 475
이사상 1022
이사영 490, 491, 509
이상우 1127, 1128
이상전 415, 419, 451, 455, 477, 500, 501
이석신 757, 761
이석화 174
이선 51, 53, 60, 72, 282, 317, 332, 335, 1046
이성휘 1219
이세강 262, 263, 269, 347
이세귀 383
이세백 858
이세선 506
이세유 1086
이세익 316
이세최 1178, 1179, 1181, 1186, 1190, 1194, 1195, 1204
이세홍 1194, 1195
이수겸 77, 95, 97, 99, 100
이수경 86
이수민 1154
이수익 618
이숙 327, 340, 341
이순원 280
이순재 1278
이승겸 342
이승래 136, 137, 142, 186
이시만 572, 575, 577
이시원 105
이시중 580
이야 1111
이언경 1041
이여 297, 1029, 1323
이엽 179, 180, 181, 189, 250, 251, 402, 403
이용징 789, 1129, 1131
이우정 611
이우항 541, 575, 576, 598, 599
이운 1104
이운림 83, 117
이원록 63, 207

이원성 579
이원익 77
이원정 210, 213, 216, 242, 243
이유 263, 297, 325, 411, 1013, 1015, 1017, 1268, 1327
이유정 548
이윤문 1110, 1112
이윤수 523
이의징 722
이이명 1187, 1250
이익민 629, 632
이익상 379
이익수 386
이익태 716, 717, 718, 735, 747, 751, 752, 760
이익한 1164, 1190, 1193, 1200, 1227, 1286, 1383
이인 474
이인빈 239
이인엽 1057, 1074, 1107
이입신 579, 583
이점 162, 165, 169, 184
이정 222, 597
이정기 44, 138, 203, 216, 252
이정영 280
이정제 187
이제민 523
이준명 142
이증 225, 226, 252
이증록 1208
이지행 40, 43
이진 697
이진상 607
이진수 1124
이진휴 1062
이집 1384
이징명 417
이추 1221, 1236, 1237
이탁 260
이태동 520, 528
이태현 861
이택 1292, 1293, 1294, 1296
이필명 203
이하 1292, 1293, 1294, 1296
이하진 114, 203, 256
이한장 790, 793, 1131
이해조 1031, 1032, 1038, 1057, 1061, 1062, 1063, 1068, 1323
이현명 774
이현석 343, 348
이현일 682
이현징 1217, 1264
이형상 874, 884, 909, 912, 914, 919, 920, 921, 928, 931, 959, 1122
이혜 159
이혼 179, 180, 181, 189, 250, 251, 331, 343, 344, 402, 403
이황 331, 343, 344
이후성 754, 755
이희룡 489, 492, 494, 498, 513, 516, 525, 534, 535, 542, 566, 725
이희태 263, 917, 918, 947, 950, 955, 958, 963, 965, 966, 967, 970, 972, 975, 977, 978, 979, 980, 981, 983, 985, 986, 987, 988, 990, 992, 1029, 1034
임난수 1197
임부 1150

임순원 1173, 1174
임원구 421
임홍량 253, 257, 261
임홍망 259, 261, 264
임후창 349

ㅈ

장문황 700
장천한 872
장한상 1276, 1278, 1280, 1386
장후재 521, 536, 630, 636
장희재 782, 783, 865, 866, 879
정간 1282, 1305, 1367, 1368
정건순 700
정동 1283
정동리 1115, 1120, 1168, 1175
정동미 281
정동후 1398, 1399, 1408, 1411, 1413, 1415, 1422, 1424
정륜 158
정면 408
정박 82, 113
정빈 872
정석빈 1362, 1394
정선명 551, 552
정세여 121
정수 312
정시윤 671, 675
정온 334, 1133
정원로 286, 288, 290, 292, 294, 296, 299, 301, 303, 305, 307, 309
정유설 172, 174, 359
정이규 1208
정인수 136, 137
정일선 1415
정재숭 253
정재제 348, 350, 351, 391
정재희 51, 353
정지 1167
정징 137
정창선 1366, 1373, 1375, 1376, 1378, 1379
정창원 1075, 1076, 1077, 1078
정창회 313, 370, 377, 497
정회 1048, 1050, 1079
정희량 249, 272, 713, 1185, 1187
조도빈 1373, 1375, 1378
조명주 1170, 1176, 1228, 1234
조무훈 390
조세성 692, 694, 710
조송 118
조시운 817
조위수 269
조이중 105, 969
조정우 389
조진희 1373, 1378
조태구 1184, 1187
조태채 1106, 1119, 1193, 1298, 1299, 1302
조하익 389
주한원 700
준이 144
지우한 1144
진만재 778, 779

ㅊ

채이장 1205
최관 162, 163, 168, 176, 199, 203, 205, 207, 210, 211, 216, 224,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최계웅 1115, 1123, 1138, 1148, 1150, 1152, 1209
최동일 1420, 1421
최동제 874, 882
최석문 1332
최석정 1057, 1119
최석항 1062, 1069, 1076, 1189
최영 1197
최용운 393
최용지 281, 328, 339
최일 271
최준기 337

ㅍ

평조홍 1167

ㅎ

한관 104
한구 378
한도장 899
한배주 1174
한석조 593
한중희 1290, 1425
해일 1169
허견 286, 288, 290, 292, 294, 296, 299, 301, 303, 305, 307, 309
허윤 1137
허재 124, 135
허적 41, 49, 59, 75, 112, 171, 173, 179, 185, 189, 191, 234, 247, 248, 255, 268
허지 297
홍만용 268, 286, 288, 290, 292, 294, 296, 348
홍만조 697
홍상열 104
홍석보 1258
홍수헌 1031
홍우 1000, 1008
홍우신 1144
홍우원 184
홍중주 1312, 1328, 1344, 1361, 1364
홍호인 1286
황구하 1310, 1311, 1312, 1313, 1315, 1318, 1320, 1329, 1339, 1347, 1348, 1350, 1411, 1416
황숙귀 269
황순 843
황일하 1253, 1407
황진서 379
희신 56

역 주 자

김 일 우 (사)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소장 · 이사장
문 숙 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백 종 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오 창 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홍 기 표 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교정 · 교열

김새미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이 진 영 고문헌 번역가
임 승 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홍 기 표 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제주역사 자료총서 10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Ⅲ

– 肅宗代 –

발행인 김 동 전
발행일 2019년 12월 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 (064) 726-5623 팩스 : (067) 747-6140
홈페이지 : www.jst.re.kr
인쇄처 일신옵셋인쇄사 TEL. (064) 758-1500

ISBN : 979-11-90748-03-2 93090

□ 이 책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